# 목 차


◆ 법무부 전경
◆ 법무부 기
◆ 법무부장관 근영
◆ 2016년도 법무부 간부 일동
◆ 각종 행사(화보)
◆ 2015년도 법무행정 일지
◆ 발간사

## 제 1 장 총 설 / 1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3**
제1항 국정 방향 3
1. 국정기조 : 경제부흥 3
2. 국정기조 : 국민행복 3
3. 국정기조 : 문화융성 3
4. 국정기조 : 평화통일 기반구축 4
5. 추진기반 : 신뢰받는 정부 4
제2항 법무행정의 지표 4
1.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5
2.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6
3. 사회통합적 인권보호체계 구축 7
4. 창조경제 기반 지원 7
5.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국민행복 법무정책 8
6. 안전과 통합의 외국인정책 추진 9

**제2절 기구·인원 11**
제1항 본 부 11
1. 기 구 11
2. 인 원 14
제2항 산하기관 15
1. 검찰청 15
2. 보호기관 18
3. 교정기관 22
4. 출입국관리기관 24
5. 법무연수원 25

**제3절 예산과 시설 26**
제1항 예 산 26
1. 개 요 26
2. 일반회계 27
3. 교도작업특별회계 31
4.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32
5.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2
제2항 시 설 33
1. 개 요 33
2. 국민 편의와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법무시설 조성 33
3. 법무시설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상황 33

## 제 2 장 업무실적 / 35

**제1절 기획조정업무 37**
제1항 규제개혁 적극 추진 37
제2항 법무행정개선 추진 38
1. 국민·현장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및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지원 38

2. 창의 및 직무역량 강화, 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 38
3.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보람있고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 39
4.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39
제3항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40
1. 정부업무평가 40
2. BSC 제도 및 시스템 운영 45
제4항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상황 46
1. 개 요 46
2. 완료 지시사항(38건) 46
3. 정상추진 지시사항(64건) 47
제5항 비상대비업무 49
1. 정부 연습 49
2. 비상대비 계획 보완 49
3. 법무 시설 방호 실태 및 재난 관리 실태 점검 49
4. 재난 대응 훈련 실시 49
5. 예비군·민방위대 운영 49
제6항 정보화업무 50
1. 개인정보관리수준 향상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50
2. 법무정보통신망 보안강화를 통한 안전한 업무환경 구현 50
3. 사이버안전체계의 지속적 강화를 통한 사이버 위협 선제적 대응 51
4. 지식 공유·확산으로 법무지식행정 활성화 51
5. 고객중심의 온라인민원서비스 개선 52
6. 정보기술 아키텍처(EA)활용 확산 52
7.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보공동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52
제7항 교육과 연구의 내실화 54
1. 개 요 54
2. 교육훈련 55
3. 연구활동의 활성화 64
4. 국제교류의 활성화 65
제8항 홍보업무 65
1. 홍보환경 및 홍보방향 65
2. 유기적인 언론 대응 시스템 구축 66
3. 기관장의 언론 소통 활동 강화 66
4. 온라인 소통 기능 강화 66
5. 주요 홍보활동 실적 67

**제2절 법무업무 68**
제1항 법무업무의 기본방향 68
1. 국민행복 증진·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68
2. 법무자문 기능의 강화 68
3. 서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 69
4. 신뢰 및 경쟁력을 갖춘 법조환경 조성 69
5. 국제법무업무의 전문성 확충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69
6. 국가송무 수행 역량 강화 70
7. 법무분야의 통일준비 실질화 및 탈북민 법치주의 적응지원 강화 70
8. 상사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 법제 개선 70
9.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선발제도의 발전도모 71
제2항 국민행복 증진·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및 서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 72
1. 개 요 72
2. 국민행복 증진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주요 법령 정비 72

제3항 법무자문 기능의 강화 73
1. 개 요 73
2. 법령자문과 유권해석 74
3. 주요법률문제 검토 74
4. 법무자료 발간 75
5. 법무자문위원회 운영 76
제4항 신뢰 및 경쟁력을 갖춘 법조 환경의 조성 76
1. 개 요 76
2. 깨끗한 법률시장 조성 76
3. 변호사 징계 및 업무정지명령 77
4. 공증의 활성화 및 적정성 제고 77
5. 공익법무관 관리의 내실화 79
제5항 국제법무업무의 전문성 확충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79
1. 국제법무교류 지원 79
2. 국제거래규범 형성과정에 참여 85
제6항 송무수행의 효율성 향상 86
1. 개 요 86
2. 소송수행 역량 제고 86
3. 송무업무 실적 88
제7항 헌법재판의 효율적 수행 88
1. 개 요 88
2. 헌법재판 수행 89
3. 위헌법률심판 89
4. 헌법소원심판 89
제8항 친일재산송무팀 소송수행 90
1. 개 요 90
2. 주요 업무 90
3. 소송수행 실적 90
제9항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90
1. 개 요 90
2. 주요 내용 91
3. 기대효과 91
제10항 선진적인 국가송무 수행을 위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구축·중앙행정기관 확대 및 시스템 유지보수·운영 91
1. 개 요 91
2. 추진 내용 92
3. 기대효과 92
제11항 법무분야의 통일준비 실질화 및 탈북민 법치주의 적응지원 강화 92
1. 개 요 92
2. 통일 법제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확산 93
3. 통일대비 법률전문가 양성 93
4. 북한이탈주민 법치주의 적응지원 강화 94
제12항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 법제 개선 94
1. 개요 94
2. 상사법령 제정 및 개정 현황 95
3. M&A 활성화를 위한 상법 회사편 개정 95
4.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제도 운영 95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96
6. 중재산업활성화를 위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96
7. 공익신탁법 시행 97
8.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추진 97
9. 전자어음제도 운영 및 관리 감독 98
10. 선진 상사법제 관련 연구 99
제13항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선발 제도의 발전 도모 100
1. 제57회 사법시험 실시 100
2. 제4회 변호사시험 실시 101

**제3절 검찰업무 102**
제1항 검찰업무의 기본방향 102
1. 국가·사회기강 확립 102
2.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103
3.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104
제2항 법과 원칙의 관철을 통한 사회안정 확보 106
1. 개 요 106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106
3. 공정하고 깨끗한 선진 선거문화 정착 107
4. 노사분규 관련 공정한 법집행 108
5. 불법집단행동 엄정 대처 108
제3항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109
1. 개 요 109
2. 부정부패사범의 척결 110
3. 쾌적하고 안정된 국민경제생활의 확보 113
4. 국제형사협력강화 119
5. 형집행 지휘·감독 122
제4항 형사법규의 지속적 정비 123
1. 개 요 123
2. 형사절차법 정비 추진 124
3. 형사실체법 정비 추진 125
제5항 검찰역량의 강화 128
1. 직제 개편 및 검찰인력의 변동 128
2. 인사관리의 공정·합리화 129
3. 교육·국외훈련의 확대 131
4. 화합과 단결의 조직문화 조성 131
5. 효율적인 예산편성·집행 132
6. 검찰시설의 개선 134
제6항 국민의 권익 보호 134
1. 개 요 134
2. 인권존중의 수사시스템 정착 134
3. 형사보상의 신속·적정 도모 135
제7항 미래형 선진수사시스템 구축 136
1. 기본방향 136
2. 과학수사 운영체제의 확충 136
3. 영상녹화시스템 구축 138
4.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DNA감식 연구사업의 수행 140
5.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 141
6. 과학수사 업무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142
7. 검찰업무 정보화 143
8.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148
9. 감정·분석기법 특허출원 및 등록 149

**제4절 범죄예방업무 152**
제1항 범죄예방업무의 기본방향 152
1. 범죄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 봉사자의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 152
2.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법교육 기반 구축 152
3.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153
4. 감호제도의 개선 154
5.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 추진 154
6. 갱생보호사업의 내실화 155
7. 청소년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역량강화 155
제2항 범죄예방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제고 157
1. 개 요 157
2. 범죄예방자원봉사자 포상 및 격려 157
3.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158
4. 범죄예방활동의 내실화 및 전문화 158
5. 법사랑위원 봉사활동 실적 및 조직 관리의 체계화 159

6.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160
제3항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법교육 기반 구축 160
1. 개 요 160
2. 법교육의 추진 배경 161
3. 법교육 연구·추진체제 구축 161
4. 수요자별 맞춤형 생활법 교재 개발 163
5.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166
6. 일상생활 속 법교육 확대 169
7. 사이버 법교육 시스템 활성화 170
8. 법교육 관련 유관단체 협력사업 전개 및 홍보 170
9. 민간 법교육 지원 171
10. 법체험기관 솔로몬 로파크 설립·운영 171
11. 헌법정신과 가치 교육 강화를 위한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 172
제4항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법질서 실천 운동 172
1.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 나부터 릴레이! 172
2. 온라인 법교육 테마파크 '법사랑 사이버랜드' 운영 173
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법질서 선진화' 집중홍보 174
제5항 감호제도의 개선 175
1. 개 요 175
2. 감호의 엄정 집행 176
3.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178
4. 치료감호의 효과성 증진 및 지속적 치료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179
제6항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 추진 181
1. 개 요 181
2. 보호관찰 실효성 제고 181
3. 성폭력 등 특정범죄자 관리·감독 183
4. 보호관찰활동 주요 성과 186
5. 유비쿼터스 보호관찰시스템 구축·운영 187
6. 판결전조사·환경조사 활동 190
7. 사회봉사명령의 엄정·충실한 집행 192
8. 수강명령 집행 전문성 강화 193
제7항 갱생보호사업의 내실화 196
1. 개 요 196
2.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역량 강화 196
3. 갱생보호사업 현황 198
4. 갱생보호사업 저변 확대 200
제8항 청소년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역량강화 201
1. 개 요 201
2. 소년원교육의 내실화·전문화 203
3. 개방적 인성교육 206
4. 성공적 사회복귀 지원 강화 208
5. 주요 교육성과 210
6.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212

**제5절 감찰·감사업무 218**
제1항 감찰업무 218
1. 개 요 218
2. 추진상황 218
제2항 감사업무 219
1. 개 요 219
2. 주요 감사실적 219

**제6절 인권업무 221**
제1항 인권업무의 기본방향 221
1. 국가인권정책의 총괄·선도 221
2.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221

3.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222
4.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 총괄·조정 222
제2항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222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23
2. 차별방지 대책 추진 224
3. 법령,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24
4. 국제 인권 활동 강화 224
5.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외 환경조성 224
6. 법의 날 기념식 개최 225
제3항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225
1. 개 요 225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226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229
제4항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233
1. 개 요 233
2. 법무행정관련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 233
3.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감독 및 제도 개선 234
4.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234
5. 인권보호 상황 평가 235
제5항 법무부 내 여성·아동관련 정책 총괄·조정 235
1. 개 요 235
2. 여성·아동 인권보호 강화 236
3.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237
4. 양성평등 의식 확산 237

**제7절 교정업무 239**
제1항 교정업무의 기본방향 239
1.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정책 시행 239
2. 수용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시행 240
3. 수용 환경 및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240
제2항 교정행정 역량 강화 241
1.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교정역량 집중 241
2. 교정공무원 사기증진 및 전문성 강화 242
제3항 수용자 권익 확대·신장 242
1. 수용자 처우 향상 242
2. 선진 교정환경 조성 247
제4항 수용관리의 효율성 도모 249
1. 발전하는 교정행정, 자리 잡는 수용질서 249
2. 수형자 분류처우 업무의 내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250
3.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가석방 기준 엄격 적용 및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251
제5항 수용자 교정·교화의 실효성 제고 252
1. 개 요 252
2. 교육을 통한 수형자 인성계발 252
3. 수형자 사회복귀 촉진 255
4. 교정위원 교화사업 활성화 257
제6항 수형자 사회복귀에 기여하는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259
1. 개 요 259
2. 교도작업 운영실적 259
3. 교도작업 홍보활동 강화 260
4. 작업장려금 및 조위금·위로금 261
5. 자립형 교도작업 262
6. 외부통근작업 활성화 262
7. 내실있는 직업훈련 실시 262
제7항 첨단 전자경비시스템 구축·운영 265
1. 개 요 265

2. 추진배경 265
3. 전자경비시스템 구축 내용 265
4. 구축 효과 266
제8항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운영 266
1. 개 요 266
2. 추진배경 266
3.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내용 267
4. 구축 효과 267

**제8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269**
제1항 출입국·외국인정책의 기본 방향 269
제2항 미래 지향적 출입국서비스 구현 270
1.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격 출입국심사 서비스 제공 270
2.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자 유치기반 확충 274
3. 복수비자, 전자비자 발급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276
4. 국민안전 및 체류외국인 편의를 위한 이민행정서비스 제공 277
5. 우범 외국인 등에 대한 관리 강화 278
제3항 재한 외국인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이민정책 추진과 사회통합 기반 구축 282
1. 이민자가 행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282
2. 체류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287
3. 귀화자의 헌법가치 등 국민정체성 함양 및 국적 신청자 처우 개선 288
4. 난민심사 제도 개선 292
5. 재정착난민의 수용 293
6.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 및 처우개선 294
7. 난민업무 처리 현황 295
8. 외국인정책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295

**제 3 장 주요 법령 정비 / 301**

**제1절 개 관 303**

**제2절 법 률 304**
제1항 제정 법률 304
1. 교정공제회법 304
제2항 개정 법률 304
1. 민법 304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05
3.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306
4. 민사집행법 307
5. 형사소송법 307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307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308
8. 상법(회사편) 308
9. 소년법 308
1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309
11.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09

**제3절 대통령령 311**
제1항 제정령 311
1. 공익신탁법 시행령 311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311
제2항 개정령 312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312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2
3. 검사정원법 시행령 312
4.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312
5.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313
6.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3
7.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313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4
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314
1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5
1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5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315
1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316
1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6
15.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317
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17
17. 수형자 등 호송 규칙 317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8
1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8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319**
제1항 제정 규칙 319
1.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의 관한 규칙 319
제2항 개정 규칙 320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20
2.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320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320
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1
5. 교도관직무규칙 321
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21
7.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322
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2
9.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322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22
1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323
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3
13. 외국인보호규칙 324
1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4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325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5
17.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325
18. 국적법 시행규칙 326
19. 검찰압수물사무규칙 326
20. 검찰사건사무규칙 326
21.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시행규칙 327
22.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327
2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28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8
2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8
2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29

## 제 4 장 국회업무 / 331

## 제 5 장 법무연표 / 341

## 제 6 장 통 계 / 351

**제1절 법무업무 통계 353**
1. 법무업무 353
2. 국제법무활동 355
3. 변호사 · 공증 356
4. 국가소송 357
5. 행정소송 359
6. 국가배상 360
7. 헌법재판 현황 363
8. 제57회 사법시험 관련 통계 364
9. 제4회 변호사시험 관련 통계 368

**제2절 검찰업무 통계 369**
1. 검사 수사 사건 369
2. 구속영장 발부 등 378
3. 구속적부심사 〈표 2-15〉 379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79
5. 형의 집행 381
6. 사 면 〈표 2-21〉 382
7. 형사보상금 지급 〈표 2-22〉 384
8. 마약보상금 지급 〈표 2-23〉 384
9. 해외연수 384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386**
1. 비행소년 선도 386
2. 감호처분 388
3. 보호관찰 398
4. 갱생보호 411
5. 소년보호 및 분류심사 412

**제4절 인권업무 통계 423**

**제5절 교정업무 통계 425**
1. 수용자 수용 현황 425
2. 수용자 교육 · 교화 현황 437
3.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441

**제6절 출입국 · 외국인정책업무 통계 445**
1.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445
2. 국적별 외국인 입국현황(승무원제외) 446
3. 항구별 외국인 입국현황(승무원제외) 448
4.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현황 (승무원제외) 450
5.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452
6.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453
7. 사무소(출장소)별 등록외국인 현황 454
8.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455
9.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표 6-9〉 456
10. 국민의 배우자 체류현황 〈표 6-10〉 457
11. 연도별 국적 처리현황 458
12.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체류현황 459
13. 연도별 난민심사 및 처리현황 459

## 자 료 / 461


Ⅰ. 직 제 465
Ⅱ.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500
Ⅲ. 장관 연설문 520
Ⅳ.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595
Ⅴ.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608
Ⅵ. 인 사 653
Ⅶ. 국외훈련·출장 654
Ⅷ. 국제교류 현황 655
Ⅸ. 상 훈 665
Ⅹ. 위원회 현황 681
Ⅺ.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687


## 부 록 / 689


◈ 법무부 본부 기구변천표
◈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 제 1 장

# 총 설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제2절 기구·인원

제3절 예산과 시설

# 제 1 장 총 설

## 제 1 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 제 1 항 국정 방향

2015년도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열기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기반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3년째 되는 해였다.

그 동안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 국가비전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정기조를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으로 정하고,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국가안보태세와 위기관리체제 구축,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개혁 등 새로운 변화의 미래를 열기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였다.

박근혜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4대 국정기조와 추진기반별로 총 14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 140개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우리 부에서 주관 및 협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기조와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정기조 : 경제부흥

1-1- 2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1-1- 6 투자활성화

1-2-24 소비자 권익보호

1-2-25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 개선

1-2-26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1-2-27 기업지배구조 개선

2. 국정기조 : 국민행복

2-4-51 다문화 가정 적응지원 강화

2-4-55 장시간근로 개선 및 정년연장 등 추진

2-4-66 청년고용 활성화

2-6-76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2-6-77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2-6-78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2-6-79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2-6-8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2-7-83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2-7-102 사회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

3. 국정기조 : 문화융성

3-10-116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 산업 육성

4. 국정기조 : 평화통일 기반구축

4-12-126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5. 추진기반 : 신뢰받는 정부

추-14-137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추-14-138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추-14-139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

## 제 2 항 법무행정의 지표

법무부는 국정목표를 충실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건설하겠다는 비전 아래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의 기본 임무를 바탕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등 6대 전략목표와 '4대 사회악 근절방안을 보완·심화 추진한다' 등 15개의 성과목표를 중점 추진하여 「희망의 새 시대」의 초석을 다지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6대 전략목표와 15개 성과목표의 세부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도 법무부 임무, 비전과 전략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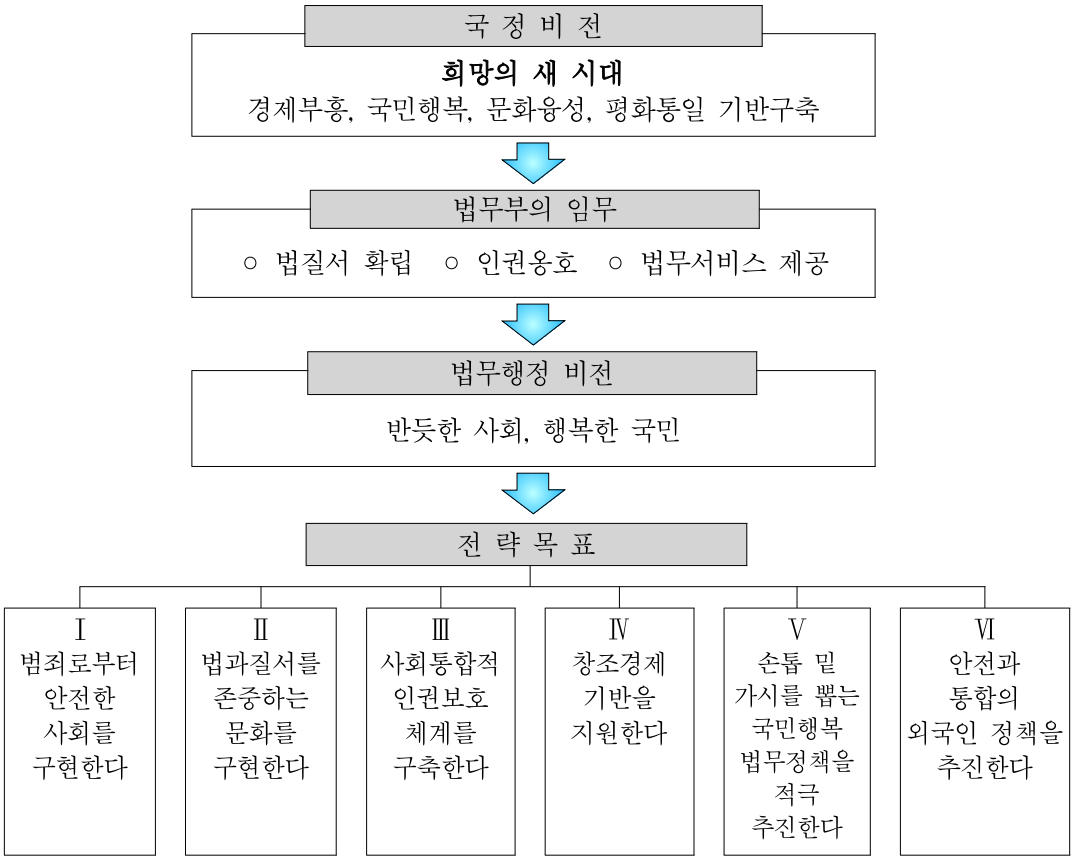

## 1.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 가. 4대 사회악 근절방안의 보완·심화

1)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과학적 지도감독과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및 성폭력 범죄자의 체계적인 신상정보 관리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4대 사회악 근절 대책 추진으로 수사·재판 절차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가정폭력·학교폭력을 근절하며,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에 식품의약조사부를 신설하여 식품안전 구현

3) 검찰·법원과의 협업 및 교육청·일선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비행청소년의 맞춤형 재범방지 교육, 소외·위기 청소년 대상 법교육 운영 등을 통한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 나. 국민불안 야기범죄에 입체적으로 대응

1) 강력범죄 근절 및 엄중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공조활동 강화 등 전방위적 강력범죄 대응체계 구축

2)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국민의 안전 체감도 제고

3) 불법체류율에 따른 경보시스템 도입, 외국인 밀집지역 재지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우범 외국인 등에 대한 관리 강화로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

4) 사이버 범죄 대응역량 제고를 통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국가 기간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해킹·테러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교육 강화

5)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보이스피싱, 서민상대 갈취 사범, 불법 사행행위,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처벌 강화

### 다. 맞춤형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1) 수형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인문학 교육 등 집중인성 교육, 중간처우 및 사회적 처우 등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사회복귀를 도모

2) 수형자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직업훈련생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으로 출소예정자의 구직활동과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

3) 수형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별처우를 위해 수형자 분류처우심사표 개선 및 분류처우 업무지침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처우계획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4) 교정시설 원격진료시스템 추가 구축,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건강검진 등 수용자 의료처우 실시 확대와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으로 체계적인 교정시설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5) 교정시설 신설, 수용거실 난방공사, 안전시설 설치 등 수용자 인권향상을 위한 수용환경 개선

6) 소년원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처우, 학업연계, 취업알선, 사후지도,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출원 후 재비행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실현

7) 치료감호 의료인력 충원, 치료프로그램 내실화로 정신질환, 약물중독, 성폭력 범죄자 등에 대한 치료환경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치료시스템 정착

8)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범죄유발요인에 대응, 긍정적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심리치료·체험형 프로그램 등 전문처우프로그램 발굴·개선을 통해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9) 출소자 기능취득센터 추가 신설,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선정으로 출소자 고용 참여기업의 확대 도모 등 출소자의 갱생보호사업 추진

## 2.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 가. 법질서 확립으로 준법문화 구현

1) 안보위해사범 수사역량 제고, 반국가활동사범, 해외친북사이트 등 헌법부정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엄단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2) 폭력행위를 부추기는 전문 시위꾼과 외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처벌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원칙있는 법집행으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사회 구현

3) 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선관위 고발 전 긴급 통보제도 등으로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4)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법교육 콘텐츠 개발, 법질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준법의식 함양

5)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안전사고 유형별 수사매뉴얼 제작 등 안전사고 수사·예방 시스템 구축

### 나. 비정상적 관행, 부조리 정상화

1) 공공기관·인프라 정상화를 위해 원전비리, 국가보조금 비리, 방위사업 비리, 민관유착 비리 등을 중점 수사하여 비정상적 관행, 부조리의 정상화 추진

2) 사회적 지위, 지식 또는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정보·재력 등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사회지도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 준수 문화 정착

3) 클린피드백 시스템으로 수사 과정 및 단속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 정책에 반영하는 등 부패 유발 요소 차단

4) 사회지도층 범죄인, 중요부패·강력

사범, 공소시효나 형시효 완성이 임박한 장기 국외도피자에 대해 강제추방,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적극 송환

5)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공인회계사 등 외부인사를 특별조사관으로 채용하여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국 검찰청에 대한 자체 청렴도를 측정하는 등 선제적·예방적 감찰을 강화

6) 감찰·감사인력의 분야별 전문교육, 상시 예방감찰 활동 강화, 비정상적 관행과 부조리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감찰·감사 역량 강화를 통한 내부 비위 근절 및 예방

7) 업무의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파산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41개 법령을 정비, 파산자의 재기를 가로막는 장벽 제거

## 3. 사회통합적 인권보호체계 구축

### 가. 인권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아동 인권 강화

1)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 등 국제인권활동을 강화하며, 인신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수용시설의 위법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인권사각지대 해소

2) 법무부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인권침해를 사전예방하고, 인권침해사건을 신속하게 조사분석하여 구제하는 시스템 강화

3) 법무부 소관 여성·아동 관련 법령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법무·검찰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등 여성·아동 인권 강화 노력

### 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1) 피해자 보호기금의 운용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자 보호시설인 스마일센터를 통한 피해자 심리 지원, 의료·경제 지원 강화

2)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제도, 법률홈닥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시스템 강화

3) 형사조정센터 설립 추진, 형사조정위원 전문성 강화, 공증연계 추진, 피해자 맞춤형 조정 등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 및 분쟁의 종국적 해결 도모

## 4. 창조경제 기반 지원

### 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저해사범 수사 강화

1) 금융·증권범죄 등 경제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2) 유관기관 정보공유와 수사 협력 체계를 통해 역외탈세 등 탈세사범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

3) 기술유출·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합동수사체계를 구축,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국내 산업기술, 문화콘텐츠 산업 보호 및 지식재산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통일준비 지원**

1)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의 무료 법률상담·법률지원, 산업단지 법률지원 전담변호사 제도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 강화
2)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마련,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지원 사업 진행 등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
3) 국가소송의 검사·공익법무관 직접수행률 확대·송무 지도점검 실질화를 통한 국가소송 수행 역량의 내실화, '국가송무정책 자문위원회' 신설을 통한 국가송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4) 통일대비 법무인프라를 구축하여 통일단계의 법적 혼란을 예방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령정비와 법적 자문 지원 강화

## 5.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국민행복 법무정책

**가. 법의 문턱을 낮추는 국민행복 법률복지 확산**

1) 변호사의 재능기부를 토대로 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주는 등 틈새 없는 법률복지 구현
2) 법률복지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동법률상담, 법률홈닥터 등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소외자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법률구조 강화
3)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법률교육 및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인단'을 활용한 법률지원
4)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정책 패러다임을 일반국민에게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 제공

**나. 법령정비 사업 내실화**

1) 중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하고 중재제도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중재법 개정 추진으로 국내 중재제도 활성화 및 국제 중재사건 유치에 기여
2)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월세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인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균형있는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주택임대시장 안정 도모
3) 일상생활의 용례와 다르게 쓰이는 용어를 일상의 문법과 일치하도록 조문 정비, 어려운 한자어·일본어식 표현의 한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마련
4) 자동차 등 등기·등록 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증서 허용, 전자확정일자

부여 근거규정 마련, 공증전담변호사 제도 도입, 공증서류 전자보관시스템 도입으로 공증을 활성화하고 선진화 시킴으로써 분쟁의 사전예방적 기능 강화

5)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등 형법 및 형사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전체 형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법 각칙 및 형사특별법의 법정형을 정비

### 다. 국민과의 소통 및 정보공유 강화

1)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및 관련 외부기관과의 정책교류 등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
2)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등 다양한 법무정책을 SNS 온라인 매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국민 참여와 만족도 제고

### 라. 고객중심의 법무행정 지원역량 강화

1) IT기술을 활용한 전자민원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영상회의, 차세대 법무포털시스템 구축, 우수 지식의 공유 등으로 협업 업무환경을 조성
2) 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자연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비상대비 계획을 보완·발전
3) 법무시설 건축협의회 운영, 시설관리 실태점검을 통한 법무시설의 기능 향상과 안전성 제고
4)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시험관련 출제오류로 인한 이의신청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응시생의 편의 증진과 우수 법조인 양성 지원
5) 인터넷 화상접견시스템의 추가 구축을 통한 수형자 가족의 교정기관 방문 부담 경감 및 접견기회 확대로 수형자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
6) 4대악 근절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사례회의 및 워크숍 등 보호조직의 역량강화 및 직원 전문성 제고

## 6. 안전과 통합의 외국인정책 추진

### 가. 미래지향적 출입국서비스 구현

1) 증가하는 출입국자에 대한 고품격 이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인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최첨단의 IT기술을 출입국심사절차에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출입국 심사서비스 구현
2) 해외 우수인재 및 투자 유치와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수요자 친화적 체류환경을 조성, 체류만족도 향상과 관광 입국자 수 증가에 기여
3) 수요자 중심의 이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민원인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IT기술을 적용한 신속한 이민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창출

4)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정책 수요자의 접근성을 향상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신뢰도 제고

**나. 재한 외국인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이민정책 추진과 사회통합 기반 구축**

1) 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민자의 정착 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회통합정책을 마련하고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등 체계적인 사회정착 지원

2) 재외동포 취업 제한범위 완화,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을 위한 우편민원 접수제 도입 및 체류기간 만료 사전 예고 통지서 보완 등 체류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3)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으로 투자자 및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이민자 정착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환경 조성

4) 귀화적격심사 시 국민정체성 평가를 강화하고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등에 대한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 국적심사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국적 신청자의 권익 증진

5) 난민위원회 확대 운영 등으로 난민 인정심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난민 정착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의 확보, 난민조사관 증원 및 난민전문통역인 운영지침 제정으로 난민신청자의 사회 적응 및 처우 개선에 기여

# 제 2 절 기 구·인 원

## 제 1 항 본 부

### 1. 기 구

본부 기구는 2015. 12. 31. 현재 2실 3국 2본부 9관 46과로 편성되어 있다.

**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기획검사,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담당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을 두고 있으며 법무부 주요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당정협의, 국회업무, 부내 행정개선 총괄·지원 및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사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법무시설 조성, 법무행정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 비상사태 대비업무,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조정,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법무실**

법무실은 법무심의관, 법무과, 국제법무과, 국가송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에 대한 법령자문 및 유권해석, 국내외 법무자료의 조사연구와 국제법무관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및 공증인 업무의 감독, 공익법무관의 관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국가배상·헌법재판 관련업무, 남북대화·교류협력 관련 법적지원,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 법조윤리시험 관장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다. 검찰국**

검찰국은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를 두고 있으며,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 검찰공무원의 인사, 검찰청 정원 배정,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 범죄정보의 수집·분석 및 범죄의 예방과 단속을 위한 대책 수립, 형 집행의 지휘·감독,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마약류 보상금 및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심의 및 결정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무,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의한 재판관할권 행사문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무,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집행 및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사후관리, 형사관계법령의 입안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라.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은 범죄예방기획과, 법질서선진화과, 보호법제과, 소년과, 보호관찰과, 특정범죄자관리과를 두고 있으며 범죄예방행정과 법질서 실천 운동 및 법교육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청소년 비행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소년원생에 대한 적정한 분류처우와 학과교육, 성격 교정 및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법원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수명령·위치추적 전자감독·성충동 약물치료·성폭력범죄자의 등록·관리 및 임시퇴원·가석방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원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출소자 및 퇴원생에 대한 숙식제공·주거지원·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사회 복귀를 돕는 갱생보호업무와 법질서 준수의식 고양을 위한 캠페인 전개, 법사랑 사이버랜드 운영, 법교육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법교육 교재·프로그램 보급, 법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지원 등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마. 감찰관실**

감찰관실에는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있으며, 감찰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사정업무,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바. 인권국**

인권국은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를 두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인권옹호와 관련한 각 부처간의 협력,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등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총괄·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률구조법인 관리·감독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률홈닥터 운영, 법무행정 수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법무부 공무원의 인권교육, 검찰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 산하기관에 대한 인권보호 상황평가, 법무부내 여성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성폭력 피해자 및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법률지원 및 진술조력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 교정본부**

교정본부는 교정정책단에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를 두고 있으며, 보안정책단에 보안과, 분류심사과, 의료과를 두고 있다. 교정행정 기획, 조직·인사·예산·복무 감독·상훈·홍보·국제관계업무, 교정관련 법령정비, 교도작업 운영, 취업·창업 지원, 수용자 교육 기획, 출소예정자 사회 적응 지원, 수용자 수용·처우·석방·접견, 참관, 이송, 가석방, 분류처우, 수용자 보건위생, 의료 및 약제, 질병예방, 수용자 청원, 인권 및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정책단과 국적·통합정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정책단은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적·통합정책단은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출입국관리 조직·인사·예산·복무관리, 소관법령의 입안 및 외국인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 왕래자의 출입심사,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심사, 출입국규제,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등록,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관련 조사, 외국인 동향조사, 귀화·국적회복·국적판정 등 국적취득, 국적상실 및 이탈,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지원정책의 총괄,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정책, 외국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부여에 관한 정책 총괄,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출입국·외국인정책행정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외국인정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자. 기 타

그밖에 대변인실은 법무부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법무정책에 관한 각종 홍보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운영지원과는 보안, 예산의 집행 및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법무부 기구는 〈표 1〉과 같다.

〈표 1〉 본 부 조 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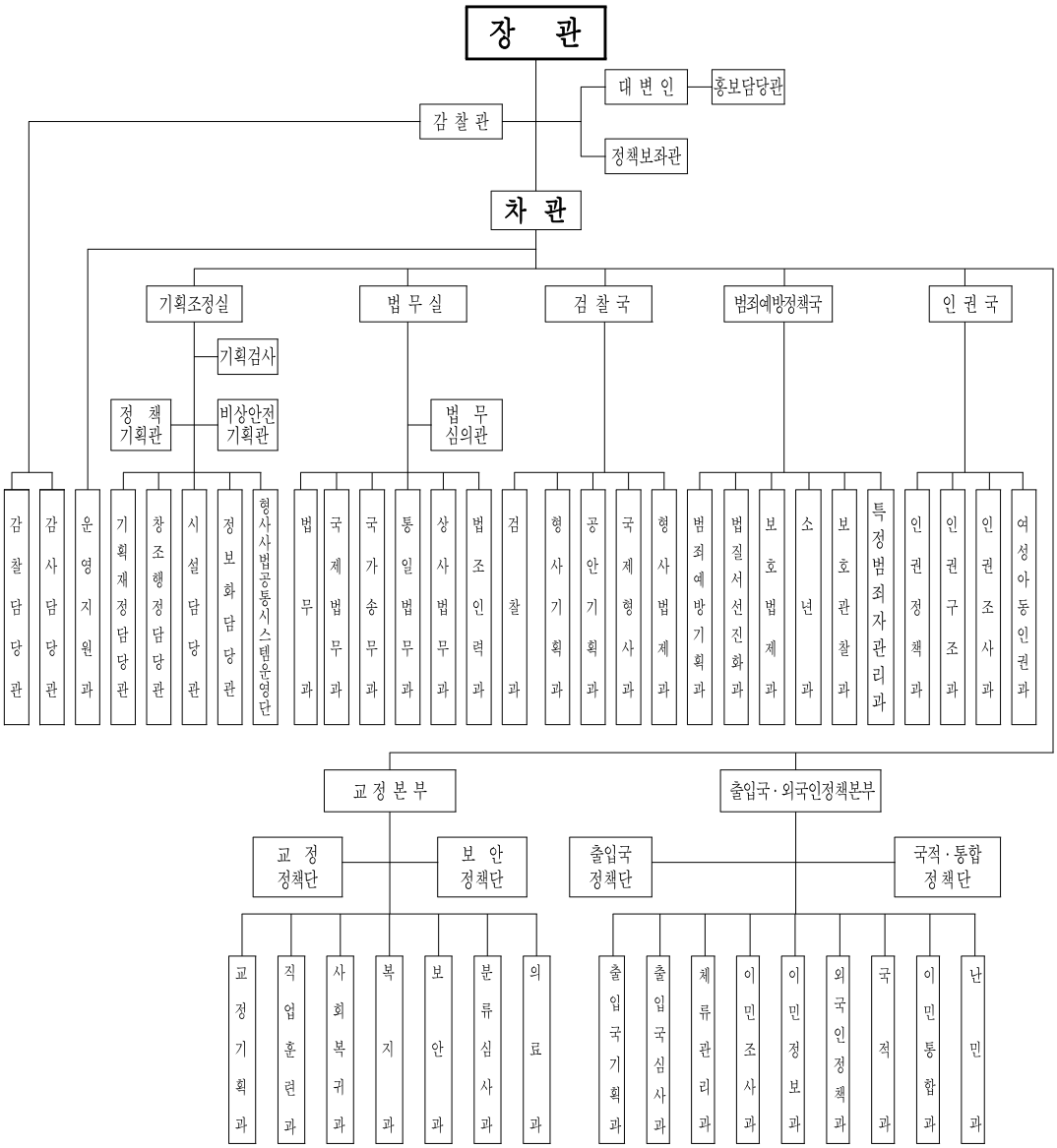


## 2. 인 원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인력, 중앙행정기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인력, 국고손실 환수 송무담당 인력 등 12명을 증원하고, 통합정원제도 운영 및 기타 법무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원 10명을 감축하여 2015. 12. 31. 현재 본부 정원 656명 및 현원 644명으로 직종별 정원 및 현원은 〈표 2〉와 같다.

〈표 2〉 본부 직종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 구분 | 계 | 정무직 | 검사 | 일반직 | 별정직 |
|---|---|---|---|---|---|
| 정원 | 656 | 2 | 64 | 586 | 4 |
| 현원 | 644 | 2 | 69 | 569 | 4 |

## 제 2 항 산하기관

### 1. 검찰청

#### 가. 기 구

검찰기구는 2015. 12. 31. 현재 대검찰청과 5개 고등검찰청, 18개 지방검찰청, 40개 지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찰청 조직은 〈표 3〉과 같다.

〈표 3〉 검 찰 청 조 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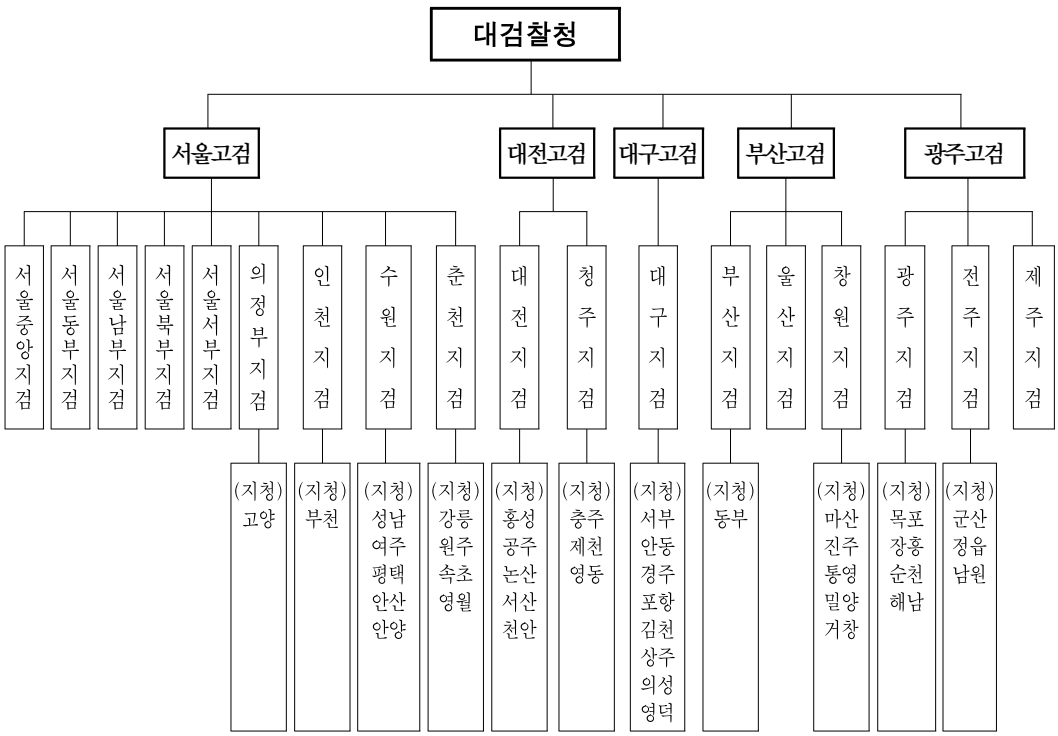

### 나. 인 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2015. 1. 6. 개정)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에 감찰부를 신설하여 소속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집중된 수사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금융조사에 관한 기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대검찰청 인력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인력 71명(5급 2명, 6급 13명, 7급 16명, 8급 11명, 9급 29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 · 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검찰청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69명(8급 2명, 9급 67명)을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정원 69명(6급 1명, 7급 14명, 8급 45명, 9급 9명)으로 조정하였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2015. 2. 11.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증원되는 검사 90명 중 1명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으로, 1명은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로, 6명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나머지 82명은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차장검사 · 부장검사 및 검사로 배정하였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2015. 2. 11. 개정)에 따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서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 직위를 제외하였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2015. 2. 11. 개정)에 따라 첨단화 · 지능화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과학수사부를 신설하고, 고소 · 고발 사건의 직접 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부를 조사 제1부와 조사 제2부로 개편하는 한편,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차장검사 2명을 두도록 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 제4부를 신설하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공안부를 신설하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차장검사 및 형사부를 신설하였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2015. 5. 26. 개정)에 따라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에 검사직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5명), 재산형 집행 및 공판지원에 필요한 인력 58명(6급 24명, 7급 34명), 기록물관리 전문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증원하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성폭력범죄 등의 과학수사와 관련된 디엔에이 감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며, 대검찰청 감찰부 및 고등검찰청에 감찰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검찰 수사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대검찰청의 경우 5급 2명을 4 · 5급 2명으로, 6급 1명을 5급 1명으로, 8급 4명을 6급 1명과 7급 3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의 경우 6급 112명을 5급 112명으로, 8급 60명과 9급 110명을 6급 100명과 7급 70명으로 각각 조정하였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2015. 12. 30. 개정)에 따라 「검사정원법」의 개정으로 2015년도에 증원된 검사 90명을 보조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수사 및 공판 참여 등에 필요한 인력 86명(6급 23명, 7급 50명, 8급 10명, 9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대검찰청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인력 71명(5급 1명, 6급 14명, 7급 15명, 8급 11명, 9급 30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 · 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검찰청의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8명(8급 1명, 9급 27명)을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정원 28명(6급 1명, 7급 5명, 8급 19명, 9급 3명)으로 조정하였다.

2015. 12. 31. 현재 검찰공무원의 정원 및 현원은 〈표 4〉 내지 〈표 6〉과 같다.

〈표 4〉 검찰공무원 정원

(단위 : 명)

| 구 분 | 계 | 검 사 | 일반직 | 별정직 |
|---|---|---|---|---|
| 인 원 | 9,942 | 2,032 | 7,909 | 1 |

〈표 5〉 검사 직위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 직 위 | 정 원 | 현 원 |
|---|---|---|
| 계 | 2,032 | 1,923 |
| 검 찰 총 장 | 1 | 1 |
| 고 등 검 사 장 급 | 7 | 7 |
| 대 검 검 사 급 | 31 | 31 |
| 검 사 | 1,993 | 1,884 |

〈표 6〉 검사 외의 검찰청 공무원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 직 급 | 정 원 | 현 원 |
|---|---|---|
| 계 | 7,910 | 7,836 |
| 고위공무원단 | 25 | 22 |
| 검찰부이사관 | 15 | 15 |
| 검찰수사서기관 | 179 | 158 |
| 임기제서기관 | 1 | 1 |
| 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 443 | 361 |
| 검찰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 | 6 | 6 |
| 검찰주사 | 1,364 | 1,425 |
| 검찰주사보 | 1,661 | 1,603 |
| 검찰주사보(속기사) | 28 | 26 |
| 검찰서기 | 936 | 925 |
| 검찰서기보 | 768 | 758 |
| 마약수사직 | 250 | 250 |
| 전산직 | 227 | 213 |
| 시설·공업직 | 78 | 70 |
| 사서직 | 4 | 4 |
| 임업직 | 2 | 2 |
| 운전직 | 273 | 269 |
| 방호직 | 157 | 151 |
| 위생직 | 1 | 2 |
| 관리운영직 | 1,433 | 1,520 |
| 연구직 | 54 | 52 |
| 전문경력관 | 4 | 3 |
| 별정직 | 1 | 0 |

## 2. 보호기관

보호기관은 2015. 12. 31. 현재 18개 보호관찰소, 38개 보호관찰지소, 2개 위치추적관제센터,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10개 소년원, 1개 소년분류심사원, 1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개 치료감호소, 1개 약물중독재활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및 현원은 〈표 8〉에서 〈표 10〉과 같다.

〈표 7〉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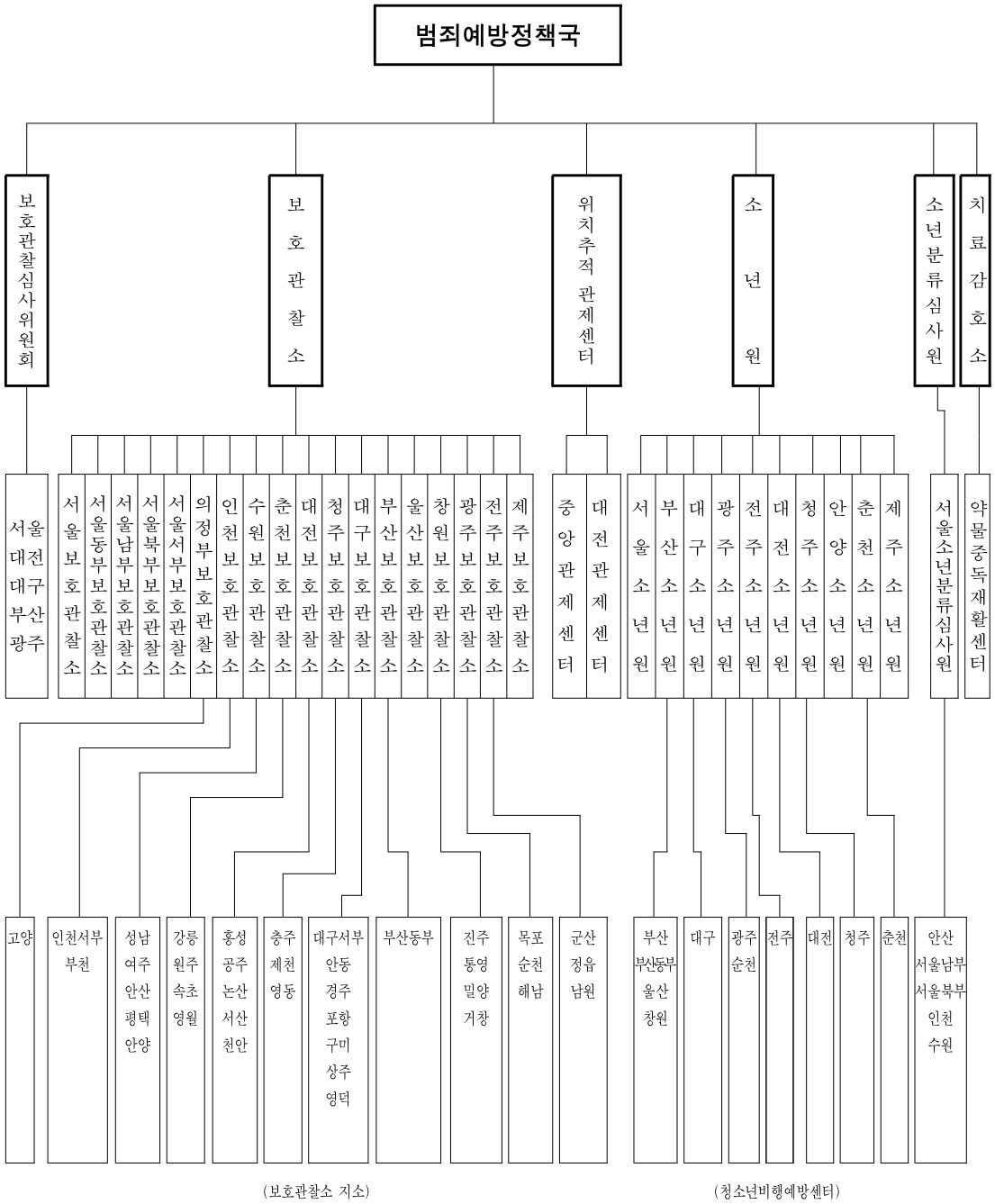

〈표 8〉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보호관찰소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 직 급 | 정 원 | 현 원 |
|---|---|---|
| **계** | **1,537** | **1,497** |
| 고위공무원 | 1 | 1 |
| 고위공무원(임기제) | 2 | 2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4 | 4 |
| 서기관 | 28 | 28 |
| 서기관(임기제) | 3 | 3 |
|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 5 | 5 |
| 보호사무관 | 187 | 175 |
| 보호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1 | 1 |
| 보호주사 | 253 | 257 |
| 전산주사 | 2 | 2 |
| 보호주사보 | 319 | 317 |
| 보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 4 | 4 |
| 보호서기 | 337 | 333 |
| 보호서기보 | 303 | 265 |
| 운전서기보 | 63 | 63 |
| 방호서기보 | 16 | 16 |
| 공업서기 | 4 | 4 |
| 시설서기 | - | 1 |
| 공업서기보 | - | 1 |
| 관리운영직군 | 5 | 15 |

〈표 9〉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 직 급 | 정 원 | 현 원 |
|---|---|---|
| **계** | **802** | **776** |
| 고위공무원 | 2 | 2 |
| 서기관 | 15 | 15 |
| 기술서기관 | 9 | 9 |
|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 9 | 5 |
| 보호사무관 | 43 | 40 |
| 보호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 2 | 2 |
| 의무사무관 | 6 | 9 |
| 보호주사 | 86 | 84 |
| 간호주사 | 3 | 2 |
| 시설주사 | 1 | 1 |
| 공업주사 | 3 | 3 |
| 공업주사보 | 3 | 4 |
| 보호주사보 | 146 | 144 |
| 간호주사보 | 12 | 12 |
| 의료기술주사보 | 1 | 1 |
| 보호서기 | 149 | 149 |
| 공업서기 | 3 | 4 |
| 시설서기 | 2 | 2 |
| 보호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 2 | 1 |
| 보호서기 또는 간호서기 | 1 | 1 |
| 식품위생서기 | 7 | 7 |
| 보호서기보 | 148 | 129 |
| 공업서기보 | 6 | 6 |
| 식품위생서기보 | 4 | 4 |
| 운전서기보 | 23 | 23 |
| 조리서기보 | 54 | 53 |
| 방호서기보 | 22 | 22 |
| 관리운영직군 | 20 | 23 |
| 전문경력관 | 20 | 19 |

〈표 10〉 치료감호소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 직 급 | 정 원 | 현 원 |
|---|---|---|
| 계 | 379 | 364 |
| 고위공무원 | 2 | 1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1 | 1 |
|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 | 1 | 1 |
| 서기관 | 1 | 1 |
| 기술서기관 | 13 | 10 |
| 보호사무관 | 2 | 2 |
| 보호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 2 | 2 |
| 의무사무관 | 2 | - |
| 약무사무관 | 1 | 1 |
| 간호사무관 | 2 | 2 |
| 보건사무관 | 1 | 1 |
| 보호주사 | 3 | 3 |
| 보호주사 또는 행정주사 | 5 | 3 |
| 약무주사 | 1 | 1 |
| 간호주사 | 21 | 21 |
| 보건주사 | 4 | 4 |
| 의료기술주사 | 1 | 2 |
| 보호주사보 | 5 | 5 |
| 보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 4 | 6 |
| 약무주사보 | 1 | 1 |
| 간호주사보 | 39 | 38 |
| **간호조무주사보** | 2 | 2 |
| 보건주사보 | 2 | 2 |
| 의료기술주사보 | 2 | 2 |
| 시설주사보 | 1 | 1 |
| 전산주사보 | 1 | 1 |
| **공업주사보** | 1 | 2 |
| **방송통신주사보** | 1 | 1 |
| 보호서기 | 6 | 6 |
| 보호서기 또는 행정서기 | 5 | 5 |
| 공업서기 | 2 | 2 |
| 간호서기 | 39 | 36 |
| 의료기술서기 | 3 | 3 |
| 간호조무서기 | 6 | 6 |
| 식품위생서기 | - | 1 |
| 보호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 | 2 | 2 |
| **공업서기보** | 1 | 1 |
| 식품위생서기보 | 1 | 1 |
| 운전서기보 | 3 | 3 |
| 간호조무서기보 | 132 | 126 |
| 조리서기보 | 18 | 16 |
| 방호서기보 | 13 | 13 |
| 관리운영직군 | 9 | 11 |
| 전문경력관 | 17 | 15 |

## 3. 교정기관

2015. 12. 31. 현재 법무부 산하 전국의 교정기관은 중간 감독기관인 4개의 지방교정청과 38개의 교도소, 11개의 구치소, 3개의 지소 등 총 56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0. 12. 1. 개청한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다. 산하교정기관의 교정공무원 정원은 15,887명이며, 2015. 12. 31. 현재 15,636명의 교정공무원이 수용관리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산하 교정기관의 교정공무원 현황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1〉 교정기관 조직도

〈표 12〉 산하기관 교정공무원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 직 급 | 정 원 | 현 원 |
|---|---|---|
| 계 | 15,887 | 15,636 |
| 고위공무원 | 19 | 18 |
| 부이사관(교정) | 6 | 6 |
| 서기관(교정) | 91 | 88 |
| 교정관 | 326 | 317 |
| 교감 | 1,436 | 1,389 |
| 교위 | 1,748 | 1,725 |
| 교사 | 5,367 | 5,318 |
| 교도 | 5,823 | 5,740 |
| 의료직 | 251 | 229 |
| 식품위생직 | 54 | 54 |
| 기술직·기타 | 248 | 244 |
| 운전직 | 262 | 257 |
| 전문경력관 | 119 | 117 |
| 관리운영직 | 133 | 131 |
| 기록연구사 | 4 | 3 |

## 4. 출입국관리기관

2015. 12. 31. 현재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기관은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2개 외국인보호소, 1센터 및 23개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관리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1,903명이며, 현원은 1,853명이고, 세부현황은 〈표 14〉와 같다.

〈표 13〉 출입국관리기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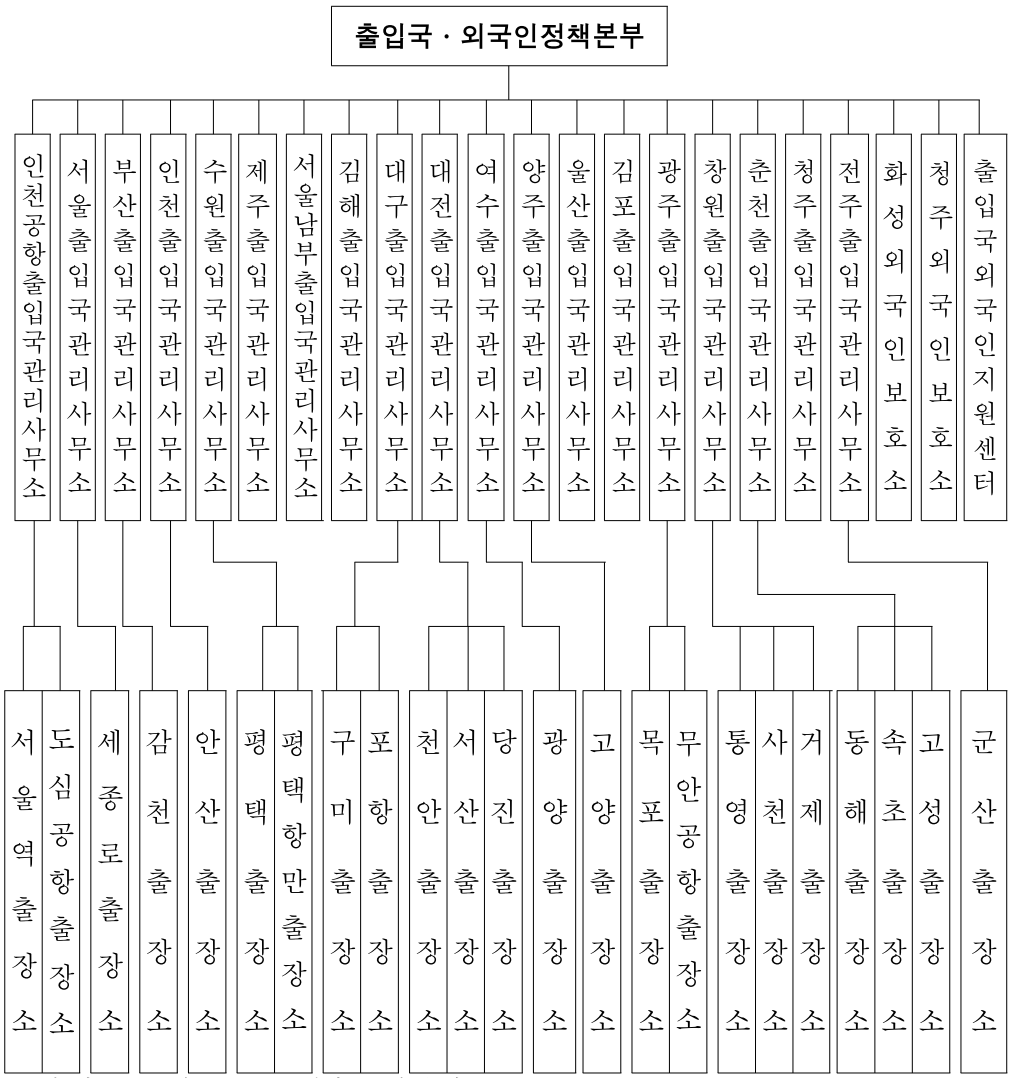


(19개 사무소, 2개 보호소, 1센터, 23개 출장소)

〈표 14〉 출입국관리공무원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 구 분 | 정 원 | 현 원 |
|---|---|---|
| 계 | 1,903 | 1,853 |
| 고위공무원 | 3 | 3 |
| 부이사관 | 3 | 2 |
| 서기관 | 24 | 23 |
| 출입국관리사무관 | 83 | 76 |
| 출입국관리주사 | 333 | 313 |
| 출입국관리주사보 | 494 | 473 |
| 출입국관리서기 | 507 | 486 |
| 출입국관리서기보 | 351 | 373 |
| 전산직 | 30 | 29 |
| 의무직 | 3 | 3 |
| 간호직 | 3 | 2 |
| 관리운영직군 등 | 69 | 70 |

## 5.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직·보호직·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획부, 교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정연수부,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위원,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교육·로스쿨 지원·국제교류,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국가송무 수행자 등의 교육을 맡고 있는 용인분원, 원내 일반 운영을 총괄하는 총무과로 구성되어 있다. 2015. 12. 31. 현재 직급별 정·현원은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법무연수원의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 구 분 | 정 원 | 현 원 |
|---|---|---|
| 계 | 124 | 156 |
| 검사 | 11 | 18 |
| 고위공무원 | 1 | 1 |
|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등 | 7 | 6 |
| 행정사무관·교정관 등 | 20 | 24 |
| 행정주사·교감 등 | 26 | 27 |
| 행정주사보·교위 등 | 22 | 42 |
| 검찰서기·교사 등 | 25 | 33 |
| 행정서기보·운전서기보 등 | 12 | 5 |

# 제 3 절 예산과 시설

## 제 1 항 예 산

### 1. 개 요

2015년도 법무부 예산은 법무행정의 비전인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구현을 위해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교도작업 및 혁신도시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이 전년보다 2.8% 감액된 1조 9,370억 5,200만원, 세출이 4.3% 증액된 2조 9,425억 4,100만원,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이 915억 2,2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2015년도 예산 및 기금

○ 총 규 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2014 예산 | 2015 예산 | 2014 대비 | |
|---|---|---|---|---|---|
| | | | | 증△감 | % |
| 예산 | 세 입 | 1,993,292 | 1,937,052 | △56,240 | △2.8 |
| | 세 출 | 2,820,881 | 2,942,541 | 121,660 | 4.3 |
| 기금 | 수 입 | 59,421 | 91,522 | 32,101 | 54.0 |
| | 지 출 | 59,421 | 91,522 | 32,101 | 54.0 |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 예산 | 2015 예산 | 2014 대비 | |
|---|---|---|---|---|
| | | | 증△감 | % |
| 세 입 | 1,910,835 | 1,860,334 | △50,501 | △2.6 |
| 세 출 | 2,680,151 | 2,885,181 | 205,030 | 7.6 |

○ 교도작업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 예산 | 2015 예산 | 2014 대비 | |
|---|---|---|---|---|
| | | | 증△감 | % |
| 세 입 | 56,741 | 57,360 | 619 | 1.1 |
| 세 출 | 56,741 | 57,360 | 619 | 1.1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 예산 | 2015 예산 | 2014 대비 | |
|---|---|---|---|---|
| | | | 증△감 | % |
| 세 입 | 25,716 | 19,358 | △6,358 | △24.7 |
| 세 출 | 83,989 | - | △83,989 | △100.0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 기금 | 2015 기금 | 2014 대비 | |
|---|---|---|---|---|
| | | | 증△감 | % |
| 세 입 | 59,421 | 91,522 | 32,101 | 54.0 |
| 세 출 | 59,421 | 91,522 | 32,101 | 54.0 |

## 2. 일반회계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이 전년보다 2.6% 감액된 1조 8,603억 원, 세출이 전년보다 7.6% 증액된 2조 8,852억 원으로 정부 일반회계 예산 258조 5,856억 원에 대한 점유율은 세입이 0.7%, 세출이 1.1%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8,852억 원을 프로그램별로 보면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된 행정지원이 71.2%인 2조 532억 원, 교정활동이 8.1%인 2,322억 원, 검찰활동이 8.0%인 2,306억 원이며, 기타 법무활동·출입국관리·범죄예방활동·법무교육훈련·법무시설조성 등 7개 프로그램이 12.7%인 3,692억 원이다.

주요 경비별·사업비별·프로그램별 예산 내역은 〈표 2〉, 〈표 3〉, 〈표 4〉와 같다.

〈표 2〉 주요 경비별 예산내역(세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 예산 | 2015 예산 | 2014 대비 | |
|---|---|---|---|---|
| | | | 증△감 | % |
| 계 | 2,680,151 | 2,885,181 | 205,030 | 7.6 |
| 인 건 비 | 1,795,942 | 1,879,807 | 83,865 | 4.7 |
| 기 본 경 비 | 131,989 | 136,974 | 4,985 | 3.8 |
| 사 업 비 | 699,214 | 782,386 | 83,172 | 11.9 |
| 기금전출금 | 53,006 | 86,014 | 33,008 | 62.3 |

〈표 3〉 사업비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 2014 예산 | 2015 예산 | 2014 대비 | |
|---|---|---|---|---|
| | | | 증△감 | % |
| 계 | 699,214 | 782,386 | 83,172 | 11.9 |
| ○ 국가송무수행및공익법무관운영 | 3,793 | 4,365 | 572 | 15.1 |
| ○ 국가배상금지급 | 23,600 | 40,000 | 16,400 | 69.5 |
| ○ 국제거래및국제통상법률지원 | 1,376 | 1,371 | △5 | △0.4 |
| ○ 개발도상국 계약분쟁 해결절차 정비지원(ODA) | 599 | 580 | △19 | △3.2 |
| ○ 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및대응 | 5,905 | 11,234 | 5,329 | 90.2 |
| ○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 1,312 | 1,663 | 351 | 26.7 |
| ○ 민상사입법지원선진화(정보화) | 504 | 492 | △12 | △2.4 |
|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 440 | 731 | 291 | 66.1 |
| ○ 변호사 시험 및 사법시험 관리 | 4,247 | 4,256 | 9 | 0.2 |
| ○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 586 | 512 | △74 | △12.6 |
| ○ 공증제도운영및활성화 | 341 | 397 | 56 | 16.4 |
| ○ 변호사제도의선진화 | 953 | 875 | △78 | △8.2 |
| ○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 476 | 450 | △26 | △5.5 |
| ○ 기업환경 지수 개선사업(신규) | - | 348 | 348 | 순증 |
| ○ 법률구조 | 36,999 | 39,732 | 2,733 | 7.4 |
|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 2,247 | 2,356 | 109 | 4.9 |
| ○ 인권교육 | 205 | 194 | △11 | △5.4 |
| ○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 128 | 121 | △7 | △5.5 |
| ○ 아동인권증진(신규) | - | 180 | 180 | 순증 |
| ○ 이민정책개발지원 | 332 | 315 | △17 | △5.1 |
| ○ IOM이민정책연구원운영 | 1,415 | 1,273 | △142 | △10.0 |
| ○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 21,817 | 24,173 | 2,356 | 10.8 |
| ○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입대체경비 | 3,920 | 4,009 | 89 | 2.3 |
| ○ 외국인보호관리 | 8,561 | 10,040 | 1,479 | 17.3 |
|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 2,977 | 3,967 | 990 | 33.3 |
| ○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 7,259 | 7,371 | 112 | 1.5 |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운영 | 3,040 | 3,019 | △21 | △0.7 |

| 사 업 명 | 2014 예산 | 2015 예산 | 2014 대비 | |
|---|---|---|---|---|
| | | | 증△감 | % |
|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 5,776 | 5,735 | △41 | △0.7 |
| ○ 온라인비자추천심사시스템구축(정보화) | 275 | - | △275 | △100.0 |
| ○ 검찰청시설운영 | 32,242 | 35,256 | 3,014 | 9.3 |
|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 5,787 | 5,816 | 29 | 0.5 |
| ○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 6,754 | 6,353 | △401 | △5.9 |
| ○ 국제형사협력지원(ODA) | 659 | 648 | △11 | △1.7 |
| ○ DNA감식 국산화 및 선진화(R&D) | 1,600 | - | △1,600 | △100.0 |
|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 27,102 | 28,194 | 1,092 | 4.0 |
| ○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정보화) | 14,947 | 14,515 | △432 | △2.9 |
| ○ 검찰수사지원 | 9,384 | 10,017 | 633 | 6.7 |
| ○ 수사일반 | 61,554 | 61,337 | △217 | △0.4 |
| ○ 공안수사 | 5,375 | 5,352 | △23 | △0.4 |
| ○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 9,600 | 12,160 | 2,560 | 26.7 |
| ○ 마약수사 | 3,324 | 3,398 | 74 | 2.2 |
| ○ 성범죄 등 4대악 사범 단속 | 4,391 | 5,145 | 754 | 17.2 |
| ○ 안전비리 등 민관유착비리사범 | 1,956 | 6,827 | 4,871 | 249.0 |
| ○ 공소유지 | 4,486 | 4,406 | △80 | △1.8 |
| ○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 8,783 | 10,721 | 1,938 | 22.1 |
| ○ 형사보상 | 14,000 | 20,000 | 6,000 | 42.9 |
| ○ 형사법정비 | 330 | 412 | 82 | 24.8 |
| ○ 교도소행정지원 | 17,966 | 18,274 | 308 | 1.7 |
| ○ 교정기관공공요금 | 52,581 | 56,000 | 3,419 | 6.5 |
| ○ 교도소시설및장비운영 | 33,513 | 36,519 | 3,006 | 9.0 |
| ○ 교정시설현대화 | 7,174 | 7,547 | 373 | 5.2 |
| ○ 수용관리 | 99,335 | 104,747 | 5,412 | 5.4 |
| ○ 교정교화 | 8,730 | 9,088 | 358 | 4.1 |
| ○ 소년원및치료감호소시설운영 | 1,946 | 1,984 | 38 | 2.0 |
| ○ 보호관찰소시설운영 | 5,033 | 4,933 | △100 | △2.0 |
| ○ 소년원생수용 | 11,600 | 15,194 | 3,594 | 31.0 |
| ○ 청소년비행예방 | 5,381 | 4,836 | △545 | △10.1 |
| ○ 갱생보호활동 | 17,556 | 24,147 | 6,591 | 37.5 |
| ○ 치료감호자수용관리 | 4,647 | 6,095 | 1,448 | 31.2 |
| ○ 보호관찰활동 | 8,856 | 8,683 | △173 | △2.0 |
| ○ 특정범죄관리 | 9,561 | 10,345 | 784 | 8.2 |

| 사 업 명 | 2014 예산 | 2015 예산 | 2014 대비 | |
|---|---|---|---|---|
| | | | 증△감 | % |
|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 3,742 | 3,773 | 31 | 0.8 |
| ○ 기타법무시설개보수및확충 | 10,711 | 16,697 | 5,986 | 55.9 |
| ○ 법무시설및장비관리 | 9,047 | 8,571 | △476 | △5.3 |
| ○ 연수원시설관리및교육시설장비현대화 | 2,202 | 4,798 | 2,596 | 117.9 |
| ○ 법무·검찰공무원등교육운영및개선 | 805 | 995 | 190 | 23.6 |
| ○ 로스쿨지원및국제협력 | 153 | 144 | △9 | △5.9 |
| ○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 501 | 473 | △28 | △5.6 |
| ○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교육 | 884 | 818 | △66 | △7.5 |
| ○ 법무핵심리더양성교육 | 386 | 365 | △21 | △5.4 |
| ○ 청사이전 지원(신규) | - | 384 | 384 | 순증 |
|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816 | 755 | △61 | △7.5 |
| ○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 150 | 142 | △8 | △5.3 |
| ○ 정책연구개발사업(R&D) | 51 | 48 | △3 | △5.9 |
|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 26,977 | 27,436 | 459 | 1.7 |
| ○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 1,104 | 879 | △225 | △20.4 |
|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정보화) | 6,470 | 7,191 | 721 | 11.1 |

〈표 4〉 프로그램별 예산내역(세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 예산 | 2015 예산 | 2014 대비 | |
|---|---|---|---|---|
| | | | 증△감 | % |
| 계 | 2,680,151 | 2,885,181 | 205,030 | 7.6 |
| ○ 법무 활동 | 44,132 | 67,274 | 23,142 | 52.4 |
| ○ 인권 활동 | 39,579 | 42,583 | 3,004 | 7.6 |
| ○ 출입국 관리 | 55,351 | 60,111 | 4,760 | 8.6 |
| ○ 검찰 활동 | 212,274 | 230,557 | 18,283 | 8.6 |
| ○ 교정 활동 | 219,299 | 232,175 | 12,876 | 5.9 |
| ○ 범죄 예방 활동 | 68,322 | 79,990 | 11,668 | 17.1 |
| ○ 법무시설 조성 | 19,758 | 25,268 | 5,510 | 27.9 |
| ○ 법무 교육 훈련 | 4,931 | 7,977 | 3,046 | 61.8 |
| ○ 행정 지원 | 1,963,499 | 2,053,232 | 89,733 | 4.6 |
| ○ 기금 전출금 | 53,006 | 86,014 | 33,008 | 62.3 |

## 3. 교도작업특별회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은 똑같이 573억 6,0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작업생산품 판매수익 445억 3,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억 100만 원, 작업부산물 판매수입 3억 900만원, 기금예탁원금회수 119억 5,200만원, 기금예탁이자수입 2억 6,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6억 6,100만 원, 교도작업 374억 6,100만 원, 직업훈련 31억 3,900만 원, 시설보완 44억 2,900만 원, 예비비 19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97억 7,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표 5〉와 같다.

〈표 5〉

### 가. 세 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 예산 | 2015 예산 | 2014 대비 | |
|---|---|---|---|---|
| | | | 증△감 | % |
| 계 | 56,741 | 57,360 | 619 | 1.1 |
| 교도작업수입 | 43,337 | 44,537 | 1,200 | 2.8 |
| 전년도이월금 | 12,864 | 301 | △12,563 | △97.7 |
| 잡 수 입 | 300 | 309 | 9 | 3.0 |
| 기금예탁원금회수 | - | 11,952 | 11,952 | 순증 |
| 기금예탁이자수입 | 240 | 261 | 21 | 8.8 |

### 나. 세 출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 2014 예산 | 2015 예산 | 2014 대비 | | 내 역 | |
|---|---|---|---|---|---|---|
| | | | 증△감 | % | | |
| 계 | 56,741 | 57,360 | 619 | 1.1 | | |
| 기본사업비 | 670 | 661 | △9 | △1.3 | · 운영비 등 | 661 |
| 교도작업 | 35,764 | 37,461 | 1,697 | 4.7 | · 작업재료비<br>· 보 상 금 | 15,501<br>17,856 |
| 직업훈련 | 3,410 | 3,139 | △271 | △7.9 | · 일반수용비 등<br>· 훈련재료비<br>· 훈련강사료 | 4,104<br>1,917<br>554 |
| 시설보완 | 2,945 | 4,429 | 1,484 | 50.4 | · 일반수용비 등<br>· 공장 개·보수 등<br>· 작업장비구입비 | 668<br>3,329<br>1,100 |
| 예 비 비 | 2,000 | 1,900 | △100 | △5.0 | | |
| 공공자금관리기탁예금 | 11,952 | 9,770 | △2,182 | △18.3 | | |

## 4.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2015년도 세입예산은 193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5,8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건물매각대 24억 3,500만 원, 토지매각대 169억 2,300만 원이 해당된다. 세출예산은 법무연수원 신축완료에 따라 종료되었다.

## 5.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15년도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은 수입 및 지출은 똑같이 915억 2,200만 원이며, 수입은 변상금 1억 1,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60억 1,400만 원,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53억 9,000만 원이고, 지출은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 291억 7,000만 원, 여가부 범죄피해자 보호 337억 7,100만 원, 보건복지부 범죄피해자 보호 195억 4,200만 원, 운영비 5,100만 원, 여유자금 89억 8,8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표 6〉과 같다.

〈표 6〉

가. 수 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 기금 | 2015 기금 | 2014 대비 | |
|---|---|---|---|---|
| | | | 증△감 | % |
| 계 | 59,421 | 91,522 | 32,101 | 54.0 |
| 변상금 | 300 | 118 | △182 | △60.7 |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 6,115 | 5,390 | △725 | △11.9 |
| 전입금 | 53,006 | 86,014 | 33,008 | 62.3 |

나. 지 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 기금 | 2015 기금 | 2014 대비 | | 내 역 |
|---|---|---|---|---|---|
| | | | 증△감 | % | |
| 계 | 59,421 | 91,522 | 32,101 | 54.0 | |
|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 24,725 | 29,170 | 4,445 | 17.9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형사조정 활성화, 범죄피해구조금 등 6개 사업 |
| 여가부 범죄피해자보호 | 31,139 | 33,771 | 2,632 | 8.5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
| 보건복지부 범죄피해자보호 | 1,167 | 19,542 | 18,375 | 1,574.5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등 3개 사업 |
| 운 영 비 | 44 | 51 | 7 | 15.9 | |
| 여 유 자 금 | 2,346 | 8,988 | 6,642 | 283.1 | |

## 제 2 항 시 설

### 1. 개 요

검찰·보호·교정·출입시설 등 각 시설별 사무환경의 특성에 맞는 '고객중심의 맞춤형 법무시설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재정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노후·협소시설 개선 및 대용감방 해소를 위한 법무시설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인 법무행정 수행 기반을 구축 하였다.

새롭게 조성한 청사 등 법무시설은 설계 과정에서부터 업무수행의 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시설의 사용자와 이용자의 편리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친화를 위한 요소를 적극 도입하여 법무시설 사용 및 이용에 따른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 2. 국민 편의와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법무시설 조성

법무시설 청사 전면 외곽 담장 낮추기, 체육시설 주민개방, 교정시설의 청사 미관 개선 및 아름다운 주벽 및 녹지 가꾸기 등으로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주민친화형 법무시설을 조성하였다.

또한, 정부의 핵심정책인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지열 및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고효율 에너지 기기 적용 등 건물 에너지 1등급의 그린 법무시설을 조성하였다.

### 3. 법무시설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상황

준공사업은 검찰시설인 울산지검, 진주지청 등 2개 신축사업과 교정시설인 광주교도소, 상주교도소 등 4개 신축사업 및 밀양교도소 비상대기소 증축, 강릉교도소 후생동 이전 신축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신규사업은 대구고검 보육시설 및 직원 숙소 신축, 부산지검 서부지청 신축 등 2개 검찰시설과 청주소년원 리모델링, 진주보호관찰지소의 2개 보호시설, 거창구치소 신축, 상주·경북북부(교) 비상대기소 증축 등 4개의 교정시설을 포함한 총 8개 시설의 신·증축 사업을 신규로 착공하였다.

계속사업은 천안지청·경주지청 별관·검찰 특수기록관 신축 등 3개의 검찰시설과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축 및 광주소년원 리모델링 등 2개의 보호시설, 제주교도소 수용동 증축,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축 사업을 계속 추진 중 이다. 그 밖에 서울시 송파구 문정도시개발지구내에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성동구치소의 3개 시설을 서울시 SH공사에서 조성하여 성동구치소 재산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14년부터 계속 추진 중에 있다.

법무시설 조성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883억 원으로 검찰시설에 30.8%, 보호시설에 27.5%, 교정시설에 19.3%, 출입국시설에 22.4%를 집행하였다.

2015년도에 시행한 주요 법무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실적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2015년도 주요 법무시설 조성공사 추진실적

(단위 : 억 원)

| 구분 | 공 사 명 | 규모(㎡) | | 소요예산 | 공사기간 |
|---|---|---|---|---|---|
| | | 부지 | 건물 | | |
| 준공 (5) | 광주고검 어린이집 신축 | 747 | 645 | 16 | '14.09.~'15.02. |
| | 의정부보호관찰소 신축 | 5,501 | 772 | 58 | '14.09.~'15.12. |
| | 춘천소년원 생활관 증축 | 기존부지 | 7,595 | 74 | '14.08.~'15.12. |
| | 대전교도소 비상대기소 증축 | 25,169 | 386 | 23 | '14.10.~'15.10. |
| | 울산출입국 항만분소 신축 | 1,639 | 460 | 11 | '14.12.~'15.08. |
| 신규 (8) | 대구고검 보육시설 및 직원숙소 | 858 | 1,015 | 36 | '15.11.~'16.08. |
| | 부산지검 서부지청 신축 | 18,182 | 21,847 | 654 | '15.10.~'17.02 |
| | 진주보호관찰지소 신축 | 2,253 | 1,694 | 34 | '15.04.~'16.03. |
| | 청주소년원 리모델링 | 33,800 | 4,743 | 140 | '15.10.~'17.01. |
| | 거창구치소 신축 | 160,818 | 19,833 | 847 | '15.11.~'18.12. |
| | 상주교도소 비상대기소 증축 | 기존부지 | 987 | 23 | '15.11.~'16.09. |
| | 경북북부교도소 비상대기소 증축 | 12,350 | 4,251 | 99 | '15.12.~'17.03. |
| | 강릉교도소 수용동 증축 | 110,509 | 1,885 | 41 | '15.12.~'16.12. |
| 계속 (7) | 검찰특수기록관 신축 | 6,610 | 9,326 | 211 | '14.12.~'17.09. |
| | 천안지청 신축 신축 | 23,140 | 16,506 | 707 | '14.12.~'17.10. |
| | 경주지청 별관 신축 | 기존부지 | 2,303 | 55 | '14.12.~'16.03. |
|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축 | 14,885 | 4,642 | 121 | '14.12.~'16.07. |
| | 광주(소) 리모델링 | 70,518 | 2,719 | 45 | '14.12.~'16.07. |
| | 제주(교) 수용동 증축 | 기존부지 | 1,552 | 34 | '14.12.~'16.05. |
|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축 | 7,194 | 2,930 | 68 | '14.09.~'16.01. |
| 교환 | 문정 법무시설 신축* | 68,336 | 132,433 | 2,007 | '14.08.~'16.12. |

* 서울시 SH공사에서 추진 :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성동구치소

# 제 2 장

# 업무 실적

제1절 기획조정업무

제2절 법무업무

제3절 검찰업무

제4절 범죄예방업무

제5절 감찰·감사업무

제6절 인권업무

제7절 교정업무

제8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 제 2 장 업 무 실 적

## 제 1 절 기획조정업무

### 제 1 항 규제개혁 적극 추진

규제개혁은 불합리한 규제의 도입을 억제하고,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폐지하며,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 친화적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였다.

지난해 규제개혁 과제로는 '구분점포의 구분소유권 인정 요건(용도, 면적상) 완화' 등 핵심과제 5건, 중국 및 동남아 국민에 대한 비자제도 개선 등 기존규제 정비과제 7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정비하였다.

그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제한 개선을 위해 구분점포(경계벽 없는 상가)의 용도 제한(판매·운수시설)을 완화하고 면적 제한(1천 제곱미터)을 철폐함으로써 구분점포 재산권 행사 불편을 경감하고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였으며, 또한 파산자가 건전한 경제활동의 구성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이유 없이 기계적으로 파산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40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 8만 명 이상의 파산자가 기존 취업 제한 직업 45여개에 종사 가능하게 함으로써 파산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가 국제중재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중재법 개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중국 및 동남아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 유효 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제도를 김포공항에 확대 시행, 신속한 출입국 편의 제공을 위한 자동출입국 심사 등록 절차 간소화 등 출입국관련 규제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관광객 증가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법령, 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 제 2 항 법무행정개선 추진

2015년에는「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실현 지원을 목표로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국민중심의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기틀을 마련하고자 '국민·현장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유능한 인재개발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 '공유와 소통의 조직문화 조성' 을 추진하였다.

행정제도 개선과제의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였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3개 분야 14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변화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소통과 공감의 열린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 1. 국민·현장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및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지원

국민안전을 위해 국내 입국 전 출국지에서 외국 테러세력 및 범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구축·운영' 등 국민체감형 중·장기 행정제도 개선과제 5개를 발굴하여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직원들의 다양한 제도개선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개선관리시스템'을 운영, 전 직원이 자유롭고 손쉬운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2015년 594건의 행정개선 제안을 접수하여 '자동출입국등록 지문취득 시 음성안내서비스 제공', '소년원 계절별 소독횟수 기준 마련' 등 103건을 채택하였다.

또한, '경찰과의 구인장 정보 유통시스템 구축', '사회적 약자 배려형 가족접견' 등 자체적으로 추진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여 전 소속기관에 공유·확산함으로써 지속적인 행정제도 개선 추진력 확보 및 조직 내 창의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 2. 창의 및 직무역량 강화, 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

직원들의 역량개발 및 조직문화 향상을 교육 목표로 솔루션 역량강화 교육과정, 소통문화 확산과정, 직무역량강화 등 3개 분야 14개 변화관리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2,401명의 직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5년에는 독서학습과정 및 사이버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법무부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중심문화를 반영하고 원거리 근무자의 가족 간 발생되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법무가족 행복캠프과정' 이 운영되어 교육생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수용 및 민원업무 등 스트레스 노출이 심한 근무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재충전의 기회를 위한 '힐링 교육과정'을 연2회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법무공무원의 힐링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밖에 지식관리, 정보공개 등에 대한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직원들의

자발적 연구모임인 학습동아리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을 확대하였다.

## 3.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보람있고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

행정제도 선진화 계획으로 제도개선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는 제도개선 활동으로 바뀌기 어려운 오랜 관행과 조직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 업무환경 개선, 재충전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등으로 보람있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및 창조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위와 같은 직장(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통하는 직장문화', '일 잘할 수 있는 직장문화', '서비스가 있는 직장문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수·미담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칭찬·격려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법무공무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다.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더욱 더 활력 넘치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Happy 법's day, 직원체육행사, 동호회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및 소외계층에 대한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활동 강화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법무부가 국민으로부터 좀 더 신뢰받고 존중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보람 있고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 4.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 가. 인사평가시스템 개선

공무원 승진 및 성과급 지급 시 위원회 심사를 통해 주관적 평가요소를 배제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고, 열심히 일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32명), 특별승급(6명), 성과급 지급 우대 등을 통해 공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였다.

### 나. 직원 교육훈련 강화

헌법, 국가관 등의 공직가치와 정부 3.0, 창조경제 등 주요 국정과제 관련 교육의 강화로 적극적인 국정과제 추진전략을 수립·지원하였으며, 직종과 직렬에 맞는 직장교육과 워크숍 활용 등 전문화된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법무 전문성을 제고하며, 변화관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공직가치, 전문성, 자기개발 등 다양한 방면의 교육과정으로 인재개발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직원들의 높은 교육 참여로 2015년도 상시학습 기준시간(일반직 1인당 90시간) 이상 이수자 비율이 95%이며,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이수 비율은 기준시간(4급이하 1인 7시간) 대비 15시간 달성으로 상시 교육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정착화되었다.

### 다. 적재적소 인사운영 구현

의사·약사 등 특정 직무분야 및 자격증이 필요한 직위에 외부 전문인력을 경력경쟁채용(의사 9명)하여 조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 제 3 항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 1. 정부업무평가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등 주요업무 분야에 대하여 매년 국무조정실에서 수립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그 성과가 점검·평가되고 있다. 2015년도 법무부 자체평가는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부문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국무조정실 특정평가는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기관공통사항 부문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각 부문별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가. 자체평가 부문

1) 주요정책 평가

우리 부 비전인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구현을 위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6개 전략목표와 '4대 사회악 근절방안 보완·심화 추진' 등 15개 성과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73개 관리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목표를 충실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성폭력 재범방지 대책 확대' 등 73개 관리과제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매우우수 3개(4%), 우수 11개(15%), 다소우수 11개(15%), 보통 21개(30%), 다소미흡 11개(15%), 미흡 12개(16%), 부진 4개(5%)로 나타났으며, 성과지표별 목표치에 대한 평균 목표달성률은 153.51%로 지난해 127.97%보다 25.5%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요 성과는 소외계층에 대한 직접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연계지원 시스템 구축, LH·SH 임대아파트 거주민 대상 무료법률상담, 이동법률상담을 이용한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가족관계 미등록자 등록지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15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대상 11개 지역에 민·관 통합지원 방식의 지역 맞춤형 법질서 실천운동(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범죄취약환경 주거 주민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수형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평가하고, 개별처우 만족도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환류하는 등 수형자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된 적극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재정사업 평가

2015 회계연도 일반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는 재정이 투입된 총 35개 단위사업 중 '공판활동 및 형집행', '검찰운영', '치료감호', '소년보호', '갱생보호',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국제이민협력',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국가송무수행',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 법제연구', '연수원 운영' 등 11개 평가 대상 사업이 선정되어, '예산 규모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실시, 우수 1개, 보통 8개, 미흡 2개로 평가되었다.

전반적으로 대상사업 추진을 통해 공판활동 및 형집행 철저로 엄정한 국가형벌권 확립,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 공조조약 등의 체결 확대 및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형사협력 강화 등 지원,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 재활교육을 통해 재범방지와 안전한 사회복귀를 촉진,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송치된 보호소년들을 소년원에 수용, 교과교육·직업능력개발·인성교육 등 체계적인 교정교육을 통해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갱생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통한 재범방지로 개인의 복지와 사회안전 구현, 청소년이 쉽고 재미있게 준법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특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문화 구현, 국제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 전문인력 양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사회적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민사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선진 법무서비스 제공에 기여, 국가송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지휘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 법무분야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법무·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 제공으로 직무전문성 향상 및 바람직한 법무·검찰 인재상 확립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행정관리역량 평가

행정관리역량에 대한 평가는 조직관리, 인사관리, 정보화관리 등 3개 영역별로 실시하였다. 조직관리 부문에서는 자체 조직 진단 실시, 유동정원제 시행 등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한 지식정부 구현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사관리 부문에서는 상시학습 기준시간 이상 이수 등 능력개발 활동,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등 균형인사분야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도, 유연근무제 중 원격근무제 및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활성화 등에 있어서는 교도소 등 특수한 근무환경에 근무하는 법무부 업무 특성상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하였다.

정보화관리 부문에서는 정부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 기반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법무정보기술아키텍처(EA)를 적극 활용하고 마일리지 부여 등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현장 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나. 특정평가 부문

1) 국정과제 평가

2015년도 우리 부 평가대상 국정과제는 ①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②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③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④사회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 ⑤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으로 총 5개 과제이다.

첫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과제는 성폭력 전담반 설치·운영,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확대운영('14년 40개->'15년 46개) 등 수사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성폭력 미검률('14년 5.0% ->'15년 3.6%)과 재범률('14년

5.4% ->'15년 5%)이 대폭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지원 확대로 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과제는 범죄피해자 대상 정보고지 의무화 등으로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건수 및 지급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법률홈닥터 지원('14년 25,642건 → '15년 35,057건) 및 마을변호사 배정 확대('14년 1,455명, 311건 → '15년 1,530명, 792건 상담) 등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를 실현하였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는 등 연계 지원 강화에 노력하였다. 다만, 범죄가해자로부터의 구상금 회수율이 일선 지검 지도 점검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14년 2.9% → '15년 7%)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실적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과제는 강력범죄 발생지에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온 해당지역 범죄 발생률 감소 및 지역주민의 범죄 안전 체감도가 향상되는 한편, 보조금 비리 수사 등을 통해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22건의 제도를 개선 중에 있다. 또한, 헌법교육·토론강연·학생자치법정 등 법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참여자들의 법질서 준수의식 향상에 기여하였다. 다만,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 과제는 검찰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언행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구금보호시설 수용자 인권침해 구제 예방 활동 및 외국인용 인권침해신고센터 리플릿·홍보영상제작 배포 등 우리사회의 인권 보호 향상에 노력하였고 아동·장애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술조력인 제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인권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향후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입법절차를 위해 관계 부처 등과 원활한 협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섯째,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과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검찰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질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해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감찰본부 특별조사관 외부인사 영입, 선진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검찰 권한 재편 및 합리적 수사 시스템 설계 추진 등 검찰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다만, 향후 검찰청법 등 관련법의 개정 추진을 기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규제개혁 평가

구분점포(경계벽 없는 상가)의 용도 제한(판매·운수시설)을 완화하고 면적 제한(1천제곱미터)을 철폐하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제한을 개선하는 등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적극 노력하였으나, 규제개혁 건의(경제단체 건의과제) 수용률이 낮고, 규제개혁 홍보 실적이 다소 부족하여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3) 정책홍보 평가

2015년 법무부 국정홍보과제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을 중심으로 기획홍보, 부처 간 홍보협업, 오보대응, 언론홍보, 온라인홍보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홍보를 실시하였다.

과제별 월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정도를 매월 평가하여 홍보가 미진한 정책에 대해서는 보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가정주부·노인·농촌 거주자 등 정책 수혜자별로 활용도가 높은 매체를 선정하여 정책 소개 콘텐츠를 반복 표출하는 등 정책 고객별 맞춤 홍보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상담 실적에서 당초 목표치를 초과하여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주요정책 관련 보도자료는 배포 전에 법무부 대변인실과 문체부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보완하였고, 부처 간 공동 홍보과제에 대해서는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소속기관 보유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콘텐츠를 게시하고 표출하는 등 부처 간 협업 홍보에 적극 참여하였다.

지면, 인터넷,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법무 정책 관련 오보에 대해서는 해명자료 배포, 언론 상대 설명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여 정확하게 정정 보도되도록 하였다.

법무정책의 외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 발표 시 영문 보도자료를 동시 배포하였고,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7월 1일 외신을 대상으로 '메르스로 급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브리핑을 총 7개국 20개 매체 36명의 외신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여 다수 외신에 보도되는 등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기관장과 국민들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관장의 방송출연, 인터뷰, 그리고 정책 현장 방문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법무부 정책을 인포그래픽, 동영상, 카드 뉴스 등의 비주얼 콘텐츠로 제작하고, 이를 다양한 온라인 채널(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하는 등 뉴미디어를 통한 정책 홍보를 강화하였다. 특히, 부서장이 정책을 직접 설명하는 '온라인 브리핑', 주 1회 법무정책을 소개하는 '법무부는 오늘' 제작을 통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법무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접하도록 홍보 수단을 다양화하였다.

4)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평가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부정부패, 부조리 등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기관·방위산업·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하고 '클린 피드백시스템'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협력·개선하였다.

또한, 파산자의 직업선택을 제한하는 39개 법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여 그들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미납 추징금 환수를 강화하고,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외에도 법조브로커 근절 등 15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수' 평가를 받았다.

5) 기관공통사항 평가

기관공통사항 평가는 정부3.0(보통), 부처간 협업(보통), 특정시책 이행관리(우수) 총 3개 분야로 '우수' 1개, '보통' 2개로 평가 되었다.

정부3.0 분야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정보 제공 의무화',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수형자와 접견하는 '스마트접견', 교정시설 방문 편의성을 제공한 '교정시설 내비게이션 검색 서비스 실시' 등 국민 맞춤형 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공공데이터 개방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처간 협업 분야에서는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등 16개 타부처 주관 국정과제 협업 부처로 참여하여 해당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기여하였다.

**다.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실태점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은 국무조정실에서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에 이르기까지의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주요 점검 항목은 성과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점검 및 평가의 충실성, 환류의 적절성, 제도 운영의 충실성 등이며, 법무부는 2015년 평가에서 객관적 성과지표 설정 노력 및 성과관리 제도간 연계 강화 등 내실있는 자체평가 운영으로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라. 국민신문고 운영 평가결과**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평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2010~2012년 3년간 연속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고, 2013년도에는 78.9점으로 19위(보통), 2014년도에는 81.1점으로 14위(우수)에 머물렀으나, 2015년도에는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평가(민원, 국민행복제안, 정책참여)에서 89.0점으로 종합 1위를 기록하였다. 주요 향상요인은 부서장 등 간부들의 관심과 전담부서의 적극적인 역할, 업무 담당자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처리 자세 등으로 분석된다. 분야별 평가 결과를 살펴 보면, 민원은 4위(86.0점, 매우우수)로 전년대비 10단계 향상, 국민행복제안은 1위(매우우수, 85.0점)로 전년대비 6단계 향상, 정책참여는 3위(우수, 84.3점)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민원 평가지표는 만족도 향상 정도·추가답변율 등으로, 국민행복제안은 제안채택률 향상정도·제안실시율 등으로, 정책참여는 정책참여 활용정도·국민참여정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법무부는 민원·정책 피드백 전담조직인 행복민원센터를 통해 선제적 전화서비스(B/S Before Service) 및 추가서비스(A/S, After Service), 불만족 등 고충 민원에 대한 현장 점검, 지속적인 피드백 등을 통하여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2. BSC 제도 및 시스템 운영

### 가. BSC 제도 운영

법무부는 매년 BSC제도 운영 세부사항과 연간 일정을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성과관리를 수행해왔다. BSC제도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충실한 집행으로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와 성과에 대한 적정한 환류를 통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하였다.

2007년에는 법무부 성과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조직평가, 개인평가, 개인평가 활용 등 법무부 성과평가 전반에 걸쳐 규정하였다. 특히 성과평가 결과를 승진심사에 5%이상, 성과급 지급에 10%이상 반영하도록 하였다.

2008년도에는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가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반영됨에 따라 기존의 우수·보통·미흡부서에 대한 조직 가감점 제도를 폐지하였다.

2009년에는 하위조직 평가점수 산정 시 상위조직 평가점수의 20% 이상을 반영하여 상위조직 목표달성의 관심도를 높였다. 또한 조직평가 점수 편차 조정방식을 변경하였다.

2010년에는 개인성과평가 결과를 승진심사 시 10%이상, 성과급 지급에 20%이상 반영하도록 성과관리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2011년에는 공통지표에 청렴마일리지를 추가하여 BSC 기관평가에 반영하였다.

2014년도에는 'BSC 성과우수부서 가점제도'를 신설하여 국정과제평가 등 핵심 외부기관 주관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부서 또는 정부 3.0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부서에 대해 BSC평가 시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였다.

2015년도에는 기관 및 부서신설, 부서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를 내용으로 법무부 성과관리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 나.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법무부는 조직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조직·예산 등에 반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높은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BSC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2006. 12. 본부 및 16개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1차 구축사업을 완료하였고, 2007. 9.에는 법무부 전 소속기관까지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2차 구축사업을 완료함으로서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게 되었다.

2008. 7.부터 연차적으로 BSC성과관리 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자료 저장(BackUp) 서버의 미구축으로 인한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서버 및 메모리 용량 부족에 따른 사용자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였다.

1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도에는 법무부 전 소속기관(검찰청 제외)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기 위해 동년 2월 확대 구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기간 중 성과관리 마인드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성과관리 T/F를 구성·운영하고 교육 및 워크숍 6회, 사업보고회 2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업무분석을 통해 조직별 성과체계를 확립하고 핵심 성과지표를 도출, 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동년 10월 성공적으로 확대 구축사업을 완료하였다.

2008년도 시스템 안정화·고도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① 사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고(엑셀 구현 등 35건), ②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시스템 이중 BackUp 체계 구축 및 D/B·WAS 서버용량 확충)한 것이다.

2009년에는 제도 개선 사항(상위조직 점수를 하위조직의 점수에 일정 비율을 반영하고, 조직평가 시 표준 평가 제도 도입 등)을 시스템에 반영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조직평가 시 평가자의 정성평가 비율을 일부 조정하고, 법무부 내 각 직렬별(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개인성과평가 결과 조회 기능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BSC 성과관리 시스템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였다.

2011년도에는 법무샘에서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BSC성과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과 BSC 성과관리시스템에서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온나라 시스템으로 접속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BSC 성과관리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도모하였다.

2012년도에는 인사 e-사람 시스템상의 개인별 근무이력을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자동반영하는 등 17개 기능을 고도화하여 BSC 시스템 사용자 편의성과 업무효율성을 증대하였다.

2013년도에는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833개 부서 약 2만 여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2014년도에는 BSC시스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였고, BSC사용자 편의를 위해 영역별 바로가기, 업무처리 절차 가이드 기능 제공, 성과지표실적 실시간 집계, 첨부파일 용량 확대 등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성과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노후된 서버교체 및 DB 이관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2015년도에는 인사 e-사람 시스템상의 직원정보 변동사항 건수를 BSC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직원정보 변동사항이 누락되지 않고 BSC 시스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 제 4 항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상황

### 1. 개 요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는 대통령이 회의·행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행한 지시를 정리·분류·전달하고,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함으로써 국정최고책임자의 지시와 의견이 정책과 업무추진과정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하는 업무이다. 지시사항에 대한 전달체계 확립, 추진계획 수립, 효율적인 이행 및 실적 등록 등 체계적인 지시사항 관리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현 정부 출범이후 2015. 12. 31. 까지 총 102건의 지시사항이 시달되어, 38건을 완료하였고 64건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 2. 완료 지시사항(38건)

- ○ 사회복지분야 등 인력이 부족한 부분 민간부분과 협력방안 검토
- ○ 원전비리 관련자 책임 소재 규명
- ○ 세금포탈 엄벌 관련
- ○ 범죄유형 분석을 통한 예방 노력
- ○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에 대해 단계별로

철저히 규명하고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
○ 선내 비상훈련 관련 회사와 감독기관의 책임을 밝힐 것
○ 선박도입, 점검, 운항허가 등 일련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규명할 것
○ 세월호 사건 관련 무사안일주의에 책임을 물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해운조합 관련 비정상적 관행 등에 대해 규명할 것
○ 단계별 책임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
○ 세월호 관련법안 후속조치 및 유병언 검거 총력
○ 유병언 수사 관련 조치 사항
○ 각 부처 장관들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
○ 사이버테러 대응 관련 종합검토
○ 주가조작 종합대책 마련
○ 수요자 중심의 인허가 절차개선 관련
○ 공공기관의 국정철학 공유 관련
○ 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협약가입 독려
○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 고용률 70% 관련 액션플랜 마련
○ 하반기 예산 집행 관련
○ 대형사고시 정부발표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할 것
○ 규제정보포털 관리
○ 브랜드과제 추진성과 창출
○ 2015년 정부예산안 관련
○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등 점검 후 내년 국가재정전략회의시 보고
○ 예산집행 내역 등 재정지출 관련 내년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시 보고
○ 다문화정책 정보공개 등을 통한 유사, 중복사업 개선
○ 육아휴직 정착, 일·가정 양립 모범사례 발굴, 확산 등
○ 공무원 연금개혁 설명 노력 강화 및 실질적 공무원 사기진작책 검토
○ 공직사회 부패관행 근절을 위한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 토론회 개최 등
○ 신년 업무계획 수립 및 내년 부처 업무보고 준비
○ 정부 홍보 방식 혁신
○ 정책평가에 국민이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반영
○ 정책홍보 시스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신규 시행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상세하게 홍보
○ 신년구상과 업무보고에 포함된 정책에 대한 치밀한 실행계획과 로드맵 마련

## 3. 정상추진 지시사항(64건)

○ 사회 4대악 척결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 성폭력 방지대책 관련
○ 법률복지 확대
○ 유병언 일가 검거 및 의법처리
○ 형량공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
○ 유병언 측근수사 등 관련
○ 방위사업 비리 및 혈세낭비 척결
○ 헌법가치 교육 충실히 실천
○ 원전 자료 유출 관련 철저 조사 및

배후세력 규명
- 헌법가치와 법질서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헌법교육 확산방안 마련
- 학교에서의 헌법교육과 체험형 법교육
- 소외계층까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불법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 이민정책 전환방안 검토 등 외국인 인력 활용 대책 강구
- 법령정보 접근성 강화
- 원전비리 근절 및 원전 관리, 감독체계 개선
- 관광산업 육성방안 관련 후속조치 철저
- 전자금융사기 등 종합대책 마련
- 저작권 관련 대책 강구
- 외국인 유학생 활용 여건 조성
- 부정수급자 일벌백계 장치 마련 등 재정집행 효율성 강화
- 정부3.0 발전계획을 토대로 기관실정에 맞는 실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과제 이행
-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일괄 처리
- 통일 후 법질서 문제, 헌법적 가치 등 연구
- 통준위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들이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 수준 제고 및 성과축적
-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아젠다 제시 등
- 2단계 공공기관 개혁
- 권력형 성폭력 근절
- 핵심과제, 핵심정책에 대한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해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추진
- 갈등요인에 대해 사전에 보완대책 강구
-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강력 추진, 전 부처 노력
- 모든 부처가 국정과제 성공 사례의 발굴·확산 방안 마련, 시행
-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현장에서 확실하게 집행
- 상시적인 점검활동 등 공직기강 확립
- 규제개혁 신문고 관련 정책집행 과정에서 현장중심, 현장점검 원칙 준수
-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 정비
- 국민 불편 법령 정비
- 4대 사회악, 강력범죄, 안전사고에 단호하게 대처
- 국민 제안에 대한 정책 반영 노력
- 부정부패 유발 시스템 점검
- 핵심과제 설정 및 종합적 추진전략 마련
-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관련 모든 유관부처가 적극 지원
- 안보와 치안시스템 점검 및 올바른 역사인식과 국가관 등 홍보교육
- 부정부패 등 각종 적폐 청산에 범정부적인 역량 결집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현황 점검 및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센터간 상생 발전 유도
- 핵심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조속히 도입 및 민간 확산 분위기 조성
- 내년 예산 편성 시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등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내실화 위해 기존 지원제도 전면 재점검

- ○ 각 부처가 부문별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적극 발굴 추진
- ○ 각 부처별로 호국보훈 사업 발굴·추진
- ○ 메르스 긴급 대응 관련
-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노력
- ○ 총리실이 부정부패 척결 등 사회개혁의 컨트롤타워라는 각오로 박차
- ○ 전 부처가 일·가정 양립 정책 적극 추진
-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집중
- ○ 장·차관의 언론 홍보 및 현장소통 노력 강화
- ○ 민·관·군 협력강화 등 내실있는 을지연습이 될 수 있도록 준비
- ○ 규제 담당공무원에 대한 의식 개선 노력
- ○ 규제개혁성과가 나올 때까지 현장중심으로 지속 점검, 보완
- ○ 테러위협 대비활동 강화 및 신속대응체제 유지
- ○ 테러관련 입법 추진
- ○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해 직장문화를 구조적으로 개선

## 제 5 항 비상대비업무

### 1. 정부 연습

2015년도 을지연습(8. 17.~20.)은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전쟁 이전 국지도발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위기관리 연습과 전쟁발발 이후를 대비한 국가총력전 연습을 실시하였고, 훈련 중 장관 주재 하에 '전시 불법집단행동 등 공공안전 위해사범 관련 대책(중통단 토의과제)' 등 6개 실국본부의 전시 주요현안에 대한 토의와 소방훈련 등 실제훈련을 실시하였다.

### 2. 비상대비 계획 보완

전시 법무, 검찰, 보호, 인권, 교정 및 출입국관리 사무에 관한 「법무집행계획」과 「자체충무계획」및 「자유화집행계획」을 발간하여 관련 기관에 배포하였다.

### 3. 법무 시설 방호 실태 및 재난 관리 실태 점검

4개 교정시설의 방호 실태와 29개 소속기관에 대한 재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방호시설물을 정비하고 수용시설의 재난 발생 원인 제거 및 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하였다. 그리고 60개 시설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통해 민관합동점검의 필요성과 현장점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 4. 재난 대응 훈련 실시

2015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5. 18.~22.)은 '풍·수해 대응 훈련', '화재 대응 훈련', '지진·해일 대응 훈련' 등 3개 분야에 걸쳐 본부 및 전 기관이 참가하여 재난 대응 시스템을 일제 정비하고 기관별 재난대응 매뉴얼을 정비하였다. 또한 도상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 실제훈련을 통해 재난대응역량을 제고하였다.

### 5. 예비군·민방위대 운영

예비군·민방위대의 제대 편성과 동원 훈련,

향방 훈련 기본 교육 및 비상 소집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 대비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 제 6 항 정보화업무

### 1. 개인정보관리수준 향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년 7월)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향상 되었으나, 자료유출 사건 등의 사이버범죄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우리 부는 민감한 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시 국민 불안감이 증대되므로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암호화 등을 도입하여 개인정보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고 관리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추진 실적으로는 소관 법령 및 각종 서식 정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실태 조사,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4.5급) 확보를 통해 전담 체계를 마련하였고, 법무정보 접근통제시스템 및 출입국정보시스템 주민번호 암호화, PC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및 주요 시스템 운영기관 망 분리 등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전사적인 통제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실태점검, 영향평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로 침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일반직원, 담당자, 취급자, 외주업체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보안 소식지 발송, 사이버진단의 날 운영으로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및 인식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결과 95.47점(중앙행정기관 평균 : 94.88점)의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앞으로 우리 부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의무사항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근절되도록 소관 법령 및 각종 서식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할 예정이다.

### 2. 법무정보통신망 보안강화를 통한 안전한 업무환경 구현

지난 2009년 7·7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2011년 3·4 디도스 공격, 2013년 3·20 사이버테러, 6·25 사이버테러, 2015년 한수원 자료유출 사건 등 매년 사이버 정보보안 사고의 증가로 인해 정보통신망의 보안성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 되었다. 특히,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미분리 및 저장매체시스템 부재로 인한 악성코드 유입 및 개인정보 등 민감 자료가 상용메일과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를 통해 외부로 무단 유출 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가상화 방식으로 시범 실시하고, 휴대용저장매체 시스템을 도입하여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를 통한 외부로의 무단 유출을 차단함으로써 업무자료 유통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여 법무정보통신망 보안강화에 노력하였다. 우리 부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 방지

및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를 통한 자료유출 차단을 위해 소속기관 망분리 및 휴대용저장매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다.

### 3. 사이버안전체계의 지속적 강화를 통한 사이버 위협 선제적 대응

2015년도는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건, APT(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의 증가, 랜섬웨어의 확산 등 개인과 공공기관 구분없이 다양한 보안공격이 일어난 해였다.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우리 부는 정보시스템 운영기관(20개)을 중점 대상으로 하여 악성코드·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보안취약점을 진단·조치하였으며, 법무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능력 배양을 위한 침해사고 대응 훈련(4월)을 실시해 직원들의 해킹 메일 및 게시판 악성코드 감염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해 사이버 공격 방지 및 중요자료 유출 예방에 노력하였다.

또한, 법무사이버안전센터에서는 직원의 보안인식 제고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안소식지 발간(월1회)', '정보보안교육 실시(연 3회)', '정보보안 워크숍 실시(5월)'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사이버안전체계 강화를 위하여 보안관제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통합보안관리 시스템 및 위협관리시스템 증설 등 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해대응 업무(연 836건), 모니터링 업무(연 118건) 등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체 보안관제 강화 및 탐지패턴 자체 개발을 시행하여 사이버위협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 4. 지식 공유·확산으로 법무지식행정 활성화

2015년에도 정부3.0과 연계한 지식 공유·확산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식활동에 소극적인 직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식에 대한 조회, 댓글, 추천 시에도 일정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마일리지 취득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하고, 지식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킴으로써 지식활동을 하는 직원을 확대하는 등 법무지식행정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해 영상회의 개최 실적을 지식마일리지로 보상하여 영상회의 실적을 향상시켰다. 한편 각 실국본부 주무사무관으로 구성된 지식평가 실무협의회 및 본부 및 소속기관 전문가 집단인 지식검증자에 대한 보상 강화와 신속·공정한 검증 체계 구축을 통해 고품질의 우수지식을 다수 확보하고 등록된 지식의 직원 간 공유·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였다. 바른 급식사랑방 등 장기간 성과가 뛰어난 학습동아리(6개 동아리)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행자부 연구모임 운영비 지원에 응모하여 지원비를 받는 등(1개 동아리) 성과중심의 연구모임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분기별로 지식활동이 뛰어난 우수지식인(20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연말 올해의 지식인으로 선정된 직원 4인에 대해 인사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식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평가와 보상이 뒤따르게

하였다. 또한, 우수지식인 및 지식 검증자, 마일리지 우수자 등을 대상으로 지식행정 리더역량 강화 교육(4월)을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지침 및 정책에 반영하는 등 소통과 나눔을 통한 법무지식행정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 5. 고객중심의 온라인민원서비스 개선

고객 중심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선별하여 어디서든 접근하기 쉽도록 'Quick Menu'를 신설하여 사용자의 편리성 및 정보접근성을 개선하였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도입한 '공공아이핀(I-PIN)'과 '공인인증서' 이용절차를 이미지 위주의 '따라하기' 메뉴로 신설하여 처음 사용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격지원서비스'를 도입하여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또한, 온라인민원서비스 페이지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을 강화(미래창조과학부 공식지정 인증마크 획득)하여 제약 없이 양질의 대국민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중심의 법무행정서비스를 구현하였다.

## 6. 정보기술 아키텍처(EA) 활용 확산

정보시스템의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자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4년 전자정부법 제 46조에 기관별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운영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2015년 우리부는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화투자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계획 및 진행·완료시에 EA정보시스템의 사업관리 활용을 강화하고, 정보화업무 담당자와 일반업무 담당자에 대한 EA 교육 및 홍보를 통해 EA 활동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전문역량을 제고하였다. 본부 및 소속기관의 EA담당자 및 정보화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5월 및 10월 2회에 걸쳐서 EA개념 및 활용, 성숙도 평가에 따른 EA정보등록 및 현행화 교육을 실시하여 EA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정보자원의 최신 자료 유지를 위해 기존의 연 2회 등록방식을 상시 등록방식으로 개선하고, 운영유지보수 예산 신청 시기에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정보화예산의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모색하였다. 또한, 사업 주관기관에서는 정보화사업 계획서, 발주정보, 계약정보, 사업완료 시점의 산출물 등 일련의 사업관리 정보들을 등록하도록 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5년도 정부기관 성숙도 측정결과 4.56점(중앙행정기관 평균 3.95점) 중앙행정기관 성숙도 분포 5단계 중 우리부가 4단계의 위치에 있고, 정보자원 관리, 연계·통합 지원, 활용 성과와 관련된 제도가 기관에 정착되어 유지 관리되고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성과를 얻었다.

## 7.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보공동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 가. 정보공동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개방과 공유, 국민중심의 서비스 제공

2010년 7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오픈 이후 매년 전자화 대상과 정보공동활용 항목 확대를 추진하였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 실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디자인 개선,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형사사법포털 외국어서비스 실시」, 「벌과금 납부명령서 전자송달서비스 실시」, 「변호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 「형사사법 전자화 미래전략 수립」, 「범죄피해자정보 연계」, 「구속인·수형인정보, 성범죄자정보 연계」,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강화」, 「전자불기소처분 시스템 구축」, 「형사사법포털 디자인 개선 및 홍보활동 강화」 등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0년 시스템을 오픈한 이래 400여종의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해 형사사법 기관 등 약 70개 시스템과 연계하여 일 230만 건의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2015년 말 기준으로 전자문서 누적 유통건수 약 3,518만 건, 사건정보 등 누적 유통건수 약 31억 건, 전자약식처리 526,247건, 포털 및 모바일 접속 10,375만 건, 사건진행상황조회 22,926,545건, 벌과금조회 7,602,574건, 민원서비스 207,838건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전자약식의 경우 평균 사건처리기간이 종전의 47일에서 30일로 약 2주 단축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2015년에는 정보공동활용 대상에 「범법외국인 신원확인을 위한 법무부 외국인신원확인 시스템 연계」, 「공무원 신분확인을 위한 경찰과 공무원연금공단 정보 연계」, 「특사경과의 연계를 위한 검찰과 관세청간 사건정보 연계」를 추진하였다. 또한, 형사사법 포털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항고(재항고), 재정사건에 대한 진정서, 탄원서 온라인 제출 기능」을 추가 하였고, 수사기관 담당자들에게 홍보용 명함카드 배포와 지하철 역사 포스터 게시를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기존 운영 노후 장비에 대한 교체사업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공소권없음) 사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 나. 전세계 유례가 없는 독보적 IT 시스템인 KICS의 수출 기반 마련과 법무한류 실현

전국단위의 5개 형사사법기관이 하나의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모든 형사사건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시스템으로 페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다수의 국가에서 KICS 도입을 고려하고 있거나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2015년 4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한-페루 전자정부 협력 포럼에서 한국의 우수 전자정부시스템 사례로 KICS 소개 및 시연을 실시하였고, 페루 법무부측은 한국의 KICS를 모델로 사업 추진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2015년 11월 한국 전자정부 시장개척단 페루 방문 시에는 페루에서 KICS사업 추진 시 포괄적 협력을 도모하는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정부 간 협약을 통해 한국 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민관협력에 의한 법무한류 실현의 사례라 할 수 있다.

### 다. 표준화된 범죄통계, 과학적인 범죄예측이 가능한 형사사법 통계시스템 기반 구축

형사사법 기관 간 통계 수치의 불일치 문제 개선, 범죄분석의 기초자료인 통계원표의 한계성 극복, 범죄통계의 체계적 관리에 의한 범죄분석,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과학적 통계산출을 위한 통계 항목, 수집 방법 등의 전반적인 개선을 목표로 2014년 형사사법 통계시스템 BPR/ISP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5년 형사사법 통계시스템 1단계(총 3단계)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1단계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검찰과 경찰은 살인, 성폭력 등 주요 범죄에 대한 통계기준을 표준화 하였으며, 법무부 통계시스템(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치료감호소)과 형사사법 공통통계시스템(검찰, 경찰) 및 내부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통계정보를 기반으로 한 범죄예측, 범죄정책 수립을 지원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이 강화되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제 7 항 교육과 연구의 내실화

### 1. 개 요

법무연수원은 2015년 교육의 목표를 「선진 일류 국가를 선도할 법무·검찰 인재 양성」으로 설정하고, 법무공무원의 직무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검사교육과정은 신임지청장과정을 신규 개설하여 경력별 리더십과정을 체계화 하고, 공판기법 등 필수 기본교육과정은 임관 후 7년 내 이수하도록 하며 공정거래 전문가과정을 신규개설 하는 등 전문가 과정을 내실화하였다.

법무·검찰 중견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핵심리더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비전 제시형 리더십 함양에 노력하였다. 검사장·차장 등 간부급 검사, 검찰직·보호직·출입국관리직·교정직 5급 이상 간부 등 법무·검찰의 중견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2015년 총 16개 과정, 23회, 480명을 교육하였다.

또한 역사관·헌법관·안보관 분야별로 3명의 강사를 선정하여 주요과정 등에 필수 편성하고, 검사 전문가과정에 각 분야별 선배검사를 초빙하여 바람직한 검사상이 체험적으로 전수되도록 '선배와의 대화' 등 공직관 과목을 편성함으로써 국가관·공직관 교육을 강화하였고, 또한 문화적 인격체로서의 전문인 양성을 위해 다양한 예·체능, 인문학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2015년 법무연수원 진천이전과 함께 교정연수부 소속 운영과를 교정훈련과로 개편하여 실기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추세를 반영한 교정공무원 실기훈련을 기획하고, 교정훈련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강의위주의 교육에서 현장·실무 중심 교육으로 교육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신규 채용자과정에 실습교육을 확대 편성

하고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도입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4기 신임검사 및 제1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무관 신임검사 45명을 대상으로 원내 교육과 일선청 실무실습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9년 도입된 로스쿨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현직 검사 8명을 선발하여 전국 25개 로스쿨에 파견해 검찰실무 강의를 담당하게 하였고,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2~3주 과정의 검찰일반실무실습, 검찰심화실무실습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검찰실무교재를 인쇄하여 전국 로스쿨에 배포하였다.

1997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법조인 등 초청 연수 과정을 85회에 걸쳐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시스템을 소개하고, 전후의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단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경험을 널리 전파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정착, 경제발전을 지원함과 아울러 국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0년 5월부터 현재까지 9명의 미국 및 해외의 전·현직 검사를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각국의 형사사법제도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5년에는 뉴욕 맨하탄지방검찰청의 헬렌안 검사가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위촉되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관련 연구」를 연구과제로 수행하였고, 현재는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시검찰청의 준 김 검사가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 2. 교육훈련

### 가. 기본방향

2015년 교육의 목표를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할 법무·검찰 인재 양성」으로, 중점추진과제를 '법무공무원의 소양·직무전문성 강화, 법질서 가치의 전파와 공유, 국제교류와 협력의 증진'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였다.

### 나. 교육인원

2015년에는 〈표 1〉과 같이 총 186개 과정, 312회 207,46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교육인원 182,440명 대비 13.7%(25,094명) 증가한 것이다.

### 다. 세부 추진실적

일선기관 의견수렴, 교육생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대검 등과 협의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3~5년간의 교과목 편성자료 검토, 세부교육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교과목을 시의성 있게 개편하는 등 체계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다.

2015년에는 「신임지청장리더십」, 「집행관실무」, 「계호실무」, 「기동순찰직무역량강화」 등 22개 과정을 신설하고, 「신임부장검사리더십」, 「검찰7급승진후보자」, 「교정6급승진자」 등 39개 과정을 개편

하였으며, 교육 설문 및 수요조사 등을 반영하여 25개 과정을 폐지하는 등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개편, 조정하였다.

강의를 전담하는 검사 교수 9명(파견 6명)은 부장검사급 위주로, 일반직렬(검찰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교수 15명(파견 5명)은 5급으로 보임하여 실무 경력과 각 직종별 전문성을 살린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수요원을 대상으로 교수요원 역량개발 과정을 총 3회 실시하여 교육훈련 담당자의 능력개발을 제고하는 등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 교육과정을 '분기별 교육체제'로 설계하여 단계별 심화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직자의 기본자세 확립을 위한 검사 윤리강령과 청렴사례, 인문학적 소양 향상 목적의 인문학 특강과 예술의 이해 그리고 원활한 검사실운영을 위한 검사리더십교육과정을 146시간 진행하였으며, 중증장애아동·치매노인 보호시설, 방배동 비닐하우스 마을 등 봉사활동에 21시간을 할애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을 기르도록 하였다.

사이버교육 콘텐츠 품질향상을 위하여 쌍방향 동영상 콘텐츠 등 총 28과목 159차시를 개발하였고 그 결과 196,127명이 과정을 수강하는 등 사이버교육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법무검찰상 구현으로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무행정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개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을 친근하게 느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어린이 법교실', 중소기업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률지식 제공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21C 기업법무리더과정' 및 '혁신기업법무리더과정'을 운영하였다.

한편 2015년 3월 충북혁신도시이전 후 충북대 인문학연구소와 협의하여 법무연수원 인문학 교실을 개설, 직원, 교육생,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총 11회 강좌를 실시하였으며 1,340명이 참석하였다. 이를 통해 일과시간 이후 시간을 활용하고 인문학적 소양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1〉 2015년도 교육훈련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 | | | 실 적 |
|---|---|---|---|---|---|
| 총 계 | | | | | 207,461 |
| 기본교육 | 합 계 | | | | 2,108 |
| | 승진자교육 | 소 계 | | | 1,084 |
| | | 검찰고공단승진후보자역량개발 | | | 8 |
| | | 과장(4급)후보자역량 | | | 40 |
| | | 검찰 5 급 승진자 | | | 51 |
| | | 검찰 7 급 승진후보자 | | | 290 |
| | | 출입국관리직 7 급 승진자 | | | 20 |
| | | 교정직 6 급 승진자(근속) | | | 171 |
| | | 교정직 6 급 승진자(일반) | | | 195 |
| | | 교정직 7 급 승진자(근속) | | | 184 |
| | | 교정직 7 급 승진자(일반) | | | 125 |
| | 신규자교육 | 소 계 | | | 1,024 |
| | | 검찰 신규자 | | | 192 |
| | | 보호직 9 급 신규자 | | | 74 |
| | | 출입국 9 급 신규자 | | | 41 |
| | | 검찰 전직자 등 | | | 50 |
| | | 교정직 7 급 신규자 | | | 30 |
| | | 교정직 9 급 신규자 | | | 637 |
| 전문교육 | 합 계 | | | | 1,354 |
| | 검사전문연수 | 소 계 | | | 608 |
| | | 필수교육 | 신임검사 | 신임검사오리엔테이션 | 64 |
| | | | | 신임검사전반기 | 64 |
| | | | | 신임검사후반기 | 64 |
| | | | | 로스쿨출신신임검사 | 45 |

| 구 분 | | | | 실 적 |
|---|---|---|---|---|
| | | | 공 판 기 법 | 45 |
| | | | 디 지 털 포 렌 식 | 73 |
| | | | 계 좌 추 적 · 회 계 분 석 | 76 |
| | | | 경 력 검 사 리 더 십 | 92 |
| | | | 신 임 부 장 검 사 리 더 십 | 32 |
| | | | 신 임 지 청 장 리 더 십 | 17 |
| | | | 차 장 검 사 리 더 십 | 26 |
| | | | 검 사 장 리 더 십 | 10 |
| | | 소 계 | | 266 |
| | | 선택교육 | 특 별 수 사 전 문 가 | 19 |
| | | | 공 안 수 사 전 문 가 | 23 |
| | | | 금 융 수 사 전 문 가 | 18 |
| | | | 강 력 수 사 전 문 가 | 16 |
| | | | 첨 단 범 죄 수 사 전 문 가 | 19 |
| | | | 환 경 보 건 수 사 전 문 가 | 20 |
| | | | 마 약 조 직 범 죄 수 사 전 문 가 | 22 |
| | | | 공 정 거 래 수 사 전 문 가 | 23 |
| | | | 지 식 재 산 권 수 사 전 문 가 | 19 |
| | | | 여 성 아 동 범 죄 수 사 전 문 가 | 22 |
| | | | 법 의 학 | 23 |
| | | | 조 세 · 관 세 | 22 |
| | | | 진 술 분 석 | 20 |
| | | 소 계 | | 480 |
| | | 기타교육 | 국 가 송 무 ( 송 무 검 사 ) | 43 |
| | | | 교 수 요 원 역 량 개 발 | 47 |
| | | | 검 사 맞 춤 형 인 권 교 육 | 332 |
| | | | 국 외 훈 련 검 사 사 전 교 육 | 58 |

| 구 분 | | | | 실 적 |
|---|---|---|---|---|
| | 합 계 | | | 5,436 |
| | 일반직전문연수 | 소 계 | | 605 |
| | | 검찰직교육 | 검사직무대리 | 56 |
| | | | 국가송무(검찰직) | 19 |
| | | | 청렴업무담당자전문 | 52 |
| | | | 여성및아동학대범죄수사실무 | 33 |
| | | | 집행관실무 | 35 |
| | | | 재산범죄수사실무 | 39 |
| | | | 검찰인권감수성 | 35 |
| | | | 사이버범죄수사역량향상 | 31 |
| | | | 공안범죄수사실무 | 27 |
| | | | 공판실무 | 21 |
| | | | 재산형집행실무 | 41 |
| | | | 선진조사신문기법 | 23 |
| | | | 지식재산권단속실무 | 29 |
| | | | 민사법실무 | 42 |
| | | | 사무국장리더십 | 14 |
| | | | 사무과장직무리더십 | 15 |
| | | | 수사과장직무리더십 | 14 |
| | | | 검찰실무관역량강화 | 15 |
| | | | 환경보건사범수사실무 | 25 |
| | | | 기업금융범죄수사실무 | 23 |
| | | | 정보통신실무 | 16 |
| | | 소 계 | | 846 |
| | | | 인문학교육역량강화 | 35 |
| | | | 소년사범지도감독 | 29 |
| | | | 생활지도실무 | 20 |
| | | | 청소년비행예방교육 | 30 |

| 구 분 | | | | 실 적 |
|---|---|---|---|---|
| | | 보호직교육 | 보호직인권감수성 | 40 |
| | | | 집행실무 | 30 |
| | | | 상담심리(기초) | 31 |
| | | | 성폭력,중독사범 지도감독 | 28 |
| | | | 범죄심리사(초급) | 65 |
| | | | 범죄심리사(중급) | 62 |
| | | | 성폭력,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강사양성 | 23 |
| | | | 생활지도주무역량강화 | 20 |
| | | | 전산실무 | 35 |
| | | | 행정실무 | 30 |
| | | | 인성교육운영실무 | 20 |
| | | | 담임역량강화개발 | 25 |
| | | | 심리검사 | 35 |
| | | | 분류심사 | 18 |
| | | | 보호관찰상담-중급 | 36 |
| | | | 소년수강명령강사양성 | 29 |
| | | | 관리자리더십역량강화 | 46 |
| | | | 보호직고위관리자리더십 | 19 |
| | | | 직무스트레스관리 | 30 |
| | | | 사회정착지원 | 20 |
| | | | 보호관찰조사실무 | 25 |
| | | | 심리치료 | 29 |
| | | | 전자감독지도감독실무 | 36 |
| | | 소 계 | | 356 |
| | | | 외국인체류관리실무 | 19 |
| | | | 외국인동향조사실무 | 20 |
| | | | 이민정책의이해 | 48 |
| | | | 난민심사관양성 | 18 |

| 구 분 | | | | 실 적 |
|---|---|---|---|---|
| | | 출입국관리직교육 | 출입국중견자역량강화 | 17 |
| | | | 출입국사범심사실무 | 20 |
| | | | 위변조문서감식전문 | 20 |
| | | | 출입국직무중국어 | 19 |
| | | | 출입국인권감수성 | 40 |
| | | | 한·홍콩출입국관리행정세미나 | 14 |
| | | | 국적심사실무 | 20 |
| | | | 출입국소송수행실무 | 21 |
| | | | 출입국심사실무 | 20 |
| | | | 출입국관리자리더십 | 19 |
| | | | 이민통합실무 | 20 |
| | | | 출입국고위관리자리더십 | 21 |
| | | 소 계 | | 371 |
| | | 일반직공통 | 교수요원역량개발 | 20 |
| | | | 계호실무 | 196 |
| | | | 대한민국바로알기1일교육 | 155 |
| | | 소 계 | | 3,258 |
| | | 교정직교육 | 가석방심사실무 | 56 |
| | | | 간호실무 | 73 |
| | | | 검도지도자 | 29 |
| | | | 계호실무교육 | 196 |
| | | | 교도작업운영 | 35 |
| | | | 교육담당자 | 46 |
| | | | 교정관리자 | 56 |
| | | | 교정기관장후보자 | 12 |
| | | | 교정민원실무 | 48 |
| | | | 교정식품영양 | 49 |
| | | | 교정심리전문화 | 41 |
| | | | 교정연수부힐링캠프 | 22 |

| 구 분 | | | | 실 적 |
|---|---|---|---|---|
| | | 교정직교육 | 교정위원전문 | 106 |
| | | | 교정인문학 | 82 |
| | | | 교정장비관리 | 100 |
| | | | 기동순찰직무역량강화 | 186 |
| | | | 기록물관리실무 | 39 |
| | | | 내부강사양성 | 22 |
| | | | 대한민국바로알기1일교육 | 90 |
| | | | 도서관리실무 | 32 |
| | | | 동영상편집 | 30 |
| | | | 마약류사범전담 | 30 |
| | | | 보안당직역량강화 | 78 |
| | | | 보안역량강화 | 165 |
| | | | 보안전문지도관양성 | 23 |
| | | | 분류센터전담직원 | 47 |
| | | | 분류심사실무 | 52 |
| | | | 사회복귀실무 | 39 |
| | | | 사회복귀실무(위기가족지원) | 48 |
| | | | 상담실무 | 81 |
| | | | 성폭력사범교육강사(입문) | 46 |
| | | | 성폭력사범교육강사(고급) | 40 |
| | | | 소송실무전문화 | 51 |
| | | | 수용기록실무 | 37 |
| | | | 수용자자비물품 | 51 |
| | | | 시설유지전문화 | 39 |
| | | | 신규공중보건의직무 | 24 |
| | | | 예산관리실무 | 42 |
| | | | 유도지도자 | 30 |
| | | | 응급구조실무 | 51 |
| | | | 의료실무 | 49 |
| | | | 인권감수성 | 189 |
| | | | 인사교류대상직원실무 | 18 |

| 구 분 | | | | 실 적 |
|---|---|---|---|---|
| | | | 인 사 기 획 실 무 | 36 |
| | | | 인 성 교 육 운 영 자 | 101 |
| | | | 재 난 및 안 전 관 리 | 50 |
| | | | 전 산 실 무 ( 엑 셀 ) | 60 |
| | | | 전 산 실 무 ( 파 워 포 인 트 ) | 32 |
| | | | 조 사 실 무 | 42 |
| | | | 중 국 어 과 정 | 43 |
| | | | 직 무 스 트 레 스 관 리 | 180 |
| | | | 직 업 훈 련 전 문 화 | 39 |
| | | | 취 업 창 업 전 문 화 | 39 |
| | | | 태 권 도 지 도 자 | 30 |
| | | | 퇴 직 예 정 자 | 26 |
| 기타교육 | 합 계 | | | 2,632 |
| | 민간인등 | 국 가 송 무 ( 소 송 수 행 자 ) | | 469 |
| | | 특 사 경 수 사 실 무 ( 일 반 ) | | 602 |
| | | 특 사 경 수 사 실 무 ( 단 기 ) | | 253 |
| | | 외 부 위 탁 교 육 ( 군 검 찰 관 ) | | 20 |
| | | 2 1 C 기 업 법 무 리 더 과 정 | | 100 |
| | | 혁 신 기 업 법 무 리 더 과 정 | | 52 |
| | | 중 학 생 직 업 체 험 | | 145 |
| | | 어 린 이 법 교 실 | | 45 |
| | | 로 스 쿨 일 반 실 무 실 습 | | 379 |
| | | 로 스 쿨 심 화 실 무 실 습 | | 236 |
| | | 공 익 법 무 관 ( 사 연 ) | | 53 |
| | | 공 익 법 무 관 ( 법 전 원 ) | | 147 |
| | 외국인 | 국 제 연 수 | | 131 |

| 구 분 | | | 실 적 |
|---|---|---|---|
| 사이버교육 | 합 계 | | 196,127 |
| | 검 사 | 가정폭력사범수사실무 등 156개 과정 | 892 |
| | 일반직 | 가정폭력사범수사실무 등 374개 과정 | 71,185 |
| | 교정직 | 형 집 행 법 실 무 등 70 개 과 정 | 59,712 |
| | 기 타 | 특사경수사실무·소송수행자송무 등 3개 과정 | 64,338 |

### 3. 연구활동의 활성화

정책연구용역 부분에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통해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용역과제는 「로스쿨 실무교육 관련 표준교재 개발」, 「로스쿨 신임검사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등 법무·검찰의 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 12건을 엄선하여 추진하였다. 연구용역 결과물은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였다.

2015년 9월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재난없는 안전사회를 위한 형사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제6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하여 세월호 침몰,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관심이 높아진 국민안전과 관련된 형사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형사사법분야 연구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다졌다.

법무연수원은 형사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범죄방지에 기여하고자 1984년 이래 해마다 범죄의 발생에서부터 범죄자의 처리 및 관리에 이르는 범죄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를 집적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범죄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범죄백서」를 발간하여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범죄백서(제32호)는 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집필하여, 데이터 클리닝을 통한 통계 수치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대형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특집편에 대형안전사고의 발생실태, 대형안전사고 대응관련 법령, 대형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등을 제시하였다.

국외훈련검사에게 배정할 연구과제를 법무부·대검·검찰전문지식연구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107건을 발굴, 그 중 법무·검찰에 필요한 연구과제 104건을 선정하여 국외훈련검사에게 75건을 배정함으로써 연구결과물의 활용도를 제고하였으며, 당해 연구과제에 적합한 지도관, 분임지도관,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의 객관성과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고

국외훈련검사의 연구논문 중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970질(2,910부)을 발간·배포하였다.

### 4. 국제교류의 활성화

법무연수원은 1997년부터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하여 형사사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고, 국제형사사법 공조체계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15년 현재까지 85개 과정, 84개국, 1,304명의 국제연수생을 배출하였으며, 그 중 몽골, 우즈베키스탄, 네팔 수료생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현지컨퍼런스', '동창회'를 개최하여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내실을 강화하였다. 또한 외국 법무연수기관과 교류 협력에도 노력하여 2015년 10월에는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 판사 1명을 대상으로 2주 연수과정을 운영하였으며, 11월에는 중국국가검찰관학원 교수진이 내방하여 강의를 실시하였다. 2015년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한 국제연수과정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2015년도 국제연수과정 현황

| 순번 | 과 정 명 | 기 간 | 대 상 |
|---|---|---|---|
| 1 | 중남미 출입국관리행정 | 02.26.~03.18. | 볼리비아 등 이민청 공무원 18명 |
| 2 | 중남미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 03.26.~04.15. | 볼리비아 등 법조인 19명 |
| 3 | 필리핀 출입국관리 역량강화 | 04.16.~05.01. | 필리핀 이민청 공무원 11명 |
| 4 | 베트남 출입국공무원 역량강화 | 05.07.~05.21. | 베트남 출입국공무원 15명 |
| 5 | 몽골 형사사법 및 검찰실무 역량강화 | 05.28.~06.12. | 몽골 법조인 15명 |
| 6 | 몽골법률집행대학 관리자 역량강화 | 08.20.~09.04. | 몽골법률집행대학 관리자 14명 |
| 7 | 우즈베키스탄 출입국관리행정 | 09.10.~09.25. | 우즈베키스탄 이민청 공무원 10명 |
| 8 | 라오스 출입국관리 역량강화 | 10.01.~10.07. | 라오스 이민청 공무원 15명 |
| 9 | 페루 형사사법 및 과학수사 | 10.22.~11.07. | 페루 검사 및 경찰 14명 |

## 제 8 항 홍보업무

### 1. 홍보환경 및 홍보방향

국민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모바일을 통한 홍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여론을 주도하는 신문, TV, 라디오 등 전통적 오프라인 매체의 중요성이 여전한 가운데, 이와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뉴미디어가 각광받고 있다. 뉴미디어 매체는 실시간을 기반으로 신속한 정보전달과 여론형성·확산이 용이하여

갈수록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 뉴미디어 매체는 개인형·맞춤형 서비스라는 강점과 함께 쌍방형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통적 오프라인 매체와 차별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포털사이트, SNS 등 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정책홍보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블로그 및 페이스북, 트위터,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여 국민들이 법무정책을 더욱 더 쉽고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이러한 쌍방향 성격의 미디어 환경에 맞춰, 법무부 정책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해소해주는 '온라인 브리핑', 주요 법무 정책에 대한 온라인 투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다.

## 2. 유기적인 언론 대응 시스템 구축

대변인 협의회 등을 통해 각 부처의 홍보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수동적 취재 협조보다 기자단과의 상시 접촉을 통해 관심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또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토론방, SNS 등 온라인상의 검색어 순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관련부서에 전파, 조기 대응하도록 하였다.

언론대응 절차를 정비하여 문제기사 보도 즉시 해당 부서에 신속히 전파하고 사실 확인 후 해당부서와 대변인실이 협의하여 대응 수위 및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오보 및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공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가 기자의 취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응대 전에 대변인실과 사전 협의하도록 방침을 정해 응대하고 응대 후 내용은 대변인실로 통보하도록 하였다.

기자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주요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는 법률제도, 절차, 연혁 등에 관한 취재 참고자료를 기자단에 적시에 제공하여 불필요한 오보 및 왜곡보도 방지, 업무 효율 제고, 법무부 이미지 개선 등을 도모하였다.

또한 기관장과 실·국·본부장이 주재하는 법조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출입기자 상대 정책 설명회, 간담회, 현장 투어를 적극 실시하였다.

## 3. 기관장의 언론 소통 활동 강화

기관장의 방송 출연 및 인터뷰, 기자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언론 소통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 4. 온라인 소통 기능 강화

### 가.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활발해졌다. 포털사이트는 국민 여론 형성의 장이 되었고, SNS는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커다란 기류가 되었다.

이러한 홍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네이버 지식인' 코너를 통해 실시간으로 누리꾼들의 궁금증에 답변하는 등 대국민 정책정보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또한 미디어다음·네이버(행복해지는법) 정책 블로그와 함께 SNS(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정책 블로그인 「행복해지는 법」은 2010년부터 6년 연속으로 포털 미디어다음의 우수 블로그로 선정되었고, '2015년 블로그 어워드' 중앙부처 부문 우수상 수상, '2015년 대한민국 SNS대상' 중앙부처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나. 정책 블로그 기자단 운영**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법무현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SNS를 통한 정책 홍보 및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였다. 초, 중, 고, 대학생, 직장인으로 구성된 70명의 정책 블로그 기자단은 행사 및 기획취재, 인터뷰 등 취재활동을 통한 기사 작성과 UCC제작 등 885건에 이르는 콘텐츠를 생산하여 법무 정책을 알렸다.

## 5. 주요 홍보활동 실적

대변인실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2015년에는 브리핑 15건, 인터뷰 7회, 보도자료 배포 259회, 홍보메일 발송 667건 등의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사진·동영상·웹툰·인포그래픽 등 비주얼 콘텐츠를 제작하여 법무부 홈페이지·블로그·SNS·유튜브 등을 통해 전파하고 SNS의 쌍방향성을 이용한 온라인브리핑, 모바일환경에 맞는 10초 동영상 콘텐츠 MOJ-i(모지) 등 법무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제 2 절 법 무 업 무

## 제 1 항 법무업무의 기본방향

2015년 법무부는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법제를 정비하고, 법률서비스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민주화, 복지확대 등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여론조사, 관계기관·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법제 개선 수요를 발굴하고 해당 법령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전국 로스쿨생 및 대학생 상대로 모의법령을 공모함으로써 법령 제·개정 아이템을 발굴하는 믿음의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법률시장 개방 및 변호사 급증에 따라 신뢰 및 경쟁력을 갖춘 법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국제법무 및 통일 대비 법무 업무의 전문화, 실질화를 도모하고, 상사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 등 선진 상사법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을 추진하였다.

### 1. 국민행복 증진·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법령 정비 사업 과제를 발굴하였고, 그 일환으로 망신주기식 빚독촉 행위를 처벌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아동 및 가족 보호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정지·일부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을 개정하였다. 나아가, 여행계약 취소권 신설 등 여행자 보호, 보증계약 서면화 등 보증인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불법신분세탁 방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서민을 위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다.

특히 안정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임대차에 관한 법률관계의 중요 확인사항 등을 명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분량을 간이화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집합건물법 관련 입주자들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집합건물 표준규약 모델도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2. 법무자문 기능의 강화

행정부처의 법령 제·개정에 대한 자문과 법령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정부의 업무 수행이 합법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실무자를 위한 법령 제정·개정 실무,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해설, 확정일자 업무편람을 발간, 배포하는 등 법령자문 기능을 활성화하였다.

### 3. 서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의 직장, 주소지 등 일정한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여 망신을 주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그 외로도 경제적 약자에 대하여 과징금 분납 등 과징금 납부절차를 합리화하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민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업무를 추진하였다.

### 4. 신뢰 및 경쟁력을 갖춘 법조환경 조성

'법률시장 개방'으로 거대 외국 로펌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배출'로 신규 법조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수임경쟁 과열 등 법조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고, 법조윤리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법률시장 근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법조브로커를 근절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왜곡된 수임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로 이루어진 「법조브로커 근절 T/F」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입법적·비입법적 조치를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5. 국제법무업무의 전문성 확충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세계 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 민·상사규범의 통일화 작업에 기하여, 법무부는 국제법무업무의 효율적 대응 및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선, 투자자 보호는 물론 정부의 규제권한 확보를 위하여 양자간 투자협정(BIT)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직접 참여함은 물론, 국제협약, 조약, 기타 통상관련 법률자문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국제통상분야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국제투자분쟁(ISD) 대응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는 관계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공기업 등을 상대로 현장순회 법률자문 및 분쟁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법률자문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확대·개편하여('15. 12. 현재 총 157명) 우리 기업 및 국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대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15. 8. 4.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선진 법무기반을 조성하고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 정비 등 시스템 마련에 힘쓰고 있다.

또한, 청년법조인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대한변협·세계한인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프로젝트(O.K.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6. 국가송무 수행 역량 강화

과거사 배상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응기조 마련 및 개별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법치를 실현하도록 하였고, 법률전문가인 검사·공익법무관이 실질적으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소송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송수행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송무수행 역량을 크게 강화하였다.

또한, '검사·공익법무관 직접수행 성과지표제'를 시행하여 국가소송 직접수행률을 40%까지 확대하였고, 대전고검 등 6개 고·지검에 대한 송무지도점검과 소송총괄관회의, 전국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워크숍 등을 통해 송무 업무 담당자들이 변화하는 송무환경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송무 시스템의 유지·보수 사업을 통하여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및 안정적 운영으로 국가송무의 통합관리와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7. 법무분야의 통일준비 실질화 및 탈북민 법치주의 적응지원 강화

국민들의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북한의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독일의 사례 등을 기초로 '통일 이후 법조인 통합방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통일법제 통합DB'를 통해 관련 연구결과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였다.

매월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하여 '북한 바로 알기 사랑방좌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법무부 내 북한 전문가를 확대하는데 주력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 제도를 수원지검 등에 도입하여 업무현장에서 통일 이후 통합에 관한 문제의식을 고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한변협과 협업하여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민간 분야의 통일대비 법률전문가 양성에도 힘썼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전담 법무담당관'을 신설하여 반복적인 법률상담과 법률구조공단 동행을 통한 소송구조 연계 등 북한이탈주민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매월 검사가 직접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와 정착지원사무소를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례 위주의 법률교육을 제공하였다.

## 8. 상사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 법제 개선

법무부는 다양하고 쉬운 기업 인수·합병(M&A) 방식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의 다양한 M&A 수단을 도입하고, 간이영업양수도 제도 도입 등 이사회 결의만으로 인수·합병이 가능한 간이한 절차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회사편 개정을 추진하여, 2014. 8. 입법예고, 2014. 9.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2014. 10. 26. 국회에 제출하였고, 동 개정안은 2015. 11. 12. 국회 의결을 거쳐 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공포되어 2016. 3. 2. 시행되었다.

또한 「공익신탁법」이 제정(법률 제12420호, 2014. 3. 19. 공포, 2015. 3. 19. 시행)됨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 등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과 수탁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의 종류를 구체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익신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5. 3. 17. 대통령령 제26147호로 공포하였고, 2015. 3. 19. 시행되었다.

그리고 도산 절차 중 일반회생절차의 경우, 그 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자산 및 부채 규모가 작고 이해관계인이 적은 중소기업 회생에 부담이 되므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간이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법무부는 2013. 4. 법무자문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변호사 임치용)를 구성하여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동 법률안은 2014. 3. 14.~2014. 4. 22. 입법예고를 거쳐 2014. 6. 10. 국회에 제출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 반영 법률이 2014. 12. 9. 본회에서 의결되어,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공포, 2015. 7. 1. 시행되었다.

간이회생제도 도입 이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간이회생절차 이용 가능한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 정하였고, 동 개정안은 2015. 5. 12. 대통령령 제26236호로 공포 및 시행되었다.

## 9.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선발제도의 발전 도모

2015. 1. 5.부터 1. 9.까지 제4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하였다. 제4회 변호사시험에는 2,704명이 출원하여 2,561명이 응시하였다. 심도 깊은 문제유형 연구 작업을 거쳐 새로운 법조인 선발제도의 성공적인 출발을 일구어 낸 이전의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 하에 제4회 시험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

2015. 1. 20.부터 1. 22.까지 시행된 가채점 회의에서는 세트반복형 가채점 방식으로 채점위원별 채점편차 최소화, 채점기준의 객관화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4분할 채점제를 채택하여 채점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점수조정을 통한 채점위원 간 편차를 줄여 시험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법무부는 2015. 4. 10.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65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제8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당시 입학정원의 75% 이상을 합격시키기로 한, 결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제4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법무부가 위와 같이 공표한 합격률에 근접하면서도 시험의 검증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네 차례의 변호사시험 시행 경험을 통해 응시생 및 합격자 분포 등 시험 관련 자료가 축적됨으로 인하여 향후, 변호사시험 운영 방향에 관한 실질적인 구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의 법조인 윤리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요청도 법조윤리시험에 고려되었다.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무윤리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 등에 관한 실질적인 평가를 통하여 직업윤리를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2015년도에는 2,422명의 응시생 중 2,328명이 합격하여 96.1%의 합격률에 도달하였다.

2017년도까지의 감축인원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법시험의 경우 2015. 11. 13. 제57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53명을 선발하였다.

그 외에 시험위원에 대한 출제오류 사례 교육, 출제 과정에서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분리를 통한 상호검증, 시험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정답을 확정하는 등 문제오류를 방지하여 복수정답 인정사례는 1건도 없었다.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및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 통계 등을 공개하여 시험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 제 2 항 국민행복 증진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및 서민을 위한 법 · 제도 개선

### 1. 개 요

법무부는 변화된 경제 · 사회적 여건에 부응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2015년에는 「민법」 등 총 55건의 법령을 제 · 개정하는 등 중요 법률에 대한 정비 작업을 추진하였다.

### 2. 국민행복 증진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주요 법령 정비

#### 가. 민법 등 정비

여론조사,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여 국민의 행복이 증진되고, 믿음의 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다.

여행이 국민 생활 속에 대중화됨에 따라 여행자 보호를 위해 민법상 전형계약의 한 유형으로 여행계약을 신설하여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 또는 감액청구권을 명시하고, 일반 서민의 보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계약 서면 작성을 의무화하고, 보증채권자에게 정보제공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을 개정하였고,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라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나아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31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민법상 일본식 표현을 제거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개선하며, 현대 문법에 맞도록 문장을 개선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나.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 정비**

상가권리금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권리금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고,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구분점포 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집합건물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의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정리한 '집합건물법 해석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나아가, 집합건물 층간소음 분쟁 완화, 부당 관리비 해소, 건물 노후화에 따른 법제 개선 등 집합건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건물법 개정위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다. 국제 중재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분쟁을 저렴하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고, 중재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국제중재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중재판정 집행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라.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법무부는 로스쿨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법령안의 작성·발표를 통해 민상사 등 법령에 관한 전문적·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정비와 법무정책 수립에 연계하여 국민이 믿고 따르는 '믿음의 법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생들에게 평소에 관심 있던 사항에 대하여 입법을 실제로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에 관한 지식을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전달하고, 제출된 모의 법령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내실 있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기타**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가능하게 하여 경량항공기 소유자의 재산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을 개정하였다.

## 제 3 항 법무자문 기능의 강화

### 1. 개 요

법무부는 정부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에 대한 자문과 법령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하여 정부의 업무수행이 합법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정부정책과 관련한 현안문제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 차원에서의 연구·분석자료로 기본법인 민법의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법무부 민법개정 시안과 관련된 저서 5권을 발간하였고, 실무자의 법령제·개정 절차와 관련된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자를 위한 법령 제정·개정 실무를 발간, 법무부 소속 실·국·본부에 배포하여 법무자문기능을 활성화 하였고, 국민

실생활의 편의와 직결되는 법령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는 확정일자 관련 법률관계를 해설한 확정일자 업무편람을 개정하여 배포하였고, 법률관계가 복잡한 집합건물법에 대하여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석사례집,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해설서를 발간·배포하였다. 또한, 법인 관리·감독 주무관청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을 발간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실명법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부동산실명법 해석사례집을 발간하였다. 또한, '15. 5. 13.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위임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사무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임대차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다.

2015년도에도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4,996건의 법령자문, 185건의 유권해석을 하는 등 법무자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정부의 법령 제정·개정 작업과 법령 관련 업무수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 2. 법령자문과 유권해석

2015년도에 수행한 법령자문과 유권해석의 실적은 다음 〈표 1〉과 같으며, 법령자문 질의 내용은 행정자치,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환경, 고용노동, 국토교통, 금융 등 관계 법령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1〉 연도별 법령자문 및 유권해석 현황

(단위 : 건)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1,966 | 2,015 | 2,831 | 3,532 | 3,368 | 4,083 | 3,754 | 5,106 | 4,626 | 4,996 |
| 법령자문 | 1,947 | 2,012 | 2,825 | 3,530 | 3,365 | 4,072 | 3,740 | 5,096 | 4,458 | 4,811 |
| 유권해석 | 19 | 3 | 6 | 2 | 3 | 11 | 14 | 10 | 168 | 185 |

## 3. 주요법률문제 검토

전년도에 이어 2015년도에도 국내외 주요 사건 및 법률문제에 대하여 연구·검토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였다. 특히, 2015. 9.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법률자문의 충실도를 제고하였고, 시의성 있는 법률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법률적 체계·외국인 및 단체의 인격표지권 인정 여부·인격표지권의 이용허락에 관한 법률적 쟁점 검토', '개정민법상 전자보증 불허의 문제점' 등이 시의성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법률자문을 구한 구체적 성과이다.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그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관리주체인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각 수행하는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요법률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 4. 법무자료 발간

매년 법무실은 외국법제 및 전문학술지 등을 조사 , 연구하여 법무자료집으로 발간, 유관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입법부, 사법부, 각급 도서관 등에 배포하였다.

발간된 법률자료 중 「통상법률」은 국제공법 성격의 국제통상법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법이나 국제투자법 등 국제사법 분야를 망라한 연구논문과 저명인사의 시론 등 특별기고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격월간 전문 학술지이며, 「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는 법무부 정책 및 사업, 한국의 최신 법령, 판례와 더불어, 한국 문화 및 생활 소개, 법조계·경제계 유명인사의 인터뷰를 영문으로 소개하고 있는 계간 간행물이다.

이밖에, 2010년 창간한 「통일과 법률」은 각 호마다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법률문제와 정책에 관하여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이 기고한 연구논문 4~5편과 저명인사의 특별기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법제 전문 학술지 이다.

마지막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는 상사법 전 분야에 걸친 주제를 다루는 KCI(한국학술지 인용색인)에 등재된 전문 법학 학술지로서, 논단, 실무논단, 입법자료, 판례평석, 특별기고 등으로 구성된다.

〈표 2〉 2015년 발간 법무자료 목록

| 자 료 명 | 발간일 | 비고 |
|---|---|---|
| 통상법률(통권 제121호) | 2015. 2. | 국제법무과 |
| 통상법률(통권 제122호) | 2015. 4. | |
| 통상법률(통권 제123호) | 2015. 6. | |
| 통상법률(통권 제124호) | 2015. 8. | |
| 통상법률(통권 제125호) | 2015. 10. | |
| 통상법률(통권 제126호) | 2015. 12. | |
| 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통권 제19호) | 2015. 3. | |
| 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통권 제20호) | 2015. 6. | |
| 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통권 제21호) | 2015. 9. | |
| 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통권 제22호) | 2015. 12. | |
| 통일과 법률(통권 제21호) | 2015. 2. | 통일법무과 |
| 통일과 법률(통권 제22호) | 2015. 5. | |
| 통일과 법률(통권 제23호) | 2015. 8. | |
| 통일과 법률(통권 제24호) | 2015. 11. | |
|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 69호) | 2015. 1. | 상사법무과 |
|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 70호) | 2015. 4. | |
|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 71호) | 2015. 7. | |
|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 72호) | 2015. 10. | |

### 5. 법무자문위원회 운영

법무자문위원회는 법무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그동안 법무부 소관 각종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꾸준히 지원하여 왔다.

2007년 법무자문위원회규정과 법무자문위원회운영규칙을 개정하여 과거 법무부차관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던 것을 법조계 최고 원로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였고, 민법·상법·기타법 등 3개 이상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확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법제 구축을 위한 핵심 자문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 9. 2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진수 교수를 위원장으로, 7개 로스쿨과 법대 교수 12명, 변호사 3명을 위원으로 하여 16명의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면서 여성 위원을 7명으로 확대 위촉하여 자문기구로 활용하였다.

또한, 특정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국제법무자문특별분과위원회, 가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집합건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개정특별분과위원회 등 7개의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민사법제, 형사법제 개선, 가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법무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특히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는 6개 전문 소위원회를 매월 개최하며 분야별 북한법령의 실태와 남북법률 통합 방안 마련에 대해 심층연구하고 있다.

## 제 4 항 신뢰 및 경쟁력을 갖춘 법조 환경의 조성

### 1. 개 요

법조계의 대표적 비정상 사례인 법조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법조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법조브로커 근절 T/F」를 구성하는 등 법조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공증인과 보조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부실공증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꾸준히 실시함으로써 공증사무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공증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공증 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높였다. 또한, 로스쿨 수료자 신규 배출로 공익법무관 임용대상 자원이 급증함에 따라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업무 수요를 충족하는 공익법무관 배치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무가 가능하게 하였다.

### 2. 깨끗한 법률시장 조성

국내 등록된 변호사의 수가 2만 명을 넘어서고, 치열한 사건 수임 경쟁 속에 법조브로커의 활동을 억제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와 함께 「법조브로커 근절 T/F」를 구성하여 변호사 사무직원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향후 「법조브로커 근절 T/F」에서는 구체적인 근절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비입법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 3. 변호사 징계 및 업무정지명령

2015. 12. 31. 현재 등록 변호사는 20,531명이고, 그중 개업 변호사는 17,424명으로 개업 변호사의 경우 전년에 비하여 1,470명 증가하였다. 또한 법무법인의 증가 현상도 뚜렷하여 2015. 12. 31. 현재 전국의 법무법인 숫자는 893개에 이르렀고, 구성원 가입·탈퇴 등에 따른 법무법인 정관변경 인가 등 관련 업무도 증가되었다.

2015년 중 변호사에 대한 징계현황을 보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는 소속 변호사 79명에 대하여 징계 결정을 하였으며,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는 위 징계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한 40명의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 결정을 하였다.

〈표 3〉 지역별 변호사 등록 및 개업 인원 현황

(2015. 12. 31. 현재)

| 구분 \ 변호사회 | 계 | 서울 | 경기북부 | 인천 | 경기중앙 | 강원 | 충북 | 대전 | 대구 | 부산 | 울산 | 경남 | 광주 | 전북 | 제주 |
|---|---|---|---|---|---|---|---|---|---|---|---|---|---|---|---|
| 등 록 | 20,531 | 15,190 | 360 | 528 | 952 | 160 | 182 | 493 | 590 | 758 | 183 | 307 | 474 | 261 | 93 |
| 개 업 | 17,424 | 12,750 | 319 | 478 | 808 | 139 | 158 | 433 | 538 | 648 | 169 | 276 | 403 | 230 | 75 |

## 4. 공증의 활성화 및 적정성 제고

2015 12. 31. 현재 전국에 357개소(공증사무 대행청 12개소 포함)의 공증사무소가 있으며, 공증사건수는 3,758,294건에 달하였다.

법무부에서는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 161개 공증사무소 및 8개 재외공관에 대한 공증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고, 공증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꾸준히 모색하였다.

또한,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사항이 적발된 공증인에 대한 엄격한 징계로 공증사무의 적정성을 도모하였으며, 공증제도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증홍보 블로그 및 SNS와 연동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유지·보수하였다.

### 가. 공증 현황

공증사무소는 주로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증사무소가 없는 12개 지역은 관할 검찰청 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공증 처리 실적은 총 3,758,294건이며, 내용별로 보면 공정증서 작성 303,793건, 정관 인증 3,195건, 법인의사록 인증 383,747건, 사서증서 인증 722,740건, 확정일자 부여 2,253,322건, 기타 91,497건으로 전국 370개 공증사무소의 연 평균 처리건수는 10,157건이었다.

전국 공증사무소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 나. 공증사무 지도 감독

국내 공증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2015. 1. 8.부터 12. 31.까지 직원 2명으로 감사반을 편성, 전국 161개 공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재외공관 공증업무 처리실태를 파악·지도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서 주 멕시코대사관 등 8개 재외공관에 출장하여 공증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공증인(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 101명에 대하여 징계(과태료 55명, 견책 16명, 주의촉구 30명)를 하는 한편, 경미한 과오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지시하여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였다.

〈표 4〉 전국 공증사무소 현황

(2015. 12. 31. 현재)

| 구분 / 지역 | 임명공증인 | | 인가공증인 | | | | 대행청 |
|---|---|---|---|---|---|---|---|
| | 정 원 | 현 원 | 정 원 | 현 원 | | | |
| | | | | 법무법인 | 합동법률사무소 | 계 | |
| 계 | 86 | 73 | 190 | 245 | 27 | 272 | 12 |
| 서 울 | 25 | 23 | 103 | 122 | 9 | 131 | - |
| 의 정 부 | 3 | 3 | 6 | 11 | - | 11 | - |
| 인 천 | 6 | 6 | 9 | 15 | 1 | 16 | - |
| 수 원 | 10 | 10 | 17 | 28 | - | 28 | - |
| 춘 천 | 3 | 2 | 2 | 2 | 1 | 3 | 2 |
| 대 전 | 5 | 5 | 8 | 8 | - | 8 | 1 |
| 청 주 | 3 | 2 | 3 | 7 | - | 7 | 1 |
| 대 구 | 7 | 5 | 9 | 14 | 5 | 19 | 3 |
| 부 산 | 7 | 4 | 11 | 10 | 5 | 15 | - |
| 울 산 | 3 | 2 | 2 | 6 | - | 6 | - |
| 경 남 | 4 | 4 | 5 | 8 | - | 8 | 2 |
| 광 주 | 6 | 3 | 9 | 10 | 3 | 13 | 2 |
| 전 주 | 3 | 2 | 4 | 3 | 2 | 5 | 1 |
| 제 주 | 1 | 1 | 2 | 1 | 1 | 2 | - |

### 다. 재외공관 공증 업무 지원

해외유학 및 국제거래의 증가로 재외공관 공증에 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재외공관 공증담당 영사관의 업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6. 7. 법무부 홈페이지에 '재외공관 공증마당'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공증 관련 질의사항이나 개선 및 건의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처리하고 있고, 2013년 재외공관 공증담당 영사관의 업무지침서인 「재외공관 공증업무 편람」개정판을 발행하여 전 세계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통일적인 공증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2015년 한 해 동안 멕시코,

콜롬비아, 이탈리아, 체코, 영국, 캐나다(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소재의 대사관 및 영사관 8개소에 대한 재외공관 공증감사를 실시하여 공증업무를 지도·감독하였다

### 5. 공익법무관 관리의 내실화

2015년에는 18·19기 공익법무관 149명이 전역하는 대신 24·25기 공익법무관 200명이 임용되어 공익법무관 전체 인원은 전년대비 51명이 증가한 581명이 되었다. 이들 공익법무관 중 321명은 국가소송 등을 수행하는 송무업무에 배치되고 260명은 법률구조 업무에 배치되었다.

〈표 5〉 연도별 공익법무관 인원

| 구분 \ 연도 | 2010 (16기) | 2011 (17기) | 2012 (18기) | 2012 (19기) | 2013 (20기) | 2013 (21기) | 2014 (22기) | 2014 (23기) | 2015 (24기) | 2015 (25기) |
|---|---|---|---|---|---|---|---|---|---|---|
| 임 용 | 72 | 73 | 84 | 65 | 104 | 62 | 119 | 98 | 53 | 147 |
| 총 원 | 231 | 211 | 229 | 294 | 325 | 387 | 434 | 530 | 499 | 581 |

## 제 5 항 국제법무업무의 전문성 확충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 1. 국제법무교류 지원

#### 가. 국제회의 및 협상 참가

법무부는 국제법 및 국제통상 분야의 최신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하며, 각종 국제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FTA와 BIT 협상, UNCITRAL 본회의 및 실무회의를 포함한 각종 국제회의에 총 22회 참가하였다.(세부내역은 자료 Ⅷ. 국제교류현황 참조)

#### 나. 타부처 법률지원 수행

법무부는 국제조약 협상 및 체결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한 타부처의 법률자문 요청에 대응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는 바, 2015년도에는 〈표 6〉에서 보듯 총 28건의 법률자문을 시행하는 등 타부처에 대한 법률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표 6〉 2015년도 법률자문 현황(28회)

| 연번 | 월일 | 제 목 | 요청기관 | 담당검사 |
|---|---|---|---|---|
| 1 | 1. 7. | 한-베 FTA 제9차 협상 이후 투자 협정문(안) 검토의견 회신 | 산업통상자원부 | 최태은 검사 |
| 2 | 1. 26. | 한-뉴 자유무역협정(FTA) 한글본 검독 의견 회신 | 산업통상자원부 | 김종우 검사 |
| 3 | 1. 30. | 한-베 FTA 투자 협정문 한글본 검독 의견 | 산업통상자원부 | 최태은 검사 |
| 4 | 1. 30. | 한-뉴 FTA 투자 협정문 한글본 검독 의견 | 산업통상자원부 | 최태은 검사 |
| 5 | 2. 17. | 한-뉴 FTA 관련 법령 정비 검토 요청 회신 | 산업통상자원부 | 김종우 검사 |
| 6 | 3. 9. | 한·중·일 FTA 제7차 협상 대비 지재권 협정문(안) 검토의견 회신 | 산업통상자원부 | 최태은 검사 |
| 7 | 3. 17. | 한-미 FTA ISD 재협의 관련 검토의견 회신 | 산업통상자원부 | 최태은 검사 |
| 8 | 4. 1. | 한-중 FTA 투자 협정문 한글본 검독 의견 | 산업통상자원부 | 최태은 검사 |
| 9 | 4. 13. | 한-베 FTA 관련 법령정비 검토 회신 | 산업통상자원부 | 노선균 검사 |
| 10 | 4. 14. | 한-베 FTA 투자 협정문 한글본 수정본 검독 의견 | 산업통상자원부 | 최태은 검사 |
| 11 | 5. 4. | UNCITRAL투명성 규칙 검토의견 회신 | 산업통상자원부 | 최태은 검사 |
| 12 | 5. 4. | 한-캐나다 과학기술협력협정 문안 검토 회신 | 외교부 | 소정수 검사 |
| 13 | 5. 15.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8차 협상 대비 지재권 협정문(안) 검토의견 회신 | 산업통상자원부 | 최태은 검사 |
| 14 | 5. 18.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투자 협정문(안) 검토의견 회신 | 산업통상자원부 | 최태은 검사 |
| 15 | 5. 20. | 한-중 FTA 투자 협정문 한글본 수정본 검독 의견 | 산업통상자원부 | 최태은 검사 |
| 16 | 5. 28. | 한-중미 FTA 투자 협정문(안) 검토의견 회신 | 산업통상자원부 | 최태은 검사 |
| 17 | 6. 9. | 한-캐나다 과학기술협력협정 문안 추가 검토의견 제출 | 외교부 | 소정수 검사 |

| 연번 | 월일 | 제 목 | 요청기관 | 담당검사 |
|---|---|---|---|---|
| 18 | 6. 15. | 국제스텝기구 설립 협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 | 문화체육관광부 | 소정수 검사 |
| 19 | 6. 22.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투자 협정문(안) 검토의견 회신(2) | 산업통상자원부 | 최태은 검사 |
| 20 | 6. 22.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 설립 협정문(안)에 대한 회신 | 산림청 | 소정수 검사 |
| 21 | 7. 31. |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정부간 협정서(안) 의견 조회 회신 | 국토교통부 | 소정수 검사 |
| 22 | 8. 18. | 한·중·일 FTA 제9차 협상 대비 투자 협정문(안) 검토의견 회신 | 산업통상자원부 | 최태은 검사 |
| 23 | 9. 23. | 한-호주 FTA 제1차 공동위원회 대비 UNCITRAL 투명성 규칙 검토의견 회신 | 산업통상자원부 | 최태은 검사 |
| 24 | 9. 25. |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기구 설립협정문(안) 검토의견 회신 | 기획재정부 | 소정수 검사 |
| 25 | 9. 30. | 한-카메룬 투자보장협정 UNCITRAL 투명성 규칙 적용여부 검토의견 회신 | 외교부 | 최태은 검사 |
| 26 | 10. 7.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0차 협상 대비 지재권 협정문(안) 검토의견 회신 | 산업통상자원부 | 최태은 검사 |
| 27 | 11. 16. | 투자보장협정 표준문안 개정안 검토의견 회신 | 외교부 | 최태은 검사 |
| 28 | 12. 2.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지재권 협정문 검토의견 회신 | 산업통상자원부 | 최태은 검사 |

**다. 국제교류의 증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법무행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법무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법조인의 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외국 유력 법조인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국가간 협력 및 국익 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예방 차원은 물론 법무협력협정, 상호 자료교환협정의 체결과 같은 실무적 차원에서의 교류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15년 법무부를 방문한 해외 주요 인사의 현황은 자료 Ⅷ. 국제교류현황 참조).

아울러 적극적인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우리의 선진 법무정책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노력도 경주하고 있는바, 그 일환으로 2013. 5. 에는 법무부차관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법률포럼에 참석하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의의 및 평가'에 대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

**라.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

법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발전된 선진 법제도를 소개하여 입법작업을 지원하는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이 2015년에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이를 통하여 국가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킴은 물론,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시 유리한 통상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한국거래소(KRX)와 공동으로, 증권거래소를 새로 개장하려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증권법 정비 지원 작업을 추진하였고, 2012년에는 라오스와 벨라루스, 2013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 및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실시하여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라오스의 경우 위 자문내용이 반영된 증권법이 새롭게 마련되어 2012. 12. 라오스 국회를 통과하였고, 동 법은 2013. 1. 17. 공포되어 2013. 3. 17.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법무부의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사업'을 통해 해당국에 선진화된 법률이 제정된 첫 번째 사례이다. 이에 대한 후속지원으로 2015. 11. 증권법 관련 실무자 역량강화 세미나를 실시하여 라오스 증권시장 육성에 기여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하였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2015. 9. UNCITRAL 아태사무소와 공동으로 남태평양 도서국가에 모델 중재법 등 UNCITRAL 모델규범의 전파를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15. 9.부터 파라과이 법무부의 요청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의 진흥과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파라과이 투자법제 개선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마. ISD 대응시스템 구축

우리나라의 발효된 88개 BIT 및 한-미 FTA 협정 등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효과적인 ISD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8. 12. 부터 7개 정부 관련부처와 ISD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7회의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2007. 11.부터 2014. 12.까지 총 6회 ISD 관련 국제세미나를 열어 각국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자 유치로 인한 국제투자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기업·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을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으로 확대·개편하여 변호사, 교수 등 총 150명의 자문위원들이 국제투자분쟁은 물론 국제지식재산권분쟁 사례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변호사, 박사 학위 소지자 등 4명의 국제법 전문연구위원을 신규 선발하여 세계 각국의 ISD 대응체제 분석, 주요 분쟁 사례 연구, 세계 주요 중재인의 정보수집 및 국제중재전문가 양성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2012년 11월에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ISD를 제기함으로써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론스타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관계부처 TF'(2012. 5. 구성)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2012. 6.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분쟁대응단'(단장 : 법무실장)을 통하여 실제 소송업무의 수행, 국내·외 자문로펌과의 협의, 자료수집 및 정리, 대응논리 개발, 관계 부처간 실무협의 등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 바. 지자체·해외진출 우리기업 국제투자 분쟁 예방과 해결 적극 지원

'론스타 사건'을 기점으로 우리 정부에 대한 ISD 제기 및 그 결과에 대한 대처는 물론,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공기업·지자체 및 기업에 대한 ISD 대응방안 교육, ISD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를 통하여 투자유치 단계에서부터 분쟁을 예방하려 노력하였고, KOTRA 등과 연계하여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찾아가 ISD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현지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한 법적 지원 활동을 추진하였다.

예컨대, 2009. 10.부터 2015. 12.까지 총 78여회에 걸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및 공사 등을 대상으로 ISD 순회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고, 2009. 12.부터 2015. 12.까지 영국 런던, 터키 이스탄불 등 32개 도시에서 총 39회 ISD 설명회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사.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면서 국제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해짐에 따라,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운영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계약서 검토, 현지 법령 해석 등의 무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법률자문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3년 64건, '14년 133건에 이어 '15년에는 231건에 이르렀다.

또한, 법무부는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자문단 소속 검사, 변호사 등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등의 분쟁 관련 예방 및 대응 방안을 교육하고, KOTRA·특허청 등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해외 현지에서 국제투자규범 및 현지 법령정보 관련 설명을 하는 등 「찾아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15년 국내 21회, 해외 4회 개최)

한편, 2010년부터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제투자·비즈니스 가이드」와 「알기 쉬운 수출계약서 작성 실무」 총 15종을 발간·배포하였으며, 2015년에는 「국제투자·비즈니스 가이드」 6종을 개정하였다.

### 아. 법률시장 개방 법제화 및 관리·감독 제도 구축

한-EU, 한-미 FTA 등 통상협상에서 우리 법률시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외국법자문사법」이 제·개정되었으며, 동 법의 제정(2009. 9. 26. 시행)으로 법률시장 1단계 개방, 1차 개정(2011. 4. 30. 시행)으로 2단계 개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2015. 3. 11.~3. 23.), 입법예고(2015. 3. 27.~5. 7.), 성별영향분석평가(2015. 4. 10.), 부패영향평가(2015. 4. 21.), 법제처 심사(2015. 7. 16.),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2015. 8. 4.)되었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통하여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여 외국법 사무 및 일부 국내법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2015. 12. 현재 자격승인·설립인가를 신청한 외국변호사는 128명이고, 외국로펌은 33개로, 그 중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법자문사는 94명(미국법자문사 77명, 영국법자문사 16명, 프랑스 법자문사 1명),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로펌은 26개(미국로펌 21개, 영국로펌 5개)이다.

한편, 2014년 12월부터는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법무부는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2. 5.과 2015. 4.에는 중국 상해에서, 2012. 12.과 2014. 4.에는 홍콩에서 각각 국내로펌 합동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청년법조인들을 해외 로펌, 국내 로펌 해외사무소 및 국제기구 등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하반기에 14명, 2013년 46명, 2014년에 84명, 2015년에 57명을 선발·파견함으로써 국내 신규 법조인들이 해외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2014. 9.부터는 청년법조인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협, 세계한인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국제법무에 정통한 변호사들을 강사진으로 섭외해 청년법조인들을 교육하고 있다. 약 1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우수 청년법조인들을 2015년 하반기 해외 로펌, 국내 로펌·기업 해외사무소, KOICA 해외사무소 등 여러 기관에 장기(3개월~1년) 인턴으로 파견하여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2012년 하반기부터 계속 중인 단기(2~4주) 인턴 과정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동북아 경제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 등 이점을 활용해 국제중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무부 국제법무과 소관 공익법인으로 「서울국제중재센터(이사장 신영무 전 변협회장)」를 개관하였고 「서울국제중재센터」에는 2015. 12. 현재 국제상업회의소(ICC), 런던상사중재원(LCIA),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AAA/ICDR),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5개의 국제중재기구가 입주하고 있다.

**차. 통상전문 학술지 '통상법률' 발간**

법무부는 1995. 2. 1. 국제통상 전문학술지인 '통상법률'을 창간하여 격월로 발간해오고 있는 바, 장관급 고위인사의 시론 및 국제통상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1995년 1호부터 2011년에 1호부터 100호까지 게재되었던 논문의 총목록을 정리한 통권 100호를 거쳐 2015. 12. 현재 126호에 이르기까지, '통상법률'은 국제상사중재 및 각국의 통상·환율 정책, 국제 환경법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다룸으로써 한국의 국제통상 관련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카. '국제법무자문위원회' 운영**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민·관의 역량을 모아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적 안착과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하여 2011. 5. '국제법무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시대의 도래라는 대내·외적 변화에 직면하여, '국제법무자문위원회'는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법률가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며,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전문변호사, 로스쿨 교수, 경제단체, 사내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산업 유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본 자문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바, 2015. 12. 현재 총 7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 2. 국제거래규범 형성과정에 참여

### 가. 국제회의 참석

국제교류 증대와 민·상사 규범의 세계적 통합 양상에 따라 각종 규범의 통일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 이러한 현상은 중재, 도산, 운송, 담보,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제 신인도 제고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규범의 적시 가입이 필요하고, 국내법제 선진화를 위해서도 국제통일규범의 도입 및 수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법무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민·상사 통일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안과정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논의결과를 분석하여 국내에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바, 그 일환으로 2015년도에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회의에 13회 참가하였다.

### 나.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 및 활동 강화 방안 시행

법무부는 2002. 2. 로펌변호사, 교수, 판·검사 등 각계의 전문가를 망라한 '국제거래법연구단'을 발족하여 여러 분과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이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위 연구단은 이미 제정된 국제규범의 도입을 위한 연구뿐 아니라 새로운 규범의 제정을 위한 각종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석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국제규범의 제정단계에서부터 우리의 국익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2010. 4. 국제거래법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정부대표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위하여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연구단 운영을 보다 체계화하였다.

### 다. UNCITRAL 아태 지역사무소 개소

2011. 7. 7.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UNCITRAL 제4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UNCITRAL 아시아 태평양 지역사무소 유치지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2. 1. 10. 인천 송도에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가 개소되었고, UNCITRAL 아·태 지역사무소 개소는 법무부, 외교부 등 각 정부부처의 지속적인 지원과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려는 인천시 등 지자체의 노력이 조화롭게 성공한 사례로써 국제 법률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민·상사법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법무부는 지난 2002년부터 6개 실무작업반

회의에 정부대표를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등 국제적인 논의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 세계 최초로 UNCITRAL의 지역 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아·태 지역에서 국제거래규범의 연구·전파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확보해 나가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법무부와 UNCITRAL 아·태사무소는 모두 2차례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먼저, 2015. 6. 4.~5.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법무부와 UNCITRAL 아·태사무소 등이 공동으로 '국제 물품 매매 거래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유엔 협약'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5. 11. 3.~4. 법무부, UNCITRAL 아·태지역 사무소, 국제상업회의소(ICC) 및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및 이행법률 제정

양육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에 발맞춰(2012. 2. 협약 가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부적으로 협약의 이행 업무를 총괄할 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을 선임하고, 그 밖에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절차와 재판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이행법률 제정이 추진되었다. 동 이행법률은 2011. 12. 30. 제18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폐기 후 재추진된 법안으로, 관계부처 협의(2012. 7. 13.~7. 23.), 입법예고(2012. 8. 2.~8. 13.), 성별영향분석평가(2012. 8. 10.~8. 13.), 부패영향평가(2012. 7. 25.~8. 24.), 법제처 심사(2012. 9. 12.~9. 17.),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2012. 10. 24.)되었으며, 2012. 11. 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동 법 부칙 제1조는 협약 가입일로부터 법률이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2. 12. 외교통상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내에서는 2013. 3. 1.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행 법률도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기존 가입국이 신규 가입국의 가입을 수락해야 양국간 발효되는데, 2015. 12. 현재 기존 가입국 93개국 중 29개국이 우리나라의 가입을 수락하였고 지속적으로 가입국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 제 6 항 송무수행의 효율성 향상

### 1. 개 요

2015년 국가소송은 전년 대비하여 접수건수는 10.9% 증가, 패소율은 3.0% 감소하였고, 행정소송은 전년 대비하여 접수건수는 1.8% 증가, 패소율은 1.4% 증가하였다.

### 2. 소송수행 역량 제고

#### 가. 과거사 배상의 공정성 회복

그동안 다양한 유형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원칙과 기준의 부재로 과거사 배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부당하게 확장되어 온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과거사 사건 등이 사법정의와 형평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가배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였고, 다양한 법리 개발과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과거사 소송 승소율 제고에 기여하였다.

**나. 법률전문가에 의한 국가소송 수행 확대**

국가의 중요정책·재정과 직결되는 소송이 증가하고 사건이 고액화·대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국가소송 중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소가 5,000만 원 이상 사건 및 중요사건에 대하여 각 검찰청의 검사·공익법무관이 실질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국가패소 방지에 기여하였다.

**다. 송무지도점검의 내실화**

소송업무 수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송무지도점검반을 편성, 청주지검(4월), 광주고검(5월), 수원지검(7월), 춘천지검(7월), 대전고검(10월), 울산지검(11월) 등 6개 검찰청에 대하여 국가소송·행정소송·국가배상 업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송무지도점검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주요 업무개선 사항으로 첫째, 국가소송 직접수행률 저조에 대하여 검찰청에 관련 지시공문 시행·점검 및 '검사·공익법무관 직접수행 성과지표제' 시행 등을 통해 국가소송 직접수행률을 '14년 17.9%에서 '15년 40.0%로 끌어 올렸고, 둘째, 송무수행 관련 자료 미비로 인한 송무행정의 비효율성 및 소송해태 사례 발생에 대하여 국가송무 실무자간 질의응답시스템 구축 및 '송무관련 훈령·예규·지시집' 발간 배포 등을 통해 소송수행자의 송무수행 역량을 강화하였고, 셋째, 소송수행청의 소송비용 자비 납부관행 등 송무관련 제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송무지도점검 결과 회신'을 통해 소송비용 납부방식 지시 이행을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송무관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라.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워크숍 개최**

2015. 11. 13. 전국 검찰청 근무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등 100여명이 모여 송무업무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고·지검 및 수행청 파견 공익법무관의 국가·행정·헌법소송의 직접 소송수행 현황 및 개선 방안 등을 비롯하여 공익법무관이 수행하는 국가송무 전반에 걸쳐 송무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하였고, 그밖에 법무부와 일선 송무수행청간 원활한 소통채널 확보, 공익법무관의 역할증대 방안 논의 등을 통하여 공익법무관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 송무업무유공자 포상**

각급 행정청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기준및절차에관한지침(2011. 5. 3.시행)」에 따라 송무 기여도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소송수행 유공자 64명, 관리업무 유공자 37명 등 총 101명에 대하여 3,0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바.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2008년 출범한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국가·행정·민사소송 및 헌법재판 사건의 수행을 통하여 국가재정 손실방지 및

정책의 순조로운 추진에 기여하는 등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공단의 2015년 수임사건은 2,072건으로 전년대비 16.8%가 증가하였고, 평균 승소율도 75.3%로 전년대비 1.3% 증가하는 등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단의 전문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 3. 송무업무 실적

### 가. 국가소송

국가소송사건은 총 접수건수(구수+신수)가 2008년까지 장기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과 2010년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15년도에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14,874건이 접수되었다.

패소율은 국가소송의 검사·공익법무관 등 법률전문가에 의한 직접수행, 전국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워크숍, 법무연수원 국가송무과정 소송수행자 교육, 소송총괄관회의, 송무지도점검 등 송무수행 역량강화를 통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5년에는 전년 대비 3.0% 감소한 13.5%의 패소율을 보였다.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제6장 통계 : 표 1-12〉와 같다.

### 나. 행정소송

행정소송사건은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추세이며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38,882건이 접수되었다.

행정소송사건 패소율은 2007년 이후 꾸준한 감소추세를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하였으며, 2015년 패소율은 2014년 대비 1.4% 증가한 13.1%를 기록하였다.

행정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제6장 통계 : 표 1-16〉과 같다.

### 다. 국가배상

국가배상신청사건(한·미주둔군지위협정 사건 포함)은 1992년 이후 다소간의 증감을 보이다가 2000. 12. 29. 국가배상법 개정(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이후 대폭 감소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4,149건을 접수하여 그 중 1,057건을 인용하고, 1,896건을 기각하는 등 총 3,047건을 처리하였다.

### 라. 행정심판

2015년에 208건의 행정심판사건을 접수하여 165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내역은 인용 3건, 기각 65건, 각하 85건, 취하 10건, 이송 2건이었다.

# 제 7 항 헌법재판의 효율적 수행

## 1. 개 요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의 해석·적용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헌법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내리는 판단으로서 이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확립하여 왔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 상황 속에서 법무부는 헌법소송 주무부처로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뿐만 아니라 타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사건에서도 의견서 작성 등을 담당하며, 권한쟁의 사건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정부를 대표한다. 또한 의견서 작성, 각종 회의 개최 및 참석 등 유관 행정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헌법재판에서 정책과 입법의 정당성 등 정부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왔는바, 앞으로도 국가정책의 수립·시행에 앞서 그것이 헌법 및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 2. 헌법재판 수행

법무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2014헌가16) 사건에서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자체의견 제출은 총 60건이다.

## 3.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로서, 2015년에는 총 44건이 처리되어 그 중 합헌 20건, 위헌 21건, 헌법불합치 1건, 각하 등 2건이 선고되었으며 그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등 처벌) 위헌제청**

(2015. 6. 25. 2013헌가17 등) : 합헌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흉기휴대 상해죄 가중처벌) 위헌제청**

(2015. 9. 24. 2014헌가1) : 합헌

**다. 인신보호법 제15조(구제청구사건 즉시항고기간 3일 제한) 위헌제청**

(2015. 9. 24. 2013헌가21) : 위헌

**라. 구 형법 제104조의2(국가모독죄) 위헌 제청**

(2015. 10. 21. 2013헌가20) : 위헌

## 4.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제기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15년에는 총 1,891건이 처리되어 그 중 합헌 등 359건, 각하 1,445건, 위헌 등 87건이 선고되었으며 그 주요사건은 다음과 같다.

**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형사비용보상청구 기간제한) 위헌소원 등**

(2015. 4. 30. 2014헌바408 등) : 합헌

**나.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 위헌확인**

(2015. 6. 25. 2011헌마769) : 위헌

**다.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소원**
(2015. 9. 24. 2014헌바154) : 위헌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소원**
(2015. 11. 26. 2014헌바436) : 합헌

## 제 8 항 친일재산송무팀 소송수행

### 1. 개 요

2006. 7. 13.부터 2010. 7. 12.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 및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였다. 2010. 7. 1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소송업무를 법무부에서 승계하면서 법무부 국가송무과 소속으로 친일재산송무팀이 신설되었다. 친일재산송무팀은 2012. 12. 31. 활동기간 종료로 해산되었고, 잔여 소송업무는 법무부 국가송무과가 수행중이다.

### 2. 주요 업무

법무부 국가송무과는 친일재산송무팀의 잔여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등 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헌법소송,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된 민사소송, 각종 소송과 관련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 소송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조사, 연구 및 여론조사 업무,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관련 소송에 대한 국회 및 언론 대응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 3. 소송수행 실적

친일재산송무팀이 위원회의 소송을 승계한 2010. 7. 13. 이후 총 97건의 소송(행정소송 71건, 국가소송 17건, 헌법소송 9건)을 수행하였고 그 중 93건이 종결되었는데(2015. 12. 기준), 국가소송과 헌법소송은 100% 승소하였고 행정소송은 97.1% 승소하여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였다

**가. 전체소송 현황**

2010. 7.~2015. 12.(진행건수/종결건수)

| 사건 | 행정소송 | 국가소송 | 헌법소송 |
|---|---|---|---|
| 97 (4/93) | 71(2/69) | 17(2/15) | 9(0/9) |

**나. 승소 현황**

2010. 7.~2015. 12.(승소건수/패소건수)

| 종결 사건 | 행정소송 | 국가소송 | 헌법소송 |
|---|---|---|---|
| 93 (91/2) | 69(67/2) | 15(15/0) | 9(9/0) |

## 제 9 항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 1. 개 요

기존에는 환수소송이 소관청마다 개별적·산발적으로 진행되고, 별도의 소송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국고손실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법무부 국가송무과는 환수소송의 적극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2015. 9. 22.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하였다.

### 2. 주요 내용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국가상대 입찰담합으로 인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사건 의결서 및 부패비리에 대한 검찰수사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환수가능 사례를 발굴하여 환수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국고가 투입된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국고손실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자문과 지원을 하고 있다.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2015년 입찰담합 4건, 부패·비리 1건(소가 합계 433억원)에 대해 소관행정청과 협의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 3. 기대효과

부패·비리로 인한 국고손실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믿음의 법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제 10 항 선진적인 국가송무 수행을 위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구축·중앙행정기관 확대 및 시스템 유지보수·운영

### 1. 개 요

국가송무는 매년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사 소송, 비행장 소음소송, 세월호 사건 관련 소송, 구로농지 관련 소송 등 국가재정이나 중요 정책, 국민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2011. 5. 민사소송에 있어 전자재판이 도입되었고, 2013. 1. 행정소송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국가송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수행할 수 있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 구축 및 중앙행정기관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 수작업 업무 폐지,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업무처리 | | 주요내용 |
|---|---|---|
| | | ○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정서 발송, 지휘요청, 지휘, 승인 등 송무수행을 전자적으로 처리<br>○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체계로 소송수행자가 소송에 빠르게 대응 가능<br>○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제공 |

## 2. 추진 내용

2011년 12월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소송 유관기관과 사건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모범사례·패소사례 및 훈령·예규·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송무 지식포털을 구축하였고, 2012년 12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중앙행정기관 확대 및 전면 시행하였다.

.또한 전자서명 기반의 전자문서 작성·승인·관리체계와 사건관리, 전자결재 기안문 연계 등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였고, 2013년 1월 전자행정소송 시행에 대비하여 모든 행정기관에서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송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로 정비하였다.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문업체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계약을 체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소송수행자 지원서비스 강화로 소송수행 역량을 강화하였고,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인터넷망 구축 및 포털화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소송수행자들이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인터넷망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모든 소송수행청이 이용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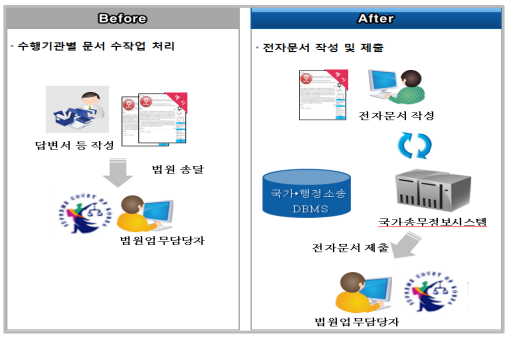


## 3. 기대효과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기반구축 및 행정기관 확대·시행으로 국가송무의 통일적·효율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송무 관련 법령·판례·선례·논문 등 정보의 축적을 통하여 소송 대응 및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소송수행청의 국가송무 수행실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그에 따른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고도화 사업 등으로 사용자 지원 및 의견조회를 통해 시스템상의 오류와 기타 문제점들을 분석, 즉각적인 개선작업으로 시스템 사용자의 사용도 제고 및 국민에 대한 송무 관련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 제 11 항 법무분야의 통일준비 실질화 및 탈북민 법치주의 적응지원 강화

## 1. 개 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더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2014. 1. '통일대박 선언', 2014. 3.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은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15. 8. 목함지뢰 도발을 자행하였고, 우리 정부는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였다. 그 결과, 8.25. 남북

고위급 합의를 바탕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가 활성화 되었다.

법무부는 북한의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독일의 사례 등을 기초로 체제전환국가의 통합사례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통일법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한편, 매월 법무부에 탈북민을 초청하여 '북한 바로알기 사랑방좌담회'를 개최하고, '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제'를 시범도입하였으며, 대한변협과 협업하여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통일대비 법률전문가 양성에 주력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전담 법무담당관'을 신설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례 위주의 법률교육'을 도입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2. 통일 법제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확산

남북통일은 궁극적으로 법과 제도의 통합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법무부는 2015. 3. 북한 민법(재산편)과 형법 주석서를 발간하고, 2015. 4.~12. 남북법령연구위원회를 운영해 2015. 12. 북한 형사소송법과 가족법 주석서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2015. 8. 통일법무과 검사가 '통일 독일의 판·검사 통합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논문을 통일법제 전문 학술지인 '통일과 법률'에 직접 기고하여 법률신문 1면(2015. 9. 10.자)에 주요내용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2015. 11. 구 동독지역 5개 연방주 중의 하나인 독일 튀링엔주의 전직 법무부장관을 초청하여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본 통일 이후 법조인통합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통일법제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검사들로 구성된 통일법무지원단과 법원, 헌법재판소, 대한변협에서 통일준비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 3. 통일대비 법률전문가 양성

법률 분야의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통일법 전문가의 저변을 넓히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부는 매월 북한에서 인민보안부 감찰원, 조선중앙은행 직원, 정찰총국 전투원 등으로 다양한 전문분야에 종사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피의자·피해자인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제도'를 수원지검 등 4개 검찰청에 시범도입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들은 업무현장에서 탈북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성공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지원하면서 통일 이후 통합에 관한 문제의식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었다.

2015. 9.~11. 대한변협과 협업하여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4기 과정을 운영하였고,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등 법률전문가 60여명이 참여하였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등 북한과 통일에 관한 전문가 10인이 '북한경제와 남북경제통합', '지금

우리는 왜 통일을 생각해야 하나', '북한 사법제도와 형사법 고찰' 등을 주제로 좋은 강연을 제공해 주었다.

### 4. 북한이탈주민 법치주의 적응지원 강화

2015. 12.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2만 8,800명에 이르고 있다.

2,500만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통일 이후 자신들의 미래를 예상한다는 점에서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대한민국 정착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북한이탈주민들과 탈북민 법률지원업무 종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5. 4. 통일부와 협업하여 수도권 소재 11개 하나센터의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졸업한 탈북 청소년들과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15. 5. '탈북민 전담 법무담당관'을 신설하여 반복적인 전화상담, 법률구조공단 동행을 통한 소송구조 연계, 소송종료 후 후속조치 안내 등 북한이탈주민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검사가 매월 직접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와 정착지원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 3.부터 교육 이수 탈북민들을 상대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와 법률상담 피드백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2015. 8. 기존의 이론 위주의 법률교육을 사례 위주의 '쉽고 재미있는' 법률교육으로 전면개편 하였고, 2015. 10. 북한이탈주민들이 쉽게 당할 수 있는 범죄피해와 법을 잘몰라서 저지르기 쉬운 범죄유형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켜주는 법률상식 20가지 리플렛'을 제작하여 전국 29개 하나센터를 통해 제공하였다.

## 제 12 항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 1. 개 요

법무부는 세계 12위권 경제대국의 지위에 걸맞는 수준의 선진 상사법제를 마련하여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법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상사법제 마련을 위한 상사법의 체계적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신탁법 전면 개정 법률이 2012년에 시행됨에 따라 2013년 그 후속입법으로 부동산등기법 등 3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었고, 상법 회사편, 보험편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었다. 한편,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법률지원을 강화하여 매년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에 의뢰하는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 2. 상사법령 제정 및 개정 현황

(제3장 주요법령정비 참조)

## 3. M&A 활성화를 위한 상법 회사편 개정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은 미국 등에 비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업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창업 후 인수·합병을 통한 자금회수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공개 등 상장을 통한 투자금 회수에도 평균 12년이 걸리는 등 벤처 창업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다양하고 쉬운 기업 인수·합병(M&A) 방식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①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의 다양한 M&A수단의 도입, ② 간이영업양수도 제도 등 이사회 결의만으로 인수·합병이 가능한 간이한 절차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회사편 개정을 추진하여, 2014. 8. 입법예고, 2014. 9.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4. 10. 26.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동 개정안은 2015. 11. 12. 국회 의결을 거쳐 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공포되어 2016. 3. 2. 시행되었다.

## 4. 중소 · 벤처기업 법률지원제도 운영

### 가.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법무부는 경제 주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 1. 21. 상사법무과장을 단장으로 하여 검사 1명, 사무관(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3명(현재는 검사 1명, 공익법무관7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였다. 그 후 법무부는 2009. 3. 12. 중소기업청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현 154명)을 구성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2009년 484건을 처리(자문단에 49건 의뢰), 2010년 549건을 처리(자문단에 39건 의뢰), 2011년 406건을 처리(자문단에 68건 의뢰), 2012년 702건을 처리(자문단에 98건 의뢰), 2013년 1,171건을 처리(자문단에 88건 의뢰), 2014년에는 1,178건을 처리(자문단에 83건 의뢰)하였다.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은 2015년에는 1,447건을 처리하였고 82건에 대하여는 자문단에 의뢰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든든한 법률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와 함께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수동적 법률지원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2010. 1. 부터는 중소기업의 일선 경영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법무지식 강연 및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현장방문 강연 및 법률상담' 제도를 시작하여 2010년에는 18회, 2011년에는 49회, 2012년에는 68회, 2013년에는 71회, 2014년에는 77회, 2015년에는 80회의 현장강연을 실시하였고 그 횟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중소·벤처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법률리스크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고 대응 능력이 떨어져 법률분쟁 발생 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용하는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는 '15. 4.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공익법무관을 파견하여 현장 무료 법률상담 및 자문, 계약서 검토 등 법률서비스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법률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15. 8.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였다. 위 법률지원단에는 분야별 전문변호사 14명, 지역별 자문변호사 59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인 상담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선정 유망 벤처기업 103개를 대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소속 자문변호사 59명을 1대1로 지정하여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창업 초기 벤처기업 운영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 법률지식을 정리한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 소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 이후 개인회생·파산 및 기업회생·파산 사건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등 제도가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도산 절차 중 일반회생절차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자산 및 부채 규모가 작고 이해관계인이 적은 중소기업의 회생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다 간이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법무부는 2013. 4. 25. ~ 2013. 8. 30.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2013. 4. 법무자문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변호사 임치용)를 구성하여 간이회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4. 3. 14.~2014. 4. 22. 입법예고를 거쳐 2014. 6. 10.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 반영 법률이 2014. 12. 9. 국회 의결되어,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공포, 2015. 7. 1. 시행되었다.

## 6. 중재산업활성화를 위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서, 현재의 소송 급증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고, 특히 기업 간 국제 상사분쟁에서는 이미 재판 외의 분쟁해결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할 경우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싱가포르, 홍콩 등 세계 각국은 국제

중재사건 유치를 위해 중재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도 우리나라를 국제중재의 중심지로 만들고 신속한 사회 갈등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복합중재센터 건립, 선진 중재 시스템 마련 등 정부의 지원책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5. 11. 국회에 제출하였다.

## 7. 공익신탁법 시행

법무부는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10. 3. 25.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익신탁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7. 6.까지 8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공익신탁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2011. 10. 27. 차관회의 및 2011. 11. 1.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18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19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하여 2012. 7. 24.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4. 2. 29. 통과되어 법률 제12420호로 공포되었으며, 2015. 3 .19.부터 시행되었다.

새로 제정된 공익신탁법은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며 법무부에서 관리·감독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공익신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2015. 7. 23. 제1호 공익신탁이 인가되었고, 2015. 9. 17. 공익신탁 자문위원회를 출범하였고, 2015. 12. 2. 공익신탁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15년 말까지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 심리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난치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 치료비 지원, 청년 구직애로 해소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13개의 공익신탁이 인가되었다.

## 8.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추진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189개국의 기업환경지수를 평가하여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기업환경지수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투자자보호, 계약분쟁해결, 지급불능 해소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지수화 한 것으로 매년 10월경 분야별 순위 및 종합 순위가 발표된다. 기업환경지수는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국 선택과 관련한 주요 참고 자료로 해외 자금의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세계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법률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 홍보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평가대상 189개국 중 종합순위가 '07년 30위에서 '15년 4위로 대폭 상승하였다. 특히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인 투자자 보호(21위→8위), 도산절차(5위→4위), 계약분쟁해결(4위→2위) 분야의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나갈 계획이다.

## 9. 전자어음제도 운영 및 관리 감독

기존 어음은 실물 종이어음으로 발행·유통되는 관계로 거래의 안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위·변조 위험과 보관·이동 비용 등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있어,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05년 1월부터 시행하였고, 금융결제원을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어음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14. 4월 개정 법률을 통해 분할배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자어음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한편, 종이어음의 사회적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어음으로의 대체를 추구한다는 제도의 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 '09. 5월 법률을 개정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 약속어음 발행 시 전자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였고, '14. 4월부터는 그 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하였다. 이처럼 종이어음에 대비한 전자어음 특유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의무발행제를 통해 이용 대상을 확대한 노력에 따라 전자어음의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발행건수 기준으로 전자어음이 종이어음(지급제시건수 기준)을 초과하는 등 종이어음을 대체하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05. 1월 첫 도입 이래 10년 만인 '15년 한 해 동안 전자어음은 금액 기준으로 538조여원이 발행되었고 발행건수 기준으로는 197만여건이 발행되었는데, 같은 기간 종이어음은 53만여건(지급제시건수) 및 797조여원 발행되었는바, 발행건수 기준으로는 전자어음이 전체 어음발행건수 대비 78.6%를 차지하고 있어 종이어음을 완전히 추월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6년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전자어음은 95만여건 및 317조여원, 같은 기간 종이어음은 22만여건 및 338조여원이 발행되어 전자어음이 발행건수 기준으로는 종이어음을 완전히 추월하고 있으며, 발행금액에 관해서도 종이어음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전자어음이 종이어음을 대체하는 효과가 충실히 실현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장기의 만기 어음으로 인한 기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어음만기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 5. 22. 국회에 제출하였고, '16. 5. 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5. 29. 공포되었다. 동 개정 법률에 따라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는 현행 1년에서 공포 후 2년째인 '18. 5. 30.부터 6개월로 하여 단축될 예정이고, 이 후 매 1년마다 1개월씩 단축되어 공포 후 5년이 되는 때부터는 최종 3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로써 자금순환을 원활히하여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0. 선진 상사법제 관련 연구

### 가. 선진법제포럼 개최

선진법제포럼은 경제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와 신속한 법제정보 수집을 위해 '07. 11. 결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학계·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2. 4. 15. 시행된 「상법」의 '준법지원인 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준법지원인 제도 및 준법경영 발전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법무부는 '15. 10. 22.『준법경영을 위한 준법지원인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에서는 최완진 교수(서울외대)의 사회로 정준우 교수(인하대)의 주제발표, 곽관훈 교수(선문대), 이규호 상무(LG 하우시스), 이완근 변호사(주식회사 KCC), 정용우 전무(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토론이 있었다. 그 밖에 선진법제포럼 회원(70명), 준법지원인, 기업의 준법통제 관리부서 담당자, 사내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준법지원인 제도의 현황 및 운영실태와 준법지원인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한편, 사물인터넷(IoT), 드론(drone), 무인자동차 등 새로 등장한 신기술이 실제 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신기술의 적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문제에 사전 대응함으로써 신기술 개발 등 경제 활성화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법무부는 '15. 12. 8.『혁신적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법률문제와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에서는 구대환 교수(서울시립대학교)의 사회로 최경진교수(가천대)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대희 교수(고려대), 윤태영 교수(아주대), 공학 교수인 노원우 교수(연세대), 산업계 인사인 김이식 상무(KT 빅데이터센터), 김현수 상무(삼성전자 DMC 센터) 등의 토론이 있었다. 이러한 각 분야에서의 의견 제시를 통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무인자동차, 드론 등 혁신적인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법률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 나.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상사법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상사법제 마련을 위하여 전국의 상사법 연구자와 실무가들에게 관련 원고를 모집하고 이를 심사하여 1, 4, 7, 10월, 네 번에 걸쳐 「선진상사법률연구」 학술지를 발간하였다. 1월에 발간한 통권 제69호는 이철송(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2011년 개정 자기주식제도의 입법적 보완방안" 등 논단 4편과, 정진세(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집단소속회사 이사에 대한 회사재산남용죄(특별배임죄)의 제한"을 연구한 해외판례평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월에 발간한 통권 제70호는 한민(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도산에 근접한 시기의 이사의 의무" 등 논단 3편과, 김상만(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의 해외판례소개, 공익

신탁법의 주요내용이 담긴 입법자료,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를 소개한 특별기고를 수록하였다. 제71호(7월 발간)는 김희준(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의 "영구채 발행에 관한 법적 연구" 등 논단 3편과 해외판례소개, 실무논단, 한국상사판례학회를 소개한 특별기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10월에 발간한 제72호는 심인숙(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법리에 관한 연구" 등 논단 5편과 함께 김화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다룬 판례평석, 이재성 변호사의 중재에 관한 실무논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진상사법률연구는 각 대학도서관, 법경제단체·경제부처, 국회, 로펌 등에 약 600여부를 배포하여 지속적인 상사법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제 13 항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선발제도의 발전 도모

### 1. 제57회 사법시험 실시

#### 가. 시험개요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은 2015. 3. 7.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개 도시 12개 시험장에서 3,9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제2차 시험은 6. 24.~27. 고려대 등 서울시내 3개 시험장에서 7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제3차 시험은 11. 4.~5. 사법연수원에서 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153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 나. 각종 제도개선사항의 지속적 시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으로 2017년 제2·3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개선사항의 도입보다는 이미 도입한 각종 제도개선사항의 안정적 정착에 주력하였다.

먼저, 문제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2007년도 시험부터 도입된 제1차 시험 8지선다형 문제 출제 및 문제별 배점 다양화(2, 3, 4점)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출제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제오류 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합숙출제에 들어가기 전 미리 출제·검토위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제1차 시험 실시 후 공개된 정답 가안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을 적극 수렴하여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정답확정회의를 거친 결과 복수정답 없이 정답 가안대로 확정하였다.

또한, 제1차 시험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편차 및 그에 따른 수험생들의 특정과목 쏠림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2008년도 시험부터 도입된 선택과목 점수 조정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응시자간 형평성 및 시험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하였다.

제2차 시험에서는 이론에 치우친 문제, 실력검정과 무관한 문제 등을 지양하고, 기본에 충실한 문제, 사례에 대한 적응 능력 검정이 가능한 문제를 출제하였다. 제3차 시험(면접시험)에서는 심층면접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시험위원에게 응시자 성적 등을 제공하지 않고 면접결과로만 탈락자를 선정(블라인드면접)하는 방법으로 1차 일반면접을 실시한 후, 심층면접이 필요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5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1개의 심층 면접조에서 집중적인 2차 면접을 실시한 결과, 2명의 응시자가 심층면접에 회부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전원이 합격하였다.

## 2. 제4회 변호사시험 실시

### 가. 제4회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제4회 변호사시험의 문제출제를 위하여 2014. 12. 23.부터 18일간의 합숙출제를 실시하였다. 출제오류방지와 자격시험의 성격에 부합하는 양질의 문제 출제를 위하여 교수, 실무가 등으로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최적의 합숙환경 및 보안을 위한 합숙시설·보안업체의 선정을 거쳐 합숙출제를 시행하였다.

### 나. 시험 시행 및 합격자 결정

제4회 변호사시험은 2015. 1. 5.부터 1. 9.까지 시행되었다. 시험에는 2,704명이 출원하고 2,561명이 응시하였다.

그 후 이어진 채점절차에서는 채점위원들의 채점역량 강화, 4분할 채점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2015. 4. 10. 합격자 1,565명을 발표하였다.

### 다. 법조윤리시험 전국 6대권역 실시

제6회 법조윤리시험은 2015. 8. 8. 전국 6대 권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시험장에서 실시되었다. 총 2,463명이 출원하여 그 중 2,422명이 응시(응시율 98.3%)한 결과, 2,328명(응시자 대비 합격률 96.1%)이 법조윤리시험을 통과하였다.

※ 2014년 제5회 법조윤리시험 : 2,816명 응시, 2,444명 합격(합격률 86.7%)

# 제 3 절 검 찰 업 무

## 제 1 항 검찰업무의 기본방향

2015년 법무·검찰은 일관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공부문 비리와 공공분야 고질적·구조적 부정부패를 엄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법무부의 비전인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 부정부패 사범 척결,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따뜻한 법치의 실질적 구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 1. 국가·사회기강 확립

2015년 법무·검찰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하여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가 안보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공작 및 친북세력의 사이버 이적활동 등은 여전히 심각한 안보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북한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며 연방제 통일을 통한 대남혁명을 추구하는 이적단체 '코리아연대' 사건을 수사하여 9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한 것을 비롯, 총 79명의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을 입건하고 그 중 26명을 구속기소하였다.

또한, 최근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적활동 폐해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경찰, 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보위해사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였다.

2014. 8. 1. 신설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법률'에 따라 2015. 3. 11. 전국에서 1,326개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에 대해 사상 최초로 동시선거가 실시되었다.

전국 검찰청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입건자 1,334명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81명을 구속기소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시효 만기인 2015. 9. 11.까지 총 847명을 기소하였다.

또한, 2015. 4. 29. 상반기 재·보궐선거, 2015. 10. 28.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특별 근무체제로 가동하면서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등을 중점 단속하여 공명선거문화 확립에 기여하였다.

노사분규 또는 노조의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합법적 쟁의행위는 충분히 보장하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집단행동에 대하여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동자 및 배후 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조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 사용자의 불법행위도 엄정하게 처리하여 노·사 양측에 대하여 공평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철저하게 수사하였다.

한편, 민노총 건설노조 소속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건설노조 간부 5명을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건설 현장에서의 거대 노조 횡포와 고질적 병폐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고용질서 회복에 기여하였다.

또한, '세월호 1주년 집회', '민중총궐기 집회' 등 대규모 폭력 집회에서, 집회·시위와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은 존중하고 보호하되 불법·폭력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처하여 엄벌함으로써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였다.

## 2.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법무부는 그동안 여성, 장애인, 아동,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 관한 제반 법령을 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주의 구현이 요구되어 수사과정에서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설치, 수사과정에서의 녹음·녹화제 활용도 증대, 신뢰관계자의 동석범위 확대 등을 각종 법령·지침 등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04. 12.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4대 지검에 녹음·녹화실, 편면경(one-way mirror) 등을 완비한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에 여성·아동 조사실을 설치하였고, 2013. 7. 종전의 '성폭력피해자 조사지침'과 '성폭력범죄 사건 처리지침'을 통합하여 성폭력사건 처리 관련 세부내용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기 위하여 사건의 성격 및 피조사자에 따라 적합한 조사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인권보호와 프라이버시 친화적 조사 환경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법무연수원에도 여성·아동 관련 범죄 수사실무 교육 프로그램 및 성폭력 피해자 조사기법 강좌를 개설하여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2007. 8.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입법화하였고, 2007. 6.에는 '성·가정·아동폭력 연구검사'를 지정하였다.

한편,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 성폭력문제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 위하여 2012. 12.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개정하여,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3세미만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 10.부터 전국 검찰청에 아동성폭력 전담 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3. 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조회 및 법정 증언 관련 절차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성폭력범죄전문가 의견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2014. 4. 다년간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 또는 치료 업무에 종사하여 온 소아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범죄심리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107명을 대검찰청 성폭력 범죄 전문가로 선정, 위촉하여 피해아동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해 진단하고 진술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및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1. 9.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 범죄조사부를 신설하여 아동·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피해자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2015. 11.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검사 지정·운영 및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는「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시행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결혼이민 여성을 상대로 여성 범죄예방위원과의 결연사업, 지방자치단체와의 다문화가족 보호 지원 업무협약 체결 등을 추진함으로써 이주여성들이 국내 연고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정폭력과 국내정착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3.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법무·검찰은 수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법 집행의 엄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먼저, 진술에 의존하는 기존의 수사기법이나 조사방법을 탈피하여 물적 증거 수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사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수사역량 강화 및 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 12.경부터 총 144억 원을 투입하여 2008. 10.경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지상 6층, 지하 1층, 연면적 7,844㎡ 규모)를 완공하여, 그동안 분산되었던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및 감정·감식 업무를 한 곳에 집중시켜 효율적인 증거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 DNA 및 법생화학 감식,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사이버범죄 대응 등 전방위적인 과학수사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2007. 4. 서울중앙지검, 2008. 6. 부산고검, 2009. 9. 대구고검, 2010. 4. 광주고검, 2010. 12. 대전고검, 2011. 5. 인천지검, 2012. 6. 수원지검, 2014. 11. 서울고검·서울남부지검·창원지검 등 일선 청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운영하여 급증하는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업무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권존중 수사관행을 정착하고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 12.「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 2006. 6. 전면적으로 이를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보장의 일환으로 2004. 6. 1. 4개 검찰청 12개 검사실에

영상녹화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2015. 12.까지 전국 64개청 총 788실로 확대 설치하여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대한 불식시키고 수사 인력 및 조사시간 단축을 통해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에서 2006. 6.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검찰청에 시달하였는바, 동 지침에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구속 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를 상세화한 '일반적 기준'을 두는 한편 '일반 형사·공안·부패·강력 사범'의 주요 범죄별로 구분하여 구속 기준을 예시한 '범죄 유형별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위 지침은 그동안 각급 검찰청에서 관행적·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기준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지침화하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2011. 12. 구속수사의 일반적 기준과 범죄유형별 기준을 좀 더 세분하여 위 지침 제정 이후 구속수사 실무 기준을 반영하였다.

대검찰청은 2008. 6. 형법범(208개 조문, 293개 범죄유형), 가중사범(4개 법률, 101개 범죄유형), 특별법범(232개 법률, 1,149개 범죄유형) 등 총 1,543개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준, 구공판기준, 구형기준, 벌금기준 등을 규정한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11. 12.에는 시행 3년을 맞아 그간 폐지되거나 변경된 법령과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재정비 하였다. 또한 2012. 9.에는 지역적 범죄 특성과 당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선 청에서 사건처리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월, 포항 등 9개청에서 산지관리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9개 특별법범에 대해 지역의 특수성과 경제적 사정 등을 반영한 자체 사건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2013. 5. 그동안 일선 청 차원에서 운영되던 검찰시민모니터제를 전국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에 '시민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를 포함한 검찰 운영 등 관련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검찰은 시민참여를 통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등 5개 고등검찰청에 항고심사회를 설치하여 고등검찰청의 항고사건 결정과정에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여 기록 검토 등을 거쳐 의견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본격 실시하고 의사, 비법학교수, 변리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간부 등 다양한 외부인사들의 참여를 통해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을 항고심사회 운영에 활용함과 동시에 검찰행정에 대한 국민참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국민적 관심 또는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관한 검사의 기소·불기소 결정을 시민들이 직접 사전에 심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2010. 8. 전국 41개 검찰청에 구성한 이후 2012. 2.까지 전국 58개 검찰청으로 확대하여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있으며, 2013. 5.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무상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국 5대 고등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 제 2 항 법과 원칙의 관철을 통한 사회안정 확보

### 1. 개 요

2015년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과 갈등 요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2014년 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자격 상실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건을 도모하였고, 구 통합진보당 당원 등이 북한을 추종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검찰은 구 통합진보당 세력의 재건활동에 대응하는 한편, 이적단체 코리아연대 사건, 이석기 내란선동 후속사건, 북한 공작조직 연계 반북인물 암살시도 사건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 수호에 노력하였다.

한편 한미군사훈련 반대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주한 美대사의 살해를 시도한 사건, 이슬람 테러단체 추종 불법체류 외국인 사건 등이 발생하여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었고, 테러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과거에는 조합별로 개별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 관리하는 한편 검찰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공직선거에 준하여 엄정 관리한 결과, 조합장 선거에서 공명선거 문화를 확립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반발, 민노총 등 노동단체의 대규모 불법폭력집회 주도, 세월호 사고 관련 전교조 집단행위, 전공노 공무원연금개혁 저지 투쟁,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여 노사, 노정(勞政)간 대립이 지속되었고, 밀양 송전선로 건설공사, 삼척 원전 신규 건설, 새만금 송전철탑 건설공사 등 정부 정책 시행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또한 계속되었다.

2015. 4.에는 세월호 사고 1주년 관련 집회에서 일부 세력들의 주도 하에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이 있었다. 또한 2015. 11.에는 노동자·농민·빈민·청년·시민사회·종교 등 53개 단체가 연대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폭력 집회인 '민중총궐기 집회'를 개최하여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법무·검찰은 위와 같은 사회 갈등 및 대규모 폭력 집회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함으로써 '공정한 법치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2015년도에 발생한 주요 사건은 〈표 1〉과 같다.

###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법무·검찰은 국내 안보위해세력에 대한 적극적 수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이 협력하여 북한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며 연방제 통일을 통한 대남혁명을 추구하는 이적단체 '코리아연대' 사건을 수사하여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한 13명을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여 그 중 9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하였다.

다음으로 2013~2014년에 이어 이석기 의원 내란선동 사건 후속수사를 진행하여, 3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하였다.

한편, 북한 공작조직과 연계하여 필로폰 70㎏을 제조하고, 황장엽 등 반북인물 암살을 시도한 사건을 수사하여 5명을 구속기소하였고, 재일본 조총련 간부의 지령을 받고 지인을 일본으로 유인하여 친북 의식화 교육을 시킨 사범을 구속기소하였다.

또한 전국순회 토크콘서트를 빙자하여 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 등으로 前 범청학련 남측본부 부의장을 구속기소하였다.

아울러 한미군사훈련 반대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마크 리퍼트 주한 美대사의 얼굴 등을 과도로 찔러 살해를 시도한 피의자를 구속기소하였다.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인터넷·SNS 이용 사이버 이적사범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경찰청·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이버 이적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자주민보와 범민련 남측본부 사이트 폐쇄를 이끌어내는 등 사이버 안보위해사범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였다.

### 3. 공정하고 깨끗한 선진 선거문화 정착

2014. 8. 1. 신설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법률'에 따라 2015. 3. 11. 전국에서 사상 최초로 1,326개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에 대해 동시선거가 실시되었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비교적 차분하였으나, 조합원들의 친밀성과 조합의 폐쇄성이 보다 강했던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선거사범의 86.8%가 발생하였다.

검찰은 전국청에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가동하고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수립하는 등 3대 주요범죄 단속에 검찰역량을 집중하여 2015. 9. 11.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1,334명을 입건, 81명을 구속한 것을 비롯하여 847명을 기소함으로써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과거 2009년 및 2010년 총 1,053개의 조합에서 실시된 조합장선거와 비교할 때 입건자 수는 19.2% 감소하고 구속 비율은 4.1% 증가하였다. 이는 검찰과 선관위 등의 적극적인 사전예방 및 홍보 활동으로 전체적인 입건자 수는 감소한 반면,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등 중요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동시 실시에 따른 일관된 처리기준 적용으로 구속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5. 4. 29.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4곳 등 12곳에서, 2015. 10. 28.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기초단체장 1곳 등 24곳에서 각각 실시되었다. 제20대 총선의 전초전으로서 여·야간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선거과열이 우려되었으나, 검찰이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실시하는 등 단속체제를 확고히 함으로써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선거가 실시되었다.

한편, 검찰은 주요 선거사건 판결문 선고형을 검토하여 선거사범 양형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선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하여 선거사범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 4. 노사분규 관련 공정한 법집행

2015년도에도 노사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최대한 존중하되,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하거나 사용자를 상대로 하지 아니한 주장 관철을 위한 노조의 불법파업 및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이에 따라 조직적·지속적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하면서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과 배태선 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11. 14. 민중총궐기 폭력집회의 주동자 17명을 구속하였다. 한편, 집단적 위력을 이용하여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는 등 조직적 공갈·협박 행위를 이어 온 건설노조 간부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하였다. 또한 금속노조 등에서 고발한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하여 현대차 울산공장장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였고, 세월호 사고 등과 관련하여 교사선언을 하고 조퇴투쟁 등을 실시한 전교조 간부 3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습적이고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 17명을 구속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사 구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법집행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노사관계 확립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최근 복면 시위 등 대규모 불법 폭력시위의 양상을 반영하여 구형 기준을 강화한 노동·집단 사범 양형 기준을 재정비하여 철저하게 준수하였고, 「건설·운송 분야 수사메뉴얼」, 「부정수급사범 수사메뉴얼」을 발간하여 노동 관련 사범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노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노동사건 수사 역량을 강화하였다.

## 5. 불법집단행동 엄정 대처

불법·폭력 시위에 대하여는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과되도록 일관되게 법집행을 하였다.

특히, 과거 수사기관과 법원의 온정주의적인 대응이 불법행위의 반복을 조장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상습적인 불법폭력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집회·시위에 참여하여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불법폭력시위사범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제도로 시범실시하였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2015. 3.부터 전국 검찰청에 확대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관된 법집행의 결과, 11. 14.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큰 사회 혼란을 야기하였던 불법폭력집회 주동자, 극렬행위자 17명을 구속하였고, 기타 2015년에 세월호 1주년 관련 집회 등 각종 대규모 폭력 집회에서 이를 주도한 시위자 27명을 추가 구속함으로써 불법행위 억제에 기여하였다.

〈표 1〉 2015년도 발생 주요사건 현황

| 구 분 | 주 요 사 건 | 비 고 |
|---|---|---|
| 대공사범 | ○ 이적단체 '코리아연대' 사건 | 서울중앙지검 등 |
| | ○ 이석기 내란선동 후속 사건 | 수원지검 |
| | ○ 북한 공작조직 연계 반북인물 암살시도 사건 | 서울중앙지검 |
| | ○ 조총련 연계 목적수행 등 사건 | 대전지검 |
| | ○ 종북 토크쇼 관련 사건 | 서울중앙지검 |
| | ○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 서울중앙지검 |
| 선거사범 | ○ 경기도의원 공천대가 수수 사건 | 수원지검 |
| | ○ 울산교육감 선거비용 편취 사건 | 울산지검 |
| 노동사범 | ○ 민노총 위원장 불법폭력집회 주도 사건 | 서울중앙지검 |
| | ○ 전교조 불법집단행동 사건 | 서울중앙지검 |
| | ○ 건설노조의 노조원 채용강요 사건 | 서울남부지검 |
| | ○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 | 울산지검 |
| 기타 | ○ 권은희 의원 모해위증 사건 | 서울중앙지검 |
| | ○ 구 통합진보당 불법 정당자금 조성 사건 | 서울중앙지검 |
| | ○ 민중총궐기 폭력집회 사건 | 서울중앙지검 등 |
| | ○ 세월호 1주년 폭력집회 사건 | 서울중앙지검 |

## 제 3 항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 1. 개 요

법무·검찰은 권력형 비리 등 사회지도층 비리를 중점 단속하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지역토착비리와 보조금 비리·조세포탈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부패유발요소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였다. 또한, 불법수익의 철저한 박탈로 부패범죄에 대한 동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에 설치된 '범죄수익환수전담반'을 통하여 일선청의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지원하였다.

한편, 국민생활 안정의 위협요소를 차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경제 회복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련 범죄, 조직

폭력사범, 사회취약계층 상대 생계 침해형 부조리 사범, 재개발·재건축비리사범, 부동산 투기사범 등의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2004. 8. 대검찰청에 설치된 「민생경제 침해사범 수사본부」 중심으로 일선 검찰청에 「민생경제 침해사범 수사부(반)」를 설치·운영하면서 금융거래질서 교란사범, 취업사기 사범, 조직폭력 사범 등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전개하였고 2005. 3.부터는 '조직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등 이른바 4대 폭력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하였다. 한편, 2006. 5. 이후부터는 4대 폭력에 '성폭력'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를 포함한 '5대 폭력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날로 지능화·조직화되어가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9. 7. 금융위원회 등과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였고, 2010. 11. 의료법 등 개정으로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에 맞추어 2011. 4. 보건복지부 등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출범시켰으며, 2011. 9. 전국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됨에 따라 부실원인과 대주주, 경영진 등의 형사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과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을 설치하였고, 2012. 4.에는 불법사금융범죄 단속을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부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5.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 제1부 및 제2부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전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하여 유관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여 자본시장 건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2015.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 제3부를 공정거래조세조사부로 변경하여 공정거래 사건 수사의 전문화로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2014. 11. 범정부적인 수사기구인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을 출범하여 국방부·감사원·관세청·국세청·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막대한 국고손실·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방위사업비리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 2. 부정부패사범의 척결

### 가. 부정부패 척결 지속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부정부패 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15년 IMD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5위로서 2013년 수준(22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효율성 부문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도 2008년 이후 정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어 법무부는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먼저 검찰에서는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구조적 비리 척결을 목표로 사회지도층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범죄,

건전한 국가재정 및 서민생활안정을 저해하는 범죄, 경제재도약을 해치는 구조적 부정부패 범죄를 핵심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특히 2015년에는 검찰의 기존 조직을 통한 단속에서 더 나아가 범정부적 수사역량을 총동원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통해 방위사업 비리 전반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여 뿌리 깊은 적폐의 하나인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5년도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은 〈표2〉에서 〈표4〉와 같다.

〈표 2〉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 (2015. 1.~12.)

| 구분 / 유형 | 단속인원 | 구속인원 |
|---|---|---|
| 인사 | 38(7) | 13(4) |
| 건축 | 69(12) | 29(7) |
| 토지 | 163(2) | 6(1) |
| 공사 | 98(18) | 53(8) |
| 보건·환경 | 120(5) | 21(1) |
| 교통 | 7(2) | 3(0) |
| 소방 | 0(0) | 0(0) |
| 노동 | 76(1) | 0(0) |
| 수사 | 6(2) | 2(1) |
| 세무 | 155(13) | 40(8) |
| 교육 | 269(167) | 9(3) |
| 병무 | 33(9) | 6(5) |
| 금융 | 595(4) | 208(1) |
| 법조주변 | 292(26) | 98(10) |
| 납품 | 108(9) | 38(4) |
| 사이비언론 | 22(0) | 8(0) |
| 기타 | 937(126) | 265(60) |
| 합계 | 2,988(403) | 799(113) |

( )는 공무원

〈표 3〉 선출직공무원 단속현황 (2015. 1.~12.)

| 구 분 | 단 속 인 원 |
|---|---|
| 선출직공무원 | 25(0) |
| 광역의회의원 | 6(0) |
| 기초의회의원 | 25(0) |
| 계 | 56(0) |

( )는 구속인원

〈표 4〉 공직자비리 단속실적 (2015. 1.~12.)

| 죄명 / 직급별 | 뇌물수수 | 직권남용직무유기 | 허위공문서 작성 등 | 기타 | 계 |
|---|---|---|---|---|---|
| 3급 이상 | 21(6) | 1(0) | 3(1) | 3(3) | 28(10) |
| 4급 이하 | 128(69) | 40(0) | 15(0) | 73(9) | 256(78) |
| 합 계 | 149(75) | 41(0) | 18(1) | 76(12) | 284(88) |

( ) 구속인원

**나. 부패유발요소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부패관련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클린피드백 유관부처 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이 13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 제도개선 발굴, 건의 실적 |
|---|
| ○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뇌물수수 사건(2015. 1. 22.) |
| ○ 면세유 불법유통 및 불법조세환급 사건(2015. 1. 27.) |
| ○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장비 납품비리 사건(2015. 1. 30.) |
| ○ 외사사범 제도개선(2015. 2. 6.) |
| ○ 삼척시 3대 공원 조성사업 비리 사건(2015. 2. 17.) |
| ○ 국가지원 서민전세자금 대출 비리 사건(2015. 4. 8.) |
| ○ 창업자금대출 사기 사건(2015. 6. 16.) |
| ○ 상생협력 발전기금 횡령 사건(2015. 6. 19.) |

| 제도개선 발굴, 건의 실적 |
| --- |
| ○ 우수저류조 사업비리 사건(2015. 6. 23.)<br>○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사건(2015. 8. 27.)<br>○ 부산항운노조 취업비리 등 사건(2015. 9. 11.)<br>○ 국가보조금 편취 사건(2015. 11. 23.)<br>○ 대학교 건축비리 사건(2015. 11. 27.)<br><br>[2015. 12. 31. 현재 13건] |

**다. 불법수익 환수**

선진일류국가 진입에 장애가 되는 부패범죄·경제범죄의 근본적 척결을 위해서는 불법수익의 철저한 추적 박탈로 부패행위에 대한 동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06. 5. 11.에는 대검 중수부에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을 설치하였고, 2010. 7.에 「범죄수익환수시스템」을 구축하고, 같은 해 9월에는 전국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반」을 설치하여, 불법수익 환수 필요성과 규모가 큰 범죄에 대한 환수 노력을 강화하여, 2015년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적용건수 3,042건, 범죄수익 환수 보전조치 금액 4,717억 원의 실적을 거양하였다. 또한 2013. 5. 28.법 개정에서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였고, 이후 2차례에 걸쳐 일반인 및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해 2010. 1. 대검 국제협력단에 "국제자금추적팀"을 신설하였고, 중국 공안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해외범죄수익 환수 체계도 구축하였다. 이에 2012. 12. 몽골검찰과 공조하여 몽골로 유출된 3억 6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해외범죄수익환수를 최초로 성공하였다. 또한 2013. 11. 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네트워크(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Asia Pacific)를 주도적으로 창설하고, 현재 대검이 그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의 해외범죄수익 환수 사례로는 2013. 8. 미국 측에 전두환 일가의 미국 내 도피재산 추적 및 몰수를 구하는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였고, 미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2015. 3.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의 미국 내 주택 매각대금 등을 몰수해 2015. 11. 약 12억3천만원 상당을 국내로 환수하였다.

## 3. 쾌적하고 안정된 국민경제생활의 확보

**가. 5대 폭력 특별단속**

2005. 3.부터는 '조직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등 4대 폭력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고, 2006. 5.부터는 4대 폭력에 '성폭력'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를 포함한 '5대 폭력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국무조정실에 2007. 12.까지 설치된 「5대 폭력 및 부조리 대책 T/F」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조직폭력의 기업화·합법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4. 2. 조폭전담 부장검사뿐 아니라, 최초로 조폭전담 검사, 조폭정보담당 수사관까지 모두 함께 모이는 「전국 조폭전담 부장검사/검사/수사관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제3세대 조폭들이 형성하고 있는 대규모 지하 경제영역에 대한 대대적인 총력 단속으로 조폭의 기반을 와해함과 아울러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하기로 결의하였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특히, 학교 폭력서클의 배후에 성인 폭력조직이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2012. 3. 「성인 폭력조직과 학교 폭력서클의 연계 차단을 위한 단속 지시」를 통해 이들 간 연계를 차단, 학생들을 폭력조직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성인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나. 민생침해사범 엄단

사회 양극화로 인한 부작용의 심화,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하여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침해사범을 척결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인식에 따라 2004년에 구성된 대검찰청의 「민생경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일선 검찰청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수사부(반)」를 중심으로 시·도, 경찰서,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2008. 5. 민생침해사범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갈취, 폭력, 사행성 게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강화되었고, 2008년 4/4분기에는 대검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국 일선청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서민 생계를 침해하는 불법 사금융 및 청부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인 3,704명을 입건하였다. 한편, 2008. 12.에는 유례없는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을 괴롭히는 상가주변 보호비 갈취 등 민생침해 범죄,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행위, 신용훼손 등 경제불안 조성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행위, 불법 사행행위 등을 「서민경제 5대 침해사범」으로 선정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였고, 2010년 민생침해사범 단속 관련 회의를 7차례 개최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2013. 3.에는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다단계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를 집중단속하였다. 2015. 1. 1.부터 12. 31.까지 민생경제 침해범죄 단속실적은 〈표 5〉와 같다.

〈표 5〉 민생경제침해범죄 단속실적 (2015. 1.~12.)

| 구 분 / 사범별 | 단속인원 | 구속인원 |
|---|---|---|
| 계 | 94,229 | 2,651 |
| 금융거래 질서 교란사범 | 18,223 | 773 |
| 취업 사기 사범 | 926 | 23 |
| 기업형 조직폭력사범 | 49,124 | 1,480 |
| 유통질서 교란사범 | 1,086 | 20 |
| 사행성 도박사범 | 4,470 | 247 |
| 교육관련 불법행위 사범 | 966 | 2 |
| 국민건강 위해사범 | 15,846 | 101 |
| 부동산거래 교란사범 | 3,588 | 5 |

**다. 불법사행성 게임장 관련 범죄 집중 단속**

2005년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인해 게임중독자와 개인파산자 양산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폭력조직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검찰은 2005. 10.부터 2007. 4.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 수사에 적극 매진하여 2,039명을 단속하여 666명을 구속하고, 게임기 등 9,814대를 압수하고, 187건 2,081억 9,362만원을 추징보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행성 게임장이 휴·폐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2009년부터 '불법게임·도박물 근절 대책반' 회의를 통해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2012. 7.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간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인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으며,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을 확대하여 정보교류 및 수사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왔다.

한편 검찰은 불법 사행행위사범은 지하경제, 서민생활침해범죄의 대표적 영역으로 간주 민생침해수사본부와 강력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사행산업의 수익금은 상상을 초월, 형사처벌만으로는

근원적 차단이 어렵다고 판단,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범죄동기 차단에 노력하였다. 2015. 7. 조폭과 연계된 기업가의 해외 고액 원정도박 사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연계된 각종 프로운동 및 게임 선수들의 승부조작 가담 및 도박사건 발생, 인터넷 이용 사행행위 등 각종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행위 단속 강화 지시」 및 「인터넷 이용 불법도박 사건처리 기준」을 수립하여 일선 청에 알리는 등 불법 사행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 라.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 지식재산권 관계 법령 정비 및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질적인 상표 도용, 서적 · 음반 ·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미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 통상마찰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기업의 신기술 개발 · 창작 의욕을 저해하여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유통 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아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국, 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국내 지식재산권보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우리 국익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치하고서는 21세기 지식 · 정보화 사회 기반 구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전국 27개 검찰청에 설치된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전담수사반」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대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한 · 미 통상현안 회의 및 EU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안을 중심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대학가 주변 교재 및 서적 불법복제, 음반 · 비디오물 등 영상물 불법복제 · 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공판 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관련 사범을 엄단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터넷 매체 발달로 온라인상 지식재산침해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적극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현황은 〈표 6〉과 같다.

한편, 통상마찰을 해소하고 선진적인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한 · 미 통상현안 회의 및 EU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홍보하였고, 미국 및 EU 무역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한-미 FTA, 한-EU FTA와 다자간 지재권 보호협약인 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협상 등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제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2009년 최초로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에서 제외시킨 이래로 7년 연속 제외되었다.

2008. 12. 19.에는 저작권법상 지식재산권 등의 침해죄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

그램 저작권 침해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표 6〉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 죄명 / 연도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저작권법위반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 게임산업진흥법위반,영화및비디오진흥법위반,음악산업진흥법위반 | 디자인보호법위반특허법위반,실용신안법위반 | 계 |
|---|---|---|---|---|---|---|
| 2009 | 10,251<br>(220) | 89,684<br>(9) | 3,874<br>(3) | 54,642<br>(2,315) | 2,436<br>(0) | 160,887<br>(2,547) |
| 2010 | 8,192<br>(192) | 29,644<br>(12) | 123<br>(0) | 41,655<br>(1,242) | 2,240<br>(0) | 81,854<br>(1,446) |
| 2011 | 6,293<br>(188) | 37,082<br>(8) | 38<br>(0) | 38,106<br>(1,137) | 1,447<br>(1) | 82,966<br>(1,334) |
| 2012 | 6,003<br>(106) | 46,707<br>(1) | 15<br>(0) | 29,550<br>(845) | 1,726<br>(1) | 84,001<br>(953) |
| 2013 | 6,316<br>(106) | 37,182<br>(4) | 3<br>(0) | 25,068<br>(641) | 1,827<br>(0) | 70,396<br>(751) |
| 2014 | 6,611<br>(110) | 41,900<br>(9) | 9<br>(0) | 21,935<br>(518) | 1,624<br>(0) | 72,079<br>(637) |
| 2015 | 7,398<br>(144) | 52,196<br>(4) | 2<br>(0) | 23,262<br>(586) | 1,390<br>(1) | 84,248<br>(735) |

( )은 구속

### 마. 인신매매 사범 단속

1) 개 요

법무부에서는 인신매매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와 국가신인도 추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형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 인신매매죄를 신설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는 인신매매 개념을 법제화하는 등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적극 노력하여 왔다.

2013. 4. 법무부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 '인신매매죄(형법 제289조)'를 신설하였으며, 인신매매죄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형법 제296조의2)을 신설하였다.

또한 2014. 10.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하여 인신매매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한다는 사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검사들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등 인신매매사범에 대한 조사, 기소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2012년 7월 한·미 양국 회담, 2013년 12월, 2014년 7월, 2015년 2월 실무회의 등을 통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한·미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01년 미국이 발표한 인신매매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3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해서 1등급으로 분류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인권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지표에 걸맞는 인권개선 상황에 관하여 국제적인 공인을 확보하게 되었다.

2) 강력한 수사 활동

2004. 10. 대검찰청에서는 전국 지검 및 지청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제정 시행을 계기로 성매매알선 등 사범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성매매 여성의 국외 송출 또는 국내 수입 조직 등 국제 성매매 알선 조직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전국 검찰청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행위를 엄단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일선 검찰청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여 검찰청에 피해자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전국 55개 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실을 설치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건처리 관련 정보 안내, 형사소송 절차 안내,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상담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4. 1. 인신매매범죄 처벌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였는바,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인신매매사범 등에 대한 구체적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2014. 10.부터 인신매매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한다는 기준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2006. 3.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되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무를 규정하고 각종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2008. 1. 대검찰청에 피해자인권과를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외국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외교적 마찰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국제결혼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적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2010. 10.부터 내국인 배우자에게 국제결혼 관련 제도, 현지 문화, 관습 및 결혼 사증 발급절차 등을 안내·지원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제도'를 도입하여 혼인의 진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위장결혼 등으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인신매매 관련사범에 대한 기소 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인신매매관련사범 기소현황

(단위 : 명)

| 유형 \ 연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55(44) | 78(44) | 59(38) | 66(34) | 73(46) | 41(30) | 72(39) | 59(30) |
| 영리약취·유인 | 55(44) | 78(44) | 59(38) | 63(34) | 73(46) | 35(26) | 55(31) | 30(14) |
| 부녀매매 | - | - | - | 3(0) | - | - | 3(2) | 13(6) |
| 국외이송·약취 | - | - | - | - | - | 1(1) | - | 3(0) |
| 추행등목적약취·유인등 | 2013. 6. 19. 형법 개정으로 변경·신설 | | | | | 3(3) | 10(3) | 12(10) |
| 인신매매 | | | | | | 2(0) | 4(3) | 1(0) |

※ 산출죄명 : 영리등을위한약취등, 부녀매매, 국외이송약취, 추행등목적약취·유인등, 인신매매,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영리약취, 영리유인, 국외이송약취, 국외이송유인)위반

※ ( )는 구속기소

3) 해외 아동 성매매 방지 및 법 집행 노력 강화

우리 정부는 해외 파견 법무협력관, 영사를 통한 정보 수집, 아세안 국가와의 형사사법 공조 등을 통해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 6.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아세안+3(한·중·일) 고위급 회의(SOMTC)'에 참가하여 인신매매, 마약 등 초국가범죄 대응에 시장경제적 원리를 도입하여 범죄조직의 자금원 동결을 통한 법치주의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2014. 7. 및 2015. 2. 외교부에서 '인신매매 근절 협력을 위한 한-미 협의회'를 개최하여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한-미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하였고,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권고사항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2015. 12. 우리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주요 8개국과 UNODC의 국제형사공조 담당자 15명을 초청하여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 등 국제 형사협력과 관련된 실무와 현안을 논의하였고, 실무자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였다.

## 4. 국제형사협력강화

### 가.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국제수형자 이송관련 국제형사협력강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이른바 국외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국내로 잠입하는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테러, 마약밀매, 인신매매 등 국제조직범죄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국제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유럽평의회 범죄인도협약 및 형사사법공조협약에 가입하였고, 2011. 12. 29. 위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은 기존 26개국에서 78개국으로,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국은 기존 20개국에서 74개국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유럽평의회 비회원국으로서는 세 번째로 위 협약에 가입하였던바, 그 결과 우리는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 및 2개 비회원국, 즉 49개국과 일거에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는 것과 유사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결국 1991년 최초의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되고 1993년 최초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이 발효된 이래, 지난 20년간 우리와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2배에 이르는 국가들과 일거에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 주요국들과 해외도피 범죄인의 강제송환과 수사공조에 관한 형사협력 체제를 완성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유럽평의회 협약 가입은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유럽 국가들의 신뢰를 확인한 것으로, 세계 최대시장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유럽지역의 국가들과 전반적인 사법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 4. 15.에는 한-말레이시아 범죄인인도조약이, 2015. 10. 22.에는 한-쿠웨이트 수형자이송조약이 각 발효되어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 중 그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나라는 76개국으로, 수형자이송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나라는 7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제도 시행 20년을 맞아, 그간 축적하여 온 제도적 기반과 경험을 집약하여 주요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강제추방 등 국가별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송환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5년 한 해 범죄인인도제도 시행 이후 최다 인원을 송환하였다.

범죄인 송환 현황

|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인수 | 9명 | 26명 | 24명 | 41명 | 45명 | 48명 |

유럽평의회 협약 발효를 계기로 유럽 국가들과 1:1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도피 범죄인의 본격적인 송환에 착수하는 한편, 유럽의 대표적인 국제금융센터인 스위스, 영국 등과는 해외로 빠져나간 불법자금과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를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2015년 중 외국에 총 236건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하였고, 외국으로부터 110건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받아 처리하였다. 특히, 외국에 대한 요청은 2014년 181건 대비 약 77%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2005. 11. 국내에서 발효된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에 의거하여, 2006년에는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등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5. 8. 제12차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대상자 25명 중 국내이송 신청자 5명, 국외이송 신청자 6명에 대하여 이송승인을 하였다. 한편 2012. 12. 18. 한-태국 수형자이송조약, 2014. 6. 13. 한-홍콩 수형자이송조약, 2015. 10. 22. 한-쿠웨이트 수형자이송조약이 각 발효되는 등 국제수형자이송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나라는 7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국제수형자 이송 현황

| | 국내이송 | 국외이송 |
|---|---|---|
| 2011 | 10명 | 0명 |
| 2012 | 15명 | 1명 |
| 2013 | 5명 | 4명 |
| 2014 | 12명 | 5명 |
| 2015 | 11명 | 1명 |

### 나. 국제협약의 적극적 이행

1)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이행

우리나라는 2002. 11.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을 비준함으로서, 동 규정의 당사국이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의해 2003. 3.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법원으로서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 등 반인륜범죄의 수사 및 소추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한 후 2004. 5. 입법예고, 같은 해 6월 공청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2006. 12. 국회에 이행입법안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였고, 2007. 12. 21. 동법률이 공포되었다.

2) 'UN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 이행 입법 및 비준 추진

초국가적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처벌하기 위한 UN 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이 2003. 9.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 12. 13. 위 협약 뿐 아니라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불법이민방지의정서에 서명하였고, 총기류자제의정서는 2001. 10. 4. 서명하였다. 현재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이행입법 준비작업이 진행중인데 법무부는 2007. 9. 이행입법 Task Force를 구성하고 2008. 12. 법무부 초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2010. 11.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등 불법이민 관련된 범죄를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2. 1. 국회를 통과하여 2012. 1. 17. 공포, 2012. 4. 18. 시행되었다. 또한 2012. 8. 포괄적 인신매매죄 신설, 범죄단체조직죄 개선 관련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13. 4. 5. 공포·시행되었다. 이러한 이행입법의 시행에 따라 2013. 10. 법무부는 외교부에 비준 추진을 의뢰하였고, 2014. 7. 외교부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5. 5. 29. 국회를 통과하여 2015. 11. 5. UN에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UN 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 당사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3) 'UN부패방지협약' 비준 및 이행 관련

'UN부패방지협약'은 공공·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포괄적 부패방지 국제협약으로서 동 협약의 제정으로 부패범죄와 관련된 국가 간 공조와 부패자산 환수를 위한 총체적인 국제규범이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2005. 11. 이 협약의 비준을 위해 설치된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국제범죄 분석기획단에 적극 참여 하였고 2006. 10. 'UN반부패협약 이행입법 추진반'을 발족하였다. 이후 동 협약 이행입법안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하여 2007. 10.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8. 2. 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 4.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동협약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2008. 4. 26.

비준·발효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동협약의 이행을 위해 2012. 11. 20. 부패범죄피해자의 피해재산 복구절차를 구체화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하였고,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 참가하여 협약 이행의 의지를 피력하며 우리나라의 추진 제도 및 사례, 성과를 소개하였다.

### 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업정처리

1) SOFA 협상 및 개정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1966. 7. 체결되어 1967. 2.부터 시행되어 왔는바, 1991. 2. 합의 양해사항 중 일부를 개정한 이후, 2000. 8. 서울에서 SOFA 재개정 협상을 시작하고, 2000. 12. 28. 개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였다. 개정된 협정은 2001. 2. 28. 국회 동의를 거쳐 2001. 4. 2.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 주요 개정 내용은 강간, 살인범에 대한 현행범이나, 살인, 강간 등 12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조기 신병 확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형사사법권 행사 범위가 확대되었고, 미군 등을 상대로 한 민사청구권의 실효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미군인, 군속의 대물교통사고 대부분을 형사 불입건함으로써 실질적인 재판권 행사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2)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처리 현황

SOFA 합의양해사항의 개정 이전에는 미군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이 1.0% 미만이었으나, 2001년 7.8%, 2002년 6.9%, 2003년 30.9%, 2004년 24.3%, 2005년 23.7%, 2006년 35.7%, 2007년 39.6%, 2008년 46.2%, 2009년 49.3%, 2010년 61.8%, 2011년 65.9%, 2012년 76.2%, 2013년 69.5%, 2014년 75.6%, 2015년 70.9%로 꾸준한 재판권 행사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사안이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미군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 사건 중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폭력사건이 73.6%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사건에 대해서 내국인과 같은 처벌기준을 적용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 사건 처리현황은 검찰업무 통계 〈제6장 통계 : 표 2-13〉과 같다.

## 5. 형집행 지휘·감독

### 가. 벌과금 집행

1) 집행실적

2015년의 벌과금 집행예산액(세입)은 1조 8,020억 58백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예산액의 82.44%인 1조 4,857억 21백만원을 집행하여 전년보다 1.9% 감소하였다. 한편 2015년말 현재 전국의 벌과금집행 미제액은 총 26조 4,792억 63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20% 증가되었다.

2015년말 현재 벌과금집행 및 집행 미제 현황은 〈제6장 통계 : 표 2-20〉과 같다.

2) 벌과금집행 우수기관 등 포상

2015. 12. 31. 벌과금 집행실적이 우수한 청을 선정하여 수원지방검찰청 등 6개 청을 집행유공기관으로 표창하였고, 집행유공

공무원 15명에 대하여 법무부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집행유공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검찰청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2015년도 집행유공 표창기관 현황

○ 집행률 최우수청

(단위 : 건수)

| 구 분 | 실조정건수 | 집행건수 | 집행률 (%) |
|---|---|---|---|
| 수원지검 | 60,779 | 48,233 | 79.36 |
| 울산지검 | 34,048 | 25,945 | 76.20 |
| 창원지검 | 27,495 | 22,287 | 81.06 |
| 춘천지청 | 7,296 | 5,940 | 81.41 |
| 영월지청 | 3,333 | 2,680 | 80.41 |
| 의성지청 | 2,264 | 2,023 | 89.36 |

**나. 사형확정자 관리**

2015년 말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총 58명(군형법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미집행자 제외)이며, 1997. 12. 30. 23명을 집행한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다. 형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 관리**

형집행정지자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및 보석자 관리에 대해 분기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2015년 한 해 동안 형집행정지자 328명 중 194명에 대하여 잔형 집행 등을 하였고, 구속집행정지자 763명 중 689명에 대하여 구속집행 등을 하였으며, 보석으로 석방된 3,170명 중 185명에 대하여 보석취소를 청구하여 구속집행 하였다.

## 제 4 항 형사법규의 지속적 정비

### 1. 개 요

사회현상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형법과 형사특별법 상호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형사정책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1985. 6. 14.「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켜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법 개정작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고, 2007. 6.에는 형법 전면 개정 및 형사특별법의 형법 편입 등을 위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2011. 3. 형법총칙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9. 3.에는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형소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

하여 2011. 7. 선진형사사법제도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형사실체법과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 2. 형사절차법 정비 추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1999. 5. 6. 인권신장, 권리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등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개혁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발족되었고, 동 위원회는 그 동안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어 온 우리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종전의 사법개혁에 관한 많은 연구 자료를 심층분석하여 사법제도 개혁 방향을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 법조의 합리화·전문화·현대화,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법조비리 근절, 세계화 조류에의 대응 등 6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토론과 연구·검토를 진행하였고, 1999년 12월에 이르러 우리나라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안을 대통령께 최종 보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범죄피해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규정을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5. 1. 17. 법제처에 송부하였고, 2003. 10.경 대법원 산하에 설립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사법제도 개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2004. 12. 15.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재정신청 전면확대, 국선변호 확대, 공판중심주의적 법정 심리절차 확립,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제도의 개선, 경미사건 신속처리절차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제처에 송부한 결과 양 개정안이 통합(총 182개 조문)되어 2005. 12. 27.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성안한 사법개혁 법안 중 국선변호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2006. 6.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6. 7. 19. 공포되어 2006. 8. 20. 시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양형기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2006. 12. 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특히, 국민참여재판(배심)제도, 수사과정 영상녹화제도, 재정신청 전면 확대, 재판기록공개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나머지 사법개혁법안도 2007. 4.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 6. 1.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었다. 위 제도들은 5년여의 시행 과정을 거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였고, 2013. 3. 대법원 산하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을 논의하였고, 법무부는 위원회 안을 토대로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를 거치고 관계기관의 의견이나 국민여론 등을 수렴하여 2014. 6. 12.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개편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2009. 3. 발족한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으로, 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2. 9. 26.

국회에 제출하여 2015. 07. 24.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의결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에 재판장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16. 5. 29. 국회를 통과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금미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수단 등을 보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0대 국회 제출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선진형사법제의 도입과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3. 형사실체법 정비 추진

한편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 발전과 윤리의식의 변화로 인한 법규범과 현실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7. 6.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켜 전반적인 형법 정비작업에 착수하였다. 위원회 현황은 〈표 9〉와 같다.

아울러, 2008. 8. 6. 부패없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징역형에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각 2008. 12. 26. 공포·시행)하고,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 적용의 확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부관리기업체 중 설치근거 법령의 폐지 및 개정 등으로 민영화되거나 명칭 등이 변경된 기업체를 현행에 맞도록 정비(2008. 7. 9. 공포·시행)함과 동시에 법무부 주도하에 360여개에 이르는 형사법상 양벌규정에 책임주의를 명문화시키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2008. 11. 28.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산하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정진석 등 18명 위원 명의로 양벌규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통일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한편, 세계주의 규정 신설, 정상감경 사유 구체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몰수·추징 시효 확대, 형의 종류 축소 등 정비, 보안처분 제도 형법 도입 등 획기적인 내용의 형법총칙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10. 8. 25. 공청회, 각 부처 의견조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형법총칙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2011. 3. 25.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한편 2012. 8. 13.에는 인신매매죄를 신설하고, 범죄단체조직죄,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를 정비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개정안이 2013. 3. 5.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 중이다. 이는 1995. 12. 형법에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신설 이후 17여년 만에 신종범죄를 신설한 것으로, 인신매매죄에 관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2012. 10.~12. 성범죄 친고죄 전면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대안을 마련하여 2012. 12.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는 등 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엄정 대응 요구에 부응하는 형사법 정비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되거나 위헌 여부가 의심이 되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2015. 12.에 개정되었으며, 2016. 5.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도 배임수증재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형법 제357조가 개정되었다.

〈표 9〉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2015. 12. 현재)

| 담당부서 | 법무부 형사법제과 |
|---|---|
| 근거법령 | 법무자문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20214호. 2007. 8. 6. 일부개정) |
| 설치목적 | 형사법 개정 자문 |
| 현재구성 | 위원장 1인, 위원 22인 |

| 성 명 | 연령 | 현 직 | 주 요 경 력 | 비 고 |
|---|---|---|---|---|
| 김일수 | 71 | 고려대 교수 | - 고려대, 독일 뮌헨대 박사, 사시 12회<br>-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 위원장 |
| 이영란 | 69 | 숙명여대 교수 | - 서울대, 서울대 박사<br>-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 위 원 (여) |
| 허일태 | 66 | 동아대 교수 | - 국민대,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박사<br>- (전) 한국형사법학회장<br>- (전)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 위 원 |
| 신동운 | 65 | 서울대 교수 | - 서울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박사<br>- 미국 워싱턴주립대 방문교수<br>-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 위 원 |
| 심희기 | 61 | 연세대 교수 | - 서울대, 서울대 박사<br>- 미국 스탠포드대 방문교수<br>- (현)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위 원 |
| 김성돈 | 54 | 성균관대 교수 | - 경북대, 성균관대 박사<br>-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연수<br>- (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편집위원 | 위 원 |
| 배종대 | 64 | 고려대 교수 | - 고려대, 고려대 박사, 독일 프랑크프르트 암마인대 박사<br>-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 위 원 |
| 박상기 | 65 | 연세대 교수 | - 연세대, 독일 괴팅겐대 박사<br>-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 위 원 |
| 손동권 | 65 | 건국대 교수 | - 고려대, 독일 본대 박사<br>- (전) 한국형사정책학회장<br>-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 위 원 |

| 성 명 | 연령 | 현 직 | 주 요 경 력 | 비 고 |
|---|---|---|---|---|
| 장영민 | 64 | 이화여대 교수 | - 서울대, 서울대 박사<br>- (전) 한국형사정책학회장<br>-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 위 원 |
| 정영일 | 64 | 경희대 교수 | - 서울대, 서울대 박사<br>- (전) 한국형사정책학회장 | 위 원 |
| 이용식 | 62 | 서울대 교수 | - 서울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박사<br>- (전)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 위 원 |
| 오영근 | 61 | 한양대 교수 | - 서울대, 서울대 박사<br>-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 위 원 |
| 노명선 | 58 | 성균관대 교수 | - 성균관대, 성균관대 박사<br>- 사시28회,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위 원 |
| 정현미 | 58 | 이화여대 교수 | - 이화여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박사<br>- (현)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 위 원<br>(여) |
| 이규진 | 55 | 서울고법<br>부장판사 | - 서울대, 사시28회<br>- 서울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br>- 서울고법 부장판사 겸 양형위원회 위원 | 위 원 |
| 김현석 | 51 | 대법원<br>선임재판연구관 | - 서울대, 사시30회 | 위 원 |
| 이상호 | 50 | 범죄예방정책국장 | - 고려대, 사시 32회<br>-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br>-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위 원 |
| 윤웅걸 | 51 | 대검찰청<br>기획조정부장 | - 고려대, 사시 31회<br>-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br>-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 위 원 |
| 김선철 | 55 | 변호사 | - 서울대, 사시 33회<br>- 서울지검 검사<br>- 법무법인 일호 대표 변호사 | 위 원 |
| 임한흠 | 63 | 변호사 | - 서울대, 사시23회, 대법원 재판연구관<br>- 청주지법 충주지원장<br>- 수원지법 부장판사 | 위 원 |
| 이광수 | 55 | 변호사 | - 서울대, 사시27회<br>-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 위 원 |
| 최경원 | 65 | 변호사 | - 성균관대, 사시29회<br>-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br>- 대한변협 회원이사 겸 회원위원회 위원장 | 위 원 |

## 제 5 항 검찰역량의 강화

### 1. 직제 개편 및 검찰인력의 변동

#### 가. 검 사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2015. 2. 11.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증원되는 검사 90명 중 1명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으로, 1명은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로, 6명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나머지 82명은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검사로 배정하였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2015. 2. 11. 개정)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의 형사부장 직위에 검사장 임용을 제외하였고, 대검찰청에 과학수사부장 직위를 신설하였다. 또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2015. 1. 6. 개정)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에 감찰부장 직위를 신설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금융조사에 관한 기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하여, 금융조사1, 2부장 직위을 신설하였고, 같은 규정(2015. 2. 11. 개정)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의 직접 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부를 조사제1부와 조사제2부로 개편하여 2개 부장 직위를 신설하는 한편,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차장검사 2명을 두도록 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4부장 직위를 신설하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공안부장 직위를 신설하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차장검사 및 형사부장 1개 직위를 신설하였다.

#### 나. 검사 외의 검찰청 공무원

2015. 1. 6.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에 감찰부를 신설하여 소속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집중된 수사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금융조사에 관한 기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대검찰청 인력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인력 71명(5급 2명, 6급 13명, 7급 16명, 8급 11명, 9급 29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검찰청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69명(8급 2명, 9급 67명)을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정원 69명(6급 1명, 7급 14명, 8급 45명, 9급 9명)으로 조정하였다. 2015. 2. 11.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첨단화·지능화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과학수사부를 신설하고, 고소·고발 사건의 직접 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부를 조사제1부와 조사제2부로 개편하는 한편,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차장검사 2명을 두도록 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4부를 신설하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공안부를 신설하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차장검사 및 형사부를 신설하였다. 2015. 5. 26.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검찰청

(지청 포함)에 검사직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5명), 재산형 집행 및 공판지원에 필요한 인력 58명(6급 24명, 7급 34명), 기록물관리 전문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증원하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성폭력범죄 등의 과학수사와 관련된 디엔에이 감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며, 대검찰청 감찰부 및 고등검찰청에 감찰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검찰 수사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대검찰청의 경우 5급 2명을 4·5급 2명으로, 6급 1명을 5급 1명으로, 8급 4명을 6급 1명과 7급 3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의 경우 6급 112명을 5급 112명으로, 8급 60명과 9급 110명을 6급 100명과 7급 70명으로 각각 조정하였다. 2015. 12. 30.「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검사정원법」의 개정으로 2015년도에 증원된 검사 90명을 보조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수사 및 공판 참여 등에 필요한 인력 86명(6급 23명, 7급 50명, 8급 10명, 9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대검찰청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인력 71명(5급 1명, 6급 14명, 7급 15명, 8급 11명, 9급 30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검찰청의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8명(8급 1명, 9급 27명)을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정원 28명(6급 1명, 7급 5명, 8급 19명, 9급 3명)으로 조정하였다.

## 2. 인사관리의 공정·합리화

### 가. 검찰인사

2015년도 검사인사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 그리고 평검사의 승진·전보, 법무관 전역자(사연 41기) 및 사법연수원 수료자(사연 44기),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신규임용, 장기근속자의 정례교류 등 차원에서 총 8회에 걸쳐 1,299명의 검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5년 검사장급 인사에 있어서 그 동안 검사장급 보직으로 운용되던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을 검사장급 보직에서 제외하였고, 대검찰청에 과학수사부장 직위를 신설하였다.

2015년 상반기 및 하반기 검사장급 승진에 있어서 검사 임관이후 각종 평가자료, 검사장 및 동기검사의 우수자원 추천 등 객관적인 자료 및 관리자로서의 지휘통솔 능력·세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법연수원 20기 2명, 21기 11명, 22기 7명을 발탁하여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에 보임하였다.

2015년 검사인사는 고검검사급과 일반검사 인사를 동일자로 단행하면서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노력과 결과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증원된 검사 90명을 각 청의 실정에 맞게 추가 배정하고 우수 자원을 배치함에 있어, 전문성과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로 일선 수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자 하였고, 급변하는 수사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질서 확립과 흔들림 없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검찰청별로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조직을 개편하고자 서울

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신설하였고, 금융조사 1·2부를 서울남부지검에 이전 후, 2차장검사를 신설하였으며, 휴전선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의정부지검에 공안부를 신설하고, 서울서부지검에 식품의약조사부를 신설하여 해당부서에 우수인력을 배치하였다.

또한, 난이도가 높고 중요한 고소·고발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수원, 인천지검에 확대 설치하여 고검의 우수검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수사현장에서 경륜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원 검사 배치 및 인원 보충을 통해 여성검사들이 언제든지 출산·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육아와 업무를 부담없이 병행할 수 있게 하여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고,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주요 구성원을 전원 유임하여 수사의 계속성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핵심 국정과제 관련 범죄인 철도비리, 해운비리, 원전비리, 방위사업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에 수사역량을 모으기 위해 특수수사 경험을 두루 갖춘 우수 검사를 집중 배치하여 고질적인 비리척결을 위한 인적 역량을 강화하였다.

전년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부분을 지방청에 배치하여 지방 및 일선 검찰청의 역량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형사부·공판부 등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일선 부장을 대거 발탁하여 경륜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였다.

검찰 내 여성검사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음에 따라,「지검장-지검 차장-일선 부장-법무부·대검 과장」 등 검찰 각급 지휘부에 실력과 인품을 널리 인정받은 우수한 여성검사들을 고르게 배치하였고, 일선 근무 부부장 검사 충원을 위해 사연 30기 검사 대부분을 부부장으로 보임하였다.

### 나. 검찰인사위원회 운영

위원장 등 8명의 외부위원과 평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를 포함한 3명의 내부위원 총 11명의 위원으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4회에 걸쳐 위원회가 개최되어 신규임용, 전보 등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며, 결정된 사항을 인사에 반영하였다. 2015년도 검찰인사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 10〉 및 〈표 11〉과 같다.

〈표 10〉 2015년도 검사 인사내역

(단위 : 명)

| 구분 / 직위 | 계 | 신규임용 | 승 진 | 전 보 | 퇴 직 |
|---|---|---|---|---|---|
| 계 | 1,283 | 112 | 28 | 1,067 | 76 |
| 검찰총장 | 1 | - | 1 | - | - |
| 고등검사장 | 24 | - | 7 | 11 | 6 |
| 검사장 | 82 | - | 20 | 51 | 11 |
| 고검검사급 | 524 | 3 | - | 487 | 34 |
| 일반검사 | 652 | 109 | - | 518 | 25 |

〈표 11〉 2015년도 검찰사무직 (5급 이상) 인사내역

(단위 : 명)

| 구분 / 직위 | 계 | 승 진 | 전 보 | 신규임용 | 퇴 직 |
|---|---|---|---|---|---|
| 계 | 585(8) | 154(1) | 375(7) | 0 | 56 |
| 고위공무원단 | 41 | 9 | 22 | 0 | 10 |
| 3 급 | 33 | 11 | 11 | 0 | 11 |
| 4 급 | 213 | 47 | 145 | 0 | 21 |
| 5 급 | 298(8) | 87(1) | 197(7) | 0 | 14 |

( )은 마약직

**다. 검사적격심사제도 운영**

2015년 검사 적격심사 대상은 재직년수 7년, 14년, 21년, 28년인 검사 총 218명이었다.

## 3. 교육·국외훈련의 확대

**가. 국내 교육제도 혁신**

2015년도 검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검찰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검사 교육과정은 검사 전문연수과정인 '특별수사전문가', '첨단범죄수사전문가', '금융수사전문가 등 집합교육 30개 과정, 54회, 1,029명, 사이버교육 156개 과정, 89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검찰직 교육과정은 전문교육과정인 '재산범죄수사실무' 등 집합교육 27개 과정, 37회, 1,236명, 사이버교육 187개 과정, 1,938회, 31,77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나. 국외훈련 기회·대상 국가 확대**

1) 검 사

검사의 국외훈련은 초기의 미국 위주에서 탈피하여 연수 대상국을 영국·독일·일본·프랑스·스페인·오스트리아·네덜란드·중국·캐나다·호주 등으로 다변화하였으며 연수기관을 정부기관, 일반대학, 국립전문교육기관, 연구소 및 기타 형사사법관련기관으로 다양화하였다.

한편, 6월 미만의 단기연수과정도 꾸준히 확대하여 2014년까지 검사의 장·단기 국외훈련 인원은 2,108명에 이르고 있으며, 검사 장기국외훈련현황은 검찰업무통계 〈표 2-24〉와 같다.

2) 검사 외의 검찰공무원

검사 이외의 검찰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은 1984년 대검찰청에 과학수사운영과를 설치한 이래 FBI 수사과정, 콜롬비아대학의 전산전문연수과정, 일본 국립과학경찰연구소의 문서감정과정, 미국 폴리그래프스쿨 과정 등에 꾸준히 파견하였다.

2015년도 외국에 파견한 검사 외 검찰공무원 국외훈련 인원은 8명이며, 이중 장기국외훈련 현황은 검찰업무통계 〈표 2-25〉와 같다.

## 4. 화합과 단결의 조직문화 조성

**가. 마음사랑 프로그램 실시**

수사, 형집행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극심한 검찰직원의 심리적 건강 증진 및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4년 마음사랑 프로그램 예산이 배정되었다.

마음사랑 프로그램은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는 '조사자 마음건강 케어(CARE)'와 모든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 5.~2015. 12. 까지 운용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위해 2014. 12. 10. 정신과 전문의로 구성된 '한국정신분석학회'와 심리상담 협약을 체결하고, 2014. 12.~2015. 12. 까지 집중심리상담을 실시하였다.

### 나. 동호회 활동 활성화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및 구성원의 단결을 위하여 각청 동호회 활동을 독려하고, 대검과 일선청 교류를 위하여 전국 검찰 동호인 대회(테니스, 야구, 축구)를 개최하는 등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 하였으며, 다양한 중앙행정기관 동호인 대회에 참여하여 동호회 활동을 통한 타 행정기관과의 교류에 노력하였다.

## 5. 효율적인 예산편성·집행

### 가. 검찰예산 개요

2015년도 일반회계 검찰예산은 벌과금 등 세입이 1조 8,025억 5,800만원으로서 2014년보다 2.9% 감액되었고, 세출은 총 8,612억 8,342만원으로 2014년보다 6.5% 증액되었다.

### 나. 주요예산 집행상황

2015년도 일반회계 중 벌과금 등 세입은 총 1조 4,857억 21백만 원을 집행함으로써 세입 목표액의 82.4%를 달성하였다. 한편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예산 8,612억 8,342만원에 예비비 282억 6,000만원, 이·전용 52억 원 증액 등 예산현액 9,032억 9,813만원 중 8,986억 801만원을 집행하고, 44억 5,812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다.

### 다. 2015년도 검찰예산 편성

2015년도 일반회계 검찰예산은 벌과금 등 세입이 1조 8,025억 5,800만원으로서 2014년보다 2.9% 감액되었고, 세출은 총 8,612억 8,342만원으로 2014년보다 6.5% 증액되었는바 세항별 내역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2015년도 일반회계 검찰예산 현황(편성)

(단위 : 만원)

| 구 분 | | 2014년 예산 | 2015년 예산 | 증감액 | 증감률(%) |
|---|---|---|---|---|---|
| 계 | | 8,083억 5,653 | 8,612억 8,342 | 529억 2,689 | 6.5 |
| 인 건 비 | | 5,560억 4,918 | 5,889억 842 | 328억 5,924 | 5.9 |
| 기 | 소 계 | 400억 3,335 | 418억 1,800 | 17억 8,465 | 4.5 |
| 본 | 검 찰 국 | 5억 4,100 | 5억 4,500 | 400 | 0.7 |
| 경 | 검 찰 청 | 382억 2,035 | 399억 400 | 16억 8,365 | 4.4 |
| 비 | 사회복무요원 | 12억 7,200 | 13억 6,900 | 9,700 | 7.6 |
| 세 부 사 업 | | 2,122억 7,400 | 2,305억 5,700 | 182억 8,300 | 8.6 |

법무시설조성 중 검찰시설조성 예산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등 4개 청의 청사신축에 필요한 시설비로 505억 6,000만 원, 전주지방검찰청 등 2개 청의 청사부지 매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78억 3,600만 원, 기타 설계비, 감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25억 3,400만 원 등 합계 609억 3,2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다.

2015년도 법무시설조성 중 검찰시설조성 예산의 구체적 현황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2015년도 법무시설조성 중 검찰시설조성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 2015년 예산 | 편 성 현 황 | 비 고 |
|---|---|---|---|
| 계 | 60,930,000 | | |
| 설 계 비 | 699,000 | · 검찰청 기타시설 | |
| 토 지 매 입 비 | 7,836,000 | · 전주지검<br>· 부산지검 서부지청<br>· 검찰청 기타시설 | |
| 시 설 비 | 50,560,000 | · 검찰특수기록관<br>· 수원지검<br>· 대전지검 천안지청<br>· 창원지검 거창지청<br>· 부산지검 서부지청<br>· 검찰청 기타시설 | |
| 감 리 비 | 1,663,000 | · 검찰특수기록관<br>· 수원지검<br>· 대전지검 천안지청<br>· 창원지검 거창지청<br>· 부산지검 서부지청<br>· 검찰청 기타시설 | |
| 시 설 부 대 비 | 122,000 | · 검찰특수기록관<br>· 수원지검<br>· 대전지검 천안지청<br>· 창원지검 거창지청<br>· 부산지검 서부지청<br>· 검찰청 기타시설 | |
| 자 산 취 득 비 | 50,000 | · 검찰관사 교환 취득 | |

## 6. 검찰시설의 개선

### 가. 청사 신축

2015년 검찰특수기록관, 전주지검 등 5개청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바, 구체적인 신축 현황은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2015년도 검찰청사 등 신축현황

| 청 별 | 규 모 | | 총사업비 | 추진일정 | 비고 |
|---|---|---|---|---|---|
| | 대 지(㎡) | 건 물(㎡) | | | |
| 검찰 특수기록관 | 6,610 | 9,330 | 211억원 | '17년 완공 | |
| 전주지검 | 33,235 | 31,405 | 940억원 | '19년 완공 | |
| 수원지검 | 33,924 | 42,969 | 1,206억원 | '19년 완공 | 위탁사업 |
| 대전지검 천안지청 | 23,190 | 16,506 | 707억원 | '17년 완공 | |
| 부산지검 서부지청 | 18,181 | 20,676 | 768억원 | '17년 완공 | |

### 나. 검찰관사 확보

2015년에 신규 확보한 관사로는 인천지검 관사 5채를 추가 임차·배정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34채의 검찰관사를 추가 확보하였다.

## 제 6 항 국민의 권익 보호

### 1. 개 요

법무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인권보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제·개정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정책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법무부는 2003년부터 시행된 「인권보호 수사준칙」이 국민의 변화된 인권의식에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약 2년여 동안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2006. 6. 동 준칙을 전면 개정하여 2006. 7. 1.부터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위 준칙에 따른 일선 검찰의 인권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7. 8. 검찰인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7년부터 전국 검찰청에 대한 인권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청을 포상하고 있다.

### 2. 인권존중의 수사시스템 정착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3. 1.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준칙의 내용에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제 수사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준칙 시행 이후 제·개정된 법령이나 각종 제도개선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작업에 착수, 다양한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 및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06. 6. 26. 동 준칙을 전면 개정하였다.

동 준칙은 개정 전과 달리 준칙이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규범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검 지침 등을 참조하여 가급적 구체화하였으며, 그 내용에 따라 장·절을 세분화하였다. 그 결과, 개정 전에는 총 3장 35개 조문에 불과하였으나 개정 후 3장 8절 73개 조문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준칙의 인권보호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제 및 조문내용을 수요자 관점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개정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7. 8. 검찰 인권평가위원회(위원장 : 박원순 변호사, 위원 : 조국 교수, 조균석 변호사, 김종훈 인권국장)를 구성하였고, 2007년 상·하반기 및 2008년 상반기 전국 56개 검찰청에 대한 체계적 인권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청과 우수청으로 선정된 검찰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법무부는 인권존중의 수사관행 정착을 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녹음·녹화제 확대 등 과학적 수사기법의 개발·활용,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설치 등 수사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4. 6.부터 시범 운영하기 시작한 영상녹화제를 대검찰청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에 전면 확대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진술취득 과정에서의 인권존중 시스템이 정착하게 되었다.

또한, 법무부는 경찰 신청 구속영장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위하여 '구속영장청구전 피의자 면담·조사제도'를 활성화하여 경찰 단계에서의 인신구속남용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2015년 중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37,095명 중 15.4%에 해당하는 5,695명을 기각하였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인권침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구속장소가 없는 수사관서를 포함하여 2015년에 모두 3,297회에 걸쳐 구속장소 감찰을 실시하였다.

## 3. 형사보상의 신속·적정 도모

구속 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2015년 피고인 보상은 13,192건에 508억 7,089만 원, 무죄비용 보상은 1,340건에 20억 6,559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의자 보상은 14건에 3,813만 원이 지급된 바, 현황은 〈표 15〉와 같고, 피의자보상금의 지급현황은 〈표 16〉과 같다.

〈표 15〉 피고인 보상금 및 무죄비용 보상금 지급현황(2015. 1.~12.)

(단위 : 천원)

| 구분 | 피고인 보상 | | | 무죄비용 보상 | 합계 |
|---|---|---|---|---|---|
| | 소계 | 구속사건 무죄 | 재심사건 무죄 (양벌규정 및 과거사 등) | | |
| 건수 | 13,192 | 479 | 12,713 | 1,340 | 14,532 |
| 금액 | 50,870,888 | 8,617,797 | 42,253,091 | 2,065,594 | 52,936,482 |

※ 피고인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 구금에 대한 보상
※ 무죄비용 보상(형사소송법 제 194조의 2) :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변호사비용, 여비, 일당 등) 보상

〈표 16〉 피의자 보상금 지급현황(2015. 1.~12.)

(단위 : 천원)

| 구분 | 접 수 (신수+구수) | 처 리 | | | 처리중 (미결정) | 지급 |
|---|---|---|---|---|---|---|
| | | 인 용 | 기 각 | 계 | | |
| 건수 | 16 | 14 | 2 | 16 | 0 | 14 |
| 금액 | 45,152 | 38,134 | 7,018 | 45,152 | 0 | 38,134 |

※ 피의자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구금에 대한 보상

## 제 7 항 미래형 선진수사시스템 구축

### 1. 기본방향

고도의 산업화와 정보화로 특징지어지는 현 시대에서, 우리 사회는 과거와 달리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범죄의 성격도 지능화・흉포화・조직화・광역화 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복잡하고 다양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인권보장을 위해 조직・인원 정비, 시설 확충, 첨단 과학수사장비 도입 등 다각적으로 과학수사 운영체제를 확충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를 첨단화하는 등 검찰 수사업무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 2. 과학수사 운영체제의 확충

검찰수사의 과학화는 1978. 3. 중앙수사부에서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한 이래로 1984. 7. 중앙수사부 과학수사운영과 설치, 1991. 8. 과학수사지도과 설치, 1998. 2. 두 과를 통합한 과학수사과를 설치하여 과학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04. 12. 31.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해 기존의 과학수사과는 폐지되고, 2005. 4. 과학수사기획관 및 과학수사제1담당관, 과학수사제2담당관이 신설되어 과학수사 담당부서가 확대 개편된 후 2007. 3. 8. 과학수사

제1담당관을 과학수사담당관으로, 과학수사 제2담당관을 디지털수사담당관으로 변경하였고, 2010. 7. 26.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 8. 4.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디엔에이수사담당관이 추가 신설됨으로써 과학수사기획관 산하에 과학수사담당관, 디지털수사담당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등 3담당관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후 2015. 2. 11. 종전 3담당관 체계로 운영되던 과학수사기획관 체제를 검사장 중심의 '과학수사부'로 승격시키면서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을 담당하는 과학수사1과, DNA 및 법생화학 감식 등을 담당하는 과학수사2과,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디지털수사과, 사이버범죄 수사지원을 담당하는 사이버수사과와 이를 총괄·관리하는 과학수사기획관 등 1기획관, 4과로 조직 체계를 확대·개편하였다. 특히, 과학수사기획관실이 각 과의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구조로 개편됨으로써 일선 청에 대한 과학수사 지원이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1. 4. 부산고검에 마약감식팀을 신설하여 영남지방의 마약범죄 수사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 지원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원거리 압수수색 지원에 따른 수사지원의 적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대전고검, 인천지검에 이어 2012년도에 수원지검, 2014년도에는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 창원지검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법화학·마약·DNA·문서감정 분야는 2007. 10.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을 받은 이래로 2011.10.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갱신, 2013. 10.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사후평가를 통과하였고, 2015. 10.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갱신하는 등 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

2014. 2.경에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사건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성인 중심으로 진술분석 업무를 개선, 수사에 지원함으로써 해당 사건의 해결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2014. 5.경에는 현대 범죄 수사에 있어서 CCTV 등 멀티미디어증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삭제 또는 손상된 멀티미디어 파일을 복구하여 제대로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복원 업무를 새롭게 도입하였고, 포렌식 오디오 신호 처리 장비, 음성 자동식별 시스템, 영상아카이빙 시스템 등 감정 장비와 수사지원 장비 총 1,052점을 새롭게 도입, 배정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리생리검사관 양성교육의 국제 규격화 및 표준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미국 폴리그래프협회(APA)의 교육기관 인가를 추진, 2015. 9. 7. 아시아 비영어권 최초로 APA 교육기관 인가를 취득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심리생리검사관 교육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015년도 감정처리실적은 법화학감정 29,951점, DNA감식 29,828점(현장감정물 14,245점, DNA DB시료 15,583점), 심리분석 5,096명(전국), 문서감정 11,706점, 음성분석 498점, 영상분석 1,904점, 멀티미디어 복원 1,421점으로 2014년 대비 10.4%가 증가하였다.

게다가 2016. 5.경부터 성충동억제약물 투여자를 대상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생리검사(PCSOT;Post Conviction Sex Offender Test)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분야는 2010. 1.에 디스크 분석도구인 CFT 1.0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현재 CFT 3.1을 운용중이고, 2012. 11.에는 이메일 전용 압수도구인 라이브 e-mail 압수도구를, 2015. 2.에는 손상파일 복구도구를 개발하였으며 2015. 12.에는 급증하는 모바일 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에서 자체 개발한 모바일 포렌식 도구인 MFA를 전국청에 보급하였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 개발·적용으로 2015년도에는 1,949건(전년대비 35.3% 증가)의 현장 압수수색을, 9,337건(전년대비 39.2% 증가)의 증거분석을 지원하였다.

게다가 2010. 7. 26.부터 시행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강도, 성폭력범 등 강력사범에 대한 DNA감식시료 채취·감식과 DNA-DB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강력미제사건 해결 및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과학수사2과에서는 검찰의 식·의약품 수사 및 다양한 수사영역의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법생물 감정실 및 법화학팀을 신설하여 '가짜 백수오 사건' 과 같은 가공식품, 한약재, 식물성 마약 원료의 진위여부 판단 및 강력사건 현장의 비인체 유래물에 대한 종판별을 통해 인간 DNA 외에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증거분석으로 관련 범죄 수사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중국산 발암성 항생제 닭꼬치 사건',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체중감소제 등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적으로 첨가될 수 있는 식품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감정 지원 및 환경사건과 관련하여 폭발성 휘발물질, 산·염기성 물질에 의한 토양· 수질오염, 기름유출 사건 등 점진적으로 감정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2011. 10. 일선 검사 및 수사관의 과학수사 활용 증대와 과학수사 활성화를 통한 SMART 수사 구현을 위하여,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과학수사책임관(부장검사급), 부책임관(검사), 책임수사관을 지정하여 과학수사관련 교육과 자문을 담당하게 하는 '과학수사책임관' 제도를 시행한 이후, 2011년부터 연 1회 전국 58개청 과학수사책임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4. 7. 부터는 과학수사책임관 회의로 명칭을 변경한 후 과학수사 주요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3. 영상녹화시스템 구축

영상녹화제는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보장을 위해 기존의 조서작성과 달리 수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 CD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1부는 원본으로 검찰청에 보관하고, 1부는 부본으로 재판 등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3. 6. 구성된 수사과학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법무연수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추진하게 된 것이며, 2004. 3. 수사과학화추진단의 녹음·녹화팀 구성으로 본격화되었다. 2004. 3.~4. 영상녹화장비를 선정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고검 소재지 5개청, 수도권 3개청(서울서부, 인천, 수원지검), 기타 2개청(청주, 울산지검)을

시범실시청으로 지정하였다. 같은 해 5월 시범실시청 담당 검사 및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운영지침을 시달하여 2005. 6.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시범실시 하였다. 같은 해 12월 시범실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범실시 성과 및 문제점 등을 토론·분석하여 영상녹화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2008.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비하여 기존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제401호, 2006. 6. 20.)을 제정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대검 예규 제425호, 2007. 12. 11. 대검 예규 제519호, 2009. 11. 3. 대검 예규 제625호, 2012. 11. 3., 대검 예규 제651호, 2013. 6. 27., 대검 예규 제682호, 2013. 12. 11., 대검 예규 제711호, 2014. 3. 31., 대검 예규 제759호, 2014. 12. 29. 대검 예규 제798호 2015. 7. 25.)하여 전국 청에 시행하였으며, 일선 청 검사 및 수사관들의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 12.에 영상녹화조사업무 실무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2014년에는 영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피조사자의 인권을 고려한 영상녹화 조사기법 등을 연구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2014. 12.경 「영상녹화 실무 매뉴얼」을 전국청에 배포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의 속기·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기사 운영준칙(대검 예규 639호, 2013.3.11.제정, 대검 예규 제791호, 2015.7.16. 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와같이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효율적인 영상녹화조사를 위해 모든 영상녹화조사실은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한 후 즉시 CD로 제작하고, 조사실 밖에서는 조사 장면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아동조사실은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조사를 받고 휴게실에서는 부모 등이 모니터로 편면경을 통해 조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신문실은 법정에 준하는 외관을 갖추고 고소사건의 경우 민사사건처럼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영상녹화조사실은 2004. 12.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4개청을 시범실시청으로 지정하여 12실을 설치·운영한 이후 2015. 12. 31.까지 전국 64개청에 총 788실을 운용하고 있다.

조사실 설치현황은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조사실 설치현황 (2004년~2015년)

| 종류 / 연도 | 계 | 검사 신문실 | 여성·아동 조사실 | 일반 조사실 | 일체형 | 분리형 |
|---|---|---|---|---|---|---|
| 2004 | 12 | 1 | 4 | 7 | - | - |
| 2005 | 42 | 4 | 9 | 29 | - | - |
| 2006 | 70 | 1 | 6 | 63 | - | - |
| 2007 | 242 | 9 | 7 | 226 | - | - |
| 2008 | 212 | 4 | 5 | 135 | 51 | 17 |
| 2009 | 77 | 2 | 2 | 35 | 26 | 12 |
| 2010 | 94 | - | 23 | 41 | - | 30 |
| 2011 | 38 | - | 1 | 24 | - | 13 |
| 2012 | 15 | - | 2 | 13 | - | - |
| 2013 | 10 | - | 2 | 8 | - | - |
| 2014 | 15 | - | 1 | 14 | - | - |
| 2015 | 0 | - | - | - | - | - |
| 계 | 827 | 21 | 62 | 595 | 77 | 72 |

※ 전국 수사검사(984명, 2015. 12. 31. 현재) 대비 80.1% 설치
※ 설치 누계는 827실이나 신청사 이전 등의 사유로 현재 총 788실 활용

## 4.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DNA감식 연구사업의 수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시료를 사전에 채취하여 DNA형을 분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건 발생시 현장검증물과 비교·검색하여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검찰은 2010. 1. 25. 공포되고 2010. 7. 26.부터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성폭력 등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들의 DNA신원확인정보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 12. 31.기준 채취대상자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DNA인적관리 DB에 104,493명을 등록하였고, 그 중 99,583명에 대한 DNA분석결과를 DNA신원확인정보 DB에 등록하였으며, DNA대조를 통해 살인, 성폭력범, 강도범 등 총 1,632건의 미제사건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 수사 재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강력사범에 대한 DNA데이터베이스 자료가 훨씬 더 축적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검거를 통해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미제사건의 현장 증거물 DNA와의 원활한 상호검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DNA감식과 범죄자 DNA-DB에 사용되는 고가의 외국 상용분석키트를 대체하는 국산화 기술을 연구하고 외국에서 활발히 연구

중인 차세대 분석 기술을 국내에 조기 정착시켜 국내 DNA감식기술의 역량을 제고하고 선진화를 확립하기 위한 'DNA감식의 국산화 및 선진화 연구사업'이 3년 계획으로 2012년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대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용역연구의 형태이며 총 15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서울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내의 학·연 전문가 그룹이 수행하였다. 산출되는 연구결과를 통해 보다 경제적인 DNA 감식시스템을 확립하고 DNA감식의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등 첨단기술을 통한 선진화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2. 11., 2014. 2., 2015. 3., 서울대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으로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움(ISFDL: International Symposium on Forensic DNA in Law)을 개최하였으며 1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DNA-DB 및 선진 DNA감식 기술에 관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2013. 9.에는 2017년 국제법유전학회(ISFG : International Society of Forensic Genetics)를 아시아 최초로 유치하여 '수사의 과학화'를 지향하는 검찰의 DNA감식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감식 기술의 세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5.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에 따라 수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중요성이 확대되고 피의자의 인권보장,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 증거취득 후 진술조사」로 검찰수사력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05. 4. 대검찰청에 과학수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학수사제2담당관실을 신설하였다.

2005. 5. 과학수사제2담당관실에서는 검찰의 과학수사 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 인력 증원,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용 장비 및 시설 확충,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센터 신축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분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2006. 3. 설계 발주를 거쳐 2006. 12. 공사를 착수하여, 2008. 10. 31. 대검찰청 부지에 지상6층 지하1층(건물 연면적 7,844.88제곱미터, 공사비 143억 8,200만 원) 규모의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준공되었다. 그 뒤 마약감정실을 제외한 과학수사기획관실 산하의 모든 감정·감식·분석실이 디지털포렌식 센터로 집중되어 법화학 감정·문서감정, 심리·영상·음성분석 뿐만 아니라 화재수사·DNA 감식 등 명실공히 검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과학수사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후 2012. 11. 단순히 수사지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감정기법 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고 선도적 과학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명칭을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로 변경하였고, 2013. 8.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 「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개소하여 디지털 포렌식 도구 및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 등 개발에 집중하고 안티포렌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전방위적인 감정·감식·분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하나의 과학수사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여 수사 증거물에 대한 신속·정확한 분석으로

일선 수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 6. 과학수사 업무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 가. 과학수사장비 관리 프로그램 개발

대검과 일선청에 분산 관리중인 과학수사장비의 체계적 관리 필요와 수사장비 관리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2006. 7. 프로그램 개발업체와 수사장비관리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06. 8. 수사장비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고, 2006. 9. 1. 시범운영을 시작하면서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 관리대장을 토대로 전국청 수사장비 데이터를 입력하였다. 또한 전국청 수사장비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사장비관리시스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고, 대출·회수 등 업무처리 메뉴얼을 제작·배포 하였다.

이 시스템은 전국청의 수사장비 관련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으로 권한이 허용된 대검 또는 일선청 장비관리 담당자가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실시간으로 장비보유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기존 수기기재 장부를 통해 관리하던 수사장비 대출·회수업무를 바코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정확성을 높였으며, 대검의 메인관리자가 수사장비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과학수사기획관실 홈페이지에 연동시켰으며, 기존 과학수사기획관실 홈페이지에 장비지원 게시판을 신설하여 일선청 장비지원 요청 및 문의에 즉각 응대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수사 활성화 및 수사장비 효율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0. 6.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의 노후와 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사장비 활용 커뮤니티 제공, 통계 및 조회, 관리 기능 강화 등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0. 10. 성능 및 기능이 더욱 개선된 수사장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 나.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시스템 구축

2006. 6. 디지털 압수수색 및 분석 지원요청, 디지털 관련 자료, 각종 공지사항, 통계 활용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지원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여 실무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수사지원업무가 통합 관리되지 않고, 디지털증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비하고, 수사질의어프로그램이 분석관의 PC에서만 구동되어 대용량 파일 등에 대한 검색이 어렵다는 등의 서비스 불만이 초래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지원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포함시켜 「전국 디지털수사망 구축사업(D-NET)」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하여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을 연계하였다.

이와 함께 대검, 각 거점별 디지털포렌식팀(서울중앙,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대전고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 창원지검)과 일선 수사팀 간의 효율적인 수사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지원업무 관리, 연구개발관리, 디지털수사장비관리, 통계관리, 외부전문가 관리, 운용시스템 관리 등을 위한 「디지털 수사 통합 업무 관리시스템(DFISII)」, 분석결과의 온라인 송부 및 검색,

이메일, 회계데이터, 전자결재 데이터, 계좌내역, 통화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통합분석할 수 있는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 대검찰청과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폐기가 가능한 중앙집중형 「디지털증거통합관리시스템」, 디지털수사팀간의 분석·협업을 위한 「통합/협업 디지털증거 분석환경」, 디지털 포렌식 전문교육이 온라인상에서 가능한 「디지털 포렌식 온라인교육시스템」, 가상환경에서 디지털증거 분석이 가능한 「가상화 디지털 증거 분석시스템」, 위 시스템들의 체계적인 보안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수사망 인프라 시스템」 등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디지털증거의 무결한 송치를 위하여 「디지털증거 확보(송치)체계(KD-NET) 구축사업」을 착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국군기무사령부와 디지털증거의 확보(송치)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4. 11.에는 디지털증거의 송치, 수리 등 처리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구축·개발한 디지털증거데이터패키지를 국가 표준(KS X 1220)으로 제정하였고, 2015년에는 경찰청(일부),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2차 구축사업을 완료하였다.

### 다.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의 운영

법화학, 마약, DNA, 문서 감정분야에 있어서 감정물의 접수에서부터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서 작성 및 발송까지의 세부사항을 전산으로 기록 관리하는 감정정보관리 시스템은 감정절차의 연속성 및 무결성(chain of custody)을 담보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개발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 사용되고 있다.

2012년도부터는 3년 프로젝트인 DNA감식의 국산화 및 선진화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DNA-DB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사업이 마무리되어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7. 검찰업무 정보화

### 가. 검찰업무 정보화 시스템의 개선

검찰업무 정보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0. 2.에 『검찰 정보화 장기발전계획(ISP)』을 수립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2000. 7.부터 단계별로 지식관리시스템(e-Pros), 검사실 수사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였고, 2007. 12.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공판지원 시스템과 영상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8년에는 영상물관리시스템 확대 구축과 전화통화녹음시스템 등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검찰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 10.에는 정보보안을 위해 대검 및 서울고·지검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 분리를 추진하였고, 2009. 12.에는 지식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지식검색 기능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정책자료 및 수사사례·기법 등 핵심지식을 손쉽게 등록·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0. 11.에는 전자결재시스템에 문서관리 기능을 도입하여 개인 생산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1. 10.에는 '사용자별 맞춤형 바로가기 기능' 및 '부재중 메시지 설정 기능' 추가 등 메신저의 주요기능을 사용자 편의위주로 개선하였고, 전자결재와 메신저간 연계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문서공유자와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결재 시 소통이 증대되고 충실한 결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1. 12.에는 기존 메일용량(200MB)을 대폭 증설(15배)하여 3GB로 저장공간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중요 업무자료에 대한 장기간 보관 및 활용이 가능해졌고, 인사이동 시 업무 관련 자료 이관이 용이해져 업무효율성을 증대하였다.

2012. 1.에는 해킹방지 및 신뢰성 보장 등 보안성이 한층 강화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012. 7.에는 망분리청(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인사이동 전후 2주간 메일 시스템 대용량 첨부파일 제한 용량을 확대 적용(500MB ⇒ 3GB)하여 인사이동 대상자들의 업무편의성이 향상되었다.

2012. 10.에는 e-PROS 통합검색 시 최적의 검색결과가 전시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을 재구성하였고, 메신저 시스템의 메모리를 증설하여 메신저 자원부족현상 해소 및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2. 11.에는 e-PROS 초기화면의 청별 소식을 삭제하고 경조사, 검찰뉴스, 우리청 소식 등 3개 항목으로 재개편, 각 항목당 전시되는 공간이 추가 확보되어 제목만으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2. 12.에는 구글 크롬 및 파이어폭스의 IE Tab(부가기능)을 이용하여 검찰 인터넷 메일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솔루션으로 교체하여 IE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타 브라우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으며, 기존 PC에서만 가능했던 검찰 인터넷 메일 기능을 모바일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13. 3.에는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서장의 결재관련 메뉴에 '접수지연목록' 메뉴를 신설하였으며, 2013. 7.에는 e-PROS 통합검색 결과에 대하여 주민번호를 *로 표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2013. 10.에는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메신저 알림 문구 최상단에 결재 진행 상태를 표시하였다.

2013. 12.에는 윈도우 환경 변화에 따라 신기술 적용, 디자인·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검찰 메신저Ⅱ 구축사업의 추진 및 e-PROS 지식관리시스템의 지식등록 불편함 해소,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였으며, 게시판 및 전자결재 검색시 본문검색을 제공하여 보다 빨리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개선하였다.

검사전문화 관련하여 변시 기수 관리 등 법학전문대학 출신 e-PROS 검사계정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였고, 공인 전문검사 인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e-PROS 시스템을 보안이 강화된 윈도우7 및 익스플로러 9에 최적화하여 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원거리 거주 피조사자의 출석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사건 이송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사건처리, 조사에 활용하고자 전국 58개 검찰청 및 51개 교정기관에 "원격화상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4. 12.에는 검찰지식의 효율적인 축적과 공유 및 업무 협업 기반 강화를 위해 차세대

검찰지식포털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사업과 연계하여 검찰백과사전(Prospeida)을 새롭게 구축하였으며 지식관리, 게시판, 전자결재의 검색속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 시간을 단축시켰다.

2015. 10.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구축·배포한 공무원 모바일메신저 '바로톡'을 도입하여 이동·출장 중 업무 정보를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송수신 하도록 하였다.

검찰 인터넷 홈페이지는 1996. 3.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2. 2.에는 전국 검찰청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사이버민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One-stop 민원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였고, 2005. 2.에는 사건진행상황 검색서비스 확대 및 인터넷을 통한 민원증명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6. 12.에는 검찰 홈페이지에서 벌과금 납부조회와 휴대폰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7년과 2008년에는 정보소외계층이 검찰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하여 국민 위주의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 내·외부의 의사소통 채널 및 검찰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6. 9.에 검찰 영상방송국(SPBS)을 설립하고 검찰 영상뉴스인 '검찰포커스'를 제작하여 내부 통신망에 방송하였으며, 2007. 10.부터는 검찰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http://tv.spo.go.kr)를 개설하고 '검찰 포커스', '사건 속으로' 등 자체 제작한 다양한 영상 컨텐츠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2008. 10.에는 멀티미디어 스튜디오를 개소하고 고품질의 영상콘텐츠 제작과 미디어 트레이닝에 활용하고 있다.

2009년에는 홈페이지 서버시스템을 이중화하여 무중단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웹사이트를 통합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세부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2010년에는 기존 홈페이지의 접속 통계를 활용해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메뉴를 전면에 배치했으며, 통합되고 보강된 양질의 콘텐츠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용어로 제공하는 한편, 주요 위치에 팝업존을 배치하고 검찰의 홍보창구로 활용하고자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추진하여 2011. 3. 25.에 오픈하였다.

2011. 12.에는 검찰청 모바일 웹사이트(http://m.spo.go.kr)를 구축하여 일반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검찰 홈페이지와 검찰방송 정보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검찰청 찾기', '검찰발표자료' 등 검찰소식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검찰 블로그,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제공하여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화하였다.

2012. 11.에는 급변하는 IT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최신 웹트랜드를 반영하기 위한 홈페이지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2013. 10.에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안정성 제공을 위해 DB서버 이중화 구성을 실시하여 24시간 무중단 환경을 마련하였다.

2013. 11.과 2014. 11.에는 지속적인 웹접근성 확보를 위한 개선을 통해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으로부터 3년 연속 인증심사를 통과해 웹접근성 인증마크(제2013-1289호, 제2014-475호, 2015-596호)를 획득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주관 웹 호환성 수준 진단 실시(중앙

부처·공공기관·지자체등 대상)결과 검찰청 홈페이지는 “매우우수”로 진단되었다.

2014. 7.에는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행정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국 검찰청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메뉴의 사전정보공표대상 등 기능을 개편하여 사용자가 행정정보 내용을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2015. 4.에는 영문홈페이지 News Brief 신규메뉴를 메인화면에 추가하여 검찰주요 보도자료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 추진**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형사사법업무를 표준화·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민중심의 e-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21세기형 e-형사절차 구현을 목표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을 통하여 수사 프로세스 348종, 재판 프로세스 260종, 집행 프로세스 380종 및 압수업무 등 기타 프로세스 34종 총 1,022종의 형사사법업무 프로세스를 수작업 기반 업무환경에서 전자적 업무 프로세스로 대체하고, 형사사법 문서 총 1,361종의 서식을 표준화하여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형사사법기관이 사용하는 공통 코드 25종을 표준화하여 수사·재판·집행 등 형사사법 업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형사사법정보를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기관의 약 74개 접점을 대상으로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약 48종의 민원 업무에 대하여 온라인 발급·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형사사건처리 진행상황조회 서비스, 재판서·통지서 조회, 벌과금 조회·납부 서비스 등 총 11종의 대국민 형사사법 통합서비스를 2010. 7.부터 개시하였다.

2008. 12.에는 형통사업의 쟁점에 대해 관계기관간 합의를 도출하고, 법무부 장비 도입을 위한 4차 사업을 발주하였다.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각 기관의 시스템은 각 기관이 운영하되, 대국민서비스시스템 등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통시스템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운영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2009. 2.에는 기관간 정보공동활용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간 합의를 도출하였고, 2009. 12. 29.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0. 5. 1.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 7. 12.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무면허 약식사건 전자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대국민 통합포털 신설 등으로 검찰 사건처리 업무 효율화와 국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2011년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시스템 인프라 확충 등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도로명

주소체계 변경 및 고소·고발지침 개정 등 법·제도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사건검색시스템의 전·후 화면이동 기능 구현 등 일선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서버 메모리 증설 및 연계 서버 이중화 구축 등 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2011. 12.에는 일선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기능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수사지휘 및 공판카드 업무 간소화, 판결문 통합검색 기능을 개선하였고, 불필요한 알림창 제거로 클릭수를 최소화하였고, 창 크기 조절 기능을 도입하여 멀티태스킹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기능 개선과 함께 향후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또한 사건조회 및 영장정보 조회 권한 부여에 대한 승인제 도입 등 권한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형사사법정보의 보안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2012년에는 화면의 이동 없이 조서작성이 가능하도록 입력절차를 개선하고, 경찰과의 처분미상전과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행정공문서로 통보하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형사사법 서비스 고도화에 한층 노력하였다.

2013년에는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 및 업무 절차 개선을 위해 검찰사용자와 IT운영자로 구성된 고도화TF를 구성하여 시스템 개선과제 도출 및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였다. 검사실 업무 경감 방안으로 미제사건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담당자 지정, 미제사건에 대한 정보 확인 절차 통합, 수사지휘목록 개선, 관련사건검색 기능 확대, 결정문 조회·검색, 판결문검색, 소속직원의 일정 관리 등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일선 결재자들이 검사별·부별 수사 실적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화면을 구현하여 소속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배당·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찰조사과·수사과 사용자들을 위해 검찰업무 절차에 부합하고 사경과는 차별화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다.

한편, DB접근제어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강화 및 Windows 7 운영체제 도입에 대비 각종 시스템의 호환성 확보에 노력하여 형사사법정보의 보안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2014. 12.에는 사용자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 화면창 크기(1280×960) 확대, 내가 작성한 문서 보관기능, 화면별 매뉴얼 구성 및 서식검색, 해야 할 업무리스트 제공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검사실 업무 개선을 위하여 재기·이송시에도 기록목록 및 증거목록이 연계되도록 하고 사용자가 직접 기록목록을 편집·업로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재기 및 기소중지 업무 화면을 통합 간소화하여 보다 쉽게 재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야간에도 벌금납부 사실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납부내역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민서비스를 강화하였다.

한편, 전자적 불기소 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공소권 없음' 사건을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하였고, 불기소 사건 재배당 및 일반사건 전환, 검사 결정 및 조서 작성, 전자약식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에 기능을 구현하였다.

2015년에는 사건 공유 범위 확대, 팀제 수사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사건부 기능 개선, 직접경정 및 겸방 업무 시 검사실별 시스템 접속 방식을 개선하는 등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발맞추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개인정보 보안성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구술민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원인의 민원서류 신청서 수기 작성 부담을 해소하여 대민서비스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원 담당자의 수작업 입력을 전자화하여 민원 처리 효율성,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이원화 구축되어 있는 국제수사공조시스템을 통합 구축함으로써 사건 정보가 공유되어 국제수사 공조 요청·발송·통지 등의 업무 편의성,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통계기능을 개선하여 업무 담당자가 진행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 검찰사이버안전센터 설립

검찰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날로 지능화하는 DDoS 등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조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기초하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291호, 2012. 1. 2)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2012. 12.에 검찰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완료하였고, 2013. 1.부터 본격적으로 대검찰청 및 63개 일선청에 대한 사이버위협 정보를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검찰 업무공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요 업무자료 유출 예방과 직원들의 정보보호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보호 교육 지원, 가상의 악성메일을 이용한 모의훈련 실시, 정보보호 교육·홍보 자료 게시판 운영 등 검찰 정보시스템과 사용자 정보의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PC 해킹 차단, 악성코드 감염 방지,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보안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각종 정보보호 규정 정비 등 노력을 통해 안전한 검찰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8.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사이버공격의 양상은 국가 주요 산업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만큼 대담해지고 국민 생활 안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피싱, 스미싱, 파밍 등 사이버범죄 수법 역시 한층 진화하여,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사이버범죄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검찰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된 업무와 기능을 추진·관리함으로써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1. 11. 1. 대검찰청에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설치하였다.

사이버범죄수사단은 한수원 대상 사이버테러 사건을 계기로 2015. 2. 11. 과학수사부로 출범과 함께 사이버수사과로 정식 직제화 되었고, 공공전산망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문적·조직적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대중화로 거의 모든 수사 영역에서 사이버 증거자료 수집·분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수사과는 일선 검사·수사관에 대한 전문교육,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연구·개발, 일선 사이버 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 지원을 통해 검찰 전체의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해외 서버를 경유하여 공격하는 수법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므로, 국가간 신속한 공조가 수사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수사과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70개국이 가입하여 활동 중인 G7 24/7 Network의 한국 접촉점으로서 국내 수사기관을 대표하여 국제공조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G7 24/7 Network를 통해 회원국들은 실시간 정보교환 및 소멸되기 쉬운 사이버 증거보존 요청을 진행함으로써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사이버수사과는 급증하는 중국發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조 지연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에 따른 장기·영구미제 심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반기별 「한·중 수사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지속적인 사이버공조 논의를 하였고, 중국 공안부 사이버안전보위국을 방문하여 한수원 사건 공조 경과 등 사이버 현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미 법무부 CCIPS와 사이버수사 공조 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여 공조활성화 및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관련 논의를 하였고, 주한미 FBI 사이버수사관과 매월 협력회의 실시, 사이버범죄정보 교환 및 공조현안 논의를 통해 미국과의 대외협력을 강화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주요 보안업체인 안랩(AhnLab)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가적 사이버테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분석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사이버수사과의 연구·개발로 구축된 악성코드시스템 THEMIS는 악성코드에 대한 추출, 분석, 범죄자 추적 등 일련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2012년 구축 이후 매년 고도화를 거듭하며 악성코드 제작·배포 사범 단속을 위한 검찰수사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및 스미싱 범죄 등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다양한 신종 악성코드가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서 신속한 증거 분석을 위하여, 모바일 기반 악성코드 등 신종 악성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순차적인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구축하였고, 2016년 상반기에는 일선청에서 악성코드분석시스템에 접속하여 분석결과(관련 IP·도메인 등)를 손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수사과에서는 대검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사이트를 사전 탐지하여 채증 및 차단을 자동화한 시스템을 2013. 3.경에 자체 개발하여 2015. 12.까지 총 8,602건을 차단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사이버수사과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탁월한 전문 역량을 확보하고, 국가와 국민을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상을 구현하고자 힘쓰고 있다.

## 9. 감정·분석기법 특허출원 및 등록

최근 들어 특허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

지고 있다. 과학수사부는 특허를 통해 과학수사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최신 감정 · 분석기법개발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과학수사1과 문서감정 분야는 분광법을 이용한 볼펜 서명 감식 방법(2011. 10.), 분광법을 이용한 인주 및 서명 감식 방법(2012. 5.), 음성분석 분야에서는 신원확인을 위한 발성유도 방법 및 장치(2011. 12.), 오디오 파일의 위변조 검출 장치(2014. 4.), 주파수대역의 분석을 통한 디지털 오디오파일의 위변조 검출방법(2015. 10.), 녹음 인증 시스템 및 그것을 이용한 녹음 인증 방법(2016. 1.), 영상분석 분야에서는 렌즈 왜곡 보정에 사용된 보간 패턴 검출을 통한 촬영카메라 식별 방법 및 장치(2013. 1.), 멀티미디어 복원에서는 손상음성파일 복원 장치 및 그 방법(2014. 11.), 영상녹화분야에서는 영상 녹화 조사 시스템(2011. 10.)을 특허 등록하였다. 심리분석 분야에서는 심리생리검사 관리시스템(PMS: Polygraph Management System)(2015. 10.)을 저작권 등록하였고, 영상녹화분야에서는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2010. 2.)와 컴팩트디스크용 라벨지(2010. 3.)를 디자인 등록하였다.

과학수사2과 법화학감정 분야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암페타민 및 대마 유도체의 다성분 동시 분석방법(2008. 7.),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디메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유도체의 다성분 동시분석방법(2009. 6.),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모발 중 암페타민 유도체 및 케타민 대사체의 다성분 동시분석법(2009. 11.),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소변 중 60종 이상 마약성분의 다성분 동시분석법(2010. 12.), 대마 대사체 분석방법(2011. 4.), 기체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한 기체상 혼합물로부터 목적물질의 선택적 분취방법(2012. 2.) 메탐페타민의 신규한 제조경로 특정 불순물(2013. 1), 면역 반응 측정법을 이용한 모발 중 마약 성분 신속 분석법(2014. 3.), 고온 기체상 크로마토그래프 분석법을 이용한 발기유발제의 고감도 신속 검출법(2014. 7.), 화학적 프로파일링에 기초한 메스암페타민의 분류기법(2014. 8.), 탄소수 6이하의 알코올류 다성분 동시분석법(2015. 7.), 혈액 중 성충동 억제 약물 및 남성호르몬 다성분 동시분석법(2015. 8.)을 특허로 등록하였고, DNA-DB 운영 및 DNA감정분야에서는 한국인 집단에서 변별력을 가진 에스티알 유전자들로 구성된 콰드루플렉스 피씨알시스템(Quadruplex PCR system)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 감식방법(2000. 10.), 한국인 집단에서 변별력을 가진 16개의 짧은 반복 단위 유전좌위들 및 성염색체 유전좌위를 포함하는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 감식방법(2011. 1.), 체액식별용 키트 및 이를 이용한 체액 식별방법(2012. 12.),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을 이용한 분석대상의 인간객체의 상염색체 분석방법(2014. 10.), miRNA를 이용한 체액 식별용 조성물·키트 및 체액 식별방법(2014. 10.), DNA메틸화 마커를 이용한 체액식별 방법·체액 식별용 조성물 및 키트방법(2014. 11.), NGS기반 인간객체의 상염색체 분석방법(2015. 6.), 마약성 양귀비류의 판별방법(2015. 9.)을 특허등록 하였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한 인간객체의 확장 상염색체 STR분석방법(2015. 12.), 인간객체 염색체

상의 STR분석방법 및 이를 이용한 분석키트(2015. 12.)가 특허 출원 중에 있으며, 법생물 디엔에이 바코드 수사자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프로그램(2014. 6.)을 저작권 등록하였다.

디지털수사과는 암호분석 분야에서 다수의 암호설정 파일에 대하여 암호를 한번에 해제할 수 있는 '다수의 이기종 암호파일에 대한 자동화된 패스워드 해제시스템 및 방법'(2011. 12.), '착발신 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는 통화 내역 추출-추적 시스템 및 그 방법'(2013. 3.), '디지털 증거 분석시스템 및 그 방법'(2013. 7.), '디지털 증거 수집방법, 그리고 상기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매체'(2013. 11.)를 발명하여 특허 등록,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는 '문서 파일의 포렌식 분석 방법 및 시스템'(2014. 3.), 이메일, 전자결재, 회계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손상된 레코드를 복원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5. 8.)과 'DB2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법 및 장치'(2015. 12.)를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디바이스에서 사용자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획득장치 및 방법'(2015. 10.)을 특허 등록 하였다.

# 제 4 절 범죄예방업무

## 제 1 항 범죄예방업무의 기본방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교화 및 관리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2015년 범죄예방정책국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 등 강력범죄에 대한 전문적 대응능력을 제고하였고, 전체범죄의 16.7%(약 21만건)에 이르는 주취·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강력범죄로의 악화를 차단하는데 집중하는 등 성폭력·강력사범 관리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내실화, 맞춤형 출소자 지원을 통해 재범방지에 노력하였다. 또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비행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학부모교육을 확대하였으며, 소년원 교육내실화, 직업훈련 강화 등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지원을 통해 위기청소년 비행예방 역량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지자체·민간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학교·사회 법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법질서운동을 전개하여 민주시민의식 및 준법의식 함양에 기여하였다.

### 1. 범죄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

최근 형사정책의 추세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보호·선도를 통한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지원'을 강조하고 있고, 핵가족화 등에 따른 가정의 해체, 이혼율 증가 등으로 불우한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들이 비행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비행소년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로 청소년 범죄의 환경적 요인이 부각되고 있어서, 비행청소년 및 출소자 등 범법자를 보호·선도할 사회적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구축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요청되어 법사랑위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사랑위원의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법사랑위원의 조직과 명칭을 변경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추진하였다.

### 2.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법교육 기반구축

법교육의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05. 3. 법조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법교육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2006. 3.까지 총 7차 회의에 걸쳐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고,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방향」 최종 연구보고서를 채택 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위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법교육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점검하여 초·중·고등학교의 법교육 현황,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법조계의 지원방안 및 평생교육·시민교육과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심층 논의를 통해 법교육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2006. 7. 법교육연구위원회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민·관의 법교육 역량을 총결집한 실무추진기구 성격의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정부기관, 민간기관 등 17개 단체로 이루어진 법교육추진협의회를 발족하였고, 2006. 10.부터 초등·청소년·시민 등 각 분야별 민간 법교육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법교육 발전방안 자문을 위해 법교육 자문위원 간담회를 반기에 1회 개최하였다. 2008. 3. 법교육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민·관 법교육 전문가 총 15인으로 구성된 법교육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09년부터 반기에 1회씩 개최되기 시작하여, 2015. 12. 31.까지 임시회 포함 총 12회 개의되었다.

또한 2006년 상반기에 서울대학교와 '청소년 법교육사업', 서울시립대학교와 '시민법교육 사업', 2007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학교법교육사업', 이화여자대학교와 '여성 법교육사업', 2009년에는 서울교육대학교와 '초등학생 법교육사업', 고려대와 '로스쿨 학생들의 법교육 관련 지역사회 봉사활동 공동추진', 2010년에는 이화여대, 중앙대, 연세대와 2011년에는 제주대, 경북대, 한양대와 2012년에는 충남대와 '로스쿨 학생들의 법교육 관련 지역사회 봉사활동 공동추진' 등 법학전문대학원 13개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민관 법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가치에 대한 교육과 법질서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헌법교육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미래세대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준법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과 체험형 법교육이 강조되어,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활 속 법교육이 확대되었다.

## 3.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기초 법질서가 존중되고,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 3.부터 법질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법질서 실천운동은 민간과 지자체, 검찰, 법무유관기관 등 협업으로, '기초 법질서 분야', '안전법규 분야',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 등 3대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 추진하였고, 특히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범죄피해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 감소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5. 9.부터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 4. 감호제도의 개선

형벌만으로 교화·교정이 불가능한 상습범과 정신질환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1980. 12. 18. 사회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시행된 보호감호 및 치료감호 제도는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2005. 8. 4.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되었고, 고질적 상습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으며, 2005. 8. 4. 치료감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고, 2008. 6. 13.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였다.

## 5.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 추진

1988. 12. 31. 제정·공포된 보호관찰법에 따라 1989. 7. 1.부터 범법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시작한 이래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형법개정을 통해 1997. 1.에는 보호관찰제도가 성인범에까지 전면 확대 시행되었다. 초기 소년범에 대한 지도·상담위주의 선도정책에서 재범방지와 위험범죄자 관리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보호관찰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집중 보호관찰 확대 실시, 외출제한명령제도 도입,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 시행 등 위험범죄자 관리를 위한 선진 보호관찰기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근접 접촉위주의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도피 중인 자에 대하여는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하여 구인·유치를 적극 실시하는 등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복귀 조력을 위해 지역사회의 우수자원과 연계하여 재범방지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보호관찰의 재범방지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자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보호관찰을 실현하기 위해 법사랑위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등 효과적인 재범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6. 12. 개정 치료감호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주취 또는 정신장애 상태에서 경미폭력범죄 또는 비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치료명령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보호관찰 영역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 감독하는 방식 선택에 있어서 경험칙이나 단순 자료에 의존하던 관행으로부터 탈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보호관찰대상자의 비행경력, 경제상태, 성장배경, 심리상태 등 다양한 범죄유발요인을 근거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가능성을 예측하고 예측된 결과를 기초로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방법을 선택하는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전국 주요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다. 대상자 재범위험성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 분류, 감독

기법의 차별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범죄유형별 수강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지도감독 매뉴얼 개발 등 새로운 보호관찰 기법을 도입·시행하여 보호관찰 제도의 선진화·과학화를 기하였고, 직렬통합에 따른 업무처리 개선 및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보호통합정보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 사이버 보호관찰 집행시스템인 사회봉사·수강명령 전자집행센터(원격집행지원시스템)를 구축 만족시키고 있으며, 보호관찰정보화시스템 간 상호 연계강화, 유형별 디지털 교육자원 구축, 통계지원프로그램 도입을 완료하였다. 또한 보호관찰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1년 시범 도입하여 2013년 16개 기관에 135대를 보급한 보호관찰무인정보시스템을 전국 56개 보호관찰소로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후 축적된 약 200만건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를 빅데이터 자료분석 방법으로 심층분석하여 재범을 사전에 예측하는 재범예측시스템 구축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관계망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보호관찰방식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6. 갱생보호사업의 내실화

범죄인 관리에 대한 사회내처우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보호관찰과 더불어 출소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갱생보호사업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공단은, 그동안 사용하던 명칭에서 '갱생'이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2009. 3. 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갱생보호사업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더불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민간위탁기관으로 참여하여 출소자 개인별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 사회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출소자 특화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에 이르러 국고보조금으로 55억 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법무부 독자사업으로 전환,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2012년부터 전문 심리상담사를 채용하여 출소자 심층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담의 질을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갱생보호서비스의 다양화·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 7. 청소년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역량강화

최근 학교폭력 등 저연령 소년에 의한 비행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청소년 및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으로 2007. 7. 부산·광주 등 전국 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립·운영하였고, 2012. 2.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2. 6. 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대구 등 4개 지역에, 2013. 11. 순천·전주·춘천 등 3개 지역에, 2014. 12. 부산동부·울산·수원 등 3개 지역에 청소년비행

예방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총 1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다기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청소년비행예방에 국가와 지역사회 전체가 전 방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용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대안교육센터라는 대외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2013년에 기관 이미지의 긍정적 제고 및 교육대상자의 심리적 부담감 해소 등을 위하여 교육생·보호자 등 교육수요자, 판사·검사 등 사법기관 및 장학사·일반교사 등 교육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한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외명칭 공모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13. 11.부터 대외명칭을 '청소년 꿈키움센터'로 변경,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검사의 기소유예자 및 학교장이 의뢰한 부적응 학생, 판사의 보호처분 등에 대한 대안교육, 판사가 의뢰한 상담조사 및 검사가 의뢰한 결정전 조사 외에 청소년비행 관련 연구·개발, 청소년 법교육 및 다양한 1일 체험,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위기청소년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심리검사와 상담 등 지역사회 위기·비행청소년 및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2013년 '현장중심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이 추진되어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의 특별교육, 가족캠프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주말 학교폭력예방캠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등 학생, 보호자, 교사 등 다양한 교육대상자에 적합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마련, 활성되었다.

2014년에는 영·육아원,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하여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법교육, '소나기 법캠프' 등을 실시하는 등 교육대상자를 법률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학교폭력예방, 절도예방, 성비행 예방 등 비행 유형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고도화하는 등 프로그램 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내외에서 비행청소년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2015년 학교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단위 : 명)

| 총계 | 가해학생 대안교육 | 보호자 의무교육 | 주말캠프 | 교원 직무연수 | 찾아가는 예방교육 | 학교폭력 가족캠프 |
|---|---|---|---|---|---|---|
| 212,555 | 3,091 | 913 | 1,883 | 204,525 | 1,172 | 325 |

## 제 2 항 범죄예방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제고

범죄예방자원봉사자의 역량결집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범죄예방활동의 내실화 및 전문화 제고, 법사랑위원 봉사활동 실적 체계적 관리 등 범죄예방 정책을 충실히 추진하였다.

범죄예방활동의 내실화 및 전문화를 위한 세부내용으로는 신규 법사랑위원 공개모집, 신임 및 전문화교육 실시, 청소년 선도·각종 봉사활동별 마일리지제도 개선 및 협의회 소속 위원의 평균 마일리지로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등의 포상기준 재정비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인적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였고, 범죄예방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봉사단체가 되도록 명칭변경 및 위원협의회 중심의 조직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을 개정하였다.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에서도 '정기총회 및 임원간담회', '전국 법사랑위원 임원 워크숍',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2015년도 주요 사업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개 요

2015년도에 펼쳐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관련 주요 활동으로 범죄예방활동 전개, 보호관찰활동 지원, 범법자에 대한 지도 및 취업알선·재정지원 등과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활동 주도, 장학사업,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및 우범지역 순찰 등 선도활동, 문신제거시술 등 의료시혜 지원 및 법교육 출장강연 등을 전개하여 선도유예자 및 보호관찰 위탁 청소년 8,463명을 선도하고 사회봉사명령대상자 9,604명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 보호관찰활동을 지원하였고, 갱생보호대상자 5,990명에 대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및 재정지원을 하였다. 또한 46개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면서 5,909명의 학생들에게 32억 2,900만원의 장학금 지원 및 범죄취약아동 등 4,860명과 결연, 상담·지원 등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고, 전국 2,206개 학교의 초,중,고 학생 132,757명을 상대로 법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여 173명에 대한 개별 주거환경 개선 비용으로 2억 70만원, 56개 지역에 대한 지역환경 개선 비용으로 5억 2,20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법질서 실천운동 범국민적 운동에 대한 이해 확산과 저변 확대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 2. 범죄예방자원봉사자 포상 및 격려

#### 가. 「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범죄예방자원봉사자들의 역량 결집 및 사기 진작, 범죄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 관심 및 참여 분위기 조성, 법질서 바로세우기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 9. 11. 더 케이

아트홀에서 법무부장관, 중앙일보 대표이사, YTN사장,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주관으로 「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 앞서 '법질서 실천운동 선포식'을 열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법질서 확립의 시작이라는데 뜻을 같이 하고 '배려, 법질서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배려를 통한 법질서 실천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자는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범죄예방자원봉사 유공자들에 대하여 정부포상과 범죄예방자원봉사상을 수여하고, 우수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하였다.

「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의 수상내역을 살펴보면, 정부포상 28명(훈장 4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9명, 국무총리표창 9명), 범죄예방자원봉사상 11명(대상 1명, 본상 5명, 특별상 5명), 우수단체표창 5개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나. 범죄예방자원봉사 유공 대상자 표창**

2015년도 법사랑위원 등 범죄예방 관련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 유공 141명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 3.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가.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구축**

범국민적 역량결집을 통한 선진국 진입 및 사회 안정, 선진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사랑위원 등 민간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2008. 6. 30. 중앙 및 전국 56개 지역 본부가 발족하였으며, 2009. 4. 23. 안양, 2011. 9. 1. 마산지역본부가 추가 발족함으로써 전국 58개 지역에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활동체제를 구축, 2015년에도 법질서 시민네트워크 3대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법질서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나. 주요 추진사업**

3대 중점 사업인 「준법의식 높이기」, 「기초질서 바로세우기」, 「범죄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생활운동으로 정착하도록 검찰청, 보호관찰소 등 법무기관의 지원을 강화하며 지자체, 교육청(학교), 상공회의소, 청년회의소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법질서 준수 우수학교 선정, 표창 및 장학금 지원, 법사랑교실 및 생활법 강좌, 법질서 체험학습, 범죄취약지역 등·하교 집중 순찰활동 및 범죄방지용 호루라기 제작·배포 등 범죄예방활동 전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 지원을 하였으며, 선진교통문화 확립운동, 아동성폭력예방 인형극 순회공연, 아동지킴이 CCTV설치 및 아동 보호순찰차량 운행, 한마음봉사단 장애인 가정 집수리 봉사활동, 청소년 孝 한마음축제 등 1지역 1특색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함으로써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 국민의 생활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 4. 범죄예방활동의 내실화 및 전문화

**가. 법사랑위원 활동 활성화 추진**

각 위원협의회 소속 개인별 연간 목표 설정 등을 통해 법사랑위원이 골고루 본연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2개월마다 각 지역별 우수활동 사례를 취합하여 일선에 전파하는 등 본연의 활동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 나. 탈북·다문화 청소년 지원방안 마련 및 시행

탈북·다문화 청소년들의 안정적 사회적응 및 자립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맞춤형 1:1멘토, 재능기부 등 민간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에서 드림학교(천안) 등 전국 14개 새터민 학교와 '교육돌봄지원협약' 등을 체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이모·삼촌 또는 이웃사촌 되어주기' 등 형식으로 탈북·다문화 청소년 밀집학교, 대안학교, 방과 후 공부방 등 단체지원과 개인 맞춤형 멘토링으로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다. 법사랑위원 공개모집 등

실무형 전문가 등 법사랑위원 신규위촉 인원의 1/3 이상을 인터넷, 지역방송 등을 통해 공개모집(35.6%)함으로써 지역 명망가가 아닌 실무형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활성화하고, 보호관찰 등 범죄예방활동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로 대부분의 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대상자와 범죄예방위원을 직접 결연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라. 법사랑위원 전문성 강화

상담기법·멘토기법 등 실무적·참여형 교육을 강화하고, 소년선도, 보호관찰, 보호복지 각 분야에 대해 균등한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각 위원협의회별 전문화교육 실시, 위원협의회 소속 후 1년 이내에 교육 및 5년 후 재교육, 위원협의회와 연계되는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상담기법 등 실무적 내용의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2015년도 서울남부 등 법사랑위원 1,437명에 대한 선도예방, 보호관찰전문화교육 및 신임교육을 각 실시하였으며, 특히 최근 빈발하고 있는 학교폭력 등에 대처하기 위한 법교육 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1박 2일씩 3회에 걸쳐 58개 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120명을 상대로 교육하였다.

## 5. 법사랑위원 봉사활동 실적 및 조직 관리의 체계화

### 가.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2005. 9. 1.부터 봉사활동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개정 마일리지제도에 의한 실적 등을 평가하고, 지역연합회 조직·운영현황 관리 등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의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http://pr.bumbang.or.kr) 홈페이지를 구축, 범죄예방 지도 및 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마일리지제도 및 포상기준 재정비에 맞춰

메인화면 구성 및 활용상의 문제점 등을 꾸준히 개선해 오고 있다.

### 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한 법사랑위원 공개모집 및 활동 홍보

범죄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의 공개모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사랑위원 관리 사이트를 구축, 위원 및 지역연합회의 봉사활동 마일리지 실적 등을 점수로 관리하면서 재위촉 및 각종 포상 대상자 선정시 마일리지 점수를 적용 심사하는 등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각 분야별 법사랑위원의 활동상황을 소개하기도 하고, 수범사례를 게재하는 등 봉사활동의 홍보에도 활용하고 있다.

## 6.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2015. 3. 20.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법무부장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장, 지역연합회장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2015년도 사업계획 승인, 법사랑위원 선도 미담사례 동영상 시청 등 범죄예방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범죄예방업무 현안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법사랑위원은 그동안 범죄예방을 모토로 많은 봉사활동을 펼쳐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변화된 사회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봉사활동을 법사랑위원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내실화하였습니다. 올해는 우리민족이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광복을 맞은 지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광복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시대에 대비해 모든 면에서 세계일류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와 법질서가 반드시 확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범죄가 날로 흉포화 되어가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약화되는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자유와 행복을 찾아 우리나라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주민은 82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그들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돕고자 법교육을 실시하고 일대일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무부는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치하하였다.

# 제 3 항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법교육 기반 구축

## 1. 개 요

법교육은 미국의 Law-Related Education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과는 달리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의 법적 자질 함양을 위하여 이루어

지는 다양한 유형의 교육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다. 이처럼 법교육은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이 아닌 법과 규칙의 배경이 되는 가치관이나 사법제도의 의의·기능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실생활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력 중심, 참여위주의 교육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2. 법교육의 추진 배경

### 가. 자율적 시민사회 조성을 위한 국민의 법의식 선진화 필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및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어 사회 전 부문에 걸쳐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며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건전한 시민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나. 실용적 법교육을 통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예방

기본적인 법적 소양의 부족으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빈발하여 사회전반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법에 대한 경시 및 불신풍조 만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은 어렵고 권위적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실용적인 계약문화와 긍정적인 국민 법의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 다.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현재까지 청소년 비행 또는 범죄에 대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선학교에서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 합리적 사고능력 등을 함양하도록 하여 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절실하다.

## 3. 법교육 연구·추진체제 구축

### 가. 법교육연구위원회의 성공적 운영

법교육의 체계적인 기반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2005. 3. 법조계, 학계, 교육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법교육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였다.

2005. 3. 제1차 회의에서 법교육 6대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2006. 3.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거쳐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방향' 이라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수행 가능한 법교육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였다.

**법교육 6대 연구과제**

① 국내·외 법교육 실태 점검 및 법교육 추진방향
②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③ 법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교재 개발방안
④ 교사 등 법교육 관련자 전문성 강화 지원방안
⑤ 법조계, 법과대학 등 법교육 지원방안
⑥ 평생교육,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 연계방안

### 나. 민·관 법교육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

법교육연구위원회의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교육과 관련된 정부기관·사법기관·정부산하기관·민간기관 등 인사 17인으로 구성된 법교육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2006. 7.부터 반기별 1회, 총 5회를 개최하였고, 2007. 6.에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을 추가하여 20인으로 확대하였다.

### 다. 법교육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법교육추진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 및 민·관 협력방안 등 법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민간 법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교육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였다.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초등(3명), 청소년(5명), 시민(5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2006. 10.부터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07. 11.에는 초등 법교육 전문가 2명을 추가위촉 하였으며, 2008. 6. 까지 총 4회 운영하였고, 법교육 현안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였다.

### 라. 법교육지원법 시행 및 법교육위원회 구성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한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목표로 법교육지원법이 시행(2008. 6.) 되었고, 법률 시행에 따라 법교육 추진과 중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국가기관 및 학계, 교육계 등 민·관의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법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2009. 2.)를 시작하였다. 2009. 11. 법교육위원회 2차 회의가 개최되어 법교육 사업 추진경과, 솔로몬 로파크 운영 결과, 법문화진흥센터 지정안 등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2010. 3. 법교육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2010년도 법교육 사업 운영방향 및 예산심의와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하였다. 2010. 12. 법교육위원회 4차 회의에서는 2010년 법교육 사업 추진경과보고 및 생활법 활용능력 인증시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 2011. 2. 제5차 회의에서는 법교육 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10년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2011. 5. 법교육위원회 임시회의는 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하여 헌법광장 개관식 참석과 솔로몬로파크 홍보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2012. 12. 제6차 회의에서는 2011년 사업결과 보고 및 법질서선진화과 출범에 따른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2. 3. 제7차 회의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교육시스템 구축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12. 12. 제8차 회의에서는 2012년 사업결과보고 및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심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3. 2. 제9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하였으며, 2013. 12. 제10차 회의에서는 2013년 사업결과 보고 및 법문화진흥센터 지정안을 심의하였다. 2014. 2. 제11차 회의에서는 민주시민의식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헌법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안을 심의하여,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헌법가치 및 법질서준수 교육안 개발을 심화하였다.

2014. 12. 제12차 회의에서는 2014년 법교육 추진 실적 경과 보고 및 학생자치법정의 운영 실태 및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논의하고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방안을 논의하였다. 2015. 3. 제13차 회의에서는 제4기 법교육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고,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심의 및 법교육 주요정책의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2015. 12. 제14차 회의에서는 헌법가치 확산을 위한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헌법토론대회, 글짓기 대회 개최, 소년조선일보에 기획기사로 '우리 곁엔 헌법!'을 총 38회 연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가치 교육 실시 등 2015년 법교육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다음연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 4. 수요자별 맞춤형 생활법 교재 개발

### 가. 대학생·시민용 교재

계약서 작성 등 일반시민이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생활법률 내용을 알리기 위해 '한국인의 법과 생활'(2005. 12.)을 발간하였고, 개정법률 내용과 판례를 보강하여 '한국인의 법과 생활' 개정판(2007. 2.)을 발간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및 대처방법, 개인 파산·회생 방법 등 불경기 극복을 위한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2009. 2.), 누구나 알고 있지만 생활속에서 쉽게 범하는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자 '아뿔싸!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범죄'(2009. 4.)를 발간하였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법률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신 생활법률 지식을 담은 '알면 힘이 되는 알짜배기 생활법률'(2010. 6.) 책자를 발간하였고, 최신 개정법률을 반영한 '한국인의 법과 생활' 개정판(2011. 3.)을 발간하였다. 2010년 대한축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원 스포츠 폭력과 승부조작 및 비리근절 교육을 대한축구협회 소속 각급 지도자·심판들에게 실시하였으며, 축구인을 위한 법교육 교재 '축구 잘하는 법(法)'(2011. 12.)을 발간하였다.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법적 지식 함양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소책자'(2012. 6.)를 발간하였으며, 노인들의 올바른 재산상속 및 보이스 피싱·다단계 사기피해 예방을 위하여 '어르신을 위한 알면 알수록 좋은 법' (2012. 8.)을 발간하였다.

장애인의 법의식 및 권익향상을 위해 '한국인의 법과 생활 희망을 만드는 법, 보배야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줘' 점자 및 음성도서를 발간(2013. 9.)하여 장애인 복지관 등에 보급하였다. 초판 발간 이후 부분적인 개정에 그쳤던 '한국인의 법과 생활'에 대해 최신 개정법률과 판례,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가치를 반영한 전면개정판을 발간(2015. 9.)하였다.

### 나. 중·고교생용 교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상생활과 법, 법의 기본원리와 가치, 경제생활과 소비자, 범죄와 형사절차, 직장 생활과 근로자, 가정생활과 가족, 국가와 국민 생활의 영역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의 법과 생활'(2005. 9.)을 발간하였고, 최근 개정법률 내용과 판례를 보강하여 '청소년의 법과 생활' 개정판(2009. 2.)을 발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의 탄생과 변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헌법의

소중함과 헌법정신·이념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화로 보는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2009. 7.)를 발간·보급하였다.

학생들이 법과 관련한 사회과 수업에서 토론능력을 함양하고, 헌법과 사회에 대해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판례로 사회 교과서 200% 활용하기'(2010. 2.)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최신 개정법률을 반영한 '청소년의 법과 생활' 개정판(2011. 3.)을 발간하였다.

중·고등학생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2012. 6.)를 발간하였으며, 청소년 축구인의 승부조작 등 비리근절을 위한 법교육 책자 '알고보니 든든한 축구비법(2012. 10.)을 발간하였다. 강력범죄예방교재 '장난과 범죄사이'를 발간하였다(2013).

2014년에는 학생자치법정 운영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법정 매뉴얼을 발간·배포하였으며, 2015년에는 상벌점제 폐지 등 변화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고 학생의 상소권을 보장하는 등 매뉴얼을 개정 발간·배포하였다.

### 다. 어린이용 교재

법에 대한 궁금증을 만화로 하나하나 풀어보는 어린이용 법교육 교재인 '나는야 법짱'(2006. 4.),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마법천자문의 '손오공'과 '소라', '여의필' 등의 캐릭터와 재미난 이야기로 꾸며진 법교육 만화 '손오공 무법소탕기 Ⅰ·Ⅱ' (2006. 9.)·Ⅲ(2011. 6.)를 개발하여 어린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고, 체험중심의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재량교과서 '함께하는 법이야기'(2007. 11.)를 개발·보급하였다. 또한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할 법과 질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초등학생용 만화교재 '법에게 물어봐' (2008. 4.),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춘 만화로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만화로 배우는 우리나라 헌법' (2009. 1.)을 개발·보급하였다.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으로 구분하여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2012. 6.)를 발간하였으며, 유아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구름빵을 활용한 워크북 '홍비홍시와 함께하는 소중한 나와 우리'(2012. 11.)를 발간하였고, 강력범죄피해 예방 교재인 '우리 공주의 나를 사랑하는 법'(2013. 3.)을 발간하였으며, 헌법정신과 가치 교육을 위한 '헌법아! 놀자 Ⅰ·Ⅱ'(2013. 9. 12.)를 발간하여 전국 초등학교에 보급하였고, 2015년에는 '헌법아! 놀자'를 점자(500권) 및 음성도서(CD 500개) 제작하여 시각장애인 학교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하였다.

또한 법교육 만화인 '손오공 무법소탕기 Ⅳ' (2013. 11.)를 개발하여 시리즈를 이었고, '나는야! 법짱'(2013. 12.)을 헌법가치 부분을 강화하여 개정·발간하였다.

2014년 헌법가치 교육을 위한 소년조선일보 기획기사를 모은 '내친구 LAW Ⅰ·Ⅱ'를 발간하여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하였다.

2015. 5. 어린이용 헌법교육 만화교재 '조선은 법치국가다'를 발간하여 112개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배포하고, 미취학 아동을 위한 헌법교육 동화 '우리 모두가 주인이에요'와 '일곱 난쟁이 집에도 규칙이 필요해'를 발간(2015. 12.)·배포하였다.

### 라. 여성용 교재

2007. 3.에는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가정과 생활법률, 직장과 생활법률, 성문제와 생활법률, 부동산과 소비생활로 구성된 여성용 법교육 교재 '여성과 생활법률' (2007. 3.)을 발간·보급하였으며, 범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수록한 '엄마는 보디가드' (2009. 5.)를 발간하였다.

**마. 다문화가정·새터민용 교재**

결혼, 취업 등으로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 우리나라의 다양한 법률 및 권리 등에 대한 소개를 통해 정착 및 생활에 도움을 제공하도록 'Fun Fun 대한민국의 법' (2012. 3.)을 발간하였으며, 새터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법질서의 종류 및 차이점에 대한 인지를 통해 환경변화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에 조기 정착 및 생활에 도움을 제공하도록 '우리법 바로알기'(2012. 6.)를 발간하였다. 2015년에는 다문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 교재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법세상'과 '다문화 사회 청소년의 법과 생활'을 발간(2015. 6.)·보급하였다.

**바. 법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2006. 1. 개발된 '법은 내 친구'는 모의국회, 역할극 같은 체험 중심 프로그램과 판례분석, 쟁점토론 등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최초의 법교육 프로그램 해설서로 개발되었다. 또한 '모의재판·청소년 법정 매뉴얼'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 등에 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이 재판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법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학생자치법정 가이드북(2008. 5.)을 개정·발간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 가이드북(2008. 3.), 학교폭력 OUT (2009. 12.)을 발간하였다.

2015년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가치 교육과 관련하여, 중·고 사회과 교사용 수업지도서인 '쉽게 가르치는 우리헌법(중학교 사회용)', '쉽게 가르치는 우리헌법(고등학교 사회용)'을 발간(2015. 12.)·보급하였다.

**사. 법교육 수업용 강의안**

테마별 법교육 강의 자료인 'Law Educator Ⅰ·Ⅱ'는 중·고교생이 알아 두어야 할 법률 지식을 20개의 테마로 나누고,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들어 해설집을 수록하였다. 또한 각 테마별로 교사용 지도자료, 학생용 수업자료 및 파워포인트 강의안을 개발하여 CD로 제작·배포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법교육 교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법사랑 사이버랜드에 수록되어 있는 학교폭력예방, 기초질서 지키기 등 다양한 법교육 콘텐츠를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활용한 수업지도안'(2012. 11.)을 발간하였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강의안을 대상별로 개발(2012. 6.)하여 보급하였으며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학부모·교사용, 초등학교 저학년용, 초등학교 고학년용 강의안을 개발(2013. 3.)하여 보급하였고, 강력범죄 가해방지 강의안을 추가 개발(2013. 10.)하여 보급하였다.

학교폭력 예방, 강력범죄 예방, 일반 생활법,

법사랑 사이버랜드 콘텐츠,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 소개 등 (헌)법교육 콘텐츠를 총망라한 (헌)법교육 종합 콘텐츠 DVD를 개발(2013. 10.) 보급하였다.

## 5.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가. 교사 법교육 직무연수 실시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법 관련 전문성을 함양하고,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하였으며, 2014년까지 총 4,995명이 수료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현직 검사, 대학교수 등 법교육 전문 강사들의 현장감 있는 강의와 대검찰청, 대법원, 보호기관 등 사법기관 견학 프로그램 등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학교 폭력 예방 등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 나. 소년원 학생 등 비행청소년 및 새터민 법교육 실시

2006. 3. 법무부 소속 안양소년원을 법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주 1회, 2시간씩 '법과 함께 놀자' 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권리의식, 책임의식 및 법의식 향상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법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함에 따라 2007년에는 소년보호기관 뿐 아니라 보호관찰소까지 법교육을 확대하였고, 2008년에 그 기관을 더욱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2006. 5. 한겨레 중 · 고등학교 탈북 청소년 학생 및 교사 40여명을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 법질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우리법 바로알기' 견학을 2007년 총 4회, 2008년에는 총 33회, 2009년에는 총 44회, 2010년에는 총 63회(999명 참석), 2011년에는 총 67회(1,227명 참석), 2012년에는 총 82회(1,480명), 2013년에는 총 116회(1,351명), 2014년 총 151회(1,606명), 2015년 총161회(1,730명) 실시하였다.

### 다. 법교육 출장강연제도(Law Educator) 실시

변호사, 판 · 검사 등 법조인, 법대교수, 관료, 유명인사 등 법교육 강연에 적합한 법교육 강사진을 구축하여 초 · 중 · 고등학교 및 사회기관을 대상으로 출장강연제를 시행하여 2006년 총 267회 11만여명, 2007년 총 607회 19만여명, 2008년에는 16만여명에게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사례중심의 법률 강좌를 실시하였다. 2006년 서울 · 경기지역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운영을 통해 2012년 현재 총 1,934명의 법교육 전문강사를 확보하였다. 2009년에 총 865회 운영으로 165,345명이 참여하였으며, 2010년에는 828회 운영하여 146,131명이 참여하였고, 2011년에는 1,560회 운영하여 475,913명이 참여하였다. 2012년에는 1,811회 운영하여 455,847명이 참여하였으며, 2013년에는 2,290회 574,034명이 참여하고, 2014년에는 2,222회 347,180명, 2015년 2,988회 480,170명이 참여하는 등 총 3,125,880명이 참여하였다.

**라.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 선정 및 운영**

2006년 의정부 광동고, 전주 상산고 등 5개 시범학교에서 시작된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에 대해, 법무부는 2007년 전국 15개교에서 36회 실시, 2008년 전국 23개교, 2009년 전국 34개교, 2010년 전국 49개교, 2011년 전국 388개교, 2012년 전국 660개교, 2013년 전국 1,045개교, 2014년 전국 1,580개교, 2015년 1,720개교를 대상으로 운영지원을 확대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자치법정이 운영되고 있는 중·고등학교는 2,238개교로 전체 중·고 5,495개교 대비 40.7%에 해당된다. 교칙을 위반한 동료학생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 증인 등에 대한 조사와 판결까지 학생들 스스로 내리는 대표적인 학교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동안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보고서 및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고, 학교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범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2014년에는 학생자치법정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제1회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신설하여, 2015년 제2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마. 사이버 법교육 직무연수 실시**

인터넷 교육의 장점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직무연수가 가진 공간적 한계를 극복, 단기간에 많은 수의 법교육 전문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사이버 법교육 직무연수를 개발하여 2006. 6.부터 2015년까지 총 28,383명의 교사들이 수료하였다. 현재 「생활 속에 살아있는 법교육」, 「학생활동지도를 위한 법교육(사례중심)」, 「사례로 배우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방안」 등 3개 과정이 운영 중이다.

**바. 제10회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제10회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에는 전국 244(민사 76, 형사 168)팀이 대본심사에 참가하였다. 이중 6개 권역(서울·인천,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광주·전라·제주, 인천·경기) 각 8팀(민·형사 각 4팀) 총 48팀이 지역예선에 진출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 본선대회에서 지역예선을 통과한 형사부 6개팀, 민사부 6개팀 등 총 12개팀이 경연을 벌인 가운데 형사부문에서는 하나고등학교 '하나로펌'팀이, 민사부문에서는 양명고등학교 'YM JUSTICE' 팀이 각각 대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 제11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개최**

2015. 7. 전국 20개 지역별로 고교생 총 2,040명이 제11회 생활법 경시대회에 참가하였다. 이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적 사고력과 생활법률 지식을 향상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 가치와 책임감 및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솔로몬로파크에서 1박2일간 '생활법 토론캠프'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생활태도와 토론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개인부문 대상 정혜원 학생(법무부장관상) 등 19명과 단체부문 대상 인천국제고등학교 등 11개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교사부문 수상자는 하나고등학교 김한승 교사 등 3명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아. 제6회 전국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개최**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재미있는 퀴즈대회로 진행,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질서 의식 및 헌법적 가치관 함양을 위한 체험의 장(場)을 마련하고자 시작된 대회로, 개인 및 단체전으로 참가하여 온라인 예선, 5개지역 예선, 1박 2일간의 법사랑캠프를 거쳐 최종 성적을 가리고, 매년 법무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있으며, 2010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5년 제6회 대회까지 총 2,354개교, 16,941명이 참여하였다. 제6회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에는 전국 337개교, 1,949명이 참가하여 이중 12개 학교, 56명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그 결과 개인부분 대상 유수경 학생(법무부장관상) 등 20명과 단체부문 최우수상 동평중학교 등 2개교가 수상하였다.

**자. 제6회 우리헌법만들기 공모전 개최**

가족, 학생, 직장인 등이 서로 지켜야 할 약속과 가치를 헌법형식으로 만들어 봄으로써 일반국민에게 헌법가치 및 법질서 준수 의식 함양을 도모하고자 시작된 대회로 2015년 총 951편이 접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우수작 12편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였다.

**차. 제2회 헌법토론대회 개최**

학생들이 생활 속 규범으로서의 헌법 문제에 대한 찬·반 토론을 통해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2014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2015년에는 총 277팀이 참가하여 4개 권역 16팀이 본선에 진출하였으며, 화곡중학교(중등부)와 남목고등학교(고등부) 등 10개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카. 제3회 헌법사랑 글짓기 대회 개최**

헌법의 가치와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생활 속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통한 법질서 확립의 기초 마련 및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2013년 처음 개설된 대회로, 생활속에서의 헌법과 배려의 가치에 관한 소재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쓴 산문 형식의 원고를 각 학교별로 온라인으로 접수, 1·2차에 걸친 전문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자를 2배수 선정하였다.

본선은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오프라인 대회를 실시, 전문 심사를 통해 우수작품을 시상 하였으며, 첫 대회에는 초등학생 총 3,275편, 2014년 제2회 대회에는 중·고등학생까지 대회를 확대하여 총 5,162편, 2015년 제3회 대회에서는 작품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오프라인 본선 대회를 추가하였으며 총 2,856편이 참여하였다.

**타. 법교육 공모전 개최**

UCC를 통해 법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2007. 5. 15.부터 7. 10.까지 진행되었던 제1회 법교육 '법아 놀자'

UCC 공모전에는 총 110개 작품이 응모하였으며, 서울 수암초등학교 학생들의 '폭력없는 학교 우리 스스로 만들어요'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제2회 'It's LAW' 법질서 UCC공모전은 2008. 4. 10.부터 6. 10.까지 개최하였고, 총 128개 작품 중에서 'Help Mind'라는 주제로 동명대학교 학생들의 작품이 대상을 받는 등 총 9개팀이 수상하였다. 또한 2008. 10. 10.부터 11. 19.까지 개최된 법질서 포스터·사진·만화 공모전에서는 포스터 414개, 사진 162개, 만화 141개 총 717개 작품이 접수되었고, 그 중 21개 작품을 시상하였다. 2009년 '우리들이 만드는 Law story' 공모전에서는 포스터 408개, 사진 354개 작품이 접수되었고, 그 중 21개 작품을 시상하였다. 2010년에는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법을 배울 수 있는 '플래시 법게임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18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2011년에는 법질서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법사랑 사이버랜드 콘텐츠 활용을 위해 '법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10. 15.부터 11. 30.까지 개최하였으며, 게임시나리오(38개), 만화(90개), 포스터(213개), UCC(61개) 등 총 402개 작품이 접수되었고, 13개 우수 작품을 시상하였다.

**카. 스포츠선수 대상 법교육 실시**

2011. 12. K리그 15개 구단 신인선수 122명 전원을 대상으로 '2012 K리그 신인선수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제주유나이티드 등 프로축구단과 배구연맹 선수 및 감독 등 155명을 대상으로 비리 방지 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KBO와 연계하여 프로야구 1군 7개 구단 및 2군 5개 구단 등을 360여명을 대상으로 승부조작, 심판매수 등 비리 근절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축구 선수를 위한 법교육 강사요원 양성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최근 승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하여 스포츠계에 불어 닥친 비리를 근절하고, 프로축구 신인선수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 6. 일상생활 속 법교육 확대

**가. 유아 법교육 확대**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기관에서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기초 법질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유아 발달 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유치원에 보급(4,047권)하고 교육청 및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총 22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유아 교육기관의 법교육 운영을 지원하였다.

**나. 초등학생 법교육 확대**

법무부가 개발하고 교육부가 인증한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 '서로 배려하는 친한 친구' 등 5종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법사랑학교' 프로그램을 2014년 460개교, 2015년 797개교에서 운영하였다.

**다. 일반시민 대상 법교육 활성화**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률소재를 국민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시민로스쿨'('13년~'15년 총 93회) 및 시민법률콘서트('07년~'15년 총 57회)를 개최하였고,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주부로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일반 국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7. 사이버 법교육 시스템 활성화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생활법률을 배울 수 있는 사이버법교육센터(www.lawedu.go.kr)는 검찰청, 법원 등 주요 사법기관에 대한 가상견학시스템, 플래시로 보는 피해구제절차, 만화로 보는 생활법률 등 다양한 형식의 법교육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2006. 12.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권장사이트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15만여명이 이용하였고, 2008년에는 17만여명, 2009년에는 19만여명, 2010년에는 17만여명, 2011년에는 3만여명이 이용하였으며, 홈페이지 내 사이버 이벤트 법률퀴즈에는 누적 150여 만명이 응모하였다.

2012년도에는 법질서 홈페이지와 통합하여 법질서 캠페인, 공익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 8. 법교육 관련 유관단체 협력사업 전개 및 홍보

### 가. 유관기관과 MOU 체결

2006. 3. 법교육 수업모형 개발 등 청소년 법교육 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서울대학교(사범대학)와 MOU를 체결하였고, 시민법교육의 방향성 정립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시민 법교육 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법정대학)와 MOU를 체결하였다.

2007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와 여성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초등 법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교육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어린이·청소년 법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 캠페인을 통한 준법풍토 조성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국민 모두가 법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법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고려대, 부산대, 전북대, 경희대, 전남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과 MOU를 체결하였다. 2010년에는 이화여대, 중앙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2011년에는 제주대, 경북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과 2012년에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과 MOU를 체결하여 법교육 활성화 외에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법교육을 통한 봉사활동 활성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

법교육 인프라 확산을 위해 부산광역시에 제2 솔로몬로파크 건립을 추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MOU를 체결(2010. 4.)하고, 청소년들의 저작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저작권 퀴즈대회와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법게임

개발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MOU를 체결(2010. 6.)하였다.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학교 법교육 등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법교육학회 등 민간 연구활동 지원**

법교육의 학술적·제도적 기반 마련 및 민간부분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약 30여명으로 구성된 '법교육학회' 창립을 지원하였고, 또한 법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과 '한국법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 9. 민간 법교육 지원

법교육의 안정된 발전을 위해 민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역량 있는 법교육 민간기관을 법교육지원법 제5조에 따라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개 기관에 대해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2013. 12.)하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사법교육원, 한국법교육센터,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희망재단, 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안산·대전·부산·창원·광주·청주·대구청소년비행센터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였고, 2015년 제13차 정기회의(2015. 3.)에서 사단법인 청소년전략21과 수원·울산·부산동부 청소년비행센터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신규 지정하는 등 총 24개 기관에 대해 법교육 활동·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프로그램 실시,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인력 양성 등 법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10. 법체험기관 솔로몬 로파크 설립·운영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쉽고 재미있게 법과 질서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도록 법교육 연수·체험 전문시설인 '솔로몬 로파크'를 설립하였다.(2008. 1.) 청소년 법치세상 아카데미, 어린이 법탐험 캠프 등 체험형 법교육프로그램과 교사·자원 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총 88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67명, 2008년에는 2,964명, 2009년에는 3,849명, 2010년에는 3,048명, 2011년에는 4,730명, 2012년에는 5,755명, 2013년에는 5,839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또한 모의법정, 모의국회, 어린이 법짱마을 등 법과 법제도를 체험하는 '법체험관'을 개관(2009. 3.)하여 운영 중이며, 2009년 151,864명이 방문하였고, 2010년에는 209,416명, 2011년에는 219,290명, 2012년에는 259,033명, 2013년에는 271,242명이 방문하였으며, 2014년 291,967명, 2015년 261,982명이 방문하는 등 총 누적 방문인원이 162만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법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부산 구포에 제2의 솔로몬로파크건립을 추진하여 2014. 11. 14. 착공식을 개최하고, 2016. 5. 개청 예정이다.

### 11. 헌법정신과 가치 교육 강화를 위한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법무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헌법학, 법학, 교육학 교수, 교사 등으로 추진단을 구성(2013. 5.)하여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 및 헌법교육 강화 방안을 논의(2013. 5. 6. 7. 총 3차 회의 개최)하였고, 제4차 회의를 개최(2013. 2.)하여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5차 회의(2014. 10. 29.)에서는 헌법교육 계열화 연구와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일정 및 반영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제6차 회의(2015. 11. 23.)에서는 헌법가치에 대한 교과서 및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제 4 항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 1.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 나부터 릴레이!

법무부는 일상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아 국민들이 불편을 체감하지만 형사법체계가 일일이 대응하기엔 경미하여 처벌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 내 기초법질서 위반 사례 발굴·개선 및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4년 중점 추진분야로는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선정하여 전국 공모를 거쳐(62개 지역 신청) 25개 지역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추진하였다.

먼저, 기초 법질서 준수 분야(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불법 주정차 금지, 불법 광고물 금지, 피서지 기초질서 확립)는 서울 등 15개 지역에서 활발한 실천활동을 전개하였는데, 특히 대전지역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부산 동부지역은 '피서지 질서 확립·바다사무소 운영' 등을 집중 전개하였다.

또한 안전법규 준수분야[산업안전, 수질안전, 화재안전(문화재 및 화재)]에 울산 등 7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특히 광주지역에서는 '광주선진교통문화의 날' 선포식 개최와 자동차 주간 전조등 켜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2015. 9월부터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등 사회통합을 위해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으로 확대 추진하였다.

한편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2014년부터 대전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민간, 지방자치단체, 검찰 등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추진하였으며, '저비용·고효율' 성과를 위해 셉테드 밀착설계 및 지원을 담당할 민간 셉테드 전문가와 지역을 1:1로 연결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2015년에는 안산·수원 등 강력범죄발생

지역을 포함한 11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여, 민·관 통합지원 방식의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셉테드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실행기반 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행정자치부와 함께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로 셉테드 운영실적을 포함시키게 되었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정책이해도 향상 등 사업실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컨텐츠 제작 및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2014년 하반기에만 11,636명, 2015년에는 19,554명의 공무원이 수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민·관 협업을 통한 사업 동력 확보 및 우수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농협, 대한건설협회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였고, 실천운동의 국민적 확산을 위해 사회적 비중과 책임이 크고 우리나라 경제·사회·문화를 선도하는 주요 경제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전국경제인 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MOU 체결),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기초 법질서 준수,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안전환경 조성, 지역사회 문제해결(셉테드)을 위해 법질서 실천운동을 공동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5년에는 그 간의 법질서 실천운동과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법질서 실천운동 통합모형' 과 지역맞춤형 '법질서 실천운동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다.

2014. 12. 24. '법질서 실천운동' 슬로건인 「법질서 실천, 나부터 릴레이」 선포식을 개최하였고(슬로건은 나부터 시작한 법질서 실천이 릴레이처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달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 2015. 9. 11. 2015 범죄예방한마음대회를 통하여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을 선포하고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 2. 온라인 법교육 테마파크 '법사랑 사이버랜드' 운영

'법사랑 사이버랜드'는 온라인으로 쉽게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온라인 법교육 테마파크로 국민 누구나·언제·어디서든 즐기면서 시민적 규범의식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준법 콘텐츠를 만들어 탑재하였으며 6개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① 유아놀이터 : 영상동화 등을 활용하여 법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

② 어린이세상 : 직접 게임을 체험하고, 영상시청을 통해 재밌게 법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구성

③ 청소년로스쿨 : 영상과 캠페인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할 중요한 가치를 일깨우도록 구성

④ 교사자료실 : 법무부 개발 교육부 인증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4종 '행복나무', '웃어라교실아, 꿈꿔라 학교야', '법친구! 행복한우리', '마음모아 톡톡' 등 교사들이 직접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

⑤ 법사랑 도서관 : 웹툰, 법질서 소식지

등을 읽을 수 있는 '도서 열람실' 및 공익광고 등을 볼 수 있는 '시청각 자료실'로 구성

⑥ 참여마당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소통의 플랫폼으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법사랑사이버랜드의 우수한 콘텐츠들은 LGU+, 올레KT 인터넷 TV, 주니어네이버 등에 탑재되어 많은 국민들이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법질서 선진화' 집중홍보

법무부는 법질서 캠페인 집중 홍보를 위하여 파급력이 큰 방송·언론·인터넷 매체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홍보 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2011년에는 학교폭력예방, 사이버질서, 기초질서 등 법질서 바로세우기 관련 공익광고를 SBS TV, CMB 등 전국 케이블 방송사, MBC드라마넷, YTN 등에 총 3,000회 이상 송출하는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법질서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법률비타민', '동화 속 법률퀴즈', '스쿨존을 지켜라' 등 법질서 콘텐츠를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폰용 앱 '법아! 놀자!(1탄)'를 출시하여 약 22만건 다운로드 하였으며, 국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스마트폰 앱으로 출시, 약 15만건 다운로드 하는 등 국민들의 법률문제 해결과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국민들이 자신의 법질서 지수를 인터넷 상에서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나의 LQ 테스트' 서비스를 법질서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1만 2천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기초질서를 재미있는 만화로 표현한 카툰북 '법아! 카툰과 놀자'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언어순화', '강력범죄예방-돌려주세요', 학교폭력예방-거품편 등 다양한 공익광고를 제작, TV, 라디오, 지하철, 영화관 등에 홍보하였으며, 특히, BGF리테일(구, 훼미리마트)과 연계하여 전국 7,000여 CU점포 계산대 및 서울·수도권지역 대형모니터 1,060개에 공익광고를 무료로 송출하였다.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송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부활 김태원 작사·작곡)' 및 뮤직비디오 등 문화 콘텐츠를 제작,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메인페이지에 게시하고, 거리 캠페인을 통한 CD 배포 등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EBS '폭력 없는 학교-법질서선진화과편' 방송(2012. 7.)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질서 캠페인 및 법교육 프로그램 등 법무부의 활동을 소개, 법무부의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익광고 및 캠페인 송을 송출함으로써 국민들의 학교폭력 예방 및 법질서 확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2013년에는 학교폭력, 성폭력 등 4대악 근절 및 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법질서 준수

수준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4대악 근절을 주제로 TV, 라디오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각 1편을 제작하여, KBS, MBC, YTN, MBN, 서울·경기 전광판, 영화관 등을 통해 홍보(2013. 9.~12.)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부처와 협력하여 4대악 근절 공익광고 2편을 제작, KBS를 통해 송출하였다.(2013. 9.~12.)

또한 폭력의 악순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고, 폭력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폭력예방 포스터'를 제작하여 교육부, 전국 초·중·고등학교,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총 2만부를 배포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2014년에는 '법질서 실천운동'의 범국민적 관심 유도와 참여 확대를 위하여 SBS TV, 채널A, YTN, MBN, TV조선 등에 법질서 실천운동 공익광고 '행복 비법'편을 방영하였으며, '법질서 실천송'(카라)을 제작·배포하였다. 또한 포털사이트인 Daum과 협력하여 셉테드(CPTED)의 국민적 이해와 공감형성을 위하여 네이밍 공모전을 실시하여 20,766명이 참여하였으며, 법질서 실천운동 로고와 슬로건("법질서 실천, 나부터 릴레이"), 포스터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각 지자체, 민간기업 등에 총 1만부를 배포하였다.

2015년에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KBS 특집다큐 '당신의 집은 안전합니까?'와 KTV '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이 방송되었고, 채널A, YTN 등 TV·라디오에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가 총 332회 송출되었으며, '법의 날', '호국의 달', '광복절' 등 기념일을 주제로 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법사랑사이버랜드, 유튜브 등에 온라인 게시하고, LGU+ 승강기 광고보드와 미디어라이프 광고보드(3,287대, 콘텐츠당 300여회)에 송출하였다.

## 제 5 항 감호제도의 개선

### 1. 개 요

1980. 12. 18. 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시행된 보호감호 및 치료감호제도는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2005. 8. 4.자로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이 시행되면서 동법 부칙 제2조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집행은 구 사회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으며, 고질적 상습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상습범에 대하여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및 천안교도소,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소에서 각각 체계적으로 수용·관리하고 있다.

한편, 보호감호제도 폐지 입법 정신을 존중, 가출소를 확대하여 2006년 167명, 2007년 66명이 가출소 하였으나,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2008년 28명, 2009년 15명, 2010년 17명, 2011년 19명, 2012년 15명, 2013년 37명, 2014년 33명, 2015년 23명이 가출소를

하였으며, 2015. 12. 31. 현재 100명의 피보호감호자를 수용하고 있다.

치료감호제도의 근거 법률인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법안으로 치료감호법을 동일자로 제정・공포・시행함으로써 심신장애 등의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병행하면서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제도를 보완・개선하였다.

치료감호의 경우에도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관리와 사회복귀훈련을 강화하고 출소자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정신질환사범과 약물중독 사범 및 정신성적 장애자 등의 특성을 고려, 분리수용하고 약물중독사범,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맞춤형 전문치료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 진력하는 한편,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 감호의 엄정 집행

### 가. 보호감호 집행현황

2005. 8. 4.자 보호감호 폐지의 입법정신을 존중하여 가출소를 확대함에 따라 2015. 12. 31. 현재 100명의 피보호감호자를 경북북부제3교도소, 천안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다.

피보호감호자 수용인원은 〈제6장 통계 : 표 3-5에서 표 3-10〉과 같고, 피보호감호자의 집행인원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보호감호자 집행인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집행인원 | 139 | 63 | 39 | 34 | 36 | 45 | 31 | 24 | 18 | 20 |

### 나. 피치료감호자 수용현황

2015년 피치료감호자 집행인원은 2006년에 비하여 6.3%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의 증가와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른 정신성적 장애자의 치료감호 대상자 추가가 가장 큰 증가 이유로 분석되었다.

치료감호소에 수용중인 피치료감호자는 2015. 12. 31. 현재 1,180명이다.

피치료감호자 수용인원은 〈제6장 통계 : 표 3-11에서 표 3-16〉과 같고, 피치료감호자의 집행인원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치료감호자 집행인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집행인원 | 287 | 343 | 316 | 389 | 332 | 288 | 320 | 372 | 308 | 305 |

**다. 피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1) 피보호감호자 직업훈련 실시

피보호감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유능한 기능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2014년도에는 직업훈련을 통하여 2명이 기능사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그 현황은 〈제6장 통계 : 표 3-17, 표 3-18〉과 같다.

2) 피보호감호자 학과교육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내에 검정고시·학사고시 교과과정을 설치하고 피보호감호자 중 희망자를 상대로 학과교육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표 3〉과 같이 2006년에 1명, 2007년에 2명, 2008년에 4명, 2012년에 1명, 2014년에 1명이었다. 학사고시반은 2015년에 7명이 교육중이며 그 현황은〈제6장 통계 : 표 3-17〉과 같다.

〈표 3〉 피보호감호자 검정고시 합격현황

(단위 : 명)

| 자격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1 | 2 | 4 | - | - | - | 1 | - | 1 | - |
| 중입자격 | - | - | - | - | - | - | - | - | - | - |
| 고입자격 | - | 2 | 3 | - | - | - | - | - | - | - |
| 고졸자격 | 1 | - | 1 | - | - | - | 1 | - | 1 | - |

3) 피치료감호자 직업훈련 실시

피치료감호자의 치료를 촉진하고 출소 후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1990. 5. 1. 치료감호소 내에 직업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2015년에는 281명에 대하여 조적, 건축시공, 타일, 컴퓨터, 건축도장, PC정비, 제과제빵 등 8개 종목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컴퓨터 종목의 훈련을 활성화하였다.

2013년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직업훈련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2015년도 피치료감호자 직업훈련 현황

(단위 : 명)

| 계 | 조 적 | 건축시공 | 타 일 | 컴퓨터 | 건축도장 | PC정비 | 제과제빵 | 세탁 |
|---|---|---|---|---|---|---|---|---|
| 281 | 9 | 14 | 8 | 70 | 24 | 45 | 77 | 34 |

## 3.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 가. 심의 대상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보호처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및 그 취소와 집행면제에 관한 사항,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에 관한 사항,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한사항 등을 심사·결정한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현황은 〈제6장 통계 : 표 3-19, 표 3-20〉과 같다.

### 나. 가출소제도의 탄력적 운영

가출소인원은 사회보호법 시행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198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고, 2004년 1,052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2005년부터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는 그동안 보호감호제도의 존폐 및 개선 논의과정에서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각계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2003. 7.부터 상대적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낮은 범죄유형의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다가 2005. 8. 4.자로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결과이다. 그러나 재산범, 폭력범의 대부분이 가출소된 후 2008년부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강도, 성폭력범 등에 대한 가출소 허가율이 감소하여 2010년도에는 17명, 2011년도에는 19명, 2012년도에는 15명, 2013년도에는 37명, 2014년도에는 33명, 2015년도에는 23명이 가출소하여 12월말 수용인원은 100명에 이르고 있다.

### 다. 집행면제심사의 적정 운영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1년 이상 보호관찰을 받은 가출소자로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 등 관찰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 집행면제를 결정하여 주고 있다.

그동안 집행면제 인원은 2004년 44명, 2005년 182명, 2006년 160명, 2007년 17명, 2008년 2명, 2009년 부터는 2011년 13명을 제외하고는 집행면제 인원이 한명도 없었다. 2007년도부터 급격한 감소는 그동안 가출소 확대 조치에 따른 수용인원 자연 감소와 잔류 강력범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 라.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심사의 적정 운영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경과, 범죄경력, 가정환경, 재범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치료경과가 양호하여 약물 또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징역형기와 상관없이 치료감호 가종료를 허가 하고 있다.

장기 피치료감호자의 사회보호시설 연계 방안을 수립·시행하였고, 판사·검사·변호사 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신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심사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치료감호 가종료 심사의 적정을 기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는 지속적인 치료 없이는 재발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증상악화 등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을 경우 가종료를 취소하고, 치료감호를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종료자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4. 치료감호의 효과성 증진 및 지속적 치료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 가. 개 요

치료감호소는 1987. 11. 3. 개청한 이후 정신질환자, 약물남용자, 정신성적 장애자 등을 치료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킴으로써 사회방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2015년도 법원·검찰·경찰로부터 652명의 정신질환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받아 정신감정결과를 통보하여 재판, 사건조사 등에 협력하여 명실 공히 법정신의학 분야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치료감호소에서는 진료체제를 정비하여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치료감호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였다.

### 나. 치료감호소 업무능력 제고

2015. 12. 31. 현재 전공의 7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전문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2015년도에는 자체교육 매주 5회, 외부강사 초빙교육 5회 5명, 유관의료기관 파견 4회 4명을 실시하는 등 수련병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1997. 11. 10.부터 '국립감호정신병원'으로 기관 명칭을 병행 사용하다가 2006. 7. 11. '국립법무병원'으로 병원명칭을 변경하고 국립서울정신병원 등 외부 의료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정신질환 치료병원으로 의료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2011. 12. 27.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신장애 범법자 공동연구 및 사법정신의학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2013. 1. 30.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 정신건강센터·중독브레인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치료감호소·교도소 출소자에 대한 전문 중독치료,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다. 치료감호의 효율적 집행

치료감호소에서는 피치료감호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신규 입소자를 검사병동에 수용하여 정신의학적 진단과 검사를 행한 후, 증상에 따라 분류하여 각 병동에 분리수용하고, 정신과적 치료와 함께 치료경과에 따라 단계적인 사회적응훈련과 예술요법, 작업요법, 사이코드라마와 같은 집단요법 등 정신재활

기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2015년도에는 피치료감호자에게 정신건강교육 59회 1,734명, 단주교육 88회 1,406명, 가족교육 10회 439명 등 의료재활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적(벽돌쌓기), 도배, 타일, 컴퓨터, 건축도장, PC정비, 제과제빵 등 8개 종목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지식정보화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취업이 용이한 컴퓨터 종목의 훈련과 선호도가 높은 제과제빵반을 활성화하여 8개 직업훈련 직종에서 281명이 수료하였고, 이 중 54명이 기능사 자격을 취득케 하는 등 피치료감호자의 정신질환치료와 사회적응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신질환은 그 속성상 대부분이 만성질환으로 치료감호 가종료 후에도 계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수적이나 치료감호 가종료 후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의 재발과 이에 따른 재범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치료감호 가종료 후에도 무료로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무상 외래진료제를 시행하고 있다.

1999년 1,899명을 시작으로 2005년 2,028명, 2014년 1,546명, 2015년 1,449명 등 매년 무상외래진료를 실시함으로써 퇴소 후에도 계속적인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 재발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라.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시행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여 2008. 12. 14.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신감정을 통해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최장 15년까지 전문 치료시설에서 선 치료 후 잔형기를 집행하게 되며, 2011. 9. 성폭력치료재활센터가 개설되어 2015. 12. 31. 현재 144명을 수용·치료중이다.

그리고 2011. 2.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2012. 3. 정신성적 장애자 핵심심리치료 프로그램(공통), 2013. 3. 정신성적 장애자 확장심리치료 프로그램(심화)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 3.부터는 대상자가 접할 수 있는 물리적인 체험 환경을 심리체험의 장으로 유도하여 사회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자 다중감각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 마. 치료·관리 강화를 위한 치료감호법 개정

완치되지 않은 피치료감호자의 재범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시스템을 마련하여 재범방지 및 안정된 사회복귀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3. 7. 30. 살인범죄자 중 완치되지 않아 재범위험성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상한 연장(현재 최장 15년 → 21년),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무상외래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14. 1. 31. 시행), 보호관찰소와 정신보건센터 간 정보 공유·상호 협조 등 공조체제 구축('14. 7. 31. 시행),

지역 접근성 제고 및 효율적 치료를 위하여 국립정신의료기관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15. 1. 31. 시행) 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였다.

## 제 6 항 보호관찰 내실화 · 전문화 추진

### 1. 개 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처우는 범죄인의 죄질, 연령, 성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재범위험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상자 각자에 맞는 차별적인 처우기법을 적용할 때 재범방지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은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선진 각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다양한 기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그 적용범위와 집행방식을 현실화하여 지속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 2. 보호관찰 실효성 제고

#### 가. 보호관찰 강화정책 추진

보호관찰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범고위험군 밀착감독 강화, 소재불명 가출소자에 대한 지명수배 확대, 출소자 자립지원 강화 및 인력 · 조직 확충을 통한 보호관찰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8. 6. 22.「소년법」 개정으로 다양해진 보호처분의 내실있는 집행을 위해 소년대상자에 대한 차별화된 분류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준수사항위반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인용율 제고 등을 통해 엄정 · 충실한 제재조치를 시행하였고, 갱생보호시설의 숙식제공기간 연장 등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보호관찰대상자 자립지원을 강화하였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2009. 11. 29. 시행)으로 특별준수사항 부과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 변경이 법률화되었다. 이는 사범별 맞춤형 보호관찰 강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조직 · 인력의 확충 등 보호관찰 내실화 기반조성을 추진하면서 소년전담 보호관찰제도실시, 성폭력, 마약 등 범죄유형에 따른 전담직원제 실시,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죄원인 분석을 위한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개발 및 재범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처우계획 수립 등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나.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엄정·충실한 법집행

보호관찰의 재범통제 및 사회방위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출석지도 위주의 보호관찰 방식을 탈피하여 주거지 방문 등 현장중심의 적극적 · 역동적 보호관찰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원거리에 거주하는 대상자에 대한 현장중심의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통한 재범방지 등 보호관찰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06년 평택,

대구서부, 2007년 서산, 여주, 통영, 경주, 논산, 정읍, 속초 등 보호관찰기관을 증설하였으며, 2009년 상반기 안양, 영월, 제천, 공주, 상주, 거창, 해남 등 7개, 2009년 하반기 영덕, 밀양, 남원 등 3개, 2010년 하반기 인천서부, 영동 등 2개 보호관찰기관을 증설하여 전국 법원·검찰청 설치 지역 중 장흥, 의성 등 2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설치하였다.

이러한 현장중심의 보호관찰활동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을 고의로 회피하는 미신고자, 무단 거주이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명수배제도를 통해 엄정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활용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5년도에는 2,005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어, 소재추적에 소요되는 인력을 절감, 일반대상자에게 보다 내실 있는 지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06. 10.에는 소재불명 가출소자의 조기검거와 재범방지를 위해 가출소자, 가정폭력사범 등에 대한 지명수배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명수배는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위반한 후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대상자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하여 이들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신청 등 엄정한 제재 조치를 통해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형벌권을 더욱 내실있게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 다.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운영

보호관찰대상자 행동변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종교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문치료·가족치료 등 심리치료 확대 및 숲체험·무용·음악·템플스테이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며, 무직 비진학 보호관찰 청소년에게는 검정고시 응시지원, 정신질환 대상자에게는 국립서울병원 등과 연계하여 치료적 상담 실시 및 외래진료비, 약제비 지원 등을 통해 재범에 이르지 않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이루도록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추어 성매매사범 전문수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매매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고,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 프로그램 전문화, 전문강사 Pool 구성 및 기관 간 공유, 교육실시기관 확대 등 성구매자의 건전한 성의식 개선을 통한 성구매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전문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다.

### 라. 보호관찰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자체적인 연구 기획력 강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은 실증적 자료와 이에 기초한 연구기획물을 토대로 입안되고 실시되어야 하며 이는 시행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적 요건이다.

따라서 보호관찰제도의 선진화와 체계화의 향상을 위해 현직 보호직 공무원 중 보호관찰 실무, 연구기획력 등을 겸비한 직원을 선발, '보호관찰비전연구팀'을 구성하여 10년간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물을 실제 보호관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재범자 특성자료 분석, 판결전조사 분석서 발간, 사범별 지도감독 매뉴얼 개발 등 보호관찰 제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정책 개발 지원 연구에도 큰 성과를 도출하였다. 향후 활발한 연구를 통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실태분석, 보호관찰 면담론 개발, 강도사범 청구전조사 대상자 특성 분석,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특화된 사회봉사명령 집행방안 연구 등 각종 보호관찰집행결과에 대한 효과성 판단과 실효성 있는 보호관찰기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3. 성폭력 등 특정범죄자 관리·감독

### 가. 전자감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살인 등 특정범죄자의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실시간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2008. 9. 1.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범위가 성폭력범죄자로 한정되었으나 2009년 미성년자유괴범죄자로, 2010. 7. 살인범죄자로 각각 확대되고,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소급적용, 2014. 6. 강도범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전자발찌 부착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08. 9. 1.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누적인원은 2015. 12. 31.까지 5,214명(성폭력 3,126명, 살인 1,731명, 강도 349명, 미성년자유괴 8명)이며, 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은 1.78%로써, 제도 도입 전 5년간('04.~'08.)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 14.1%와 비교시 1/8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재범률 감소는 24시간 위치추적에 따라 대상자의 행적이 원천적으로 파악되고 재범하면 반드시 발각, 체포될 것이라는 압박감과 함께 월 최소 4회 이상의 대면접촉과 야간 시간대를 포함한 보호관찰관의 불시 점검,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취업알선 등 체계적인 보호관찰 활동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며, 대상자 스스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동안 재범하지 않는 사유로 전체 설문 대상자의 64.7%가 '재범할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로 응답하는 등 전자감독제도의 재범 억제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절단하였거나 절단 후 도주한 사람은 총 66명이나, 예외 없이 전원 검거하였고, 징역형 등 엄정한 제재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전자발찌에 내장된 센서가 미세한 훼손도 감지하여 실시간으로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전송하고, 관제센터에서는 보호관찰관은 물론 훼손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 112순찰차가 즉시 출동하도록 조치하는 등 대응체제를 구축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이다. 부착명령 대상 범죄의 확대 및 2012. 12. 27. 헌법재판소의 성범죄자 소급 부착명령 합헌 결정으로 전자감독대상자 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4. 6. 19.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에 강도사범을 추가하여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위치추적시스템 용량 증설, Wi-Fi 등 최신 통신기술 도입 및 강화스테인레스판이 적용된 5세대 전자장치를 개발 완료하여 기술적 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감독대상자의 신상정보 공유 및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등 경찰과의 공조체제를 확대하고, 대상자의 범죄수법, 죄질 등 위험성을 구분하여 고위험범죄자에 대해서는 월 중 대면접촉 상향 조정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심리치료,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성의식 개선과 정상적 재사회화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하는 등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발생하는 제반경보에 24시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현재지 출장 등 밀착 감독 실현을 위해 2013년 도입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2015년에는 46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파악만으로는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대상자의 맥박, 체온 등을 감지하는 전자장치(일체형 외부정보감응 전자발찌)를 우선 개발하고, 피부착자의 과거 범죄수법, 평소 행동패턴 등을 현재의 생활 패턴과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하여 범죄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범죄징후사전예측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 나. 성충동 약물치료 안정적 시행

성폭력범 중에는 과도한 성적 충동으로 범죄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는 형벌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2010. 7. 2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1. 7. 24.부터 시행되고 있다.

약물치료제도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약물 투여와 함께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 시키는 제도이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와 함께 1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을 선고하게 된다.

치료명령이 선고된 자에 대하여는 함께 선고된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 다음에 치료명령을 집행하게 되는데, 약물투여를 위한 검사 및 약물투여의 효과 또는 부작용 등 확인을 위해 출소 2개월 전부터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한다.

2010. 7. 법률 통과 직후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시행준비 T/F를 구성하고, 선진외국의 운용실태 관련 자료를 수집·종합하였으며, 학계, 실무계 등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1. 7.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진단·감정, 치료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의뢰 매뉴얼을 만들어 대검찰청 및 일선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서울대 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감정기관(8개) 및 치료기관(10개)을 지정하였다.

2012. 12. 18. 법률 일부개정(2013. 3. 19. 시행)으로 피해자 연령제한이 폐지('16세 미만의 사람'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이 확대되었다.

현재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2015. 12. 31. 기준)으로 가출소자 3명, 가종료자 3명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집행하고 있으며, 2015. 12. 31. 현재 360명에 대하여 검사가 감정의뢰를 하였고, 그 중 46명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를 하였으며, 법원에서 약물치료 확정 판결 후 집행대기중인자가 16명이다.

**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체계적 관리**

신상정보제도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 자료에 활용하고, 등록정보 중 일부를 일반국민 및 지역사회에 공개·고지하여 성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상정보제도는 당초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아동·청소년대상에 대한 심각한 성폭력범죄의 발생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 등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요건이 정교화 되면서 제도의 정비가 계속 이루어져 왔다.

법무부는 2011. 4. 16.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제도를 시행하였고, 2013. 6. 19.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정보 등록업무는 법무부로,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로 각각 일원화 하는 동시에 신상공개 대상범죄의 확대, 신상공개 3년 소급적용, 신상정보의 진위 확인 주기 단축 및 관리강화 등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 12. 17. 신상정보관리센터를 출범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제도 시행 이후 2015. 12. 31.까지 36,267명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였으며, 그 중 11,462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9,007명의 신상정보도 고지하였다.

현재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자 알림e' 공개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 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고지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주,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초·중·고등학교의 장, 읍·면·동사무소의 장, 교과교습학원의 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장에게 우편 송부되고, 읍·면 사무소 또는 동(인접 읍·면·동 포함)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고지되는 정보는 공개되는 정보와 동일하다. 다만, 실제 거주지는 신상정보

공개와 달리 상세주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신상정보 대상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경찰·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한 신상정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신상정보제도의 정비로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이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더욱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4. 보호관찰활동 주요 성과

### 가. 보호관찰 활용 확대

1989년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매년 보호관찰 대상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교정시설 수용처우와 더불어 형사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 9. 23.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영역이 성매매사범에까지 확대되는 등 보호관찰제도가 활성화되어 2015년 한 해 동안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존스쿨 교육 등 199,713건의 실시사건을 관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범죄인에 대한 시설내처우시 발생하는 과다한 관리비용, 범죄수법 전수, 사회적응력 약화로 인한 재범 반복 등 문제점을 보호관찰을 통한 사회내처우실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 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도·감독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사회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하에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만으로는 재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재범방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대상자들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직·비진학 대상자를 선별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2015년 한 해 동안 532명을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였고 152명에 대해서는 취업을 알선하였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의 성과는 별도의 추가 예산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업훈련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또 다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사회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연도별 직업훈련 등 원호 실적은 〈표 5〉와 같다.

〈표 5〉 원 호 실 적

(단위 : 명)

| 구 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원호 | 소 계 | 8,817 | 8,336 | 10,062 | 11,246 | 11,630 | 14,851 | 15,664 | 17,996 | 24,804 | 25,483 |
| | 숙소알선 | 216 | 177 | 243 | 229 | 190 | 167 | 256 | 247 | 238 | 195 |
| | 취업알선 | 50 | 44 | 104 | 152 | 67 | 75 | 136 | 251 | 257 | 152 |
| | 직업훈련 | 472 | 498 | 585 | 714 | 498 | 405 | 481 | 529 | 613 | 532 |
| | 복학주선 | 304 | 243 | 505 | 657 | 1,612 | 1,661 | 2,357 | 2,579 | 2,941 | 2,274 |
| | 경제구호 | 7,276 | 6,973 | 8,292 | 9,181 | 8,679 | 11,970 | 11,959 | 13,680 | 18,653 | 20,929 |
| | 문신제거 | 499 | 401 | 333 | 313 | 584 | 573 | 475 | 710 | 735 | 677 |
| 응급구호(의료) | | 30 | 22 | 25 | 20 | 119 | 134 | 232 | 760 | 1,367 | 724 |

## 5. 유비쿼터스 보호관찰시스템 구축·운영

### 가. 구축배경

1989년 소년 대상으로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되고, 1997년 형법 개정으로 보호관찰이 성인까지 전면 실시된 후 가정폭력,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범죄, 살인 및 강도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입 당시 8,389건이었던 사건수가 2015년 199,713건으로 약 24배 증가하였다. 또한 공판단계에서 판결전조사, 기소전 단계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검사결정전·청구전 조사제도가 도입되는 등 형 집행 단계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보호관찰 제도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걸맞는 보호관찰 전담인력은 아직 충분치 못하여 직원 1인당 대상자 수가 122건에 이르고, 이는 선진국(미국 46건, 일본 33건, 영국 25건, 호주 17건)과 비교하여 약 3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보호관찰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소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보호관찰 역량의 배분이 필요하다. 즉 '재범억제를 통한 사회보호'와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보호관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보호관찰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저위험대상자에 대해서는 자율적 통제로 사회적응을 도와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위험대상자에 대해서는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범억제를 통한 사회보호'와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양대 목표 달성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이 개발된 것이다.

### 나. 시스템 내용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은 저위험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스스로 선택한 IT장비(PC, 스마트폰 등)로 지도·감독에 응하거나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 혁신 시스템과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감독 강화와 집행효율성 제고를 위해 화상전화·음성분석 기술을 통한 원격 집행감독,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현장 정보 검색 등 업무처리에 IT 기술을 접목한 프로세서 혁신 시스템으로 나뉜다.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시스템과 보호관찰현장업무 지원시스템」 등의 활용은 보호관찰대상자 접촉을 강화하여 대상자 행동통제에 기여하였으며, 화상전화·음성분석 등의 IT기술을 통한 집행감독 강화, PDA폰·GPS 등의 이동통신기기를 활용한 업무효율성 제고로, 재범억제를 통한 보호관찰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원격감독시스템」으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감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출퇴근시간의 자의적 기록 및 명령이행시간 계산오류를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감독함에 따라, 대리출석·무단이탈 등 집행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소지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엄정하고

투명한 집행감독체계 구축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업무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사이버 보호관찰소」를 통해 재범저위험 대상자 스스로 보호관찰관이 On-line상에서 지시한 과제를 수행하여 컴퓨터 등으로 보고하고, 범죄예방위원은 경과통보서 등을 On-line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보호관찰정보 휴대폰문자전송서비스」로 대상자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2009~2010년에 이어 2012년에도 행정안전부 행정DB사업에 보호관찰카드 DB 구축사업(3단계)이 선정되어 보호관찰카드 약 41만 건(1,370만명)을 디지털화 하였고, 2011년 보호관찰 무인정보시스템 시범 구축 이후 2013년에 16개 보호관찰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무인 단말기(135)대를 활용하여 23,183건의 전자 문서를 작성하고 229,048건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출결관리를 처리함으로써, 종이 문서 생산을 최소화하고 보호관찰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추가 보급 사업을 통해 유비쿼터스 보호관찰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위치추적관제시스템(U-Guard)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감독하고 있으며, 전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위치추적관제시스템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감독장치(스마트폰)를 전국 보호관찰기관에 보급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비쿼터스 보호관찰시스템」의 실시를 통해 재범저위험 대상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사이버 공간에서 엄격하게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이 가능하므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재범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재범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향후 1989년 보호관찰 제도 도입 후 축적된 약200만건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를 빅데이터 자료분석을 통해 재범을 사전에 예측하는 재범예측시스템 구축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관계망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한정된 보호관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시도들을 계속함으로써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높아지는 보호관찰대상자 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시 스 템 | | 내 용 | 적용 대상자 |
|---|---|---|---|
| •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 | | 보호관찰대상자의 상황 및 동태정보를 기록하고 열람하는 보호관찰 메인시스템 | 全 보호관찰대상자 |
| • 보호통합지원시스템 | | 사회봉사, 수강명령, 존스쿨, 보호자교육 등의 집행업무와 조사업무, 통계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 全 보호관찰대상자 |
| • 보호관찰 DB시스템(PACS) | | '07~'10까지 4년 간 종료된 보호관찰대상자의 카드를(판결문, 신고서, 집행상황부 등) 디지털화하여 시스템을 통해 열람 가능 | 보호관찰 종료자 |
| • 보호관찰무인정보시스템 | | 연간 150만 건 이상의 종이 서류를 생산하는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무인디지털 단말기를 통하여 생활보고서·신고서 접수, 집행감독 등 친환경 보호관찰 IT환경 구축 | 全 보호관찰대상자 |
| • 보호관찰 현장업무 지원 시스템 (MOPIS) | | 출장현장에서 PDA폰(스마트폰 등)을 통해 대상자 정보검색·입력, 지리정보 활용으로 현장 처리능력 획기적 개선 | 全 보호관찰대상자 |
| • 보호관찰정보 휴대폰문자 전송 서비스(P-SMS) | | 대상자의 휴대폰으로 교육일정, 출석일정 등 보호관찰 정보를 문자메세지로 전송 | 全 보호관찰대상자 |
| • 사이버보호관찰소(CPO) | | 대상자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준수사항 확인, 야간 정기 생활보고 등이 가능하게 구현된 Web상의 보호관찰소(휴일·야간 보호관찰 업무 공백 최소화 효과) | 재범 저위험 보호관찰대상자 |
| • 사회봉사·수강명령 사이버감독 | 1세대 화상 전화 감독 시스템(DPS) | 보호관찰소와 협력기관 간에 설치된 화상 전화기를 통해 집행감독 실시 |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 |
| | 2세대 원격감독 시스템 (COEMS) | 협력기관 담당자가 사회봉사명령 개시·종료 시간에 대상자의 사진을 찍어 사이버 상으로 전송, 기타 문서 자동송출, 집행상황부의 전자적 처리 가능 | |
| •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 시스템 (CVS) | | 컴퓨터가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분석을 통해 재택여부를 감독 |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외출제한명령대상자 |
| • 위치추적시스템(U-Guard) | | 전자감독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경로,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감독 | 전자감독 대상자 |
| • 전자발찌 현장감독 시스템 (Mobile U-Guard) | | 출장 현장에서 전용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을 접속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 연락처, 신상 정보 등을 확인함 | 전자감독 대상자 |

## 6. 판결전조사·환경조사 활동

### 가. 판결전조사

판결전조사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명하기 위하여 판결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요청함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범죄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의 제반사항에 관해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서는 양형의 적정화 및 범죄자 처우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소년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판결전조사는 2008. 12. 26.「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인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나. 법원결정전조사

판결전조사가 형사사건 선고 전에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관련 정보를 조사하는 제도인 반면 법원결정전조사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와 같이 보호사건에 한정된 각종 피의자의 범죄원인, 성장배경, 생활환경 등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이 조사, 의뢰한 법원에 회보하는 것이다.

법원결정전조사는 그동안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전조사에 준하여 전국의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실무상 필요에 의해 의뢰함에 따라 실시해 오다가 2007. 8. 3. 공포, 개정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1조, 2007. 12. 21. 공포·개정된「소년법」제12조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7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4조 등에서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조사하는 '법원결정전조사'제도를 규정,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다. 검사결정전조사

2007. 12. 21. 소년법 제49조의2의 신설로 검사결정전조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선고단계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도 조사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보호관찰관의 조사 영역도 확대되었다. 또한 2014. 9. 29.「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검사가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 라. 청구전조사

청구전조사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위한 조사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형집행종료후 보호관찰명령을 위한 조사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는「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등 특정 범죄 피의자에 대해 검사의 요청으로 범죄동기, 피해자

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을 보호관찰관이 조사하여 통보하는 제도이다. 성충동약물치료 명령 청구전조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위해, 검사의 요청으로 범죄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위험성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 통보하는 제도이다. 특히, 법무부에서는 특정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위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를 개발하여 청구전조사시 재범위험성 평가 준거로 활용하고 있다.

**마. 소급청구전조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에 의거, 성폭력범죄로 2008. 9. 1.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출소자·출소예정자·출소임박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검사의 요청으로 보호관찰관이 피조사자의 범죄의 동기, 심리상태,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제도이다.

**바. 환경조사**

환경조사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수용자, 보호감호소의 감호처분자에 대하여 범죄의 동기 및 현재의 환경을 조사하여 교정 교육자료, 가석방·임시퇴원·가출소 등의 심사자료, 보호관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내용은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생계대책 등이며 면접, 사실조회, 자료분석 등의 기법이 이용된다.

연도별 판결전조사 등 조사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연도별 판결전조사 등 조사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판결전조사 | 3,071 | 3,631 | 4,273 | 3,597 | 1,598 | 1,526 | 2,385 | 2,159 | 2,257 | 2,166 |
| 법원결정전조사 | 1,128 | 3,186 | 3,311 | 4,234 | 6,398 | 9,242 | 12,719 | 12,141 | 12,399 | 17,678 |
| 검사결정전조사 | - | - | 1,415 | 3,670 | 4,524 | 3,906 | 5,547 | 5,084 | 5,855 | 3,805 |
| 청구전조사 | - | - | 92 | 304 | 1,376 | 1,933 | 1,696 | 2,497 | 2,511 | 2,352 |
| 환경조사 | 1,849 | 1,861 | 1,862 | 2,009 | 1,738 | 1,581 | 1,715 | 1,701 | 1,594 | 1,561 |
| 소급청구전조사 | - | - | - | - | 2,251 | 772 | 354 | 247 | 192 | 119 |

## 7. 사회봉사명령의 엄정·충실한 집행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확정된 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보내는 대신, 일정시간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년 제도 도입 당시 121명에 불과했던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1997년 사회봉사명령을 성인범에까지 확대하면서 명령부과 인원이 급증하여 30,551명에 이르렀고 해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55,581명에 달하는 등 보호관찰과 함께 주요 사회내처우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또한 2009. 9.부터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봉사로 벌금 납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도 시행 이후 2015년까지 총 49,713명을 집행하였다.

### 가. 민생지원형 사회봉사명령 집행 확대

2010. 4. 농협중앙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 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오던 농촌일손돕기를 전국 단위로 연중 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화하여 2015년도에 연인원 103,511명을 투입하여 농번기 일손돕기, 영세농가 집수리, 마을환경개선, 재해피해복구 등의 농촌지원을 실시하였다. 지난 2010년 이후 6년여 동안 전국 농촌지역에서는 614,837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지원활동을 펼쳤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약 621억 원의 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14,837명 × 101,058원(2015, 통계청 농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또한 민생지원형 사회봉사명령 집행 강화의 일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2013. 5.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터넷(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기존의 관(官) 주도로 진행되던 사회봉사 제도에 국민참여방식을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2015년에는 국민공모제 총 2,249건에 22,569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투입되어 지역사회지원, 소외계층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복지시설지원, 농·어촌지원, 공익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 내고 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이후 총 4,887건에 사회봉사 대상자 53,521명을 투입, 사회적 약자 및 일반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고 있고 그 경제적 지원효과는 약 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 53,521명 × 89,566원(2015, 대한건설협회 1일 노임 기준)

이 외에도 재해피해복구지원,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빨래방', '연탄배달', '김장담그기', '장애우 나들이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사회봉사자의 특기를 봉사현장에서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집행 분야를 발굴하여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봉사명령 집행프로그램 실시로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높아져 강제적 명령에 의한 집행완료 이후에도 자원봉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자율적으로 자원봉사 단체를 조직하여 사회에 유익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늘어나면서 언론에 미담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범죄인이 피해를 입힌 지역사회에 배상할 기회를 부여하고, 범죄성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나. 엄정·투명한 사회봉사 집행감독

엄정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하여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에 대한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책임자에 대한 정기 교육 및 협력기관 평가를 통해 사회봉사명령이 적정하고 충실하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협력기관에 설치한 화상전화기의 기능을 한 단계 높인 원격감독시스템을 2008년에 구축하여 보다 편리하고 투명한 감독이 가능하게 되었다. 원격감독시스템은 컴퓨터를 통하여 사회봉사대상자 출·퇴근 시간을 자동 입력하고, 명령 처리 절차를 전자화함으로써 대리출석, 집행장소 이탈여부를 감독하는 것으로 전국의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설치됨으로써 집행의 엄정성이 더욱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다양한 집행분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집행개시 전, 현장감독 시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고 발생 후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적절한 보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8. 수강명령 집행 전문성 강화

### 가. 수강명령 분야별 전문화로 집행효과성 제고

수강명령은 성폭력·가정폭력·약물·교통 사범 등 범죄인의 의식개선을 통해 범죄유발요인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5년 한해 28,197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인지적 재구조화 및 행동수정을 유도하는 치료적 기법을 시도하고, 범죄원인 등 특성에 맞는 내용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범죄인의 인식 및 행동 개선을 통한 재범방지와 정상적인 사회적응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수강명령의 효과성을 높이고,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 성인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2009년 최초 개발한 '성범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매뉴얼'을 실무에 맞게 보완·업데이트하여 2011년 '성범죄자 치료 수강명령 전문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가정폭력예방, 약물중독치료, 소년심리치료 등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수강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법무부 자체 개발 T/F를 통해 2010. 2. 전문프로그램과 표준매뉴얼을 개발한 뒤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보완·정비하고 있다. 또한 2011. 8.에는 준법운전 수강명령 표준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전문프로그램의 주요 특성은 첫째, 모듈식 구성으로 집단의 특성 및 진행자 역량에 따른 프로그램 차별화가 가능하고, 둘째 10명 내외 소집단 구성 및 1개월 이상 장기 집행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수 있으며, 셋째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매뉴얼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것이다.

### 나. 수강명령담당자 전문성 향상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집행 단계에서 전문 인력의 개입이 요구된다. 수강명령 제도 도입 초기에는 주로 교수,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등 지역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하였으나, 이러한 외부 전문가의 활용은 상설·상시 집행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2003년부터 보호관찰공무원 교육과정에 MBTI(성격유형검사) 과정을 개설하고, 수강교육과 관련된 전문교육 이수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시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 수강명령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0년에는 전문교육 수료인원이 190여명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09년 이후 성폭력치료, 가정폭력치료, 소년심리치료, 약물중독치료, 준법운전 수강명령 등 수강명령 표준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법무연수원에 사내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수강명령 집행 담당 보호관찰공무원 35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국 수강명령 담당자 집행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집행 노하우의 공유 및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수강명령 관련 외부전문가의 특채도 이루어져 2006년과 2007년 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등 각 7명을 6급과 7급으로 채용하였고, 2010년과 2012년 각 10명, 2013년 25명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여 일선 기관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서울 등 7개 기관에 수강집행센터를 설치, 성폭력·가정폭력·약물·알코올 전문 프로그램을 사내강사가 집행함으로써 외부강사 의존도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수강명령 효율성·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수강명령 분야별 사내전문강사 양성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대학, 전문교육기관 등의 약물치료, 상담전공 과정 등 교육기회를 활용하여 수강명령 집행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공무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 다. 범죄인 치료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대응 네트워크 구축

보호관찰기관은 수강명령 집행 시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수강명령 대상자와 전문

사회자원을 연결하는 매개역할을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을 중심으로 범죄인 치료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실제로, 2005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중인 알코올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알코올 사범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한 것을 시작으로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청소년상담센터, 마약퇴치운동 본부 등 수강명령에 적합한 지역사회의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 일정 자격을 갖춘 외부강사가 수강명령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 라. 기소유예처분 성구매자 교육(John-School) 실시

2005. 7.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05. 8.부터 전국 13개 보호관찰소로 하여금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구매 사범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존스쿨 집행기관도 2006년에는 22개, 2007년에는 29개, 2009년에는 39개, 2010년부터 42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의 목적은 성구매 남성에 대하여 교육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남성중심적인 왜곡된 성 인식과 태도를 교정하고, 양성평등적·인본주의적 대안사고와 태도를 배양하는 것이다. 아울러 성구매 남성의 인지재구조화와 행동수정을 통해 성매매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한편, 2005. 8.~12.까지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총 3,210명의 존스쿨 대상자를 접수하여 2,214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6년에는 12,541명 접수, 11,217명 집행, 2007년에는 17,127명 접수, 15,124명 집행, 2008년에는 19,433명 접수, 17,956명 집행, 2009년에는 37,679명 접수, 34,762명 집행, 2010년에는 13,471명 접수, 14,283명 집행, 2011년에는 8,936명 접수, 7,409명 집행, 2012년에는 5,954명 접수, 4,518명 집행, 2013년에는 3,997명 접수, 3,214명 집행, 2014년에는 3,223명 접수, 2,356명 집행, 2015년에는 3,464명 접수, 2,526명 집행 등 2009년까지는 매년 집행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검·경의 지속적인 단속과 존스쿨 제도 시행으로 인한 성구매 남성들의 의식 변화로 존스쿨 집행인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언론 및 국회 등에서 성구매 남성의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는데 현행 1일 8시간의 교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T/F를 구성하여 존스쿨 표준프로그램을 전면 수정·보완하는데 착수하였고 12차례 회의와 연구 끝에 2일 16시간의 성구매자 교육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고 2012. 3. 1. 성구매자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 마. 음란물 사범(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자 등) 재범방지 교육실시

2012. 10. 대검찰청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범 등에 대한 '기소유예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요청에 따라,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험자를 주축으로 음란물 사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1일 5시간으로, 교육내용은 음란물 중독에 대한 이해, 음란물의 유해성, 음란물 근절을 위한 실천계획 세우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2013년부터 전국 14개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바. 가정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실시**

'4대 사회악' 중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가정폭력 사범의 보호관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논의를 거쳐 2013. 5. 가정폭력 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1일 8시간 또는 2일 16시간으로, 가정폭력의 폐해, 책임 인정하기, 분노 관리, 행복한 가정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을 통해 가족간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 및 서로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방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8월부터 전국 37개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 제 7 항 갱생보호사업의 내실화

### 1. 개 요

갱생보호사업은 무의탁·무연고 출소자의 자립에 필요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직업훈련, 취·창업지원 등 다양한 갱생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는 선진 형사정책으로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내처우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은 특수공익법인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민간 갱생보호법인이 담당하고 있고, 법무부는 갱생보호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

출소자에 대한 사회내처우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사회적 요구에 비해 지원 기반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고, 출소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도 여전하여 갱생보호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그동안 갱생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활발히 논의를 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력 증원, 예산 증액, 시설 확충, 갱생보호사업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2.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역량 강화

**가. 갱생보호사업 운영기반 확충**

갱생보호대상자 및 주거·창업·취업지원 등 신규 사업이 증가하였음에도 인력 및 재원 부족으로 내실있는 사업수행이 어렵다는 국회, 감사원 등의 계속된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을 지속 협의한 결과, 2012년 31명, 2013년 10명, 2014년 9명, 2015년 8명 등으로 인력이 늘었다. 특히 변호사,

전문상담직, 홍보전담직 등 전문가 위주의 직원 채용으로 최고의 범죄예방 전문 실천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고 지원액도 2012년 117억 원, 2014년 175억 원, 2015년도 228억 원 등으로 대폭 증액되어 안정적으로 갱생보호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되고 있다. 아울러 농협 등 대기업과 연계한 사회공헌 기금 유치,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빌딩 임대사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나. 생활관 확충 및 현대화

숙식제공 출소자에 대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생활관 신축 및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였다.

2006. 4. 광주전남지부 남부지소, 2006. 5. 경남지부 서부지소, 2006. 7. 경기북부지부, 2006. 11. 대구경북지부 서부지소를 순차적으로 신설하였고, 여성출소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2010년에 서울 송파, 경기 삼미・안양지소를 통폐합하여 경기도 화성시에 현대식 건물의 여성지원센터를 개관하였다. 2012년에는 복권기금 41억여 원을 확보하여 인천 및 울산지부의 시설을 현대화하였고, 2014년에는 복권기금 90억여 원을 확보하여 경기 오산시에 가족희망센터를 건립하고 전북지부를 신축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4년, 2015년에 각각 국고보조금 28억원을 지원받아 2014년에 경남지부를 신축하고, 2015년부터 충남 홍성군에 충남지부 신설을 추진중에 있다.

### 다. 전문 직업훈련시설 기반 확대

교정시설 수감에 따른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사회 내에서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012년 인천지부와 울산지부에 용접기능취득전문처우센터, 2014년 전북지부(전주)에 특용작물 재배, 농산물 유통마케팅, 농기계 정비수리 등을 교육하는 영농 기능취득전문처우센터, 2015년 경남지부(창원)에 컴퓨터응용 기계가공(CNC, MCT)등을 교육하는 기계조립 기능취득전문처우센터를 각각 개관하여 출소자의 취업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전문 직업훈련을 통해 2012~2015년 인천·울산·전북·경남의 기능취득전문처우센터를 통해 783명이 입교, 656명(83.8%)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408명을 취업(취업률 62.2%)시켰다.

그 중 고용노동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나은 일자리(월급여 150만 원 이상)에 취업한 사람이 전체 취업자 408명 중 371명(90.9%)에 이르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 라. 갱생보호제도 연구

2012. 12. 14.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를 창립하고, 2013. 6. 26.「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발전방향」, 2013. 10. 11.「법무보호복지사업의 해외사례 비교」, 2014. 11. 14.「출소자 가족지원 사업의 국내외 동향 연구」, 2015. 4. 17.「출소자 지원사업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5. 10. 23.「법무보호복지사업의 새로운 지평」 등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갱생보호

제도 발전을 위한 학술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마. 갱생보호사업 분야 확대**

출소자의 효과적인 재범방지 및 안정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출소자 가족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4. 11. 2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출소자 가족에 대한 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주거지원, 창업지원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갱생보호사업이 출소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는 사업으로 확대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바.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갱생보호대상자 및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2011년에 갱생보호대상자 통합 관리 프로그램인 법무보호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 및 예산회계 시스템을 전산화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출소자의 안정적인 취업처 확보, 구인·구직 정보의 공유, 취업자 사후관리 등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구인·구직전산시스템(www.jobkoreha.or.kr)"을 구축하였다.

## 3. 갱생보호사업 현황

**가. 갱생보호사업 실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2015년 총 69,034명에게 갱생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들이 재범 없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사후관리 및 멘토링 등 생활지도를 강화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분야별 사업실적은 〈표 7〉과 같다.

〈표 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분야별 사업실적

(단위 : 명)

| 구분 / 년도 | 계 | 숙식제공 | 직업훈련 | 취업알선 | 주거지원 | 긴급원호 | 사후관리 | 사전상담 | 창업지원 | 사회성향상 | 취업지원 | 가족희망 | 심리상담 | 기타자립 | 학업지원 |
|---|---|---|---|---|---|---|---|---|---|---|---|---|---|---|---|
| 2005 | 47,574 | 2,680 | 1,650 | 3,373 | 14 | 1,641 | 5,727 | 20,174 | - | 2,899 | - | - | - | 9,416 | - |
| 2006 | 48,557 | 2,745 | 1,533 | 3,281 | 133 | 2,169 | 6,995 | 18,313 | - | 3,337 | - | - | - | 10,051 | - |
| 2007 | 54,867 | 2,779 | 1,502 | 3,387 | 152 | 2,348 | 9,239 | 18,322 | - | 5,441 | - | - | - | 11,697 | - |
| 2008 | 53,469 | 2,757 | 1,472 | 3,335 | 152 | 2,557 | 8,348 | 19,075 | - | 4,513 | - | - | - | 11,260 | - |
| 2009 | 52,958 | 2,637 | 1,465 | 3,422 | 152 | 3,414 | 9,398 | 17,044 | 30 | 4,475 | - | - | - | 10,921 | - |
| 2010 | 49,788 | 2,398 | 1,717 | 3,431 | 152 | 3,392 | 9,086 | 15,668 | 27 | 3,112 | - | - | - | 10,805 | - |
| 2011 | 54,183 | 2,440 | 1,533 | 3,615 | 152 | 3,507 | 9,812 | 15,798 | 43 | 3,134 | 3,440 | - | - | 10,709 | - |
| 2012 | 56,201 | 2,517 | 1,732 | 3,736 | 158 | 3,795 | 10,886 | 15,833 | 31 | 3,400 | 3,975 | - | - | 10,138 | - |
| 2013 | 57,124 | 2,303 | 1,774 | 3,871 | 152 | 4,710 | 10,391 | 15,949 | 18 | 3,264 | 4,328 | 31 | 3,573 | 6,760 | - |
| 2014 | 59,716 | 2,237 | 1,757 | 3,779 | 152 | 3,963 | 9,993 | 19,213 | 12 | 3,244 | 4,328 | 297 | 3,808 | 6,014 | 919 |
| 2015 | 69,034 | 2,340 | 2,505 | 4,174 | 152 | 4,708 | 10,993 | 22,113 | 13 | 3,551 | 5,014 | 331 | 4,899 | 7,182 | 1,059 |

## 나. 다양한 갱생보호 프로그램 운영

1) 취업지원사업

공단은 보다 효과적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6. 10.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한 「출소자 취업희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이는 2010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출소자의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출소자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071명의 출소자를 참여시켜 취업역량을 강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55억여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이 아닌 법무부 직접사업으로 출소자 특화 취업지원사업인 「허그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출소자 1,424명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출소자의 건전한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 취업처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에 그간 지부별로 산재한 취업지원위원회를 통합하여 2008. 6. 전국취업위원연합회를 구성하고 1기업 1출소자 고용운동을 전개하여 2015년 현재 417개 업체가 참여, 1,484명에게 취업처를 제공하였고, 2009. 12.부터 2015년 현재까지 총 24개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체를 사회공헌기업으로 선정하여 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소자 고용에 대한 기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주거지원사업

주거지원사업은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무주택 출소자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와 연계하여 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05년 시범 실시된 14호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1,521호의 임대주택을 출소자에게 지원하여 2,018명이 주거지원 수혜를 받았다.

주거지원사업은 기존 독거인의 숙식보호 사업인 숙식제공을 넘어서 갱생보호사업 패러다임을 가정기능 회복과 실질적 자립 촉진으로 전환하는 선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2012년부터는 주거지원 임대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출소자 지원용 배정 물량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등 보다 많은 출소자에게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확충하였다.

3) 창업지원사업

창업지원은 직업훈련교육 이수 후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특정 직종 취업으로 숙련기술을 습득한 출소자 중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창업을 위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2015년까지 174명에게 70억여 원을 지원하였다.

4) 가족희망사업

가족희망사업은 가정이 해체되거나 해체위기에 처해 있는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과 출소자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여

범죄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경기도 오산시에 건립된 가족희망센터를 중심으로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가족상담, 가족캠프, 가족교육, 학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하고 있고, 2015년 출소자 185가족, 331명에게 가족상담, 가족캠프, 가족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5)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상담을 통해 출소자의 심리적 문제점을 진단·치료하고 대인관계 개선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2012년부터 임상심리사 등 전문 심리상담사를 채용하여 각 기관에 배치하고 있고, 2015년 현재 공단에 소속된 전문 상담인력은 27명에 달한다. 이는 출소자 심층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담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2015년까지 9,935명에게 22,210건의 전문 심리검사와 상담이 이루어졌다.

6) 출소자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출소자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은 출소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수형생활로 인한 사회지체(Social Lag)로 고통 받는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회복을 위한 기본소양, 문화체험, 신용회복, 봉사활동, 인문학 교육, 정서회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7)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사랑의 빨래방은 범죄자가 사회에 끼친 잘못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보상하게 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Restorative Justice Program)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공단 서울지부 등 총 6개 지부에 대형세탁기와 건조기 등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인 독거노인과 장애우, 소년소녀 가장 등의 빨래를 무료로 수거·세탁한 후 가정에 배달하는 자원봉사로 사업 개시 이후 2015년까지 총 34,370명의 출소자와 봉사자 등이 참여하여 491,640점의 세탁 봉사를 실시하였다.

## 4. 갱생보호사업 저변 확대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2012. 10.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법무보호복지 70년과 미래', 2013. 10. 안양아트센터에서 '노란리본의 날개짓이 그리는 안전한 국가, 희망의 새 시대' 등 행사를 개최하였고, 2014. 10. 안양아트센터에서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의지가 적힌 자필편지를 담은 「10년의 약속」 타임캡슐 봉입식, 대학생 서포터스·보호청소년 합동 뮤지컬 공연 등 더욱 다채롭고 뜻 깊은 행사들을 개최하였다.

2015. 11.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람 + 사랑, 세상을 바꾸다' 라는 주제로 2015 HUG 후원의 날을 개최, 범죄예방 최고 전문 실천기관으로의 위상 제고를 위한 「비전선포식」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2013년부터는 갱생보호 사업별 홍보영상을 개별 제작하여 법무부 보라미

방송을 통해 각 교정기관 출소예정자들에게 송출하고, 2014년에는 출소자 성공사례집 「아름다운 동행, 한 번 더 날아오르다」를 제작·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였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유명인사의 인터뷰 「명사칼럼」과 출소자 성공스토리 「미소씨 이야기」 발간, 그리고, 자원봉사자 미담사례 「아름다운 동행」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출소자를 관용과 배려로 보듬을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고 있다.

## 제 8 항 청소년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역량강화

### 1. 개 요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비행청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과교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약물남용·발달장애·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한 의료 및 재활교육과 심리치료·사회봉사활동 등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높여왔다.

1988년에는 소년원 학생이 학령기 청소년이란 점을 강조, 소년원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 학교체제로 전환하여 학업연계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1999년에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직업능력배양과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교과교육 중심의 소년원 교육체제를 실용외국어와 컴퓨터 중심의 특성화교육체제로 혁신하였다.

1958년 제정된 「소년원법」에 의하여 소년원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 소년원 교과교육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에게 종전에 재학했던 학교의 학교장 명의로 졸업장을 주고, 중도에 출원하는 학생은 일반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시켜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 중·고등학교와 동일한 과정과 전체 교육시간의 60%를 인성교육과 컴퓨터 등의 특성화 교과로 운영하고 있다.

1942. 4. 20. 개원한 조선교정원의 실과교육으로 시작된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73년 안양소년원이 '법무부 제1공공직업훈련소'로 지정되고, 뒤이어 1974년 서울소년원 등 전국의 9개 소년원이 '법무부 제2~10공공직업훈련소'로 인가되면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는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안양·춘천·제주소년원에서 자동화용접, 자동차정비, 소형건설기계, 건축환경설비, 제과제빵, 피부미용, 헤어디자인, 사진영상, 측량, 텔레마케팅, 골프매니지먼트 등 13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도의교육, 종교교육으로 출발한 소년원

인성교육은 2000년대 들어와서 국토순례, 야영훈련, 문화예술교육, 공연관람, 사회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학생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특성 등을 고려한 집단지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소년원 학생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꾸준히 지속한 결과, 1999년 교육현장의 자료와 전문가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교재를 발간한 이래 2012년까지 "학교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고도화", "가해학생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총 30종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6년 (구)대전소년원을 "약물남용원생 전담소년원"으로 지정·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중 약물남용,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재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부터는 대전소년원이 법원으로부터 소년의료보호시설로 지정받으면서 「소년법」에 따라 병원, 요양소 위탁처분을 받은 소년까지 수용하여 의료·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년원에서는 수용위주의 소극적인 정책을 탈피하여 수요자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적극적·개방적인 교육행정을 전개해 오고 있다.

2008. 6. 22.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8호 처분이 신설됨에 따라 대전·청주·제주 소년원을 전담소년원으로 지정하고 개방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비행성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8호 처분자의 교육기간은 4주로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폭력·절도 등 비행유형별 전문교육, 자연친화교육·봉사활동 등 체험활동, 가족관계회복·사회성향상 프로그램 등 집단상담, 기초질서 교육·생활예절 등 기본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집중적인 품행교정이 필요한 소년원 학생을 대상으로 법의식, 책임감 함양 등을 통해 성행을 교정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10주간의 집중처우 프로그램을 2009년부터 제주소년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2001년부터 일반학교 학생 등 특별교육 대상자에 대한 특별교육기관 지정·운영으로 청소년비행예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03. 3.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학생에 대한 분류심사기간을 학교출석으로 인정함에 따라 명실공히 지역사회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2003. 7.부터는 불구속 송치로 보호자에게 위탁되어 있는 소년에게 전국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주간에만 3~5일 출석하여 상담 및 조사를 받도록 하는 '보호소년 상담조사제'를 실시하고, 소년사건 심리과정에서 소년부판사가 분류심사관을 법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는 등 소년심판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분류심사관 참여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보호행정 혁신사례는 국무

조정실의 200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6대 정책우수사례' 및 외국의 '역벤치마킹사례'로 선정되었고, 2005. 6.에는 KMA생산성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에서 서울소년창업보육원이 '행정혁신 리더십'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2005. 12. 5.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 「2005 한국장애인 인권상 교육실천 부문」에서 대전의료재활소년원이 인권상을 수상하는 등 그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 2. 소년원교육의 내실화·전문화

### 가. 교육기반 조성

1) 전문강사 확보 및 교수능력 향상

소년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1999. 10.부터 자체교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문가를 활용한 유급강사를 확보하여 교육에 임하는 한편, 소년원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업이 우수한 출원 학생들을 관련 교육과정 보조강사로 채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문강사 확보 및 자체교사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6~2007년도에는 인성교육 전문소년원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컴퓨터교육·교과교육·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지도교사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2015년 기준 소년원 유급 및 기타강사 현황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소년원 유급 및 기타강사 현황

| 계 | 유 급 강 사 | | | | 보조강사 |
|---|---|---|---|---|---|
| | 교과 | 컴퓨터 | 직업훈련 | 인 성 | |
| 136 | 0 | 12 | 25 | 78 | 21 |

2) 교육환경 개선

교육시설 및 환경이 청소년의 태도·정서상태, 생활습관 형성, 대인관계 등 전인격체 형성에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 소년원 학생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유도하는 시설환경 조성을 위해 2009년 '소년원 학교 표준디자인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10. 9. 사업을 완료하였다.

이 사업은 2009. 2.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부문'에 응모·선정됨으로써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 이루어졌다.

이로써 소년원의 다양한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간과 시설환경이 소통하고 조화되는 한국형 소년원 학교 디자인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제주소년원 생활관과 청주

소년원 생활관·교육관 리모델링, 부산·청주·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가족솔루션 캠프장 조성 등에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였다.

### 나. 인성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강화

1) 인성교육

소년원학생의 비행성교정과 성행개선을 위하여 1969년 Moreno 심리극을 도입한 이래 꾸준히 감수성훈련, 미술치료 등의 인성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06년에는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대구·춘천소년원을 인성교육 전담소년원으로 개편하고, 2007년 이를 제주소년원으로 확대하여 3개 소년원에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에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인성교육 전담소년원 이외 소년원에서도 인성교육을 정규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추진한 언어문화 개선 운동인 「상호 존중과 배려 운동」이 생활 속 인성교육으로 정착, 소년보호기관 내 모든 구성원의 경어 및 존중어 사용을 통해 교육생은 바른 품성함양, 직원은 품위와 자존감 고양에 도움을 주고 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은 소년원생의 직업선호도 변화, 직업훈련 대상자 증가에 따라 2012년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직업능력훈련소년원을 6개(서울·부산·대구·광주·춘천·안양소년원)에서 7개(전주소년원 헤어디자인반 신설)로 확대하는 한편 9호처분자를 대상으로 광주소년원에 건설기계운전반 과정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2015. 3.부터는 기존 광주소년원 이외에 대구소년원, 청주소년원, 춘천소년원, 제주소년원의 9호 처분자를 대상으로 바리스타, 케이크디자인, 가발전문, 스포츠마사지, 초콜릿공예, 예술분장반 과정을 추가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직종개편을 통해 CNC선반, 전산응용건축제도 등 경쟁력이 취약한 직종을 과감히 폐지하고 사진영상, 제과제빵, 텔레마케팅 등 유망직종을 신설하는 한편, 전기용접을 자동화용접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모두 13개 직종에서 학생들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훈련직종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시설 및 장비의 최적화,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산업체 겸임교수제' 시행 등을 통해 현장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뿐만 아니라 교과교육 등 다른 교육과정의 소년원 학생들에게도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잡스쿨(Job School) 등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고 특히 2010. 10. 퇴원생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가 MOU를 체결,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소년원학교의 명칭 및 교육과정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전국 소년원학교의 명칭 및 교육과정

| 기 관(학교명) | 설립일 | 개교일 | 대상 | 교 육 과 정 |
|---|---|---|---|---|
| 서울소년원<br>(고봉중・고등학교) | '42. 4. 20. | '00. 8. 30. | 9호<br>10호 |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br>• 직업능력개발훈련(사진영상, 제과제빵, 매직 엔터테인먼트, 한식조리) |
| 부산소년원<br>(오륜정보산업학교) | '47. 1. 18. | '00. 8. 31. | 10호 | • 직업능력개발훈련<br>(자동차정비, 자동화용접, 제과제빵, 헤어디자인)<br>• 컴퓨터・검정고시 교육 |
| 대구소년원<br>(읍내정보통신학교) | '45. 11. 21. | '00. 8. 31. | 9호<br>10호 | • 전문 인성교육<br>•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br>바리스타, 케이크디자인(9호) |
| 광주소년원<br>(고룡정보산업학교) | '46. 11. 7. | '00. 9. 6. | 9호<br>10호 | • 직업능력개발훈련<br>(자동차정비, 자동화용접, 소형건설기계조정면허, 건축환경설비)<br>자동차외장관리(9호)<br>• 컴퓨터・검정고시 교육 |
| 전주소년원<br>(송천정보통신학교) | '67. 3. 25. | '00. 9. 6. | 9호<br>10호 | • 중학교 교과교육<br>•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측량) |
| 대전소년원<br>(대산학교) | '98. 7. 1. | '02. 3. 4. | 7호<br>8호<br>9호<br>10호 | • 의료 및 재활교육<br>(약물중독, 정신 및 발달장애, 신체질환 보호소년의 전문적인 치료・재활교육)<br>• 8호처분자 교육(男) |
| 청주소년원<br>(미평여자학교) | '09. 7. 1. | '10. 5. 4. | 8호<br>9호 | • 전문 인성교육<br>• 8호처분자 교육<br>예술분장(9호) |
| 안양소년원<br>(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 '46. 10. 1. | '00. 8. 30. | 9호<br>10호 | • 중학교 교과교육<br>• 직업능력개발훈련<br>(헤어디자인, 피부미용, 텔레마케팅, 제과제빵) |
| 춘천소년원<br>(신촌정보통신학교) | '63. 9. 9. | '00. 9. 4. | 9호<br>10호 | • 전문 인성교육<br>•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br>가발전문, 스포츠마사지(9호) |
| 제주소년원<br>(한길정보통신학교) | '87. 11. 9. | '00. 8. 30. | 8호<br>9호<br>10호 | • 전문 인성교육<br>초콜릿공예(9호)<br>• 집중처우과정<br>• 8호처분자 교육(제주지역 男) |

**다. 개별처우 시스템 도입・운영**

소년원생 개별처우 시스템은 입원부터 출원까지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전체 소년원생에게 실질적 교정교육의 혜택을 제공하며, 퇴원 후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및 재비행 방지

도모를 위해 도입되었다.

개별처우 운영개선 T/F와 실무자 워크숍을 통해 2015. 6. 최종 운영개선안을 마련, 당해 10월 'TEAMS 개별처우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16. 1. 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하였다.

소년원 입원 후 10일 이내 처우심사위원회에서 분류처우를 실시하여 교육과정과 생활반 및 학과반을 결정하고, 반 배치 이후 14일 이내 개인 및 환경적 특성을 분석하여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하며, 재원 중 계획에 따라 처우를 수행하고 주기적으로 목표 달성도를 점검하며, 출원 시 종합적인 교육성과 평가를 통해 사회정착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별처우 시스템의 도입으로 소년원 교육이 1990년~2000년 초반 학교화·특성화 체제로 혁신한 이후 다시 한 번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소년원생 재범방지와 성공적 사회복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개방적 인성교육

### 가. 다양한 봉사활동

소년원학생들이 건전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의타적이던 생활습성에서 벗어나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 이후 전국의 기관별로 「소년원학생 사회봉사단」을 발족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돕는 삶의 소중함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학생 사회봉사활동 현황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학생 사회봉사활동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 | | | | | | 정보화교육 봉사활동 | | |
|---|---|---|---|---|---|---|---|---|---|
| | 소 계 | PC등 수리 | 헌혈 | 복지시설 방문 | 농촌 일손 돕기 | 지역 행사 지원 등 | 소 계 | 지역 주민 | 장애인 |
| 2006 | 3,471 | 393 | - | 1,722 | 237 | 1,119 | 190 | - | 190 |
| 2007 | 2,679 | 483 | - | 1,145 | 64 | 987 | 143 | - | 143 |
| 2008 | 2,721 | 378 | - | 1,671 | 50 | 622 | 170 | 170 | - |
| 2009 | 2,344 | 13 | - | 915 | 53 | 1,363 | 16 | - | 16 |
| 2010 | 2,759 | 4 | - | 935 | 74 | 1,746 | 28 | - | 28 |
| 2011 | 2,246 | 7 | - | 800 | 71 | 1,368 | 8 | - | 8 |
| 2012 | 2,546 | - | - | 837 | 72 | 1,637 | 2 | - | 2 |

| 구분 / 연도 | 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 | | | | | | 정보화교육 봉사활동 | | |
|---|---|---|---|---|---|---|---|---|---|
| | 소 계 | PC등 수리 | 헌혈 | 복지 시설 방문 | 농촌 일손 돕기 | 지역 행사 지원 등 | 소 계 | 지역 주민 | 장애인 |
| 2013 | 1,220 | - | - | 511 | 16 | 693 | - | - | - |
| 2014 | 1,477 | - | - | 480 | 18 | 979 | - | - | - |
| 2015 | 1,035 | - | - | 356 | 56 | 623 | - | - | - |
| 계 | 22,498 | 1,278 | - | 9,372 | 711 | 11,137 | 557 | 170 | 387 |

**나. 체험학습 위주의 열린 교육**

특성화교육 전환과 함께 그간 기업체 현장방문 실습, 산업체 통근취업 등 개방적 교육을 실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교내에서 이루어지던 폐쇄적 인성교육을 탈피하여 문화·예술공연 관람, 청소년 야영훈련 등 다양한 체험학습 위주의 열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소년원학생 야영훈련

소년원에서는 학생들이 야영훈련과 자연학습 등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가꾸고 스카우트 이념을 내면화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품성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 스카우트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1986년에 개설된 소년원학생 전용야영장인 대전청소년수련원(17,491㎡)에는 극기훈련장, 체험학습장, 생활관 및 스카이점프, 원숭이 다리건너기 등 24종의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어 매년 200여명의 학생들이 일상적인 소년원 생활의 틀을 벗어나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스카우트과정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심성순화에 힘쓰고 있다.

2008년부터는 법무부 산하 솔로몬로파크(대전시 유성구 소재)를 활용하여 야영훈련에 참가한 소년원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접근과 시도를 통해 야영훈련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2) 문화예술교육 확대

소년원생들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는 사회로부터 격리됐다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성순화를 위해 음악회 및 연극 등의 문화공연 관람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사회저명인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문화예술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2010. 11. 사진작가 조세현이 사진촬영 특별강연을 하였고, 2011. 3.~5. 유인촌 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울소년원에서 소년원생의 연극을 지도하였으며, 2011. 9. 공연예술가 팝핀현준이 댄스교실을 개설하는 등 사회저명인사의 관심과 봉사로 소년원생의 재능계발 및 인성함양에 기여하였고, 김중만 사진작가, 강병인 캘리그라피 등 유명 문화계 인사를 '소년원

명예교사'로 위촉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도 2013년 9개에서 2014년 12개, 2015년 15개 기관으로 각각 확대하는 등 수혜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 4. 성공적 사회복귀 지원 강화

소년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년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년이 재비행을 하지 않고 사회에 정착하여 완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가정관을 신축·운영하여 손상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문신제거시술을 통하여 사회적응상 장애요소를 제거해 주며, 민·관 합동의 「사회정착지원협의회」를 구성, 실질적인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2012. 10.부터 소년원 담임교사가 중심이 되어 출원생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희망도우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무의탁생 등 불우한 환경의 학생에게는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랑의 리퀘스트 등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한편, 가정환경이 열악한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와의 1:1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소년비행이 성인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국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가. 가정관 운영

비행으로 인하여 단절된 가족관계를 개선해 주기 위하여 전국 소년원에 전용면적 16평 규모의 가정관을 신축하여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2~3일간 생활하며 가족 간에 단절된 대화를 다시 이어지게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서울소년원 등 전국 10개 소년원에서 13동 26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간(2006~2015) 가족합숙제 1,624명, 1일 생활제 5,698명, 가정관 면회제 22,327명 등 총 29,649명이 가정관을 이용하였다.

### 나. 문신제거시술

전국의 소년원생 가운데 상당수의 학생이 문신을 지니고 있으며, 한때의 호기심으로 문신을 새긴 이들 대부분은 문신제거시술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2000. 4.부터 서울소년원에 「레이저시술실」을 설치한 이후 전국 10개 소년원 및 1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자체 의료진에 의한 문신제거시술을 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나 시술비용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 산업체 근로자 등으로 무료문신제거시술을 확대·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2006~2015) 일반인 12,486명을 포함하여 총 32,012명을 시술하였다.

### 다. 취업 지원

전국 소년원에 취업 및 사회정착지원계와 민·관 합동의 「사회정착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출원 후 취업 및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취업추천, 구인업체 발굴·방문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출원생의 안정된 사회정착지원을 위하여 취업후견인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취업후견인 47명, 취업알선 234명, 산업체 현장실습 661명, 구인업체방문 176회의 실적을 거두었다.

**라.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YES센터 운영**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 재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세계적·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불우한 환경에 있는 소년원 출원생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하여 2001. 5. 기숙사형태의 자립생활시설인 의왕청소년자립생활관 신축·개관을 시작으로, 2005. 9.까지 부산·광주·대구·대전· 안양(여자전용)등 5개 지역에 추가로 건립하였다.

특히, 2009년, 2010년에는 복권기금 16억 1,500만원과 21억 2,0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아 전주·춘천지역에 기존 기숙사형 자립지원시설의 틀을 벗어나 대리부모가 24시간 상주하며 입주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그룹홈(Group Home)형태의 자립생활관을 신축하였으며, 2011년, 2012년에는 복권기금 7억 1,400만 원과 6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 기존 자립생활관 중 시설보수가 필요한 의왕·부산·광주·대구의 자립생활관 시설을 리모델링하였고, 2014년도에는 복권기금 6억 4,200만 원을 지원받아 노후화된 안양여자자립생활관을 증·개축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다.

청소년자립생활관에는 2001년~2015년 총 2,456명이 신규 입주하였고, 입주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취업알선, 학업연계, 심리치료, 가족찾기, 결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4. 12.에는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는 기숙형 직업훈련학교를 복권기금 57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경기도 화성에 대지면적 9,989㎡(약 3천평) 건축연면적 3,289㎡(약 1천평) 규모의 YES센터를 신축하였다.

YES센터는 자동차, 용접, IT, 골프매니지먼트과 등 4개과, 학생 60명, 직원 20명, 1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입주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100% 취업을 목표로 삼고 전문 직업기술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 8개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YES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재)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마. 사랑의 리퀘스트**

가정환경이 열악한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재단과 협력하여 매월 1~3명의 소년원 학생을 '사랑의 리퀘스트' 후원금운영위원회에 추천, 이들이 출원 후에도 지속적인 학업수행과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01년~2015년까지 학생 256명에게 총 12억 165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였다.

**바. 멘토링**

소년원 학생의 60% 이상이 결손가정인

현실을 감안, 열악한 가정환경에 따른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 사회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년원 학생-자원봉사자 1:1 멘토링' 시스템을 2011년 새로이 구축하여, 2011년~ 2015년 총 8,859명의 학생이 자원봉사자와 멘토링 결연을 맺고 상담, 취업 및 진로지도 등 다양한 보호·지원을 받았다.

**사. 희망도우미 프로젝트**

소년원 출원생의 재범 감소 및 안정적인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 소년원 교사가 출원생을 관리·지원하는 희망도우미 프로젝트는 2012. 11.부터 2013. 4.까지 6개월간 춘천·안양소년원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전국 소년보호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통신지도 19,974회, 방문지도 629회를 실시하는 등 전 직원들이 출원생들에 대해 사회정착지원을 실시한 결과 출원생 사회정착률이 2014년도 4분기 80.7%에서 2015년 4분기 81.99%로 약 1.29% 상승하는 동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5. 주요 교육성과

소년원 특성화교육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일반학교 학생이 참가한 '전국 중·고등부 영어 말하기 대회,' '컴퓨터 경시대회' 및 '전국 청소년 영상물 공모전'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최근 10년간(2006~2015년) 총 291회, 1,320명의 소년원 학생이 입상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1,333명의 소년원생이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다.

**가. 외부 경시대회 입상**

1) 영어·컴퓨터 경시대회

실용외국어·컴퓨터 교육 등 특성화교육 실시와 더불어 일반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에서 참가하여 2006년이후 외국어와 컴퓨터분야에 86명이 입상하는 등 가시적인 교육성과를 거두었다.

2) 기능경기대회

1984년부터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 훈련 직종별로 선수를 참가시킨 이래 현재까지 일반인들과의 경쟁을 통하여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직업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꾸준히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172명(금 57명, 은 48명, 동 37명, 장려 30명)의 학생이 소년원학교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 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원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산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교육과정의 편성으로 학생 스스로가 의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고, 무엇보다 지도교사들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진학**

1) 자격 취득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교과·정보화교육 등을 통하여 21,162명이 컴퓨터, 외국어, 예·체능 등의 분야에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직업훈련 분야에서도 자동차정비, 자동화용접, 헤어디자인, 제과제빵, 피부미용 등의 직종에서 7,098명이 전문 기능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총 28,260명이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표 11〉은 최근 10년간 소년원 학생 자격취득 현황이다.

〈표 11〉 최근 10년간 자격취득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2,405 | 2,377 | 2,950 | 2,685 | 2,644 | 2,980 | 3,125 | 2,687 | 3,301 | 3,106 |
| 외 국 어 | 182 | 172 | 222 | 74 | 45 | 41 | 48 | - | - | - |
| 컴 퓨 터 | 1,328 | 1,297 | 1,478 | 1,389 | 1,387 | 1,642 | 1,581 | 1,292 | 1,590 | 1,288 |
| 예·체능, 기타 | 399 | 407 | 650 | 638 | 578 | 627 | 596 | 621 | 764 | 826 |
| 직업훈련 | 496 | 501 | 600 | 584 | 634 | 670 | 900 | 774 | 947 | 992 |

2) 취업·진학

소년원 학생들이 출원 후 완전한 사회 복귀를 실현하고 더 이상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소년원에 취업 및 사후정착지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민·관 합동의 총체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2015년에 234명이 취업하도록 하는 등 안정된 사회정착을 지원하였다.

한편, 2015학년도에는 검정고시 합격 600명(중입 1명, 고입 190명, 고졸 409명), 상급학교 진학 154명(고등학교 63명, 대학교 91명), 중·고교 편입학 129명(중학교 43명, 고등학교 86명), 졸업장 취득 65명(중학교 57명, 고등학교 8명) 등 총 948명의 소년원 학생이 값진 향학의 꿈을 이루었다. 〈표 12〉, 〈표 13〉은 각각 최근 10년간 취업현황 및 상급학교 진학현황이다.

〈표 12〉 최근 10년간 취업 현황

(단위 : 명)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취업인원 | 349 | 277 | 339 | 335 | 328 | 261 | 313 | 273 | 327 | 234 |

〈표 13〉 최근 10년간 상급학교 진학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159 | 132 | 113 | 166 | 108 | 111 | 137 | 115 | 134 | 154 |
| 대 학 교 | 80 | 63 | 49 | 114 | 38 | 22 | 45 | 45 | 71 | 91 |
| 고등학교 | 79 | 69 | 64 | 52 | 70 | 89 | 92 | 70 | 63 | 63 |

**다. 소년원 학생 창업기업**

2011. 12. 현재 소년원 학생 창업기업은 NCwiz, 오션베이커리가 있으며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이들 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2003. 3. 창업한 'NCwiz'는 출판・인쇄업을 사업영역으로 하여, 카탈로그・광고전단지・홍보책자・현수막 제작 등 전자출판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제과제빵 직업훈련과정을 지원하고, 실무활용도를 높이고자 2008. 3. 오션베이커리를 추가로 창업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 6.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소년분류심사원은「소년법」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그 자질을 분류심사하여 법원소년부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에 처우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에 복귀하는 소년에 대하여는 보호자 등에게 사후지도에 필요한 지도방법을 권고하고 가정, 학교, 사회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분류심사 결과를 지도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체제를 혁신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비행을 예방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혁신의 주요 내용은 보호소년 상담조사 도입 및 출장상담조사의 시행, 분류심사의 과학화・전문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일반학생・기소유예대상자 대안교육 및 법교육 실시 등이며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비행원인진단 및 비행예방기능을 강화하였다.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개를 제외하고는 6개 소년원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2007. 7.에는 안산・부산・광주・대전・창원・청주 등 전국 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하여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및 기소유예대상자 등에 대한 대안교육, 비행소년에 대한 상담조사,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법교육 등 위기・비행초기단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교육 및 비행원인진단을 내실 있게 시행하고 있다.

2012. 6.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남부, 서울북부, 인천, 대구 등 4개 센터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2013년에는 순천, 전주, 춘천 등 3개 센터를, 2014년에는 부산동부, 울산, 수원 등 3개 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2015. 3. 현재 총 16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비행원인진단과 비행예방교육을 동시에 실시하는 상담조사 교육 뿐 아니라 대안교육, 청소년심리검사, 보호자교육, 법교육, 1일체험, 가족캠프, 사제동행캠프, 교원직무연수 등 학생은 물론, 보호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법교육 및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각급 기관과 MOU 체결 등 업무연계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비행예방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소년보호기관의 비행예방교육, 비행원인진단 실적은 아래 〈표 14〉, 〈표 15〉와 같다.

### 가. 분류심사의 과학화·전문화

2000년부터 자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특수인성검사'를 실무에 도입, 심리검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2005년도에는 이 검사를 재표준화하여 2006. 6. 이후 본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용성을 제고하였고, 2003년에는 서울소년원 연구실에서 비행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지능·적성검사'를 개발하여 위탁소년 심리검사, 청소년 적성검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과학적인 분류심사를 실시하였다.

〈표 14〉 최근 10년간 비행예방교육 실적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대안교육 | 계 | 169,089 | 1,710 | 3,974 | 6,410 | 7,348 | 12,862 | 23,382 | 30,122 | 23,013 | 23,630 | 36,638 |
| | 일반 | 143,808 | 1,339 | 3,271 | 4,683 | 5,629 | 11,396 | 21,280 | 26,814 | 19,739 | 18,359 | 31,298 |
| | 기소·선도유예 | 21,247 | 371 | 703 | 1,516 | 1,425 | 1,124 | 1,191 | 2,034 | 2,767 | 4,993 | 5,123 |
| | 보호처분 | 4,034 | - | - | 211 | 294 | 342 | 911 | 1,274 | 507 | 278 | 217 |
| 청소년심리상담(적성검사) | | 73,525 | 3,976 | 4,513 | 5,481 | 5,256 | 6,438 | 7,973 | 9,445 | 9,377 | 10,020 | 11,046 |
| 보호자교육 | 계 | 57,603 | - | - | 3,511 | 5,465 | 6,626 | 7,498 | 8,101 | 8,246 | 9,192 | 8,964 |
| | 자원 | 52,079 | - | - | 3,452 | 5,010 | 6,333 | 7,015 | 7,574 | 7,208 | 7,955 | 7,532 |
| | 의무 | 5,524 | - | - | 59 | 455 | 293 | 483 | 527 | 1,038 | 1,237 | 1,432 |
| 법교육 | | 658,295 | - | - | 4,685 | 37,611 | 50,651 | 44,089 | 41,674 | 114,298 | 153,956 | 211,331 |

※ 보호자교육 : 2008년 실시 (의무참가자 2008. 6. 22.부터)

※ 대안교육 : 2001년 시범실시 (2002년도 통계에 포함), 법원명령에 의한 보호처분은 소년법 개정에 따라 운영(2008. 6. 22. 시행)

〈표 15〉 최근 10년간 비행원인진단 실적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분류심사 | 계 | 54,173 | 3,839 | 4,640 | 5,198 | 5,627 | 5,723 | 6,007 | 5,435 | 6,357 | 5,543 | 5,804 |
| | 일반 | 37,617 | 2,539 | 3,427 | 3,796 | 3,729 | 4,380 | 4,634 | 4,008 | 4,160 | 3,467 | 3,477 |
| | 특수 | 16,556 | 1,300 | 1,213 | 1,402 | 1,898 | 1,343 | 1,373 | 1,427 | 2,197 | 2,076 | 2,327 |
| 상담조사 | 계 | 47,137 | 3,135 | 4,437 | 5,952 | 5,106 | 5,301 | 5,296 | 5,148 | 4,382 | 4,261 | 4,119 |
| | 일반 | 37,616 | 2,158 | 3,754 | 4,650 | 4,057 | 3,843 | 3,233 | 3,988 | 4,133 | 3,971 | 3,829 |
| | 출장 | 9,521 | 977 | 683 | 1,302 | 1,049 | 1,458 | 2,063 | 1,160 | 249 | 290 | 290 |
| 검사결정전 조사 | | 1,793 | 166 | 223 | 579 | 295 | 397 | 126 | 7 | - | 0 | 0 |

한편 2007. 7. 분류심사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류심사관 보임기준을 직급에서 전문성으로 전환하는 전문분류심사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0. 8.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한 직원을 조사관으로 인정하는 '조사관 인증제'를 도입·시행하는 등 분류심사 등 비행원인진단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소년보호기관의 분류심사관 보임 자격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분류심사 또는 상담을 목적으로 특별채용된 보호직 공무원 둘째, 대학졸업 이상 학력자로 50시간(또는 3과정)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보호직 공무원 셋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범죄학 등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3년 이상 근무한 보호직 공무원 넷째,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보호직 공무원 등이다.

소년보호기관에서는 분류심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선정, 연 2회 능력평가 및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류심사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 2회 통합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있다.

### 나. 소년심판절차 개선

청소년 비행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송치 대상자 위주로 시행해 오던 분류심사제도를 불구속 송치자를 포함한 모든 소년보호사건 대상자로 확대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상담조사제'와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를 대법원과 최종 정책협의를 거쳐 2003. 7.부터 시행하고 있다.

1) 상담조사 제도

2003. 7. 새롭게 도입된 '상담조사제'는 불구속 송치로 보호자 등에게 위탁되어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법원 소년부 판사 또는 가정법원 판사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주간에만 3~5일 출석하여 상담과 조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담조사는 1개 소년분류심사원 및 2개 센터 대행소년원(대전·제주), 대전·안산을 제외한 14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총 44,908명이 상담조사를 받았다.

2) 분류심사관 심리 참여 제도

이 제도는 소년사건 심리과정에서 각 소년부판사가 분류심사결과통지서에 의문이 있거나 그 보고서만으로는 소년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년의 성행과 비행환경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 분류심사관을 법정에 참여시켜 직접 의견을 듣는 제도로서, 소년에 대한 보다 적정한 처분을 도모하고 분류심사원의 국가 후견자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소년법 이념을 구현하는 매우 의미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 다. 청소년비행예방 기능강화

1)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 대안교육 내실화

2002년부터 지역사회 일반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중·고등학생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일반 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법교육을 전담하는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제외한 5개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대구·전주·대전·춘천·제주 등 5개의 대행소년원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2. 6.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대구에 4개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2013. 11.에는 순천·전주·춘천 등 3개 센터를 추가로 설치, 2014. 12.에는 부산동부, 울산, 수원 등 3개 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전국 16개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장이 의뢰한 대안교육은 비행유형별 비행예방교육,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비롯하여 지능, 적성, 성격 등 심리검사 등 1~5일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안교육 수료증을 수여하고 교육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학생생활지도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에게 적성검사 결과 등 자녀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학교와 협조하여 교육수료 학생에 대한 사후지도도 실시하여 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안교육 실적은 113,298명에 달한다.

2) 기소유예, 선도유예자 대상자 대안교육 실시

한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은 각 해당 지방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 선도유예자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비행성 조기개선과 아울러 재비행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검찰청에서 의뢰한 기소유예 등의 대상자에

대한 대안교육은 3~5일 과정의 통학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비행유형별 비행예방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장애체험, 심리치료 등 다양한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다양화 방안의 일환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캠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등이 서울북부, 부산,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에서 실시되는 등 교육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검찰청에서 의뢰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 실시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운영실적은 16,759명에 이른다.

3) 청소년심리상담 운영

소년보호기관에서는 지역사회 일반학생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적성검사 및 각종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초기단계의 비행청소년 및 대안교육 대상자에 대해 심리상담을 실시하여 비행예방 및 원만한 학교적응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청소년심리상담 운영실적은 66,739명에 이른다.

4) 보호자교육 실시

비행청소년 지도·교육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법원이나 학교장으로부터 보호자 교육명령을 받은 보호자 또는 자원참가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 및 가정의 보호력 증진,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형성을 위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소년보호기관에서 실시한 보호자교육 운영실적은 총 48,639명에 이른다.

또한 2010년부터는 부산·청주·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소통·나눔·기쁨(소나기)'을 주제로 사춘기 부적응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가하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 과정의 '가족솔루션캠프'를 운영하였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솔루션 캠프의 성과가 참석들은 물론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학교, 법원, 검찰청 등에서 '소나기 캠프 참여조건부 보호자교육 또는 대안교육' 등을 의뢰하여 가족솔루션 캠프 운영기관이 3개에서 전국센터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2015년 한해 동안 1,172명의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이 참가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289명이 참가하였다.

5) 법교육 운영

법교육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솔로몬로파크)에서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9개 비행예방센터는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개설·운영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직원을 중심으로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09. 12. 28. 부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고, 2015. 12. 현재 전국 1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외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7개 민간기관이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됨으로써

찾아가는 법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을 확대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일반청소년은 물론 위기·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 제 5 절 감찰·감사업무

## 제 1 항 감찰업무

### 1. 개 요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반듯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상시적인 사전 예방적 감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비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부패와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하여 비위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및 각 고등검찰청 감찰부서에 대한 정례 감사를 통해 효과적인 내부 감찰을 수행하도록 감독하는 한편,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찰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감찰업무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였다.

### 2. 추진상황

#### 가. 비위 발생 예방에 중점을 둔 예방적 감찰 활동 적극 전개

소속 기관별 감찰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직급, 지역, 직역에 따른 감찰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단순히 비위나 과오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 개선을 통해 비위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감찰 활동을 추진하고, 법무부 소속 기관별 업무특성과 동향을 토대로 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감찰을 실시함으로써 비위 예방에 주력하였다. 감찰과 감사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감찰업무매뉴얼 제작, 감찰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감찰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나. 검찰의 감찰업무 지휘·감독

대검찰청 감찰부 및 전국 5개 고등검찰청의 감찰부서 업무에 대한 정기 사무감사를 6회 실시하였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감찰 착수·진행·결과 등 감찰과정 전반에 대해 보고받음으로써 법무부 감찰관을 통한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체제를 확립하였다.

#### 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개최

감찰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위원 10명 중 9명을 외부인사로 위촉하였을 뿐만 아니라 9명의 외부인사 중 4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 중립성을 강화하였고, 2015년에는 감찰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감찰결과에 대한 검증 및 감찰사건 처리방향 등을 심의하고, 징계권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상시적인 사전 예방적 감찰활동을 통해 비위의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다각적으로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비위공무원을 직접 조사하는 등 진상을 규명하여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에 기여하였다.

## 제 2 항 감사업무

### 1. 개 요

2015년에는 「국민행복 법무행정」을 자체 감사의 목표로 정하고 국민생활 불편사항 발굴·개선, 주요 법무시책 성과달성 지원,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투명한 법무행정 구현, 취약시기·취약분야 복무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하였다.

감사 주기 및 대상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61개 소속기관과 11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설·추석 명절, 연말연시, 을지연습기간 및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등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에는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복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재외공관 사증 발급 업무 및 법무시설 공사현장에 대한 감사 등 특정감사도 4회 실시하였다.

또한, 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였고, 일선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절차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한편, 국정과제,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회계·인사업무, 기관별 고유 업무 등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는 것과 아울러 법무부 청렴도 평가 제고를 위하여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 간부 권역별 청렴토론회, 기관 맞춤형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 2. 주요 감사실적

「국민행복 법무행정」이라는 감사 기본목표에 따라 정부 주요시책 성과확보를 위한 지원 감사, 국민 불편사항 적극 발굴·개선 감사, 부패 취약시기 복무감사 등을 전개한 결과, 371건 관련자 401명에 대하여 징계·경고 등 신분·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64건 2억여 원에 대하여 회수, 환급 등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제1차 교정기관 종합감사 시에는 민원업무수당 지급의 부적정을 지적하여,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칙」이 개정·시행되게 하였다.

한편, 감사 및 청렴 업무 발전에 기여한 3개 기관과 직원 5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는 등 사기진작에도 힘썼다.

2015년 주요 감사업무 실적 및 감사결과 조치내역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 2015년 감사 실적

| 구 분 | 감 사 횟 수 | 실시기관수 |
|---|---|---|
| 종 합 감 사 | 12 | 72 |
| 특 정 감 사 | 4 | 5 |
| 복 무 감 사 | 14 | -<br>(전 소속기관) |

〈표 2〉 2015년 감사결과 조치내역

(단위 : 건, 명, 천원)

| 조치결과 / 종 별 | 신분·행정상 조치건(인원) | | | | 재정상 조치 | | |
|---|---|---|---|---|---|---|---|
| | 계 | 징계 | 경고 | 주의 등 | 계 | 회수 | 감액 등 |
| 합 계 | 371(401) | 3(3) | 57(62) | 311(336) | 64(205,466) | 48(98,075) | 16(107,391) |
| 종합감사 | 309(333) | 3(3) | 47(51) | 259(279) | 58(116,819) | 48(98,075) | 10(18,744) |
| 특정감사 | 10(6) | - | 2(1) | 8(5) | 6(88,647) | - | 6(88,647) |
| 복무감사 | 52(62) | - | 8(10) | 44(52) | - | - | - |

# 제 6 절 인 권 업 무

## 제 1 항 인권업무의 기본방향

법무부 인권국은 2015년 한 해 동안 인권을 최상의 가치로 두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위해 각 부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 국제인권 활동 강화 등 국가인권정책의 총괄·선도와 법률구조, 법률홈닥터 운영,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부내 인권침해 조사·예방 및 인권교육 강화 등을 통한 국민의 인권 강화,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 총괄·조정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 1. 국가인권정책의 총괄·선도

법무부는 정부 내 인권옹호 주무부처이며, 국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은 법질서 유지와 함께 법무부의 주요 임무이다.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협의회와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전년도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차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심의하였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회신문(안)에 대한 검토 등 인권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여 정부 전체의 인권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제인권규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총괄하여 11개 부처와 함께 우리 인권상황에 대한 UN 심의를 받았고, 특별절차의 진정서한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밝히는 등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대응 및 참여를 강화하였다.

또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인권포럼 및 아시아인권의원연맹과 공동으로 제3차 북한인권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UN 및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UN 인권최고대표와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최초로 UN 인권이사회의 공식절차로 진행된 북한인권 패널토론회에 참석하였으며,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한 활동을 지원하였다.

### 2.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선진 인권국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및 인권보호가 중요한 과제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와 범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법률구조의 대상과 영역을 넓히고,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법률구조공단의 자율성 및 조직역량강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법률홈닥터를 20명 추가 배치하여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 및 10개 사회복지협의회에 파견하여 서민들의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추었다.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지원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들이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수립, 집행하였다.

### 3.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법무부는 정부 내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 등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06. 5.부터 운영해 온 인권침해신고센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인 교도소 등의 인권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권침해예방을 위해 법무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현장교육을 확대하는 등 강화시켜 왔다. 또한, 2007년부터 검찰 인권보호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에 대하여도 인권보호상황 평가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종합적 인권옹호 업무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4.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 총괄·조정

여성·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으로 법무행정 및 관련 법령상의 여성·아동인권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 총괄부서인 여성아동인권과는 여성·아동 보호 및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과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여성·아동 관련 법무부 소관 법령·제도 개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를 시행하고, 2014. 1. 28.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여성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및 여성정책 협의회 개최, 여성·아동제도 관련 연구용역, 부내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소속기관에 대한 성희롱방지 이행상황 실태 점검,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다양성관리)교육 실시, 각 검찰청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등 국내·외 여성·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아동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제 2 항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법무부 인권국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기초연금법' 제정,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및 '주거급여법' 제정 등 2014년도 이행상황을

국민점검단의 점검을 거쳐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여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에 대해 해당 지자체 방문 등을 통하여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1회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행 여부 등을 심의하고 5건을 종결 처리하였다.

법무부는 국제인권규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조치로서 UN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이행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관계부처간 협의, 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협의 등 정부 주도의 인권보고서 작성 및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강화하였다. 특히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2015년 10월 22일-23일 양일간 개최되어, 법무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11개 부처 4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총괄하여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우리 정부의 인권보호 정책 개선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UN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및 특별절차에서 국내 인권정책에 관하여 요청한 사안과 진정서한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제출하였다. 또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 국제적 인권보고서에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나아가 제3차 북한인권 심포지엄 개최, UN 인권최고대표 면담, 제30차 UN 인권이사회 북한인권패널토론회 참석 및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한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노력하였다.

2015년도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2014년도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에서는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민간위원 25명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회의('15. 10.)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인권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민점검단의 의견이 반영된 2014년도 이행상황은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와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확정되었고, 확정된 이행상황을 책자로 발간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관련기관 등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였다.

2014년도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법의 제정('14. 1.),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14.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 지원('14. 3.)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 보고서 심의('14. 9.), 사회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작성('14. 2.) 등으로 국제인권의 국내적용 등 영역에서 균형있고 내실있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받았다.

## 2. 차별방지 대책 추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장애인차별 권고결정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행여부를 확인하였고, 현장조사・관계인 면담 등을 통해 권고이행을 유도하였다. 권고가 이행되었거나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총 5건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하였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통합적 인권보호 체계구축'의 세부과제로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되었다. '07년 정부제출 법안을 토대로 수정법안 검토를 추진하였고('14. 1.~2.), 외국 사례 수집 및 국내 차별금지 입법례 분석과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독일 일반평등대우법 판례 연구, '15. 1., '15. 11.),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그룹과의 간담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다('15. 10.~12.)

차별금지법 제정시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각계 의견, 사회적 여건, 우리 법체계와의 조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연구・검토를 실시하였다.

## 3. 법령,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존엄사법 제정안',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출정 수용자 및 신입 수용자 신체검사 건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회신문(안)에 대한 검토', '수용자 보호장비 사용 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회신문(안)에 대한 검토' 등 인권 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4. 국제 인권 활동 강화

2015년 10월에는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심의가 9년 만에 이루어졌다.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는 사전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고 정부대표단 구성과 현지 심의를 총괄하였으며, 우리 정부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인권조약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권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제8차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하였다.

그 외 UN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된 개인진정에 대한 답변, UN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의 진정서한 및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UN 인권이사회와 ASEM의 '인신매매와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설명을 제공하였다. 또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 국제 인권보고서에도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 5.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외 환경 조성

법무부와 국회인권포럼 및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은 작년에 이어 11. 27. 제3차 북한인권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국회의원,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장,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대학생 등이 참석하여 반인도범죄 책임규명 방안과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기조연설을 하였고, 사인 폴슨(Signe Poulsen)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소장과 주한 미대사관 담당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UN 및 국제사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북한인권 정책 추진의 방향들이 제시되었다.

6. 24. 법무부장관 대행은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 개소식 참석 차 방한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UN 인권최고대표와 면담하여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9. 21.-9. 22. 제30차 UN 인권이사회 북한인권패널토론회와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 관련 보고에 참석하였는데, 북한인권패널토론회는 최초로 부대행사가 아닌 UN 인권이사회의 공식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국제 납치 및 강제실종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11. 25.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한 시 차관 면담을 통해 반인도범죄 책임 규명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 밖에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각국의 전문가와 정보를 공유하였고,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

### 6. 법의 날 기념식 개최

2015. 4. 24.(금) 1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관련 기관장과 법조인들,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약 3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주제영상 상영에 이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기념사,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기념사, 양승태 대법원장의 축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축사, 법의 날 정부포상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전수, 국민공감 법치를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 '화합'과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국내 최초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레인보우 합창단'의 합창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 5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가혁신의 초석을 놓는 법질서 확립, 모두가 행복한 국민공감 법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법치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법의 날 기념식 후 한국헌법학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헌법가치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도 열었다.

## 제 3 항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 1. 개 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제2차 기

본계획(2012~2016)에 따른 2015년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여 2015. 4. 16.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상 권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여 2015. 3. 10.부터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액수를 상향 지급하게 되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전문적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 및 재활교육, 임시거처 제공을 위하여 치료와 쉼터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일센터를 서울(2010. 7.), 부산(2012. 9.), 인천(2013. 11.), 광주(2013. 11.), 대구(2014. 12.), 대전(2014. 12.)에 이어 춘천(2015. 12.) 및 전주(2015. 12.)에 추가 신설하였고, 2014. 3. 및 2014. 6. 각 대전솔로몬로파크내 및 광주지방검찰청내에 "희망카페 3호점"과 "희망카페 4호점"을 설립하여 총 8곳의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그동안의 개별적·분산적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종합적·통합적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3년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네트워크를 2014년 총 44개 지역으로 확대하였고, 2015년에는 전국 58개 지역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법률구조와 관련해서는 법률구조의 영역을 민사·가사사건뿐 아니라 형사, 헌법소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사건 및 국가소송사건 전부로 확대하였고, 구조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한부모가족,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소상공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학교폭력 피해자, 보훈보상대상자, 저소득 예술인, 재도전 기업인, 국내거주 외국인, 청년미취업자·대학생 등에까지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또한 '찾아가는 법률복지사업'인 법률홈닥터 사업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타 기관과의 업무 연계를 통해 법률소외 계층을 발굴하여 법률복지 서비스 지원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 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활동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단체로서 2003. 9. 김천구미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009. 4.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 단위별로 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활동 중이며, 2008. 10.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설립하여 전국적인 민간지원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또한, 2010. 12.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설립되는 등 국가의 지원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민간단체에 의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들 센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센터별 활동실적에 따라 총 19억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각 센터에서는 2015년에

피해자 상담 42,108건, 경제·의료 지원 11,773건, 신변보호 512건, 기타 6,375건 등 총 60,768건의 각종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 나.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네트워크 구축

그동안 지역별, 기관별, 개별적으로 분산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및 단체를 망라하는 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하여 범죄피해자가 원스톱 상담만으로 원하는 지원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2013년 서울북부·인천·성남·원주·군산 5개 지역에서 각 지역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였고,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 지역으로 확대 구축을 하여 2015년에는 58개 전 지역에 통합지원네트워크를 구축 완료하였다.

법무부는 통합지원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범죄피해자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활성화

법무부는 범죄피해로 인한 생계곤란 해소 및 가정 해체를 방지하고 신속한 생활 복귀를 위한 충분한 경제·의료지원을 강화하고자 범죄피해구조금을 최대 6,800만원에서 9,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15. 3.시행)하였고,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대상 범죄 확대 및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15. 8.시행) 또한 피해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피의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 의무 고지와 같이 국가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의 권리 및 피해지원 제도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15. 4. 16. 시행)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총 382건에 대하여 97억 7,072만원이 지급결정되었는 바,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

| 구 분 | | 계 | 장해구조 | 중상해구조 | 유족구조 |
|---|---|---|---|---|---|
| 결정 | 건 수 | 382 | 31 | 111 | 240 |
| | 금 액 | 97억 7,072만원 | 5억 1,049만원 | 9억 7,858만원 | 82억 8,165만원 |

### 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영

우리 헌법은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범죄피해자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2010. 5. 연간 1조 5천억원이 넘는 벌금의 4%를 주요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제정

(2011. 1. 1. 시행)하였다. 이후 대통령령 제24253호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집행된 벌금의 5%를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2013. 1. 1. 시행),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개정(2014. 10. 15. 의결, 2015. 1. 1. 시행)하여 벌금의 6%를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기금재원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5년도 기금 편성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2015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사업액 | 총액 |
|---|---|---|---|
|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 12,130 | 25,066 |
| | 형사조정활성화 | 3,291 | |
| | 범죄피해자구조금 | 9,029 | |
| |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 616 | |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 506 | 37,875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33,771 | |
|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3,598 | |
|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1,528 | 19,542 |
|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15,006 | |
|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 3,008 | |
| 총 계 | 3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 | | 82,483 |

※ 여유자금 및 기금관리비 제외

**마. 스마일센터(심리치료기관)의 설치**

그동안의 범죄피해자 지원은 경제적 지원에 치우쳐 있어서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의 완전한 회복에는 한계가 있었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스트레스 장애 환자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심하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무부는 2010. 7. 강력범죄피해자의 전문 심리치료 시설인 서울 스마일센터를 설립하여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심리치료와 더불어 긴급한 임시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2. 9.에는 부산지역, 2013. 11.에는 인천, 광주지역, 2014. 12.에는 대구·대전지역, 2015. 12.에는 춘천·전주지역에 스마일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지방 거주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하였고, 연차적으로 주요 광역도시권에 확대하여 전국적인 피해자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일센터에서는 2015. 12.말까지 2,152명의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24,768건의 심리치료와 1,802건의 임시주거 제공, 1,129건의 법률

지원서비스 및 1,232건의 사회지원을 제공하였다.

**바. 제8회 범죄피해자인권대회 개최**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고통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무관심과 보호·지원의 소홀로 말미암아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신변위협 등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2015. 12. 10. 제8회 한국범죄피해자인권대회를 개최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 심리치유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방영함으로써 범죄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관계자 등에게 범죄피해자 업무 유공 표창을 수여하여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사. 범죄피해자지원에 관한 연구·조사 활동 전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2010년 5월 제정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규모 및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체계성 강화를 통한 기금운용 성과 증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체계적 운용을 통한 성과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인 사업의 목표 설정과 사업목표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관리를 위한 타당성 있는 각 사업별 성과지표의 마련과 이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2015년도 연구용역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 다양화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가. 소외계층에 대한 능동적 법률구조 지향**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진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범위를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1~6급 장애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미혼부·모가족, 기타 한부모가족, 조부모가족, 범죄피해자, 소액임차인,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사회연대은행 사단법인 함께 만드는 세상의 지원수혜자,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임금 및 퇴직금 체불피해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한하여 적용하되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대상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특수임무유공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 기초연금수급자,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학교폭력 피해자, 6·25전쟁 전시납북자가족, 저소득

예술인, 재도전 기업인, 국내거주 외국인, 청년미취업자·대학생 등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법률서비스 문턱이 높아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무변촌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시·군법원 지역 중 2009. 7. 1. 동해, 삼척, 태백 등 15개 지역에, 2010. 7. 1. 양구, 인제, 화천 등 15개 지역에, 2011. 7. 1. 평창, 부안, 상주 등 15개 지역에, 2012. 7. 1. 나주, 예산, 함안 등 9개 지역에, 2013년 남양주, 용인, 서귀포 등 9개 지역에, 2014년 오산 등 4개 지역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설치하였으며, 2015년 강화 등 5개 지역에 지소를 추가 설치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된 가족관계미등록자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무료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인권을 능동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2008년 373명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기획소송 실시 이후 2015년까지 1,566명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 창설 기획소송을 실시하여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족관계미등록자들의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 나. 개인회생·파산사건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강화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를 활성화하여 금융소외자의 부채형 빈곤추락 예방 및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하여 2005년 대한법률구조공단 7개 지부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전문화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서울중앙지부에서는 2006. 1. 9. 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개인회생·파산 공개강의를 실시하여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법률상담과 법률구조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개인회생·파산절차에 관심있는 사람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6. 5. 3. 인터넷 개인회생·파산 지원 센터를 개설하여 법률구조 대상자가 개인회생·파산신청서 자동작성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고, 누구나 개인회생·파산절차에 관한 다양한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 개인회생·파산사건의 법률구조 건수는 3,341건, 법률상담 건수는 49,180건이고, 2007년 개인회생·파산사건의 법률구조 건수는 3,848건, 법률상담 건수는 52,723건이며, 2008년 개인회생·파산사건의 법률구조 건수는 4,877건, 법률상담 건수는 58,824건으로 개인회생·파산사건에 대한 법률구조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9. 1. 21.에는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동부,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등과 연계하여 법률구조, 신용회복, 취업지원, 재무설계 등 맞춤형 One-Stop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0. 6. 대구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2011. 5. 부산, 2012. 8. 광주, 2013. 7. 대전, 2014. 5. 수원 및 울산에 각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센터 개소 이후 개인회생·파산사건의 법률구조 건수는 65,428건, 법률상담 건수는 576,852건으로 금융소외자들의 경제회생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 다. 체불임금피해 근로자 무료법률구조 활성화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05. 7.부터 노동부와의 협약에 따라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작하였다. 2006년부터 그 구조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7,023건에 비하여 426%가 증가된 36,971건에 이르는 등 급격한 업무증가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업무전산화를 도모하는 등 경영혁신을 통해 꾸준히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에는 61,869건, 2010년에는 59,703건, 2011년에는 59,002건, 2012년에는 64,425건, 2013년에는 66,706건, 2014년에는 67,338건, 2015년에는 73,244건의 체불임금피해 근로자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체류의 적법성을 불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무료법률구조 혜택을 부여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 라. 소외지역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출장 상담 실시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거주자나 수용시설의 수용자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해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이에 공단에서는 2001년도부터 공단지부나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44개 농어촌 지역을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직접 방문하여 강연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2003년도부터는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등의 수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출장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서신, 인터넷, 전화 등의 다양한 법률상담과 홈페이지에서의 법률정보 제공을 통하여 장애, 질병, 원거리 등의 사유로 공단에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소외지역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출장상담은 2006년 656회 2,645건, 2007년 631회 2,622건, 2008년 632회 3,001건, 2009년 542회 3,023건, 2010년 468회 2,471건, 2011년 582회 2,439건, 2012년 529회 2,926건, 2013년 507회 1,871건, 2014년 549회 1,862건, 2015년 540회 2,228건을 실시하였다.

### 마. 이동법률상담차량 가동

또한 공단은 2010. 7.부터 상담전용버스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장애인 보호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운 국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 조사, 사건접수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법률상담차량 가동 이후 659개 지역을 방문하여 법률상담 8,797건, 법률구조 484건, 강연 187회를 실시하여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지역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바. 다문화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법문화교육 실시

공단은 제도와 문화의 차이, 체계적인 법교육의 부재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교육 필요성을 인식, 2011. 7. 김천시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법문화교육센터를 개소하여 대한민국 기본법질서, 국적취득, 혼인과 상속, 기초질서 등에

관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문화교육센터 개소 이후 2011년 1,467명, 2012년 2,285명, 2013년 2,676명, 2014년 2,744명, 2015년 2,780명의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대해 법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 조기 정착 및 준법의식 제고,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준법의식과 협동정신 함양 제고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였다.

**사.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공단은 형사절차에서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 조력을 위해 2012. 3.부터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사법률구조를 시행하였고, 2013. 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변호사 선임특례가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확대됨에 따라 2013. 6.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형사법률구조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공단은 2013. 7.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력 업무를 전담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6명을 채용하여 6개 지부에 배치하였고, 2014년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9명을 증원하였고, 2015. 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 업무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2015. 4.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5. 12. 현재 전국 15명의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아. 법률홈닥터 사업 확대**

법무부가 법률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법의 문턱을 낮추고자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변호사를 배치하여 1차 무료 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시행한지 4년이 되었다.

그동안 법률홈닥터는 취약 계층 가까이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서민들의 든든한 법률주치의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고, 법률홈닥터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 이제는 해당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법률홈닥터는 정식 사업 첫 해인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는 사업을 확대하여 총 27명의 법률홈닥터를 전국에 배치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법률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2014년에는 총 40명으로 법률홈닥터를 증원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소가 없는 지역, 무변촌 등에 집중적으로 법률홈닥터를 배치함으로써 그 동안 소외되었던 지역 주민들과 취약계층에 한 층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법무부는 2015년에는 KBS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등 방송 출연, 지하철 역사 광고 활용, 권역별연계간담회 등을 통한 법률홈닥터 홍보, 보건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업무 연계를 통한 법률복지서비스 강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법률상담 등 37,663건의 법률서비스(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문서 작성, 법교육 등)를 제공하여 전년 대비 약 31.8% 증가된 실적을 거두었다.

법무부는 2016년 법률홈닥터 권역별 간담회

개최 및 법률홈닥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추진함으로써 법률복지 현장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기존 법률구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기관과의 업무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법률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제 4 항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 1. 개 요

법무부는 법무행정관련 인권침해사건의 자체조사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무시설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 감찰관실에서 수행하여 오던 검찰인권보호 상황평가업무를 이관받아 2010년 상반기 평가부터 인권국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에 대하여도 인권보호상황 평가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종합적 인권옹호업무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2. 법무행정관련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

#### 가. 자기통제적 인권옹호 시스템 구축

수사·교정·보호·출입국 등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신속한 구제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2006. 5. 3.부터 인권조사과에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다.

인권침해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포스터 및 외국인용 리플렛을 제작·배포하였고, 방송인 김원희(여)를 인권국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으며, '믿음의 법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라는 관점에서 인권침해 신고센터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에 배포한 후 교정본부의 보라미 방송, 범죄예방정책국의 푸르미 방송을 통해 주 3회 이상 방영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인권침해사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원거리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2010년부터 화상조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2015년 현재 21개소의 구금·보호시설에서 화상조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인권침해로 접수된 사건이 교정·출입국 관리·보호 관련 사건인 경우,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직접조사 및 구제조치를 취하고 있고 경미사건의 경우 관련 부서에 자체 조사 지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아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다. 검찰관련 사건인 경우에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검찰 자체의 수사기능을 우선 활용하고 예외적으로 인권국이 추가 조사 및 직접 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권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수용장소 변경, 원상회복, 손해배상, 법률구조요청 등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나. 인권침해사건 접수 및 처리 결과

인권침해사건 신고건수는 2015. 1. 1.~12. 31.까지 총 1,835건(전화신고 16건, 우편신고 1,296건, 인터넷신고 25건, 인지 83건, 팩스신고 415건, 방문 0건)으로 이 중 접수 전 상담종결이 26건, 사건접수가 1,809건이며 접수된 1,809건의 처리내용은 인용 및 구제 84건, 이첩 544건, 각하 939건, 기각 240건, 기타 2건이다.

한편, 인권침해 신고 활성화를 위해 2010. 9. 28.부터 신고비용 전면 국가부담 방안을 마련·시행중이다.

※ 자세한 내용은 〈제6장 통계 : 표 4-4, 표 4-5〉 참조

## 3.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감독 및 제도 개선

### 가. 교정, 보호시설 등 구금시설 정기적 감독 및 실태 파악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감독을 통해 법무행정 과정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인 교도소, 외국인보호소, 검찰청 구치감, 소년원 등의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 인권실태 점검현황(2015. 1.~12.)

| 점검기관 | 교정시설 | 대용감방 | 검찰청 구치감 | 외국인 보호시설 | 소년원 | 계 |
|---|---|---|---|---|---|---|
| 점검횟수 | 16 | - | 9 | 8 | 7 | 40 |

직접적인 인권실태 점검을 통해 구금시설의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고 수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하였다.

※ 구금시설 수용자 직접면담 : 457명
구금시설 수용자 설문조사 : 3,118명

### 나. 인권친화적 제도 개선

인권침해 사건이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각종 제도를 인권친화적인 형태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4.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 가. 인권친화적 법무행정 구현을 위한 인권교육 인프라 구축

법무부는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이 바라는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의 내용 및 교육의 방향성 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법무행정 공무원들이 인권교육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화하였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청각 자료와 책자 발간 등을 통한 인권교육의 소프트웨어 구축에도 노력하여 직렬별 인권 다큐멘터리, 인권 실무교재를 제작하였다.

「법무부 인권교육 강화방안」에 따라 대학교수, 변호사, 민간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찰,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분야 인권강사단을 각 구성하였고, 2010년 법무공무원에 대한 자체적인 인권감수성 훈련을 담당할 직렬별

내부강사 48명을 양성 한 후 2013년 43명을 추가로 양성하였다.

나. 법무행정 각 직렬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법무행정 공무원들의 인권마인드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부강사가 진행하는 인권감수성 향상 훈련 28회, 외부 인권강사단에 의한 기관방문 교육 32회, 인권조사과 강사진의 인권교육 20회, 내부강사 통합 워크숍 1회, 검사상대 1:1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 45회, 찾아가는 인권교육 12회, 인권리더십 과정 2회 등 총 140회에 걸쳐 4,574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향후 전 직렬 외부 인권강사단에 의한 일선 기관 방문 교육과 내부 인권강사에 의한 인권감수성 향상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것이다.

특히, 검찰의 조사를 인권친화적으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검사 상대 1:1 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3년 하반기에 수도권 청에 근무하는 경력검사 71명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시범 실시하였고, 그 후 전국청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2014년에는 연 20회 143명의 경력검사를 상대로, 2015년에는 연 45회 332명의 경력검사를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방송인 김원희(여)를 인권국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위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배포함으로써 법무부의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등 인권옹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참여를 촉진하는 정책효과를 거두었으며, 2016년에는 횟수 및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연 80회 640명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5. 인권보호 상황 평가

법무부는 2007. 8.부터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검찰청에 대한 체계적 인권평가를 실시하여 왔다.

위 업무 성격상 인권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2010. 7. 인권국으로 위 업무를 이관하였고,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청과 우수청으로 선정된 검찰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검찰 인권보호상황 평가를 계기로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교육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인권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인권보호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에 대하여도 2011년 하반기부터 정기적으로 인권보호상황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종합적 인권옹호업무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제 5 항 법무부 내 여성·아동관련 정책 총괄·조정

### 1. 개 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는 여성·아동의 인권보장과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을 정책목표로 국내 법령 제(개)정 시 여성·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였고,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와 여성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안건을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제도, 진술조력인 제도를 시행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소속 기관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조치 이행상황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 2. 여성·아동 인권보호 강화

### 가.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확대 시행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등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주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 방향을 적극 모색하여, 모든 성폭력 피해자와 학대피해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2. 3. 16.부터 시행된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도로서 시행 첫 해인 2012년도에 피해자 2,908명, 2013년에는 8,084명에게 지원하였고, 2014. 9. 29.「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지원대상이 학대피해 아동에게도 확대됨에 따라 2015년에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16,106명에게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기여하였다.

또한 2015. 9.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성폭력 전담검사, 진술조력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여성·아동 대상범죄 대응 우수사례 공유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활성화하였고, 2015. 10.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전국 5대 권역을 순회하며, 성인지 감수성 높이기, 성폭력·아동학대의 이해 및 피해자 지원체계,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상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 피해자의 법률지원 사례 등의 주제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과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한편, 2013.7.1.부터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도입, 전국 해바라기센터 5곳, 법률구조공단 6곳에 배치하였고, 2014.1.1. 법률구조공단 지부(서울남부, 서울북부, 광주, 대구) 4곳에 추가 배치하여 총 1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선전담변호사는 지역사회의 상담시설, 전담 검사와 경찰관 등 수사기관 그리고 재판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양질의 법률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 나.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지원대상 확대

2013. 12. 1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시행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와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에게 전문인력(진술조력인)이 수사 및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2014. 9. 29.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진술조력인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으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도 진술조력인 지원을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 되었다. 2013. 12. 19. 제도 시행 이후 총 70명의 진술조력인을 양성·자격부여 하였으며 '15년도 총 727건의 진술조력을 실시하여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의 2차 피해방지 및 실체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있다.

**다. 여성·아동 관련 연구 용역 실시**

'아동학대가정 회복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개발', '아동학대가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후유증 연구', '사례별 진술조력 전략 및 진술조력 보조도구(Toolkits) 개발' 등 총 3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교정본부 '16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에 연구용역 결과인 '아동학대가정 통합프로그램' 내용을 반영하는 등 연구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하였다.

## 3.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가.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법무부 여성정책 관련 중요사항을 상정, 내·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관련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부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10인으로 구성된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청소년성보호법'상의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문제, 소년원 출원생의 꿈을 세워주는 희망 도우미 프로젝트 등 다양한 안건들을 토의하였으며, 기업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 사회적응 인성교육 강화, 추가 교과과정 신설 추진 등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였다.

**나. 법무부 여성정책협의회 개최**

조직 내 여성공무원에게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관점의 다양한 정책·제도 개발을 위해 각 직렬별 여성공무원 대표 9인으로 구성된 법무부 여성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여성정책협의회 레터 발간 논의 및 현장 근무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특히 여성정책협의회 레터(아우름)를 발간하여 여성정책과 관련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법무가족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넘어 서로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 법무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정책의 수혜가 양성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수립 과정에서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법령 62개, 사업 1개에 대한 분석평가를 진행하여 양성평등관점이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 4. 양성평등 의식 확산

**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실시**

2015년 양성평등주간(7. 1.~7. 7.)을 맞이하여 7. 9. 서수민 한국방송공사 예능국 팀장을 강사로 초빙, 법무부 본부 및 서울지방교정청 직원을 대상으로 'PD 업무 경험을 토대로 본 양성평등과 삶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여 남녀가 평등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성차별 의식 개선에 노력하였다.

8. 6.에는 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부받은 생활용품 등을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애란원'에 전달하였다.

### 나. 양성평등교육 및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실태 점검

법무·검찰공무원 1,613명을 대상으로 총 33회에 걸쳐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직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인식 제고, 조직 내 소통과 협력강화 등을 통한 균형적인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본부 및 소속기관(출입, 교정, 소년, 보호 등)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1박2일 과정의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교육(2회)을 실시하였으며, 김현웅 장관님이 직접 본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였으며,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도 실시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추방주간 기념 표어 공모'를 개최하여 우수작을 포상하는 등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법무부가 적극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제 7 절 교 정 업 무

## 제 1 항 교정업무의 기본방향

2015년도 교정본부는 '믿음의 법치 믿음의 교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정과제' 및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등 35개 주요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체계적 인성교육을 통한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을 집중 인성교육으로 전면 확대하여 실시하고, 국정과제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성폭력사범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수형자 개인별 맞춤형 처우계획을 수립, 출소 시까지 체계적으로 처우과정을 관리하는 수형자 개별처우제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지속적 확대실시를 통해 수형자 내면의 변화를 유도하고, 가족 만남의 집·날, 가족사랑캠프, 가족접견실 등 가족관계 회복·유지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 시행하고 장애인, 노약자, 다문화 가구권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가족접견의 시행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한편 노동 시장에서 선호하는 방향으로 직업훈련 종목을 개편하고 기능 인력 양성 중심의 직업훈련 과정 개선을 꾀하였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수형자 사복착용 면접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강사에 의한 취업면접 실습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무의탁 수형자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무의탁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에 주력하였다.

또한, 고위험군 수형자의 체계적 선발·관리를 위한 분류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전문적 정신과 치료·재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효과적 처우를 추진하기 위해 정신보건센터를 확대 설치하였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 접견 시스템의 구축은 민원 편의 향상 및 사회적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교정공제회법을 제정하여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영상매체를 통한 교정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과의 접점에서 교정의 변화상과 노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노후 교정시설의 이전·신축을 통해 지속적인 수용환경 개선에 주력하였다.

### 1.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정책 시행

수형자의 자립기반 조성과 성공적인 사회복귀 준비를 위해 안양교도소, 창원교도소 등에 중간처우의 집을 설치·운영하였고, 출소 전 다양한 사회생활 체험훈련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정착 도모를 위해 천안개방교도소에 '사회

적응훈련원'을 개원하여 사회적응능력 향상과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처우를 실시하였다. 더 나아가 2013년에는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 시설을 운영하여 교정시설 내 처우, 교정시설 내 중간처우,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로 이어지는 실질적 사회복귀지원의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출소예정자 구인·구직만남의 날 개최를 통해 수형자들에게 취업동기를 부여하는 등 사회복귀지원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였다. 한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는 전문숙련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청주여자교도소, 군산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에는 여성·장애인·소년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확대·시행하여 출소 후 외부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촉진에 기여하였다.

## 2. 수용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시행

2010년 각종 교정사고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수용관리와 과학적 처우의 자료로 활용하여 교정사고 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였다. 그리고 천안교도소를 외국인 전담교도소로 지정하여 한국을 알리기 위한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외국인 수형자의 수용질서 확립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1. 2. 수형자 자치제 전담교도소인 영월교도소를 개청하여 관리중심의 수용관리가 아닌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자율중심의 수용관리체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사회인구의 전반적 노령화 추세에 따라 교정시설에도 고령수용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수형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권신장을 위한 전담교정시설을 지방교정청별로 1개씩 지정·운영하였다. 또한, 수용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창설된 기동순찰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무연수원에 직무교육 강좌를 운영중이며, 팀제 보안근무체제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대상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한편, 상습규율위반자 등을 별도 수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엄정한 수용관리와 함께 수형자 인성검사를 통해 수형자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효율적 수용관리 및 안전한 수용생활을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수형자의 사회복귀 의욕 고취 및 교정교화 목적달성을 위해 수형자 특성에 맞는 음악, 미술, 독서, 웃음치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정신질환 수용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12. 12. 군산교도소, '13. 11. 진주교도소, '14. 2. 의정부교도소에 정신보건센터를 개원·운영하였고, '15. 4월에 천안교도소에 개원하였다. 특히 성폭력사범 중 재범고위험군, 알코올, 마약류사범 등 교육치료적 접근이 요구되는 특정범죄군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11. 10. 서울남부교도소, '13. 1. 포항교도소, '13. 5. 청주교도소, '13. 11. 군산교도소, '14. 9. 밀양구치소에 각 지방교정청 소속 총 5개의 교정심리치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또한,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재범위험성과 이수명령 시간에 따라 기본·집중·심화 교육과정으로 분류하여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3. 수용 환경 및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수용자의 수용환경 및 의료처우의 개선과 권리구제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수용자의 '인권 보장'과 '인권 옹호'라는 교정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종합병원 규모의 의료교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부산교도소를 비롯한 3개 교정시설에 원격진료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였다. 또 38,972명의 수용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수용자 의료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4개 지방교정청에 원격화상 조사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청원시스템을 개선하여 수용자 권리구제의 신속화 및 실질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14년에는 성동구치소 착공, 전주교도소 등 노후 교정시설 이전 신축을 위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대전교도소 등 4개 기관에 수용거실 바닥 온돌 설치 및 청주교도소 등 7개 기관에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였다.

'15년에는 거창구치소 착공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 등 2개 기관에 수용거실 바닥 온돌 설치, 군산교도소 등 3개 기관에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는 등 교정시설의 수용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 제 2 항 교정행정 역량 강화

### 1.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교정역량 집중

#### 가. '믿음의 법치 믿음의 교정' 실현을 위한 인사운영

전국 교정기관 교정공무원에 공통으로 적용될 인사기준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규칙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인사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국 교정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사 사례 및 이론교육을 실시하여 인사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교정 관련 법령 정비, 청원 및 행정심판·소송업무 수행 등 교정행정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및 다양한 정책 개발을 위해 변호사 6급(교감)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였고,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 채용 확대를 통해 교정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청송지역 교정기관의 안정적 기관 운영 도모와 직원 고충 해소를 위해 청송지역 한지채용을 추진하였다.

#### 나. 교정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순회점검 및 각 지방교정청별로 불시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조리 예방교육 등 청렴교육 및 수시 직장교육을 통해 청렴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특히 순회점검은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감사 역량을 집중하는 등 청렴도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지적위주의 감사를 탈피하여 비위원인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적극 모색하는 등 컨설팅 방식의 시스템 감사를 지향하였다. 교정본부에서는 2015년 한 해 동안 총 52개 반 320명을 순회점검반으로 편성하여 52개 교정기관 직원 복무실태, 교정부조리 근절 방안 중점추진 실태, 수용질서 및 수용자 처우개선 실태, 교육·교화·교도작업 운영실태 등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순회점검 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경고 3건, 주의 64건, 시정 279건을 지적하여 조치하였으며 수용자의 부당처우 등 8건의 청원을 처리하였다.

이와 함께 외부병원 계호실태에 대한 불시 기동점검 등 지방교정청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사전에 교정사고를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온정주의를 배제한 비리관련자 문책 및 감독자의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위로부터의 솔선수범 자세를 확립함으로써 부조리 척결과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에 노력하였다.

## 2. 교정공무원 사기증진 및 전문성 강화

### 가. 국내·외 교육훈련 내실화 및 국제 경쟁력 제고

교정공무원의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수용자 처우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기본 전제가 되므로, 교정본부는 전문교육,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과 각 기관별로 외부강사 초빙교육을 통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선진 교정제도의 비교연구를 통한 대한민국 교정행정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5. 11. 22.부터 11. 27.까지 태국에서 개최된 제35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에 교정본부장 등 5명이 참석하여 참가국가 간 교정현안 논의 및 정보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정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국제적 감각배양을 위해 2015년 총 12개팀 80명의 교정공무원을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에 파견하여 세계 각국의 교정시설 등을 참관케 하였으며, 교정공무원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국비장기유학과정에 6명(호주 노던 교정국, 미국 유타교정청 등), 단기해외연수과정에 1명(일본 메이지 대학)을 선발하여 외국의 교정제도를 현지에서 직접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 나. 직원 결속력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행사 실시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수용자를 관리하며 이들을 교정교화하는 교정공무원의 노고를 위로·격려하기 위해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5. 5. 22.「제33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는 17명의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과 교정참여인사에게 포상과 상금을 시상하였으며, 7급 이하 수상 직원에게는 1계급 특진의 영예를 부여하였다. 2015. 10. 28.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제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는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한 직원 및 교정참여인사 83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였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체력단련을 통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직원 상호간 인화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 10. 23. 법무연수원 본원(진천) 체육관에서 제50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하여 유도·태권도·검도 실력의 자웅을 겨루는 장을 열었다.

# 제 3 항 수용자 권익 확대·신장

## 1. 수용자 처우 향상

### 가. 외부교통권 보장을 통한 수용자 사회성 함양

교정행정의 패러다임이 수용자의 구금에서

교정교화로 변화함에 따라 수용생활로 인한 가족 및 사회동료들과의 유대관계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정교화와 사회성 함양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원거리에 거주하여 시간적·경제적인 문제로 수용자와의 접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격화상접견을 적극 활용하였다. 2000년 여주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에 처음 도입한 원격화상접견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꾸준히 확충하여 현재는 원격화상접견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을 위한 접견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0년 130건이던 원격화상접견 실시 건수는 2007년 123,425건, 2008년 141,431건, 2009년 163,58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0년에는 수용인원 감소 등으로 인한 접견 건수의 감소로 화상접견도 전년대비 4,441건 감소한 159,144건을 기록하였지만 2011년 163,186건, 2012년 178,762건 2013년 198,458건, 2014년 214,205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이후 2015년에는 246,04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2014년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정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 5점 만점 기준에 4.21점으로 응답자의 74.1%가 만족 이상으로 답변하여, 화상접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형자 가족 중 생업으로 교정시설 방문이 어렵거나 장애 등으로 원거리 이동이 곤란한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제고하고 수형자의 가족관계 회복 및 유대 강화를 위해 2013년에는 인터넷 화상접견제도를 도입하였다.

민원인 가정 내 PC와 교정시설 접견실 내 PC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화상접견 중계서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친 후 4월 10일부터 12개 기관에서 인터넷 화상접견을 시행하였다. 접견 실적이 8,111건에 이르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였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2013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은상)을 수상하였다.

2014년에는 20개 기관에 인터넷 화상접견 시스템을 확대·구축하였고, 2015년에는 나머지 20개 기관의 구축을 완료하여 모든 교정시설로 확대하였다.

2015년에는 가정에 설치된 PC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기존 인터넷 화상접견과 달리 어디서든 접견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통한 스마트접견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회복 기여 및 교정행정 신뢰도 향상을 통한 믿음의 법치 실현에 노력하였다.

〈표 1〉 수용자 원격화상접견 실적

(단위 : 건수)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건 수 | 107,608 | 123,425 | 141,431 | 163,585 | 159,144 | 163,186 | 178,762 | 198,458 | 214,205 | 246,045 |

둘째, 수용자와 민원인간 전화를 이용한 외부교통을 통하여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고 있다. 1998. 10.부터 모든 교정기관에서 전화사용을 허용하였고, 2001. 8.「수용자 전화사용 지침」을 개정하여 수신자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이후 2010년에는 전화사용 건수가 490,903건에 이르렀으며, 2011년에는 463,230건으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2012년 487,228건, 2013년 488,153건, 2014년 501,483건, 2015년에는 569,562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재해, 경조사 등 개인적 사정으로 민원인들과 급히 연락이 필요할 때는 3·4급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도 소장의 허가를 얻어 전화를 이용하여 신속히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 있어 수용자들의 안정적 수용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2〉 수용자 전화사용 실적

(단위 : 건수)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건 수 | 321,093 | 349,798 | 379,124 | 454,842 | 490,903 | 463,230 | 487,228 | 488,153 | 501,483 | 569,562 |

셋째, 접견예약제도와 접견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다. 접견예약제도는 민원인들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견을 예약한 후 예약한 일시에 접견을 할 수 있어 수용자 가족 등 민원인이 접견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었다. 접견예약제도는 수용자들에게도 사전에 민원인들이 접견 올 날짜와 시간을 예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적 수용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2011년 이용건수는 374,780건, 2012년에는 410,980건, 2013년에는 479,481건, 2014년에는 533,348건, 2015년에는 579,85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3〉 수용자 접견예약 실적

(단위 : 건수)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건 수 | 314,210 | 335,607 | 361,280 | 349,230 | 345,762 | 374,780 | 410,980 | 479,481 | 533,348 | 579,852 |

또한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접견신청을 일과 중 모든 시간대별로 고르게 분산되도록 유도하여 접견시간의 확대보장을 도모하고자, 오전 시간대 등 상대적으로 방문인원이 적은 시간대에는 접견시간을 연장해 주는 접견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접견인센티브는 각 교정기관의 실정에 맞게 각 기관별로 시간대별 접견건수 등을 분석하여 적정시간대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2005. 3.부터 전 교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14년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정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 5점 만점

기준에 4.17점으로 응답자의 80.6%가 만족 이상으로 답변하여, 접견예약 및 접견인센티브 제도가 접견민원서비스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수용자 접견 실적

(단위 : 건수)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건 수 | 314,210 | 2,001,705 | 2,020,018 | 2,218,193 | 2,030,847 | 1,964,389 | 1,979,015 | 2,159,672 | 2,425,321 | 2,576,186 |

넷째, 일반적으로 수용자 접견은 직원이 참여함으로써 접견 당사자인 수용자 및 민원인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고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접견의 만족도가 다소 낮은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접견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직원의 참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녹음녹화접견관리시스템을 도입·구축하였다.

녹음녹화접견관리시스템은 수용자 접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지방교정청별로 순차적으로 구축하였으며, 2006년 서울지방교정청 산하 13개 교정기관을 시작으로 2008년 대구·광주지방교정청 산하 23개 교정기관에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모든 교정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다. 녹음녹화접견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접견대기시간이 5~10분 단축되어 접견시간이 3~5분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나. 회복적·문화적 교화프로그램 확충

2013년 교정행정은 처벌의 단계를 넘어 회복을 지향하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입각하여 가족과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회복적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더욱 확대·강화하였다. 2008년 9월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 대상 시범방영을 시작으로 '다큐멘터리적 교화' 프로그램의 하나인 수형자 가족 등의 사연을 담은 영상물을 교화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방영하는 '영상편지(가족의 소리)'를 2009년 12월까지 실시하였고,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수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쌍방향 영상편지를 촬영하여 전 교정기관의 수용자에게 방영함으로써 가족의 신뢰회복 및 갈등해소로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유도하였다.

2010년 9월부터는 수용자와 가족이 엽서, 편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참여하는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용자의 정서순화 및 가족 갈등해소의 계기를 마련하여 수용자가 안정된 가운데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청곡 및 사연 소개와 함께 이원복 교수의 세계사 강의, 도서 및 영화 전문가 리뷰, 건강식 안내 등 각종 문화 코너 등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교양과 상식을 넓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취침 전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수용자들의 정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는 진솔한 사연과 노래를 통한 감동과 공감이 있는 '찾아가는 전국 노래자랑'을 각 기관을 순회하며 개최, 교화라디오 방송을 통해 월 1회 방송하여

수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013년 4월부터는 사회와의 단절감을 줄이고 사회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고취하는 등 수용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전검열 없이 저녁 TV뉴스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방영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교정시설 재난 및 사고관리 실무 매뉴얼'을 보다 쉽게 이해하여 실제 사고 상황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를 제작하였고, 2015년부터 직원 및 수용자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과 자율적 심성순화를 위하여 음악·미술·독서·웃음치료·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수형자 정서순화를 위한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2005년 8월부터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취약계층 문화지원 사업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음악치료학회 등 16개 단체의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한데 이어, 매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시, 시화, 문예창작 등 문화단체의 지원을 받아 문화생활에서 소외된 수용자들에게 체험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김천소년교도소의 소년수형자로 구성된 '드림스케치' 합창단을 구성하고 가수 이승철의 지도를 받아 사랑의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소년수형자들이 피해자와 가족, 사회에 용서를 구하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2. 11. 12. 김천시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가수 BMK, 테너 김성록 등이 참여한 가운데 '드림스케치 합창단 공연'을 시행하였고, 2013. 1. 30. 포항교도소에서 청주여주교도소 등 5개 기관이 참여하여 '전국 수형자 합창콘테스트'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2015. 12. 22.~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소년수형자들이 뮤지컬 '날개'를 공연하였다. 수형자 문화프로그램 시행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수형자 문화프로그램 시행 현황

| 연 도 | 기 관 | 횟 수 | 인 원 | 비 고 |
|---|---|---|---|---|
| 2015 | 52 | 846 | 55,468 | |
| 2014 | 51 | 654 | 58,412 | |
| 2013 | 51 | 535 | 68,786 | |
| 2012 | 51 | 503 | 78,826 | |
| 2011 | 51 | 457 | 68,162 | |
| 2010 | 50 | 401 | 53,639 | |
| 2009 | 46 | 362 | 37,403 | |
| 2008 | 43 | 335 | 51,909 | |

### 다. 수용자 사회복귀 및 재활 지원

21세기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수형자의 고등교육 욕구 증가, 검정고시 합격자와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과정 졸업자의 정규 대학과정 교육 희망 증가에 따라 2004년 여주교도소에 방송통신대학교 과정을 신설, 2005년 전주교도소에 추가로 설치한 데 이어 2006년 청주여자교도소에 국문학과 등 6개 학과, 2007년에는 포항교도소에 영문학과 등 8개 학과의 방송통신대학교 과정을 확대 개설하여 보다 많은 수형자가 초·중·고 및 전문대학 과정교육은 물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방송통신대학 교육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2015년에는 11명의 방송통신대학 졸업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초졸 및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575명이 합격하였으며, 순천교도소에서는 청암대학교(순천시 소재) 위탁교육을 통해 17명의 전문학사를 배출하였다. 또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에는 안양교도소 등 20개 기관에서 총 39명의 수형자가 합격하는 등 수용자 교육교화에 내실을 기하였다.

### 라. 중간처우확대 시행 등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강화

2009. 1. 안양교도소에 우리나라 최초의 중간처우의 집(소망의 집)을 개원하였고, 이어 11월에는 각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씩(춘천·창원·청주여자·순천교도소) 중간처우의 집을 추가 설치하여 출소예정자에게 일정기간 가정과 같은 시설에서 구외공장으로 출·퇴근하는 등 사회적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 9.에는 천안개방교도소를 기능 전환하여 사회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 출소 후의 실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사회적응훈련원'을 개원하여 대중교통 이용하기, 금융기관 이용하기 등 사회복귀 체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2013. 9. 국내 최초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 시설인 "밀양희망센터", 2014. 11. "안성희망센터"를 개관하여 교정시설 내 처우에서, 교정시설 내 중간처우 단계를 거쳐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로 이어지는 실질적 사회복귀지원의 틀을 마련하였다.

## 2. 선진 교정환경 조성

수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향상과 인권신장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 확충, 노후교정시설 이전 및 수용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 가. 교정시설 확충 및 노후교정시설 이전

현재 전국 교정시설의 54%가 25년이 경과된 상태이고 35년 이상 경과된 시설도 27%에 이르고 있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교정시설 이전·신축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안팎으로 요구되고 있다. 법무부는 2009년 관내 교정시설이 없어 경찰서 유치장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영월·밀양·해남에 500명 수용규모의 교정시설을 준공하였다. 또한 2014년 초에는 상주·장흥교도소를 이전·준공하였고, 2014년 말에는 광주·정읍교도소를 이전·준공하였으며, 거창은 2015년에 착공하였고, 속초는 2016년 착공을 준비하는 등 교정시설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도심지역의 발달에 따라 지역사회로

부터 이전요구를 받고 있는 도심소재 노후 교정시설의 이전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체 교정시설을 신축한 후 현 교정시설부지와 교환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서울남부 교정시설은 구로구와 2007. 11.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건립을 완료, 2011. 10. 구로구 천왕동으로 이전하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부지 교환방식을 통하여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성동구치소·창원교도소 2개 기관이며, 법무부 자체 예산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6개 기관이다.

**나. 수용환경 개선사업**

수용거실 재래식 화변기로 인한 거실 내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군산교도소 등 3개 기관에 양변기 교체작업을 완료하여 위생환경을 개선하였고, 화재 시 대형 안전사고 방지와 폐쇄형 구조로 인한 대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출입문 자동화 사업('15. 부산구치소)과 수용거실 내 스프링클러 설치작업('15.수원구치소, 인천구치소)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복도 방열기(라디에이터)에 의한 간접난방을 채택하는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바닥온돌 직접난방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에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등 2개 기관을 개선함으로써 동절기 수용자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였다.

또한 교정시설 증축 사업도 꾸준히 진행되어, 2015년에는 공주교도소 등 2개 기관에 대한 리모델링 및 수용동을 증축하여 난방효율 증대 등 수용환경 개선에 노력하였다.

**다. 의료환경 개선**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와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처우를 위하여 의료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였다.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중보건의사 53명을 배치 받아 수용자 진료업무에 활용하고, 2012년부터 정복간호사 특별채용을 실시하여 2012년 54명, 2013년 97명, 2014년 50명, 2015년 98명을 선발하였으며, 교정공무원 중 1급 응급구조사 38명, 2급 응급구조사 320명, 간호조무사 450명을 일선 의료과 등에 배치하여 보건행정 및 의료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15년까지 자동약품포장기, X-ray기, 심장제세동기 등 최신 의료장비 22종 1,198대를 구입·공급하여 의료장비의 자동화를 통해 업무를 경감시키고 향상된 수용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질병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해 2005년부터 외부전문기관과 검진계약을 체결, 직장인 검진 수준의 수용자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2006년 25,045명, 2007년 29,885명, 2008년 30,195명, 2009년 31,609명, 2010년 32,612명, 2011년 32,858명, 2012년 32,125명, 2013년 34,223명, 2014년 35,935명, 그리고 2015년에는 실시 원년인 2005년보다 약 88.8% 증가한 38,972명에 대해 30개 항목의 검진을 실시하여 질환의심 판정자에 대한 2차 정밀검진 및 적절한 의료처우를 실시하였다.

또한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전문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2008년 안양교도소에 인공신장기, 혈액투석 정수시스템 등의 혈액투석 장비를 설치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하였고, 2011. 12. 이를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전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 2. 대전교도소, 2015. 12. 광주교도소에 혈액투석

실을 추가 구축·운영하였다. 그 결과 2008년 806건, 2009년 2,493건, 2010년 2,980건, 2011년 3,738건, 2012년 4,631건, 2013년 5,055건 2014년 5,232건 2015년 5,813건의 혈액투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과목별 전문진료 제공을 위해 2005년부터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에 외부병원과의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 2008년 4개 기관, 2009년 7개 기관, 2010년 4개 기관, 2011년 4개 기관, 2012년 3개 기관, 2013년 2개 기관, 2014년 2개 기관 2015년 3개 기관 등 총 30개 교정시설에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신과 등 외부의료시설 전문의에 의한 진료 10,498건을 실시하였다. 2016년에는 1~2개 교정기관에 추가로 구축하여 수용자의 의료처우와 계호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11월에는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일선기관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 및 제세동기 사용에 대한 동기부여를 확립하였다.

또한, 통풍·채광을 고려한 쾌적한 진료 및 치료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09. 9. 대전교도소에 47병상을 설치하였고, 2011년 서울남부교도소에 28개 병상을 신축 완료하였으며, 중환자, 수술환자,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안양교도소 재건축 부지에 국내최초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급 의료교도소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라. 대용구치시설 수용 미결수용자 처우 개선**

경찰서 대용구치시설은 협소한 공간과 수용시설·의료시설 등의 미비로 수용자의 인권침해가 문제되었고, 경찰청에서도 미결수용자 인수를 계속해서 요청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2004년 충주구치소와 통영구치소를 개청하여 충주경찰서와 통영경찰서 대용구치시설의 미결수용자를 인수하였다. 또한 2006년 포항교도소가 개청함에 따라 영덕경찰서 미결수용자를 2007. 3. 포항교도소에서 인수하였고, 같은 해 3월 의성경찰서 미결수용자를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인수하였으며, 2008. 3.에는 정읍경찰서 미결수용자를 전주교도소에서 인수하였다. 더불어 영월·해남·밀양경찰서 미결수용자 인수를 위해 2009. 12. 영월·해남교도소 및 밀양구치소 등 3개 교정기관을 신설하였고, 2014년에는 정읍·상주교도소를 신설하였으며, 2019년에는 속초교도소, 거창구치소를 신설하여 속초·거창경찰서 미결수용자를 인수할 예정이다.

## 제 4 항 수용관리의 효율성 도모

### 1. 발전하는 교정행정, 자리 잡는 수용질서

교정행정은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수용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수용질서를 확립하고자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다. 우선 외부 의료시설 진료 시 수용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환자복 내에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수용자 호송 시 장애인, 중환자, 임산부, 노인, 여성수용자에게는 탄력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신입수용자 신체검사 시 전자영상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영상 신체검사기를 전 기관에

보급함은 물론 수용자 운동 및 목욕 방법을 개선하는 등 수용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범죄의 증가추세에 따라 세계 최초로 천안교도소를 외국인 전담교도소로 지정하여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각종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외국인 수형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초질서 준수를 통해 「법질서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사회인구의 전반적 노령화 추세에 따라 교정시설에도 고령수용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수형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권신장을 위한 전담교정시설을 지방교정청별로 1개씩 지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보장 분위기에 편승, 수용생활 편의를 위해 무분별하게 고소·고발·진정·정보공개 청구 등의 남발 사례, 소란·난동·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규율위반 사례 등이 증가함에 따라 수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수용자는 적법절차에 따라 징벌·입건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소란·난동과 같은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통한 시설 내 질서유지와 야간·휴일 기동순찰 활동을 통한 취약시간대 계호력 보강을 위해 기동순찰팀(CRPT)을 창설하여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습적 관규 위반 수용자, 자해·자살 등의 위험성이 높은 수용자를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 중 상습 규율위반자, 상습 폭행자 등 위험성이 높은 수용자들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교정시설 내 수용자간 폭행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5년에 가해 수용자의 처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폭력예방 프로그램, 거실 내 심성순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정시설 폭행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와 별도로, 교정시설 내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교정시설 재난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하는 한편 행동매뉴얼을 보완·재정비 하였고 표준화된 재난 및 사고 실무매뉴얼을 작성·보급, 재난 안전대비 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 하는 등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수형자 분류처우 업무의 내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사범, 사이코패스, 인성 특이수형자의 출소는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 선별과 관리가 필요하고, 재범위험성이 높고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수형자들의 시설내 문제행동 증가는 수용관리에 부담을 가중시켜 이들에 대한 체계적 분류심사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고위험군 수형자들의 체계적 선별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밀하고 심층적인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부서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분류센터 설치 및 운영은 교정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원인과

동기의 다변화에 따른 강력범죄의 증가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고위험군 수형자 재범 증가는 교정환경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조직적 대응의 필요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으로 인해 유관기관인 교정기관의 협조 업무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다부처·다부서간의 융합적 고위험군 범죄자 관리 모델은 유관기관 간에 고위험군 수형자 정보 공유를 통한 사회안전 확보 및 정부 기조인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점 요인이 되고 있다.

'15년 상반기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15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분류센터 운영은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정밀 분류심사와 집중적인 처우·관리로 출소 후 이들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며, 분류심사 업무의 전문화·과학화, 그리고 출소 후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위험군 수형자의 체계적인 선별은 정밀한 선별검사 도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교정본부는 수형자들의 분류심사 자료, 범죄경력 자료 등 실증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등 과학적인 분류심사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선별도구는 기존의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인 'Static-99R'과 'HAGSOR'와는 별도로, '한국형 폭력 고위험군 수형자 위험성 평가도구'(가칭)를 개발 중에 있으며, 자료분석과 예비문항 검증 등의 통계분석을 거쳐 '17년 개발 완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평가도구는 시범적용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전국 교정기관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재범위험성이 높은 폭력 고위험군 수형자 선별적 관리로 안정적인 수용관리를 제고하고, 이들의 재범방지에 기여하며, 수형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재범예측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전국 교정기관에 전면 시행된 맞춤형 개별처우는 교정행정의 과학적인 운영과 재범 억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가석방 기준 엄격 적용 및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

'13년 9월부터 사회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 등이 국민의 신뢰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가석방을 엄격히 심사하였다. 다만,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업훈련 수료 등을 통해 성실히 생활하는 모범 수형자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을 2~10%까지 완화하여 심사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 법집행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시켰고, 스스로 노력하는 수형자에게만 가석방 혜택이 주어지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국가유공자, 노부모 봉양, 다회 헌혈, 양로원·고아원 등의 특수시설 봉사자 등에게는 가석방 허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준법과 사회기여가 우대받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였다.

〈표 6〉 수형자 가석방 현황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인 원 | 8,590 | 8,067 | 8,524 | 8,392 | 8,083 | 7,129 | 6,500 | 6,201 | 5,394 | 5,507 |

## 제 5 항 수용자 교정 · 교화의 실효성 제고

### 1. 개 요

2015년 학과교육, 예 · 체능 정서교육, 교정위원에 의한 심성순화 등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에 내실을 기한 결과 575명의 수형자들이 초졸 및 중졸 ·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였고, 39명의 수용자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여주(교) 등 6개 기관에서 수형자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집중인성교육의 시범운영을 통해 2015년 집중인성교육 전면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2. 교육을 통한 수형자 인성계발

#### 가.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1) 정규교육에 상응한 학과교육

수형자 중에서 학교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초 · 중 · 고등학교 학과교육 과정을 설치하여 1년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정시설 내에서 일반학과교육을 이수한 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공인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2009년 548명, 2010년 481명, 2011년 514명, 2012년 558명, 2013년 571명, 2014년 565명, 2015년 575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방송통신고등학교

1982. 3. 14. 김천소년교도소에 김천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991. 1. 10. 천안교도소에 천안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소년수형자에게 정규 고등학교 과정 이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5년 김천소년교도소의 수용구분 변경으로 김천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폐지되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천안소년교도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2009년 6명에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하였다. 이후 2010년 천안소년교도소의 수용구분 변경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은 김천소년교도소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 13명, 2011년 10명, 2012년 5명, 2013년 9명, 2014년 6명, 2015년 7명에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하였다.

3) 전문대학 위탁교육

2001년 청주 주성대학과 전문학사과정 위탁교육 협정을 맺어 청주교도소 내에 전자상거래과(인테리어과로 변경 개설)를 개설한 이래, 2002년 순천교도소 내에 순천청암대학 관광호텔조리과(호텔외식조리과로 명칭 변경)를 개설하여, 2010년 31명의 수형자가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11년에는

청암대학에서 17명의 전문학사를 배출하였으며, 2012년에는 청암대학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구 주성대학)에서 22명, 2013년부터는 청암대학에서 18명, 2014년 16명, 2015년 17명의 전문학사를 배출하였다. 참고로 충북보건과학대학은 교육생 감소로 2012년 폐강하였다.

4)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 과정

수용생활로 인한 학업중단 방지와 고등교육 기회 부여로 출소 후 사회복귀 기반 조성 및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대전교도소 등 11개 기관에서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법학 등 9개 전공분야의 학사 고시반을 설치하여 2009년 수용자 180명을 대상으로 독학사 과정을 운영하였다. 교육생들은 학사학위취득을 목표로 1~4단계, 각 단계별 6과목(1단계 5과목) 시험에 응시하고 있으며 1996년 3명의 독학사 배출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313명의 독학학위취득자를 배출하였고, 2013년에는 31명, 2014년에는 40명, 2015년 39명이 학위를 취득하였다.

5) 방송통신대학교

수형자의 고등교육 욕구가 높아지고 검정고시 합격자,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정규 대학과정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4년 여주교도소에 방송통신대학교 과정을 신설, 2005년 전주교도소, 2006년 청주여자교도소에 국문학과 등 6개 학과, 2007년 포항교도소에 영문학과 등 8개 학과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은 CD·테이프 등의 교육매체를 통한 자율학습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인터넷을 이용한 교수학습 및 강의수업으로 진행되며, 2007년 여주교도소 4명, 2008년 전주교도소 6명, 2009년 여주교도소 4명·청주여자교도소 4명, 2010년 청주여자교도소 2명·포항교도소 8명, 2011년 청주여자교도소 4명·전주교도소 11명·여주교도소 8명, 2012년 여주교도소 8명·청주여자교도소 4명, 2013년 전주교도소 9명·청주여자교도소 2명, 2014년 여주교도소 8명·포항교도소 12명, 청주여자교도소 3명, 2015년 여주교도소 4명·포항교도소 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6) 외국어 전문교육

1999. 10. 의정부교도소에 어학실습실을 설치하고 영어, 일어 전문교육을 실시한 이후 2001년 여주교도소와 2002년 목포교도소, 2011년 영월교도소에 중국어 과정을 개설하여 각 과정마다 20~3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고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목포교도소의 경우 교육생 부족 등의 사정으로 2012. 12.에 교육과정을 폐지하였다. 2015년 교육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능력을 평가한 결과, 영어(TOEIC)에서 최고 915점(만점 990점)·평균 804점, 일본어(JPT)에서는 최고 980점(만점 990점)·평균 617점, 중국어(CPT)는 최고 720점(만점 1,000점)·평균 412점을 각각 기록하였다.

### 나. 수용자 인성교육 도입 및 시행

수형자들의 심성 순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실시하던 수형자 일반정신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수형자들의 관심과 참여도 저조, 정신교육의 전문성과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2008. 12 18.부터 「수형자 인성교육 등에 관한 지침」을 「수용자 교육

교화 운영지침」으로 개정하여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형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매회 3일 이상 5일 이내 15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편성하여 감수성 훈련, 인간관계회복, 심리치료, 집단상담, 도덕성회복 등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하였으며, 2010. 8. 1.부터 인성교육과정 편성 시 효행교육을 추가로 편성하여 교정시설 내 수형자를 대상으로 효행교육을 실시하였다. 2013년 10월부터는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인 인성변화를 통해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 교정교화프로그램 시행의 일환으로 여주교도소 등 6개 기관에서 집중인성교육을 시범실시 하였고, 2015년부터 전 교정기관에서 확대 중이다. 집중인성교육은 기존의 인성교육을 강화한 프로그램으로 형 확정된 모든 수형자에 대해 형기에 따라 35~300시간의 교육을 시행하고 헌법가치교육, 인문학, 동기부여, 분노조절, 미술치유, 직업훈련체험, 종교교육 등의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표 7〉 일반수형자 정신교육 및 인성교육 실적

(단위 : 명)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집중인성) |
|---|---|---|---|---|---|---|---|---|---|---|
| 실시인원 | 13,166 | 14,040 | 14,463 | 9,118 | 9,245 | 8,744 | 6,789 | 6,202 | 5,763 | 8,604 |

**다. 수형자 특별 활동반 운영**

수형자 개개인의 소질과 특기를 계발해 건전한 정신과 사회적응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수형자 중 재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각종 운동, 서예, 회화, 악기 연주, 문예 등의 예·체능교육과 교양지 발간과 같은 정서순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교정작품 전시회 개최

수형자들이 새 삶을 향한 굳은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교정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범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넓혀 나가고자 수형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문예활동을 통해 기량을 발휘하여 제작한 작품을 한 곳에 모아 매년 전국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서울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수형자의 문예작품입상 내역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수형자 문예작품 입상 현황

| 구 분 | 계 | 서 예 | 한국화 | 서양화 | 시 화 | 공 예 |
|---|---|---|---|---|---|---|
| 출 품 | 286 | 148 | 54 | 26 | - | 158 |
| 입 상 | 126 | 67 | 32 | 17 | - | 10 |

2) 종교활동

종교귀의에 의한 심성순화로 도덕성을 함양시키고 건전한 삶을 지향하도록 1983년부터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을 종교위원으로 위촉하여 전 수형자들이 종교를 갖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종교에 귀의한 수형자에게 종교의식 및 행사 등을 통하여 수용생활 중 교리지도는 물론 출소 후에도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3) 「새길」 발간

수형자 교화용 도서인 「새길」은 1948년 창간 이후 2015. 12. 제432호를 발간·배포하여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정서순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수형자 문예란에 작품을 발표케 하여 문예소양을 계발하는 등 문예발표의 매체로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다.

※ 1948. 4. 창간(월간 또는 격월간 발행), 2001년부터 계간 발행

## 3. 수형자 사회복귀 촉진

### 가. 귀 휴

귀휴는 일정기간 복역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해 일종의 휴가를 허가하는 제도로 석방 후의 생활을 준비하고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시켜 사회적응능력을 키워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015년 999명의 수용자에 대해 귀휴를 실시하였으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귀휴 허가에 필요한 최소 복역 기간을 1년에서 6월로 단축하였고, 일반귀휴기간을 1년 중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특별귀휴 사유에 형제·자매의 사망을 추가하여 핵가족화 되어가는 시대의 추세를 반영하였다.

### 나. 사회견학 및 봉사체험

수형자들에게 보육원·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방문과 봉사를 통한 심성순화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의 실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4,322명의 수형자가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을 하였다.

### 다. 가족만남의 날 행사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만남의 날 행사는 교정시설 내 정원이나 휴게공간에서 수형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 2015년 12,755명의 수형자가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 라. 가족만남의 집 설치·운영

1999년부터 장기형의 모범수형자 또는 가족과 만남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교도소 외곽에 일반 가정집과 같은 구조와 시설의 「가족만남의 집」을 설치하고 가족과 함께 1박 2일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가족만남의 집 운영에 대한 수형자 및 가족의 만족도와 교정교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법무부는 자체예산과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여 2015년 말 현재 44개 교정기관에 45세대 「가족만남의 집」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교정기관 신설 및 이전 건축 시

「가족만남의 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2015년에는 1,361명이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하였다.

**마.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수형생활로 인해 수형자 가족이 겪는 사회적 편견, 경제적 곤란 등의 문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에 따라, 2011. 10. 법무부·행안부·여가부·복지부·교과부·경찰청·서울대학교가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 외부전문가의 진행으로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가족사랑 캠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수형자의 수용생활 초기 가족관계 해체 방지를 위해 2011년 청주여자교도소와 대전교도소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대구교도소, 2013년에는 포항교도소, 청주교도소, 부산교도소, 목포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2014년에는 순천교도소, 2015년에는 서울구치소, 공주교도소, 수원구치소에 일반가정 거실과 같은 형태의 가족접견실을 설치하여 수용자와 가족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서울대학생과 청소년 자녀를 연결하여 학습방법, 진로와 적성, 일상적인 생활 등에 대해 정보제공, 조언과 상담 등을 실시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바.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법무부는 출소예정자 취업 및 창업 기회 확대를 통한 성공적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격월로 개최하여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수형자 5,525명, 구인업체 1,720이 참여하여 2,456명이 채용을 약정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참여수형자 사복착용 시범실시, 외부전문가가 지도하는 취업면접 프로그램 신설 등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밖에도 출소예정자 3,106명이 한국법무보호공단에서 시행하는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여 체계적·전문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 창업지원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하여 출소 후 창업을 원하는 982명의 수형자에 대하여 소자본 창업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9〉 연도별 취업 및 창업지원 실적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730 | 670 | 687 | 1,165 | 1,243 | 1,138 | 1,298 | 1,489 | 1,696 | 1,561 |
| 취업 | 730 | 670 | 672 | 1,107 | 1,174 | 1,080 | 1,238 | 1,405 | 1,636 | 1,503 |
| 창업 | - | - | 15 | 58 | 69 | 58 | 60 | 84 | 60 | 58 |

## 4. 교정위원 교화사업 활성화

### 가. 교정위원 교화활동 활성화 및 사기 진작

1998. 11. 26.「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를 발족하여 전국적인 수형자 교화활동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2000. 9.부터 교정위원을 대폭 늘려 2000. 10. 과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평소 수형자 교정교화에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교정위원 등 1,300명이 참가한 가운데「제1회 수용자 교정·교화 자원봉사자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수형자 교정교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교정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983년부터 교정본부장 주재 하에 기관별 교정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교정본부장 주재 간담회를 성동구치소 등 9개 기관에서 개최하였다. 기타 기관은 해당 기관장 주재로 소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교정위원 전문화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교정행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화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한국방송공사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주최하는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교정행정발전 및 수형자 교화선도에 힘쓴 유공 교정위원들에게 법무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하여 격려하였다.

### 나. 교화위원

1970년부터 교육자, 사회사업가 등을 교화위원으로 위촉하여 수용자 개인상담, 자매결연, 교화공연, 취업알선 등 수용자에 대한 교화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10〉 교화위원 현황

(2015. 12. 31. 현재, 단위 : 명)

| 구 분 | 계 | 교 육 | 법 조 | 사회사업 | 실 업 | 공무원 | 기 타 |
|---|---|---|---|---|---|---|---|
| 인 원 | 1,804 | 65 | 42 | 75 | 1,269 | 26 | 327 |

### 다. 종교위원

1983년부터 목사, 신부, 승려 등을 종교위원으로 위촉하여 이들로 하여금 수용자의 신앙생활을 지도케 함으로써 심성순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표 11〉 종교위원 현황

(2015. 12. 31. 현재, 단위 : 명)

| 구 분 | 계 | 기 독 교 | 불 교 | 천 주 교 | 기 타 |
|---|---|---|---|---|---|
| 인 원 | 1,895 | 892 | 648 | 323 | 32 |

**라. 교육위원**

2000년 교정위원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그 동안 수형자 학과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해 온 교정참여인사를 교정위원제도의 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수형자 교육, 상담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표 12〉 교육위원 현황

(2015. 12. 31. 현재, 단위 : 명)

| 구 분 | 계 | 교 수 | 교 사 | 학원강사 | 직업훈련 강사 | 기 타 |
|---|---|---|---|---|---|---|
| 인 원 | 275 | 78 | 16 | 28 | 6 | 147 |

**마. 의료위원**

2004년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들을 교정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부족한 의료인력 해소 및 의료처우 향상에 기여하는 등 수용자 의료서비스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

〈표 13〉 의료위원 현황

(2015. 12. 31. 현재, 단위 : 명)

| 구 분 | 계 | 의 사 | 한의사 | 약 사 | 간호사 | 기 타 |
|---|---|---|---|---|---|---|
| 인 원 | 102 | 88 | 6 | 2 | 1 | 5 |

**바. 취업위원**

2010년 교정위원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수용자에게 취업 및 창업을 헌신적으로 지원하고 봉사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수용자의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표 14〉 취업위원

(2015. 12. 31. 현재, 단위 : 명)

| 구 분 | 계 | 실 업 | 사회사업 | 교 육 |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 기 타 |
|---|---|---|---|---|---|---|
| 인 원 | 630 | 408 | 31 | 49 | 69 | 73 |

## 제 6 항 수형자 사회복귀에 기여하는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 1. 개 요

#### 가. 교도작업

교도작업의 경쟁력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교도작업제품 품질개선'과 '교도작업 홍보활동의 강화' 등을 추진하여 교도작업담당 직원의 주인의식과 전문성을 강화시켰으며, 취업수형자의 교도작업에 대한 의식전환을 유도하여 '신바람 나는 작업장 분위기'를 확산시켜 교도작업의 생산성을 증대하였다.

또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2010.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도작업제품에 대한 국가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민간 위탁판매 규정을 신설하여 교도작업을 활성화하고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응급구호조치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하여 2015년 약 6,281여명의 작업 수형자 및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및 이동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립형 교도작업의 완전 정착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위탁업체와의 적정 계약단가 추진을 위한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4년도 자립형 작업담당자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교도작업 제품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형성하는 등 실질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제44회 교정작품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전시관 내에 교정홍보관을 설치하여 일반국민들이 변화된 교정행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행사로 발전시켰다.

#### 나. 직업훈련

수형자들이 출소 후 안정된 직업을 얻지 못하고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재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적 자립기반이 없는 수형자들에 대한 내실 있는 직업훈련과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취업에 용이한 직종 중심의 직업훈련에 주력하고 있다.

1969년 전국 30개 교정시설에 공공직업훈련소를 설치한 이래 고급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출소 후 안정된 직업마련으로 자활능력을 부여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는 기능장 및 산업기사 전문과정을 신설하여 고급 기능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자동차정비 등 14개 직종 6,484명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단기집중직업훈련과 교도작업 적응훈련을 실시하였고 직업훈련을 체험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직업훈련 체험관을 신설하는 등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 2. 교도작업 운영실적

#### 가. 작업운영 형태

교도작업은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정역(定役)으로, 작업을 통해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을 습득시켜 사회복귀 시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도작업은 교도소에서 직접 제품 및 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직영작업, 외부업체로부터 기계·재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위탁작업, 외부통근을 통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작업과 교도소의 자체 시설유지·운영에 필요한 운영지원작업이 있다.

**나. 작업종목 및 취업인원**

작업종목은 목공·철공·인쇄공·봉제공·장류공·식품공 등 17개 직종의 직영작업, 전자부품조립·쇼핑백 제작 등 20개 직종의 위탁작업, 외부통근작업 등의 노무작업, 청소·취사·시설보수·세탁 등의 운영지원작업으로 나누어지며, 1일 평균 22,000여 명의 수형자가 제품생산과 기술훈련에 정진하고 있다.

**다. 작업규모**

2015년도 말 기준 교도작업 규모는 총세입액 573억원(2014년도 이월금 포함), 총세출액 573억원, 이월금 212억원이며, 교도작업특별회계소관 국유재산인 토지, 건물 등 작업시설은 1,415억 3,900만원이고, 공작물 등은 30억 700만원으로, 1962년 독립회계를 채택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며, 그 내역은 〈표 15〉, 〈표 16〉과 같다.

〈표 15〉 최근 5년간 세입·세출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 연도별 | 총세입액 | 총세출액 | 다음연도 이월금 | 비 고 |
|---|---|---|---|---|
| 2011 | 51,609 | 35,652 | 15,957 | |
| 2012 | 53,941 | 34,310 | 19,631 | |
| 2013 | 61,776 | 40,565 | 21,211 | |
| 2014 | 69,195 | 51,817 | 17,379 | |
| 2015 | 85,801 | 53,834 | 31.967 | |

※ 총세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표 16〉 국유재산 및 주요장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계 | 국유재산 | 공작물 등 |
|---|---|---|
| 144,546 | 141,539 | 3,007 |

## 3. 교도작업 홍보활동 강화

**가.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수형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교정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시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는 대구, 광주, 대전, 부산 등 지방과 수도권에서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5년에는 10. 28.부터 11. 1.까지 제44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과천시민회관에서 개최하였으며, 교도작업제품과 문예작품 총 1,502점을 전시하였다. 특히 종전에는 교도작업제품

위주로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나, 교정행정 홍보를 위한 교정홍보관을 설치하여 일반 국민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정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행사로 발전시켰다.

### 나. 국화 품평회 개최

수형자들이 한 해 동안 정성스럽게 가꾼 다양한 국화를 한 곳에 모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국화품평회를 2015. 10. 27. 과천시민회관 야외광장에서 개최하였다. 서울지방교정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 행사는 서울구치소 등 6개 교정기관에서 다륜대작 등 220점의 국화를 출품하여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농수산대학 화훼학과 교수 등 3명이 심사를 하여 총 6점의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행사종료 후 법무부 각 기관 및 유관기관에 국화를 기증하여 가을의 국화향을 함께 하기도 하였다.

## 4. 작업장려금 및 조위금 · 위로금

### 가. 작업장려금

작업장려금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국가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작업장려금, 특별작업장려금으로 구분 지급하고 있다. 일반작업장려금은 모든 취업자에게 작업의 종류, 교정성적에 따른 작업 등급 및 작업시간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특히,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 교도작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수형자에게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특별작업장려금을 지급하여 작업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활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작업장려금 1일 지급기준표는 〈표 17〉과 같다.

〈표 17〉 작업장려금 1일 지급기준표

(단위 : 원)

| 구 분 | 생 산 작 업 | | | | | | | | | 비 생 산 작 업 | | | | | | | | |
|---|---|---|---|---|---|---|---|---|---|---|---|---|---|---|---|---|---|---|
| 작업종류 | 외부통근 (개방지역작업) | | | 집중근로 | | | 일반생산작업 | | | 운영지원작업 | | | | | | 직업훈련 | | |
| | | | | | | | | | | 일반운영 지원작업 | | | 취사원 | | | | | |
| 등 급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 지급액 | 15,000 | 12,000 | 10,000 | 8,000 | 7,000 | 6,000 | 2,500 | 2,000 | 1,600 | 1,200 | 1,100 | 1,000 | 3,500 | 3,000 | 2,500 | 900 | 800 | 700 |

### 나. 조위금 및 위로금

수형자가 작업 중 부상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제도로서 조위금, 위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2006년도부터 수형자가 작업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최저 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최근 지급실적은 〈표 18〉과 같다.

〈표 18〉 조위금 및 위로금 연도별 지급실적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위로금 | | |
|---|---|---|---|
| | 인원 | 지급액 | 1인당 평균지급액 |
| 2011 | 6 | 60,804 | 10,134 |
| 2012 | 5 | 73,735<br>(42,709) | 14,747 |
| 2013 | 3 | 11,346 | 3,782 |
| 2014 | - | - | - |
| 2015 | 5 | 98,729 | 19,745 |

※ ( )는 조위금

## 5. 자립형 교도작업

작업시간 부족, 근로의욕 미흡 등 교도작업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수형자의 생활정착금을 마련하여 안정된 수형생활 유도, 가족관계 회복 증진 및 재범방지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자립형교도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립형교도작업은 장기수형자 대상의 구내작업으로 1일 실제 작업시간 8시간을 확보하고 현재의 집중근로작업을 수량과정으로 실시하여 작업생산량 증가실적에 따라 2~3배 인상된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작업형태로서 2015. 12. 말 현재 28개 기관, 79개 작업장에서 1,881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 6. 외부통근작업 활성화

외부통근작업은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출소 후 생계기반 조성을 통한 재범방지의 일환으로 모범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시켜 작업하게 하는 제도이다. 외부통근작업은 2015년 말 현재 전국 27개 교도소에서 1일 평균 1,247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형자와 가족은 물론 취업기업체 및 여론도 매우 좋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취업수형자 또한 높은 갱생의지를 보이는 등 수형자 교정교화에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2012년도에 서울남부교도소 구외 유휴부지에 공장을 신축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구외공장을 증설할 방침이며, 취업직종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 7. 내실 있는 직업훈련 실시

### 가. 산업사회에 유용한 기능인력 양성

수형자 직업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공직업훈련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직업훈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공공직업훈련 3,741명, 일반직업훈련 2,761명 등 총 6,484명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

1) 공공직업훈련

공공직업훈련은 양성훈련과 향상훈련, 숙련훈련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양성훈련은 기능사 자격취득을 목표로 기능에 대한 기초과정이 필요한 자와 학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수용기관에서 기초적인 기능을 연마시키는 훈련이며, 향상훈련은 산업기사 자격취득을 목표로 기능사 자격취득자 및 고등학교 졸업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수용기관 또는 집체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하고 숙련훈련은 기능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수용기관에서 전문기술을 교육시키는 훈련이다.

집체훈련은 화성·서울남부·청주·청주여자·순천교도소 등의 집체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2) 일반직업훈련

일반직업훈련은 양성훈련과 향상훈련, 고급훈련으로 나누며 양성훈련과 향상훈련은 공공직업훈련과 같고, 고급기술훈련은 기사이상의 자격 취득을 목표로 기사전문과정인가를 받아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하여 원주·청주·대구·진주·대전·청주·전주교도소에서 2년 이상의 과정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일반직업훈련 과정에 단기집중훈련과 교도작업적응훈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실시인원은 〈표 19〉와 같다.

〈표 19〉 직업훈련 실시인원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 3,273 | 3,279 | 3,470 | 3,537 | 3,725 | 3,825 | 4,129 | 4,852 | 6,276 | 6,502 |
| 공공직업훈련 | 양성·향상훈련 | 2,740 | 2,683 | 2,536 | 2,783 | 3,164 | 3,076 | 3,386 | 3,336 | 3,811 | 3,288 |
| | 숙련훈련 | - | 217 | 490 | 430 | 327 | 369 | 350 | 249 | 397 | 453 |
| 일반직업훈련 | | 533 | 379 | 444 | 324 | 234 | 380 | 393 | 1,267 | 2,068 | 2,761 |

**나. 기술자격 취득**

법무부는 직업훈련을 수료한 수형자에게 각종 기술검정에 응시하여 소정의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1969년 직업훈련을 개시한 이후 2015년 현재 3,710명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총 160,155명이 각종 기술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특히 석사학위 수준의 학력으로 평가받으며 산업현장의 '마에스트로'라 불리는 기능장 자격을 2007년도 2명, 2008년 4명(기술사 1명 포함), 2009년 8명, 2011년 2명, 2012년 4명, 2013년 4명, 2014년 1명, 2015년 5명이 취득함으로써 2000년부터 16년간 총 50명(기술사 2명 포함)의 기능장을 배출하였다.

〈표 20〉 기술자격 취득인원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2,870 | 2,506 | 2,693 | 2,740 | 2,856 | 2,803 | 2,813 | 2,953 | 3,278 | 3,264 |
| 기 술 사 | - | - | 1 | - | - | - | - | - | - | - |
| 기 능 장 | 8 | 2 | 3 | 8 | - | 2 | 4 | 4 | 1 | 5 |
| 기 사 | 21 | 5 | 3 | 2 | 4 | 4 | - | 11 | - | - |
| 산업기사 | 264 | 237 | 269 | 145 | 277 | 288 | 252 | 158 | 79 | 50 |
| 기 능 사 | 2,577 | 2,262 | 2,417 | 2,585 | 2,575 | 2,509 | 2,557 | 2,780 | 3,198 | 3,209 |

**다. 기능경기대회 참가**

직업훈련 수료 후 기능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각종 기능경기대회에 참가시켜 2015년에는 87명이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였다.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은 〈표 21〉과 같다.

〈표 21〉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173 | 153 | 121 | 128 | 134 | 83 | 85 | 95 | 101 | 87 |
| 지방대회 | 159 | 136 | 112 | 118 | 118 | 71 | 72 | 84 | 88 | 77 |
| 전국대회 | 14 | 17 | 16 | 10 | 16 | 15 | 13 | 11 | 13 | 10 |

**라. 직업훈련교사 신기술 습득**

전국 교정기관의 모든 직업훈련교사들이 21세기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첨단 직종에 대한 이해와 신기술을 습득하여 직업훈련교사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고 신지식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매년 2회(하계, 동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 입교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중심의 기술과 선진교수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연수기회를 갖고 있으며, 또한 각 지방교정청별로 지역 폴리텍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사회 직업훈련기관을 정기적으로 참관하는 등 수형자 직업훈련 교육에 더욱 힘쓰고 있다.

## 제 7 항 첨단 전자경비시스템 구축·운영

### 1. 개 요

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은 국내 교정시설에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장비의 성능 분석, 교정 환경에 적합한 장비 발굴, 사업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2006년도에는 정책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항교도소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시범기관 운용결과 예산절감 등 효과가 탁월, 혁신우수사례로 선정되어 2006. 10. 31. 제48차 국무회의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을 비롯한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약 10분가량 동 안건으로 부처보고를 하였다. 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도까지 전국 38개 교정시설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 성동구치소, 2011년 광주교도소 등 4개 기관, 2012년 원주교도소 등 2개 기관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하였다. 신축·이전기관에는 전자경비시스템이 포함되어 구축되고 있다.

### 2. 추진배경

**가. 인력에 의존한 교정시설 경비체계 개편**

기존의 교정시설 외곽경비는 사람의 오감작용에 의한 인력 의존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의 육안 등 오감에 의한 경비방식은 그 한계가 있어 빈틈없는 경비를 유지할 수 없었다. 특히 범죄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의 경비는 수용자의 도주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더욱 완벽한 경비체계가 요구되었다.

**나. 경비교도대의 폐지**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국방의무를 수행할 군복무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경비교도대가 폐지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되어 2005년도부터 부대간 통·폐합이 진행되어오다 2012년 완전 폐지되어 교정시설 외곽경비의 심각한 공백이 우려되었다.

**다. 다양한 첨단 장비의 개발**

현대 첨단 과학은 과거 인력에 의존하던 일을 기계에 의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경비체계도 과학 장비가 개발되어 과거 인력에 의한 감시보다 정밀하고 완벽하게 경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발전된 전자 과학 장비의 교정시설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또한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 3. 전자경비시스템 구축 내용

교정시설은 사형수 등 각종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완벽한 시설보안이 요구된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도주사고 중 주벽을 통한 도주사고는 불과 4건에 불과하지만 다수인원이 가담할 가능성이 있고, 감시대 근무자가 사라지게 되면서 수용자들의 주벽에 대한 경계의식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외곽경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자경비시스템은 내부 탈출은 물론 외부 침투 시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감지 센서를 중복 설치하고, 정전 등의

장애에도 시스템의 중단이 없도록 무정전 전원 장치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장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센서와 연동되는 CCTV 카메라, 경고방송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주요 중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였고, 수용동 또는 공장에서 직원이 비상시에 즉시 중앙통제실에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비상 송신기를 지급하였다. 새로 설치된 장비들은 이미 소수의 인원으로 엄정한 시설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 교정시설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중앙통제실에서 근무하는 소수의 인원으로 시설의 외곽경비는 물론 각종 기기를 제어·통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비시스템은 주로 외곽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부 수용자의 거실에 대한 감시는 수용자들의 인권보호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

### 4. 구축 효과

본 사업은 많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리 교정시설의 경비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선진 교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신축되는 교정시설에서도 감시대가 사라져 더욱 사회 친화적 시설로 변화되었다.

또한 직원 근무회피 장소인 감시대 근무를 전자경비로 대체해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자동화 시스템은 비인가자의 통제구역 접근 시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며, 중앙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가 영상화면을 제공, 자동으로 경고 방송을 실시하는 등 최대한 근무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제 8 항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운영

### 1. 개 요

최근 수용자들의 인권의식 강화 및 처우의 향상으로 거실 출입횟수가 폭증함에 따라 수용자 동태관찰, 상담 업무와 같은 교도관 본연의 업무보다 입·출실 인원관리 등 단순 반복적 업무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어 교정시설 내 법질서 확립과 수용처우에 소홀해 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교정본부에서는 8개년 계획으로 전국 교정시설에 '교정시설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성동구치소 등 3개 이전대상기관, 특수기능 시설인 천안개방교도소 1개 시설 및 이미 구축된 9개의 신설기관을 제외한 39개 대상기관 중 1단계로 2008년 인천구치소를 비롯한 10개 기관에 대하여 구축을 완료한 이래 2014년까지 38개 기관의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부산구치소를 2015년에 구축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신축·이전기관에는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이 포함되어 구축되고 있다.

### 2. 추진배경

그동안의 교정관련 정책은 거실·작업장 환경 개선 등 수용자 처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수용자의 수용환경은

많이 개선된 반면, 교도관의 근무여건은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최근 수용자의 인권의식이 강화되고 처우가 향상되면서 각종 고충처리, 운동, 접견, 교화활동 등을 위한 수용자의 거실 출입 횟수가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가령 미결수용동 근무자 1인이 통상 20여개 거실에 수십 명의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1일 평균 약 120회 가량 거실문을 개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근무자는 수용자 동태관찰 및 상담 업무와 같은 본연의 업무보다는 수용자의 입·출실 인원 관리 등 단순 반복적 업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 교정시설 내 법질서 확립과 수용처우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출입문에 전자잠금장치를 설치해 근무자실에서 출입문 원격제어, 근무자실과 수용거실간 인터컴을 통한 통신망 구축 및 거실문 개·폐시 자동 영상확인 시스템 구축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과학 공법을 교정에 접목시키게 되었다.

## 3.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내용

### 가. 구성설비

이 시스템의 구성설비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기존 거실문에 '전자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근무자가 원격 또는 현장에서 제어하는 시스템과 거실 내부에 수용자와 통화하거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통신시스템', 수용동 복도 거실문의 개폐상태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확인시스템', 근무자실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합 제어하는 '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모든 CCTV 카메라의 영상은 근무자실에서 실시간 녹화되며, 정전 등 비상상황 시에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작동되어 약 30분간 전원을 공급,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나. 운영방법

수용동 근무 직원은 먼저 보안과에서 거실카드 Key와 제어반 Key를 가지고 근무자실에서 자기만의 패스워드로 시스템을 부팅하여 근무준비를 완료한다. 준비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 거실문의 개방은 평상시 개별 제어를 원칙으로 하며, 화재 등 비상시에는 원터치로 부분 또는 모든 거실을 개방할 수 있다. 또한, 수용동 담당 근무자가 근무자실을 떠나 관찰 중 현장에서 거실문을 개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자실로 다시 돌아와 개방할 필요 없이 지급된 RF카드(Radio Frequency card)방식의 거실카드 Key를 자동 잠금장치에 가볍게 접촉하여 문을 개방할 수 있다. 감독자와 야간 순찰자 등에게는 모든 수용동의 거실문을 개방할 수 있는 마스터카드 Key를 지급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구축 효과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이후 수용자들은 자신의 고충사항 등을 거실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수시로 인터컴을 통해 근무자와 대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자도 수용자들의 이러한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용거실 출입문과 수용동 출입문도 근무자가 통제할

수 있어 원활하게 수용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시스템은 근무자들을 단순 반복 업무에서 해방시켜 더 많은 시간을 수용자 상담 및 관찰에 활용할 수 있어 근무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정사고 예방과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으로 좀 더 나은 교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인력에 의존한 경비나 계호에서 탈피하여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현대 교정행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 제 8 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 제 1 항 출입국·외국인정책의 기본 방향

UN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국제이주민의 수는 2억 4천4백만 명으로서 2000년과 비교하여 41%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국제이주자의 증가현상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급격한 인구변화,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제 이주의 규모나 구성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주 및 통합정책의 효과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2017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14%)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13.4%)보다 더 많아지고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2015년 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170여 국가 국민, 약 189만 명(총 인구 대비 3.5%에 해당)에 이르는 등 매년 그 수가 급증하고 장기 거주외국인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출산율 제고정책 등 정부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효율적 이민정책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또한 양질의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국내 유입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적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요구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이러한 국내외적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며 다문화사회를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선진 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2015년 성과관리 전략목표를 '안전과 통합을 향한 외국인정책 추진'으로 정하고, '미래지향적 출입국서비스 구현'과 '재한 외국인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이민정책 추진과 사회통합 기반 구축'을 2대 성과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품격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자 유치기반 확충, 복수비자·전자비자 발급 확대 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국민안전 및 체류외국인 편의를 위한 이민행정서비스 제공, 우범 외국인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이민자가 행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체류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및 국적 신청자 처우 개선,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 및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출입국·외국인정책 홍보 강화 등 11개 세부 과제를 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제 2 항 미래 지향적 출입국서비스 구현

### 1.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격 출입국심사 서비스 제공

#### 가. 환승관광객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 확대 시행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제3국으로 가는 환승객과 제주도로 가는 중국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72시간 또는 120시간 동안 입국공항의 인근지역을 관광하는 조건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2012년 10월 29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 후 2013년 5월 1일부터 인천·김해공항에서 본격 시행하였다.

2012년 10월 29일 시범운영 이후부터 2015년 말까지 무비자 입국 환승관광객은 총 561천명이며 1인당 순수 국내지출비용은 76만원으로 국내 총 지출비용이 약 4,263억원(561,050명×7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 나.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

우수 외국인광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4년 3월 17일부터 구매력이 높은 우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방문우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한국방문 우대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은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 발급과 출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또는 우대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며, 환율우대 및 관광지 통역지원 등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2015년 말 현재 카드발급 누적건수는 2,654건이며, 우대카드 소지자의 국내소비금액은 약 234억원(우대카드 소지자 입국기록 10,207건 × 중국인 1인당 국내평균 소비금액 230만원)으로 추산된다.

#### 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 확대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 Smart Entry Service)란 사전에 지문과 얼굴 사진을 등록하면 줄을 서서 출입국심사관에게 여권을 보이고 대면심사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본인이 직접 여권과 지문을 자동출입국심사대에 인식시켜 간편하고 신속하게 출입국심사를 마치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이다.

2008년 6월 26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말 현재 등록자 377만 명, 이용자 4,443만 명을 돌파하였다.

2015년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여 출입국한 인원은 1,313만 명으로 2014년 885만 명 대비 약 48% 증가하였고, 2015년 총 출입국자의 약 19.7%(1,313만명/6,637만명)를 차지하여 전년도의 14.4%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이용가능 연령을 17세 이상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은 14세 이상으로 확대(2013. 7. 15.)하고 외국인 중 국내거소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 거주(F-2)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 외국적항공사의 승무원 복수상륙허가자 등으로 이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

하여 인천공항, 서울(서울, 서울남부 공동사용)·수원·인천출입국사무소에 자동출입국등록센터를 추가 설치(2015. 11. 1.)하는 등 출입국자의 여행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표 1〉 자동 출입국심사대 등록자 및 이용자 추이

(단위 : 명)

| 연 도 | 계 | 2008년 (6.~12.)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등록자 | 3,770,345 | 38,601 | 89,379 | 144,555 | 389,396 | 440,532 | 473,059 | 566,321 | 1,628,502 |
| 이용자 | 44,431,855 | 834,915 | 1,943,676 | 2,637,979 | 4,054,231 | 5,734,952 | 7,245,752 | 8,847,905 | 13,132,445 |

※ 2015년 기준 일평균 등록자 4,461명, 일평균 이용자 35,979명

### 라. 인천공항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전면 운영

2015년 3월 23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입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패스트 트랙을 전면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패스트 트랙은 인천공항 1번, 6번 구역에 전용출국장을 두고, 보행 장애인, 유소아, 고령자, 임산부, 출입국우대카드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누적이용자는 458,515명으로 맞춤형 교통약자 배려시설을 마련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하여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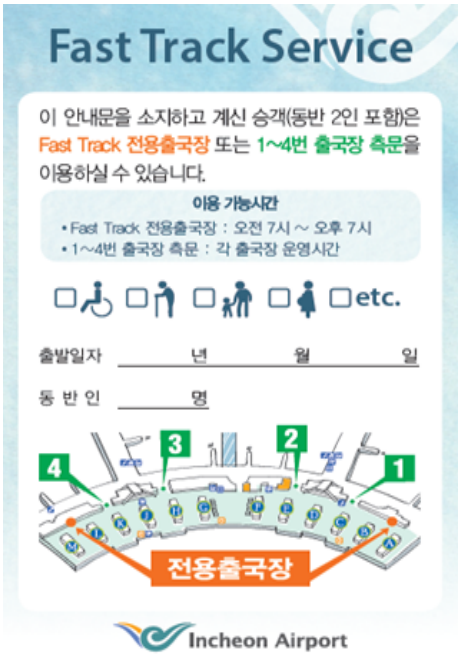

### 마.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

2015년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12일간 개최된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사참가자 전용출입국심사대를 설치하는 등 출입국심사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불법체류자 등 국익위해 외국인을 적극 단속하고 출입국심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이외에도 제7차 대구·경북세계물포럼('15. 4. 12.~17.), 2015 세계교육포럼 ('15. 5. 19.~22.),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15. 10. 2.~11),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15. 10. 19.~23.) 등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주요 국제행사 참가자에 대해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였다.

### 바. 출입국자 및 위변조여권 적발 현황

2015년도 출입국자 총 수는 지난해의 61,652,158명보다 7.6% 증가한 66,372,908명으로 우리나라 출입국자 기록을 경신하였다. 국민은 39,111,816명으로 전년도보다 19.5%(32,722,368명) 증가하였으며, 외국인은 27,261,092명으로 전년도보다 5.8%(28,929,790명) 감소하였다. 이는 작년 5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외국인이 국내입국을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자 총수 가운데 국민과 외국인의 구성비율은 국민이 39,111,816명(69.7%), 외국인이 27,261,092명(33.3%)으로 전년도의 구성비율(53% : 47%)과 비교하면 국민은 16.7% 증가한 반면 외국인은 13.7% 감소했다.

〈그림 2〉 2015년 월별 입국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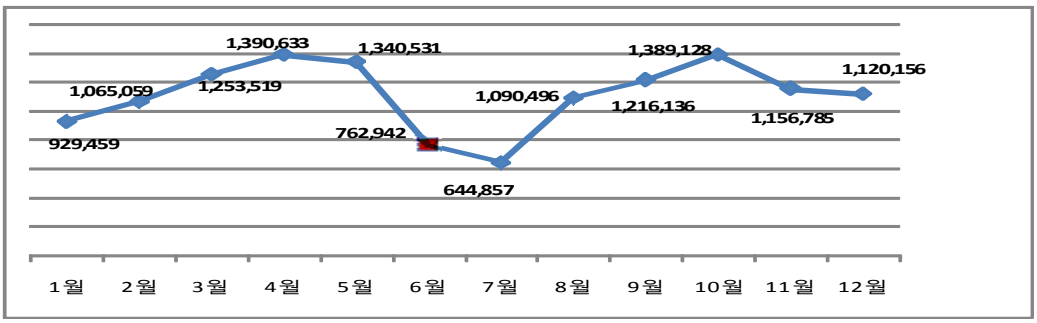


1) 외국인 입국자

2015년도 외국인 총 입국자는 13,359,701명으로 전년도 14,264,508명에 비해 6.3% 감소하였다.

국적별 입국자 수는 중국 641만명(47%), 일본 186만명(14%), 미국 86만명(7%), 타이완 55만명(4%) 순이다. 중국은 전년대비 14만명(-2.2%), 일본은 2만3천명(-19%), 대만은 12만5천명(-18%)이 감소하는 등 그동안 우리나라를 많이 찾던 국가 국민들의 감소세가 나타났다. 전년대비 입국자의 감소는 2003년부터 계속하여 증가하던 외국인 입국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며 이는 5월에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수수료 면제조치 등을 신속하게 시행하여 8월 이후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

입국목적별로 살펴보면, 관광 및 방문이 71%(925만명)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 3%(41만명), 방문취업 2%(26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2) 국민 출국자

국민 출국자는 19,580,398명으로 2014년 16,372,830명 대비 20% 증가하였다. 2007년 이후 감소하던 국민 출국자가 2010년 국내 경기회복 및 환율안정 등으로 대폭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2015년에도 2014년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94만명, 40대 370만명, 50대 326만명 순이다.

〈그림 3〉 주요국가 입국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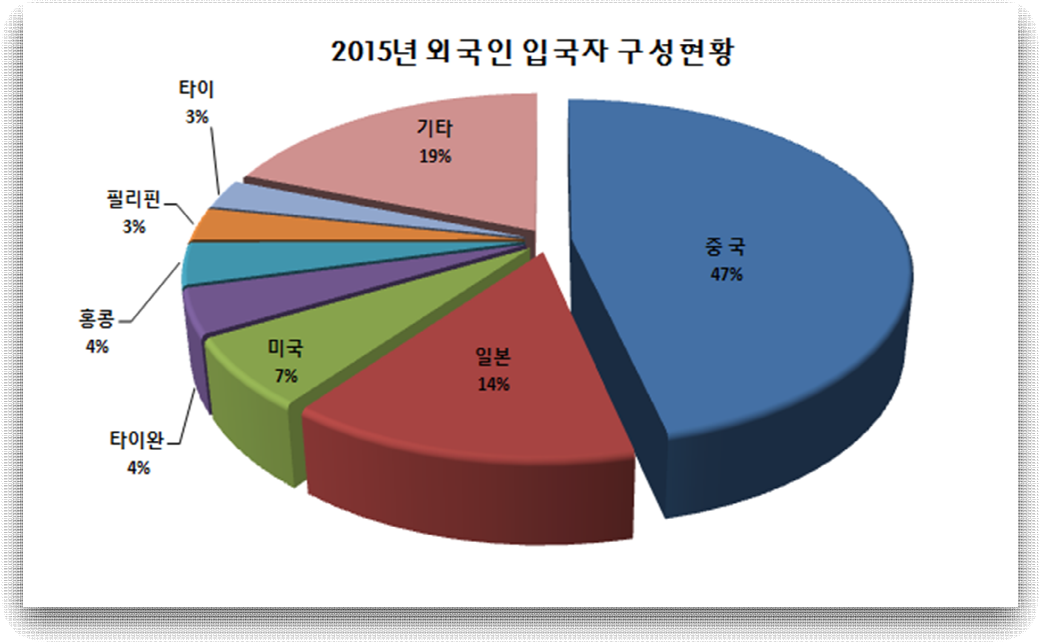


3) 위변조여권 적발 현황

2015년도 위변조여권 적발 건수는 총 3,008건으로 전년 대비 약 14.7% 감소하였다. 세계 각국이 전자여권 등 신여권을 발급하면서 위조방지 보안요소를 강화함에 따라 여권 위변조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 심사시스템의 과학화로 사진교체 등의 전통적인 위변조 방식이 쉽게 적발됨으로써 위변조 여권을 행사하여 입국하려는 사람이 줄어들어 2006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 위변조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2010년 9월부터 신원 의심 외국인에 대한 선별적 지문 확인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과거 국내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다시 국내에 입국하기 어려웠던 외국인이 타인명의 여권을 행사하여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 1월부터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타인명의 여권 적발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위변조 적발 건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문 및 얼굴정보확인제도를 통해 적발되던 타인명의 여권 적발 건수가 줄어든 결과이다.

2015년 여권의 위변조 유형별 적발 건수로 보면 타인명의 여권(86.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위조제작(5.7%), 타인여권(3.4%) 등이 많이 적발되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날로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는 여권 위변조 수법에 대응하여 여권 위변조 동향을 신속·정밀하게 분석하여 전파함은 물론 사전승객정보시스템(APIS: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을 통한 탑승자 분석,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표 2〉 여권 위변조 유형별 적발 현황

| 유형 / 연도 | 총 계 | 타 인 명 의 | 위 조 제 작 | 타 인 여 권 | 사 진 교 체 | 기 재 변조 등 | 기 타 |
|---|---|---|---|---|---|---|---|
| 2011 | 3,520 | 2,968 | 81 | 240 | 106 | 18 | 107 |
| 2012 | 5,703 | 5,152 | 143 | 226 | 48 | 34 | 100 |
| 2013 | 4,179 | 3,759 | 110 | 172 | 61 | 13 | 64 |
| 2014 | 3,527 | 3,064 | 205 | 148 | 47 | 8 | 55 |
| 2015 | 3,008 | 2,601 | 171 | 101 | 34 | 19 | 82 |

※ 타인명의 여권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국의 여권발급 기관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여권을 의미함

## 2.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자 유치기반 확충

### 가. 외국인유학생 활용방안 여건 조성

법무부는 우수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취업을 촉진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의 취업·구직 및 창업을 위한 국내 체류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완화 조치로 국내 기업이 우수 외국인을 고용하여 역동적인 혁신경제 실현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알면서 국제감각을 갖춘 우수한 유학생들이 국내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외국인 유학생의 활발한 유치를 통해 국내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등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전공 분야와 취업하려는 직종 간의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취업 비자(E-7)를 발급해주고,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업비자 발급 심사에서 전공과 취업분야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주고, 일정수준 이상의 학점 취득 요건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요건도 폐지하기로 하였다.

구직비자(D-10)의 요건도 완화하여, 졸업 후 취업준비자에 대한 학점 3.0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지도교수 추천 등 요건도 폐지하였다. 또한, 전문학사 및 학사의 구직비자 체류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늘여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준비 기회를 확대하였다.

국내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무역경영(D-9)을 하려는 경우, 창업투자금 기준요건을 기존 3억원에서 1억원(국내 형성 자본도 5천만원까지는 투자금으로 인정)으로 낮추어 무역경영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하였고,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에도 '창업이민종합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총 4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무역경영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자가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석사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전공분야 제한을 폐지하고 전공과 무관하게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영주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국내 석·박사 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경우는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를 초청(2명까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학생이 국내에서도 부모의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받으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자·체류 관련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2015년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4회에 걸쳐 전국단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건의사항 중 정책에 반영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투자자 등 우수인재가 편리하게 영주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영주자격 점수제 도입('15. 6. 1.), 한국 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할 본국 직원 비자 발급 시 1년 이상의 본사 또는 다른 해외지사 근무 경력 요구를 동일·유사 업종 타 업체 근무 경력도 인정('15. 6. 3.), 투자기업의 체류 등의 편의지원을 위해 전용 창구 설치 및 운영('15. 6. 22.), 기업투자(D-8)비자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징구 억제('15. 6. 24.) 등 조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친화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였다.

### 다. 투자이민유치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 및 제도 개선

1) 부동산투자 이민제

법무부는 2010년 2월부터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를 위하여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제주도 지역에 도입하였다.

이후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적용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강원도 평창알펜시아 지구('11. 2. 14.), 전남 여수 경도지역('11. 8. 19.), 인천경제자유구역('11. 11. 1.), 부산 해운대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13. 5. 20.),를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2015년도에도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15. 11. 1.)을 투자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도입 이후, 2015년 12월 말 현재 제주도 지역 총 1,630건(1조 1,127억원), 알펜시아지역에 3건(15억원), 인천 5건(35억원)을 유치하였다.

2)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법무부는 국내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자격으로 변경을 허가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2013년 5월 27일부터 도입하였다.

투자유형 및 방식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운용하는 원금보장·무이자형 공익펀드와 법무부장관이 정한 낙후지역 개발사업자에 의한 손익발생형 지역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투자기준금액은 일반 투자이민이 5억 이상, 55세 이상 은퇴이민자는 3억 이상으로 구분된다.

2013년 12월말 기준 총 3건, 13억원을 유치하여 투자유치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이후 투자이민상담센터 개소, 투자금송금 전담은행 지정,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 지정, 해외 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확대 노력으로 2015년 12월말 현재 130건, 603억을 유치하였다.

## 3. 복수비자, 전자비자 발급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 가. 맞춤형 비자서비스로 중국 관광객 유치

법무부는 우리나라 관광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비자발급 방식을 맞춤형 비자서비스 체제로 전면 개선하였다.

2015년 1월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전자비자를 발급함으로써 재외공관 방문 필요 없이 손쉽고 빠르게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전자비자를 전담으로 발급하기 위한 전자비자센터를 국내에 설치('15. 4. 22.)하였다.

그동안 복수비자 발급 횟수 등에 따라 1년, 3년, 5년으로 차등 부여되던 복수비자 유효기간을 5년으로 일괄 확대하고 복수비자 발급 대상자도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자,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재학생 등으로 확대하였다.('15. 4. 20.)

최근 방한 중국인 급증으로 주중공관의 비자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비자 접수와 교부 등 간단한 업무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비자신청센터를 중국 광저우, 칭다오에 설치('15. 8. 24.)하였다.

2015년 중국인 전체 단체관광비자 163만 건 중 14.5%인 236,174건을 전자비자로 발급하였다.

### 나. 메르스로 급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후속조치 시행

메르스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6월에만 전년 대비 50% 이상 급감하였고, 이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에 의존하던 국내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여행업계 등 각계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그 세부내용은 중국 등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수수료를 2015년 7월 6일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 면제, 메르스 발생시기 전후인 3월부터 6월까지 발급된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일본 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 허용이다.

이후 수수료 면제는 여행관련업계의 요구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연장되었다.

법무부의 신속한 관광활성화 대책마련으로 메르스 여파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으며 2016년도에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산업 지원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4. 국민안전 및 체류외국인 편의를 위한 이민행정서비스 제공

### 가.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범운영

법무부는 외국으로부터 항공기 도착 전 승객명부를 제출받아 규제자 여부를 확인하여 우범승객의 입국을 차단하는 사전승객정보분석(APIS)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으나, 2014년 3월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건을 계기로 도난·분실여권 소지자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범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란 외국 출발지 공항의 탑승권 발권 전 단계에서 항공사가 승객예약명부를 법무부로 전송하면, 법무부에서 입국규제자, 분실여권 소지자 등 여부를 검색하여 탑승권 발권가능 여부를 항공사에 통보해 줌으로써 우범승객의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2015년 2월 16일 일본 나고야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적항공기를 대상으로 처음 시범운영하였으며, 이후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2015년 4월, 7월, 10월 3회에 걸쳐 5개국 8개 공항으로 확대하였다. 시범운영 결과 2015년 12월 말 기준 924,932명을 사전 확인하여 299명의 도난·분실여권 소지자, 입국규제자 등의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6년에도 미국 LA공항, 프랑스 샤를 드 골공항 등 입국자 수가 많은 세계 주요 공항으로 시범공항을 확대할 계획이다.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불가 통보자에 대한 탑승방지 의무를 규정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2016년 9월 30일 시행 예정으로, 앞으로 국경보안은 더욱 강화되고 선량한 대부분의 승객들에게는 보다 신속한 입국심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나. 외국인 형사범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마약, 성폭력 사범 등 범죄 행위로 형이 확정된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형사범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관계기관이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단계에서,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외국인 형사범에 대하여 한글 성명을 사용하고 영문 성명은 참고로만 입력하고 있어, 영문 성명만을 사용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의 업무 연계 과정에서 외국인의 정확한 신원확인에 큰 어려움을 겪어 오던 것을 2015년 11월부터 외국인 형사범의 신속한 강제퇴거와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은 다양한 시스템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우선,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영문 성명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이 외국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검찰·경찰은 외국인 형사범 입건 시 영문 이름을 자체 업무처리정보시스템에 필수적으로 입력토록 하여 관계기관 간 인적사항 불일치로 인한 신원확인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또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 형사범의 벌과금 납부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여 벌금미납자의 출국을 제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다.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 및 유출방지 대책 마련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스팸, 보이스피싱 등 2·3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여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대국민 서비스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최대 위협 요소가 시스템 결함이 아닌 '사람'에 있다는 인식 하에 일선기관 개인정보 취급·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와 유출방지 및 정보제공절차의 일원화를 위한 맞춤 교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 5. 우범 외국인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가.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정책 지속 추진

2015년에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불어든 한류열풍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문호개방에 따라 관광객이 입국 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추세가 지속되어 체류외국인 수와 더불어 불법체류외국인 수의 증가가 지속되었다.

증가하는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연중 상시단속 실시 및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도권 광역단속팀을 신설하여 단속인력 부족으로 인한 단속 사각지역에 대해 단속을 확대하고, 이민특수조사대를 비롯한 출입국관리사무소별 기획조사 전담반을 운영하여 불법입국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출입국관련 범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불법체류 발생 근원을 차단함과 동시에, 외국인 밀집지역 42곳을 재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 불법행위 발생 환경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불법행위 근절 계도활동,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합동 순찰·단속 등 실시를 통하여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불법체류 다발 7개 국가 주한공관원을 대상

으로 개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불법체류중인 자국민의 자진출국 독려를 요청하고, 자진출국 안내문을 각 주한 공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여 자진출국을 적극 홍보하였다.

불법체류 감소정책의 주요 성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 19,925명, 불법고용주 5,818명 등 총 25,743명을 적발하였으며,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방지 사전계도 및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여 28,576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하였으며,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신분세탁자 등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4,630명을 적발하는 등 불법체류 발생 근원을 차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의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체류외국인 수는 2014년 말 1,797,618명에서 2015년 말 1,899,519명으로 5.7% 증가하였으나 불법체류자 수는 2014년 말 208,778명에서 2015년 말 214,168명으로 2.6% 증가하여 체류외국인 수의 증가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 나. 불법고용 방지 홍보활동 강화

단속 위주의 정책으로는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3년부터 단속과 함께 불법고용 방지 사전 계도를 병행하여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출국하도록 하는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2015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었다.

2015년도에 단속직원이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을 일일이 방문하여 고용주 및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총 8,811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고용 방지 사전계도를 실시하였고, 각 사무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언론, 유관 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지역 실정에 맞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체류 다발 7개 국가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개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불법체류중인 자국민의 자진출국 독려를 요청하고, 자진출국 안내문을 각 주한 공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는 방식으로 자진출국을 적극 홍보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다각적인 자진출국 유도 정책을 시행한 결과, 28,576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였고, 고용허가제 만기도래자의 불법체류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

### 다.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불법체류외국인대책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방안 등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대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상반기 정부합동단속은 3월 9일부터 5월 1일까지 8주 동안 총 250명, 하반기 정부합동단속은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주 동안 총 270명이 참여하여 국민 일자리 잠식이 심한 대규모 건설현장,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사전계도 후에도 계속해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혐의가 있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8,736명, 불법고용주 등 2,393명 등 총 11,129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8〉 정부합동단속 현황

| 연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기간 | · 11.1.~30. | · 5.7.~6.30. | · 5.6.~6.30.<br>· 10.7.~11.30. | · 5.12.~25.<br>· 6.9.~29.<br>· 10.13.~11.9. | · 3.9.~5.1.<br>· 9.1.~11.8. |
| 참여인원 | 250 | 276 | 505 | 406 | 520 |
| 불법체류자 | 1,874 | 4,076 | 7,078 | 4,373 | 8,736 |
| 불법고용주 | 562 | 1,219 | 1,902 | 1,257 | 2,393 |

**라. 기획조사 및 동향조사 강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불어든 한류열풍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문호개방에 따라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체류 전락 추세가 급증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불법입국하는 수법이 더욱 다양·교묘해짐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자진출국 유도를 통한 불법체류 감축 추진과 더불어 불법입국·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의 적발을 통해 불법체류 유발 환경을 차단하는 기획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출입국 관련 사건에 대한 기획수사 능력이 특화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이민특수조사대 외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이민특수조사대를 추가 신설하고, 각 사무소별 기획조사 전담반 구성, 기획조사 기법연구 등 동향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요한 사건이나 대규모 조직범죄의 경우에는 이민특수조사대 등을 중점수사 사무소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출입국 관련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

2015년도에 기획조사를 추진한 결과, 허위초청 알선자 등 4,630명(773건)을 적발, 그 중 48명을 구속, 261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2,939명을 강제퇴거 조치하는 등 전년도 적발인원 4,324명에 비하여 성과가 7.1% 증가하였다. 이는 기획조사 기법연구, 중점 수사사무소 지정 등 기획조사 활성화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특히 구속 실적은 전년 대비 약 108.7% 증가하였다.

외국국적 동포 자격 부정취득자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허위 서류 제출 등 위법사실이 있는 92명을 출국조치 하였고, 유흥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의 인권침해 예방 및 미풍양속 저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와 퇴폐행위 마사지업소 등을 집중단속하여 불법취업 외국인 335명과 고용주 115명 등 총 450명을 적발, 강제퇴거하거나

통고처분하였으며, 무자격 방송출연 외국인 등을 집중단속하여 외국인 12명, 고용주 6명 등 총 18명을 적발, 통고처분하였다. 또한 무자격 외국어강사의 불법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인 254명, 고용주 11명 등 총 265명을 적발, 출국조치 또는 통고처분하였다.

기획조사 활성화 및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 회의를 2회 개최하고,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추진실적 평가보고회, 동향조사·사범·보호기법 연구 발표회, 권역별 동향조사 요원 정례회합을 통한 동향조사 기법 및 관련 정보 공유에도 힘쓰는 등 국민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에도 노력하였다.

〈표 9〉 기획조사 추진 실적

(단위 : 건)

| 구 분 | 계 | 위변조 여권 | 위장결혼 | 불법취업 | 기 타 |
|---|---|---|---|---|---|
| 2014년 | 723 | 139 | 90 | 83 | 411 |
| 2015년 | 773 | 126 | 77 | 95 | 475 |
| 전년대비(%) | 106.9 | 90.6 | 85.6 | 114.5 | 115.6 |

**마.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 강화**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불법체류자 단속과 함께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사전계도를 병행하는 단속체계를 유지하여 단속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였고, 불법체류자 단속활동과 관련된 적법절차 준수,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사무소별로 관할 소방서와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기적인 소방훈련 및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소방·전기시설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소방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였으며,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명의 직원을 국군의무사령부의 응급구조사 양성 과정에 위탁 교육시켰다.

또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보호외국인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보호실의 출입문을 기존 열쇠를 사용한 수동개폐 방식에서 전자제어시스템에 의한 자동개폐 방식으로 변경하여 인천·수원·부산 등 10개 출입국관리기관에 설치 완료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 등 인권기관이 외국인 보호시설을 점검한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였고, 의료진이 없는 사무소에서는 인근 병원과 체결한 협약 등을 통하여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였다.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외국인 고충상담관을 지정·운영하여 보호외국인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보호외국인 체불임금 2,542건(약 52억원), 의료구호 557건 등 총 7,492건의 고충을 처리하였다.

**바. 출입국사범 처리 현황**

2015년에 처리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는 124,515명이다.

이 중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21,919명(17.6%), 출국명령 받은 외국인은 5,564명(4.5%), 출국권고 받은 외국인은 3,192명(2.6%)이었고, 고발된 사람은 1,850명(1.5%) 이었다.

그 외에 통고처분은 29,272건(23.5%), 과태료는 8,558건(6.9%), 처분면제 등 기타 54,160건(43.4%) 이었다.

〈표 10〉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현황

(단위 : 명, 천원)

| 연도 | 총계 | 강제퇴거 | 출국명령 | 출국권고 | 통고처분 | | 고발 | 과태료 | | 기타 |
|---|---|---|---|---|---|---|---|---|---|---|
| | | | | | 건 | 금액 | | 건 | 금액 | |
| 2014 | 113,351 | 18,316 | 3,776 | 3,352 | 31,236 | 32,531,430 | 1,613 | 11,000 | 1,528,616 | 44,058 |
| 2015 | 124,515 | 21,919 | 5,564 | 3,192 | 29,272 | 35,037,850 | 1,850 | 8,558 | 1,312,070 | 54,160 |

※ 기타 : 처분면제 등

## 제 3 항 재한 외국인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이민정책 추진과 사회통합 기반 구축

### 1. 이민자가 행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1)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추가 지정

법무부는 2009년부터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및 헌법적 가치 등의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민자의 프로그램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2014년 304개 운영기관을 308개로 확대 지정하였다.

2)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인원 증가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없이 해당 단계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참여인원이 증가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하였던 2009년에는 참여자가 1,331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4,429명, 2011년에는 6,519명, 2012년 12,444명, 2013년에는 14,014명이었으며, 2014년에는

22,361명, 2015년에는 25,795명으로 2009년 대비 약 19배 급증하였다.

참여자 수 급증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도 2009년 20개에서, 2010년 77개, 2011년 150개, 2012년 271개, 2013년 278개, 2014년 304개, 2015년 308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11〉 연도별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참여자 현황

|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운영기관(개) | 20 | 77 | 150 | 271 | 278 | 304 | 308 |
| 참여인원(명) | 1,331 | 4,429 | 6,519 | 12,444 | 14,014 | 22,361 | 25,795 |

〈표 12〉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현황(연도별·체류자격별)

(단위: 명, %)

| 구 분 | 합 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합 계 | 86,893 | 1,331 | 4,429 | 6,519 | 12,444 | 14,014 | 22,361 | 25,795 |
| 결혼이민(F-6) | 53,738 (67.7%) | 846 (63.6%) | 3,266 (73.7%) | 4,971 (76.3%) | 8,238 (66.2%) | 8,752 (61.2%) | 13,131 (58.7%) | 14,534 (56.3%) |
| 방문동거(F-1) | 4,675 | 246 | 558 | 534 | 878 | 593 | 391 | 1,475 |
| 방문취업(H-2) | 1,511 | 83 | 130 | 111 | 238 | 212 | 324 | 413 |
| 영 주(F-5) | 783 | 90 | 125 | 33 | 66 | 117 | 159 | 193 |
| 유 학(D-2) | 3,120 | 14 | 64 | 154 | 388 | 392 | 806 | 1,302 |
| 기업투자(D-8) | 1,456 | 11 | 89 | 159 | 248 | 328 | 333 | 288 |
| 비전문취업(E-9) | 7,754 | 19 | 44 | 148 | 1,356 | 1,272 | 2,181 | 2,734 |
| 기 타 | 14,036 | 22 | 153 | 409 | 1,032 | 2,528 | 5,036 | 4,856 |

3) 이민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법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던 사전평가를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자체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기관의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평가를 거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였다.

또한, 임신, 출산, 장애, 취업, 농어촌 격오지 등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민자를 위하여 1명의 강사가 9명의 이민자와 컴퓨터 화상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육을 하는 '온라인 화상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총 853명이 참여함으로써 최초 도입한 2010년 참여자(136명) 대비 6배 증가하였다.

외국인근로자, 회화강사 등 주간반 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민자 특성을 반영하여 야간반, 주말반 등 특수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2015년 183,735명(2015년 연인원 404,742명 중 45%)이 야간·주말반에 참여하였다.

4) 한국어강사 및 기본소양평가 감독관 역량 강화

한국어강사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국립국어원장이 체결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강사 공동연수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강사 공동연수회를 개최하였다.

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읽기, 이해하기, 대화하기' 3개 영역에 대한 기본소양평가 감독관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2회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 나. 이민자 및 자녀의 적응지원 강화

1)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중도입국자녀, 외국인유학생 등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기초법·제도 안내 및 사회적응정보를 제공하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였다.

다양한 체류자격의 이민자에 맞게 일반적인 사회적응정보 이외에 미래진로, 부부교육, 인권보호, 대한민국 구성원 되기 등 대상자별로 특화된 정보도 제공하였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자는 47,845명으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최초 2009년 참여자 824명 대비 58배가 증가하였다.

2)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진입지원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재혼하면서 본국에서 데려 온 중도입국자녀가 학교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을 하거나 은둔생활을 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제도를 개선하였다.

즉, 중도입국자녀의 재학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을 차등 부여함으로써 공교육 진입을 유도하였다.

3)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시범사업 실시

체류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체류 및 생활 관련 법률수요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법무부는 언어장벽, 정보부족, 변호사 비용 등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의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내 생활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마을변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10개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별로 5~7명씩 총 57명의 마을변호사를 지정하고,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재한외국인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를 통해 임금체불·이혼·범죄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건수는 총 271건으로,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2016년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4) 이민자 네트워크 운영

법무부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지원정책

에서 벗어나 이민자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 이민자 상호간 한국생활 정보교류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민자 네트워크를 운영하였다.

한국의 전통예절교실, 김장나눔봉사, 내국인과 함께하는 축구교실 등 지역별로 다양한 이민자 네트워크 참여행사를 개최하여 2015년도에 총 4,709명이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에 직접 참여하였다. 출신국가별로 이민자 대표자 총 232명을 지정하고 국내정착에 성공한 국적취득자 65명을 명예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위촉하여 이민자 대상 정착모범사례 교육강사 및 국내 정착가이드 등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 사랑방 등에 결혼이민자 연간 9,573명을 외국인 자원봉사자로 배치하여 통·번역 및 민원안내 도우미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이민자의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민자의 체류, 국적 등 총 3,928건의 고충상담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였다.

5) 정부합동 고충상담 및 한마음 걷기 축제

2015년 10월 25일 오전 서울상암월드컵공원에서는 재한외국인의 우리사회 적응지원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정부합동 고충상담 및 제5회 한마음 걷기축제'가 개최되었다.

이번 고충상담에는 법무부·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에서 14명이 참가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 기관 및 단체 관계자도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사)건강사회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국민과 재한외국인 등 약 2,5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공원둘레길(6.5km) 걷기행사와 함께 외국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정부합동고충상담이 진행되었고, 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 등 보건의료단체가 운영하는 건강캠프를 함께 실시하여 참가한 재한외국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고충상담과 함께 실시된 한마음 걷기 축제에는 화창한 날씨 덕분에 가족단위의 참가자가 많았으며, 고국에 편지보내기, 세계음식 체험, 타악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되어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 다.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조성

1)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과정 운영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 공무원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 및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이민정책 이해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민정책 이해과정은 법무연수원에서 5일(35시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이민제도, 이민정책 동향, 출입국관련 법령, 현장학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에는 연 2회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자체 외국인업무 담당공무원, 경찰청 외사공무원 등 총 44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또한, 이민자가 한국의 법과 제도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국 250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이민자 대상 생활법률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총 4,683명의 이민자가 참여하였다.

2) 제8회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법무부는 2015년 5월 20일(수)에 과천시 소재 '과천시민회관'에서 김회선 국회의원,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주한 외국대사 등 외교사절, 재한외국인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올해 세계인의 날 슬로건인 '차이를 넘어, 더 가까이' 와 같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화합되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세계시민을 고객으로 모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태리 출신 보르도 빈첸조(한국명 김하종) 신부(안나의 집 대표)에게 '올해의 이민자상'을 수여하였다. 보르도 빈첸조 신부는 1990년 33세 때 한국에 건너와서 경기도 성남시에 노숙인을 위한 쉼터 '안나의 집'을 운영하여 24년간 노숙자 약 100만 명에게 무료급식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푸른사람들이 대통령 표창을, 정혜경 평화다문화센터장, 양미경 평화방송 방송인, 정명주 부산대학교 교수 등 7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생각나무 BB센터 안순화 대표 등 7명은 이민자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세계인의 날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 행사 외에도, 재한외국인이 국내 정착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사연 등의 생생한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재한외국인 생활체험 수기 공모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가치나 상징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 '이민정책' 관련 학술·연구 활동을 촉진·조성하고 그 성과를 우리 부 정책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5개 기관이 각각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 '국가경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개방적 이민정책 모색' 등 다양한 주제로 이민정책포럼(5회)을 개최하는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5〉 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 라.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건전한 국제결혼가정 형성 지원

1)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2010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7개 국가 국민과 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의 소개,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강화와 국제결혼의 감소 추세에 따라 2015년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자는 7,057명으로 전년도 이수자 8,103명보다 14.9% 감소하였다.

2)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개선

법무부는 왜곡된 국제결혼 문화(속성결혼 등)를 억제하고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결혼이민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였다. 결혼이민자가 기초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등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 한국인 배우자가 일정 수준의 가족부양 능력을 갖췄을 것 등이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2013년 10월 10일 공포되어 이해관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4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이 강화된 이후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요건 미비로 비자발급이 불허되어 부부간 결합이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영사가 직접 실시한 필기 또는 구술 평가에서 60점 미만으로 탈락된 자들의 경우에도 즉시 사증발급을 불허 하지 않고 2개월의 범위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입국이 지체되는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 한국인 배우자가 소득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로써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 2. 체류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가. 재외동포(F-4)자격자에 대한 취업활동 제한범위 완화

법무부는 국민 일자리 잠식 우려가 없는 제조업 등에 대한 원활한 동포 고용을 지원하고 동포 포용·활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2월 1일 재외동포(F-4)의 취업제한 범위를 완화하였다.

중국 및 구 소련지역 출신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을 점진적으로 확대 부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취업활동범위는 제한적이어서 제조업 등 단순노무분야에 취업이 곤란하여 법무부는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 농축어업 분야를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나. 도서지역 우편민원제 도입**

도서지역 거주 외국인이 체류기간연장 등 각종 체류민원 신청을 위해 원거리 소재 출입국관리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5년 8월 1일부터 도서 지역에 체류하는 등록(거소)외국인으로부터 외국인등록 업무를 제외한 모든 각종 체류허가·신고 업무를 우편으로 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다.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시험실시**

농촌의 고질적 일손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농번기에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필요에 따라 법무부는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으로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도입을 시험실시 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 26일 중국인 19명이 단기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괴산군 절임배추 농가 8곳에 배치되어 출하시기에 맞추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2015년 12월 14일 전원 출국하였다.

법무부는 2016년도에도 파종기 및 수확기에 맞추어 계절근로자제도를 시험실시하고 제도 도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3. 귀화자의 헌법가치 등 국민정체성 함양 및 국적 신청자 처우 개선

**가.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상당수의 귀화자들이 다른 문화권 출신이어서 문화충돌로 인한 사회 부적응을 해소하기 위해 귀화 신청자들이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풍습 등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귀화적격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헌법가치나 국민의식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자료 제공을 통해 사회통합과 귀화자의 올바른 국가관 형성을 촉진하였다.

1) 귀화자의 기본소양 강화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우리나라 국가변천사 등 역사적 인식을 함께하고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하였으며, 기존의 면접시험 문제를 보완하고 새로 개발하여 귀화적격심사에 활용하였다.

또한, 귀화신청자의 헌법가치나 국민정체성 제고를 위해 "나도 자랑스러운 한국인" 소책자를 증보 발간하여 보급, 기존 국민과의 조화로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였다.

2) 국민정체성 함양 및 홍보 강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고귀하게 여기는 국가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국적취득자가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후손 30명에 대하여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으로부터 우리부 유일 추진사업으로 선정된 동 행사에 앞서 '15. 8. 5. 이위종(대통령장, 헤이그특사), 김경천(대통령장, "진짜 김일성 장군"), 이인(독립장, 초대 법무부장관) 후손 10명을 초청하여 안중근

의사기념관에서 법무부장관과의 만남 행사를 가졌다.

그리고 외규장각 도서 반환 및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유럽 등지에 알리는데 기여한 프랑스 국적의 포로스트 마르띤 박사와 우리나라 최초 실내 무료 급식소인 "안나의 집"을 설립하여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지원하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쉼터 및 자립관 등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탈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이탈리아 국적의 보르드 빈첸조 신부를 특별공로자로 인정하여 특별귀화를 허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켰다.

### 나. 국적업무 제도개선

1) 국적취득 신청자의 처우 개선

귀화면접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귀화심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귀화 민간면접관 제도"를 확충하여 종전 9개사무소(서울, 인천, 수원, 양주, 대전, 부산, 대구, 창원, 울산)에서 운영하던 귀화민간면접관 제도를 12개 사무소(청주, 전주, 울산 추가)로 확대 운영하였다.

또한,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3자녀 양육자,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6. 25. 및 월남전쟁 참전용사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자나 국익 기여자에 대해서 국적심사기간을 1/2로 단축하였고, 독립유공자 후손 및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 장애인, 정부수립 이전 국외이주(출생) 동포 등 대한민국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중증 지적 장애인에 대한 적격심사를 간소화하여 면접심사 대신 관할 사무소의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제고하였다.

2) 이공계 분야 외국인 유학생 특별귀화허가 기준 완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 우수 인재 확보가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되면서 주요 선진국은 경쟁적으로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창조경제 실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감각을 갖춘 국내 대학 졸업 우수 유학생을 인적자산으로 포용,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충하고 이들의 정주 유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 중, 이공계 분야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우수 유학생에 대해서는 특별귀화 기준을 현행 외국국적동포 우수인재에 적용되는 평가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5. 7. 20.부터 시행하였다.

3) 일반귀화허가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 강화

귀화허가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은 국민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98년 기준 그대로 유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일반귀화 신청자는 혈연적 지연적 유대관계가 적은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국민 정체성뿐만 아니라 재정의 건정성 측면에서도 국민과의 조화가 중요한 점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 능력 기준을 상향 규정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생계능력 기준을 자산 3천만원에서 2배인 6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였고, 이와 함께 자산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평균 근로소득에 준하는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다만 결혼이민자 등의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나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다. 국적업무 처리현황

귀화허가를 받아 우리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63년만인 2011년 1월 10만명을 넘어섰으며, 2015년 말 현재 총 158,000명에 이른다.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2000년까지 연평균 34명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0,437명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은 연평균 15,282명이 우리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편입되었다.

귀화허가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5년 전체 귀화자 중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에 의한 혼인귀화가 64%(6,966명)를 차지하며, 특별귀화자는 25%(2,778명)이다. 특히, 2015년도에는 개정 국적법에서 신설된 우수인재로 인정되어 우리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14명이었다.

국적회복자는 2008년 이후 하향세를 보이다가 2011년부터 개정 국적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65세 이상 고령동포의 국적회복 시 복수국적 보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2011년 2,265명, 2012년 1,987명, 2013년 2,686명, 2014년 2,886명, 2015년 2,60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이 증가한 데 기인하였다.

한편, 그동안 복수국적자로서 우리국적을 이탈하는 사람이 우리국적을 선택하는 사람보다 월등히 많았으나, 개정 국적법이 공포된 2010년 하반기부터는 우리국적 선택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2010년부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비율이 역전되어 우리 국적 이탈 대비 선택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적법이 개정된 효과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인구 순유출 현상을 개선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며 우수인재를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수인재 선정을 위한 국적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2015년 12월 말까지 총 16회에 걸쳐 개최된 국적심의위원회에서 과학·인문 등 학술분야 48명, 체육분야 12명, 첨단기술분야 7명, 경영·무역분야 4명, 문화·예술분야 6명 등 총 77명이 우수인재로 선정되어 우리 국적을 취득하였다.

〈표 19〉 국적업무 처리 현황

(단위 : 명)

| 유형별 / 연도별 | 합 계 | 귀 화 | 국적회복 | 국적상실 | 국적선택 | 국적이탈 | 기 타 |
|---|---|---|---|---|---|---|---|
| 2011년 | 44,089 | 16,090 | 2,265 | 21,473 | 1,538 | 1,324 | 1,399 |
| 2012년 | 33,214 | 10,541 | 1,987 | 17,642 | 1,218 | 823 | 1,003 |
| 2013년 | 35,733 | 11,270 | 2,686 | 19,413 | 1,130 | 677 | 557 |
| 2014년 | 35,632 | 11,314 | 2,886 | 18,150 | 1,448 | 1,322 | 512 |
| 2015년 | 32,837 | 10,924 | 2,609 | 16,595 | 1,234 | 934 | 541 |

〈표 20〉 유형별 귀화자 현황

(단위 : 명)

| 유형별 / 연도별 | 합 계 | 일반귀화 | 간이귀화 | | 특별귀화 |
|---|---|---|---|---|---|
| | | | 혼인귀화 | 기 타 | |
| 2011년 | 16,090 | 130 | 10,733 | 388 | 4,839 |
| 2012년 | 10,541 | 103 | 7,733 | 184 | 2,521 |
| 2013년 | 11,270 | 133 | 9,021 | 294 | 1,822 |
| 2014년 | 11,314 | 298 | 7,607 | 476 | 2,933 |
| 2015년 | 10,924 | 323 | 6,996 | 827 | 2,778 |

〈표 21〉 2015년 귀화시험 실시 현황

(단위 : 명)

| 회차 | 일 자 | 대상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율 | 합격률 |
|---|---|---|---|---|---|---|
| 1 | 1. 6. | 132 | 100 | 29 | 75.8% | 29.0% |
| 2 | 1. 20. | 117 | 71 | 38 | 60.7% | 53.5% |
| 3 | 2. 10. | 492 | 335 | 158 | 68.1% | 47.2% |
| 4 | 2. 24. | 141 | 99 | 36 | 70.2% | 36.4% |
| 5 | 3. 10. | 351 | 215 | 112 | 61.3% | 52.1% |
| 6 | 3. 24. | 217 | 167 | 76 | 77.0% | 45.5% |
| 7 | 4. 7. | 395 | 274 | 156 | 69.4% | 56.9% |
| 8 | 4. 21. | 224 | 150 | 51 | 67.0% | 34.0% |
| 9 | 5. 12. | 356 | 270 | 161 | 75.8% | 59.6% |

| 회차 | 일 자 | 대상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율 | 합격률 |
|---|---|---|---|---|---|---|
| 10 | 6. 9. | 261 | 194 | 85 | 74.3% | 43.8% |
| 11 | 6. 23. | 482 | 352 | 193 | 73.0% | 54.8% |
| 12 | 7. 7. | 211 | 147 | 88 | 69.7% | 59.9% |
| 13 | 7. 21. | 130 | 90 | 27 | 69.2% | 30.0% |
| 14 | 8. 4. | 221 | 165 | 93 | 74.7% | 56.4% |
| 15 | 8. 18. | 410 | 275 | 118 | 67.1% | 42.9% |
| 16 | 9. 8. | 467 | 327 | 189 | 70.0% | 57.8% |
| 17 | 9. 22. | 117 | 86 | 37 | 73.5% | 43.0% |
| 18 | 10. 6. | 126 | 93 | 21 | 73.8% | 22.6% |
| 19 | 10. 20. | 533 | 382 | 189 | 71.7% | 49.5% |
| 20 | 11. 10. | 339 | 244 | 142 | 72.0% | 58.2% |
| 21 | 11. 24. | 239 | 194 | 70 | 81.2% | 36.1% |
| 22 | 12. 8. | 357 | 258 | 125 | 72.3% | 48.4% |
| 23 | 12. 22. | 306 | 245 | 100 | 80.1% | 40.8% |
| 합계 | - | 6624 | 4,733 | 2,294 | 71.5% | 48.5% |

## 4. 난민심사 제도 개선

### 가. 적체해소 및 이의신청 심사 개선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하며 우리나라가 난민인권국가로서 국제적인 위상이 제고됨과 동시에, 시리아 내전, 무슬림간의 종교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악화됨에 따라 국내로 유입되는 난민신청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심사인력으로 인해 심사처리 실적은 증가하는 난민신청자 숫자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난민 심사적체 해소를 위해 난민심사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이의신청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체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자구책을 시행하였다.

서울사무소 국적난민과의 난민심사 인력을 증원하였고, 수도권 사무소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서울사무소에 난민심사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영남지역의 난민신청자 급증에 따라 대구사무소를 추가로 난민심사 거점 사무소로 지정하였다.

한편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도 급등함에 따라, 실질적인 행정심판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준사법적인 심사기법이 필요한 절차인 이의신청심사의 질적 개선을 위해 법률 전문가 등의 추가 인력을 확충하였다.

### 나. 난민심사관의 전문성 강화

난민심사는 난민심사관의 난민신청자 출신국 국가정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난민신청자 진술의 사실관계와 국가정황정보, 의학적·심리학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절차로 법무부는 난민심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주요 난민신청 국가의 정치상황, 사법체제, 관련 판례 등을 수집, '국가정황자료집'을 발간하여 전국 사무소 난민심사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연수원에서는 난민심사관을 대상으로 난민심사실무에 관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난민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심사 절차 및 난민심사의 이론과 실무경험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선 사무소 난민심사 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제로 난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난민심사관이 직접 참여하는 세미나를 통해 난민심사 기법에 대한 노하우를 심사관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 다. 체계적인 난민심사 시스템 구축

제한된 난민심사 인력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난민 신청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난민심사 방식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였다.

난민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난민신청 접수단계에서 난민신청 사유, 출신국의 국가정황 등을 고려하여 난민 신청 건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분류결과에 따라 면밀한 조사 및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보다 정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난민심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5. 재정착난민의 수용

### 가. 추진배경

재정착난민제도는 난민법 제24조에 따라 해외 난민캠프 등에 있는 난민 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수용하는 제도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분담과 난민의 인권보호를 통해 인권국가로서의 대열에 합류하고 아시아지역 난민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재정착난민제도는 미국 등 29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2014년 전 세계적으로 약 15만 명의 재정착난민이 각국으로 수용되었다.

### 나. 추진 경과

2014년 국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과 현지 실태조사 및 해외사례 연구 등을 거쳐 2015년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서 재정착난민의 수용계획(안)이 심의·확정되었다. 수용 계획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태국 또는 말레이시아에 일시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난민을 연 1회 가족단위로 약 30명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것이었다.

이후, 재정착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무부-유엔난민기구

재정착에 관한 양해서한"을 체결하였다. 유엔 난민기구로부터 재정착난민을 추천받아 서류심사, 현지면접조사 등 심사를 거쳐 선발한 후, 건강검진 및 출발 전 사전교육 등을 거쳐 2015년 12월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4가족 총 22명의 재정착난민이 입국하게 되었다.

### 다. 민관 협업체계 구축

재정착난민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으로 재정착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재정착실무협의회에서는 기관간 협력사항 및 역할 분담 등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 6.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 및 처우개선

### 가. 통역인 제도 개선

난민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언어에 대한 통역 수요도 함께 증가하였다. 법무부는 다양한 언어권에 대한 원활한 통역지원을 위해 난민전문통역인 풀(Pool)을 확충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난민전문통역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난민전문통역인의 위촉과 해촉 절차, 통역 품질 및 신뢰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였고, 난민법에 따라 난민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통역 또는 번역을 수행한 경우 지급할 비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통역인 수요에 비해 부족하였던 난민전문통역인 풀을 확대하기 위해 난민전문통역인을 추가로 위촉하였다. 그 결과 20개 언어 82명이었던 난민전문통역인은 2015년 22개 언어 220명으로 증가하였다.

증가한 통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역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 난민법 및 난민인정절차, 통역인 윤리 및 통역 실습 등이 포함된 통역인 교육도 실시하였다.

### 나.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난민법 제41조(생계비 등 지원)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계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영·유아 동반 가족, 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선발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였다.

2015년 한해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로 지급된 비용은 5억 1천 7백만 원이다.

〈표 23〉 생계비 지원 금액

(단위 : 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센터 비 입주자** | 409,000 | 696,500 | 901,100 | 1,105,600 | 1,310,200 |
| **센터 입주자** | 286,300 | 487,500 | 630,700 | 773,900 | 917,100 |

※ 2015년 기준

### 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난민법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규정에 따라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숙식·의료 등 기초생계를 지원하고,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이다.

지원센터에서는 난민 등의 초기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수준별 한국어교육, 기초 법질서 교육 등과 영·유아에 대한 보육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내 아동 대상 외국어 교실 운영, 지원센터 체육 시설 개방, 관내 외국인 대상 이동출입국사무소 운영, 지원센터 내 기간제근로자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 지역사회와 상생·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7. 난민업무 처리 현황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5년 말까지 총 15,250명이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576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910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였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는 난민신청자가 연간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최근 3~4년간 난민신청자는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는 2013년 1,574명,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으로 폭증하였다. 난민인정자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난민인정자는 358명으로, 전체 난민인정자 576명의 62%에 이르렀다.

2015년에는 105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장기간의 내전 등 자국 내 인권상황 등으로 귀국할 수 없는 194명의 신청자가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받았다. 2015년 말 현재 진행 중인 난민 심사는 5,442건 이다.

## 8. 외국인정책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 가. 「201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2015년 4월 3일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무비자입국 공항 확대', '외국인투자지역 추가 지정', '우수 전문인력 및 투자자의 영주허용 요건 완화', '탑승자정보 사전확인시스템구축' 등 「201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201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에 따른 5개 정책목표(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수립한 총 1,171개의 외국인정책 관련 과제(소요예산 약 6,683억여 원)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금년 시행계획은 전체 소요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3,204억여원이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분야에 배정되었다.

201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최종 목적지가 제주도인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항 인근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공항(6개)을 김포공항까지 확대함

- 세금·임대료 등의 감면혜택이 있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추가 지정(2015년 말 기준 98개 지역)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함
-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를 특별귀화 대상자에 포함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우수 전문인력·투자자의 영주허용요건 중 체류기간 요건을 완화(5년 이상→1년 이상)함

② 이민자 통합 및 정착지원

- 문화와 법·제도 차이로 인한 사회갈등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입국초기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초법·제도교육, 생활정보 등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확대(107개 → 204개) 운영하고,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할 때 타 부처·지자체가 각각 발행·제공하는 한국생활 안내 책자, 정보 등을 미리 수집하여 일괄 배포함
-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외국인-마을변호사 간 3자 유선통역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언어장벽, 정보부족으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을 집중 제공하는 예비학교 확대(80개교 → 100개교), 이민배경 청소년의 조기 사회적응·진로·직업교육을 위한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3개교) 운영 등을 통해 이민배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

③ 사회안전 강화

- 항공기를 예약한 승객의 인적사항을 항공사로부터 전송받아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테러리스트 등 우범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지역별 외국인 거주자 수, 범죄율 등에 따른 외국인 밀집지역(42개 읍면동)과 치안안전구역(9개 동)을 재지정하여 순찰·단속강화 및 CCTV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함
- 불법체류자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에(수도 북부권, 수도 남부권, 영남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광역 단속팀 구축

④ 국제협력 및 인권보호 강화

- 태국 및 말레이시아에 체류 중인 미얀마 난민 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을 연간 30명 이내에서 수용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함
-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개도국 국비유학생 초청 시 독립유공자, 6·25 참전용사 등 특별공로자 후손을 우선 배려함

### 나. 「201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년~'17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201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그 평가 결과를 2015년 7월 21일 제17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 총 1,272개(중앙 : 207개, 지자체 : 1,065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목표와의 일치여부, 목표달성률, 예산집행률 등의 평가

지표에 따른 최종평점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5단계로 평가하였다. 1,272개의 세부추진과제 중 '매우우수' 평가과제는 710개, '우수'는 376개, '보통'은 151개, '미흡'은 35개,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없었으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문체부, 복지부, 법무부)' 및 '외국인 의료서비스 강화(서울시)' 과제가 우수 정책 사례로 선정되었다.

금년 평가에서는 최초로 개별 세부추진과제들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지표를 개발하여 정책목표별 대표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체 20개 대표지표 중 2013년에 비해 수치가 긍정적으로 증가한 지표는 '외국인 관광객·유학생 유치', '외국인 투자유치액' 등 13개로 나타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에 따라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다. 국제협력 강화

국제이주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이동이 과거보다 더욱 가속화 되어 2015년 기준 대한민국 출입국자 수는 6천 1백만명을 넘었고,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도 약 188만 명에 이르는 등 이로 인해 이민당국간 국제이민 협력체계의 확립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 변화와 흐름에 부응하여, 국제테러, 불법이주 문제 등 초국가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산하 BMG회의, OECD 이주정책 전문가회의, 발리 프로세스(Bali Process) 회의, FRONTEX 주최 국제회의, 제13차 ASEM 이민국장회의,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행 관련 한국에 대한 4차 심의 회의, 제106차 국제이주기구(IOM) 총회, 제11차 ICAO 기계판독여행문서 관련 심포지엄 등 관련 그룹회의에 실무직원을 파견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여행을 위한 ICAO의 여행자 I.D프로그램, 기계판독여행문서와 지원시스템(생체정보를 활용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승객정보 활용)의 각국 운영사례와 개선방안 등을 논의 하였으며,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GFMD) 등 국제협의체를 통하여 파트너쉽 강화-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인적, 재정적 비용 절감을 위한 협력방안, 개발요인으로서의 이주, 이주와 이동분야 현안관련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15년 이후 UN 개발의제를 위한 이주의 틀 논의 등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였다.

한편 베트남, 중국 등 주요 인접국가 및 파라과이, 도미나카공화국, 피지,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등 현안이 있는 이민 당국과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여 양자간 협력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였으며, 또한 주한공관원을 초청하여 출입국정책을 소개하는 이민정책포럼(Immigration Policy Forum), 주요국의 이민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하는 차세대 이민정책전문가회의(FILC, Future Immigration Leaders' Conference), 직원 상호 교환연수, 정책연수 등 실무자간 인적 교류사업을 통하여 해외 정책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1)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국제이민협력

안전하고 효율적인 여행을 위한 ICAO의 여행자 I.D프로그램, 기계판독여행문서와 지원 시스템의 각국 운영사례와 개선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5년 다양한 이주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을 세계 각국에 소개하는 한편, 해외 이민당국의 초국가적 범죄대처 방안 등 정책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①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산하 BMG회의, ② 발리 프로세스 워크숍 및 심포지엄, ③ FRONTEX 주최 국제회의, ④ 제13차 ASEM이민국장회의, ⑤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GFMD), ⑥ 제11차 ICAO 기계판독여행문서 관련 심포지엄, ⑦ OECD 이주정책전문가회의 참석, ⑧ UN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행 관련 한국에 대한 4차 심의회의, ⑨ 제106차 국제이주기구(IOM) 총회 등 각종 국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2) 양자협력 강화 및 교류 다양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해외 이민당국과 실질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재외동포 다수 거주 국가, 국내 불법체류자 다발국가, 인력 송출국가, 이민행정 선진국가 등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이주관련 현안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이민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편의를 지원하고 이민당국 간 현안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상시적 공식채널을 만드는데 정책적 중점을 두었다.

2015년에는 우리 교민의 진출이 활발한 중국, 베트남 등과 출입국 관련 현안이 있는 파라과이,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도미니카 공화국, 피지와 고위급 양자 회의를 가졌다.

또한, 2015년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IOM, FRONTEX 등 국제기구 및 아시아, 미주, 유럽지역 16개국 미래이민정책결정자 22명을 국내로 초청하여 차세대이민정책전문가회의(FILC : Future Immigration Leaders'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차세대이민정책전문가회의를 통해 전 세계 이민국 직원들이 각국의 이민제도를 소개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민행정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위 회의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IOM, FRONTEX)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출입국관리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한층 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출입국관리 시스템의 우수성 홍보, 각국의 주요현안 및 출입국정책 정보공유, 해외 이민당국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차세대이민정책전문가회의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젊은 해외 이민국 우수 인재들을 초청하여 친한 인사로 양성하고, 이를 통해 20~30년 후 양자 간 이민협력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국제협력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글로벌시대에 부응하고, 국제적인 마인드를 지닐 수 있도록 정책연수 및 직원교환연수를 연중 시행하였으며, 선진 이민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역량 제고에 노력을 기울였다.

2015년 중국, 이탈리아, 독일, 홍콩,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폴, 말레이시아, 터키 등 11개 과정에 직원 39명을 대상으로 정책연수를 실시하여 양국 이민당국 실무자급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당국가의 이민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 제 3 장

# 주요 법령 정비

제1절 개 관

제2절 법 률

제3절 대통령령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 제 3 장 주요 법령 정비

## 제 1 절 개 관

| 구분 / 연도 | 계 | 제정 | | | | 개정 | | | | 폐지 |
|---|---|---|---|---|---|---|---|---|---|---|
| | | 소계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부령 | 소계 | 법률 | 대통령령 | 부령 | 법률 |
| 2006 | 46 | 8 | 2 | 3 | 3 | 38 | 6 | 13 | 19 | - |
| 2007 | 68 | 13 | 7 | 5 | 1 | 55 | 18 | 18 | 19 | - |
| 2008 | 88 | 16 | 3 | 7 | 6 | 61 | 15 | 22 | 24 | 11 |
| 2009 | 73 | 15 | 6 | 6 | 3 | 56 | 15 | 19 | 22 | 2 |
| 2010 | 72 | 16 | 9 | 4 | 3 | 56 | 19 | 12 | 25 | - |
| 2011 | 67 | 9 | 1 | 3 | 5 | 58 | 11 | 21 | 26 | - |
| 2012 | 58 | 7 | 2 | 3 | 2 | 51 | 10 | 24 | 17 | - |
| 2013 | 59 | 3 | 1 | 1 | 1 | 56 | 14 | 14 | 28 | - |
| 2014 | 83 | 8 | 1 | 4 | 3 | 75 | 27 | 26 | 22 | - |
| 2015 | 59 | 4 | 1 | 2 | 1 | 55 | 10 | 19 | 26 | - |

# 제 2 절 법 률

## 제 1 항 제정 법률

### 1. 교정공제회법

**가. 추진배경**

○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정협회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서 기금운영상의 제약, 회계처리 불합리 등 그 목적달성에 애로사항이 많아 다른 공무원공제회와 같이 특별법인으로 발전시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정공무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8. 11. 법률 제13455호로 공포
2015. 8. 11. 시행

**다. 주요내용**

○ 교정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별법인인 교정공제회를 설립함

○ 교정공제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복지후생시설 설치·운영, 기금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보조금으로 함

## 제 2 항 개정 법률

### 1. 민법

**가. 추진배경**

○ 보증에 관한 현행 규정만으로는 보증인의 보호에 불충분하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그 적용 범위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반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 방식 및 근보증(根保證)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생활 속에 대중화·보편화되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여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여행자 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행계약의 의의, 해제·해지, 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여행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4. 3. 25. 국회제출
2015. 1. 12. 국회통과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공포
2016. 2. 4. 시행

### 다. 주요내용

○ 보증 방식의 법제화(안 제428조의2 신설)
-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

○ 근보증 규정의 신설(안 제428조의3 신설)
-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근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정하도록 하며, 서면에 이를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취소할 수 있는 채무임을 알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의 채무부담 규정의 삭제(현행 제436조 삭제)

○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부과 등(안 제436조의2 신설)
-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보증계약의 체결 시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알리도록 하고, 보증계약 체결 후에도 주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여행 개시 전의 여행계약 해제 규정 마련(안 제674조의3 신설)
-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도록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 해지 규정의 마련(안 제674조의4 신설)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지를 명문화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에게 여행자를 귀환운송 의무를 지도록 함

○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 신설)
-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대금의 감액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의 편면적(片面的) 강행규정화(안 제674조의9 신설)
-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도록 함

##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가. 추진배경

○ 교정시설의 위생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처음 수용되는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을 교정사무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며, 교정시설의 장이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화된 장례 문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묘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연고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화장(火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3. 2. 국회제출 (법사위 대안)
2015. 3. 3. 국회통과
2015. 3. 27. 법률 제13235호로 공포
2015. 6. 28. 시행

**다. 주요내용**

○ 교정시설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 부과
○ 피석방자가 영치품의 일시 보관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교부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영치품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함
○ 소년수용자의 나이, 적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년수용자를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출소를 앞둔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간처우 및 중간처우 전담교정시설에의 수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매장 외에도 화장 후 유골을 봉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후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3.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가. 추진배경**

○ 현행법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같은 법에 따라 동일한 절차로 등록·관리되고 있는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행법상의 저당권 설정 대상 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로 이들에 대하여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현재 항공기 중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나, 그 외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에 대하여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자금 융통의 길을 마련하여 레저산업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4. 11. 4. 국회제출
2015. 4. 30. 국회통과(대안)
2015. 5. 18. 법률 제13287호로 공포
2015. 11. 19. 시행

**다. 주요내용**

○ 특정동산의 범위에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포함시켜 저당권의 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3조제2호).
○ 특정동산의 범위에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포함시켜 저당권의 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3조제4호).

## 4. 민사집행법

### 가. 추진배경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개정으로 「항공법」상 등록 대상인 모든 항공기와 경량항공기가 저당권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사집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4. 11. 4. 국회제출
2015. 4. 30. 국회통과
2015. 5. 18. 법률 제13286호로 공포
2015. 11. 19. 시행

### 다. 주요내용

○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강제경매, 임의경매 근거 규정 마련
○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인도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 근거 규정 마련

## 5. 형사소송법

### 가. 추진배경

○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한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려는 것임.
○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시, 재판장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의문화

### 나. 추진경과

2015. 7. 24. 국회 제출(법사위 대안)
2015. 7. 24. 국회 통과
2015. 7. 31. 법률 제13454호로 공포
2016. 2. 1. 시행

### 다. 주요내용

○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477조제6항 신설).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262조제4항 전단).
○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함(제262조의4제1항).

##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가. 추진배경

○ 날로 증가하는 행정 분야 법률 위반사범 단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권 부여 범위 확대 및 사법경찰관리 지명과 관련하여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3. 9. 2. 국회제출
2015. 8. 11. 법률 제1345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사법경찰권 부여 대상자 확대(안 제5조, 제7조의3 신설)

○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공무원의 직무 범위 확대(안 제6조, 제10조)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근거 마련(안 제11조 신설)

○ 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 신설(안 제12조 신설)

##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외국 정부에 입국·체류 허가를 신청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2. 10. 8. 국회 제출
2015. 8. 11. 법률 제134576호로 공포
2015. 11. 11. 시행

**다. 주요내용**

○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조회 사유 추가(안 제6조)

- 외국 입국·체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 허가에 필요한 경우 및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상법(회사편)

**가. 추진배경**

○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은 미국 등에 비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소·벤처기업 창업 후 인수·합병을 통한 자금회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기업공개 등 상장을 통한 투자금 회수에도 평균 12년이 걸려, 벤처 창업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다양하고 쉬운 기업 인수·합병 방식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상법 회사편을 개정

**나. 추진경과**

2014. 10. 6. 국회 제출
2015. 11. 12. 국회 의결
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공포
2016. 3. 2. 시행

**다. 주요내용**

○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도입

○ 간이영업양수도 제도 도입 및 소규모 주식교환 범위 확대

○ 무의결권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명문화, 매수의무기간 기산점 일원화

## 9. 소년법

**가. 추진배경**

○ 형벌인 구금은 미결구금일수가 통산되는 것과는 달리,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

에는 항고 결과 송치기간이 감형되는 경우에도 형사절차상의 형벌인 구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판결에 따른 소년원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집행과정상 결국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 이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소년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조치는 구금으로 보아 그 기간을 통산하고 있으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면서 구금과 유사한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통산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도 원판결에 따른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하여 소년의 기본적인 인권이 더욱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1. 13. 국회 제출
2015. 11. 12. 국회통과
2015. 12. 1. 법률 제1352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원처분 집행기간을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기간에 산입

## 1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현행법상 주취·정신장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고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재범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주취·정신장애인의 경우 범죄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치료 없이는 재범방지가 곤란하므로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4. 9. 18. 국회제출
2015. 11. 12. 국회통과
2015. 12. 1. 법률 제13525호로 공포
2016. 12. 2. 시행

**다. 주요내용**

○ 치료명령의 적용대상을 주취·정신장애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

## 11.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형사사법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교통사고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1. 5. 국회제출
2015. 12. 9. 국회통과
2016. 1. 6. 법률 제13714호로 공포
2016. 1. 6. 시행

**다. 주요내용**

○ 법제명 변경
-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약식절차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전자적 처리절차 정의

○ 대상 사건 정비(안 제3조 제1항·제2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

# 제 3 절 대 통 령 령

## 제 1 항 제 정 령

### 1. 공익신탁법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공익신탁법」이 제정(법률 제12420호, 2014. 3. 19. 공포, 2015. 3. 19. 시행)됨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 등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과 수탁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의 종류를 구체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5. 3. 17. 대통령령 제26147호로 공포
2015. 3. 19. 시행

#### 다. 주요내용

○ 공익사업의 종류 추가(제2조)
○ 공익신탁 인가신청 방법(제3조)
○ 특수한 관계 범위(제4조)
○ 공익신탁 인가 절차·방법(제7조)
○ 신탁재산 운용 방법(제8조)
○ 타인 위임 신탁사무 추가(제10조)
○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서류(제11조)
○ 외부감사 기준 설정(제12조)
○ 공익신탁 합병인가 절차(제13조)
○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제14조)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제15조)
○ 법령에 규정된 서식의 위임(제16조)

###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가정보호사건 등의 가사소송 절차에 참석하거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2877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및 집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5. 6. 22. 대통령령 제26325호로 공포
2016. 1. 1. 시행

#### 다. 주요내용

○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및 요청 절차 마련(제2조)
○ 신변안전조치 종류의 구체화(제3조)
○ 신변안전조치 종류 변경 등의 청구 및 요청 절차 마련(제4조)

## 제 2 항 개 정 령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중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제도에 편입되고, 외국국적동포는 기존 국내거소신고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나. 추진경과**

2015. 1. 20. 대통령령 제26057호로 공포
2015. 1. 22. 시행

**다. 주요내용**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을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제도 편입에 맞도록 변경

###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중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제도에 편입되고, 외국국적동포는 기존 국내거소신고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나. 추진경과**

2015. 1. 20. 대통령령 제26058호로 공포
2015. 1. 22. 시행

**다. 주요내용**

○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내용을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제도 편입에 맞도록 변경

### 3. 검사정원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검사정원법」의 개정(법률 제12952호, 2014. 12. 31. 공포·시행)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검사 90명이 증원됨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를 각 검찰청에 배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2. 11. 대통령령 제2609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증원되는 검사 90명 중 1명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으로, 1명은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로, 6명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나머지 82명은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검사로 배정

### 4.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서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 직위를 제외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2. 11. 대통령령 제2609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 직위를 대검찰청의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서 제외

## 5.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월 수의 범위 중 상한을 36개월에서 48개월로 상향 조정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족구조금액의 상한을 평균임금의 36개월분에서 48개월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범죄피해구조금 산정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되는 개월수를 현행 기준에서 3분의 1 비율만큼 추가된 개월수로 일괄적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3. 17. 대통령령 제26148호로 시행·공포

## 6.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6041호, 2015. 1. 6. 공포·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4.5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검사에 대한 직무성과금의 지급에 있어서 다양한 평가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직무성과금 지급등급의 지급인원과 지급액의 조정 가능 범위의 한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높이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3. 24. 대통령령 제2615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기본급에 4.5퍼센트를 일률적으로 인상

○ 직무성과금 지급등급의 지급인원과 지급액의 범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변경

## 7.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779호, 2014. 10. 15. 공포, 2015. 4. 16.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내용과 제공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사무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2호로 시행·공포

**다.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무적인 정보 제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 범죄피해자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사무에 대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2014. 12. 30.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소액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 규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간이회생절차의 대상이 되는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를 규정

**나. 추진경과**

2013. 4.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2015. 1. 13. ~ 1. 23. 부처협의
2015. 1. 28. ~ 3. 9. 입법예고
2015. 4. 2. 법제처 심사 완료
2015. 4. 30. 차관회의원안 의결
2015. 5. 6. 국무회의원안 의결
2015. 5. 12. 대통령령 제26236호 공포·시행

**다. 주요 내용**

간이회생절차 이용 가능한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 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15조의3을 신설. 이는 채권·채무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소액영업소득자로 하여금 보다 빠르고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간이회생절차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으로써 간이회생절차를 마련한 개정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

## 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출입국관리법 개정('15.3.31.시행)을 통해 '출국금지자의 여권회수·보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사항이 포함된 하위법령 정비 및 그 밖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필요

**나. 추진경과**

2015. 6. 15. 대통령령 제2631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출국금지자의 여권 회수·보관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제6조, 제15조)

○ 반납 받은 외국인등록증의 파기 근거 마련(제46조)

○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확대 (제51조)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 권한을 사무소장 등에게 위임(제96조제1항)

○ 외국인이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연수받을 수 있는 국내 연수기관의 세부 범위를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별표1)

○ 국제순항 크루즈 선박에서 근무하려는 외국인선원에게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별표1)

## 1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한 경우 그 신고증을 파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나. 추진경과

2015. 6. 15. 대통령령 제26312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의 훼손, 성명 · 생년월일 · 국적 등의 변경 등에 따른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신청을 하거나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재외동포체류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본인의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반납된 국내거소신고증을 파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13조, 제14조)

## 1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살인범죄·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갱생보호 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888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의 통보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5. 6. 22. 대통령령 제26326호로 공포
2015. 7. 1. 시행

### 다. 주요내용

○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 통보 절차·방법 규정

○ 공단 기부금품 접수 관련 세부절차 마련

##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2889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

**나. 추진경과**

2015. 6. 22. 대통령령 제26327호로 공포
2015. 7. 1. 시행

**다. 주요내용**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의 세부 내용 규정

## 1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대통령령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20%인데,

- 최근의 저금리 기조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법정이율을 인하하는 대통령령 개정 필요

**나. 추진경과**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공포
2015. 10. 1. 시행

**다. 주요내용**

○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을 20%에서 15%로 인하

## 1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우리 국민의 외국 입국·체류 허가,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 허가,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각 해당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2015. 11. 4. 대통령령 제26614호로 공포
2015. 11. 12. 시행

**다. 주요내용**

○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에 한정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3호)

○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사면법」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형 및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제외한 범위에서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15.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항공법」상 항공기 중 비행기, 회전익 항공기 외에 경량항공기 및 그 밖의 항공기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개정(법률 제13287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5. 11. 4. 대통령령 제26613호로 공포
2015. 11. 19. 시행

### 다. 주요내용

○ 저당권 설정·이전·말소등록의 대상에 경량항공기 등을 추가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등의 서식에 처리절차 흐름도를 신설

## 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가. 추진배경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일 등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3284호, 2015. 5. 13. 공포, 11. 14. 시행)됨에 따라,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나. 추진경과

2015. 11. 13. 대통령령 제26637호로 공포
2015. 11. 14. 시행

### 다. 주요내용

○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차인의 상호와 사업자등록 번호,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면적, 임대차 기간 및 보증금·차임으로 정함(안 제3조)

○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임차인,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및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등으로 정함(안 제3조의2 신설)

## 17. 수형자 등 호송 규칙

### 가. 추진배경

○ 「수형자 등 호송 규칙」은 대통령령이므로 일반적으로 부령에 사용되는 용어인 '규칙'을 '규정'으로 수정하여 제명을 그 형식에 부합하게 함

○ 법령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법령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12. 10. 대통령령 제2669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법령 제명을「수형자 등 호송 규칙」에서「수형자 등 호송 규정」으로 변경

○ 총칙 규정을 목적 규정으로 정비

○ 법령 서식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

##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235호, 2015. 3. 27. 공포, 2015. 6. 28. 시행)됨에 따라 적정한 처우의 대상인 소년수용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정시설에서 도주한 수용자를 체포하게 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12. 10. 대통령령 제2669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소년수용자를 소년수형자, 소년교도소에 수용중인 수형자 및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로 정의함

○「형법」 제145조·제146조에 따른 도주 등의 죄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 각 호에 따른 출석의무 위반 등의 죄를 지은 수용자를 체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 포상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 1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상쇄약물 투약 여부 등 의무 준수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확인 검사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동등한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대검찰청을 추가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77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출한 소변 등의 시료 검사 기관에 대검찰청을 추가

# 제 4 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 제 1 항 제정 규칙

### 1.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가. 추진배경**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일 등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3284호, 2015. 5. 13. 공포, 11. 14. 시행)되어,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637호, 2015. 11. 13. 공포, 11. 14. 시행)됨에 따라 정보제공 요청의 범위 등을 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정보제공 사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서식을 정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2015. 11. 13. 법무부령 제854호로 공포
2015. 11. 14. 시행

**다. 주요내용**

○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절차 정비(안 제2조, 제3조)
- 확정일자 신청인이 확정일자 신청서(안 별지 제1호 서식)와 계약서 원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함
- 상가건물의 일부 임대차인 경우 그 일부분의 도면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 확정일자인 · 확정일자용 관인 날인, 확정일자번호 부여,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 간인 또는 천공 확인, 확정일자부 작성 등 절차 정비

○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범위 규정(안 제4조)
- 상가건물 또는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 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 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방법, 제공 방법 등 절차 정비(안 제5조, 제6조)
-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안 별지 제4호 서식)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임대차 정보 제공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도면의 경우 임차인이 제출한 도면을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 제 2 항 개정 규칙

###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치료감호소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간호인력 및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도입공항 확대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 심사 등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보호관찰소로부터 본부로 재배정하는 한편,

○ 출입국심사 전담 기구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및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를 신설하고, 관리운영직군을 행정직군, 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1. 6. 법무부령 제83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 신설

○ 출입국관리인력 22명, 치료감호소 의료인력 15명 등 소속기관 정원 37명 증원

○ 통합정원 감축 85명

○ 관리운영직군 119명 일반직 전환 등

### 2.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가. 추진배경**

○ **정부규제 개혁 일환으로서 법제처에서 일괄적 개정**

**나. 추진경과**

2015. 1. 15. 법무부령 제835호로 공포

2015. 1. 15. 시행

**다. 주요내용**

○ 귀화 추천서 작성자의 기준에 대하여 2년 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 (제3조제5항)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중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제도에 편입되고, 외국국적동포는 기존 국내거소신고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나. 추진경과**

2015. 1. 20. 법무부령 제836호로 공포

2015. 1. 22. 시행

**다. 주요내용**

○ 신상정보 제출서 등 시행규칙 서식 개정

## 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중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제도에 편입되고, 외국국적동포는 기존 국내거소신고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나. 추진경과**

2015. 1. 20. 법무부령 제837호로 공포
2015. 1. 22. 시행

**다. 주요내용**

○ 신고서 등 시행규칙 서식 개정

## 5. 교도관직무규칙

**가. 추진배경**

○ 교정직렬 내 교정·교회·분류직류를 교정직류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고,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1. 30. 법무부령 제838호로 공포 · 시행

**다. 주요내용**

○ '교회직교도관', '분류직교도관'에 대한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교도관을 '교정직교도관', '보건위생직교도관', '기술직교도관' 및 '관리운영직교도관', '직업훈련교도관'으로 구분함

## 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법무연수원장 소속으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신설하여 수도권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인원은 법무연수원의 정원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과를 사범과로 변경하고 조직 및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2. 27. 법무부령 제839호로 공포 · 시행

**다. 주요내용**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설

○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관리인력 6명, 용인분원 신설인력 13명 등 소속기관 정원 19명 증원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과→사범과로 변경 등

## 7.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가. 추진배경**

○ 법령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2015. 3. 27. 법무부령 제84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약류 보상금 지급규칙」 별지 제2호, 제3호의 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위해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의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대체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

## 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정비'에 대한 법제처 요청에 따라 입법추진

**나. 추진경과**

2015. 4. 3. 법무부령 제84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간질장애인"을 "뇌전증환자"로 용어 정비

## 9.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원하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외에 종합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4. 7. 법무부령 제842호로 공포·시행

##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정보수집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민특수조사대를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등을 증원하고 관리운영직군을 행정직군, 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5. 28. 법무부령 제84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신설
○ 개인정보보호 인력 1명 등 본부 정원 7명 및 교정기관 의료인력 4명, 소년보호기관 호송인력 9명 등 소속기관 정원 57명 증원
○ 직급상향 31명
○ 관리운영직군 25명 일반직 전환
○ 교정기관 임기제공무원 대체 정원 확대(의무직 5급 8명→13명)

## 1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출입국관리법」 개정('15.3.31.시행)에 따른 사회통합자원봉사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등을 마련하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15.7.1.시행)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초청하는 한국인 초청인의 소득요건 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에 있는 호주 자회사 등에서 근무하려는 자가 입국 후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주재(D-7) 자격의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필요

**나. 추진경과**

2015. 6. 15. 법무부령 제84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출국금지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강화 및 출국금지된 사람의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는 법 제5조의 규정 삭제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제6조의8 제1항, 제7조)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15.7.1.시행)으로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게 결혼동거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한국인 초청인의 소득요건 기준 변경(제9조의5)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외국인의 퇴직, 해고 등 고용변동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법무부-고용부)이 신고사항을 양 기관에 전산적으로 통보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8조제3항)
○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0)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권한을 사무소장 등에게 위임(제78조)
○ 주재(D-7) 및 거주(F-2) 자격에 대해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확대(별표 1)
○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사 인정을 위한 이수과목 등 개편(별표 2)

## 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본인의 이익 또는 공익상 필요를 위하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자의 범위 확대 필요

**나. 추진경과**

2015. 6. 15. 법무부령 제84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신청자의 범위를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 외에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 등으로 확대(제11조)

## 13. 외국인보호규칙

**가. 추진배경**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환자, 임산부, 노약자, 19세 미만인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호외국인에 대한 면회 대상자의 범위에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필요

**나. 추진경과**

2015. 6. 15. 법무부령 제84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특별보호 대상자를 환자, 임산부,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9세 미만인 사람, 장애인, 성소수자나 약자 등으로 정하고, 특별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 지정, 최소 2주일에 1회 이상 면담 실시, 필요한 경우 방 배정·교육·운동·급식·진료 등에 관한 특별 조치를 취하도록 함

## 1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갱생보호 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88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및 장부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6. 22. 법무부령 제847호로 공포
2015. 7. 1. 시행

**다. 주요내용**

○ 기부금품 접수 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 비치

○ 보호관찰 대상자의 유치기간 기산점을 유치허가를 받은 날에서 구인한 날로 변경함에 따라 유치허가장 서식에 구인일시 기재란 신설

##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가. 추진배경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2889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서 등의 서식 중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5. 6. 22. 법무부령 제848호로 공포
2015. 7. 1. 시행

### 다. 주요내용

○ 신상정보 제출서 등 서식 개정
- 시행규칙 서식에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의 세부내용 추가

##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 추진배경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부착명령 가해제 심사·결정에 대한 법령상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각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통일된 심사기준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구체적 심사기준으로 피부착자의 연령·건강상태·가정환경·집행기간·준수사항의 이행정도·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등 주요 내용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5. 9. 7. 법무부령 제849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결정기준 구체화

## 17.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 가. 추진배경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시행) 별표3이 민원 서식의 지질을 백상지 등으로 개선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의 지질을 교체하고, 각 서식에 처리절차 흐름도 등 삽입하는 등 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절차에 관한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5. 10. 2. 법무부령 제850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별지 각 서식의 지질을 '인쇄용지 60g/㎡(재활용지)'에서 '백상지 80g/㎡'으로 교체
○ 별지 [서식 1], [서식 9], [서식 11], [서식 21]에 절차안내도 삽입
○ 별지 [서식 21]에 첨부서류란 삽입

## 18. 국적법 시행규칙

### 가. 추진배경

○ 생계유지능력기준이 '98년도 제정 이래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 능력의 기준을 자산 3천만 원 이상에서 6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자립 및 재정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평균 근로소득에 준하는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5. 11. 11. 법무부령 제851호로 공포
2016. 3. 1. 시행

### 다. 주요내용

○ 일반귀화 신청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자산 6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또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으로 신규 적용 (제3조제2항)

○ 특별귀화 신청자(독립 유공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국익 기여자 등)는 관계기관 발급서류 등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추천서 대신 관계기관 확인서로 갈음 (제3조제5항)

## 19. 검찰압수물사무규칙

### 가. 추진배경

○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5. 11. 12. 법무부령 제853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품신"을 "건의"로, "불입코저"를 "납입하려고"로 개정

## 20. 검찰사건사무규칙

### 가. 추진배경

○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수사 통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공소시효를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2015. 11. 12. 법무부령 제85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한 관련 사항 마련(안 제51조제1항 및 제52조 등)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청구와 관련하여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한 용도에 맞게 새로운 청구서 서식을 마련함
-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에도 압수조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함.

○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등의 통지 대상 확대(안 제60조제2항 등)

-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수사 개시 또는 처분결과의 통보 근거 및 관련 서식을 마련함

○ 일본식 표현 정비(안 제140조, 별지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145호서식)

- "게기"를 "규정"으로, "국고불입"을 "국고납입"으로, "품신"을 "건의" 등으로 정비함.

○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 서식의 개선(안 별지 제108호서식)

- 재정신청권자가 공소시효를 알지 못하여 공소시효 도과 후 재정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공소시효를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서식 개선(안 별지 제234호의16서식 등)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 인적사항란에 가입자의 인적사항 대신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서 서식을 명확하게 개선함.

## 21.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집 용지를 교체 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11. 25. 법무부령 제85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편집 용지를 교체하는 등 서식 정비

## 22.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가. 추진배경**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집 용지를 교체 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11. 25. 법무부령 제85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편집 용지를 교체하는 등 서식 정비

## 2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 개방형 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난민과장, 치료감호소 특수치료과장 및 신경과장을 각각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군산교도소 의료과장,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 등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12. 1. 법무부령 제85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 인력 본부 정원 1명 증원

○ 소년보호기관 임기제공무원 대체 정원 확대(의무직 5급 6명→7명)

○ 과장급 개방형직위 변경(난민과장, 치료감호소 신경과장·특수치료과장 → 군산교도소 의료과장,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사회정신과장)

##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235호, 2015. 3. 27. 공포, 2015. 6. 28. 시행)됨에 따라 소년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중간처우 대상자를 규정하는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12. 10. 법무부령 제85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을 설치하여 소년의 나이·적성 등 특성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별도의 공동학습공간을 마련하도록 함

○ 교정시설의 장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함

## 2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상세 약물 투약 여부 등 의무 준수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확인 검사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동등한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대검찰청을 추가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12. 30. 법무부령 제85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호르몬 수치 및 상쇄약물 투약 여부 검사 의뢰 서식 개정

## 2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자비자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며, 법무부에 국고손실 환수 송무 담당 인력 2명,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공항 및 크루즈터미널 출입국심사 인력 등 75명을 증원하는 한편,

○ 법무부 인력 5명 및 소속기관 인력 80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거나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관리운영직군을 행정직군, 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12. 30. 법무부령 제86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신설

○ 국고손실 환수송무 인력 2명 등 본부 정원 2명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인력 2명, 공항 및 크루즈터미널 심사인력 66명 등 소속기관 정원 77명 증원

○ 통합정원 감축 85명

○ 관리운영직군 32명 일반직 전환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명칭을 평택항만출장소로, 오산출장소 명칭을 평택출장소로 각각 변경

제 4 장

# 국회업무

# 제 4 장 국회업무

2015년도에는 총 8회(331회~338회)에 걸친 국회 정기회 및 임시회에서 준법문화 구현, 부정부패 척결, 범죄불안 해소, 법치기반 확립, 경제활성화와 통일준비 지원 등 우리 부 주요정책 추진사항과 관련한 중점 추진 법안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검사징계법,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예·결산 관련 안건의 통과에도 적극 노력하여 제337회 정기회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통과되었으며, 제337회 정기회를 통하여 2016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 가결되었다.

그 외에 법사위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현안보고를 통해 우리 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현안과제, 추진상황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였다.

당정 협의·간담회에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대테러 방지 관련 대책 논의, 아동학대 예방 및 미취학·장기결석 아동관리 대책 등 현안에 대하여 당과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및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국회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였다

회차별 국회활동 및 당정협의·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 회차별 국회활동 개관

| 구분 | 회기 | 국회 활동 개관 |
|---|---|---|
| 제331회 | '15. 2. 2.~ 3. 3. (30일간) | 【본회의】<br>◦ 총 8차례 개의<br>◦ 교섭단체 대표연설(새누리당, '15. 2. 3.)<br>◦ 교섭단체 대표연설(새정치민주연합, '15. 2. 4.)<br>◦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15. 2. 25.)<br>◦ 경제분야 대정부질문('15. 2. 26.)<br>◦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15. 2. 27.)<br>◦ 통과법안('15. 3. 3.)<b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구분 | 회기 | 국회 활동 개관 |
|---|---|---|
| | | 【법제사법위원회】<br>◦ 총 10차례 개의(전체회의 8, 제1소위 1, 제2소위 1)<br>◦ 업무현황 보고('15. 2. 9.)<br>- 주요정책 추진계획 : 헌법가치 부정세력 엄단,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원칙있는 대응,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 법교육 강화, 안전법규 준수 문화 확산, 공공분야의 적폐와 민관유착 비리 근절, 민간분야의 비정상적 관행과 부조리 정상화, 수사성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클린피드백' 강화, 4대악 범죄 관련 대책 보완·심화, 국민불안 야기범죄 대응시스템 혁신, 서민생활 침해사범 집중 대응, 교정교화 프로그램 실질화, 법치기반 확립을 위한 법령정비, 법률 소외계층 해소, 범죄피해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경제활성화 지원 맞춤형 출입국 서비스, 중소기업 법률지원 확대 및 법률서비스 경쟁력 제고, 통일대비 법제 및 인프라 구축<br>- 현안과제 보고<br>· 보육시설 아동학대 근절<br>· 방위사업비리 수사 현황<br>· 정당해산에 따른 후속 조치<br>· 마을변호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br>· 치료감호소 치료환경 개선<br>· 교정시설 현대화 추진<br>· 우범승객 사전탑승방지제도 도입<br>- 입법추진계획 보고<br>·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보호수용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변호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외국법자문사법<br><br>【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br>◦ 서민주거안정대책 관련 현안보고('15. 2. 13.)<br>-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br><br>【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 구분 | 회기 | 국회 활동 개관 |
|---|---|---|
| | | ◦국정조사 기관보고('15. 2. 24.)<br>- 해외자원개발 관련 사건 현황 |
| 제332회 | '15. 4. 7.~<br>5. 6.<br>(30일간) | 【본회의】<br>◦총 9차례 개의<br>◦교섭단체 대표연설(새누리당, '15. 4. 8.)<br>◦교섭단체 대표연설(새정치민주연합, '15. 4. 9.)<br>◦정치분야 대정부질문('15. 4. 9.)<br>◦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15. 4. 14.)<br>◦경제분야 대정부질문('15. 4. 15.)<br>◦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15. 4. 16.)<br>◦통과법안('15. 4. 30.)<br>-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r>-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br>-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법제사법위원회】<br>◦총 8차례 개의(전체회의 3, 제1소위 3, 제2소위 2)<br>◦현안보고('15. 4. 20.)<br>-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현안보고 |
| 제333회 | '15. 5. 11.~<br>5. 29.<br>(19일간) | 【본회의】<br>◦총 3차례 개의<br>◦통과법안('15. 5. 12.)<b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r>◦통과법안('15. 5. 29.)<br>-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법제사법위원회】<br>◦총 2차례 개의(전체회의 2)<br>【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br>◦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와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15. 5. 20.) |
| 제334회 | '15. 6. 8.~<br>7. 7.<br>(30일간) | 【본회의】<br>◦총 8차례 개의<br>◦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15. 6. 19.)<br>◦경제분야 대정부질문('15. 6. 22.) |

| 구분 | 회기 | 국회 활동 개관 |
|---|---|---|
| | |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15. 6. 23.)<br>◦정치분야 대정부질문('15. 6. 24.)<br>【법제사법위원회】<br>◦총 11차례 개의(전체회의 6, 제1소위 2, 제2소위 3)<br>◦현안보고('15. 6. 15.)<br>-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상황<br>◦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현웅) 인사청문회('15. 7. 7.)<br>【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br>◦주택임대차보호 관련 현안보고('15. 6. 9.) |
| 제335회 | '15. 7. 8.~ 8. 6. (30일간) | 【본회의】<br>◦총 2차례 개의<br>◦통과법안('15. 7. 24.)<br>-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br>- 교정공제회법안(의원)<br>-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r>-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br>【법제사법위원회】<br>◦총 9차례 개의(전체회의 5, 제1소위 2, 제2소위 1, 예결심사소위 1)<br>◦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현웅)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15. 7. 8.)<br>◦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15. 7. 8., '15. 7. 15.) |
| 제336회 | '15. 8. 7.~ 8. 31. (25일간) | 【본회의】<br>◦총 2차례 개의<br>◦국회의원(박기춘) 체포동의안('15. 8. 13.)<br>【법제사법위원회】<br>◦총 1차례 개의(전체회의 1)<br>【예산결산특별위원회】<br>◦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합정책질의('15. 8. 18.~8. 19.)<br>◦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별심사('15. 8. 21.) |
| 제337회 (정기회) | '15. 9. 1.~ 12. 9. (100일간) | 【본회의】<br>◦총 15차례 개의<br>◦정기회 개회식('15. 9. 1.) |

| 구분 | 회기 | 국회 활동 개관 |
|---|---|---|
| | | ◦ 교섭단체 대표연설(새누리당, '15. 9. 2.)<br>◦ 교섭단체 대표연설(새정치민주연합, '15. 9. 3.)<br>◦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15. 9. 8.)<br>◦ 정치분야 대정부질문('15. 10. 13.)<br>◦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15. 10. 14.)<br>◦ 경제분야 대정부질문('15. 10. 15.)<br>◦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15. 10. 16.)<br>◦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15. 10. 27.)<br>◦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15. 12. 3.)<br>◦ 통과법안('15. 11. 12.)<br>-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r>-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br>◦ 통과법안('15. 12. 3.)<br>-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 통과법안('15. 12. 9.)<br>-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r>-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r>-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br>-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br>-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br>-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br>-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r>-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r>- 부동산의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br>-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br>【법제사법위원회】<br>◦ 총 22차례 개의(전체회의 10, 제1소위 7, 제2소위 2, 예결심사소위 3)<br>◦ 국정감사('15. 9. 10. ~ 9. 23., '15. 10. 1. ~ 10. 8.) |

| 구분 | 회기 | 국회 활동 개관 |
|---|---|---|
| | | - 법무부('15. 9. 10.), 대검찰청('15. 10. 6.), 종합감사('15. 10. 8.) 실시<br>◦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15. 10. 22., '15. 10. 28.,)<br>◦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공청회('15. 11. 18.)<br>◦검찰총장후보자(김수남) 인사청문회('15. 11. 19.)<br>【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br>◦주택임대차보호 관련 현안보고('15. 9. 3.)<br>◦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 보고('15. 10. 27.)<br>◦주택임대차 보호제도 관련 용역 중간보고('15. 11. 26.)<br>◦주택임대차 보호제도 관련 용역 결과보고('15. 12. 8.)<br>【예산결산특별위원회】<br>◦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정책질의('15. 10. 28.~10. 30.)<br>◦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별심사('15. 11. 4., 11. 6., 11. 9.)<br>※「국회법」 개정에 따른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로 인해 예결위 전체회의 미개최 |
| 제338회 | '15. 12. 10.~ '16. 1. 8. (30일간) | 【본회의】<br>◦총 3차례 개의<br>◦통과법안('15. 12. 31.)<br>-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r>-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 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br>-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r>◦통과법안('16. 1. 8.)<br>-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br>-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구분 | 회기 | 국회 활동 개관 |
|---|---|---|
| | | 【법제사법위원회】<br>◦ 총 6차례 개의(전체회의 3, 제1소위 2, 제2소위 1)<br>【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br>◦ 2016년 주택시장전망 및 서민주거안정대책('15. 11. 29.) |

〈표 2〉 당정협의 및 간담회

| 구 분 | 일시 | 논의 안건 | 참석자 |
|---|---|---|---|
| 당정 협의 | '15. 4. 27. | ◦ 북한인권재단 설립(통일부)<br>◦ UN 북한인권 결의안 지지국 감소현황 및 대책(외교부)<br>◦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법무부) | ◦ 새누리당 측<br>- 외통위원장, 외통위 간사 등 14명<br>◦ 정부 측<br>- 통일부장관, 법무부차관, 외교부 2차관 |
| 당정 간담회 | '15. 8. 25. | ◦ 정기국회 대비 중점법안 및 쟁점현안 등 논의 | ◦ 새누리당 측<br>- 당 법사위원<br>◦ 정부 측<br>- 법무부장관, 법제처장 등 |
| 당정 협의 | '15. 11. 18. | ◦ 대테러 방지관련 대책 논의 등 | ◦ 새누리당 측<br>- 정책위의장, 예결·법사·정보·미방·복지·국토·환노·기재·외통·안행·국방 정조위원장 및 민생119본부장 등<br>◦ 정부 측<br>- 국무조정실장, 외교부·법무부·국방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국민안전처 차관, 경찰청·관세청 차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국무1차장 등 |
| 당정 협의 | '15. 12. 30. | ◦ 아동학대 예방 및 미취학·장기결석 아동관리 대책 등 | ◦ 새누리당 측<br>-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여성가족정조위원장, 대변인 등<br>◦ 정부 측<br>- 사회부총리, 법무부·보건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경찰청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

제 5 장

# 법무연표

# 제 5 장 법 무 연 표

| 일자 | 법 무 부 주 요 사 항 | 일자 | 법 무 부 주 요 사 항 |
|---|---|---|---|
| 1. 7.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위촉<br>- 법무부 대회의실<br>- 장관님, 인권국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위촉대상자 15명<br>※ 해바라기센터 5곳,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 10곳 | 2. 11. |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대통령령 제26097호)<br>「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포·시행(대통령령 제26098호) |
| 1. 7. | 한국방문우대카드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시달<br>- 우대카드와 연계된 북수사증의 1회 체류기간 단축, 우대카드 제도 남용자에 대한 사증 취소 규정 신설 | 2. 16. |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범운영<br>- 대상 : 일본 나고야 공항 출발 국적 항공기(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
| | | 2. 25. | 신임검사(사연 44기) 임관식 |
| | | 3. 2. | 집중인성교육 전면 시행 |
| | | 3. 7. | 소년원 출원생 후원 '동행콘서트'<br>- 소년원 학생 사회정착기금 마련<br>- 출원생 118명 직원 60명 |
| 1. 15. |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개시 | | |
| 1. 2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시행<br>-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법 개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대신 주민번호를 표기 | 3. 12. | 수원보호관찰소여주지소 청사이전<br>- 다자간협의체와 합의서 체결 후 이전한 전국 최초의 갈등해결 모범사례로 거듭 |
| | | 3. 16. | 진술조력인 배치<br>- 해바라기센터 8곳(서울남부,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순천, 창원)<br>-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경주) |
| 1. 30. | 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법무부령 제838호) | 3. 17.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대통령령 제26148호) |
| 2. 1. |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범위 제한 완화 | 3. 18. ~ 12. 16. |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br>- 집합교육, 법무연수원 연계교육, 찾아가는 맞춤교육 |
| 2. 3. ~ 2. 4. | 전국 소년원학생 스키캠프<br>- 대명비발디파크 등 전국 9개 스키장<br>- 소년원학생, 교사 등 9개 기관 270명 | 3. 23. | 법무부장관, 슬로바키아 법무장관 면담 |
| 2. 10. | 외국인 유학생 활용여건 조성방안 시행<br>- 외국인 유학생 구직기간 확대, 취업 시 전공심사 폐지, 유학생·전문인력 부모초청 허용, 개인 창업 시 투자 요건 완화 | 3. 23. | 인천공항 패스트트랙(Fast Track) 전면 운영<br>- 교통약자(보행장애인, 고령자, 유소아, 임산부), 출입국우대카드 소지자 등에게 패스트트랙 이용 서비스 제공 |

| 일자 | 법 무 부 주 요 사 항 | 일자 | 법 무 부 주 요 사 항 |
|---|---|---|---|
| 3. 24.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대통령령 제26156호) | 4. 15. | 법교육위원회 제13차 정기회의<br>- 법교육 사업 추진경과 보고 및 법문화진흥센터 지정심의 |
| 3. 24. | 체류기간만료 예고통지서 개선 | 4. 16. | 사회적 약자 배려형 접견 시행 |
| 3. 25. | 법무부장관 정책현장 방문<br>- 여주교도소<br>- 법무부장관, 수원지검장, 여주지검장, 교정본부장 등 참석 | 4. 20. | 교정위원 전국 대회<br>- 남산 제이그랜하우스<br>-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전국 교정위원 등 500여명 참석 |
| 3. 27. |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공포·시행(법무부령 제841호) | 4. 20. | 단기 체류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시행<br>- 복수사증 유효기간 확대(1,3,5년 단계별 부여→5년으로 단일화), 복수사증 대상 확대(중국: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재학생, 17세 미만 60세 이상으로 확대, 동남아: 우리나라·OECD국가 1회 이상 방문으로 요건 완화) |
| 3. 27. |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br>- 과천청사 4동 대회의실<br>-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전국 교정기관장 등 참석 | | |
| 3. 27.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법률 제13235호, 2015. 6. 28. 시행) | 4. 21. | 신임검사(변호사시험 4회) 임관식 |
| 3. 30. | 대한민국-베트남 법무협력협정(MOU) 체결 | 4. 22. | 전자비자센터 개소 |
| | | 4. 24. | 제52회 법의 날 개최 |
| 3. 30. | 2015년도 상반기 이민정책 이해과정 운영 | 4. 27. |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범공항 확대<br>- 중국 상해 푸동 공항 출발 국적항공기로 확대 |
| 3. 31. | 2015년도 제1차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개최<br>-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9인, 간사<br>- '청소년성보호법'상의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문제 등 논의 | 4. 29. |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br>- 수도권(4. 29.), 호남권(5. 7.), 영남권(5. 13.), 중부권(5. 14.) |
| 4. 1. | 신임검사(법무관 제41기) 임관식 | 4. 30. |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과정 운영<br>-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자는 사전평가를 거치지 않고 해당 단계로 바로 진입가능 |
| 4. 3. | 「201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 | |
| 4. 13. | 고려인동포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 인원 확대(8천명→1만명) | 5. 8. | 법사랑서포터스 수료·위촉 및 탈북·다문화 청소년 멘토링 결연식<br>- 제7기 법사랑서포터스 수료식 및 활동 성과 보고<br>- 제8기 법사랑서포터스 위촉 및 탈북·다문화 학생 멘토링 결연 |
| 4. 13. | 귀화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개정(법무부훈령제988호) | | |
| 4. 14.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대통령령 제26192호) | | |

| 일자 | 법 무 부 주 요 사 항 | 일자 | 법 무 부 주 요 사 항 |
|---|---|---|---|
| 5. 11.<br>~<br>5. 12. | 2015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회의 개최<br>- 법무부장관, 차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22 출입국기관장, 16 해외 주재관<br>-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선서, 기관장·주재관 현안보고 등 | 6. 15.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대통령령 제26311호)<br>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대통령령 제26312호)<br>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법무부령 제844호)<br>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법무부령 제845호) |
| 5. 15. | 법무부장관, 정책현장 방문<br>- 유아생활 법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유치원을 방문, 수업 참관 및 교사·학부모 등 현장의견 청취 | | |
| 5. 16. | 전국 보호기관 테니스 대회<br>- 부산광역시 스포원파크 테니스장<br>-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직원의 소통과 화합, 소속감 고취 및 사기진작 등을 통해 보람 있고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 |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 공포·시행(법무부령 제846호) |
| | | 6. 24. | UN 인권최고대표 면담<br>- 참석 : 법무부장관 대행,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UN 인권최고대표, 로리 먼거번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아태과장, 시네 폴센 UN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소장,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 등<br>- 면담 의제 : 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의 협력 방안 |
| 5. 20. | 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br>- 김회선 국회의원,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주한외국대사, 재한외국인 등 1,000여명<br>-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사진·수기공모 수상작 전시회 등 | | |
| 5. 21. | 법교육 만화 '조선은 법치국가다' 발간<br>- 조선 시대 경국대전을 통해 선조의 법치주의 및 애민사상 등 법의 정신을 만화로 설명 | 6. 25. |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포스터 제작·배포<br>-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포스터 10,000매 제작<br>- 전국 56개 보호관찰 기관을 통해 일반 국민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배포하여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홍보 활동 전개 |
| 5. 22. | 제33회 교정대상 시상식 | | |
| 5. 27. | 국적업무처리지침 개정안 공포·시행(법무부예규 제1092호) | | |
| 6. 1. | 특정분야 능력소유자에 대한 영주권 점수제 도입 | 6. 25. | 도서지역 우편민원제 도입 |
| 6. 4.<br>~<br>6. 5. |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 | |
| | | 7. 1. | 신임검사(법무관 변호사시험 1회) 임관식 |
| 6. 4.<br>~<br>6. 5. | 법무부-UNCITRAL 등 공동주최 국제컨퍼런스 | 7. 1.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시행<br>-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 |
| 6. 15. | 범죄예방정책국 내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br>※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263호)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제843호) | 7. 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시행<br>-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연락처의 세부내용 규정 |

| 일자 | 법 무 부 주 요 사 항 | 일자 | 법 무 부 주 요 사 항 |
|---|---|---|---|
| 7. 6. | 메르스(MERS)사태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 대책방안 시행<br>- 단체비자 수수료 한시적 면제(3개월), 방한을 취소한 관광객에 대한 비자 유효기간 연장(3개월→6개월), 일본 단체비자 소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 8. 11. | 교정공제회법 제정 공포·시행 (법률 제13455호) |
| | | 8. 12.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
| | | 8. 24. | 범죄피해자 간담회 개최<br>- 8. 24.(월) 12:00~14:00, 서울스마일센터<br>- 법무부장관, 인권국장, 서울스마일센터장, 범죄피해자 및 유가족 6명 등<br>- 범죄피해자 지원 전반에 관한 현장 의견 청취 |
| 7. 8. | 제1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O.K. 아카데미) 수료식 | | |
| 7. 20. |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범공항 확대<br>-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 출발 국적 항공기로 확대 | 8. 24. | 중국지역 비자신청센터 운영 개시(광저우, 칭다오) |
| 7. 20. |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 | |
| 7. 21. | 법무부장관, 정책현장 방문<br>-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주민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br>- 안산, 수원 사업지역 점검 및 현황청취 | 8. 27. | 장관님, 산림청과 MOU체결<br>- 보호관찰청소년 행동변화를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해 숲체험 프로그램 지원 확대 |
| | | 8. 28. |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 보호 준칙(법무부 훈령) 개정 |
| 7. 31.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개최<br>- 차관(위원장), 법무실장, 인권국장, 외부위원 5명 등 8명<br>- 장애인차별에 관한 인권위 권고의 이행여부 확인 및 시정명령 대상여부 심의 | 8. 28. | APEC 경제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개정<br>- 훈령 명칭변경, 소기업에 대한 발급요건 완화 등 |
| | | 8. 31.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법무부 훈령) 개정 |
| 8. 5. | 장관님과 독립유공자 후손과의 만남 | | |
| 8. 6. | 국적업무처리지침 개정안 공포·시행 (법무부령 제1094호) | 8. 31. |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법무부 훈령) 개정 |
| 8. 10. | 국립부곡병원 내 사법병동 설치<br>- 치료감호시설 설치 반대 주민을 1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사법병동 설치 | 8. 31. | 보호외국인 급식관리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 |
| | | 8. 31. | 뿌리산업체 외국인근로자 특정활동(E-7) 자격 기량검증 시범사업 개시 |
| 8. 11.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공포·시행(법률 제13456호)<br>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법률 제13457호, 2015. 11. 11. 시행) | 8. 31. |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실시 |
| | | 9. 3. | 장흥교도소 이전개청식<br>- 법무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교정본부장, 교정위원, 교정공무원 등 참석 |

| 일자 | 법 무 부 주 요 사 항 | 일자 | 법 무 부 주 요 사 항 |
|---|---|---|---|
| 9. 4.<br>~<br>9. 5. |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br>- 법무연수원<br>- 법무부장관, 범정국장, 전국보호기관장 등 130명<br>- 보호정책의 장기적 발전방안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등 | 9. 21 | 성희롱 예방 및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관리자 특별 예방 교육 실시<br>- 법무부 대회의실<br>- 김현웅 장관님 특강, 김영혜 상임위원 초청 강연<br>- 고위직 공무원의 솔선 참여로 성희롱 방지 및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확립 |
| 9. 7.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br>-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부착명령 등에 대한 가해제 심사·결정기준 구체화 | 9. 22. |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br>- 부패·비리 및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국고손실 환수소송의 적극적·체계적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 9. 9. | 환승관광 외국인 무사증 입국허가 지침 개정<br>- 일본 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 단체 관광객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 입국허가 | 9. 22. | 외국인유학생 산학연계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
| | | 9. 25.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공고(16개 업체) |
| | | 10. 1. |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개정<br>- 제14조(재검토기한)을 2016. 1. 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 31.) |
| 9. 11. | 2015 범죄예방한마음대회 개최<br>- 민간 자원봉사자 포상 및 격려<br>-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선포 등 | 10. 2.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법무부령 제850호) |
| | | 10. 2. | 정읍교도소 개청식<br>- 법무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교정본부장, 교정위원, 교정공무원 등 참석 |
| 9. 14.<br>~<br>9. 15. | 여성·아동 대상범죄 대응 합동워크숍 개최<br>- 충북 진천군 소재 법무연수원<br>- 여성·아동범죄 전담검사, 피해자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상담소·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관계자 등 120여 명<br>- 법무부의 여성·아동 대상 범죄 근절 대책 및 역점 추진사항 전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청취 및 원활하고 실질적인 소통기회 제공 | 10. 5.<br>9. 5.<br>~<br>9. 12.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시범실시<br>2015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수형자 참가<br>- 실내장식 등 12개 직종, 27명<br>- 8명 입상(금 2, 은 1, 동 3, 우수 2) |
| | | 10. 15. | 교정심리치료 중앙자문 위원단 위촉식 |
| | | 10. 17. | 다링 행사(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를 위한 걷기 대회)<br>- 남산 백범광장 및 산책로 일대<br>- 10. 17.(토) 13:00~18:00<br>- 장관, ㈜에스원 대표,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등 2,700여명<br>-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홍보목적 걷기대회 |
| 9. 16.<br>~<br>9. 17. | 2015년도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수형자 참가<br>- 양복 등 3개 직종, 3명 참가<br>- 2명 입상(은 2) | | |

| 일자 | 법 무 부 주 요 사 항 | 일자 | 법 무 부 주 요 사 항 |
|---|---|---|---|
| 10. 19. | 법무부장관, 몽골 법무장관 면담 | 10. 28. | 제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br>- 과천 시민회관 대강당<br>- 법무부장관, 법제사법위원장, 교정본부장, 교정위원, 교정공무원 등 800여명 참석 |
| 10. 19.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및 이용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br>-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확대 등 | | |
| 10. 19.<br>~<br>11. 5. | 피해자 국선변호사 권역별 전문화 교육 실시<br>-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br>- 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정자 270여명<br>-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 및 권한과 의무, 피해자 지원현장에서의 실제사례 공유 등 | 10. 28.<br>~<br>11. 1. | 제44회 교정작품전시회<br>- 과천시민회관 전시실<br>-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등 참석<br>- 총 1,502점(교도작업제품 1,272점, 문예작품 230점) 전시 |
| | | 10. 30.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 양성과정 실시 |
| 10. 22.<br>~<br>10. 23. | UN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가<br>- 스위스 제네바<br>- 차관,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 등 정부대표단 39명<br>- UN자유권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의 | 11. 1. |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확대(경기도 파주 통일동산 지구, 투자금액 5억원 이상) |
| | | 11. 2. | 2015년도 제2차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개최<br>- 내부위원 2인, 외부위원 6인, 간사<br>- YES센터 운영을 통한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 지원 방안 등 논의 |
| 10. 23. | 제50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br>- 진천 법무연수원<br>-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선수단, 교정공무원 등 1,000여명 참석 | 11. 3.<br>~<br>11. 4. | 법무부-UNCITRAL 등 공동개최 ADR 국제컨퍼런스 |
| | | 11. 4.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br>(대통령령 제26614호, 2015. 11. 12. 시행) |
| 10. 23. | 법무부장관 정책현장 방문<br>- 청주여자교도소<br>- 법무부장관, 청주지검장, 교정본부장 등 참석 | 11. 10.<br>~<br>11. 15. | 제38회 한·일 교정직원 친선무도대회<br>- 서울남부구치소·대전교도소 연무관<br>- 경기종목 : 유도, 검도 |
| 10. 25. | '15년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상담 개최 | | |
| 10. 26. |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도입 시험실시<br>(단기취업비자로 19명 입국, 해당지자체 괴산군) | 11. 11. | 국적법시행규칙개정안 공포<br>(법무부령 제851호) |
| | | 11. 12.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br>(법무부령 제852호)<br>「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법무부령 제853호) |
| 10. 26. |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범공항 확대<br>- 중국 청도, 몽골 울란바토르 칭기스칸 공항 출발 국적항공기로 확대<br>- 대만 타오위안, 가오슝, 숭산 공항 출발 대만 국적 에바항공으로 확대 | 11 .13. |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워크숍 개최<br>-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업무수행 현황 파악 및 국가송무 역량 강화 방안 토의 |

| 일자 | 법 무 부 주 요 사 항 | 일자 | 법 무 부 주 요 사 항 |
|---|---|---|---|
| 11. 16.<br>~<br>11. 27. | 2015년 성폭력 추방주간 기념 표어 공모<br>-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근절 및 예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원 표어 공모<br>- '성폭력 예방의 두드림! 행복한 사회의 큰울림!' 등 우수작 선정 | 11. 25. |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면담<br>- 차관, 마르주끼 다루스만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 통일법무과장 등<br>- 면담 의제 : 반인도범죄 책임규명 방안 |
| 11. 18.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5. 허그(HUG) 후원의 날' 행사<br>- 법무부 대강당<br>- 법무부장관, 범정국장, 공단 이사장, 국회의원, 자원봉사자 등 1,000여명 | 11. 25.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법무부령 제855호) |
| 11. 19. | 제10회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br>- 법무부장관, 범정국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br>- 본선진출 12팀(민·형사 각 6팀) | 11. 25. |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법무부령 제856호) |
| 11. 19. | 인권국 홍보대사 위촉<br>- 방송인 김원희(여)<br>- '인권침해신고센터' 및 검사상대 1:1 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 홍보 동영상 출연, 국민을 상대로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따뜻한 법치 실현"이라는 법무부 인권 옹호 정책 추진에 기여 | 11. 27. | 제3차 북한인권 심포지엄 개최<br>- 안홍준 의원, 서상기 의원, 장윤석 의원, 마르주끼 다루스만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인 폴슨 UN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소장 등<br>- 반인도범죄 책임규명 방안, UN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와의 협력 방안 |
| 11. 19. |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식 | 11. 30. |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br>- 정부과천청사 5동 6층<br>-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등록업무의 신속·정확성 제고 |
| 11. 20. | 제3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br>- 법무연수원 본원 대강당<br>- 우승 : 부산교도소 | 12. 1. | 소년법 시행<br>- 원처분 집행기간을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 기간에 산입 |
| 11. 21.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731호) 및 시행규칙(제832호) 개정안 시행<br>- 갱생보호 방법의 구체화<br>-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정보의 요청 근거 마련 등 | 12. 1. | 수형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시범운영 실시 |
| 11. 23 | 진술조력인 양성 및 자격수여<br>- 5.~6. 진술조력인 양성교육생 선발<br>- 7.~10.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교육<br>- 11. 진술조력인 자격수여 | 12. 4. | 춘천스마일센터 개소식 개최<br>- 12. 4.(금) 10:30~12:00, 강원도 춘천시<br>- 장관, 강원도지사, 강원지방경찰청장, 춘천문화방송사장 등 약 50명 |
| | | 12. 7. | 2015년도 하반기 이민정책 이해과정 운영 |

| 일자 | 법 무 부 주 요 사 항 | 일자 | 법 무 부 주 요 사 항 |
|---|---|---|---|
| 12. 10. | 제8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br>- 12. 10.(목) 10:30~12:00, 과천청사 대강당<br>- 장관, 인권국장,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등 860여명 참석<br>-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홍보 및 관련 종사자 유공 표창 | 12. 18. | 형사사법 통계시스템 1단계 구축<br>- 법무부 통계(DW)시스템 구축<br>- 형사사법 공통 통계(DW)시스템 구축 |
| 12. 10. | 수형자 등 호송 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대통령령 제26695호) | 12. 23. | 재정착난민 22명 입국 |
| 12. 10.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대통령령 제26696호) | 12. 24. | 결혼이민(F-6) 사증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 개정<br>-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기준 변경, 소득요건 입증 방법 추가, 영사직접평가 탈락자에 대한 재평가 기회 부여 등 |
| 12. 10.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br>(법무부령 제858호) | 12. 24. | 2015년 우수인권공무원 포상<br>- 법무부 대회의실<br>- 법무부장관, 검찰·교정·보호·출입국 우수 인권공무원 14명에 대한 포상 |
| 12. 16. | 법질서 유공 포상 및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시상식<br>- 법질서 유공자 포상 및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우수 참가자 시상식을 개최, '배려 실천'과 법질서 준수 문화 확산을 도모 | 12. 30.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시행<br>-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출한 소년 등의 시료 검사 기관에 대검찰청 추가 |
| 12. 18. | 2015 '올해의 교사상' 및 '비전! 보호관찰인상' 시상식 및 소년원학생 문화예술제 개최<br>- 12. 18. 서울소년원,<br>- 장관, 범정국장 등 400여명<br>- 수상자 각 3명 시상 등 | | |

# 제 6 장

# 통 계

제1절 기획조정업무
제2절 법무업무
제3절 검찰업무
제4절 범죄예방업무
제5절 감찰·감사업무
제6절 인권업무
제7절 교정업무
제8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 제 6 장 통 계

## 제 1 절 법무업무 통계

### 1. 법무업무

○ 법령자문 〈표 1-1〉

(단위 : 건)

| 부처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1,947 | 2,012 | 2,825 | 3,530 | 3,365 | 4,072 | 3,740 | 5,096 | 4,458 | 4,811 |
| 기획재정부 | 84 | 102 | 107 | 107 | 109 | 136 | 122 | 149 | 153 | 171 |
| 교육부 | - | - | - | - | - | - | - | 185 | 222 | 217 |
| 미래창조과학부 | - | - | - | - | - | - | - | 107 | 149 | 192 |
| *교육과학기술부 | - | - | 166 | 197 | 216 | 280 | 289 | 41 | - | |
| *과학기술부 | 23 | 32 | - | - | - | - | - |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92 | 101 | - | - | - | - | - | - | - | |
| 외교부 | 13 | 14 | 4 | 16 | 28 | 27 | 38 | 27 | 26 | 23 |
| 통일부 | 25 | 7 | - | - | 35 | 11 | 10 | 153 | 16 | 28 |
| 법무부 | 258 | 277 | 525 | 501 | 452 | 398 | 330 | 480 | 263 | 438 |
| 국방부 | 51 | 58 | 61 | 95 | 93 | 104 | 99 | 121 | 118 | 138 |
| 행정자치부 | - | - | - | - | - | - | - | - | 19 | 313 |
| *안전행정부 | 127 | 158 | 293 | 247 | 291 | 444 | 410 | 625 | 412 | |
| 문화체육관광부 | 56 | 86 | 98 | 123 | 78 | 133 | 152 | 192 | 224 | 225 |
| 농림축산식품부 | 67 | 105 | 123 | 201 | 187 | 338 | 280 | 281 | 238 | 287 |
| 산업통상자원부 | 66 | 107 | 246 | 110 | 99 | 300 | 111 | 316 | 252 | 324 |
| 보건복지부 | 180 | 212 | 303 | 527 | 424 | 422 | 356 | 432 | 346 | 430 |
| 환경부 | 100 | 128 | 93 | 201 | 136 | 149 | 174 | 210 | 164 | 196 |
| 고용노동부 | 82 | 108 | 115 | 145 | 127 | 141 | 114 | 194 | 145 | 172 |
| 여성가족부 | - | - | - | - | 72 | 96 | 84 | 118 | 125 | 121 |
| 국토교통부 | 201 | 208 | 363 | 533 | 392 | 472 | 418 | 553 | 571 | 578 |
| 해양수산부 | 79 | 86 | - | - | - | - | - | 120 | 194 | 196 |
| 국민안전처 | - | - | - | - | - | - | - | - | 2 | 150 |
| 방송통신위원회 | 76 | 62 | 30 | 75 | 71 | 66 | 62 | 38 | 35 | 47 |
| 국무조정실 | 12 | 10 | 9 | 13 | 22 | 9 | 18 | 25 | 21 | 10 |
| 공정거래위원회 | 13 | - | 30 | 63 | 56 | 62 | 46 | 51 | 33 | 34 |
| 금융위원회 | - | - | 68 | 96 | 66 | 123 | 99 | 192 | 169 | 94 |
| 국민권익위원회 | - | - | 3 | 16 | 12 | 12 | 9 | 14 | 10 | 9 |
| 인사혁신처 | - | - | - | - | - | - | - | - | 1 | 50 |
| 법제처 | 4 | 1 | 4 | 5 | 10 | 8 | 14 | 15 | 10 | 5 |
| 국가보훈처 | 48 | 1 | 55 | 45 | 69 | 49 | 46 | 64 | 55 | 60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 - | - | - | - | - | 91 | 103 | 103 |
| 기타 | 290 | 149 | 129 | 214 | 320 | 292 | 459 | 302 | 382 | 200 |

○ 법령해석 〈표 1-2〉

(단위 : 건)

| 부처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19 | 3 | 6 | 2 | 3 | 11 | 14 | 10 | 168 | 185 |
| 기획재정부 | - | - | - | - | - | 1 | - | 1 | 2 | - |
| 교육부 | - | - | - | - | - | 1 | - | - | 7 | 6 |
| 미래창조과학부 | - | - | - | - | - | - | - | - | 1 | 1 |
| 외교부 | - | - | - | - | - | - | - | - | - | - |
| 통일부 | 8 | - | - | - | - | - | - | - | 1 | - |
| 법무부 | - | - | 2 | - | - | - | - | 1 | - | 8 |
| 국방부 | - | - | - | - | - | - | - | - | - | 1 |
| 행정자치부 | - | - | - | - | - | - | - | - | - | 6 |
| * 안전행정부 | 3 | 1 | - | - | - | - | - | - | 5 | |
|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 | - | - | - | 2 | 1 | - |
| 농림축산식품부 | - | - | - | - | - | - | - | - | 2 | - |
| 산업통상자원부 | - | - | 1 | - | 1 | - | 2 | 2 | 2 | - |
| 보건복지부 | - | - | - | - | - | - | - | 1 | 1 | 5 |
| 환경부 | - | - | - | - | - | 2 | - | - | 3 | - |
| 고용노동부 | 1 | 1 | - | - | - | 1 | 1 | - | 3 | - |
| 여성가족부 | - | - | - | - | - | - | - | - | 4 | 3 |
| 국토교통부 | - | - | 1 | - | - | 1 | 1 | - | 4 | 5 |
| 해양수산부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안전처 | - | - | - | - | - | - | - | - | - | 1 |
| 방송통신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국무조정실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 - | - | - | - | - | 1 | - | - | - | - |
| 금융위원회 | - | - | - | - | - | - | - | - | 1 | 1 |
| 국민권익위원회 | - | - | 1 | - | - | - | - | - | - | - |
| 인사혁신처 | - | - | - | - | - | - | - | - | - | - |
| 국가보훈처 | 3 | 1 | - | - | - | - | - | -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 - | - | - | - | - | - | 2 | - |
| 기타 | 4 | - | 1 | 2 | 2 | 4 | 10 | 3 | 129 | 148 |

○ 법령 제정·개정 〈표 1-3〉

(단위 : 건)

| 분류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 46 | 68 | 88 | 73 | 72 | 66 | 61 | 59 | 74 | 55 |
| 제정 | 소 계 | 8 | 13 | 16 | 15 | 16 | 8 | 7 | 4 | 7 | 3 |
| | 법 률 | 2 | 7 | 3 | 6 | 9 | - | 2 | 1 | 1 | - |
| | 대통령령 | 3 | 5 | 7 | 6 | 4 | 3 | 3 | 1 | 4 | 2 |
| | 부 령 | 3 | 1 | 6 | 3 | 3 | 5 | 2 | 2 | 2 | 1 |
| 개정 | 소 계 | 38 | 55 | 61 | 56 | 56 | 58 | 51 | 54 | 67 | 52 |
| | 법 률 | 6 | 18 | 15 | 15 | 19 | 11 | 10 | 13 | 22 | 7 |
| | 대통령령 | 13 | 18 | 22 | 19 | 12 | 21 | 24 | 14 | 23 | 19 |
| | 부 령 | 19 | 19 | 24 | 22 | 25 | 26 | 17 | 27 | 22 | 26 |
| 폐지 | 법 령 | - | - | 11 | 2 | - | - | 3 | 1 | - | - |

○ 법무자료 발간 〈표 1-4〉

(단위 : 건)

| 연 도 | 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발간횟수 | 90 | 5 | 6 | 4 | 4 | 9 | 4 | 10 | 8 | 22 | 18 |

## 2. 국제법무활동

○ 통상관계 법률자문 및 조약 등 국제협약의 법률문제 검토 〈표 1-5〉

(단위 : 건)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횟 수 | 63 | 78 | 86 | 79 | 75 | 43 | 38 | 40 | 56 | 28 |

○ 법률관련 인사 국제 교류 〈표 1-6〉

(단위 : 건)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횟 수 | 11 | 7 | 5 | 3 | 2 | 7 | 11 | 5 | 7 | 7 |

○ 법무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표 1-7〉

(단위 : 건)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횟 수 | 38 | 38 | 34 | 32 | 28 | 30 | 26 | 39 | 48 | 27 |
| 인 원 | 54 | 55 | 40 | 46 | 35 | 44 | 34 | 73 | 82 | 55 |

## 3. 변호사 · 공증

○ 변호사 인원 〈표 1-8〉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등록인원 | 8,429 | 9,280 | 10,187 | 11,016 | 11,802 | 12,607 | 14,534 | 16,547 | 18,708 | 20,531 |
| 개 업 | 7,603 | 8,143 | 8,895 | 9,612 | 10,263 | 10,976 | 12,532 | 14,242 | 15,954 | 17,424 |
| 비 개 업 | 826 | 1,137 | 1,292 | 1,404 | 1,539 | 1,631 | 2,002 | 2,305 | 2,754 | 3,107 |

○ 공증인 인원 〈표 1-9〉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임명공증인 | | 30 | 30 | 33 | 33 | 38 | 42 | 48 | 59 | 66 | 73 |
| 법 무 법 인 | 사무소 | 256 | 282 | 295 | 309 | 307 | 291 | 280 | 268 | 261 | 245 |
| | 구성원 | 1,722 | 1,917 | 2,089 | 2,209 | 1,420 | 1,322 | 1,211 | 1,183 | 1,170 | 1,029 |
| 합 동 법 률 사무소 | 사무소 | 68 | 67 | 64 | 62 | 52 | 46 | 36 | 31 | 29 | 27 |
| | 구성원 | 298 | 288 | 273 | 260 | 215 | 188 | 127 | 121 | 115 | 109 |
| 대 행 청 | | 14 | 13 | 13 | 13 | 14 | 14 | 13 | 12 | 12 | 12 |

○ 공증사무 처리 건수 〈표 1-10〉

(단위 : 건)

| 연도 \ 구분 | 사건처리건수 | 가 액 |
|---|---|---|
| 2006 | 3,620,631 | 78,991,376,920,882 |
| 2007 | 4,046,816 | 70,418,852,024,266 |
| 2008 | 4,258,090 | 59,563,370,695,375 |
| 2009 | 3,698,260 | 51,431,095,953,031 |
| 2010 | 3,872,079 | 54,138,827,021,658 |
| 2011 | 4,802,467 | 45,122,981,413,573 |
| 2012 | 4,027,514 | 47,911,345,357,891 |
| 2013 | 4,030,468 | 51,669,105,779,697 |
| 2014 | 3,825,991 | 38,138,696,634,463 |
| 2015 | 3,758,294 | 40,822,996,285,880 |

## 4. 국가소송

○ 전체 국가소송 사건 〈표 1-11〉

(단위 : 건)

| 구분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접수 | 계 | 10,027 | 11,148 | 11,659 | 10,624 | 9,929 | 10,086 | 10,887 | 11,891 | 13,412 | 14,874 |
| | 구 수 | 5,568 | 6,421 | 6,749 | 6,035 | 5,548 | 5,786 | 6,018 | 7,171 | 8,025 | 9,350 |
| | 신 수 | 4,459 | 4,727 | 4,910 | 4,589 | 4,381 | 4,300 | 4,869 | 4,720 | 5,387 | 5,524 |
| 처리 | 계 | 3,660 | 4,017 | 5,474 | 4,994 | 4,138 | 3,637 | 3,120 | 3,373 | 3,560 | 4,485 |
| | 승 소 | 1,328 | 1,408 | 1,897 | 1,813 | 1,534 | 1,440 | 1,360 | 1,477 | 1,623 | 1,882 |
| | 패 소 | 726 | 838 | 1,026 | 910 | 634 | 565 | 514 | 522 | 586 | 606 |
| | 기 타 | 1,606 | 1,771 | 2,551 | 2,271 | 1,970 | 1,632 | 1,246 | 1,374 | 1,351 | 1,997 |
| 미 제 | | 6,367 | 7,131 | 6,185 | 5,630 | 5,791 | 6,449 | 7,767 | 8,518 | 9,852 | 10,389 |

○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 현황 〈표 1-12〉

(단위 : 건)

| 연 도 | 접 수 | 처 리 | | | | 미 제 |
|---|---|---|---|---|---|---|
| | | 계 | 승 소 | 패 소 | 기 타 | |
| 2006 | 10,027 (4,459) | 3,660 | 1,328 | 726 | 1,606 | 6,367 |
| 2007 | 11,148 (4,727) | 4,017 | 1,408 | 838 | 1,771 | 7,131 |
| 2008 | 11,659 (4,910) | 5,474 | 1,897 | 1,026 | 2,551 | 6,185 |
| 2009 | 10,624 (4,589) | 4,994 | 1,813 | 910 | 2,271 | 5,630 |
| 2010 | 9,929 (4,381) | 4,138 | 1,534 | 634 | 1,970 | 5,791 |
| 2011 | 10,086 (4,300) | 3,637 | 1,440 | 565 | 1,632 | 6,449 |
| 2012 | 10,887 (4,869) | 3,120 | 1,360 | 514 | 1,246 | 7,767 |
| 2013 | 11,891 (4,720) | 3,373 | 1,477 | 522 | 1,374 | 8,518 |
| 2014 | 13,412 (5,387) | 3,560 | 1,623 | 586 | 1,351 | 9,852 |
| 2015 | 14,874 (5,524) | 4,485 | 1,882 | 606 | 1,997 | 10,389 |

* 접수란 중 ( )는 신수

○ 유형별 국가소송 사건 〈표 1-13〉

(단위 : 건)

| 구분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총 계 | | 10,027 | 11,148 | 11,659 | 10,624 | 9,929 | 10,074 | 10,875 | 11,879 | 13,398 | 14,860 |
| 국가원고 | 계 | 1,510 | 1,669 | 1,760 | 1,391 | 1,335 | 1,413 | 1,469 | 1,663 | 2,936 | 4,213 |
| | 부동산 | 181 | 198 | 335 | 249 | 271 | 316 | 346 | 351 | 265 | 314 |
| | 손해배상 | 47 | 63 | 59 | 32 | 15 | 24 | 26 | 26 | 30 | 26 |
| | 기 타 | 1,282 | 1,408 | 1,366 | 1,110 | 1,049 | 1,073 | 1,097 | 1,286 | 2,641 | 3,873 |
| 국가피고 | 계 | 8,517 | 9,479 | 9,899 | 9,233 | 8,594 | 8,661 | 9,406 | 10,216 | 10,462 | 10,647 |
| | 부동산 | 4,157 | 4,703 | 4,980 | 4,391 | 3,644 | 3,179 | 2,986 | 2,942 | 2,951 | 2,942 |
| | 손해배상 | 1,979 | 2,031 | 2,114 | 2,136 | 2,127 | 2,342 | 2,980 | 3,668 | 3,786 | 3,536 |
| | 기 타 | 2,381 | 2,745 | 2,805 | 2,706 | 2,823 | 3,140 | 3,440 | 3,606 | 3,725 | 4,169 |

○ 민사신청 사건 〈표 1-14〉

(단위 : 건)

| 구분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접수 | 계 | 1,590 | 1,697 | 710 | 1,866 | 2,692 | 3,207 | 3,753 | 4,231 | 7,113 | 5,731 |
| | 구 수 | 693 | 675 | 44 | 414 | 1,048 | 1,552 | 2,206 | 2,111 | 4,328 | 3,373 |
| | 신 수 | 897 | 1,022 | 666 | 1,452 | 1,644 | 1,655 | 1,547 | 2,120 | 2,785 | 2,358 |
| 처리 | 계 | 923 | 1,057 | 362 | 820 | 1,105 | 998 | 1,398 | 1,543 | 3,718 | 1,785 |
| | 종 결 | 735 | 930 | 324 | 631 | 870 | 805 | 1,220 | 1,318 | 1,234 | 1,394 |
| | 본안이송 | 90 | 58 | 3 | 92 | 118 | 87 | 77 | 95 | 2,325 | 222 |
| | 취 하 | 45 | 33 | 29 | 69 | 96 | 62 | 66 | 87 | 86 | 116 |
| | 각 하 | 51 | 28 | - | 3 | 8 | 10 | 17 | 14 | 30 | 15 |
| | 기 타 | 2 | 8 | 6 | 25 | 13 | 34 | 18 | 29 | 43 | 38 |
| 미 제 | | 667 | 640 | 362 | 1,046 | 1,587 | 2,209 | 2,355 | 2,688 | 3,395 | 3,946 |

## 5. 행정소송

○ 전체 행정소송 사건 〈표 1-15〉

(단위 : 건)

| 구분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접수 | 계 | 26,925 | 28,866 | 30,890 | 32,088 | 33,424 | 34,847 | 36,854 | 36,444 | 38,182 | 38,882 |
| | 구 수 | 14,003 | 14,900 | 16,821 | 16,608 | 16,920 | 19,400 | 21,346 | 20,289 | 22,317 | 22,775 |
| | 신 수 | 12,922 | 13,966 | 14,069 | 15,480 | 16,504 | 15,447 | 15,508 | 16,155 | 15,865 | 16,107 |
| 처리 | 계 | 12,058 | 11,919 | 14,080 | 15,055 | 13,875 | 13,118 | 16,071 | 13,091 | 14,592 | 13,285 |
| | 승 소 | 5,711 | 5,702 | 6,859 | 7,640 | 6,692 | 6,635 | 7,867 | 6,371 | 7,132 | 6,290 |
| | 패 소 | 1,444 | 1,463 | 1,644 | 1,514 | 1,607 | 1,601 | 2,047 | 1,865 | 1,702 | 1,740 |
| | 취하등 | 4,903 | 4,754 | 5,577 | 5,901 | 5,576 | 4,882 | 6,157 | 4,855 | 5,758 | 5,255 |
| 미 제 | | 14,867 | 16,947 | 16,810 | 17,033 | 19,549 | 21,729 | 20,783 | 23,353 | 23,590 | 25,597 |

○ 행정소송 접수 및 처리 현황 〈표 1-16〉

(단위 : 건)

| 연 도 | 접 수 | 처 리 | | | | 미 제 |
|---|---|---|---|---|---|---|
| | | 계 | 승 소 | 패 소 | 기 타 | |
| 2006 | 26,925 (12,922) | 12,058 | 5,711 | 1,444 | 4,903 | 14,867 |
| 2007 | 28,866 (13,966) | 11,919 | 5,702 | 1,463 | 4,754 | 16,947 |
| 2008 | 30,890 (14,069) | 14,080 | 6,859 | 1,644 | 5,577 | 16,810 |
| 2009 | 32,088 (15,480) | 15,055 | 7,640 | 1,514 | 5,901 | 17,033 |
| 2010 | 33,424 (16,504) | 13,875 | 6,692 | 1,607 | 5,576 | 19,549 |
| 2011 | 34,847 (15,447) | 13,118 | 6,635 | 1,601 | 4,882 | 21,729 |
| 2012 | 36,854 (15,508) | 16,071 | 7,867 | 2,047 | 6,157 | 20,783 |
| 2013 | 36,444(16,155) | 13,091 | 6,371 | 1,865 | 4,855 | 23,353 |
| 2014 | 38,182 (15,865) | 14,592 | 7,132 | 1,702 | 5,758 | 23,590 |
| 2015 | 38,882 (16,107) | 13,285 | 6,290 | 1,740 | 5,255 | 25,597 |

* 접수란 중 ( )는 신수

○ 유형별 행정소송 사건 〈표 1-17〉

(단위 : 건)

| 유형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26,925 | 28,866 | 30,890 | 32,088 | 33,424 | 34,847 | 36,854 | 36,444 | 38,182 | 38,882 |
| 조 세 관 계 | 4,401 | 4,921 | 5,266 | 4,490 | 4,206 | 4,698 | 4,810 | 5,644 | 6,849 | 7,379 |
| 공 무 원 신 분 | 1,663 | 1,529 | 3,731 | 2,264 | 1,742 | 1,611 | 1,623 | 1,681 | 1,582 | 1,645 |
| 국 토 도 시 계 획 | 768 | 914 | 2,641 | 3,208 | 3,916 | 3,625 | 3,473 | 3,129 | 3,141 | 2,846 |
| 영업허가취소·정지 | 3,067 | 2,941 | 2,212 | 3,132 | 3,271 | 2,828 | 3,190 | 3,534 | 3,934 | 3,389 |
| 자격·면허·등록·인가 | 2,897 | 2,863 | 2,470 | 2,876 | 2,919 | 3,116 | 2,754 | 2,678 | 2,810 | 2,231 |
| 토 지 수 용 | 1,656 | 1,883 | - | - | - | - | - | - | - | - |
| 공 과 금 | 1,137 | 1,170 | - | - | - | - | - | - | - | - |
| 기 타 | 11,336 | 12,645 | 14,570 | 16,118 | 17,370 | 18,969 | 21,004 | 19,778 | 19,866 | 21,392 |

## 6. 국가배상

○ 전체 국가배상사건(협정배상 포함) 〈표 1-18〉

(단위 : 건)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접수 | 계 | 831 | 914 | 1,020 | 1,075 | 1,590 | 2,983 | 3,011 | 4,517 | 3,976 | 4,149 |
| | 구 수 | 204 | 258 | 193 | 267 | 229 | 443 | 938 | 885 | 1,130 | 1,057 |
| | 신 수 | 627 | 656 | 827 | 808 | 1,361 | 2,540 | 2,073 | 3,632 | 2,846 | 3,092 |
| 처리 | 계 | 573 | 721 | 752 | 927 | 1,162 | 2,058 | 2,127 | 3,299 | 2,915 | 3,047 |
| | 인 용 | 316 | 392 | 456 | 635 | 637 | 736 | 1,063 | 1,767 | 1,177 | 1,057 |
| | 기 각 | 211 | 295 | 249 | 236 | 426 | 1,222 | 944 | 1,424 | 1,627 | 1,896 |
| | 기 타 | 46 | 34 | 47 | 56 | 99 | 100 | 120 | 108 | 111 | 94 |
| 미 제 | | 258 | 193 | 268 | 148 | 428 | 925 | 884 | 1,218 | 1,061 | 1,102 |

○ 국가배상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협정배상 포함) 〈표 1-19〉

(단위 : 건)

| 연 도 | 접 수 | 처 리 | | | | 미 제 |
|---|---|---|---|---|---|---|
| | | 계 | 인 용 | 기 각 | 기 타 | |
| 2006 | 831 (627) | 573 | 316 | 211 | 46 | 258 |
| 2007 | 914 (656) | 721 | 392 | 295 | 34 | 193 |
| 2008 | 1,020 (827) | 752 | 456 | 249 | 47 | 268 |
| 2009 | 1,075 (808) | 927 | 635 | 236 | 56 | 148 |
| 2010 | 1,590 (1,361) | 1,162 | 637 | 426 | 99 | 428 |
| 2011 | 2,983 (2,540) | 2,058 | 736 | 1,222 | 100 | 925 |
| 2012 | 3,011 (2,073) | 2,127 | 1,063 | 944 | 120 | 884 |
| 2013 | 4,517 (3,632) | 3,299 | 1,767 | 1,424 | 108 | 1,218 |
| 2014 | 3,976 (2,846) | 2,915 | 1,177 | 1,627 | 111 | 1,061 |
| 2015 | 4,149 (3,092) | 3,047 | 1,057 | 1,896 | 94 | 1,102 |

* 접수란 중 ( )는 신수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배상사건 〈표 1-20〉

(단위 : 건)

| 구 분 \ 연 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접수 | 계 | 289 | 265 | 198 | 178 | 139 | 177 | 190 | 167 | 168 | 174 |
| | 구 수 | 89 | 130 | 59 | 70 | 40 | 57 | 61 | 53 | 56 | 58 |
| | 신 수 | 200 | 135 | 139 | 108 | 99 | 120 | 129 | 114 | 112 | 116 |
| 처리 | 계 | 159 | 206 | 127 | 144 | 78 | 114 | 137 | 111 | 109 | 124 |
| | 인 용 | 120 | 109 | 92 | 125 | 67 | 93 | 116 | 91 | 84 | 110 |
| | 기 각 | 25 | 83 | 28 | 11 | 6 | 15 | 16 | 19 | 20 | 12 |
| | 기 타 | 14 | 14 | 7 | 8 | 5 | 6 | 5 | 1 | 5 | 2 |
| 미 제 | | 130 | 59 | 71 | 34 | 61 | 63 | 53 | 56 | 59 | 50 |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배상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표 1-21〉

(단위 : 건)

| 연 도 | 접 수 | 처 리 | | | | 미 제 |
|---|---|---|---|---|---|---|
| | | 계 | 인 용 | 기 각 | 기 타 | |
| 2006 | 289 (200) | 159 | 120 | 25 | 14 | 130 |
| 2007 | 265 (135) | 206 | 109 | 83 | 14 | 59 |
| 2008 | 198 (139) | 127 | 92 | 28 | 7 | 71 |
| 2009 | 178 (108) | 144 | 125 | 11 | 8 | 34 |
| 2010 | 139 ( 99) | 78 | 67 | 6 | 5 | 61 |
| 2011 | 177 (120) | 114 | 93 | 15 | 6 | 63 |
| 2012 | 190 (129) | 137 | 116 | 16 | 5 | 53 |
| 2013 | 167 (114) | 111 | 91 | 19 | 1 | 56 |
| 2014 | 168 (112) | 109 | 84 | 20 | 5 | 59 |
| 2015 | 174 (116) | 124 | 110 | 12 | 2 | 50 |

* 접수란 중 ( )는 신수

○ 국가배상금 지급 내역 〈표 1-22〉

(단위 : 건/천 원)

| 구분 / 연도 | 지급총액 | 배 상 결 정 | 판 결 | 소송비용확정액 |
|---|---|---|---|---|
| 2006 | 291 / 14,697,441 | 136 / 366,067 | 155 / 14,331,374 | - / - |
| 2007 | 377 / 76,171,534 | 198 / 3,406,443 | 179 / 72,765,091 | - / - |
| 2008 | 274 / 9,037,921 | 104 / 161,212 | 170 / 8,876,709 | - / - |
| 2009 | 449 / 63,374,994 | 280 / 1,438,035 | 169 / 61,936,959 | - / - |
| 2010 | 316 / 18,989,019 | 139 / 283,734 | 177 / 18,705,285 | - / - |
| 2011 | 489 / 80,764,951 | 140 / 433,565 | 185 / 79,381,674 | 164 / 949,712 |
| 2012 | 659 / 133,868,655 | 120 / 398,033 | 198 / 127,482,784 | 341 / 5,987,838 |
| 2013 | 409 / 57,388,717 | 119 / 272,736 | 290 / 57,115,981 | - / - |
| 2014 | 745 / 203,013,306 | 85 / 180,384 | 385 / 198,871,841 | 275 / 3,961,081 |
| 2015 | 1,005 / 300,722,110 | 122 / 438,161 | 461 / 293,614,502 | 422 / 6,669,447 |

* 2011년 164건(9억5,000만원), 2012년 341건(59억8,800만원), 2014년 275건(39억6,000만원), 2015년 422건(66억7,000만원)의 소송비용 확정액이 배상금 항목에서 지급됨

## 7. 헌법재판 현황 〈표 1-23〉

(단위 : 건)

| 연도 | 구분 | 접수 (신·구수) | 처리 | | | | | | | | | | | 미제 |
|---|---|---|---|---|---|---|---|---|---|---|---|---|---|---|
| | | | 합계 | 위헌 | | | | | 합헌 | | | | 각하 등 | |
| | | | | 소계 | 위헌 | 한정위헌 | 헌법불합치 | 인용 | 소계 | 합헌 | 한정합헌 | 기각 | | |
| 2007 | 계 | 2,658 | 1,731 | 47 | 8 | - | 11 | 28 | 727 | 62 | - | 665 | 957 | 727 |
| | 위헌법률 | 46 | 15 | 7 | 6 | - | 1 | - | 6 | 6 | - | - | 2 | 31 |
| | 헌법소원 | 2,593 | 1,712 | 40 | 2 | - | 10 | 28 | 721 | 56 | - | 665 | 951 | 881 |
| | 권한쟁의 | 19 | 4 | - | - | - | - | - | - | - | - | - | 4 | 15 |
| 2008 | 계 | 2,059 | 1,391 | 49 | 13 | 3 | 11 | 22 | 1,342 | 90 | - | 486 | 766 | 668 |
| | 위헌법률 | 59 | 23 | 9 | 7 | - | 2 | - | 14 | 14 | - | - | - | 36 |
| | 헌법소원 | 1,977 | 1,359 | 39 | 6 | 3 | 9 | 21 | 1,320 | 76 | - | 483 | 761 | 618 |
| | 권한쟁의 | 23 | 9 | 1 | - | - | - | 1 | 8 | - | - | 3 | 5 | 14 |
| 2009 | 계 | 2,155 | 1,545 | 61 | 28 | 1 | 11 | 21 | 329 | 117 | - | 212 | 1,155 | 610 |
| | 위헌법률 | 72 | 23 | 17 | 11 | - | 6 | - | 6 | 6 | - | - | - | 49 |
| | 헌법소원 | 2,057 | 1,511 | 39 | 17 | 1 | 5 | 16 | 323 | 111 | - | 212 | 1,149 | 546 |
| | 권한쟁의 | 26 | 11 | 5 | - | - | - | 5 | - | - | - | - | 6 | 15 |
| 2010 | 계 | 2,330 | 1,670 | 101 | 69 | - | 7 | 25 | 267 | 135 | - | 132 | 1,302 | 660 |
| | 위헌법률 | 148 | 113 | 67 | 62 | - | 5 | - | 14 | 14 | - | - | 32 | 35 |
| | 헌법소원 | 2,161 | 1,545 | 30 | 7 | - | 2 | 21 | 251 | 121 | - | 130 | 1,264 | 616 |
| | 권한쟁의 | 21 | 12 | 4 | - | - | - | 4 | 2 | - | - | 2 | 6 | 9 |
| 2011 | 계 | 2,226 | 1,428 | 68 | 29 | 7 | 5 | 27 | 283 | 168 | - | 115 | 1,077 | 798 |
| | 위헌법률 | 77 | 46 | 24 | 22 | - | 2 | - | 15 | 15 | - | - | 7 | 31 |
| | 헌법소원 | 2,137 | 1,375 | 43 | 7 | 7 | 3 | 26 | 265 | 153 | - | 112 | 1,067 | 762 |
| | 권한쟁의 | 12 | 7 | 1 | - | - | - | 1 | 3 | - | - | 3 | 3 | 5 |
| 2012 | 계 | 2,509 | 1,661 | 74 | 15 | 7 | 5 | 47 | 337 | 140 | - | 197 | 1,250 | 848 |
| | 위헌법률 | 53 | 21 | 9 | 9 | - | - | - | 7 | 7 | - | - | 5 | 32 |
| | 헌법소원 | 2,447 | 1,637 | 65 | 6 | 7 | 5 | 47 | 328 | 133 | - | 195 | 1,244 | 810 |
| | 권한쟁의 | 9 | 3 | - | - | - | - | - | 2 | - | - | 2 | 1 | 6 |
| 2013 | 계 | 2,328 | 1,585 | 71 | 25 | - | 3 | 43 | 372 | 147 | - | 225 | 1,142 | 743 |
| | 위헌법률 | 60 | 22 | 8 | 7 | - | 1 | - | 14 | 14 | - | - | - | 38 |
| | 정당해산 | 1 | - | - | - | - | - | - | - | - | - | - | - | 1 |
| | 권한쟁의 | 9 | 5 | - | - | - | - | - | 1 | - | - | 1 | 4 | 4 |
| | 헌법소원 | 2,258 | 1,558 | 63 | 18 | | 2 | 43 | 357 | 133 | | 224 | 1,138 | 700 |
| 2014 | 계 | 2,712 | 1,888 | 60 | 11 | 3 | 15 | 31 | 255 | 104 | - | 151 | 1,573 | 824 |
| | 위헌법률 | 64 | 14 | 7 | 3 | 3 | 1 | - | 6 | 6 | - | - | 1 | 50 |
| | 정당해산 | 1 | 1 | 1 | - | - | - | 1 | - | - | - | - | - | - |
| | 권한쟁의 | 5 | 2 | - | - | - | - | - | - | - | - | - | 2 | 3 |
| | 헌법소원 | 2,642 | 1,871 | 52 | 8 | - | 14 | 30 | 249 | 98 | - | 151 | 1,570 | 771 |
| 2015 | 계 | 2,683 | 1,937 | 110 | 47 | - | 15 | 48 | 379 | 176 | - | 203 | 1,448 | 746 |
| | 위헌법률 | 87 | 44 | 22 | 21 | - | 1 | - | 20 | 20 | - | - | 2 | 43 |
| | 정당해산 | 1 | - | - | - | - | - | - | - | - | - | - | - | 1 |
| | 권한쟁의 | 11 | 2 | 1 | - | - | - | 1 | - | - | - | - | 1 | 9 |
| | 헌법소원 | 2,584 | 1,891 | 87 | 26 | - | 14 | 47 | 359 | 156 | - | 203 | 1,445 | 693 |

* 2010년도 위헌법률심판사건 중 위헌 선고된 62건 중 14건은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선고임.

## 8. 제57회 사법시험 관련 통계

### 가. 출원 현황

○ 연도별 응시원서 접수 총괄 현황 〈표 1-24〉

(단위 : 명)

| 연 도 | 시험구분 | 총 계 | 제1차시험 응시출원자 | 제1차시험 면제자 | 제1·2차시험 면제자 |
|---|---|---|---|---|---|
| 2015 | 사법시험 | 6,182 | 5,768 | 413 | 1 |
| 2014 | 사법시험 | 7,428 | 6,848 | 578 | 2 |
| 2013 | 사법시험 | 10,089 | 9,232 | 854 | 3 |
| 2012 | 사법시험 | 14,035 | 12,766 | 1,262 | 7 |
| 2011 | 사법시험 | 19,536 | 17,498 | 2,030 | 8 |
| 2010 | 사법시험 | 23,244 | 20,907 | 2,315 | 22 |
| 2009 | 사법시험 | 23,430 | 21,156 | 2,264 | 10 |
| 2008 | 사법시험 | 23,656 | 21,082 | 2,563 | 11 |
| 2007 | 사법시험 | 23,444 | 21,032 | 2,398 | 14 |
| 2006 | 사법시험 | 21,210 | 18,635 | 2,575 | - |

○ 성별 출원 현황 〈표 1-25〉

(단위 : 명)

| 성별 / 시험구분 | 총 계 | 남 자 | 여 자 |
|---|---|---|---|
| 사 법 시 험 (비율) | 6,182 | 4,211 (68.12%) | 1,971 (31.88%) |

○ 연령별 출원 현황 〈표 1-26〉

(단위 : 명)

| 연령 / 시험구분 | 20세 미만 | 20세 이상~25세 미만 | 25세 이상~30세 미만 | 30세 이상~35세 미만 | 35세 이상~40세 미만 | 40세 이상~45세 미만 | 45세 이상~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사법시험 (비율) | 8 (0.13%) | 357 (5.77%) | 1,528 (24.72%) | 1,695 (27.42%) | 1,173 (18.97%) | 728 (11.78%) | 421 (6.81%) | 272 (4.40%) |

○ 학력별 출원 현황 〈표 1-27〉

(단위 : 명)

| 학 력 / 시험구분 | 총 계 | 대학원 재학 이상 | 대학졸업 | 대학재학·중퇴 | 전문대 졸업·재학 등 | 고졸 이하 |
|---|---|---|---|---|---|---|
| 사법시험 (비율) | 6,182 | 646 (10.45%) | 4,044 (65.42%) | 1,396 (22.58%) | 18 (0.29%) | 78 (1.26%) |

○ 법학전공별 출원 현황 〈표 1-28〉

(단위 : 명)

| 법학전공 / 시험구분 | 총 계 | 전 공 | 비 전 공 |
|---|---|---|---|
| 사 법 시 험 (비 율) | 6,182 | 4,628 (74.86%) | 1,554 (25.14%) |

## 나. 합격자 현황

○ 연도별 합격자 및 합격점 현황 〈표 1-29〉

(단위 : 명)

| 연도 | 시험구분 | 제1차시험 | | | 제2차시험 | | | 제3차시험 | |
|---|---|---|---|---|---|---|---|---|---|
| |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점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점 | 응시자 | 합격자 |
| 2015 | 사법시험 | 3,930 | 347 | 282.91 | 712 | 152 | 386.04 | 153 | 153 |
| 2014 | 사법시험 | 4,696 | 471 | 266.69 | 1,002 | 203 | 381.01 | 205 | 204 |
| 2013 | 사법시험 | 6,862 | 665 | 289.62 | 1,456 | 305 | 379.17 | 308 | 306 |
| 2012 | 사법시험 | 10,306 | 1,001 | 273.36 | 2,164 | 502 | 369.84 | 509 | 506 |
| 2011 | 사법시험 | 14,449 | 1,447 | 273.89 | 3,313 | 706 | 385.80 | 714 | 707 |
| 2010 | 사법시험 | 17,028 | 1,963 | 262.00 | 4,104 | 800 | 340.22 | 822 | 814 |
| 2009 | 사법시험 | 17,972 | 2,584 | 262.52 | 4,399 | 1,009 | 358.70 | 1,019 | 997 |
| 2008 | 사법시험 | 17,829 | 2,511 | 252.02 | 4,877 | 1,005 | 353.74 | 1,015 | 1,005 |
| 2007 | 사법시험 | 18,114 | 2,808 | 256.00 | 5,024 | 1,008 | 355.00 | 1,022 | 1,011 |
| 2006 | 사법시험 | 17,290 | 2,665 | 278.50 | 5,007 | 1,002 | 350.64 | 1,002 | 994 |

○ 성별 시험 합격 현황 〈표 1-30〉

(단위 : 명)

| 성 별 / 시험구분 | 총 계 | 남 자 | 여 자 |
|---|---|---|---|
| 사 법 시 험 (비율) | 153 | 94 (61.44%) | 59 (38.56%) |

○ 연령별 시험 합격 현황 〈표 1-31〉

(단위 : 명)

| 연령 / 시험구분 | 20세 이상~25세 미만 | 25세 이상~30세 미만 | 30세 이상~35세 미만 | 35세 이상~40세 미만 | 40세 이상~45세 미만 | 45세 이상~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사법시험 (비율) | 2 (1.31%) | 67 (43.79%) | 56 (36.60%) | 26 (16.99%) | 2 (1.31%) | 0 (0.00%) | 0 (0.00%) |

○ 학력별 시험 합격 현황 〈표 1-32〉

(단위 : 명)

| 학 력 / 시험구분 | 총 계 | 대학원 재학 이상 | 대학졸업 | 대학 재학·중퇴 | 전문대 졸업·재학 등 | 고졸 이하 |
|---|---|---|---|---|---|---|
| 사법시험 (비율) | 153 | 16 (10.46%) | 103 (67.32%) | 34 (22.22%) | 0 | 0 |

○ 법학전공별 시험 합격 현황 〈표 1-33〉

(단위 : 명)

| 법학전공 / 시험구분 | 총 계 | 전 공 | 비 전 공 |
|---|---|---|---|
| 사 법 시 험 (비율) | 153 | 134 (87.58%) | 19 (12.42%) |

○ 출신대학별 시험 합격 현황 〈표 1-34〉

(단위 : 명)

| 출 신 교 | 합격자수 | 출 신 교 | 합격자수 |
|---|---|---|---|
| 연 세 대 학 교 | 22 | 전 남 대 학 교 | 3 |
| 고 려 대 학 교 | 19 | 전 북 대 학 교 | 3 |
| 서 울 대 학 교 | 15 | 서 강 대 학 교 | 2 |
| 이화여자대학교 | 13 | 서울시립대학교 | 2 |
| 한 양 대 학 교 | 11 | 충 남 대 학 교 | 2 |
| 성 균 관 대 학 교 | 9 | 광 운 대 학 교 | 1 |
| 동 국 대 학 교 | 8 | 단 국 대 학 교 | 1 |
| 경 희 대 학 교 | 6 | 동 아 대 학 교 | 1 |
| 중 앙 대 학 교 | 6 | 숭 실 대 학 교 | 1 |
| 부 산 대 학 교 | 5 | 영 남 대 학 교 | 1 |
| 한국외국어대학교 | 5 | 원 광 대 학 교 | 1 |
| 경 북 대 학 교 | 4 | 한국해양대학교 | 1 |
| 건 국 대 학 교 | 3 | 홍 익 대 학 교 | 1 |
| 국 민 대 학 교 | 3 | 기 타 | 1 |
| 숙명여자대학교 | 3 | 총 계 | 153 |

※ 본 자료는 응시자 본인의 응시원서 기재 기준임

## 9. 제4회 변호사시험 관련 통계

### 가. 출원 현황

○ 연도별 응시원서 접수 현황 〈표 1-35〉

(단위 : 명)

| 연 도 | 시험구분 | 총 계 | 남 자 | 여 자 |
|---|---|---|---|---|
| 2015 | 변호사시험 | 2,704 | 1,567 | 1,137 |
| 2014 | 변호사시험 | 2,432 | 1,387 | 1,045 |
| 2013 | 변호사시험 | 2,095 | 1,158 | 937 |
| 2012 | 변호사시험 | 1,698 | 996 | 702 |

○ 연령별 출원 현황 〈표 1-36〉

(단위 : 명)

| 연령 / 시험구분 | 25세 미만 | 25세 이상~30세 미만 | 30세 이상~35세 미만 | 35세 이상~40세 미만 | 40세 이상~45세 미만 | 45세 이상~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변호사시험 (비율) | 2 (0.07%) | 898 (33.21%) | 1,199 (44.34%) | 439 (16.24%) | 140 (5.18%) | 22 (0.81%) | 4 (0.15%) |

○ 법학전공별 출원 현황 〈표 1-37〉

(단위 : 명)

| 법학전공 / 시험구분 | 총 계 | 전 공 | 비 전 공 |
|---|---|---|---|
| 변 호 사 시 험 (비 율) | 2,704 | 1,451 (53.66%) | 1,253 (46.34%) |

### 나. 합격자 현황

○ 연도별 합격자 현황 〈표 1-38〉

(단위 : 명)

| 연도 | 시험구분 | 총 계 | | | 남 자 | | | 여 자 | | |
|---|---|---|---|---|---|---|---|---|---|---|
| |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2015 | 변호사시험 | 2,561 | 1,565 | 61.10 | 1,471 | 893 | 60.70 | 1,090 | 672 | 61.65 |
| 2014 | 변호사시험 | 2,292 | 1,550 | 67.62 | 1,298 | 869 | 66.94 | 994 | 681 | 68.51 |
| 2013 | 변호사시험 | 2,046 | 1,538 | 75.17 | 1,130 | 848 | 75.04 | 916 | 690 | 75.33 |
| 2012 | 변호사시험 | 1,665 | 1,451 | 87.14 | 974 | 856 | 87.88 | 691 | 595 | 86.10 |

○ 법학전공별 시험 합격 현황 〈표 1-39〉

(단위 : 명)

| 법학전공 / 시험구분 | 총 계 | 전 공 | 비 전 공 |
|---|---|---|---|
| 변 호 사 시 험 (비율) | 1,565 | 918 (58.66%) | 647 (41.34%) |

# 제 2 절 검찰업무 통계

## 1. 검사 수사 사건

### 가. 전체 사건 <표 2-1>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접수 | 계 | | 2,467,522 | 2,612,622 | 2,797,436 | 2,891,156 | 2,464,629 | 2,333,951 | 2,401,107 | 2,474,033 | 2,463,524 | 2,580,756 |
| | 구수 | | 65,985 | 64,612 | 64,251 | 61,599 | 71,012 | 65,803 | 74,547 | 84,196 | 83,944 | 88,432 |
| | 신수 | | 2,401,537 | 2,548,010 | 2,733,185 | 2,829,557 | 2,393,617 | 2,268,148 | 2,326,560 | 2,389,837 | 2,379,580 | 2,492,324 |
| 처리 | 계 | | 2,402,972 | 2,548,883 | 2,736,064 | 2,820,395 | 2,398,903 | 2,259,500 | 2,316,969 | 2,389,660 | 2,374,370 | 2,495,255 |
| | 기소 | 소계 | 1,094,113 | 1,217,284 | 1,316,987 | 1,196,776 | 1,014,753 | 917,335 | 902,552 | 910,158 | 870,320 | 852,314 |
| | | 구공판 | 137,790 | 155,704 | 166,641 | 172,353 | 160,318 | 182,436 | 196,484 | 182,322 | 191,080 | 187,402 |
| | | 구약식 | 956,323 | 1,061,580 | 1,150,346 | 1,024,423 | 854,435 | 734,899 | 706,068 | 727,836 | 679,240 | 664,912 |
| | 불기소 | 소계 | 1,226,617 | 1,224,947 | 1,303,386 | 1,478,448 | 1,253,218 | 1,203,587 | 1,257,938 | 1,297,033 | 1,344,779 | 1,460,294 |
| | | 무혐의 | 286,209 | 269,918 | 275,399 | 316,341 | 288,360 | 280,482 | 304,120 | 315,513 | 334,419 | 361,070 |
| | | 기소유예 | 322,056 | 331,456 | 370,031 | 471,680 | 374,422 | 359,305 | 357,854 | 338,628 | 338,350 | 378,723 |
| | | 기소중지 | 175,754 | 159,493 | 161,525 | 159,481 | 129,818 | 123,232 | 147,858 | 185,052 | 208,340 | 218,047 |
| | | 참고인중지 | 33,856 | 26,120 | 23,071 | 22,698 | 18,576 | 17,740 | 17,710 | 17,582 | 15,694 | 12,542 |
| | | 각하 | 65,924 | 61,164 | 70,044 | 86,126 | 71,665 | 67,423 | 83,974 | 87,987 | 95,974 | 112,931 |
| | | 기타 | 342,818 | 376,796 | 403,316 | 422,122 | 370,377 | 355,405 | 346,422 | 352,271 | 352,002 | 376,981 |
| | 이송 | 소년보호 | 18,227 | 27,004 | 29,653 | 33,951 | 32,274 | 33,233 | 37,253 | 29,992 | 25,226 | 25,027 |
| | | 가정보호 | 4,201 | 4,738 | 4,837 | 4,585 | 3,222 | 3,039 | 3,753 | 6,414 | 9,449 | 20,036 |
| | | 타관 | 59,430 | 74,509 | 80,795 | 106,032 | 95,189 | 102,087 | 115,214 | 145,830 | 124,378 | 137,197 |
| | | 성매매보호 | 384 | 401 | 406 | 603 | 247 | 219 | 259 | 233 | 218 | 387 |
| 미제 | | | 64,550 | 63,739 | 61,372 | 70,761 | 65,726 | 74,451 | 84,138 | 84,373 | 89,154 | 85,501 |

## 나. 청별 사건 <표 2-2>

(단위 : 명)

| 검찰청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2,401,537 | 2,548,010 | 2,733,185 | 2,829,557 | 2,393,713 | 2,268,148 | 2,326,560 | 2,389,837 | 2,379,580 | 2,492,321 |
| 서울중앙 | 210,729 | 223,277 | 219,631 | 243,434 | 199,361 | 190,118 | 184,574 | 183,105 | 175,052 | 175,798 |
| 서울동부 | 86,820 | 86,367 | 90,153 | 103,420 | 82,924 | 75,844 | 77,063 | 78,169 | 76,497 | 76,287 |
| 서울남부 | 109,375 | 112,672 | 120,316 | 126,277 | 102,752 | 103,816 | 103,313 | 100,572 | 99,170 | 103,045 |
| 서울북부 | 94,688 | 97,763 | 102,151 | 107,823 | 89,070 | 87,418 | 80,196 | 86,491 | 90,907 | 91,109 |
| 서울서부 | 76,695 | 75,619 | 79,185 | 86,776 | 67,893 | 65,026 | 64,295 | 69,321 | 68,703 | 67,255 |
| 의정부 | 78,362 | 79,267 | 98,746 | 103,047 | 83,470 | 77,549 | 82,393 | 87,021 | 87,175 | 93,587 |
| 고양 | 45,684 | 55,642 | 67,576 | 65,131 | 51,317 | 49,437 | 52,782 | 56,961 | 59,494 | 62,921 |
| 인천 | 152,030 | 152,873 | 157,700 | 165,670 | 137,107 | 123,444 | 133,871 | 139,475 | 141,832 | 143,257 |
| 부천 | 49,510 | 52,618 | 63,999 | 61,919 | 50,931 | 49,460 | 52,915 | 53,972 | 55,792 | 60,109 |
| 수원 | 128,070 | 133,116 | 180,536 | 148,537 | 107,479 | 106,624 | 114,135 | 119,807 | 123,235 | 136,617 |
| 성남 | 54,408 | 61,826 | 74,718 | 73,512 | 56,297 | 53,956 | 56,576 | 60,269 | 60,984 | 64,293 |
| 여주 | 17,724 | 18,962 | 21,351 | 22,747 | 19,553 | 17,497 | 17,600 | 19,137 | 19,216 | 20,627 |
| 평택 | 26,040 | 29,336 | 30,651 | 32,577 | 29,541 | 30,922 | 30,888 | 31,973 | 34,926 | 38,080 |
| 안산 | 69,102 | 75,336 | 85,432 | 82,611 | 66,551 | 68,829 | 67,886 | 70,573 | 69,766 | 82,751 |
| 안양 | - | - | 41,122 | 41,122 | 37,494 | 38,528 | 40,836 | 41,395 | 40,557 | 43,780 |
| 춘천 | 19,500 | 20,147 | 19,035 | 21,721 | 19,643 | 19,264 | 19,895 | 22,126 | 20,227 | 20,663 |
| 강릉 | 20,955 | 23,514 | 22,402 | 22,740 | 19,620 | 17,384 | 17,794 | 17,736 | 18,166 | 17,941 |
| 원주 | 18,948 | 20,797 | 19,891 | 19,860 | 18,781 | 18,604 | 20,927 | 19,976 | 18,948 | 19,907 |
| 속초 | 9,638 | 8,692 | 8,113 | 7,908 | 7,312 | 6,778 | 7,308 | 7,518 | 7,157 | 7,472 |
| 영월 | 9,573 | 9,130 | 10,273 | 9,367 | 8,017 | 8,289 | 9,010 | 8,299 | 7,790 | 8,403 |
| 대전 | 68,754 | 73,372 | 75,574 | 77,299 | 73,220 | 62,516 | 64,623 | 67,572 | 68,139 | 71,061 |
| 홍성 | 17,052 | 16,175 | 17,797 | 17,200 | 15,894 | 13,074 | 12,971 | 13,773 | 13,732 | 15,991 |
| 공주 | 6,043 | 6,474 | 7,084 | 6,410 | 6,001 | 5,222 | 5,456 | 5,772 | 5,878 | 5,788 |
| 논산 | 10,672 | 10,399 | 10,003 | 9,476 | 8,383 | 7,836 | 7,971 | 8,728 | 8,193 | 8,707 |
| 서산 | 13,836 | 16,029 | 15,548 | 17,926 | 17,264 | 14,443 | 16,433 | 17,688 | 17,597 | 17,529 |
| 천안 | 35,911 | 37,600 | 38,069 | 38,269 | 33,532 | 34,386 | 36,999 | 38,163 | 43,292 | 46,263 |
| 청주 | 45,232 | 47,866 | 50,620 | 49,035 | 43,014 | 36,870 | 39,015 | 40,919 | 41,656 | 44,964 |
| 충주 | 12,992 | 14,077 | 14,933 | 16,626 | 15,256 | 13,100 | 14,128 | 13,489 | 13,769 | 15,577 |
| 제천 | 7,426 | 8,174 | 8,532 | 8,629 | 7,796 | 7,466 | 6,886 | 7,691 | 7,158 | 7,086 |
| 영동 | 4,513 | 4,265 | 4,487 | 4,032 | 3,595 | 3,220 | 3,414 | 3,316 | 3,302 | 3,623 |

| 검찰청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대구 | 151,274 | 119,727 | 111,830 | 117,099 | 100,286 | 100,006 | 101,075 | 94,367 | 95,746 | 98,787 |
| 안동 | 13,710 | 14,348 | 15,598 | 14,794 | 13,298 | 12,044 | 13,404 | 12,745 | 12,985 | 13,244 |
| 경주 | 13,108 | 15,042 | 14,697 | 14,934 | 12,700 | 12,201 | 13,256 | 14,377 | 12,774 | 13,362 |
| 포항 | 24,024 | 26,434 | 28,130 | 27,872 | 29,027 | 22,593 | 23,231 | 25,424 | 22,382 | 23,637 |
| 김천 | 25,017 | 25,470 | 25,608 | 25,315 | 26,007 | 24,177 | 25,732 | 27,104 | 25,438 | 26,971 |
| 상주 | 8,137 | 8,318 | 8,852 | 8,638 | 7,826 | 7,686 | 7,634 | 7,724 | 7,276 | 7,496 |
| 의성 | 3,929 | 4,413 | 4,209 | 5,036 | 4,756 | 3,897 | 3,796 | 4,056 | 3,687 | 3,846 |
| 영덕 | 4,520 | 4,701 | 4,666 | 4,651 | 4,071 | 3,307 | 3,726 | 3,913 | 3,959 | 4,239 |
| 대구서부 | - | 49,821 | 60,982 | 58,867 | 51,043 | 47,390 | 47,703 | 47,116 | 48,041 | 50,597 |
| 부산 | 141,139 | 155,177 | 165,563 | 170,938 | 133,659 | 122,481 | 133,132 | 135,847 | 138,579 | 138,971 |
| 부산동부 | 42,036 | 49,209 | 55,840 | 53,642 | 41,329 | 40,509 | 43,464 | 44,037 | 42,094 | 46,398 |
| 울산 | 63,529 | 65,892 | 68,524 | 71,193 | 63,233 | 58,498 | 60,683 | 67,016 | 64,205 | 69,837 |
| 창원 | 73,730 | 85,191 | 95,867 | 92,414 | 80,675 | 71,063 | 48,574 | 54,548 | 49,294 | 52,880 |
| 진주 | 23,583 | 27,058 | 28,112 | 30,482 | 26,566 | 24,216 | 22,829 | 22,730 | 22,036 | 23,244 |
| 통영 | 19,920 | 22,194 | 23,408 | 25,522 | 23,874 | 21,727 | 22,008 | 22,604 | 22,667 | 24,614 |
| 밀양 | 6,727 | 7,086 | 7,001 | 7,241 | 6,608 | 6,583 | 6,782 | 6,341 | 6,753 | 7,009 |
| 거창 | 5,218 | 5,722 | 5,859 | 6,637 | 5,322 | 4,915 | 5,091 | 5,046 | 4,975 | 5,422 |
| 마산 | - | - | - | - | - | 9,394 | 19,111 | 19,963 | 20,829 | 22,187 |
| 광주 | 88,170 | 92,148 | 92,814 | 95,628 | 91,213 | 90,173 | 94,790 | 97,246 | 94,977 | 93,188 |
| 목포 | 24,604 | 26,430 | 27,242 | 28,537 | 26,106 | 23,022 | 23,895 | 25,656 | 24,568 | 25,137 |
| 장흥 | 3,079 | 3,849 | 3,728 | 3,680 | 3,516 | 3,529 | 3,187 | 3,233 | 3,120 | 3,264 |
| 순천 | 42,833 | 44,851 | 43,869 | 46,214 | 42,613 | 39,803 | 40,558 | 39,768 | 38,272 | 42,618 |
| 해남 | 6,987 | 7,996 | 7,606 | 8,017 | 7,014 | 6,884 | 6,879 | 7,263 | 6,619 | 7,106 |
| 전주 | 41,664 | 40,681 | 40,409 | 42,197 | 38,626 | 35,704 | 40,733 | 37,598 | 36,633 | 38,139 |
| 군산 | 28,910 | 29,635 | 29,456 | 32,348 | 30,284 | 28,424 | 30,632 | 27,495 | 26,272 | 26,145 |
| 정읍 | 10,431 | 9,751 | 9,706 | 9,658 | 9,223 | 8,868 | 8,632 | 8,624 | 8,389 | 8,902 |
| 남원 | 5,198 | 5,901 | 5,855 | 5,391 | 5,221 | 4,832 | 5,077 | 4,643 | 4,566 | 5,053 |
| 제주 | 29,778 | 29,580 | 33,248 | 31,511 | 30,549 | 27,302 | 28,793 | 32,346 | 34,134 | 39,537 |

### 다. 고소 · 고발 사건 〈표 2-3〉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접수 | 계 | | 850,634 | 789,885 | 808,718 | 843,993 | 711,513 | 664,971 | 724,116 | 758,785 | 743,223 | 768,579 |
| | 구 수 | | 45,104 | 41,484 | 40,942 | 36,754 | 43,031 | 41,621 | 47,077 | 58,920 | 58,821 | 62,890 |
| | 신 수 | | 805,530 | 748,401 | 767,776 | 807,239 | 668,482 | 623,350 | 677,039 | 699,865 | 684,402 | 705,689 |
| 처리 | 계 | | 809,234 | 749,492 | 772,169 | 801,239 | 670,158 | 618,034 | 665,687 | 699,795 | 680,782 | 708,905 |
| | 기소 | 소 계 | 217,016 | 213,897 | 209,894 | 198,025 | 169,257 | 140,388 | 149,723 | 158,071 | 152,955 | 147,111 |
| | | 구 공 판 | 38,145 | 38,718 | 40,107 | 42,613 | 39,089 | 36,428 | 38,088 | 43,723 | 46,110 | 43,211 |
| | | 구 약 식 | 178,871 | 175,179 | 169,787 | 155,412 | 130,168 | 103,960 | 111,635 | 114,348 | 106,845 | 103,890 |
| | 불기소 | 소 계 | 550,122 | 489,700 | 514,758 | 544,881 | 445,577 | 418,441 | 449,344 | 461,758 | 465,207 | 497,561 |
| | | 무 혐 의 | 216,939 | 186,666 | 178,429 | 191,184 | 170,879 | 161,287 | 167,592 | 167,470 | 169,636 | 175,930 |
| | | 기소유예 | 40,296 | 38,169 | 53,918 | 72,981 | 50,770 | 40,195 | 44,070 | 41,160 | 40,706 | 46,201 |
| | | 기소중지 | 104,800 | 82,960 | 77,602 | 74,009 | 62,639 | 64,215 | 73,812 | 84,669 | 84,952 | 87,672 |
| | | 기 타 | 188,087 | 181,905 | 204,809 | 206,707 | 161,289 | 152,744 | 163,870 | 168,459 | 169,913 | 187,758 |
| | 이송 | 소년보호 | 1,107 | 1,641 | 1,808 | 1,788 | 1,991 | 2,232 | 2,199 | 1,573 | 1,441 | 1,241 |
| | | 가정보호 | 615 | 684 | 624 | 644 | 574 | 503 | 549 | 626 | 867 | 973 |
| | | 타 관 | 40,374 | 43,566 | 45,082 | 55,901 | 52,758 | 56,470 | 63,872 | 77,767 | 60,309 | 62,018 |
| | | 성매매보호 | - | 4 | 3 | - | 1 | - | - | - | 3 | 1 |
| 미 제 | | | 41,400 | 40,393 | 36,549 | 42,754 | 41,355 | 46,937 | 58,429 | 58,990 | 62,441 | 59,674 |

### 라. 주요범죄유형별 사범

○ 병역사범 〈표 2-4〉

(단위 : 명)

| 구 분 \ 연 도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접수 | 계 | | 40,158 | 37,676 | 31.633 | 30,496 | 24,989 | 23,426 | 26,034 | 33,626 | 25,824 | 23,301 |
| | 구 수 | | 348 | 150 | 249 | 152 | 210 | 58 | 81 | 155 | 160 | 99 |
| | 신 수 | | 39,810 | 37,526 | 31,384 | 30,344 | 24,779 | 23,368 | 25,953 | 33,471 | 25,664 | 23,202 |
| 처리 | 계 | | 40,007 | 37,429 | 31,481 | 30,292 | 24,882 | 23,345 | 25,888 | 33,461 | 25,729 | 23,229 |
| | 기소 | 소 계 | 21,962 | 21,554 | 18,512 | 17,855 | 14,441 | 13,781 | 15,.764 | 20,003 | 16,604 | 16,359 |
| | | 구 공 판 | 2,329 | 2,140 | 1,652 | 1,741 | 1,633 | 1,675 | 1,627 | 1,834 | 1,899 | 1,786 |
| | | 구 약 식 | 19,633 | 19,414 | 16,860 | 16,114 | 12,808 | 12,106 | 14,137 | 18,169 | 14,705 | 14,573 |
| | 불기소 | 소 계 | 17,223 | 14,936 | 11,769 | 11,297 | 9,588 | 8,789 | 9,129 | 11,973 | 8,682 | 6,443 |
| | | 무 혐 의 | 584 | 511 | 454 | 408 | 692 | 383 | 367 | 405 | 393 | 432 |
| | | 기소유예 | 1,166 | 1,079 | 923 | 1,115 | 1,204 | 1,096 | 1,309 | 1,493 | 1,187 | 1,207 |
| | | 기소중지 | 11,386 | 9,141 | 7,965 | 7,454 | 6,277 | 6,596 | 6,968 | 6,823 | 5,870 | 3,903 |
| | | 기 타 | 4,087 | 4,205 | 2,427 | 2,320 | 1,415 | 714 | 485 | 3,252 | 1,232 | 901 |
| | 이송 | 소년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 타 관 | 822 | 939 | 1,200 | 1,140 | 853 | 775 | 995 | 1,485 | 443 | 427 |
| | | 성매매송치 | - | - | - | - | - | - | - | - | - | - |
| 미 제 | | | 151 | 247 | 152 | 204 | 107 | 81 | 146 | 165 | 95 | 72 |

○ 경제사범 〈표 2-5〉

(단위 : 명)

| 구분 | |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접수 | 계 | | | 165,868 | 131,248 | 188,229 | 191,296 | 117,265 | 116,642 | 129,450 | 124,139 | 125,015 | 134,123 |
| | 구수 | | | 9,558 | 8,392 | 7,011 | 7,008 | 8,068 | 6,117 | 9,117 | 11,246 | 10,474 | 10,138 |
| | 신수 | | | 156,310 | 122,856 | 181,218 | 184,288 | 109,197 | 110,525 | 120,333 | 112,893 | 114,541 | 123,985 |
| 처리 | 계 | | | 158,203 | 124,785 | 181,216 | 183,779 | 110,300 | 108,529 | 119,048 | 114,372 | 114,950 | 125,059 |
| | 기소 | 소계 | | 62,269 | 38,341 | 38,626 | 36,536 | 31,558 | 28,269 | 27,697 | 26,896 | 26,097 | 26,878 |
| | | 구공판 | | 13,692 | 12,059 | 11,026 | 10,844 | 9,581 | 9,090 | 8,277 | 8,479 | 9,146 | 9,208 |
| | | 구약식 | | 48,577 | 26,282 | 27,600 | 25,692 | 21,977 | 19,179 | 19,420 | 18,417 | 16,951 | 17,670 |
| | 불기소 | 소계 | | 86,917 | 77,398 | 133,326 | 135,661 | 68,121 | 68,975 | 77,534 | 72,154 | 76,958 | 86,499 |
| | | 무혐의 | | 24,041 | 17,981 | 17,314 | 20,470 | 17,879 | 15,370 | 16,788 | 17,072 | 16,885 | 17,335 |
| | | 기소유예 | | 11,671 | 9,568 | 23,872 | 33,553 | 13,292 | 13,808 | 16,240 | 15,578 | 17,135 | 19,042 |
| | | 기소중지 | | 12,198 | 9,080 | 8,663 | 9,110 | 6,433 | 6,531 | 7,787 | 7,834 | 8,701 | 8,201 |
| | | 기타 | | 39,007 | 40,769 | 83,477 | 72,528 | 30,517 | 33,266 | 36,719 | 31,670 | 34,237 | 41,921 |
| | 이송 | 소년보호 | | 136 | 284 | 455 | 492 | 558 | 808 | 759 | 833 | 680 | 700 |
| | | 가정보호 | | 2 | - | - | - | - | - | | - | - | - |
| | | 타관 | | 8,879 | 8,762 | 8,809 | 11,090 | 10,063 | 10,477 | 13,058 | 14,489 | 11,215 | 10,982 |
| | | 성매매 | | - | - | - | - | - | - | | - | - | - |
| 미제 | | | | 7,665 | 6,463 | 7,013 | 7,517 | 6,965 | 8,113 | 10,402 | 9,767 | 10,065 | 9,064 |

○ 폭력사범 〈표 2-6〉

(단위 : 명)

| 구분 | |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접수 | 계 | | | 452,837 | 469,775 | 466,857 | 466,893 | 412,888 | 408,396 | 427,029 | 407,284 | 404,955 | 431,618 |
| | 구수 | | | 9,323 | 8,519 | 8,775 | 7,805 | 8,622 | 8,408 | 8,811 | 8,963 | 6,775 | 6,863 |
| | 신수 | | | 443,514 | 461,256 | 458,082 | 459,088 | 404,266 | 399,988 | 418,218 | 398,321 | 398,180 | 424,755 |
| 처리 | 계 | | | 444,652 | 461,171 | 459,244 | 458,671 | 404,573 | 400,235 | 418,265 | 399,869 | 397,142 | 424,815 |
| | 기소 | 소계 | | 156,210 | 156,310 | 150,904 | 144,890 | 126,628 | 123,839 | 125,433 | 114,961 | 105,712 | 98,166 |
| | | 구공판 | | 18,096 | 22,049 | 23,279 | 23,360 | 20,677 | 19,726 | 22,496 | 25,799 | 30,006 | 28,631 |
| | | 구약식 | | 138,114 | 134,270 | 127,625 | 121,530 | 105,951 | 104,113 | 102,937 | 89,162 | 75,706 | 69,535 |
| | 불기소 | 소계 | | 274,528 | 286,485 | 289,118 | 293,347 | 260,498 | 257,627 | 269,504 | 263,823 | 269,267 | 293,812 |
| | | 무혐의 | | 33,942 | 33,914 | 34,386 | 35,686 | 33,835 | 32,836 | 35,343 | 34,033 | 33,672 | 33,511 |
| | | 기소유예 | | 127,216 | 120,745 | 114,669 | 111,749 | 91,686 | 83,729 | 83,948 | 70,644 | 61,757 | 58,882 |
| | | 기소중지 | | 6,210 | 5,977 | 5,652 | 5,897 | 5,285 | 5,528 | 10,401 | 20,157 | 33,711 | 45,534 |
| | | 기타 | | 107,160 | 125,849 | 134,411 | 140,015 | 129,692 | 135,534 | 139,812 | 138,989 | 140,127 | 155,885 |
| | 이송 | 소년보호 | | 6,225 | 9,567 | 10,737 | 10,974 | 9,569 | 10,150 | 12,473 | 7,593 | 6,476 | 6,072 |
| | | 가정보호 | | 4,027 | 4,498 | 4,617 | 4,384 | 3,067 | 2,897 | 3,605 | 6,170 | 9,069 | 19,127 |
| | | 타관 | | 3,662 | 4,302 | 3,868 | 5,074 | 4,811 | 5,722 | 7,250 | 7,322 | 6,618 | 7,638 |
| | | 성매매 | | - | - | - | - | - | - | - | - | - | - |
| 미제 | | | | 8,185 | 8,604 | 7,613 | 8,222 | 8,315 | 8,161 | 8,764 | 7,415 | 7,813 | 6,802 |

○ 흉악사범 〈표 2-7〉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접수 | 계 | | 17,430 | 16,831 | 17,529 | 19,822 | 16,071 | 15,079 | 19,798 | 18,855 | 18,125 | 17,655 |
| | 구수 | | 632 | 811 | 591 | 747 | 828 | 653 | 1,010 | 993 | 926 | 1,196 |
| | 신수 | | 16,798 | 16,020 | 16,938 | 19,075 | 15,248 | 14,426 | 18,788 | 17,862 | 17,199 | 16,459 |
| 처리 | 계 | | 16,606 | 16,199 | 16,675 | 18,899 | 15,336 | 14,433 | 18,789 | 17,391 | 16,826 | 16,763 |
| | 기소 | 소계 | 6,961 | 6,207 | 6,631 | 6,905 | 5,337 | 4,745 | 7,178 | 6,681 | 6,450 | 5,912 |
| | | 구공판 | 6,868 | 6,140 | 6,559 | 6,860 | 5,319 | 4,739 | 6,926 | 6,403 | 5,796 | 5,158 |
| | | 구약식 | 93 | 67 | 72 | 45 | 18 | 6 | 252 | 278 | 654 | 754 |
| | 불기소 | 소계 | 8,011 | 8,309 | 8,303 | 9,391 | 8,114 | 8,041 | 9,199 | 8,714 | 8,466 | 9,099 |
| | | 무혐의 | 2,615 | 2,705 | 2,569 | 3,664 | 3,044 | 2,359 | 3,347 | 3,482 | 3,775 | 3,869 |
| | | 기소유예 | 953 | 909 | 853 | 1,069 | 763 | 720 | 1,006 | 936 | 1,096 | 1,196 |
| | | 기소중지 | 664 | 614 | 619 | 760 | 509 | 532 | 819 | 962 | 1,058 | 1,042 |
| | | 기타 | 3,779 | 4,081 | 4,262 | 3,898 | 3,925 | 4,430 | 4,027 | 3,334 | 2,537 | 2,992 |
| | 이송 | 소년보호 | 1,031 | 956 | 1,032 | 1,152 | 683 | 574 | 1,145 | 673 | 593 | 379 |
| | | 가정보호 | 7 | 10 | 12 | 14 | 8 | 5 | 22 | 24 | 25 | 49 |
| | | 타관 | 596 | 717 | 697 | 1,437 | 1,067 | 1,068 | 1,245 | 1,299 | 1,292 | 1,324 |
| | | 성매매 | - | - | - | - | - | - | - | - | - | - |
| 미제 | | | 824 | 632 | 854 | 923 | 735 | 646 | 1,009 | 1464 | 1,299 | 892 |

○ 교통사범 〈표 2-8〉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접수 | 계 | | 788,805 | 899,438 | 988,763 | 848,990 | 745,161 | 629,998 | 650,966 | 654,364 | 644,397 | 663,726 |
| | 구수 | | 2,286 | 2,224 | 2,360 | 2,210 | 2,606 | 1,281 | 2,689 | 1,960 | 1,870 | 2,528 |
| | 신수 | | 786,519 | 897,214 | 986,403 | 846,780 | 742,555 | 628,717 | 648,277 | 652,404 | 642,527 | 661,198 |
| 처리 | 계 | | 786,550 | 897,109 | 986,554 | 846,383 | 742,704 | 627,311 | 648,985 | 652,063 | 641,732 | 661,340 |
| | 기소 | 소계 | 542,107 | 639,714 | 723,371 | 553,305 | 477,521 | 407,817 | 394,315 | 388,961 | 361,137 | 351,980 |
| | | 구공판 | 27,055 | 33,204 | 37,054 | 36,260 | 42,565 | 69,436 | 82,244 | 51,890 | 41,637 | 36,105 |
| | | 구약식 | 515,052 | 606,510 | 686,317 | 517,045 | 434,956 | 338,381 | 312,071 | 337,071 | 319,500 | 315,875 |
| | 불기소 | 소계 | 236,948 | 245,962 | 251,711 | 281,683 | 254,676 | 208,819 | 243,731 | 253,597 | 270,987 | 299,463 |
| | | 무혐의 | 24,237 | 26,151 | 31,694 | 39,045 | 31,683 | 19,386 | 44,250 | 53,248 | 59,968 | 67,463 |
| | | 기소유예 | 49,926 | 56,410 | 60,598 | 74,004 | 64,894 | 42,239 | 54,666 | 55,688 | 58,600 | 70,892 |
| | | 기소중지 | 24,798 | 22,279 | 20,085 | 15,718 | 11,126 | 8,511 | 9,992 | 11,857 | 14,304 | 14,575 |
| | | 기타 | 137,987 | 141,122 | 139,334 | 152,916 | 146,973 | 138,683 | 134,823 | 132,804 | 138,115 | 146,533 |
| | 이송 | 소년보호 | 5,566 | 8,694 | 8,339 | 8,046 | 7,622 | 7,130 | 7,258 | 5,813 | 5,042 | 4,731 |
| | | 가정보호 | 2 | 5 | 1 | 2 | - | 1 | 3 | - | - | 1 |
| | | 타관 | 1,927 | 2,734 | 3,132 | 3,347 | 2,885 | 3,544 | 3,678 | 3,692 | 4,566 | 5,165 |
| | | 성매매 | - | - | - | - | - | - | - | - | - | - |
| 미제 | | | 2,255 | 2,329 | 2,209 | 2,607 | 2,457 | 2,687 | 1,981 | 2,301 | 2,665 | 2,386 |

## 마. 주요신분별 사건

○ 소년사범 〈표 2-9〉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접수 | 계 | | 93,746 | 117,098 | 134,246 | 135,081 | 106,096 | 105,225 | 120,191 | 102,117 | 91,078 | 90,730 |
| | 구수 | | 1,103 | 963 | 1,174 | 926 | 1,063 | 1,117 | 1,069 | 1,282 | 1,032 | 17 |
| | 신수 | | 92,643 | 116,135 | 133,072 | 134,155 | 105,033 | 104,108 | 119,122 | 100,835 | 90,046 | 90,713 |
| 처리 | 계 | | 92,789 | 115,990 | 133,320 | 134,053 | 104,998 | 104,201 | 118,714 | 101,148 | 87,871 | 88,857 |
| | 기소 | 소계 | 13,290 | 13,853 | 11,232 | 7,936 | 6,855 | 7,262 | 8,475 | 8,084 | 6,751 | 6,616 |
| | | 구공판 | 3,875 | 4,506 | 4,449 | 4,295 | 3,572 | 4,150 | 5,315 | 5,195 | 4,271 | 4,435 |
| | | 구약식 | 9,415 | 9,347 | 6,783 | 3,641 | 3,283 | 3,112 | 3,160 | 2,889 | 2,480 | 2,181 |
| | 불기소 | 소계 | 59,624 | 71,958 | 89,275 | 88,343 | 61,948 | 59,317 | 66,766 | 55,271 | 48,624 | 49,059 |
| | | 무혐의 | 3,313 | 4,075 | 4,288 | 4,522 | 5,060 | 4,865 | 6,174 | 5,699 | 5,258 | 6,201 |
| | | 기소유예 | 47,435 | 57,041 | 60,994 | 57,951 | 45,313 | 41,720 | 44,349 | 34,866 | 28,765 | 28,345 |
| | | 기소중지 | 2,475 | 2,114 | 2,021 | 1,564 | 1,562 | 1,816 | 2,537 | 5,350 | 6,490 | 5,322 |
| | | 기타 | 6,401 | 8,728 | 21,972 | 24,306 | 10,013 | 10,916 | 13,706 | 9,356 | 8,111 | 9,191 |
| | 이송 | 소년보호 | 18,157 | 26,950 | 29,561 | 33,871 | 32,227 | 33,186 | 37,193 | 29,936 | 25,191 | 24,996 |
| | | 가정보호 | 32 | 29 | 20 | 32 | 10 | 14 | 19 | 36 | 49 | 156 |
| | | 타관 | 1,668 | 3,148 | 3,189 | 3,855 | 3,948 | 4,412 | 6,257 | 7,820 | 7,252 | 8,022 |
| | | 성매매 | 18 | 52 | 43 | 16 | 10 | 10 | 4 | 1 | 4 | 8 |
| 미제 | | | 957 | 1,108 | 926 | 1,028 | 1,098 | 1,024 | 1,477 | 969 | 937 | 1,873 |

※ 소년범 : 20세 미만 범죄 (2008. 6. 22.시행 개정소년법 나이〈19세 미만〉 미반영)

○ 학생사범 〈표 2-10〉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접수 | 계 | | 59,214 | 70,188 | 77,288 | 82,680 | 39,811 | 1,142 | 2,194 | 5,515 | 6,024 | 4,868 |
| | 구수 | | 751 | 716 | 673 | 647 | 652 | 35 | 26 | 123 | 76 | 7 |
| | 신수 | | 58,463 | 69,472 | 76,615 | 82,033 | 39,159 | 1,107 | 2,168 | 5,392 | 5,948 | 4,861 |
| 처리 | 계 | | 58,523 | 69,522 | 76,642 | 82,060 | 39,776 | 1,118 | 2,077 | 5,454 | 5,732 | 4,742 |
| | 기소 | 소계 | 8,648 | 8,995 | 8,205 | 7,305 | 5,012 | 69 | 152 | 215 | 363 | 274 |
| | | 구공판 | 1,135 | 1,390 | 1,362 | 1,418 | 825 | 13 | 69 | 147 | 177 | 95 |
| | | 구약식 | 7,513 | 7,605 | 6,843 | 5,887 | 4,187 | 56 | 83 | 68 | 186 | 179 |
| | 불기소 | 소계 | 40,225 | 46,507 | 54,754 | 58,853 | 26,382 | 736 | 1,307 | 3,429 | 3,407 | 2,876 |
| | | 무혐의 | 2,506 | 2,946 | 3,362 | 3,479 | 2,315 | 45 | 142 | 344 | 413 | 463 |
| | | 기소유예 | 32,915 | 37,639 | 39,828 | 40,271 | 19,487 | 580 | 841 | 2,425 | 2,136 | 1,662 |
| | | 기소중지 | 174 | 170 | 219 | 262 | 160 | 8 | 71 | 125 | 178 | 245 |
| | | 기타 | 4,630 | 5,752 | 11,345 | 14,841 | 4,420 | 103 | 253 | 535 | 680 | 508 |
| | 이송 | 소년보호 | 9,019 | 12,911 | 12,502 | 14,284 | 7,463 | 279 | 529 | 1,473 | 1,520 | 1,089 |
| | | 가정보호 | 23 | 23 | 16 | 18 | 4 | - | - | 2 | 2 | 4 |
| | | 타관 | 606 | 1,081 | 1,158 | 1,597 | 914 | 34 | 89 | 335 | 439 | 496 |
| | | 성매매 | 2 | 5 | 7 | 3 | 1 | - | - | - | 1 | 3 |
| 미제 | | | 691 | 666 | 646 | 620 | 35 | 24 | 117 | 61 | 76 | 126 |

○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표 2-11〉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접수 | 계 | | 5,701 | 7,612 | 6,662 | 8,126 | 10,852 | 6,669 | 6,636 | 9,182 | 7,778 | 7,942 |
| | 구수 | | 666 | 575 | 660 | 527 | 766 | 870 | 720 | 822 | 884 | 1,085 |
| | 신수 | | 5,035 | 7,037 | 6,002 | 7,599 | 10,086 | 5,799 | 5,916 | 8,360 | 6,894 | 6,857 |
| 처리 | 계 | | 5,304 | 7,229 | 6,307 | 7,685 | 10,040 | 6,140 | 6,148 | 8,288 | 7,044 | 7,314 |
| | 기소 | 소계 | 359 | 388 | 389 | 525 | 792 | 528 | 423 | 332 | 415 | 293 |
| | | 구공판 | 282 | 327 | 331 | 402 | 595 | 392 | 375 | 280 | 354 | 256 |
| | | 구약식 | 77 | 61 | 58 | 123 | 197 | 136 | 48 | 52 | 61 | 37 |
| | 불기소 | 소계 | 4,741 | 6,495 | 5,615 | 6,835 | 8,818 | 5,310 | 5,376 | 7,524 | 6,278 | 6,755 |
| | | 무혐의 | 2,029 | 2,023 | 2,121 | 2,052 | 2,547 | 2,128 | 2,349 | 2,561 | 2,560 | 2,443 |
| | | 기소유예 | 176 | 236 | 147 | 175 | 986 | 394 | 165 | 133 | 121 | 99 |
| | | 기소중지 | 7 | 18 | 11 | 28 | 36 | 12 | 24 | 58 | 91 | 71 |
| | | 기타 | 2,529 | 4,218 | 3,336 | 4,580 | 5,249 | 2,776 | 2,838 | 4,772 | 3,506 | 4,142 |
| | 이송 | 소년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 가정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 타관 | 204 | 346 | 303 | 325 | 430 | 302 | 349 | 432 | 351 | 266 |
| | | 성매매 | - | - | - | - | - | - | - | - | - | - |
| 미제 | | | 397 | 383 | 355 | 441 | 812 | 529 | 488 | 894 | 734 | 628 |

○ 외국인 사건 〈표 2-12〉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접수 | 계 | | 17,790 | 23,641 | 34,962 | 39,871 | 34,635 | 37,143 | 33,121 | 35,281 | 38,674 | 48,277 |
| | 구수 | | 411 | 290 | 854 | 885 | 1,049 | 690 | 757 | 821 | 775 | 1,283 |
| | 신수 | | 17,379 | 23,351 | 34,108 | 38,986 | 33,586 | 36,453 | 32,364 | 34,460 | 37,899 | 46,994 |
| 처리 | 계 | | 17,535 | 22,846 | 34,078 | 38,870 | 33,976 | 36,436 | 32,365 | 34,561 | 37,615 | 47,280 |
| | 기소 | 소계 | 5,166 | 8,749 | 13,263 | 14,495 | 11,846 | 13,999 | 12,584 | 13,965 | 13,863 | 16,535 |
| | | 구공판 | 1,736 | 2,796 | 3,429 | 3,353 | 2,066 | 2,160 | 2,208 | 2,451 | 2,894 | 3,979 |
| | | 구약식 | 3,430 | 5,953 | 9,834 | 11,142 | 9,780 | 11,839 | 10,376 | 11,514 | 10,969 | 12,556 |
| | 불기소 | 소계 | 11,849 | 12,793 | 18,656 | 22,464 | 20,583 | 20,895 | 18,441 | 19,093 | 22,100 | 28,377 |
| | | 무혐의 | 1,008 | 1,554 | 3,043 | 3,053 | 2,823 | 3,003 | 3,040 | 3,410 | 4,138 | 5,981 |
| | | 기소유예 | 6,142 | 6,416 | 8,434 | 12,339 | 8,848 | 10,035 | 7,950 | 7,227 | 8,308 | 10,246 |
| | | 기소중지 | 1,697 | 2,861 | 4,295 | 3,210 | 4,721 | 3,163 | 3,026 | 3,405 | 4,191 | 5,642 |
| | | 기타 | 3,002 | 1,962 | 2,884 | 3,862 | 4,191 | 4,694 | 4,425 | 5,051 | 5,463 | 6,508 |
| | 이송 | 소년보호 | 9 | 15 | 17 | 10 | 21 | 25 | 29 | 38 | 31 | 45 |
| | | 가정보호 | 10 | 29 | 39 | 50 | 22 | 41 | 39 | 96 | 145 | 314 |
| | | 타관 | 501 | 1,254 | 2,097 | 1,838 | 1,499 | 1,471 | 1,266 | 1,366 | 1,468 | 2,004 |
| | | 성매매 | - | 6 | 6 | 13 | 5 | 5 | 6 | 3 | 8 | 5 |
| 미제 | | | 255 | 795 | 884 | 1,001 | 659 | 707 | 756 | 720 | 1,059 | 997 |

○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형사사건 〈표 2-13〉

(단위 : 명)

| 구분 / 연도별 | | 발생 | | | | | | |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 | 주한미군 지위협정사건 전체범죄에 대한행사 |
|---|---|---|---|---|---|---|---|---|---|---|
| | | 총계 | 미측 관할 제외 총계 | 미군인 | | | | 미군속 등 | | |
| | | | | 계 | 미측 관할 | 공소권 없음 | 미측관할 및 공소권 없음 제외 | | | |
| '09 | 건 | 364 | 336 | 258 | 28 | 82 | 148 | 106 | 73(49.3%) | 179 |
| | 명 | 455 | 427 | 325 | 28 | 103 | 194 | 130 | 79(40.7%) | 209 |
| '10 | 건 | 419 | 399 | 316 | 20 | 131 | 165 | 103 | 102(61.8%) | 205 |
| | 명 | 491 | 471 | 380 | 20 | 148 | 212 | 111 | 111(52.4%) | 222 |
| '11 | 건 | 397 | 380 | 298 | 17 | 158 | 123 | 99 | 81(65.9%) | 180 |
| | 명 | 456 | 439 | 341 | 17 | 177 | 147 | 115 | 92(62.6%) | 207 |
| '12 | 건 | 344 | 322 | 264 | 22 | 158 | 84 | 80 | 64(76.2%) | 144 |
| | 명 | 379 | 357 | 294 | 22 | 175 | 97 | 85 | 70(72.2%) | 155 |
| '13 | 건 | 365 | 354 | 273 | 11 | 134 | 128 | 92 | 89(69.5%) | 181 |
| | 명 | 403 | 392 | 305 | 11 | 163 | 131 | 98 | 98(74.8%) | 196 |
| '14 | 건 | 405 | 388 | 286 | 17 | 146 | 123 | 119 | 93(75.6%) | 212 |
| | 명 | 433 | 416 | 300 | 17 | 152 | 131 | 133 | 97(74.0%) | 230 |
| '15 | 건 | 387 | 370 | 265 | 17 | 138 | 110 | 122 | 78(70.9%) | 200 |
| | 명 | 419 | 402 | 289 | 17 | 152 | 120 | 130 | 82(68.3%) | 212 |

※ '공소권없음'은 미군인 범죄로 집계는 되었으나,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교통사고의 종합보험 가입의 사유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임

※ 2003년부터는 재판권행사율 산정시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분모에 산입하지 않음

## 2. 구속영장 발부 등

○ 구속영장 발부 및 처리 〈표 2-14〉

(단위 : 명)

| 연도 | 구분 | 구속영장 발부 현황 | | | | | 구속인원 처리현황 | | | | | | | | | |
|---|---|---|---|---|---|---|---|---|---|---|---|---|---|---|---|---|
| | | 청구 및 신청 | 기각 | | 발부 | 미집행 | 계 | 기소 | | | 소년(가정) 보호사건 송치 | 불기소 | | | | |
| | | | 검사 | 판사 | | | | 소계 | 구공판 | 구약식 | | 소계 | 기소유예 | 기소중지 | 혐의없음 | 기타 |
| '06 | 계 | 71,408 | 9,643 | 10,214 | 51,482 | 506 | 49,953 | 47,943 | 47,361 | 582 | 1,031 | 979 | 357 | 13 | 175 | 434 |
| | 검사 | 6,664 | - | 1,150 | 5,497 | - | 5,080 | 4,999 | 4,987 | 12 | 2 | 79 | 61 | 4 | 4 | 10 |
| | 사경 | 64,744 | 9,643 | 9,064 | 45,985 | 506 | 44,873 | 42,944 | 42,374 | 570 | 1,029 | 900 | 296 | 9 | 171 | 424 |
| '07 | 계 | 67,801 | 8,890 | 12,891 | 46,062 | 795 | 45,001 | 43,332 | 42,963 | 369 | 949 | 672 | 239 | 8 | 157 | 268 |
| | 검사 | 5,901 | - | 1,270 | 4,653 | - | 4,266 | 4,218 | 4,209 | 9 | 3 | 41 | 34 | - | 1 | 6 |
| | 사경 | 61,900 | 8,890 | 11,621 | 41,409 | 795 | 40,735 | 39,114 | 38,754 | 360 | 946 | 631 | 205 | 8 | 156 | 262 |
| '08 | 계 | 64,534 | 7,648 | 13,785 | 43,032 | 263 | 41,557 | 40,293 | 40,049 | 244 | 763 | 462 | 135 | 3 | 119 | 205 |
| | 검사 | 6,526 | - | 1,496 | 4,996 | - | 4,590 | 4,556 | 4,551 | 5 | 2 | 31 | 24 | 1 | 1 | 5 |
| | 사경 | 58,008 | 7,648 | 12,289 | 38,036 | 263 | 36,967 | 35,737 | 35,498 | 239 | 761 | 431 | 111 | 2 | 118 | 200 |
| '09 | 계 | 65,903 | 8,835 | 14,159 | 42,727 | 49 | 42,181 | 40,895 | 40,675 | 220 | 728 | 514 | 112 | 14 | 155 | 233 |
| | 검사 | 6,573 | - | 1,521 | 5,014 | - | 4,686 | 4,657 | 4,651 | 6 | 6 | 20 | 11 | 2 | 1 | 6 |
| | 사경 | 59,330 | 8,835 | 12,638 | 37,713 | 49 | 37,495 | 36,238 | 36,024 | 214 | 722 | 494 | 101 | 12 | 154 | 227 |
| '10 | 계 | 50,396 | 7,032 | 10,332 | 32,516 | 13 | 31,078 | 30,093 | 29,941 | 152 | 560 | 425 | 66 | 19 | 137 | 203 |
| | 검사 | 6,670 | - | 1,610 | 4,728 | - | 4,539 | 4,506 | 4,498 | 8 | 8 | 25 | 6 | 5 | 6 | 8 |
| | 사경 | 43,726 | 7,032 | 8,722 | 27,788 | 13 | 26,539 | 25,587 | 25,443 | 144 | 552 | 400 | 60 | 14 | 131 | 195 |
| '11 | 계 | 44,125 | 5,562 | 8,970 | 28,814 | - | 28,831 | 28,134 | 28,016 | 118 | 313 | 384 | 40 | 27 | 90 | 227 |
| | 검사 | 6,944 | - | 1,693 | 4,505 | - | 4,413 | 4,373 | 4,362 | 11 | 3 | 37 | 11 | 8 | 3 | 15 |
| | 사경 | 37,181 | 5,562 | 7,277 | 24,309 | - | 24,418 | 23,761 | 23,654 | 107 | 310 | 347 | 29 | 19 | 87 | 212 |
| '12 | 계 | 41,270 | 6,202 | 7,195 | 27,327 | - | 27,948 | 27,429 | 27,333 | 96 | 258 | 261 | 38 | 31 | 87 | 105 |
| | 검사 | 6,873 | - | 1,711 | 4,618 | - | 4,421 | 4,398 | 4,381 | 17 | 1 | 22 | 4 | 14 | 1 | 3 |
| | 사경 | 34,397 | 6,202 | 5,484 | 22,709 | - | 23,527 | 23,031 | 22,952 | 79 | 257 | 239 | 34 | 17 | 86 | 102 |
| '13 | 계 | 38,766 | 5,655 | 5,914 | 26,716 | - | 28,298 | 28,040 | 27,953 | 87 | 118 | 140 | 33 | 42 | 65 | 82 |
| | 검사 | 7,327 | - | 1,769 | 5,075 | - | 5,476 | 5,440 | 5,424 | 16 | - | 36 | 1 | 32 | 3 | 5 |
| | 사경 | 31,439 | 5,655 | 4,145 | 21,641 | - | 22,822 | 22,600 | 22,529 | 71 | 118 | 104 | 32 | 10 | 62 | 77 |
| '14 | 계 | 41,637 | 5,310 | 7,303 | 28,580 | - | 30,547 | 30,269 | 30,207 | 62 | 79 | 199 | 16 | 39 | 64 | 80 |
| | 검사 | 8,134 | - | 1,903 | 5,835 | - | 6,786 | 6,750 | 6,731 | 19 | - | 36 | 3 | 31 | 1 | 1 |
| | 사경 | 33,503 | 5,310 | 5,400 | 22,745 | - | 23,761 | 23,519 | 23,476 | 43 | 79 | 163 | 13 | 8 | 63 | 79 |
| '15 | 계 | 44,110 | 5,695 | 6,831 | 31,153 | - | 33,946 | 33,731 | 33,655 | 76 | 67 | 148 | 21 | 37 | 47 | 43 |
| | 검사 | 7,013 | - | 1,528 | 5,142 | - | 6,181 | 6,147 | 6,115 | 32 | - | 34 | 3 | 27 | 1 | 3 |
| | 사경 | 37,097 | 5,695 | 5,303 | 26,011 | - | 27,765 | 27,584 | 27,540 | 44 | 67 | 114 | 18 | 10 | 46 | 40 |

## 3. 구속적부심사 〈표 2-15〉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접수 | 계 | 4,520 | 3,943 | 3,663 | 3,469 | 2,643 | 2,293 | 2,052 | 1,746 | 2,127 | 2,109 |
| | 구수 | - | - | - | - | - | - | - | - | - | - |
| | 신수 | 4,520 | 3,943 | 3,663 | 3,469 | 2,643 | 2,293 | 2,052 | 1,746 | 2,127 | 2,109 |
| 처리 | 계 | 4,520 | 3,943 | 3,663 | 3,469 | 2,643 | 2,293 | 2,052 | 1,717 | 2,127 | 2,076 |
| | 석방 | 2,015 | 1,727 | 1,417 | 1,230 | 831 | 609 | 439 | 304 | 441 | 334 |
| | 기각 | 2,436 | 2,174 | 2,189 | 2,192 | 1,778 | 1,652 | 1,573 | 1,379 | 1,656 | 1,719 |
| | 취하 | 69 | 42 | 57 | 47 | 34 | 32 | 40 | 34 | 30 | 23 |
| 심사중 | | - | - | - | - | - | - | - | - | - | - |

##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항 고 〈표 2-16〉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접수 | 계 | 36,262 | 36,400 | 33,970 | 37,693 | 41,505 | 39,890 | 24,365 | 48,642 | 51,995 | 55,140 |
| | 구수 | 3,038 | 2,768 | 2,067 | 2,463 | 3,312 | 3,419 | 1,804 | 3,447 | 3,327 | 4,386 |
| | 신수 | 33,224 | 33,632 | 31,903 | 35,230 | 38,193 | 36,471 | 22,561 | 45,195 | 48,668 | 50,754 |
| 처리 | 계 | 33,499 | 34,410 | 31,507 | 34,024 | 38,094 | 36,554 | 22,574 | 45,312 | 47,602 | 50,632 |
| | 기소명령 | 38 | 58 | 33 | 20 | 74 | 98 | 292 | 176 | 201 | 121 |
| | 재기수사명령 | 2,985 | 2,988 | 3,390 | 3,211 | 2,562 | 2,671 | 1,795 | 3,060 | 3,606 | 3,436 |
| | 주문변경명령 | 28 | 38 | 40 | 32 | 65 | 96 | 118 | 103 | 114 | 90 |
| | 항고기각 | 25,535 | 26,527 | 23,100 | 25,989 | 31,713 | 30,284 | 19,178 | 37,736 | 39,618 | 42,984 |
| | 각하 | 4,913 | 4,799 | 4,944 | 4,772 | 3,680 | 3,405 | 1,191 | 4,237 | 4,063 | 4,001 |
| 미제 | | 2,763 | 1,990 | 2,463 | 3,669 | 3,411 | 3,336 | 1,791 | 3,330 | 4,393 | 4,508 |

○ 재항고 〈표 2-17〉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접수 | 계 | 16,989 | 17,336 | 5,835 | 5,415 | 4,828 | 4,867 | 2,244 | 2,651 | 2,936 | 3,110 |
| | 구 수 | 1,990 | 1,896 | 547 | 1,126 | 1,499 | 1,062 | 602 | 1,110 | 919 | 461 |
| | 신 수 | 14,999 | 15,440 | 5,288 | 4,289 | 3,329 | 3,805 | 1,642 | 1,541 | 2,017 | 2,649 |
| 처리 | 계 | 15,093 | 16,789 | 4,709 | 3,916 | 3,766 | 3,184 | 1,737 | 1,732 | 2,476 | 2,762 |
| | 기소명령 | 6 | 1 | - | 1 | - | - | - | - | - | - |
| | 재기수사명령 | 465 | 570 | 187 | 137 | 120 | 161 | 122 | 72 | 52 | 72 |
| | 주문변경명령 | 4 | 1 | - | - | - | - | - | - | - | 1 |
| | 항고기각 | 12,666 | 14,808 | 1,990 | 525 | 742 | 703 | 307 | 928 | 1,501 | 1,722 |
| | 각 하 | 1,952 | 1,409 | 2,532 | 3,253 | 2,904 | 2,320 | 1,308 | 732 | 923 | 967 |
| 미제 | | 1,896 | 547 | 1,126 | 1,499 | 1,062 | 1,683 | 507 | 919 | 460 | 348 |

○ 재정신청 〈표 2-18〉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심사중 | | 673 | 831 | 2,433 | 4,076 | 5,061 | 7,168 | 2,652 | 14,688 | 16,037 | 19,377 |
| 접수 | 계 | 914 | 754 | 11,567 | 12,146 | 14,861 | 14,129 | 7,740 | 18,884 | 20,771 | 21,043 |
| | 공소제기명령 | 1 | - | - | - | 4 | - | - | - | - | - |
| | 고법송부 | 903 | 754 | 11,565 | 12,142 | 14,854 | 14,129 | 7,739 | 18,884 | 20,771 | 21,043 |
| | 신청취소 | 10 | - | 2 | 4 | 3 | - | 1 | - | - | - |
| 처리 | 계 | 850 | 596 | 9,132 | 10,499 | 13,843 | 12,048 | 7,080 | 14,419 | 18,007 | 19,461 |
| | 신청기각 | 838 | 585 | 8,898 | 10,293 | 13,507 | 11,810 | 6,911 | 14,231 | 17,738 | 19,184 |
| | 공소제기결정 | 5 | - | 119 | 116 | 216 | 133 | 105 | 118 | 150 | 160 |
| | 신청취소 | 7 | 11 | 115 | 90 | 120 | 105 | 64 | 70 | 119 | 117 |

## 5. 형의 집행

○ 사형집행 〈표 2-19〉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03～'07 | 2008 | '09～'14 | 2015 |
|---|---|---|---|---|---|---|---|---|---|---|---|
| 집행인원 | 23 | 23 | - | - | - | - | - | - | - | - | - |
| 기 타 (사면·감형 등) | 19 | - | 2 | 5 | 2 | - | 4 | - | 6 | - | - |

○ 벌과금 집행 〈표 2-20〉

(단위 : 천원)

| 연도 \ 구분 | 조정금액 | 처 분 금 액 | | | | 집행미제액 |
|---|---|---|---|---|---|---|
| | | 현금수입 | 유치집행 | 기타처분 금액 | 계 | |
| 2006 | 45,359,938,203 | 1,230,203,739 | 545,421,776 | 18,279,156,740 | 20,054,782,255 | 25,305,155,948 |
| 2007 | 28,700,168,159 | 1,360,820,099 | 1,155,739,342 | 252,755,118 | 2,769,314,559 | 25,930,853,600 |
| 2008 | 30,976,405,243 | 1,560,488,715 | 3,083,700,280 | 586,861,144 | 5,231,050,139 | 25,745,355,104 |
| 2009 | 31,246,323,901 | 1,565,687,001 | 3,522,154,830 | 278,036,413 | 5,365,878,244 | 25,880,445,656 |
| 2010 | 31,517,871,678 | 1,407,365,718 | 3,766,487,989 | 342,982,267 | 5,516,835,974 | 26,001,035,705 |
| 2011 | 31,073,627,198 | 1,361,572,755 | 3,360,866,184 | 229,632,610 | 4,952,071,549 | 26,121,555,647 |
| 2012 | 30,812,230,452 | 1,411,087,487 | 2,937,264,777 | 302,088,236 | 4,650,440,500 | 26,161,789,951 |
| 2013 | 30,255,449,022 | 1,478,847,909 | 2,500,582,716 | 238,671,053 | 4,218,101,678 | 26,037,347,344 |
| 2014 | 30,338,793,001 | 1,515,336,230 | 2,437,519,838 | 212,084,718 | 4,164,940,786 | 26,173,852,215 |
| 2015 | 30,427,117,765 | 1,485,721,253 | 2,172,718,742 | 285,497,041 | 3,943,937,036 | 26,483,180,729 |

※ 조정금액은 당해년도 벌과금 조정총액에서 촉탁금액을 감액한 실조정금액
※ 유치집행금액은 유치(사회봉사)집행액과 유치(사회봉사)집행중인 금액의 합계액
※ 기타 처분금액은 집행불능 결정, 집행정지, 공제(미결구금일수 통산)금액의 합계액

## 6. 사 면 〈표 2-21〉

(단위 : 명)

| 구분 / 실시일자 | 일반사면 | 특별사면 | 일반감형 | 특별감형 | 일반복권 | 특별복권 |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비 고 |
|---|---|---|---|---|---|---|---|---|
| '82. 1. 1. | - | 11 | - | - | - | - | - | 징계변호사 |
| '82. 3. 3. | - | 1,419 (488) | - | 545 (248) | - | 238 (233) | - | 13대 대통령취임 1주년 |
| '83. 3. 15. | - | | - | 2 | - | - | - | 미문화원 방화사건 |
| '83. 8. 12. | - | 77 (1) | - | 10 | - | 551 (257) | - | 광복절 |
| '83. 12. 23. | - | 36 | - | - | - | 142 (66) | - | 성탄절 |
| '84. 8. 14. | - | 43 | - | 2 | - | 307 (71) | 364 (50) | 광복절 |
| '84. 10. 2. | - | - | - | 177 (40) | - | - | - | 개천절 |
| '85. 3. 2. | - | 1,615 (393) | - | 512 (186) | - | - | - | 대통령취임 4주년 |
| '85. 8. 15. | - | - | - | 4 | - | - | - | 40주년 광복절(국가유공자등) |
| '87. 7. 10. | - | 1,819 (7) | - | - | - | 401 (21) | 115 (43) | 7·1대통령담화관련 |
| '88. 2. 27. | - | 4,214 (788) | - | 835 (185) | - | 992 (665) | 334 (19) | 제13대 대통령취임 |
| '88. 12. 21. | - | 1,113 (20) | - | 96 (5) | - | 365 (31) | 155 (6) | 11·26 대통령특별 담화관련 |
| '90. 4. 12. | - | 1 | - | - | - | - | - | 김현희 |
| '91. 2. 25. | - | 914 (187) | - | 565 (187) | - | - | - | 대통령취임 3주년 |
| '91. 5. 25. | - | - | - | 30 (9) | - | - | - | |
| '91. 12. 24. | - | 1 | - | - | - | 1 | - | |
| '92. 12. 24. | - | 9 | - | 1 | - | 12 | 2 | |
| '93. 3. 6. | - | 34,147 (590) | - | 1,076 (167) | - | 2,987 (81) | 2,703 (66) | 제14대 대통령취임 |
| '93. 5. 28. | - | 81 (75) | - | - | - | - | - | 광주민주화운동관련 |
| '93. 12. 24. | - | 137 | - | - | - | 24 | 26 | 전교조 관련 |
| '95. 8. 15. | - | 1,269 (103) | - | 426 (46) | - | 528 (29) | 318 (23) | 8·15 광복절 |
| '95. 12. 2. | 일반사면(대통령령 제14818호) | | | | | | | 경미한 행정법규위반자 및 징계공무원 |

| 구분 / 실시일자 | 일반사면 | 특별사면 | 일반감형 | 특별감형 | 일반복권 | 특별복권 |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비 고 |
|---|---|---|---|---|---|---|---|---|
| '96. 2. 25. | - | 1 | - | - | - | - | 22 | 대통령취임 3주년 |
| '96. 8. 15. | - | - | - | - | - | 5 | 6 | 광복51주년 경축 |
| '97. 10. 3. | - | 1 | - | - | - | 8 | 14 | 개천절기념 |
| '97. 12. 22. | - | 17 | - | - | - | - | 8 | 전직대통령 등 |
| '98. 3. 13. | - | 2,058 (231) | - | 1,258 (61) | - | 806 | 30,681 | 제15대 대통령 취임 기념 |
| '98. 8. 15. | - | 18 (3) | - | 13 | - | 1,402 (5) | 3,406 (12) | 건국50주년 경축 |
| '99. 2. 25. | - | 2,707 (2) | - | 12 | - | 1,088 (28) | 3,501 (50) |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
| '99. 8. 15. | - | 40 (1) | - | 7 | - | 256 (9) | 788 (16) | 광복 54주년 경축 |
| '00. 8. 15. | - | 3,881 (58) | - | 810 (8) | - | 525 (3) | 23,148 (163) | 광복 55주년 경축 |
| '02. 7. 10. | 월드컵 경축 | - | - | - | - | - | - | 운전면허벌점등감면 4,810,000명 |
| '02. 12. 31. | - | 54 | - | 4 | - | 25 | 39 | 복역중인 외국인 51명 잔형집행 면제포함 |
| '03. 4. 30. | - | 38 (1) | - | - | - | 431 | 955 (5) | 제16대 대통령 취임(공안사범 사면) |
| '03. 8. 15. | - | 2,363 (502) | - | 675 (10) | - | 170 | 21,417 | 광복 58주년 경축 |
| '04. 5. 26. | - | 1 | - | - | - | 6 | 62 | 부처님 오신 날 경축 |
| '05. 8. 15. | - | 2,528 (62) | - | 567 (20) | - | 1,483 (1) | 9,515 (19) | 광복60주년경축(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4,207,152명) |
| '06. 8. 15. | - | 46 | - | 19 | - | 27 | 50 | 광복61년경축(건설업체 벌점삭제 등 4,390명) |
| '07. 2. 12. | - | 28 | - | 12 | - | 276 | 118 |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 |
| '08. 1. 1. | - | 8 | - | 14 | - | 18 | 35 | |
| '08. 6. 4. | - | 119 | - | 31 | - | - | - | 새정부 출범 100일 기념(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2,828,917명) |
| '08. 8. 15. | - | 1,401 (8) | - | 178 | - | 1,951 | 8,797 (16) | 광복 63주년, 건국 60주년 경축(징계사면 328,335명,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취득결격기간 해제 500명) |
| '09. 8. 15. | - | 1,947 (6) | - | 375 | - | - | 7,145 (2) | 제64주년 광복절, 건국 61주년 경축 |
| '09. 12. 31. | - | 1 | - | - | - | - | - | |
| '10. 8. 15. | - | 25 | - | 15 | - | 2,406 | 47 | 제65주년 광복절 기념 (징계사면 5,685) |
| '12. 1. 12. | - | 595 | - | 185 | - | - | 165 | |
| '13. 1. 31. | - | 16 | - | 3 | - | 18 | 5,296 (1) |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7,601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2,896,499명 |
| '14. 1. 29. | - | 516 (1) | - | 113 | - | - | | |
| '15. 8. 15. | - | 877 (5) | - | 246 | - | 1 | 5,403 (5) | 제70주년 광복절 기념(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200,925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2,206,924명) |

※ ( )는 국방부 소관

## 7. 형사보상금 지급 〈표 2-22〉

(단위 : 천원, 명)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예산액 | 2,169,848 | 2,367,112 | 2,367,112 | 4,213,780 | 3,961,348 | 4,080,000 | 7,972,000 | 11,000,000 | 14,000,000 | 20,000,000 |
| 보상인원 | 291 | 259 | 285 | 342 | 5,155 | 15,116 | 39,519 | 29,015 | 34,363 | 14,546 |
| 지급금액 | 2,448,000 | 2,323,000 | 6,082,103 | 10,610,675 | 17,362,009 | 22,565,518 | 53,178,959 | 57,671,711 | 88,165,833 | 52,974,617 |

※ 형사보상금 = 피고인 보상금 + 피의자 보상금 + 무죄비용 보상금

## 8. 마약보상금 지급 〈표 2-23〉

(단위 : 천원)

| 종 류 \ 구 분 | 민간인 보상금 | 공무원 보상금 | 계 |
|---|---|---|---|
| 예 산 액 | 120,000 | 180,388 | 300,388 |
| 2015 | 119,600<br>(55) | 180,788<br>(1,877) | 300,388 |

※ ( )는 인원

## 9. 해외연수

### 가. 검사 장기 해외연수 〈표 2-24〉

(단위 : 명)

| 연도 \ 지역 | 계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 중국 | 스페인 | 러시아 | 캐나다 | 호주 | 오스트리아 | 이집트 | 네덜란드 | 벨기에 | 싱가포르 | 칠레 | 이탈리아 | 인도 | 터키 |
|---|---|---|---|---|---|---|---|---|---|---|---|---|---|---|---|---|---|---|---|---|
| 2005 | 28 | 14 | 1 | 2 | 1 | 2 | 2 | 1 | - | 1 | 1 | 1 | 1 | 1 | - | - | - | - | - | - |
| 2006 | 50 | 25 | 2 | 5 | 2 | 3 | 3 | 1 | - | 2 | 1 | 1 | 1 | 1 | 1 | 1 | 1 | - | - | - |
| 2007 | 53 | 26 | 3 | 4 | 2 | 3 | 3 | 1 | - | 3 | 2 | 1 | - | 1 | 1 | - | 1 | 1 | 1 | - |
| 2008 | 54 | 21 | 4 | 5 | 2 | 3 | 4 | 2 | 1 | 4 | 2 | 1 | - | 2 | 1 | - | 1 | 1 | 1 | - |
| 2009 | 53 | 21 | 4 | 5 | 3 | 3 | 4 | 2 | - | 3 | 1 | 1 | - | 2 | 1 | - | 1 | 2 | - | - |
| 2010 | 54 | 24 | 4 | 5 | 2 | 3 | 3 | 3 | - | 3 | 2 | 1 | 1 | 1 | 1 | - | - | 1 | - | - |
| 2011 | 54 | 20 | 2 | 5 | 2 | 5 | 6 | 3 | - | 6 | 2 | 1 | - | 1 | - | - | - | - | - | 1 |
| 2012 | 54 | 23 | 3 | 5 | 3 | 3 | 5 | 2 | - | 4 | 3 | 1 | - | 1 | - | - | - | 1 | - | - |
| 2013 | 54 | 25 | 3 | 4 | 3 | 2 | 3 | 4 | - | 4 | 3 | 1 | - | 1 | - | - | - | 1 | - | - |
| 2014 | 52 | 23 | 2 | 5 | 3 | 2 | 5 | 3 | - | 5 | 2 | 1 | - | 1 | - | - | - | - | - | - |
| 2015 | 52 | 24 | 3 | 5 | 3 | 2 | 3 | 4 | - | 4 | 2 | 1 | - | 1 | - | - | - | - | - | - |

※ 행자부 등 타부처 주관 포함

## 나. 검사외 검찰공무원 장기 해외연수 <표 2-25>

(단위 : 명)

| 지역 / 연도 | 계 | 미국 | 영국 | 호주 | 독일 | 일본 | 중국 | 캐나다 | 태국 | 스페인 | 체코 | 멕시코 | 몽골 |
|---|---|---|---|---|---|---|---|---|---|---|---|---|---|
| 2005 | 4 | 1 | 1 | - | - | - | - | - | - | 1 | 1 | - | - |
| 2006 | 4 | 1 | - | - | - | - | 1 | 2 | - | - | - | - | - |
| 2007 | 8 | 2 | - | - | - | 2 | 1 | 1 | 1 | 1 | - | - | - |
| 2008 | 7 | 3 | - | - | - | 1 | 1 | 1 | - | 1 | - | - | - |
| 2009 | 5 | 2 | 1 | - | - | - | 1 | 1 | - | - | - | - | - |
| 2010 | 6 | 3 | - | - | - | 1 | 1 | 1 | - | - | - | - | - |
| 2011 | 6 | 3 | 1 | - | - | - | 1 | - | - | - | - | 1 | - |
| 2012 | 5 | 3 | - | - | - | - | 1 | 1 | - | - | - | - | - |
| 2013 | 7 | 3 | - | 1 | - | 1 | 1 | - | - | - | - | - | 1 |
| 2014 | 7 | 3 | - | - | 1 | - | 2 | 1 | - | - | - | - | - |
| 2015 | 6 | 3 | - | - | - | - | 2 | 1 | - | - | - | - | - |

※ 행자부 등 타부처 주관 포함

# 제 3 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 1. 비행소년 선도

### 가. 선도유예

○ 검찰청별 선도유예인원 〈표 3-1〉

| 연도 / 검찰청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5,626 | 6,610 | 5,886 | 7,104 | 2,967 | 1,363 | 5,694 | 4,548 | 3,472 | 3,413 |
| 서울중앙 | 49 | 120 | 173 | 72 | 35 | 15 | 254 | 179 | 80 | 42 |
| 서울동부 | 222 | 271 | 189 | 141 | 31 | 20 | 375 | 134 | 108 | 39 |
| 서울남부 | 173 | 754 | 734 | 500 | 186 | 114 | 164 | 141 | 145 | 86 |
| 서울북부 | 160 | 497 | 546 | 1,224 | 328 | 119 | 161 | 204 | 160 | 113 |
| 서울서부 | 95 | 239 | 115 | 116 | 28 | - | 113 | 87 | 106 | 131 |
| 의 정 부 | 325 | 311 | 462 | 354 | 194 | 26 | 135 | 503 | 662 | 417 |
| 인 천 | 383 | 343 | 209 | 210 | 336 | 44 | 571 | 243 | 165 | 119 |
| 수 원 | 944 | 971 | 714 | 932 | 360 | 451 | 899 | 583 | 395 | 673 |
| 춘 천 | 262 | 375 | 382 | 382 | 57 | 17 | 92 | 269 | 128 | 98 |
| 청 주 | 193 | 215 | 180 | 332 | 59 | 94 | 362 | 155 | 160 | 602 |
| 대 전 | 492 | 380 | 450 | 359 | 158 | 32 | 286 | 332 | 270 | 69 |
| 대 구 | 504 | 420 | 420 | 504 | 304 | 204 | 551 | 344 | 260 | 127 |
| 부 산 | 400 | 472 | 219 | 205 | 76 | 52 | 552 | 138 | 172 | 95 |
| 울 산 | 273 | 30 | 64 | 49 | 53 | - | 444 | 484 | 157 | 306 |
| 창 원 | 384 | 440 | 399 | 712 | 100 | 22 | 198 | 284 | 169 | 154 |
| 광 주 | 395 | 332 | 350 | 685 | 577 | 120 | 267 | 387 | 179 | 140 |
| 전 주 | 315 | 384 | 242 | 282 | 59 | 33 | 225 | 70 | 132 | 160 |
| 제 주 | 57 | 56 | 38 | 45 | 26 | - | 45 | 11 | 24 | 42 |

○ 죄명별, 연령별, 직업별 선도유예인원 〈표 3-2〉

| 구분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 5,626 | 6,610 | 5,886 | 7,104 | 2,967 | 1,363 | 5,694 | 4,548 | 3,473 | 3,413 |
| 죄명 | 폭력행위 등 | 1,537 | 1,629 | 1,751 | 1,774 | 763 | 364 | 1,649 | 1,015 | 672 | 664 |
| | 절 도 | 2,947 | 3,370 | 2,379 | 3,438 | 1,319 | 603 | 2,228 | 2,068 | 1,477 | 1,503 |
| | 강 도 | 21 | 35 | 64 | 45 | 4 | 7 | 25 | 12 | 6 | 1 |
| | 강 간 | 38 | 40 | 45 | 31 | 13 | 7 | 31 | 32 | 12 | 23 |
| | 교 통 | 691 | 929 | 1,023 | 860 | 289 | 196 | 560 | 424 | 375 | 328 |
| | 재 산 | 133 | 129 | 317 | 217 | 194 | 66 | 269 | 345 | 241 | 325 |
| | 기 타 | 259 | 487 | 307 | 739 | 385 | 120 | 932 | 652 | 690 | 569 |
| 연령 | 14세 | 791 | 961 | 830 | 833 | 352 | 176 | 765 | 649 | 477 | 341 |
| | 15세 | 1,429 | 1,638 | 1,640 | 1,788 | 675 | 297 | 1,272 | 928 | 723 | 671 |
| | 16세 | 1,520 | 1,737 | 1,626 | 1,893 | 755 | 353 | 1,351 | 1,122 | 874 | 866 |
| | 17세 | 1,206 | 1,332 | 1,050 | 1,573 | 629 | 267 | 1,220 | 1,081 | 830 | 780 |
| | 18세 | 528 | 640 | 498 | 743 | 390 | 185 | 696 | 607 | 488 | 534 |
| | 19세 이상 | 152 | 302 | 242 | 274 | 166 | 85 | 390 | 161 | 81 | 221 |
| 직업 | 학 생 | 5,105 | 5,669 | 5,056 | 5,447 | 2,521 | 1,133 | 4,349 | 3,557 | 2,745 | 2,781 |
| | 공원 및 종업원 | 62 | 146 | 58 | 290 | 24 | 20 | 72 | 51 | 57 | 37 |
| | 무 직 | 418 | 706 | 695 | 1,087 | 354 | 206 | 579 | 535 | 362 | 276 |
| | 기 타 | 41 | 89 | 77 | 280 | 68 | 4 | 694 | 405 | 309 | 319 |

※ 죄명별 선도유예인원 '기타'항목을 2005년부터 교통, 재산, 기타로 구분하여 산출

## 2. 감호처분

### 가. 감호청구

○ 감호종류별 청구인원 〈표 3-3〉

| 구 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304 | 322 | 304 | 389 | 332 | 290 | 244 | 254 | 156 | 155 |
| 보호감호 | - | - | - | - | - | - | - | - | - | - |
| 치료감호 | 304 | 322 | 304 | 389 | 332 | 290 | 244 | 254 | 156 | 155 |

○ 죄명별 청구인원 〈표 3-4〉

| 죄명 \ 연도 | 2006 | | 2007 | | 2008 | | 2009 | | 2010 |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2015 | |
|---|---|---|---|---|---|---|---|---|---|---|---|---|---|---|---|---|---|---|---|---|
| | 보호감호 | 치료감호 | 보호감호 | 치료감호 | 보호감호 | 치료감호 | 보호감호 | 치료감호 | 보호감호 | 치료감호 | 보호감호 | 치료감호 | 보호감호 | 치료감호 | 보호감호 | 치료감호 | 보호감호 | 치료감호 | 보호감호 | 치료감호 |
| 계 | - | 311 | - | 322 | - | 304 | - | 389 | - | 332 | - | 290 | - | 244 | - | 254 | - | 156 | - | 155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 | 15 | - | 12 | - | 13 | - | 23 | - | 27 | - | 1 | - | 7 | - | 5 | - | 1 | - | -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32 | - | 30 | - | 37 | - | 34 | - | 76 | - | 36 | - | 42 | - | 36 | - | 27 | - | 18 |
| 절도 | - | 8 | - | 11 | - | 15 | - | 11 | - | 9 | - | 30 | - | 14 | - | 7 | - | 11 | - | 5 |
| 강도 | - | 13 | - | 12 | - | 14 | - | 22 | - | 6 | - | 8 | - | 4 | - | 5 | - | 4 | - | 2 |
| 살인 | - | 44 | - | 44 | - | 41 | - | 68 | - | 47 | - | 10 | - | 27 | - | 40 | - | 22 | - | 29 |
| 강간 | - | 7 | - | 18 | - | 12 | - | 47 | - | 42 | - | 12 | - | 16 | - | 13 | - | 6 | - | 4 |
| 사기 | - | 8 | - | 10 | - | 28 | - | 10 | - | 5 | - | 40 | - | 10 | - | 10 | - | 4 | - | 3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 - | - | - | 1 | - | - | - | 1 | - | 1 | - | - | - | - | - | - | - | - | - | - |
| 상해·폭행 | - | 10 | - | 23 | - | 12 | - | 9 | - | 6 | - | 11 | - | 16 | - | 14 | - | 16 | - | 15 |
| 방화·실화 | - | 12 | - | 22 | - | 7 | - | 14 | - | 17 | - | 23 | - | 10 | - | 14 | - | 11 | - | 11 |
| 상해(폭행)치사 | - | 4 | - | 1 | - | 5 | - | 4 | - | 6 | - | 2 | - | - | - | - | - | 2 | - | 3 |
| 무고 | - | -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기타 | - | 158 | - | 138 | - | 119 | - | 146 | - | 90 | - | 115 | - | 98 | - | 110 | - | 52 | - | 65 |

## 나. 피보호감호자 수용

○ 죄명별 수용인원 〈표 3-5〉

| 죄명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63 | 58 | 66 | 84 | 101 | 120 | 135 | 119 | 104 | 100 |
| 강 도 | 32 | 25 | 33 | 37 | 52 | 43 | 43 | 33 | 32 | 32 |
| 절 도 | 14 | 5 | 5 | 5 | 17 | 18 | 23 | 23 | 19 | 16 |
| 폭 력 | 4 | 3 | 1 | 2 | 5 | 5 | 4 | 4 | 2 | 2 |
| 성폭력 | - | - | - | - | - | 53 | 64 | 59 | 48 | 47 |
| 기 타 | 13 | 25 | 27 | 40 | 27 | 1 | 1 | - | 3 | 3 |

○ 전과별 수용인원 〈표 3-6〉

| 전과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63 | 58 | 66 | 84 | 101 | 120 | 135 | 119 | 104 | 100 |
| 초 범 | 2 | 1 | 10 | 9 | 7 | 10 | 8 | 7 | 6 | 7 |
| 2 ~ 3범 | 7 | 6 | 14 | 18 | 22 | 27 | 32 | 28 | 22 | 18 |
| 4 ~ 5범 | 19 | 19 | 20 | 30 | 38 | 41 | 47 | 39 | 31 | 32 |
| 6 ~ 7범 | 22 | 21 | 15 | 14 | 18 | 30 | 34 | 33 | 31 | 29 |
| 8 ~ 9범 | 9 | 5 | 4 | 6 | 9 | 7 | 8 | 7 | 8 | 7 |
| 10범 이상 | 4 | 6 | 3 | 7 | 7 | 5 | 6 | 5 | 6 | 7 |

○ 동기별 수용인원 〈표 3-7〉

| 동기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63 | 58 | 66 | 84 | 101 | 120 | 135 | 119 | 104 | 100 |
| 이욕(생활비, 유흥비, 허영) | 57 | 55 | 47 | 80 | 90 | 108 | 120 | 105 | 101 | 98 |
| 원한·분노 | - | - | 3 | 2 | - | - | - | - | - | - |
| 취 중 | 4 | 1 | 7 | 1 | 2 | 1 | 2 | 4 | 3 | 2 |
| 우 연 | 2 | 1 | 1 | - | - | - | - | - | - | - |
| 기 타 | - | 1 | 8 | 1 | 9 | 11 | 13 | 10 | - | - |

○ 학력별 수용인원 〈표 3-8〉

| 학력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63 | 58 | 66 | 84 | 101 | 120 | 135 | 119 | 104 | 100 |
| 무 학 | 6 | 3 | 5 | 6 | 2 | 2 | 2 | 9 | 15 | 11 |
| 국 졸 | 23 | 21 | 19 | 28 | 23 | 27 | 34 | 40 | 31 | 36 |
| 중 졸 | 24 | 18 | 17 | 20 | 34 | 42 | 45 | 21 | 19 | 17 |
| 고 졸 | 10 | 16 | 24 | 26 | 39 | 47 | 52 | 47 | 38 | 35 |
| 대 졸 | - | - | 1 | 4 | 3 | 2 | 2 | 2 | 1 | 1 |

○ 직업별 수용인원 〈표 3-9〉

| 직업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63 | 58 | 66 | 84 | 101 | 120 | 135 | 119 | 104 | 100 |
| 노 동 | 8 | 7 | 6 | 13 | 29 | 38 | 45 | 22 | 29 | 30 |
| 종업원 | 10 | 6 | 19 | 8 | 40 | 42 | 53 | 32 | 16 | 14 |
| 농 업 | 1 | 1 | 3 | 2 | 3 | 3 | 3 | 1 | - | 1 |
| 상 업 | 9 | 2 | 18 | 9 | 25 | 29 | 27 | 13 | 10 | 9 |
| 기 타 | 35 | 42 | 20 | 52 | 4 | 8 | 7 | 51 | 49 | 46 |

○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표 3-10〉

| 집행기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63 | 58 | 66 | 84 | 101 | 120 | 135 | 119 | 104 | 100 |
| 1년 미만 | 51 | 32 | 20 | 16 | 18 | 25 | 17 | 10 | 5 | 4 |
| 1년 이상~<br>2년 미만 | 5 | 17 | 30 | 22 | 17 | 24 | 28 | 20 | 13 | 11 |
| 2년 이상~<br>3년 미만 | - | 1 | 6 | 21 | 22 | 22 | 30 | 30 | 23 | 12 |
| 3년 이상~<br>4년 미만 | 1 | 1 | 2 | 8 | 25 | 20 | 18 | 27 | 27 | 24 |
| 4년 이상 | 6 | 7 | 8 | 17 | 19 | 29 | 42 | 32 | 36 | 49 |

## 다. 피치료감호자 수용

○ 죄명별 수용인원 〈표 3-11〉

| 죄명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629 | 686 | 723 | 824 | 887 | 948 | 1,021 | 1,122 | 1,149 | 1,180 |
| 살 인 | 229 | 252 | 266 | 289 | 297 | 297 | 318 | 334 | 340 | 372 |
| 상해(폭행)치사 | 34 | 33 | 31 | 38 | 37 | 33 | 35 | 37 | 37 | 36 |
| 폭 력 | 95 | 123 | 117 | 117 | 127 | 149 | 163 | 180 | 195 | 161 |
| 절 도 | 43 | 56 | 58 | 70 | 80 | 70 | 66 | 64 | 58 | 68 |
| 방 화 | 43 | 41 | 49 | 51 | 54 | 62 | 62 | 63 | 71 | 80 |
| 강 도 | 32 | 35 | 39 | 55 | 53 | 50 | 40 | 45 | 54 | 57 |
| 성 폭 력 | 64 | 77 | 76 | 100 | 131 | 170 | 209 | 247 | 263 | 279 |
| 기 타 | 89 | 69 | 87 | 104 | 108 | 117 | 128 | 152 | 131 | 127 |

○ 전과별 수용인원 〈표 3-12〉

| 전과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629 | 686 | 723 | 824 | 887 | 948 | 1,021 | 1,122 | 1,149 | 1,180 |
| 초 범 | 403 | 448 | 467 | 537 | 566 | 596 | 664 | 721 | 759 | 769 |
| 2 범 | 77 | 77 | 76 | 80 | 93 | 95 | 112 | 130 | 121 | 132 |
| 3 범 | 34 | 34 | 35 | 44 | 46 | 58 | 63 | 63 | 70 | 77 |
| 4 범 | 33 | 33 | 37 | 40 | 45 | 41 | 38 | 44 | 42 | 40 |
| 5범 이상 | 82 | 94 | 108 | 123 | 137 | 158 | 144 | 164 | 157 | 162 |

○ 병명별 수용인원 〈표 3-13〉

| 병명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629 | 686 | 723 | 824 | 887 | 948 | 1,021 | 1,122 | 1,149 | 1,180 |
| 정 신 분 열 증 | 361 | 394 | 395 | 428 | 355 | 382 | 450 | 480 | 509 | 533 |
| 정 신 지 체 | 36 | 51 | 56 | 72 | 100 | 82 | 86 | 89 | 104 | 102 |
| 조 울 증 | 52 | 60 | 67 | 58 | 64 | 42 | 54 | 57 | 72 | 81 |
| 성격(인격)장애 | 13 | 13 | 14 | 17 | 52 | 33 | 38 | 44 | 38 | 35 |
| 간 질 | 12 | 8 | 14 | 12 | 25 | 25 | 28 | 26 | 20 | 14 |
| 약 물 중 독 | 66 | 47 | 51 | 56 | 68 | 50 | 71 | 85 | 176 | 175 |
| 기 타 | 89 | 113 | 126 | 181 | 223 | 334 | 294 | 341 | 230 | 240 |

○ 학력별 수용인원 〈표 3-14〉

| 학력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629 | 686 | 723 | 824 | 887 | 948 | 1,021 | 1,122 | 1,149 | 1,180 |
| 무 학 | 39 | 41 | 39 | 38 | 42 | 55 | 59 | 42 | 41 | 48 |
| 국 졸 | 101 | 108 | 116 | 128 | 130 | 131 | 129 | 138 | 143 | 141 |
| 중 졸 | 123 | 133 | 137 | 165 | 194 | 212 | 202 | 222 | 230 | 227 |
| 고 졸 | 267 | 296 | 316 | 347 | 377 | 389 | 444 | 497 | 494 | 512 |
| 대 졸 | 99 | 108 | 115 | 146 | 144 | 161 | 187 | 223 | 241 | 252 |

○ 직업별 수용인원 〈표 3-15〉

| 직업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629 | 686 | 723 | 824 | 887 | 948 | 1,021 | 1,122 | 1,149 | 1,180 |
| 노 동 | 48 | 54 | 52 | 55 | 81 | 83 | 89 | 103 | 104 | 102 |
| 종 업 원 | 17 | 14 | 22 | 32 | 33 | 26 | 35 | 43 | 94 | 67 |
| 농 업 | 29 | 32 | 35 | 30 | 37 | 33 | 32 | 29 | 28 | 28 |
| 상 업 | 32 | 11 | 10 | 13 | 9 | 7 | 11 | 10 | 41 | 7 |
| 무 직 | 436 | 475 | 485 | 547 | 589 | 629 | 669 | 732 | 759 | 745 |
| 기 타 | 30 | 100 | 119 | 147 | 138 | 170 | 185 | 205 | 123 | 231 |

○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표 3-16〉

| 집행기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629 | 686 | 723 | 824 | 887 | 948 | 1,021 | 1,122 | 1,149 | 1,180 |
| 1년 미만 | 199 | 233 | 237 | 313 | 313 | 320 | 293 | 434 | 548 | 279 |
| 1년 이상~2년 미만 | 146 | 129 | 173 | 172 | 198 | 195 | 225 | 188 | 126 | 199 |
| 2년 이상~3년 미만 | 91 | 106 | 87 | 106 | 107 | 129 | 135 | 126 | 115 | 173 |
| 3년 이상~4년 미만 | 63 | 73 | 65 | 58 | 81 | 81 | 104 | 110 | 99 | 126 |
| 4년 이상 | 130 | 145 | 161 | 175 | 188 | 223 | 264 | 264 | 261 | 403 |

## 라. 피보호감호자 교육훈련 및 기능자격취득

○ 교육훈련 인원 〈표 3-17〉

| 구분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 24 | 11 | 11 | 4 | 9 | 11 | 11 | 17 | 14 | 7 |
| 학과교육 | 소계 | 2 | 2 | 9 | - | - | - | 2 | 4 | 12 | 7 |
| | 초등반 | - | - | - | - | - | - | - | - | - | - |
| | 중등반 | - | 2 | 3 | - | - | - | - | - | - | - |
| | 고등반 | 1 | - | 1 | - | - | - | 1 | - | 2 | - |
| | 학사고시반 | 1 | - | 5 | - | - | - | 1 | 4 | 10 | 7 |
| 직업훈련 | 소계 | - | 9 | 2 | 4 | 9 | 11 | 9 | 13 | 2 | - |
| | 목공 | - | - | - | - | - | - | - | - | - | - |
| | 미(도)장 | - | - | - | - | - | - | - | - | - | - |
| | 조적 | - | - | - | - | - | - | - | - | - | - |
| | 타일 | - | - | - | - | - | - | - | - | - | - |
| | 배관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보일러시공 | - | - | - | - | - | - | - | 12 | - | - |
| | 이·미용 | - | - | - | - | - | - | - | - | - | - |
| | 원예 | - | - | - | - | - | - | - | - | - | - |
| | 양재 | - | - | - | - | - | - | - | - | - | - |
| | 정비 | - | - | - | - | - | - | - | 1 | 1 | - |
| | 정보기기 | - | - | 1 | 2 | - | - | - | - | - | - |
| | 기타 | 22 | 9 | 1 | 2 | 9 | 11 | 9 | - | 1 | - |

○ 기능자격취득 인원 〈표 3-18〉

| 구분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 7 | 2 | 1 | - | 9 | 11 | 9 | 13 | 2 | - |
| 천안교도소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1·2기능사 | - | - | - | - | - | - | - | - | - | - |
| | 기능사보 | - | - | - | - | - | - | - | - | - | - |
| | 면 허 | - | - | - | - | - | - | - | - | - | - |
| 경북북부제3교도소 | 소 계 | 7 | 2 | 1 | 4 | 9 | 11 | 9 | 13 | 2 | - |
| | 1·2기능사 | 7 | 2 | 1 | 4 | 9 | 11 | 9 | 13 | 2 | - |
| | 기능사보 | - | - | - | - | - | - | - | - | - | - |
| | 면 허 | - | - | - | - | - | - | - | - | - | - |

## 마.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 피보호감호자 결정 인원 〈표 3-19〉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363 | 122 | 56 | 42 | 24 | 39 | 25 | 38 | 33 | 39 |
| 가 출 소 | 167 | 66 | 29 | 15 | 17 | 19 | 17 | 37 | 33 | 23 |
| 가출소취소 | 35 | 39 | 25 | 27 | 7 | 7 | 8 | 1 | - | 16 |
| 집 행 면 제 | 160 | 17 | 2 | - | - | 13 | - | - | - | - |

○ 피치료감호자 결정 인원 〈표 3-20〉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254 | 284 | 282 | 293 | 271 | 295 | 265 | 268 | 330 | 354 |
| 종 료 | 35 | 7 | - | 3 | 3 | - | - | 2 | 1 | 4 |
| 가 종 료 | 216 | 277 | 274 | 283 | 260 | 275 | 255 | 247 | 275 | 266 |
| 가종료취소(기간만료) | 3 | - | 8 | 7 | 8 | 20 | 10 | 19 | 54 | 84 |

## 바. 보호감호 가출소

○ 감호집행 기간별 가출소 인원 〈표 3-21〉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167 | 66 | 28 | 15 | 17 | 19 | 15 | 37 | 33 | 23 |
| 3년 미만 | 144 | 51 | 24 | 15 | 5 | 3 | 1 | 5 | - | - |
| 3년이상~4년 미만 | 4 | - | - | - | 3 | 8 | 4 | 6 | 5 | 5 |
| 4년이상~5년 미만 | 9 | 1 | - | - | 1 | 2 | 4 | 3 | 8 | 5 |
| 5년 이상 | 10 | 14 | 4 | - | 8 | 6 | 6 | 23 | 20 | 13 |

○ 죄명별 가출소 인원 〈표 3-22〉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167 | 66 | 28 | 15 | 17 | 19 | 15 | 37 | 33 | 23 |
| 절 도 | 113 | 32 | 7 | 2 | 2 | 4 | 3 | 7 | 9 | 9 |
| 강 도 | 29 | 25 | 11 | 10 | 10 | 8 | 7 | 13 | 9 | 5 |
| 폭력행위등 | 8 | 1 | 2 | - | - | 2 | 3 | 3 | 2 | - |
| 성 폭 력 | 2 | 1 | - | - | - | 5 | 2 | 14 | 13 | 9 |
| 기 타 | 15 | 7 | 7 | 3 | 5 | - | - | - | - | - |

○ 전과별 가출소 인원 〈표 3-23〉

| 전과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167 | 66 | 28 | 15 | 17 | 19 | 15 | 37 | 33 | 23 |
| 초 범 | 1 | 3 | 4 | 4 | 2 | - | 3 | 2 | 2 | - |
| 2 ~ 3 범 | 15 | 10 | 2 | 4 | 5 | 2 | 3 | 6 | 10 | 6 |
| 4 ~ 5 범 | 49 | 16 | 9 | 4 | 4 | 7 | 3 | 14 | 11 | 5 |
| 6 ~ 7 범 | 57 | 23 | 9 | 2 | 4 | 6 | 3 | 11 | 8 | 7 |
| 8 ~ 9 범 | 28 | 12 | 2 | 1 | 1 | 4 | 1 | 1 | 1 | 4 |
| 10범 이상 | 17 | 2 | 2 | - | 1 | - | 2 | 3 | 1 | 1 |

### 사. 치료감호 종료 · 가종료

○ 치료감호 기간별 종료 · 가종료 인원 〈표 3-24〉

| 기간 \ 연도 | 2006 | | 2007 | | 2008 | | 2009 | | 2010 |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2015 | |
|---|---|---|---|---|---|---|---|---|---|---|---|---|---|---|---|---|---|---|---|---|
|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 계 | 73 | 165 | 7 | 277 | - | 274 | 3 | 283 | 3 | 260 | - | 275 | - | 255 | 2 | 247 | 1 | 275 | 4 | 266 |
| 1년 미만 | 18 | 91 | 3 | 151 | - | 111 | - | 117 | 3 | 60 | - | 55 | - | 48 | - | 47 | 1 | 65 | 2 | 59 |
| 1년 이상 2년 미만 | 21 | 42 | 1 | 54 | - | 58 | - | 67 | - | 108 | - | 126 | - | 107 | 1 | 94 | - | 94 | 2 | 72 |
| 2년 이상 3년 미만 | 7 | 10 | 1 | 21 | - | 40 | 1 | 40 | - | 40 | - | 39 | - | 47 | 1 | 43 | - | 36 | - | 41 |
| 3년 이상 | 27 | 22 | 2 | 51 | - | 65 | 2 | 59 | - | 52 | - | 55 | - | 53 | - | 63 | - | 80 | - | 94 |

○ 죄명별 종료 · 가종료 인원 〈표 3-25〉

| 죄명 \ 연도 | 2006 | | 2007 | | 2008 | | 2009 | | 2010 |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2015 | |
|---|---|---|---|---|---|---|---|---|---|---|---|---|---|---|---|---|---|---|---|---|
|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 계 | 35 | 216 | 7 | 277 | - | 274 | 3 | 283 | 3 | 260 | - | 275 | - | 255 | 2 | 247 | 1 | 275 | 4 | 266 |
| 살 인 | 13 | 28 | - | 36 | - | 36 | - | 32 | 1 | 19 | - | 23 | - | 33 | - | 33 | - | 42 | - | 27 |
| 상 해 (폭 행) 치 사 | 2 | 4 | - | 8 | - | 9 | 1 | 25 | 1 | 7 | - | 3 | - | 2 | - | 3 | - | 5 | - | 6 |
| 폭 력 행위등 | 3 | 28 | 1 | 15 | - | 37 | - | 31 | 1 | 28 | - | 28 | - | 39 | - | 48 | - | 39 | 2 | 81 |
| 강 간 | 5 | 14 | 3 | 10 | - | 18 | - | 20 | - | 5 | - | 3 | - | 7 | 1 | 9 | - | 31 | 1 | 16 |
| 강 도 | 1 | 6 | - | 10 | - | 11 | - | 12 | - | 16 | - | 12 | - | 21 | - | 9 | - | 6 | - | 13 |
| 절 도 | 5 | 14 | - | 13 | - | 19 | 2 | 21 | - | 27 | - | 38 | - | 26 | - | 23 | - | 24 | 1 | 13 |
| 방 화, 실 화 | 4 | 15 | - | 14 | - | 13 | - | 18 | - | 19 | - | 15 | - | 18 | 1 | 17 | - | 10 | - | 10 |
| 기 타 | 2 | 107 | 3 | 171 | - | 131 | - | 124 | - | 139 | - | 153 | - | 109 | - | 105 | 1 | 118 | - | 100 |

○ 전과별 종료 · 가종료 인원 〈표 3-26〉

| 연도 / 전과 | 2006 | | 2007 | | 2008 | | 2009 | | 2010 |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2015 | |
|---|---|---|---|---|---|---|---|---|---|---|---|---|---|---|---|---|---|---|---|---|
|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 계 | 35 | 216 | 7 | 277 | - | 274 | 3 | 283 | 3 | 260 | - | 275 | - | 255 | 2 | 247 | 1 | 275 | 4 | 266 |
| 초범 | 19 | 72 | 3 | 88 | - | 106 | - | 100 | 1 | 122 | - | 120 | - | 90 | - | 102 | - | 114 | 1 | 119 |
| 2범 | 5 | 27 | 2 | 21 | - | 28 | 1 | 42 | 1 | 30 | - | 33 | - | 28 | 1 | 29 | 1 | 37 | 2 | 33 |
| 3범 | 1 | 12 | 1 | 20 | - | 15 | - | 13 | 1 | 10 | - | 14 | - | 14 | - | 16 | - | 15 | - | 17 |
| 4범 | 2 | 8 | - | 19 | - | 19 | - | 15 | - | 14 | - | 16 | - | 16 | - | 14 | - | 14 | 1 | 9 |
| 5범 이상 | 8 | 97 | 1 | 129 | - | 106 | 2 | 113 | - | 84 | - | 92 | - | 107 | 1 | 86 | - | 95 | - | 88 |

○ 병명별 종료 · 가종료 인원 〈표 3-27〉

| 연도 / 병명 | 2006 | | 2007 | | 2008 | | 2009 | | 2010 |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2015 | |
|---|---|---|---|---|---|---|---|---|---|---|---|---|---|---|---|---|---|---|---|---|
|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종료 | 가종료 |
| 계 | 36 | 216 | 7 | 277 | - | 274 | 3 | 283 | 3 | 260 | - | 275 | - | 255 | 2 | 247 | 1 | 275 | 4 | 266 |
| 정신분열증 | 15 | 53 | 1 | 81 | - | 88 | - | 35 | 3 | 42 | - | 52 | - | 66 | - | 71 | - | 65 | 2 | 83 |
| 정신지체 | 3 | 5 | 2 | 8 | - | 13 | 1 | 47 | - | 44 | - | 25 | - | 17 | 1 | 17 | - | 11 | - | 16 |
| 조울증 | 4 | 22 | - | 3 | - | 14 | - | 12 | - | 16 | - | 29 | - | 13 | - | 14 | - | 11 | - | 15 |
| 성격(인격)장애 | 2 | 3 | - | 6 | - | 4 | 2 | 21 | - | 27 | - | 22 | - | 8 | - | 8 | - | 8 | - | 9 |
| 간질 | - | 2 | - | 3 | - | 2 | - | 4 | - | 11 | - | 3 | - | 3 | - | 4 | - | 7 | - | 7 |
| 약물중독 | 8 | 116 | 4 | 152 | - | 108 | - | 133 | - | 81 | - | 82 | - | 76 | 1 | 107 | 1 | 143 | - | 105 |
| 기타 | 4 | 15 | - | 24 | - | 45 | - | 31 | - | 39 | - | 62 | - | 72 | - | 26 | - | 30 | 2 | 31 |

## 3. 보호관찰

### 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 〈표 3-28〉

(2015년)

| 구 분 \ 심사위원회 | 계 | 서 울 | 부 산 | 대 구 | 광 주 | 대 전 |
|---|---|---|---|---|---|---|
| 계 | 13,869 | 6,398 | 1,779 | 1,378 | 2,120 | 2,194 |
| 가 석 방 | 34 | 3 | 3 | 16 | 3 | 9 |
| 임 시 퇴 원 | 1,496 | 662 | 112 | 266 | 406 | 50 |
| 기 타 (임시해제, 전자발찌부착 및 가해제, 각종 취소 등) | 12,339 | 5,733 | 1,664 | 1,096 | 1,711 | 2,135 |

### 나. 처분종류별 실시사건 현황 〈표 3-29〉

(2015년)

| 구 분 \ 대 상 | 총 실 시 인 원 | | | 종 료 | 현 원 |
|---|---|---|---|---|---|
| | 계 | 구 수 | 신 수 | | |
| 계 | 199,713 | 65,349 | 134,364 | 130,269 | 69,444 |
| 선 고 유 예 | 36 | 9 | 27 | 13 | 23 |
| 집 행 유 예 | 100,453 | 35,369 | 65,084 | 63,564 | 36,889 |
| 보 호 처 분 | 42,771 | 16,888 | 25,883 | 27,020 | 15,751 |
| 가 석 방 | 5,356 | 1,200 | 4,156 | 4,255 | 1,101 |
| 임 시 퇴 원 | 1,732 | 648 | 1,084 | 1,240 | 492 |
| 가 출 소 | 112 | 72 | 40 | 42 | 70 |
| 가 종 료 | 1,035 | 594 | 441 | 415 | 620 |
| 감 호 가 석 방 | - | - | - | - | - |
| 가 정 보 호 | 9,693 | 1,870 | 7,823 | 6,559 | 3,134 |
| 성 매 매 | 2,157 | 538 | 1,619 | 1,293 | 864 |
| 선 도 위 탁 | 14,769 | 3,344 | 11,425 | 9,464 | 5,305 |
| 성구매자 교육 | 3,464 | 617 | 2,847 | 2,676 | 788 |
| 형 기 종 료 | 2,532 | 1,699 | 833 | 533 | 1,999 |
| 벌 금 대 체 | 10,032 | 1,478 | 8,554 | 8,631 | 1,401 |
| 이 수 명 령 | 5,571 | 1,023 | 4,548 | 4,564 | 1,007 |

## 다. 근거법률별 접수현황 〈표 3-30〉

| 구분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 94,949 | 115,132 | 131,236 | 161,877 | 132,429 | 121,188 | 116,860 | 112,878 | 121,517 | 134,364 |
| 형법 | 소계 | 55,262 | 65,243 | 71,059 | 68,592 | 61,021 | 56,395 | 56,437 | 57,485 | 60,190 | 63,746 |
| | 선고유예 | 19 | 15 | 12 | 10 | 7 | 15 | 17 | 13 | 9 | 22 |
| | 집행유예 | 49,189 | 59,689 | 65,394 | 62,218 | 54,984 | 50,911 | 51,677 | 52,803 | 55,992 | 59,568 |
| | 가석방 | 6,054 | 5,539 | 5,653 | 6,364 | 6,030 | 5,469 | 4,743 | 4,669 | 4,189 | 4,156 |
| 소년법 | 소계 | 19,831 | 24,987 | 31,433 | 41,295 | 39,858 | 41,253 | 41,440 | 34,932 | 27,765 | 26,517 |
| | 단기보호관찰 | 9,431 | 13,031 | 17,559 | 21,976 | 19,907 | 21,252 | 20,599 | 16,010 | 12,214 | 12,974 |
| | 장기보호관찰 | 10,237 | 11,524 | 11,669 | 12,930 | 12,916 | 12,948 | 13,018 | 13,692 | 10,956 | 9,570 |
| | 단독명령 | - | - | 1,260 | 5,233 | 5,858 | 5,964 | 6,400 | 3,910 | 3,238 | 2,889 |
| | 임시퇴원 | 163 | 432 | 945 | 1,156 | 1,177 | 1,089 | 1,423 | 1,320 | 1,357 | 1,084 |
| 사회보호법 | 소계 | 706 | 542 | 438 | 466 | 506 | 535 | 482 | 510 | 531 | 481 |
| | 가출소 | 406 | 169 | 61 | 34 | 39 | 45 | 22 | 61 | 61 | 40 |
| | 감호가석방 | 2 | - | - | - | - | - | - | - | - | - |
| | 가종료 | 298 | 373 | 377 | 432 | 467 | 490 | 460 | 449 | 470 | 441 |
| 성폭력특별법 | 소계 | 654 | 807 | 880 | 989 | 915 | 1,114 | 1,132 | 716 | 3,144 | 4,389 |
| | 선고유예 | - | - | - | 1 | - | - | - | 3 | 1 | 5 |
| | 집행유예 | 654 | 807 | 880 | 988 | 915 | 1,114 | 1,132 | 713 | 3,143 | 4,384 |
| 가정폭력특별법 | 소계 | 2,938 | 2,787 | 3,408 | 3,115 | 2,380 | 1,708 | 1,995 | 3,176 | 5,596 | 7,823 |
| | 보호처분 | 2,938 | 2,787 | 3,408 | 3,115 | 2,380 | 1,708 | 1,995 | 3,176 | 5,596 | 7,823 |
| 성매매처벌법 | 소계 | 630 | 846 | 1,132 | 1,303 | 1,090 | 572 | 646 | 760 | 910 | 1,619 |
| | 보호처분 | 414 | 472 | 674 | 665 | 531 | 215 | 273 | 335 | 239 | 390 |
| | 집행유예 | 216 | 374 | 458 | 638 | 559 | 357 | 373 | 425 | 671 | 1,229 |
| 선도위탁(기소유예) | 소계 | 2,386 | 2,793 | 3,453 | 3,770 | 4,885 | 5,002 | 5,090 | 5,899 | 7,859 | 11,425 |
| | 1급 | 94 | 56 | 65 | 123 | 124 | 277 | 130 | 199 | 106 | 190 |
| | 2급 | 2,292 | 2,737 | 3,388 | 3,647 | 4,761 | 4,725 | 4,960 | 5,700 | 7,753 | 4,096 |
| | 선도교육 | - | - | - | - | - | - | - | - | - | 7,139 |
| 성구매자교육 | 소계 | 12,542 | 17,127 | 19,433 | 37,679 | 13,413 | 8,366 | 4,807 | 3,058 | 2,658 | 2,847 |
| | 기소유예 | 12,542 | 17,127 | 19,433 | 37,679 | 13,413 | 8,366 | 4,807 | 3,058 | 2,658 | 2,847 |
| 형기종료 | 소계 | - | - | - | 1 | 226 | 468 | 311 | 996 | 971 | 833 |
| | 형기종료 | - | - | - | 1 | 226 | 468 | 311 | 996 | 971 | 833 |
| 벌금대체사회봉사 | 소계 | - | - | - | 4,667 | 7,971 | 4,856 | 3,465 | 4,059 | 6,718 | 8,554 |
| | 벌금대체 | - | - | - | 4,667 | 7,971 | 4,856 | 4,465 | 4,059 | 6,718 | 8,554 |
| 아동청소년법 | 소계 | - | - | - | - | 164 | 919 | 1,055 | 1,287 | 5,175 | 5,608 |
| | 벌금(이수명령) | - | - | - | - | 13 | 129 | 274 | 414 | 4,454 | 4,356 |
| | 집행유예 | - | - | - | - | 151 | 790 | 781 | 873 | 721 | 1,252 |
| 아동학대처벌법 | 소계 | - | - | - | - | - | - | - | - | - | 522 |
| | 벌금(이수명령) | - | - | - | - | - | - | - | - | - | 149 |
| | 보호처분 | - | - | - | - | - | - | - | - | - | 301 |
| | 집행유예 | - | - | - | - | - | - | - | - | - | 72 |

※ 접수사건 : 전년도 이월사건을 제외한 당해연도 순수접수건

## 라. 기관별 보호관찰 등 대상자 접수현황 〈표 3-31〉

| 기관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94,946 | 115,132 | 131,236 | 161,877 | 132,429 | 121,188 | 116,860 | 112,878 | 121,517 | 134,364 |
| 서울 | 6,311 | 7,130 | 7,503 | 10,790 | 8,300 | 6,223 | 5,766 | 5,924 | 7,052 | 7,875 |
| 서울동부 | 3,229 | 3,641 | 3,746 | 4,475 | 3,676 | 2,764 | 3,065 | 3,167 | 3,191 | 3,626 |
| 서울남부 | 3,866 | 3,820 | 4,553 | 6,691 | 5,247 | 4,292 | 4,169 | 4,099 | 4,298 | 4,758 |
| 의정부 | 3,568 | 4,473 | 5,236 | 5,014 | 5,252 | 4,554 | 4,962 | 4,527 | 4,338 | 4,670 |
| 인천 | 5,687 | 6,003 | 7,216 | 11,963 | 7,354 | 5,729 | 4,640 | 4,414 | 5,315 | 6,092 |
| 수원 | 5,704 | 5,934 | 7,846 | 6,598 | 5,251 | 4,391 | 5,421 | 5,799 | 5,966 | 6,687 |
| 춘천 | 920 | 1,062 | 1,183 | 1,110 | 1,280 | 1,383 | 1,642 | 1,353 | 1,335 | 1,340 |
| 대전 | 3,726 | 4,745 | 5,690 | 6,272 | 4,651 | 4,461 | 4,322 | 4,382 | 4,255 | 4,541 |
| 청주 | 2,510 | 3,794 | 2,962 | 3,610 | 2,842 | 2,736 | 2,200 | 2,151 | 2,348 | 2,631 |
| 대구 | 4,865 | 5,377 | 6,343 | 5,921 | 4,809 | 4,518 | 4,612 | 4,164 | 4,056 | 5,975 |
| 부산 | 3,745 | 5,040 | 5,942 | 7,246 | 7,501 | 6,063 | 5,144 | 4,866 | 5,370 | 5,413 |
| 울산 | 2,006 | 2,360 | 3,342 | 3,944 | 3,616 | 4,096 | 3,234 | 2,961 | 4,110 | 3,552 |
| 창원 | 2,990 | 5,781 | 4,949 | 5,553 | 3,709 | 4,076 | 4,043 | 3,333 | 3,963 | 3,818 |
| 광주 | 3,071 | 4,483 | 5,017 | 5,184 | 4,352 | 4,925 | 5,504 | 5,270 | 5,159 | 5,577 |
| 전주 | 2,380 | 2,581 | 3,092 | 2,159 | 2,282 | 2,487 | 2,141 | 1,747 | 2,041 | 2,104 |
| 제주 | 1,229 | 1,763 | 1,760 | 1,709 | 1,464 | 1,475 | 1,451 | 1,528 | 1,797 | 1,699 |
| 서울서부 | 2,558 | 3,267 | 2,985 | 4,446 | 3,432 | 2,593 | 2,491 | 2,276 | 2,662 | 2,988 |
| 서울북부 | 2,389 | 2,424 | 3,108 | 4,331 | 3,187 | 2,606 | 2,364 | 2,439 | 2,294 | 2,898 |
| 고양 | 1,903 | 2,424 | 3,176 | 4,250 | 2,961 | 2,926 | 2,816 | 2,810 | 2,942 | 4,070 |
| 부천 | 1,910 | 2,204 | 2,405 | 3,608 | 2,759 | 2,663 | 2,358 | 2,619 | 2,837 | 2,991 |
| 성남 | 2,294 | 3,510 | 3,267 | 3,544 | 3,515 | 2,572 | 2,877 | 2,899 | 3,302 | 3,344 |
| 여주 | - | 709 | 779 | 832 | 1,260 | 1,345 | 1,507 | 1,277 | 1,109 | 1,172 |
| 안산 | 4,871 | 3,661 | 6,034 | 8,244 | 4,655 | 4,453 | 3,652 | 4,375 | 4,253 | 5,301 |
| 평택 | 1,719 | 1,680 | 1,955 | 1,960 | 1,636 | 1,437 | 1,669 | 1,679 | 1,802 | 2,286 |
| 안양 | - | - | - | 3,319 | 2,263 | 2,227 | 2,028 | 1,653 | 1,828 | 2,156 |
| 강릉 | 1,079 | 1,284 | 1,310 | 1,148 | 959 | 1,056 | 811 | 887 | 1,259 | 1,192 |
| 원주 | 913 | 1,309 | 1,615 | 1,180 | 883 | 958 | 1,583 | 1,194 | 1,214 | 1,562 |
| 속초 | - | 377 | 671 | 590 | 576 | 437 | 437 | 548 | 548 | 474 |
| 영월 | - | - | - | 785 | 524 | 482 | 534 | 438 | 445 | 501 |
| 홍성 | 1,780 | 1,356 | 1,665 | 1,142 | 932 | 1,020 | 856 | 914 | 843 | 1,128 |
| 공주 | - | - | - | 723 | 421 | 454 | 431 | 376 | 421 | 429 |
| 논산 | - | 613 | 757 | 903 | 626 | 651 | 608 | 769 | 805 | 778 |
| 서산 | - | 745 | 688 | 1,245 | 963 | 916 | 813 | 914 | 1,191 | 1,205 |
| 천안 | 1,976 | 2,438 | 2,030 | 2,831 | 2,167 | 2,149 | 2,288 | 2,007 | 2,034 | 2,283 |
| 충주 | 943 | 1,407 | 1,432 | 1,423 | 908 | 1,244 | 912 | 1,042 | 904 | 1,048 |
| 제천 | - | - | - | 586 | 446 | 497 | 559 | 557 | 723 | 746 |
| 대구서부 | 3,477 | 2,207 | 2,697 | 3,816 | 3,179 | 2,862 | 2,568 | 2,422 | 2,389 | 3,147 |
| 안동 | 1,018 | 1,218 | 1,347 | 1,240 | 1,198 | 1,028 | 1,304 | 863 | 971 | 948 |
| 경주 | - | 583 | 523 | 605 | 587 | 573 | 521 | 556 | 703 | 685 |
| 포항 | 1,580 | 1,284 | 1,125 | 1,790 | 1,230 | 1,425 | 923 | 1,039 | 1,193 | 1,584 |
| 구미 | 1,238 | 1,304 | 2,076 | 2,211 | 1,673 | 1,462 | 1,555 | 1,545 | 1,611 | 1,533 |
| 상주 | - | - | - | 826 | 563 | 667 | 536 | 533 | 510 | 608 |
| 영덕 | - | - | - | 251 | 312 | 385 | 353 | 260 | 209 | 308 |
| 부산동부 | 1,772 | 1,757 | 2,431 | 3,372 | 4,183 | 3,080 | 2,943 | 2,524 | 2,870 | 2,918 |
| 진주 | 1,919 | 2,134 | 2,067 | 1,714 | 1,437 | 1,317 | 966 | 1,006 | 1,156 | 1,170 |
| 통영 | - | 1,008 | 1,280 | 1,767 | 1,724 | 1,549 | 1,615 | 1,294 | 1,513 | 1,499 |
| 밀양 | - | - | - | 474 | 343 | 362 | 335 | 418 | 421 | 482 |
| 거창 | - | - | - | 537 | 385 | 310 | 331 | 335 | 351 | 361 |
| 목포 | 1,065 | 1,364 | 1,765 | 1,754 | 1,408 | 1,218 | 1,567 | 1,560 | 1,603 | 1,755 |
| 순천 | 1,614 | 2,469 | 2,942 | 2,770 | 2,476 | 2,176 | 1,761 | 1,974 | 2,036 | 2,431 |
| 해남 | - | - | - | 772 | 596 | 627 | 683 | 654 | 738 | 783 |
| 군산 | 1,121 | 1,630 | 1,953 | 1,682 | 1,582 | 1,416 | 1,409 | 1,379 | 1,438 | 1,482 |
| 정읍 | - | 779 | 773 | 698 | 809 | 825 | 865 | 691 | 700 | 608 |
| 남원 | - | - | - | 269 | 431 | 410 | 407 | 351 | 320 | 335 |
| 인천서부 | - | - | - | - | 1,489 | 2,185 | 1,882 | 1,847 | 2,426 | 2,577 |
| 영동 | - | - | - | - | 165 | 452 | 426 | 269 | 349 | 240 |

## 마. 소년 · 성인별 실시사건 현황 〈표 3-32〉

| 구 분 |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총 계 | | | | 179,767 | 178,199 | 175,318 | 184,362 | 199,713 |
| 소년 | 계 | | | 70,549 | 71,760 | 65,815 | 57,064 | 51,978 |
| | 형 법 | 소 계 | | 1,723 | 1,417 | 1,119 | 1,053 | 823 |
| | | 선고유예 | | - | 1 | 1 | - | 1 |
| | | 집행유예 | 보호관찰부 | 1,628 | 1,308 | 1,014 | 976 | 764 |
| | | | 단독명령 | 51 | 57 | 59 | 49 | 37 |
| | | 가 석 방 | | 44 | 51 | 45 | 28 | 21 |
| | 소년법 | 소 계 | | 61,766 | 63,859 | 57,815 | 47,874 | 44,050 |
| | | 보호처분 | 단기보호관찰 | 31,100 | 31,821 | 26,331 | 20,502 | 19,952 |
| | | | 장기보호관찰 | 22,433 | 22,794 | 24,038 | 21,453 | 18,912 |
| | | | 단독명령 | 6,583 | 7,235 | 5,355 | 3,876 | 3,454 |
| | | 임시퇴원 | | 1,650 | 2,009 | 2,091 | 2,043 | 1,732 |
| | 성폭력법 | 소 계 | | 236 | 193 | 153 | 145 | 118 |
| | | 선고유예 | | - | - | - | 1 | 2 |
| | | 집행유예 | 보호관찰부 | 224 | 177 | 125 | 119 | 94 |
| | | | 단독명령 | 12 | 16 | 28 | 25 | 22 |
| | 가정폭력법 | 소 계 | | 3 | 10 | 13 | 28 | 31 |
| | | 보호처분 | 보호관찰부 | 3 | 8 | 9 | 21 | 24 |
| | | | 단독명령 | - | 2 | 4 | 7 | 7 |
| | 성매매법 | 소 계 | | 11 | 1 | 1 | 5 | 7 |
| | | 보호처분 | 보호관찰부 | 11 | 1 | - | 4 | 6 |
| | | | 단독명령 | - | - | 1 | 1 | 1 |
| | | 소 계 | | 3 | 4 | 2 | - | - |
| | | 집행유예 | 보호관찰부 | 3 | 4 | 2 | - | - |
| | | | 단독명령 | - | - | - | - | - |
| | 선도위탁 | 소 계 | | 6,694 | 6,172 | 6,585 | 7,774 | 6,714 |
| | | 기소유예 | | 6,694 | 6,172 | 6,585 | 7,774 | 6,714 |
| | 성구매자교육 | 소 계 | | 9 | 9 | 10 | 3 | 2 |
| | | 기소유예 | | 9 | 9 | 10 | 3 | 2 |
| | 벌금대체 | 소 계 | | 50 | 34 | 50 | 85 | 91 |
| | | 벌금대체 | | 50 | 34 | 50 | 85 | 91 |
| | 아동청소년법 | 소 계 | | 54 | 61 | 67 | 97 | 142 |
| | | 집행유예 | 보호관찰부 | 41 | 49 | 53 | 79 | 108 |
| | | | 단독명령 | 7 | 8 | 11 | 15 | 32 |
| | | 이수명령 | | 6 | 4 | 3 | 3 | 2 |
| | 아동학대처벌법 | 소 계 | | - | - | - | - | - |
| | | 보호처분 | 보호관찰부 | - | - | - | - | - |
| | | | 단독명령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집행유예 | 보호관찰부 | - | - | - | - | - |
| | | | 단독명령 | - | - | - | - | - |
| | | 이수명령 | | - | - | - | - | - |
| 성인 | 계 | | | 109,218 | 106,439 | 109,503 | 127,298 | 147,735 |
| | 형 법 | 소 계 | | 85,059 | 86,294 | 87,562 | 91,603 | 96,954 |

| 구 분 |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성인 | | 선고유예 | | 22 | 31 | 28 | 21 | 29 |
| | | 집행유예 | 보호관찰부 | 50,923 | 51,113 | 51,783 | 52,873 | 54,952 |
| | | | 단독명령 | 27,114 | 28,739 | 29,756 | 33,211 | 36,638 |
| | | 가 석 방 | | 7,000 | 6,411 | 5,995 | 5,498 | 5,335 |
| | 치료감호법 | 소 계 | | 1,179 | 1,156 | 1,145 | 1,179 | 1,147 |
| | | 가 출 소 | | 87 | 62 | 97 | 120 | 112 |
| | | 감호가석방 | | - | - | - | - | - |
| | | 가 종 료 | | 1,092 | 1,094 | 1,048 | 1,059 | 1,035 |
| | 성폭력법 | 소 계 | | 1,591 | 1,788 | 2,189 | 4,122 | 11,256 |
| | | 선고유예 | | - | - | 3 | 1 | 4 |
| | | 집행유예 | 보호관찰부 | 1,161 | 1,266 | 1,443 | 2,087 | 2,741 |
| | | | 단독명령 | 430 | 522 | 743 | 2,034 | 8,511 |
| | 가정폭력법 | 소 계 | | 2,409 | 2,579 | 3,902 | 7,155 | 9,662 |
| | | 보호처분 | 보호관찰부 | 2,008 | 2,071 | 3,010 | 4,985 | 7,735 |
| | | | 단독명령 | 401 | 508 | 892 | 2,170 | 1,927 |
| | 성매매법 | 소 계 | | 311 | 345 | 395 | 312 | 493 |
| | | 보호처분 | 보호관찰부 | 271 | 291 | 287 | 253 | 418 |
| | | | 단독명령 | 40 | 54 | 108 | 59 | 75 |
| | | 소 계 | | 683 | 668 | 728 | 993 | 1,657 |
| | | 집행유예 | 보호관찰부 | 515 | 537 | 566 | 727 | 1,189 |
| | | | 단독명령 | 168 | 131 | 162 | 266 | 468 |
| | 선도위탁 | 소 계 | | 1,244 | 1,344 | 1,649 | 2,679 | 8,055 |
| | | 기소유예 | | 1,244 | 1,344 | 1,649 | 2,679 | 8,055 |
| | 성구매자교육 | 소 계 | | 8,927 | 5,945 | 3,987 | 3,220 | 3,462 |
| | | 기소유예 | | 8,927 | 5,945 | 3,987 | 3,220 | 3,462 |
| | 형기종료 | 소 계 | | 597 | 708 | 1,573 | 2,228 | 2,532 |
| | | 형기종료 | | 597 | 708 | 1,573 | 2,228 | 2,532 |
| | 벌금대체 | 소 계 | | 6,291 | 4,248 | 4,618 | 7,680 | 9,941 |
| | | 벌금대체 | | 6,291 | 4,248 | 4,618 | 7,680 | 9,941 |
| | 아동청소년법 | 소 계 | | 927 | 1,364 | 1,755 | 6,127 | 2,049 |
| | | 집행유예 | 보호관찰부 | 381 | 576 | 690 | 809 | 859 |
| | | | 단독명령 | 324 | 419 | 554 | 719 | 872 |
| | | 이수명령 | | 222 | 369 | 511 | 4,599 | 318 |
| | | 소 계 | | - | - | - | - | 453 |
| | 아동학대처벌벌 | 보호처분 | 보호관찰부 | - | - | - | - | 392 |
| | | | 단독명령 | - | - | - | - | 61 |
| | | 소 계 | | - | - | - | - | 74 |
| | | 집행유예 | 보호관찰부 | - | - | - | - | 43 |
| | | | 단독명령 | - | - | - | - | 31 |
| | | 이수명령 | | - | - | - | - | - |

## 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실시사건 현황 <표 3-33>

| 구 분 |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총 계 | | | | 179,767 | 178,199 | 175,318 | 184,362 | 199,713 |
| 보호관찰 | 계 | | | 98,063 | 97,886 | 96,574 | 95,198 | 96,419 |
| | 형 법 | 소 계 | | 45,929 | 44,769 | 44,256 | 44,653 | 45,608 |
| | | 선고유예 | | 22 | 32 | 29 | 21 | 30 |
| | | 집행유예 | | 38,863 | 38,275 | 38,187 | 39,106 | 40,222 |
| | | 가 석 방 | | 7,044 | 6,462 | 6,040 | 5,526 | 5,356 |
| | 소년법 | 소 계 | | 39,044 | 40,140 | 38,689 | 33,639 | 31,090 |
| | | 보호처분 | 단기보호관찰 | 20,542 | 21,089 | 18,448 | 14,690 | 14,180 |
| | | | 장기보호관찰 | 16,852 | 17,042 | 18,150 | 16,906 | 15,178 |
| | | 임 시 퇴 원 | | 1,650 | 2,009 | 2,091 | 2,043 | 1,732 |
| | 치료감호법 | 소 계 | | 1,179 | 1,156 | 1,145 | 1,179 | 1,147 |
| | | 가 출 소 | | 87 | 62 | 97 | 120 | 112 |
| | | 감호가석방 | | - | - | - | - | - |
| | | 가 종 료 | | 1,092 | 1,094 | 1,048 | 1,059 | 1,035 |
| | 성폭력법 | 소 계 | | 1,008 | 997 | 1,058 | 1,362 | 1,733 |
| | | 선고유예 | | - | - | 3 | 2 | 6 |
| | | 집행유예 | | 1,008 | 997 | 1,055 | 1,360 | 1,727 |
| | 가정폭력법 | 소 계 | | 1,537 | 1,609 | 2,277 | 3,629 | 5,724 |
| | | 보호처분 | | 1,537 | 1,609 | 2,277 | 3,629 | 5,724 |
| | 성매매법 | 소 계 | | 624 | 627 | 636 | 702 | 1,082 |
| | | 보호처분 | | 201 | 205 | 183 | 171 | 278 |
| | | 집행유예 | | 423 | 422 | 453 | 531 | 804 |
| | 선도위탁 | 소 계 | | 7,938 | 7,516 | 6,457 | 7,253 | 6,587 |
| | | 기소유예 | | 7,938 | 7,516 | 6,457 | 7,253 | 6,587 |
| | 형기종료 | 소 계 | | 597 | 708 | 1,573 | 2,228 | 2,532 |
| | | 형기종료 | | 597 | 708 | 1,573 | 2,228 | 2,532 |
| | 아동청소년법 | 소 계 | | 207 | 364 | 483 | 553 | 613 |
| | | 집행유예 | | 207 | 364 | 483 | 553 | 613 |
| | 아동학대처벌법 | 소 계 | | - | - | - | - | 303 |
| | | 보호처분 | | - | - | - | - | 283 |
| | | 집행유예 | | - | - | - | - | 20 |
| 사회봉사명령 | 계 | | | 41,317 | 41,560 | 41,511 | 43,293 | 45,549 |
| | 형 법 | 소 계 | | 30,517 | 30,515 | 29,953 | 32,116 | 34,247 |
| | | 보호관찰부 | | 10,025 | 9,839 | 9,731 | 9,799 | 9,957 |
| | | 단독명령 | | 20,492 | 20,676 | 20,222 | 22,317 | 24,290 |
| | 소년법 | 소 계 | | 9,881 | 10,051 | 9,089 | 7,212 | 7,170 |
| | | 단기보호관찰 | | 4,270 | 4,063 | 3,340 | 2,733 | 2,997 |
| | | 장기보호관찰 | | 2,986 | 3,176 | 3,422 | 2,741 | 2,342 |
| | | 단독명령 | | 2,625 | 2,812 | 2,327 | 1,738 | 1,831 |
| | 성 폭력법 | 소 계 | | 258 | 285 | 315 | 583 | 885 |
| | | 보호관찰부 | | 126 | 149 | 146 | 226 | 271 |
| | | 단독명령 | | 132 | 136 | 169 | 357 | 614 |
| | 가정폭력법 | 소 계 | | 275 | 283 | 324 | 590 | 634 |
| | | 보호관찰부 | | 153 | 138 | 166 | 296 | 332 |
| | | 단독명령 | | 122 | 145 | 158 | 294 | 302 |
| | 성매매법 | 소 계 | | 261 | 274 | 280 | 411 | 772 |
| | | 보호관찰부 | | 100 | 132 | 127 | 169 | 338 |
| | | 단독명령 | | 161 | 142 | 153 | 242 | 434 |

| 구 분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 선도위탁 | 소 계 | - | - | 1,346 | 2,135 | 1,515 |
| | | 기소유예 | - | - | 1,346 | 2,135 | 1,515 |
| | 아동청소년법 | 소 계 | 125 | 152 | 204 | 246 | 292 |
| | | 보호관찰부 | 58 | 72 | 79 | 101 | 94 |
| | | 단독명령 | 67 | 80 | 125 | 145 | 198 |
| | 아동학대처벌법 | 소 계 | - | - | - | - | 34 |
| | | 보호관찰부 | - | - | - | - | 15 |
| | | 단독명령 | - | - | - | - | 19 |
| 수강명령 | 계 | | 24,882 | 28,144 | 28,054 | 30,281 | 33,513 |
| | 형 법 | 소 계 | 10,336 | 12,427 | 14,472 | 15,887 | 17,933 |
| | | 보호관찰부 | 3,663 | 4,307 | 4,879 | 4,944 | 5,537 |
| | | 단독명령 | 6,673 | 8,120 | 9,593 | 10,943 | 12,396 |
| | 소년법 | 소 계 | 12,841 | 13,668 | 10,037 | 7,023 | 5,790 |
| | | 단기보호관찰 | 6,288 | 6,669 | 4,543 | 3,079 | 2,775 |
| | | 장기보호관찰 | 2,595 | 2,576 | 2,466 | 1,806 | 1,392 |
| | | 단독명령 | 3,958 | 4,423 | 3,028 | 2,138 | 1,623 |
| | 성폭력법 | 소 계 | 561 | 699 | 969 | 2,322 | 3,496 |
| | | 보호관찰부 | 251 | 297 | 367 | 620 | 837 |
| | | 단독명령 | 310 | 402 | 602 | 1,702 | 2,659 |
| | 가정폭력법 | 소 계 | 600 | 697 | 1,314 | 2,964 | 3,335 |
| | | 보호관찰부 | 321 | 332 | 576 | 1,081 | 1,703 |
| | | 단독명령 | 279 | 365 | 738 | 1,883 | 1,632 |
| | 성매매법 | 소 계 | 123 | 117 | 210 | 197 | 303 |
| | | 보호관찰부 | 76 | 74 | 92 | 113 | 193 |
| | | 단독명령 | 47 | 43 | 118 | 84 | 110 |
| | 선도위탁 | 소 계 | - | - | 431 | 1,065 | 1,510 |
| | | 기소유예 | - | - | 431 | 1,065 | 1,510 |
| | 아동청소년법 | 소 계 | 421 | 536 | 621 | 823 | 956 |
| | | 보호관찰부 | 157 | 189 | 181 | 234 | 250 |
| | | 단독명령 | 264 | 347 | 440 | 589 | 706 |
| | 아동학대처벌법 | 소 계 | - | - | - | - | 190 |
| | | 보호관찰부 | - | - | - | - | 117 |
| | | 단독명령 | - | - | - | - | 73 |
| 성구매자교육 | 계 | | 8,936 | 5,954 | 3,997 | 3,223 | 3,464 |
| | 기 소 유 예 | | 8,936 | 5,954 | 3,997 | 3,223 | 3,464 |
| 벌금대체사회봉사 | 계 | | 6,341 | 4,282 | 4,668 | 7,765 | 10,032 |
| | 벌금대체사회봉사 | | 6,341 | 4,282 | 4,668 | 7,765 | 10,032 |
| 이수명령 | 계 | | 228 | 373 | 514 | 4,602 | 5,571 |
| | 이수명령 | | 228 | 373 | 514 | 4,602 | 5,571 |
| 선도교육 | 계 | | - | - | - | - | 5,165 |
| | 기 소 유 예 | | - | - | - | - | 5,165 |

### 사. 성적양호자에 대한 조치 현황 〈표 3-34〉

| 구분 / 연도 | 총 계 | 임시해제 | 부정기형종료 | 집행면제 | 가종료 집행종료 | 가정보호 처분종료 |
|---|---|---|---|---|---|---|
| 2011 | 1,823 | 1,818 | - | 1 | 1 | 3 |
| 2012 | 2,570 | 2,560 | - | - | - | 10 |
| 2013 | 2,324 | 2,315 | 1 | 3 | - | 5 |
| 2014 | 2,574 | 2,564 | - | 6 | - | 4 |
| 2015 | 5,343 | 5,320 | 1 | - | 7 | 15 |

### 아. 성적불량자에 대한 조치 현황 〈표 3-35〉

| 구분 / 연도 | 구인 | 긴급 구인 | 유치 | 제재조치 | | | | | | | |
|---|---|---|---|---|---|---|---|---|---|---|---|
| | | | | 경고 | 집행 유예 취소 | 보호 처분 변경 | 임시 퇴원 취소 | 가석방 취 소 | 기간 연장 | 보호 관찰 정지 | 가정 보호 등 취소 |
| 2011 | 2,562 | 62 | 2,471 | 33,400 | 536 | 1,903 | 145 | 47 | 86 | 133 | 34 |
| 2012 | 2,279 | 60 | 2,120 | 38,910 | 550 | 1,762 | 155 | 35 | 112 | 113 | 19 |
| 2013 | 2,431 | 67 | 2,287 | 46,981 | 635 | 1,960 | 149 | 26 | 80 | 107 | 22 |
| 2014 | 2,128 | 43 | 1,976 | 36,307 | 657 | 1,821 | 148 | 23 | 72 | 75 | 42 |
| 2015 | 1,980 | 40 | 1,800 | 35,514 | 744 | 1,812 | 126 | 11 | 79 | 71 | 128 |

### 자. 구인 · 유치대상자의 단계별 처리 현황 〈표 3-36〉

| 구분 / 연도 | 긴급구인 | 구인장 신청 | | | | 구인장 집행 | 구인율 | 구인장 반환 | 구인후 석방 | 유치허가신청 | | | 유치 | 취소 · 변경신청 | | | | |
|---|---|---|---|---|---|---|---|---|---|---|---|---|---|---|---|---|---|---|
| | | 검찰 | | 법원 | | | | | | 검찰 | 법원 | | | 검찰 | 법원 | | 심사위원회 | |
| | | 기각 | 청구 | 기각 | 인용 | | | | | 기각 | 기각 | 인용 | | 기각 | 기각 | 인용 | 기각 | 인용 |
| 2011 | 62 | 33 | 3,877 | 33 | 3,847 | 2,562 | 2.2 | 1,224 | 105 | 8 | 15 | 2,484 | 2,471 | 5 | 355 | 1,890 | 2 | 168 |
| 2012 | 60 | 34 | 3,556 | 19 | 3,534 | 2,279 | 1.9 | 1,245 | 174 | 8 | 11 | 2,124 | 2,124 | 1 | 329 | 1,585 | 5 | 166 |
| 2013 | 67 | 43 | 3,604 | 13 | 3,591 | 2,431 | 2.1 | 1,197 | 155 | 3 | 7 | 2,333 | 2,333 | 4 | 310 | 1,748 | 4 | 168 |
| 2014 | 43 | 16 | 3,161 | 14 | 3,147 | 2,128 | 2.0 | 1,036 | 135 | 5 | 3 | 1,925 | 1,925 | 8 | 298 | 1,526 | 3 | 154 |
| 2015 | 40 | 16 | 2,934 | 8 | 2,926 | 1,980 | 1.9 | 1,037 | 140 | 12 | 18 | 1,850 | 1,850 | 6 | 275 | 1,381 | 1 | 129 |

### 차. 사회봉사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표 3-37〉

| 구분 / 연도 | 개시 | 종료계 | 집 행 | | 이송 | 집행불능 |
|---|---|---|---|---|---|---|
| | | | 완전집행 | 부분집행 | | |
| 2011 | 41,317 | 35,528 | 33,009 | 546 | 1,335 | 638 |
| 2012 | 41,560 | 34,807 | 32,398 | 468 | 1,347 | 594 |
| 2013 | 41,511 | 35,220 | 32,607 | 592 | 1,372 | 649 |
| 2014 | 43,293 | 35,279 | 33,279 | 526 | 1,475 | 602 |
| 2015 | 45,549 | 38,554 | 35,677 | 562 | 1,625 | 690 |

※ 집행불능 : 형집행, 사망, 집행유예취소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시간 중 단 1시간도 집행하지 못하고 종료한 사건

### 카. 사회봉사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표 3-38〉

| 구분 / 연도 | 총 계 | | 형 법 | | 소년법 | | 성폭력법 | | 가정폭력법 | | 성매매법 | | 선도위탁 | | 아동청소년법 | | 아동학대처벌법 | |
|---|---|---|---|---|---|---|---|---|---|---|---|---|---|---|---|---|---|---|
|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 2011 | 41,317 | 36,071 | 30,517 | 26,452 | 9,881 | 8,815 | 258 | 230 | 275 | 229 | 261 | 231 | - | - | 125 | 114 | - | - |
| 2012 | 41,560 | 35,602 | 30,515 | 25,992 | 10,051 | 8,744 | 285 | 237 | 283 | 253 | 274 | 244 | - | - | 152 | 132 | - | - |
| 2013 | 41,511 | 34,794 | 29,953 | 25,041 | 9,089 | 7,511 | 315 | 252 | 324 | 298 | 280 | 245 | 1,346 | 1,260 | 204 | 177 | - | - |
| 2014 | 43,293 | 37,085 | 32,116 | 27,298 | 7,212 | 6,107 | 583 | 530 | 590 | 532 | 411 | 384 | 2,135 | 2,016 | 246 | 218 | - | - |
| 2015 | 45,549 | 38,153 | 34,247 | 28,420 | 7,170 | 6,128 | 885 | 775 | 634 | 548 | 772 | 690 | 1,515 | 1,304 | 292 | 255 | 34 | 33 |

※ 실시사건 = 전년이월사건 + 당해연도접수사건

### 타. 사회봉사명령 부과 형태 추이 〈표 3-39〉

| 구분 / 연도 | 총 계 | | | 소 년 | | | 성 인 | | |
|---|---|---|---|---|---|---|---|---|---|
| | 계 | 보호관찰부 | 단독명령부 | 소 계 | 보호관찰부 | 단독명령부 | 소 계 | 보호관찰부 | 단독명령부 |
| 2011 | 31,436 | 10,462 | 20,974 | 300 | 255 | 45 | 31,136 | 10,207 | 20,929 |
| 2012 | 41,560 | 17,569 | 23,991 | 10,347 | 7,482 | 2,865 | 31,213 | 10,087 | 21,126 |
| 2013 | 41,511 | 17,388 | 24,123 | 10,606 | 7,291 | 3,315 | 30,905 | 10,097 | 20,808 |
| 2014 | 43,293 | 16,468 | 26,825 | 9,442 | 6,017 | 3,425 | 33,851 | 10,451 | 23,400 |
| 2015 | 45,549 | 16,569 | 28,980 | 8,677 | 5,641 | 3,036 | 36,872 | 10,928 | 25,944 |

※ 실시사건 기준(선도위탁도 단독명령이 가능해 2013년부터 포함하여 산정)

### 파.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표 3-40〉

| 구분 / 연도 | 총 계 | 직접집행 | 협력집행(분야별 성격) | | | | | |
|---|---|---|---|---|---|---|---|---|
| | | | 소계 | 자연보호 | 복지분야 | 공공시설 | 대민지원 | 기타 |
| 2011 | 33,555 | 7,566 | 25,989 | 251 | 24,157 | 650 | 565 | 366 |
| 2012 | 32,866 | 8,102 | 24,764 | 47 | 22,909 | 813 | 700 | 295 |
| 2013 | 33,199 | 8,994 | 24,205 | 18 | 22,211 | 605 | 1,016 | 355 |
| 2014 | 33,805 | 9,131 | 24,674 | 24 | 22,519 | 505 | 1,247 | 379 |
| 2015 | 36,239 | 8,966 | 27,273 | 56 | 24,990 | 658 | 1,433 | 136 |

## 하. 수강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표 3-41〉

| 구분 / 연도 | 개시 | 종료계 | 집 행 | | 이송 | 집행불능 |
|---|---|---|---|---|---|---|
| | | | 완전집행 | 부분집행 | | |
| 2011 | 24,882 | 20,993 | 19,452 | 265 | 713 | 563 |
| 2012 | 28,144 | 23,054 | 21,367 | 230 | 789 | 668 |
| 2013 | 28,054 | 22,757 | 20,899 | 318 | 883 | 657 |
| 2014 | 30,281 | 24,309 | 22,493 | 249 | 958 | 609 |
| 2015 | 33,513 | 25,850 | 23,751 | 252 | 1,035 | 812 |

※ 집행불능 : 형집행, 사망, 집행유예취소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시간 중 단 1시간도 집행하지 못하고 종료한 사건

## 거. 수강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표 3-42〉

| 구분 / 연도 | 총 계 | | 형 법 | | 소년법 | | 성폭력법 | | 가정폭력법 | | 성매매법 | | 선도위탁 | | 아동 청소년법 | | 아동학대 처벌법 | |
|---|---|---|---|---|---|---|---|---|---|---|---|---|---|---|---|---|---|---|
|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실시 사건 | 접수 사건 |
| 2011 | 24,882 | 21,986 | 10,336 | 9,132 | 12,841 | 11,352 | 561 | 509 | 600 | 479 | 123 | 106 | - | - | 421 | 408 | - | - |
| 2012 | 28,144 | 24,265 | 12,427 | 10,977 | 13,668 | 11,588 | 699 | 559 | 697 | 626 | 117 | 99 | - | - | 536 | 416 | - | - |
| 2013 | 28,054 | 23,013 | 14,472 | 12,181 | 10,037 | 7,750 | 969 | 797 | 1,314 | 1,152 | 210 | 198 | 431 | 430 | 621 | 505 | - | - |
| 2014 | 30,281 | 24,879 | 15,887 | 13,203 | 7,023 | 5,491 | 2,322 | 2,006 | 2,964 | 2,460 | 197 | 150 | 1,065 | 906 | 823 | 663 | - | - |
| 2015 | 33,513 | 27,588 | 17,933 | 14,916 | 5,790 | 4,544 | 3,496 | 2,704 | 3,335 | 2,911 | 303 | 255 | 1,510 | 1,342 | 956 | 729 | 190 | 187 |

※ 실시사건 = 전년이월사건 + 당해연도접수사건

### 너. 수강명령 부과 형태 추이 〈표 3-43〉

| 구분 / 연도 | 총 계 | | | 소 년 | | | 성 인 | | |
|---|---|---|---|---|---|---|---|---|---|
| | 계 | 보 호 관찰부 | 단 독 명령부 | 소계 | 보 호 관찰부 | 단 독 명령부 | 소계 | 보 호 관찰부 | 단 독 명령부 |
| 2011 | 12,041 | 4,468 | 7,573 | 139 | 114 | 25 | 11,902 | 4,354 | 7,548 |
| 2012 | 28,144 | 14,444 | 13,700 | 13,792 | 9,339 | 4,453 | 14,352 | 5,105 | 9,247 |
| 2013 | 28,054 | 13,107 | 14,947 | 10,176 | 7,088 | 3,088 | 17,878 | 6,019 | 11,859 |
| 2014 | 30,281 | 11,913 | 18,368 | 7,297 | 4,991 | 2,306 | 22,984 | 6,922 | 16,062 |
| 2015 | 33,513 | 14,460 | 19,053 | 6,056 | 4,250 | 1,806 | 27,457 | 10,210 | 17,247 |

※ 실시사건 기준(선도위탁도 단독명령이 가능해 2013년부터 포함하여 산정)

### 더.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표 3-44〉

| 구분 / 연도 | 총 계 | 직접 집행 | 협 력 집 행 | | | | | | |
|---|---|---|---|---|---|---|---|---|---|
| | | | 소계 | 약물 | 준법운전 | 심리치료 | 가정폭력 | 성폭력 | 기타 |
| 2011 | 19,717 | 18,485 | 1,232 | 106 | 11 | 278 | 199 | 156 | 482 |
| 2012 | 21,597 | 20,364 | 1,233 | 66 | 22 | 152 | 185 | 175 | 633 |
| 2013 | 21,217 | 20,233 | 984 | 38 | 9 | 240 | 174 | 135 | 388 |
| 2014 | 22,742 | 21,446 | 1,296 | 37 | 4 | 103 | 218 | 137 | 797 |
| 2015 | 24,003 | 23,521 | 482 | 23 | 2 | 27 | 180 | 67 | 183 |

### 러.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 〈표 3-45〉

| 구분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환경조사 | 소 계 | 1,849 | 1,861 | 1,862 | 2,009 | 1,738 | 1,581 | 1,715 | 1,701 | 1,594 | 1,561 |
| | 소 년 원 | 1,584 | 1,614 | 1,477 | 1,668 | 1,454 | 1,380 | 1,500 | 1,555 | 1,395 | 1,432 |
| | 교 도 소 | 239 | 206 | 304 | 274 | 224 | 173 | 146 | 43 | 106 | 59 |
| | 감 호 소 | 26 | 41 | 61 | 67 | 60 | 28 | 69 | 103 | 93 | 70 |
| 환 경 개 선 | | - | - | - | - | 4 | 35 | 25 | - | - | - |

### 머. 조사 〈표 3-46〉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판 결 전 조 사 | 3,071 | 3,631 | 4,273 | 3,597 | 1,598 | 1,526 | 2,385 | 2,159 | 2,257 | 2,166 |
| 결 정 전 조 사 | 1,128 | 3,186 | 3,311 | 4,234 | 6,398 | 9,242 | 12,719 | 12,141 | 12,399 | 17,678 |
| 검사결정전조사 | - | - | 1,415 | 3,670 | 4,524 | 3,906 | 5,547 | 5,084 | 5,855 | 3,805 |
| 청 구 전 조 사 | - | - | 92 | 304 | 1,376 | 1,933 | 1,696 | 2,497 | 2,511 | 2,352 |
| 소급청구전조사 | - | - | - | - | 2,251 | 772 | 354 | 247 | 192 | 119 |

### 버.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현황 〈표 3-47〉

| 구분 / 연도 | 계 | | | | 소 년 | | | | 성 인 | | | |
|---|---|---|---|---|---|---|---|---|---|---|---|---|
| | 수배 의뢰 | 수배해제 | | | 수배 의뢰 | 수배해제 | | | 수배 의뢰 | 수배해제 | | |
| | | 계 | 검거 | 기타 | | 계 | 검거 | 기타 | | 계 | 검거 | 기타 |
| 2011 | 4,505 | 3,388 | 2,523 | 865 | 2,833 | 2,292 | 1,863 | 429 | 1,672 | 1,096 | 660 | 436 |
| 2012 | 4,174 | 3,085 | 2,228 | 857 | 2,636 | 2,095 | 1,680 | 415 | 1,538 | 990 | 548 | 442 |
| 2013 | 4,199 | 3,203 | 2,365 | 838 | 2,658 | 2,172 | 1,754 | 418 | 1,541 | 1,031 | 611 | 420 |
| 2014 | 3,835 | 2,821 | 2,083 | 738 | 2,110 | 1,721 | 1,429 | 292 | 1,725 | 1,100 | 654 | 446 |
| 2015 | 3,566 | 2,753 | 2,005 | 748 | 1,924 | 1,604 | 1,297 | 307 | 1,642 | 1,149 | 708 | 441 |

※ 수배해제 사유 중 기타는 기간만료, 사망 등의 사유가 포함됨.

### 서. 보호관찰 사안조사 〈표 3-48〉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건 수 | 9,754 | 8,892 | 8,629 | 9,393 | 8,705 | 6,766 | 6,144 | 6,658 | 6,297 | 6,252 |

### 어. 보호관찰 불요결정 〈표 3-49〉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접 수 | 8,586 | 8,053 | 8,396 | 8,257 | 8,093 | 7,068 | 6,502 | 6,150 | 5,503 | 5,716 |
| 필 요 | 5,665 | 5,068 | 5,233 | 5,459 | 5,493 | 4,779 | 4,246 | 4,174 | 3,734 | 3,816 |
| 불 요 | 2,921 | 2,985 | 3,163 | 2,798 | 2,600 | 2,288 | 2,256 | 1,976 | 1,769 | 1,900 |
| 허 가 | 2,921 | 2,985 | 3,163 | 2,798 | 2,600 | 2,288 | 2,256 | 1,976 | 1,769 | 1,900 |

## 4. 갱생보호

### 가. 갱생보호 실적 〈표 3-50〉

| 구분 | 총계 | 숙식 제공 | 직업 훈련 | 주거 지원 | 창업 지원 | 취업 알선 | 취업 지원 | 가족 희망 | 심리 상담 | 긴급 원호 | 사전 상담 | 사회성 향상 | 기타 자립 지원 | 사후 관리 |
|---|---|---|---|---|---|---|---|---|---|---|---|---|---|---|
| 인원 | 87,957 | 2,817 | 2,977 | 153 | 16 | 4,287 | 5,014 | 331 | 10,095 | 4,850 | 27,558 | 8,243 | 9,753 | 11,863 |

### 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실적 〈표 3-51〉

| 구분 | 총계 | 숙식 제공 | 직업 훈련 | 주거 지원 | 창업 지원 | 취업 알선 | 취업 지원 | 가족 희망 | 심리 상담 | 긴급 원호 | 사전 상담 | 사회성 향상 | 기타 자립 지원 | 사후 관리 |
|---|---|---|---|---|---|---|---|---|---|---|---|---|---|---|
| 인원 | 69,034 | 2,340 | 2,505 | 152 | 13 | 4,174 | 5,014 | 331 | 4,899 | 4,708 | 22,113 | 3,551 | 8,241 | 10,993 |

### 다.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실적 〈표 3-52〉

| 구분 | 총계 | 숙식 제공 | 직업 훈련 | 취업 알선 | 주거 지원 | 창업 지원 | 심리 상담 | 긴급 원호 | 사후 관리 | 사전 상담 | 사회성 향상 | 기 타 자 립 지 원 |
|---|---|---|---|---|---|---|---|---|---|---|---|---|
| 인원 | 18,923 | 477 | 472 | 113 | 1 | 3 | 5,196 | 142 | 870 | 5,445 | 4,692 | 1,512 |

## 5. 소년보호 및 분류심사

### 가. 보호소년 수용

○ 입·출원 인원 〈표 3-53〉

| 입·출원 | | 성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입원 | 계 | 남 | 2,511 | 2,407 | 2,415 | 3,257 | 3,491 | 3,848 | 4,314 | 3,863 | 3,223 | 2,884 |
| | | 여 | 312 | 375 | 461 | 641 | 984 | 706 | 665 | 572 | 484 | 504 |
| | 전년도 이월 | 남 | 1,200 | 1,081 | 999 | 920 | 2,404 | 1,217 | 1,202 | 1,197 | 1,175 | 945 |
| | | 여 | 98 | 135 | 145 | 203 | 103 | 224 | 195 | 201 | 169 | 155 |
| | 송치 | 남 | 1,288 | 1,274 | 1,386 | 2,249 | - | 2,534 | 2,995 | 2,548 | 1,933 | 1,858 |
| | | 여 | 211 | 240 | 305 | 398 | 439 | 426 | 435 | 341 | 295 | 321 |
| | 임시퇴원 취소 | 남 | 23 | 52 | 30 | 88 | 735 | 97 | 117 | 118 | 115 | 81 |
| | | 여 | 3 | - | 11 | 40 | 31 | 56 | 35 | 30 | 20 | 28 |
| | 이탈학생 재수용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출원 | 계 | 남 | 1,401 | 1,380 | 1,518 | 2,291 | 2,381 | 2,360 | 2,954 | 2,685 | 2,275 | 1,961 |
| | | 여 | 147 | 211 | 261 | 438 | 439 | 401 | 446 | 401 | 333 | 281 |
| | 퇴원 | 남 | 1,240 | 1,012 | 764 | 1,495 | 1,595 | 1,555 | 1,873 | 1,676 | 1,254 | 1,119 |
| | | 여 | 140 | 152 | 107 | 227 | 226 | 235 | 278 | 243 | 188 | 164 |
| | 임시퇴원 | 남 | 111 | 328 | 709 | 753 | 735 | 768 | 1,036 | 941 | 952 | 786 |
| | | 여 | 1 | 49 | 148 | 197 | 199 | 158 | 159 | 145 | 137 | 103 |
| | 처분변경·취소 | 남 | 45 | 35 | 34 | 35 | 31 | 25 | 29 | 48 | 46 | 43 |
| | | 여 | 6 | 9 | 7 | 12 | 13 | 8 | 9 | 12 | 8 | 13 |
| | 사망 | 남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1 | - | |
| | 이탈 | 남 | - | - | - | - | - | - | 1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남 | 5 | 5 | 11 | 8 | 20 | 12 | 15 | 20 | 23 | 13 |
| | | 여 | - | 1 | - | 2 | 1 | - | - | - | - | 1 |

주) 1. 송치 :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구,6호) 및 10호(구,7호) 인원)
2. 이탈 : 이탈 후 당해연도에 재수용 되지 않은 인원
3. 기타 : 보호처분 취소 등
4. 입원인원 중 "송치+임시퇴원 취소=신수용인원"

○ 1일 평균 수용인원 〈표 3-54〉

| 기관 \ 연도 \ 성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기관 | 성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남 | 1,118 | 1,064 | 982 | 972 | 962 | 계 | 남 | 1,063 | 1,188 | 1,207 | 1,056 | 921 |
| | 여 | 121 | 150 | 179 | 219 | 200 | | 여 | 201 | 202 | 173 | 181 | 192 |
| 서 울 | 남 | 186 | 220 | 194 | 222 | 208 | 서 울 | 남 | 254 | 270 | 295 | 270 | 236 |
| | 여 | - | - | - | - | - | | 여 | - | - | - | - | |
| 부 산 | 남 | 118 | 136 | 186 | 123 | 127 | 부 산 | 남 | 140 | 161 | 175 | 132 | 118 |
| | 여 | - | - | - | 1 | 1 | | 여 | - | 1 | 1 | 1 | 1 |
| 대 구 | 남 | 94 | 105 | 88 | 111 | 130 | 대 구 | 남 | 127 | 143 | 128 | 137 | 130 |
| | 여 | - | - | - | 1 | - | | 여 | - | - | - | - | |
| 광 주 | 남 | 135 | 166 | 139 | 110 | 99 | 광 주 | 남 | 142 | 165 | 161 | 129 | 94 |
| | 여 | - | - | - | - | - | | 여 | - | - | - | 1 | |
| 전 주 | 남 | 76 | 138 | 123 | 118 | 112 | 전 주 | 남 | 110 | 126 | 128 | 123 | 108 |
| | 여 | - | - | - | - | - | | 여 | - | - | - | - | |
| 대 덕 | 남 | 32 | 76 | 154 | 140 | 142 | 대 전 | 남 | 146 | 165 | 139 | 112 | 111 |
| | 여 | - | 4 | - | 9 | 9 | | 여 | 16 | 14 | 9 | 10 | 5 |
| 청 주 | 남 | 77 | 23 | - | - | - | 청 주 | 남 | - | - | - | - | |
| | 여 | - | - | - | 18 | 54 | | 여 | 48 | 60 | 54 | 46 | 45 |
| 안 양 | 남 | - | - | - | - | - | 안 양 | 남 | - | - | - | - | |
| | 여 | 111 | 144 | 179 | 201 | 136 | | 여 | 137 | 127 | 109 | 123 | 141 |
| 춘 천 | 남 | 104 | 95 | 69 | 99 | 106 | 춘 천 | 남 | 112 | 128 | 151 | 117 | 93 |
| | 여 | - | - | - | - | - | | 여 | - | - | - | - | |
| 제 주 | 남 | 32 | 41 | 29 | 38 | 39 | 제 주 | 남 | 32 | 30 | 30 | 36 | 31 |
| | 여 | - | - | - | - | - | | 여 | - | - | - | - | |
| 대 전 | 남 | 95 | 25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창 원 | 남 | 77 | 16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안 산 | 남 | 51 | 6 | | | | | | | | | | |
| | 여 | 5 | - | | | | | | | | | | |
| 대 전 의 료 | 남 | 41 | 19 | | | | | | | | | | |
| | 여 | 5 | 2 | | | | | | | | | | |

'07. 7. 23. 기관폐지

주)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기관별 신수용 인원 〈표 3-55〉

| 기관 \ 연도 / 성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기관 | 성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남 | 1,284 | 1,293 | 1,416 | 2,337 | 2,404 | 계 | 남 | 2,534 | 2,994 | 2,666 | 2,048 | 1,939 |
| | 여 | 184 | 218 | 316 | 438 | 418 | | 여 | 426 | 435 | 371 | 315 | 349 |
| 서 울 | 남 | 187 | 145 | 241 | 278 | 344 | 서 울 | 남 | 521 | 552 | 635 | 489 | 474 |
| | 여 | - | - | - | - | - | | 여 | - | - | - | - | |
| 부 산 | 남 | 80 | 169 | 227 | 287 | 381 | 부 산 | 남 | 322 | 337 | 351 | 267 | 281 |
| | 여 | - | - | 5 | 11 | 60 | | 여 | 31 | 46 | 44 | 44 | 44 |
| 대 구 | 남 | 205 | 261 | 153 | 212 | 174 | 대 구 | 남 | 138 | 129 | 88 | 110 | 143 |
| | 여 | - | - | 2 | 7 | 38 | | 여 | 25 | 16 | 21 | 15 | 25 |
| 광 주 | 남 | 139 | 102 | 108 | 94 | 79 | 광 주 | 남 | 97 | 116 | 146 | 154 | 122 |
| | 여 | - | - | 1 | 1 | 17 | | 여 | 27 | 19 | 40 | 28 | 36 |
| 전 주 | 남 | 157 | 181 | 115 | 81 | 48 | 전 주 | 남 | 69 | 109 | 69 | 16 | 5 |
| | 여 | 1 | 2 | 7 | 1 | 12 | | 여 | 22 | 15 | 3 | - | |
| 대 덕 | 남 | 4 | 154 | 440 | 1,228 | 1,285 | 대 전 | 남 | 1279 | 1,540 | 1,242 | 921 | 828 |
| | 여 | - | 8 | 6 | 12 | 21 | | 여 | 22 | 10 | 9 | 4 | 3 |
| 청 주 | 남 | 116 | 2 | - | - | - | 청 주 | 남 | - | - | - | - | |
| | 여 | 2 | 2 | - | 27 | 168 | | 여 | 181 | 228 | 137 | 106 | 110 |
| 안 양 | 남 | - | - | - | - | - | 안 양 | 남 | - | - | - | - | |
| | 여 | 176 | 206 | 295 | 379 | 90 | | 여 | 105 | 90 | 113 | 108 | 122 |
| 춘 천 | 남 | 224 | 222 | 112 | 130 | 54 | 춘 천 | 남 | 74 | 146 | 90 | 53 | 66 |
| | 여 | - | - | - | - | 4 | | 여 | 4 | 3 | - | 6 | 1 |
| 제 주 | 남 | 33 | 55 | 20 | 27 | 39 | 제 주 | 남 | 34 | 65 | 45 | 38 | 20 |
| | 여 | | | - | - | 8 | | 여 | 9 | 8 | 4 | 4 | 8 |
| 대 전 | 남 | 36 | - | '07. 7. 23. 기관폐지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창 원 | 남 | 52 | 2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안 산 | 남 | 12 | 12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대 전 의 료 | 남 | 39 | - | | | | | | | | | | |
| | 여 | 5 | - | | | | | | | | | | |

주)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수용기간별 인원 〈표 3-56〉

| 기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1,216 | 1,541 | 1,728 | 2,672 | 2,755 | 2,716 | 3,399 | 3,005 | 2,531 | 2,171 |
| 1월 미만 | - | - | 161 | 1,221 | 1,356 | 1,370 | 1,680 | 1,348 | 969 | 883 |
| 3월 미만 | - | 7 | 132 | 98 | 86 | 76 | 125 | 96 | 80 | 62 |
| 6월 미만 | 643 | 853 | 588 | 590 | 653 | 649 | 796 | 894 | 769 | 670 |
| 6월 이상 | 42 | 27 | 128 | 110 | 100 | 76 | 115 | 149 | 108 | 91 |
| 7월 이상 | 51 | 2 | 11 | 14 | 5 | 4 | 16 | 20 | 19 | 15 |
| 8월 이상 | 46 | - | 1 | 16 | 15 | 14 | 28 | 15 | 19 | 28 |
| 9월 이상 | 69 | 2 | 33 | 34 | 20 | 32 | 26 | 26 | 29 | 16 |
| 10월 이상 | 32 | 20 | 90 | 43 | 24 | 23 | 14 | 11 | 13 | 16 |
| 11월 이상 | 65 | 34 | 48 | 45 | 13 | 11 | 10 | 11 | 20 | 15 |
| 12월 이상 | 36 | 83 | 46 | 100 | 86 | 32 | 39 | 25 | 30 | 30 |
| 13월 이상 | 37 | 15 | 67 | 177 | 156 | 91 | 139 | 81 | 77 | 43 |
| 14월 이상 | 67 | 35 | 59 | 107 | 134 | 161 | 181 | 114 | 91 | 86 |
| 15월 이상 | 40 | 56 | 68 | 79 | 69 | 117 | 138 | 82 | 132 | 84 |
| 16월 이상 | 27 | 27 | 79 | 25 | 31 | 38 | 53 | 72 | 80 | 58 |
| 17월 이상 | 25 | 108 | 103 | 4 | 4 | 14 | 23 | 30 | 37 | 30 |
| 18월 이상 | 28 | 219 | 101 | 8 | 1 | 3 | 8 | 21 | 35 | 26 |
| 19월 이상 | 8 | 47 | 8 | - | - | 4 | 4 | 7 | 19 | 11 |
| 20월 이상 | - | 6 | 5 | 1 | 2 | 1 | 4 | 3 | 4 | 7 |
| 평균수용기간(월) | 9.10 | 9.12 | 7.9 | 5.71 | 4.61 | 4.66 | 4.66 | 4.9 | 5.18 | 4.8 |

※ 대상 : 퇴원 및 임시퇴원

## 나. 보호소년 분류처우

○ 처우과정 분류인원 〈표 3-57〉

| 기간 \ 연도 | | 2006 | 2007 | 관계법령 개정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 1,468 | 1,511 | 계 | | 1,732 | 2,775 | 2,822 | 2,960 | 3,429 | 3,037 | 2,363 | 2,288 |
| 6호(단기) | 소계 | 821 | 968 | 7호 | 소계 | 28 | 66 | 51 | 104 | 111 | 94 | 108 | 109 |
| | 교과 | 160 | 215 | | 기타 | 28 | 66 | 51 | 104 | 111 | 94 | 108 | 109 |
| | 직업 | 89 | 185 | | | | | | | | | | |
| | 특성화 | 435 | 452 | | | | | | | | | | |
| | 기타 | 137 | 120 | | | | | | | | | | |
| 7호(일반A) | 소계 | 140 | 193 | 8호 | 소계 | 294 | 1,268 | 1,334 | 1,328 | 1,680 | 1,296 | 925 | 802 |
| | 교과 | 51 | 45 | | 기타 | 294 | 1,268 | 1,334 | 1,328 | 1,680 | 1,296 | 925 | 802 |
| | 직업 | 49 | 127 | | | | | | | | | | |
| | 특성화 | 23 | 13 | | | | | | | | | | |
| | 기타 | 17 | 8 | | | | | | | | | | |
| 7호(일반B) | 소계 | 95 | 161 | 9호 | 소계 | 657 | 793 | 782 | 780 | 975 | 960 | 768 | 766 |
| | 교과 | 38 | 53 | | 교과 | 131 | 80 | 54 | 57 | 132 | 111 | 125 | 168 |
| | 직업 | 26 | 81 | | 직업 | 68 | 62 | - | - | - | 77 | 70 | 102 |
| | 특성화 | 22 | 17 | | 특성화 | 154 | 53 | 189 | 178 | 244 | 188 | 134 | 178 |
| | 기타 | 9 | 10 | | 기타 | 304 | 598 | 539 | 545 | 599 | 584 | 439 | 318 |
| 7호(일반C) | 소계 | 411 | 189 | 10호 | 소계 | 753 | 647 | 655 | 748 | 663 | 687 | 562 | 611 |
| | 교과 | 105 | 67 | | 교과 | 95 | 110 | 118 | 227 | 174 | 196 | 118 | 53 |
| | 직업 | 152 | 98 | | 직업 | 366 | 328 | 297 | 244 | 295 | 279 | 294 | 408 |
| | 특성화 | 80 | 10 | | 특성화 | 177 | 57 | 47 | 62 | 50 | 36 | 27 | 13 |
| | 기타 | 74 | 14 | | 기타 | 115 | 152 | 193 | 215 | 144 | 176 | 123 | 137 |
| 미분류 | | 1 | - | | | | | | | | | | |

※ 대상 : 신수용인원

## 다. 보호소년 교육

○ 교과교육 수료인원 〈표 3-58〉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586 | 433 | 414 | 384 | 286 | 287 | 389 | 228 | 139 | 135 |
| 초등학교 | - | - | - | - | - | - | - | - | - | |
| 중 학 교 | 328 | 241 | 263 | 266 | 206 | 198 | 210 | 101 | 49 | 32 |
| 고등학교 | 258 | 192 | 151 | 118 | 80 | 89 | 179 | 127 | 90 | 103 |

○ 검정고시 합격인원 〈표 3-59〉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525 | 536 | 478 | 425 | 394 | 497 | 688 | 619 | 670 | 600 |
| 중입자격 | 7 | 7 | 7 | 2 | 4 | 5 | 3 | 4 | 3 | 1 |
| 고입자격 | 269 | 258 | 246 | 207 | 228 | 254 | 283 | 246 | 224 | 190 |
| 고졸학력 | 249 | 271 | 225 | 216 | 162 | 238 | 402 | 369 | 443 | 409 |

○ 직업훈련 수료인원 〈표 3-60〉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346 | 414 | 472 | 449 | 386 | 374 | 523 | 472 | 497 | 500 |
| 양성훈련 | 164 | 199 | 305 | 189 | 199 | 260 | 336 | 405 | 459 | 455 |
| 향상훈련 | 182 | 215 | 167 | 260 | 187 | 114 | 187 | 67 | 38 | 45 |

○ 기능자격 취득 인원 〈표 3-61〉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2,794 | 2,377 | 2,950 | 2,685 | 2,644 | 2,980 | 3,125 | 2,687 | 3,301 | 3,106 |
| 일 반 기 능 | 496 | 501 | 600 | 584 | 634 | 670 | 900 | 774 | 947 | 992 |
| 컴퓨터관련 | 1,328 | 1,297 | 1,478 | 1,389 | 1,387 | 1,642 | 1,581 | 1,292 | 1,590 | 1,288 |
| 외국어관련 | 182 | 172 | 222 | 74 | 45 | 41 | 48 | - | - | |
| 기 타 | 378 | 407 | 650 | 627 | 578 | 627 | 596 | 621 | 764 | 826 |

## 라. 위탁소년 수용 · 분류심사

○ 입 · 출원 인원 〈표 3-62〉

| 구분 | | 성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입원 | 계 | 남 | 4,182 | 4,684 | 4,807 | 5,343 | 5,486 | 5,691 | 5,746 | 5,888 | 5,230 | 5,508 |
| | | 여 | 675 | 838 | 1,113 | 1,220 | 1,277 | 1,445 | 1,307 | 1,228 | 1,095 | 1,104 |
| | 이월인원 | 남 | 221 | 241 | 248 | 388 | 387 | 366 | 392 | 336 | 341 | 364 |
| | | 여 | 24 | 36 | 52 | 110 | 81 | 88 | 77 | 69 | 75 | 68 |
| | 신수용인원 | 남 | 3,961 | 4,443 | 4,558 | 4,955 | 5,099 | 5,325 | 5,354 | 5,552 | 4,889 | 5,144 |
| | | 여 | 651 | 802 | 1,062 | 1,110 | 1,196 | 1,357 | 1,230 | 1,159 | 1,020 | 1,036 |
| | 이탈자재수용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출원 | 계 | 남 | 3,941 | 4,293 | 4,015 | 4,975 | 5,309 | 5,359 | 5,351 | 5,547 | 4,866 | 5,159 |
| | | 여 | 639 | 740 | 1,034 | 1,138 | 1,255 | 1,348 | 1,240 | 1,153 | 1,027 | 1,030 |
| | 보호자위탁 | 남 | 79 | 85 | 24 | 15 | 22 | 13 | 14 | 8 | 10 | 29 |
| | | 여 | 49 | 15 | 4 | 11 | 15 | 8 | 6 | 9 | 4 | 8 |
| | 보호시설위탁 | 남 | 252 | 273 | 367 | 450 | 460 | 435 | 440 | 492 | 429 | 474 |
| | | 여 | 34 | 33 | 30 | 97 | 145 | 195 | 189 | 197 | 181 | 163 |
| | 소년원송치 | 남 | 1,187 | 1,135 | 949 | 1,882 | 1,797 | 2,049 | 2,243 | 2,090 | 1,684 | 1,709 |
| | | 여 | 165 | 201 | 228 | 388 | 340 | 321 | 312 | 301 | 270 | 319 |
| | 보호관찰부보호자위탁 | 남 | 1,872 | 2,283 | 2,272 | 2,354 | 2,321 | 2,483 | 2,262 | 2,603 | 2,318 | 2,472 |
| | | 여 | 289 | 430 | 627 | 585 | 592 | 697 | 599 | 555 | 494 | 418 |
| | 위탁변경 | 남 | 218 | 265 | 247 | 135 | 130 | 107 | 111 | 112 | 114 | 112 |
| | | 여 | 14 | 35 | 67 | 25 | 12 | 24 | 40 | 26 | 25 | 21 |
| | 심리불개시 | 남 | - | 1 | 3 | 1 | - | - | 1 | - | - | |
| | | 여 | - | - | - | - | 1 | - | - | - | - | |
| | 불처분 | 남 | 26 | 20 | 22 | 12 | 20 | 5 | 15 | 16 | 10 | 9 |
| | | 여 | 2 | 3 | 6 | 2 | 2 | - | - | 2 | 2 | 2 |
| | 이탈 | 남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남 | 307 | 231 | 131 | 126 | 192 | 267 | 265 | 226 | 301 | 354 |
| | | 여 | 86 | 23 | 72 | 30 | 78 | 103 | 94 | 63 | 51 | 99 |
| 연말현재인원 | | 남 | 241 | 248 | 292 | 272 | 371 | 337 | 336 | 341 | 364 | 348 |
| | | 여 | 36 | 52 | 80 | 52 | 70 | 79 | 69 | 75 | 68 | 73 |

○ 1일 평균 수용인원 〈표 3-63〉

| 기관 \ 연도 / 성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기 관 | 성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남 | 233 | 244 | 278 | 399 | 342 | 계 | 남 | 367 | 379 | 391 | 391 | 364 |
| | 여 | 36 | 45 | 63 | 72 | 77 | | 여 | 89 | 85 | 80 | 80 | 72 |
| 부 산 (부산심) | 남 | 34 | 38 | 55 | 54 | 63 | 부 산 (부산심) | 남 | 83 | 78 | 74 | 73 | 78 |
| | 여 | 6 | 6 | 9 | 10 | 12 | | 여 | 17 | 17 | 11 | 11 | 16 |
| 대 구 (대구심) | 남 | 23 | 19 | 23 | 29 | 27 | 대 구 (대구심) | 남 | 27 | 25 | 28 | 28 | 28 |
| | 여 | 3 | 2 | 3 | 7 | 8 | | 여 | 7 | 5 | 7 | 7 | 5 |
| 광 주 (광주심) | 남 | 21 | 26 | 23 | 32 | 40 | 광 주 (광주심) | 남 | 34 | 35 | 41 | 41 | 37 |
| | 여 | 4 | 4 | 4 | 6 | 9 | | 여 | 8 | 8 | 8 | 8 | 8 |
| 전 주 | 남 | 14 | 12 | 11 | 9 | 15 | 전 주 | 남 | 14 | 11 | 7 | 7 | - |
| | 여 | 3 | 3 | 2 | 3 | 4 | | 여 | 4 | 2 | 2 | 2 | - |
| 대 덕 (대전의료) | 남 | 15 | 23 | 30 | 39 | 36 | 대 전 (대전의료) | 남 | 28 | 20 | 24 | 24 | 26 |
| | 여 | 2 | 4 | 8 | 8 | 6 | | 여 | 6 | 4 | 5 | 5 | 5 |
| 청 주 | 남 | 14 | 7 | - | - | - | 청 주 | 남 | - | - | - | - | - |
| | 여 | 2 | 2 | - | - | - | | 여 | - | - | - | - | - |
| 춘 천 | 남 | 10 | 4 | 5 | 6 | 10 | 춘 천 | 남 | 12 | 14 | 11 | 12 | 9 |
| | 여 | 1 | 1 | 1 | 2 | 4 | | 여 | 4 | 4 | 2 | 2 | 1 |
| 제 주 | 남 | 1 | 3 | 2 | 2 | 2 | 제 주 | 남 | 1 | 1 | 3 | 3 | 3 |
| | 여 | - | - | 1 | - | 1 | | 여 | - | - | 1 | 1 | 1 |
| 서울심 | 남 | 94 | 108 | 129 | 156 | 148 | 서울심 | 남 | 168 | 195 | 203 | 203 | 183 |
| | 여 | 15 | 23 | 33 | 36 | 33 | | 여 | 43 | 45 | 44 | 44 | 36 |
| 창 원 | 남 | 14 | 7 | 4 | '07. 7. 23. 기관폐지 | | | | | | | | |
| | 여 | 2 | - | - | | | | | | | | | |

※ 2007. 7. 23. 기관통폐합에 따라 ( )의 심사원기능은 소년원에서 수행
※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2014. 1. 9. 전주소년원 위탁(유치) 업무 광주소년원 이전

○ 기관별 위탁 인원 〈표 3-64〉

| 기관 \ 연도 / 성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기 관 | 성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남 | 3,961 | 4,470 | 4,559 | 4,955 | 5,099 | 계 | 남 | 5,325 | 5,352 | 5,552 | 4,889 | 5,144 |
| | 여 | 651 | 805 | 1,061 | 1,110 | 1,196 | | 여 | 1,357 | 1,230 | 1,159 | 1,020 | 1,036 |
| 부 산 (부산심) | 남 | 754 | 824 | 1,018 | 861 | 966 | 부 산 (부산심) | 남 | 1,257 | 1,208 | 1,074 | 1,059 | 1,055 |
| | 여 | 130 | 112 | 183 | 160 | 207 | | 여 | 271 | 250 | 167 | 195 | 213 |
| 대 구 (대구심) | 남 | 323 | 295 | 280 | 344 | 363 | 대 구 (대구심) | 남 | 342 | 327 | 336 | 367 | 368 |
| | 여 | 40 | 35 | 56 | 96 | 113 | | 여 | 103 | 66 | 89 | 71 | 68 |
| 광 주 (광주심) | 남 | 422 | 633 | 393 | 488 | 559 | 광 주 (광주심) | 남 | 426 | 422 | 495 | 403 | 463 |
| | 여 | 71 | 92 | 79 | 94 | 124 | | 여 | 110 | 99 | 105 | 97 | 110 |
| 전 주 | 남 | 181 | 170 | 167 | 133 | 170 | 전 주 | 남 | 181 | 144 | 111 | 1 | - |
| | 여 | 40 | 49 | 45 | 41 | 49 | | 여 | 50 | 32 | 28 | 1 | - |
| 대 덕 (대전의료) | 남 | 299 | 508 | 540 | 671 | 620 | 대 전 (대전의료) | 남 | 454 | 299 | 355 | 305 | 387 |
| | 여 | 45 | 80 | 142 | 126 | 114 | | 여 | 101 | 56 | 75 | 57 | 81 |
| 청 주 | 남 | 187 | 102 | - | - | | 청 주 | 남 | - | - | - | - | |
| | 여 | 34 | 29 | - | - | | | 여 | - | - | - | - | |
| 춘 천 | 남 | 109 | 68 | 80 | 114 | 135 | 춘 천 | 남 | 176 | 207 | 161 | 176 | 139 |
| | 여 | 15 | 12 | 12 | 35 | 54 | | 여 | 61 | 54 | 33 | 31 | 18 |
| 제 주 | 남 | 40 | 65 | 32 | 36 | 50 | 제 주 | 남 | 22 | 30 | 38 | 44 | 44 |
| | 여 | 11 | 17 | 18 | 5 | 16 | | 여 | 15 | 8 | 14 | 21 | 16 |
| 서울심 | 남 | 1,515 | 1,734 | 2,049 | 2,307 | 2,236 | 서울심 | 남 | 2,467 | 2,715 | 2,982 | 2,534 | 2,686 |
| | 여 | 259 | 369 | 526 | 553 | 519 | | 여 | 646 | 665 | 648 | 547 | 530 |
| 창 원 | 남 | 213 | 131 | 71 | '07. 7. 23. 기관폐지 | | | | | | | | |
| | 여 | 20 | 6 | 10 | | | | | | | | | |

※ 2007. 7. 23. 기관통폐합에 따라 ( )의 심사원기능은 소년원에서 수행
※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2014. 1. 9. 전주소년원 위탁(유치) 업무 광주소년원 이전

○ 위탁기간별 인원 〈표 3-65〉

| 기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총출원인원 | 4,580 | 5,253 | 5,549 | 6,113 | 6,164 | 6,707 | 6,589 | 6,700 | 5,893 | 6,187 |
| 계 | 3,927 (653) | 4,464 | 5,155 | 6,113 | 6,164 | 6,707 | 6,589 | 6,700 | 5,893 | 6,187 |
| 10일 미만 | 85 | 205 | 89 | 137 | 164 | 159 | 158 | 124 | 154 | 166 |
| 10~20일 | 1,534 | 1,904 | 1,915 | 1,651 | 1,491 | 1,182 | 1,053 | 949 | 754 | 950 |
| 21~30일 | 1,629 | 1,672 | 2,297 | 3,424 | 3,578 | 4,367 | 4,200 | 4,392 | 3,874 | 3,850 |
| 31~40일 | 518 | 498 | 689 | 727 | 784 | 851 | 916 | 1,026 | 877 | 1,014 |
| 41~50일 | 85 | 119 | 139 | 154 | 113 | 128 | 198 | 145 | 191 | 160 |
| 51~60일 | 76 | 66 | 26 | 20 | 34 | 20 | 64 | 64 | 43 | 47 |

※ ( )는 위탁변경, 불처분, 심리불개시 등 인원

○ 비행원인진단 실시인원 〈표 3-66〉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7,140 | 9,300 | 11,729 | 11,028 | 11,421 | 11,429 | 10,590 | 10,739 | 9,804 | 9,923 |
| 분류심사 | 3,839 | 4,640 | 5,198 | 5,627 | 5,723 | 6,007 | 5,435 | 6,357 | 5,543 | 5,804 |
| 상담조사 | 3,135 | 4,437 | 5,952 | 5,106 | 5,301 | 5,296 | 5,148 | 4,382 | 4,261 | 4,119 |
| 검사결정전조사 | 166 | 223 | 579 | 295 | 397 | 126 | 7 | - | - | - |

○ 비행예방프로그램 실시인원 〈표 3-67〉

| 구분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 5,686 | 8,487 | 15,402 | 18,069 | 25,926 | 38,853 | 47,668 | 40,636 | 42,842 | 56,648 |
| 대안교육 | 소 계 | 1,710 | 3,974 | 6,410 | 7,348 | 12,862 | 23,382 | 30,122 | 23,013 | 23,630 | 36,638 |
| | 일반학생 | 1,339 | 3,271 | 4,683 | 5,629 | 11,396 | 21,280 | 26,814 | 19,739 | 18,359 | 31,298 |
| | 기·선유예 | 371 | 703 | 1,516 | 1,425 | 1,124 | 1,191 | 2,034 | 2,767 | 4,993 | 5,123 |
| | 보호처분 | - | - | 211 | 294 | 342 | 911 | 1,274 | 507 | 278 | 217 |
| 청소년적성검사 | | 3,976 | 4,513 | 5,481 | 5,256 | 6,438 | 7,973 | 9,445 | 9,377 | 10,020 | 11,046 |
| 보호자교육 | | - | - | 3,511 | 5,465 | 6,626 | 7,498 | 8,101 | 8,246 | 9,192 | 8,964 |

○ 법원 보호처분결정별 인원 〈표 3-68〉

| 판정 \ 연도 | 2006 | 2007 | 판정 ('07. 12. 21. 개정)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3,877 | 4,487 | 계 | 4,934 | 6,113 | 6,164 | 6,707 | 6,591 | 6,700 | 5,893 | 6,189 |
| 1호 | 140 | 100 | 1호 | 111 | 26 | 37 | 21 | 20 | 17 | 14 | 37 |
| | | | 2호 | 11 | 19 | 39 | 54 | 47 | 59 | 31 | 42 |
| | | | 3호 | 23 | 24 | 34 | 50 | 35 | 65 | 69 | 55 |
| 2호 | 398 | 567 | 4호 | 610 | 1,035 | 1,214 | 1,287 | 1,088 | 1,132 | 1,153 | 1,464 |
| 3호 | 1,678 | 2,146 | 5호 | 2,146 | 1,919 | 1,663 | 1,893 | 1,773 | 2,026 | 1,659 | 1,426 |
| 4호 | 235 | 306 | 6호 | 340 | 547 | 605 | 643 | 650 | 689 | 610 | 637 |
| 5호 | 2 | 9 | 7호 | 18 | 50 | 50 | 79 | 87 | 69 | 88 | 74 |
| | | | 8호(1개월) | 374 | 876 | 941 | 1,035 | 1,164 | 860 | 682 | 672 |
| 6호(단기) | 587 | 776 | 9호(단기) | 619 | 669 | 621 | 618 | 754 | 837 | 684 | 714 |
| 7호(장기) | 526 | 560 | 10호(장기) | 385 | 537 | 525 | 638 | 627 | 622 | 501 | 568 |
| 기 타 | 311 | 23 | 기타 | 28 | 411 | 435 | 389 | 346 | 324 | 402 | 500 |

주) 소년법 개정(2007. 12. 21. 2008. 6. 22. 시행)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2호처분 : 수강명령
3호처분 : 사회봉사명령
4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처분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호처분 : 병원,요양소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처분 : 1개월이내 소년원 송치
9호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기 타 : 불처분

# 제 4 절 인권업무 통계

○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실적 〈표 4-1〉

| 구분 / 연도 | 민·가사 법률구조(건) | | | 형사구조(건) | 법률상담(건) |
|---|---|---|---|---|---|
| | 계 | 소송전구조 | 소송구조 | | |
| 2006 | 75,976 | 377 | 75,599 | 17,304 | 1,035,714 |
| 2007 | 77,653 | 271 | 77,382 | 22,494 | 1,085,712 |
| 2008 | 99,043 | 190 | 98,853 | 25,952 | 1,194,603 |
| 2009 | 108,654 | 120 | 108,534 | 24,619 | 1,260,401 |
| 2010 | 113,092 | 115 | 112,977 | 19,579 | 1,281,792 |
| 2011 | 122,057 | 133 | 121,924 | 13,888 | 1,242,783 |
| 2012 | 126,898 | 123 | 126,775 | 13,612 | 1,409,916 |
| 2013 | 136,747 | 116 | 136,631 | 16,257 | 1,482,762 |
| 2014 | 143,853 | 98 | 143,755 | 21,546 | 1,505,699 |
| 2015 | 148,161 | 112 | 148,049 | 21,759 | 1,486,795 |

○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실적 〈표 4-2〉

(단위 : 건)

| 구분 / 연도 | 총 계 | 상담 | 경제·의료 지원 | 신변보호 | 기 타 |
|---|---|---|---|---|---|
| 2011 | 39,268 | 26,414 | 8,692 | 555 | 3,607 |
| 2012 | 43,467 | 29,169 | 9,461 | 1,193 | 3,644 |
| 2013 | 50,468 | 35,473 | 10,140 | 1,641 | 3,214 |
| 2014 | 61,913 | 42,235 | 11,867 | 1,082 | 6,729 |
| 2015 | 60,768 | 42,108 | 11,773 | 512 | 6,375 |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표 4-3〉

(단위 : 천원, 명)

| 구분 \ 예산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예산액 | 1,937,000 | 2,109,000 | 1,878,000 | 2,246,220 | 3,268,220 | 9,305,000 | 9,584,000 | 7,929,000 | 7,728,000 | 9,773,000 |
| 보상인원 | 117 | 169 | 155 | 205 | 209 | 287 | 291 | 312 | 331 | 382 |
| 지급금액 | 1,063,000 | 1,607,000 | 1,411,000 | 2,204,833 | 3,416,782 | 5,410,033 | 6,250,686 | 7,912,273 | 7,070,624 | 9,770,720 |

○ 인권침해사건 접수현황 〈표 4-4〉

| 연도 \ 구분 | 합 계 | 수 사 | 교 정 | 출입국 | 범죄예방 | 기타 |
|---|---|---|---|---|---|---|
| 2011 | 1,080 | 47 | 738 | 62 | 84 | 149 |
| 2012 | 1,374 | 45 | 932 | 66 | 169 | 162 |
| 2013 | 1,509 | 63 | 1,115 | 87 | 85 | 159 |
| 2014 | 1,755 | 54 | 1,369 | 56 | 147 | 129 |
| 2015 | 1,809 | 26 | 1,545 | 30 | 125 | 83 |

○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 〈표 4-5〉

| 연도 \ 구분 | 합 계 | 각 하 | 이 첩 | 기 각 | 인용·구제 (인용·구제율) | 조사중지 |
|---|---|---|---|---|---|---|
| 2011 | 1,080 | 608 | 282 | 99 | 82(7.6%) | - |
| 2012 | 1,374 | 743 | 391 | 139 | 81(5.9%) | 1 |
| 2013 | 1,509 | 609 | 644 | 179 | 81(5.4%) | 1 |
| 2014 | 1,755 | 949 | 495 | 228 | 83(4.7%) | 0 |
| 2015 | 1,807 | 939 | 544 | 240 | 84(4.6%) | 0 |

※ 2015. 12. 31. 기준 미제 2건

# 제 5 절 교정업무 통계

## 1. 수용자 수용 현황

### 가. 수용현황

○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표 5-1〉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수용정원 | | | 47,390 | 43,100 | 43,100 | 44,430 | 45,930 | 45,690 | 45,690 | 45,690 | 46,430 | 46,600 |
| 1일평균수용인원 | | | 46,721 | 46,313 | 46,684 | 49,467 | 47,471 | 45,845 | 45,488 | 47,924 | 50,128 | 53,892 |
| 수용내용 | 기결구금자 | 소 계 | 31,905 | 31,086 | 32,316 | 33,179 | 32,652 | 31,644 | 31,302 | 32,278 | 32,751 | 34,625 |
| | | 수형자 | 29,923 | 29,289 | 30,280 | 30,749 | 30,607 | 29,820 | 29,448 | 30,181 | 30,727 | 32,649 |
| | | 노역수 | 1,982 | 1,797 | 2,036 | 2,430 | 2,045 | 1,824 | 1,854 | 2,097 | 2,024 | 1,976 |
| | 미결구금자 | 소 계 | 14,816 | 15,227 | 14,368 | 16,288 | 14,819 | 14,201 | 14,186 | 15,646 | 17,377 | 19,267 |
| | | 피의자 | 1,114 | 996 | 937 | 1,008 | 786 | 724 | 703 | 712 | 747 | 847 |
| | | 피고인 | 13,702 | 14,231 | 13,431 | 15,280 | 14,033 | 13,477 | 13,483 | 14,934 | 16,630 | 18,420 |

○ 인구대비 수용인원 〈표 5-2〉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인 구 | 1일 평균 수용인원 | 인구대비 1일 평균수용인원(%) | 교도관 정원 | 교도관 대비 평균수용인원 |
|---|---|---|---|---|---|
| 2006 | 48,297,184 | 46,721 | 0.097 | 13,854 | 3.4 |
| 2007 | 48,456,369 | 46,313 | 0.095 | 14,296 | 3.2 |
| 2008 | 48,606,787 | 46,684 | 0.096 | 14,413 | 3.2 |
| 2009 | 48,746,693 | 49,467 | 0.101 | 14,521 | 3.4 |
| 2010 | 48,874,539 | 47,471 | 0.097 | 15,221 | 3.1 |
| 2011 | 49,779,000 | 45,845 | 0.092 | 15,478 | 3.0 |
| 2012 | 50,004,441 | 45,488 | 0.091 | 15,757 | 2.9 |
| 2013 | 51,141,463 | 47,924 | 0.094 | 15,476 | 3.1 |
| 2014 | 51,327,916 | 50,128 | 0.097 | 15,934 | 3.1 |
| 2015 | 51,529,338 | 53,892 | 0.105 | 15,887 | 3.4 |

○ 수용자 성별 인원 〈표 5-3〉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 45,651 | 45,647 | 47,966 | 48,228 | 45,681 | 45,038 | 46,708 | 48,824 | 51,760 | 54,667 |
| 수형자 | 소 계 | 30,145 | 31,478 | 32,197 | 32,297 | 31,981 | 31,198 | 31,434 | 32,137 | 33,444 | 35,098 |
| | 남 | 28,809 | 30,043 | 30,723 | 30,759 | 30,534 | 29,694 | 29,863 | 30,525 | 31,661 | 33,182 |
| | 여 | 1,336 | 1,435 | 1,474 | 1,538 | 1,447 | 1,504 | 1,571 | 1,612 | 1,783 | 1,916 |
| | 총수에 대한 여자비율(%) | 4.4 | 4.5 | 4.6 | 4.8 | 4.5 | 4.8 | 5.0 | 5.0 | 5.3 | 5.5 |
| 미결수용자 | 소 계 | 15,506 | 14,169 | 15,769 | 15,931 | 13,700 | 13,840 | 15,274 | 16,687 | 18,316 | 19,569 |
| | 남 | 14,507 | 13,178 | 14,709 | 14,866 | 12,772 | 12,915 | 14,263 | 15,376 | 17,008 | 18,026 |
| | 여 | 999 | 991 | 1,060 | 1,065 | 928 | 925 | 1,011 | 1,311 | 1,308 | 1,543 |
| | 총수에 대한 여자비율(%) | 6.4 | 7.0 | 6.7 | 6.7 | 6.7 | 6.7 | 6.6 | 7.9 | 7.1 | 7.9 |

○ 수형자 연령별 인원 〈표 5-4〉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30,145 | 31,478 | 32,197 | 32,297 | 31,981 | 31,198 | 31,434 | 32,137 | 33,444 | 35,098 |
| 16세 미만 | 1 | 1 | 5 | 2 | 1 | 2 | 16 | 6 | 3 | 0 |
| 18세 미만 | 22 | 36 | 60 | 73 | 46 | 49 | 70 | 55 | 50 | 47 |
| 20세 미만 | 156 | 214 | 228 | 273 | 304 | 231 | 251 | 280 | 270 | 262 |
| 25세 미만 | 3,086 | 2,519 | 2,189 | 2,471 | 2,457 | 2,153 | 2,147 | 2,327 | 2,514 | 2,609 |
| 25세 이상 | 3,877 | 3,867 | 3,898 | 3,697 | 3,295 | 2,899 | 2,539 | 2,366 | 2,247 | 2,244 |
| 30세 이상 | 9,262 | 9,348 | 8,998 | 8,733 | 8,436 | 8,018 | 7,681 | 7,677 | 7,584 | 7,678 |
| 40세 이상 | 9,045 | 9,849 | 10,381 | 10,166 | 9,925 | 9,708 | 9,714 | 9,714 | 9,986 | 10,310 |
| 50세 이상 | 3,653 | 4,375 | 5,032 | 5,387 | 5,876 | 6,344 | 6,866 | 7,362 | 7,989 | 8,624 |
| 60세 이상 | 1,043 | 1,269 | 1,406 | 1,495 | 1,641 | 1,794 | 2,150 | 2,350 | 2,801 | 3,324 |

○ 외국인 수용인원(국적별 인원) 〈표 5-5〉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 621 | 976 | 1,407 | 1,611 | 1,250 | 1,198 | 1132 | 1,222 | 1,271 | 1,884 |
| 소계 | 기 결 | 348 | 562 | 821 | 1,155 | 911 | 848 | 769 | 773 | 770 | 1,123 |
| | 미 결 | 273 | 414 | 586 | 456 | 339 | 350 | 363 | 449 | 501 | 761 |
| 중국 | 기 결 | 177 | 283 | 491 | 761 | 510 | 488 | 482 | 488 | 492 | 800 |
| | 미 결 | 131 | 236 | 386 | 217 | 169 | 206 | 223 | 269 | 340 | 500 |
| 일본 | 기 결 | 8 | 4 | 9 | 14 | 17 | 14 | 4 | 3 | 4 | 6 |
| | 미 결 | 1 | 4 | 11 | 5 | - | 2 | 2 | 1 | 3 | 1 |
| 미국 | 기 결 | 13 | 18 | 23 | 23 | 22 | 24 | 30 | 30 | 34 | 35 |
| | 미 결 | 10 | 19 | 22 | 12 | 19 | 12 | 20 | 20 | 24 | 29 |
| 기타 | 기 결 | 150 | 257 | 298 | 357 | 362 | 322 | 253 | 252 | 240 | 282 |
| | 미 결 | 131 | 155 | 167 | 222 | 151 | 130 | 118 | 159 | 134 | 231 |

○ 수형자 죄명별 인원 〈표 5-6〉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30,145 | 31,478 | 32,197 | 32,297 | 31,981 | 31,198 | 31,434 | 32,137 | 33,444 | 35,098 |
| 절 도 | 4,991 | 5,393 | 5,610 | 5,805 | 5,898 | 5,315 | 4,752 | 4,650 | 4,599 | 4,420 |
| 폭행 및 상해 | 882 | 988 | 1,090 | 914 | 848 | 854 | 854 | 889 | 978 | 1,036 |
| 사기 및 횡령 | 3,001 | 3,545 | 3,772 | 4,076 | 3,897 | 3,951 | 4,150 | 5,024 | 5,911 | 6,834 |
| 과 실 범 | 1,429 | 1,400 | 1,635 | 1,294 | 1,175 | 1,123 | 1,257 | 1,315 | 1,463 | 1,423 |
| 강 도 | 4,496 | 4,121 | 3,855 | 3,909 | 3,882 | 3,623 | 3,506 | 3,276 | 3,014 | 2,821 |
| 살 인 | 3,900 | 3,957 | 3,851 | 3,769 | 3,785 | 3,729 | 3,711 | 3,675 | 3,750 | 3,728 |
| 폭력행위등 처벌법 | 1,871 | 1,838 | 1,746 | 1,711 | 1,582 | 1,489 | 1,542 | 1,693 | 1,770 | 1,827 |
| 기 타 | 9,575 | 10,236 | 10,638 | 10,819 | 10,914 | 11,114 | 11,662 | 11,615 | 11,959 | 13,009 |

○ 수형자 형명, 형기별 인원 〈표 5-7〉

(단위 : 명)

| 형명형기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 30,145 | 31,478 | 32,197 | 32,297 | 31,981 | 31,198 | 31,434 | 32,137 | 33,444 | 35,098 |
| 징역 | 소 계 | 29,009 | 30,313 | 30,982 | 31,070 | 30,683 | 29,889 | 30,082 | 30,796 | 32,004 | 33,694 |
| | 1년 미만 | 5,346 | 6,269 | 7,298 | 6,379 | 5,430 | 5,421 | 5,322 | 5,078 | 5,312 | 5,724 |
| | 1년 이상 | 10,212 | 10,599 | 10,219 | 10,861 | 10,673 | 9,666 | 9,829 | 10,344 | 10,896 | 12,001 |
| | 3년 이상 | 5,180 | 5,316 | 5,503 | 5,980 | 6,458 | 6,610 | 6,493 | 6,613 | 6,866 | 6,870 |
| | 5년 이상 | 4,186 | 4,052 | 3,943 | 3,953 | 4,197 | 4,335 | 4,601 | 4,912 | 5,088 | 5,216 |
| | 10년 이상 | 3,415 | 3,438 | 3,419 | 3,347 | 3,396 | 3,344 | 3,317 | 3,299 | 3,335 | 3,283 |
| | 20년 이상 | 670 | 639 | 600 | 550 | 529 | 513 | 520 | 550 | 507 | 600 |
| 금고 | 소 계 | 69 | 60 | 70 | 47 | 72 | 45 | 84 | 53 | 60 | 67 |
| | 6월 미만 | 4 | 5 | 5 | 2 | 4 | 2 | 2 | 1 | 4 | 5 |
| | 6월 이상 | 41 | 35 | 41 | 23 | 35 | 23 | 51 | 32 | 33 | 37 |
| | 1년 이상 | 22 | 19 | 22 | 18 | 29 | 15 | 26 | 16 | 19 | 17 |
| | 3년 이상 | 2 | 1 | 2 | 4 | 4 | 5 | 5 | 4 | 4 | 8 |
| 무기징역 | | 1,067 | 1,105 | 1,145 | 1,180 | 1,226 | 1,264 | 1,268 | 1,288 | 1,326 | 1,337 |

○ 수형자 입소 경력별 인원 〈표 5-8〉

(단위 : 명)

| 사유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 30,145 | 31,478 | 32,197 | 32,297 | 31,981 | 31,198 | 31,434 | 32,137 | 33,444 | 35,098 |
| 무경험자 | | 14,645 | 15,301 | 15,304 | 15,456 | 15,384 | 15,225 | 16,676 | 17,483 | 18,604 | 19,794 |
| 유경력자 | 소 계 | 15,500 | 16,177 | 16,893 | 16,841 | 16,597 | 15,973 | 14,758 | 14,654 | 14,840 | 15,304 |
| | 1 회 | 5,986 | 5,947 | 6,176 | 5,955 | 5,835 | 5,373 | 5,308 | 5,292 | 5,552 | 5,987 |
| | 2 회 | 2,976 | 2,978 | 3,034 | 2,947 | 2,850 | 2,622 | 2,540 | 2,515 | 2,531 | 2,506 |
| | 3 회 | 2,008 | 2,133 | 2,203 | 2,138 | 2,066 | 1,993 | 1,889 | 1,833 | 1,790 | 1,742 |
| | 4회이상 | 4,530 | 5,119 | 5,480 | 5,801 | 5,846 | 5,985 | 5,021 | 5,014 | 4,967 | 5,069 |

○ 수형자 입·출소 사유별 인원 〈표 5-9〉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입소자 | 계 | 61,018 | 64,606 | 66,464 | 73,073 | 62,862 | 55,046 | 53,689 | 55,479 | 56,044 | 62,395 |
| | 신 입 소 | 33,944 | 33,938 | 35,286 | 41,236 | 32,817 | 27,253 | 26,145 | 27,333 | 26,573 | 29,357 |
| | 형 확 정 | 22,733 | 26,439 | 26,539 | 26,704 | 25,380 | 23,163 | 22,931 | 23,267 | 24,281 | 27,206 |
| | 기 타 | 4,341 | 4,229 | 4,639 | 5,133 | 4,665 | 4,630 | 4,613 | 4,879 | 5,190 | 5,832 |
| 출소자 | 계 | 63,842 | 62,792 | 65,315 | 72,510 | 63,228 | 55,436 | 53,202 | 54,297 | 54,203 | 60,414 |
| | 형기종료 | 16,293 | 16,649 | 17,561 | 17,607 | 17,468 | 16,551 | 15,742 | 16,374 | 17,191 | 19,187 |
| | 가 석 방 | 8,590 | 8,034 | 8,433 | 8,198 | 8,084 | 7,126 | 6,494 | 6,176 | 5,390 | 5,507 |
| | 사 면 | 31 | 19 | 583 | 625 | 12 | 0 | 374 | 13 | 282 | 559 |
| | 기 타 | 23,052 | 22,724 | 22,445 | 26,493 | 21,104 | 17,370 | 16,863 | 17,526 | 16,177 | 15,927 |
| | 노역종료 | 15,876 | 15,366 | 16,293 | 19,587 | 16,560 | 14,389 | 13,729 | 14,208 | 15,163 | 19,234 |
| 연도말 인원 | | 30,145 | 31,478 | 32,197 | 32,297 | 31,981 | 31,198 | 31,434 | 32,137 | 33,444 | 35,098 |

## 나. 미결구금자

○ 미결구금자 입소사유별 인원 〈표 5-10〉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58,727 | 56,870 | 57,107 | 58,076 | 48,335 | 44,300 | 43,152 | 44,274 | 48,265 | 52,129 |
| 신 입 소 | 55,078 | 52,999 | 53,372 | 54,013 | 44,276 | 40,084 | 39,029 | 39,604 | 43,171 | 46,585 |
| 기 타 (보석취소 등) | 3,649 | 3,871 | 3,735 | 4,063 | 4,059 | 4,216 | 4,123 | 4,670 | 5,094 | 5,544 |

○ 미결구금자 출소사유별 인원 〈표 5-11〉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67,118 | 67,754 | 65,155 | 70,008 | 61,815 | 43,987 | 41,433 | 42,651 | 46,272 | 50,654 |
| 구속취소 | 2,311 | 1,882 | 1,308 | 1,888 | 1,893 | 1,465 | 1,355 | 1,400 | 1,669 | 2,056 |
| 벌 금 | 2,107 | 1,881 | 1,988 | 2,156 | 1,574 | 1,235 | 947 | 1,078 | 1,224 | 1,306 |
| 집행유예 | 17,736 | 16,924 | 15,951 | 17,052 | 13,074 | 11,030 | 9,941 | 10,100 | 11,777 | 12,914 |
| 보 석 | 6,561 | 5,415 | 4,672 | 4,709 | 3,885 | 3,376 | 2,662 | 2,882 | 3,167 | 3,069 |
| 형 확 정 | 22,623 | 25,535 | 25,626 | 25,804 | 24,351 | 21,955 | 21,660 | 22,017 | 23,155 | 25,985 |
| 기 타 | 15,780 | 16,117 | 15,610 | 18,399 | 17,038 | 4,926 | 4,868 | 5,174 | 5,280 | 5,324 |
| 연도말인원 | 15,506 | 14,169 | 15,769 | 15,931 | 13,700 | 13,840 | 15,274 | 16,687 | 18,317 | 19,569 |

※ 2011년 통계부터 교정기관간 이송·이입 인원은 제외함

## 다. 소년수형자

○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표 5-12〉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648 | 657 | 156 | 169 | 146 | 114 | 170 | 152 | 131 | 130 |
| 절 도 | 137 | 156 | 73 | 62 | 45 | 26 | 42 | 43 | 34 | 26 |
| 사기·횡령 | 8 | 15 | 1 | 3 | 3 | - | 2 | 1 | 2 | 10 |
| 폭력·상해 | 11 | 10 | 9 | 3 | 1 | 5 | 17 | 17 | 5 | 10 |
| 강 간 등 | 111 | 116 | 24 | 44 | 32 | 33 | 54 | 46 | 34 | 27 |
| 강 도 등 | 203 | 192 | 24 | 32 | 33 | 18 | 24 | 16 | 11 | 14 |
| 살 인 | 91 | 88 | 9 | 6 | 11 | 10 | 11 | 7 | 6 | 5 |
| 과 실 범 | 12 | 15 | 5 | 2 | 3 | 1 | 2 | - | 2 | 2 |
| 기 타 | 75 | 65 | 11 | 17 | 18 | 21 | 18 | 22 | 37 | 36 |

○ 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표 5-13〉

(단위 : 명)

| 형명형기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 648 | 657 | 156 | 169 | 146 | 114 | 170 | 152 | 131 | 130 |
| 징역형 | 무 기 | 16 | 16 | - | - | - | - | - | - | - | - |
| | 20년 이상 | 22 | 20 | - | - | - | 1 | 2 | 4 | 1 | - |
| | 10년 이상 | 142 | 122 | 3 | 3 | 5 | 4 | 5 | 4 | 3 | 2 |
| | 5년 이상 | 92 | 89 | 14 | 15 | 15 | 12 | 13 | 10 | 11 | 12 |
| | 3년 이상 | 91 | 108 | 27 | 42 | 45 | 38 | 44 | 39 | 42 | 48 |
| | 1년 이상 | 203 | 233 | 87 | 89 | 58 | 48 | 94 | 87 | 67 | 56 |
| | 1년 미만 | 66 | 52 | 24 | 19 | 23 | 10 | 12 | 8 | 7 | 11 |
| | 6월 미만 | 16 | 15 | 1 | 1 | - | 1 | - | - | - | 1 |
| 금고형 | 3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1년 미만 | - | 2 | - | - | - | - | - | - | - | - |

○ 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 〈표 5-14〉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766 | 673 | 317 | 101 | 114 | 69 | 86 | 101 | 103 | 74 |
| 가 석 방 | 211 | 152 | 58 | 17 | 21 | 10 | 17 | 10 | 12 | 8 |
| 부정기형집행 종료결정 | - | - | - | - | - | - | - | - | - | - |
| 만 기 석 방 | 310 | 326 | 164 | 59 | 75 | 45 | 45 | 68 | 78 | 53 |
| 기 타 | 245 | 195 | 95 | 25 | 18 | 14 | 24 | 23 | 13 | 13 |

○ 2011년 출소자의 재복역률 〈표 5-15〉

| 재복역 기간 | '11년 출소자의 재복역률 (출소자 23,045명) | |
|---|---|---|
| | 재복역 인원 | 비 율 |
| 3월 이내 | 67 | 0.3% |
| 6월 이내 | 387 | 1.7% |
| 1년 이내 | 1,548 | 6.7% |
| 2년 이내 | 3,549 | 15.4% |
| 3년 이내 | 4,936 | 21.4% |

※ 조사대상인원 : 23,045명

※ 출소자 재복역률 개념

출소자 재복역률이란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11년에 형기종료, 가석방·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첫번째 입소에 한함)되는 비율

○ 출소사유별 · 재복역기간별 · 성별 재복역률 〈표 5-16〉

| 출소사유 | 총출소 인원 | | 재복역 인원 | | 재복역기간 | | | | | | | | | |
|---|---|---|---|---|---|---|---|---|---|---|---|---|---|---|
| | | | | | 3월 미만 | | 3월 이상 6월 미만 | | 6월 이상 1년 미만 | | 1년 이상 2년 미만 | | 2년 이상 3년 미만 | |
| | 전체 | 여자 | 전체 | 여자 | 전체 | 여자 | 전체 | 여자 | 전체 | 여자 | 전체 | 여자 | 전체 | 여자 |
| 총 계 | 23,045 | 1,474 | 4,936 | 159 | 67 | 3 | 320 | 10 | 1,161 | 40 | 2,001 | 60 | 1,387 | 46 |
| 형기종료 | 15,897 | 805 | 4,470 | 147 | 54 | 3 | 297 | 9 | 1,071 | 36 | 1,822 | 56 | 1,226 | 43 |
| 가석방 | 7,127 | 669 | 458 | 12 | 13 | - | 22 | 1 | 88 | 4 | 175 | 4 | 160 | 3 |
| 감호기간종료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출소 | 18 | - | 8 | - | - | - | 1 | - | 2 | - | 4 | - | 1 | - |
| 사 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소사유별 재복역률

형기종료 28.1%, 가석방 6.4%, 감호기간 종료 0.0%, 가출소 44.4%, 사면 0.0%

※ 재복역기간별 누적 재복역률

3월 이내 0.3.%, 6월 이내 1.7%, 1년 이내 6.7%, 2년 이내 15.4%, 3년 이내 21.4%

※ 재복역기간별 인원

3월이내 67명(1.4%), 3월이상 6월이내 320명(6.5%), 6월이상 1년이내 1,161명(23.5%), 1년이상 2년이내 2,001명(40.5%), 2년이상 3년이내 1,387명(28.1%)

※ 성별 재복역률

남자 20.7%, 여자 10.8%

○ 출소자 범수별 재복역률 〈표 5-17〉

| 출소사유 | 구분 | 총출소인원 | 재복역자 범수 | | | | |
|---|---|---|---|---|---|---|---|
| | | | 1범 | 2범 | 3범 | 4범 | 5범 이상 |
| 총계 | 출소인원 | 23,045 | 11,974 | 4,369 | 2,093 | 1,281 | 3,328 |
| | 재복역인원 | 4,936 | 1,045 | 982 | 711 | 518 | 1,680 |
| | 재복역률 | 21.4 | 8.7 | 22.5 | 34.0 | 40.4 | 50.5 |
| 형기종료 | 출소인원 | 15,897 | 6,322 | 2,978 | 2,021 | 1,279 | 3,297 |
| | 재복역인원 | 4,470 | 801 | 782 | 696 | 518 | 1,673 |
| | 재복역률 | 28.1 | 12.7 | 26.3 | 34.4 | 40.5 | 50.7 |
| 가석방 | 출소인원 | 7,127 | 5,649 | 1,388 | 69 | 2 | 19 |
| | 재복역인원 | 458 | 244 | 200 | 14 | - | - |
| | 재복역률 | 6.4 | 4.3 | 14.4 | 20.3 | 0 | 0 |
| 감호기간종료 | 출소인원 | 3 | 1 | - | - | - | 2 |
| | 재복역인원 | - | - | - | - | - | - |
| | 재복역률 | 0 | 0 | 0 | 0 | 0 | 0 |
| 가출소 | 출소인원 | 18 | 2 | 3 | 3 | - | 10 |
| | 재복역인원 | 8 | - | - | 1 | - | 7 |
| | 재복역률 | 44.4 | 0 | 0 | 33.3 | 0 | 70.0 |
| 사면 | 출소인원 | - | - | - | -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 | - | - |
| | 재복역률 | 0 | 0 | 0 | 0 | 0 | 0 |

※ 범수별 재복역률

초범 8.7%, 2범 22.5%, 3범 34.0%, 4범 40.4%, 5범 이상 50.5%

※ 출소사유별 범수별 재복역률

형기종료는 5범이 50.7%, 가석방은 3범이 20.3%로 재복역률이 가장 높음

○ 출소자 연령별 재복역률 〈표 5-18〉

| 출소사유 | 구분 | 총출소인원 | 재복역자 연령 | | | | | |
|---|---|---|---|---|---|---|---|---|
| | | | 20세 미만 | 20세 ~29세 | 30세 ~39세 | 40세 ~49세 | 50세 ~59세 | 60세 이상 |
| 계 | 출소인원 | 23,045 | 151 | 3,993 | 5,528 | 7,198 | 4,886 | 1,289 |
| | 재복역인원 | 4,936 | 53 | 961 | 1,308 | 1,562 | 875 | 177 |
| | 재복역률 | 21.4 | 35.1 | 24.1 | 23.7 | 21.7 | 17.9 | 13.7 |
| 형기종료 | 출소인원 | 15,897 | 117 | 2,214 | 4,085 | 5,171 | 3,445 | 865 |
| | 재복역인원 | 4,470 | 41 | 800 | 1,209 | 1,450 | 804 | 166 |
| | 재복역률 | 28.1 | 35.0 | 36.1 | 29.6 | 28.0 | 23.3 | 19.2 |
| 가석방 | 출소인원 | 7,127 | 34 | 1,779 | 1,441 | 2,020 | 1,430 | 423 |
| | 재복역인원 | 458 | 12 | 161 | 98 | 109 | 67 | 11 |
| | 재복역률 | 6.4 | 35.3 | 9.1 | 6.8 | 5.4 | 4.7 | 2.6 |
| 감호기간종료 | 출소인원 | 3 | - | - | - | 2 | 1 | - |
| | 재복역인원 | - | - | - | - | - | - | - |
| | 재복역률 | 0 | 0 | 0 | 0 | 0 | 0 | 0 |
| 가출소 | 출소인원 | 18 | - | - | 2 | 5 | 10 | 1 |
| | 재복역인원 | 8 | - | - | 1 | 3 | 4 | - |
| | 재복역률 | 44.4 | 0 | 0 | 50.0 | 60.0 | 40.0 | 0 |
| 사면 | 출소인원 | - | - | - | - | -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 | - | - | - |
| | 재복역률 | 0 | 0 | 0 | 0 | 0 | 0 | 0 |

※ 연령별 재복역률

20세 이내 35.1%, 20대 24.1%, 30대 23.7%, 40대 21.7%, 50대 17.9%, 60대 이상 13.7%

※ 출소사유별 연령별 재복역률

형기종료(36.1%)는 20대가, 가석방(35.3%)은 20세 이내의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출소자 죄명별 재복역률 〈표 5-19〉

| 출소사유 | 구분 | 총출소인원 | 재복역자 죄명 | | | | | | | | |
|---|---|---|---|---|---|---|---|---|---|---|---|
| | | | 살인 | 강도 | 성폭력 | 폭력행위 | 절도 | 사기·횡령 | 마약류 | 과실범 | 기타 |
| 계 | 출소인원 | 23,045 | 701 | 1,036 | 991 | 2,498 | 4,545 | 6,950 | 1,507 | 1,746 | 3,071 |
| | 재복역인원 | 4,936 | 38 | 251 | 179 | 576 | 1,841 | 882 | 638 | 272 | 259 |
| | 재복역률 | 21.4 | 5.4 | 24.2 | 18.1 | 23.1 | 40.5 | 12.7 | 42.3 | 15.6 | 8.4 |
| 형기종료 | 출소인원 | 15,897 | 182 | 682 | 983 | 2,060 | 3,835 | 3,991 | 1,499 | 1,130 | 1,535 |
| | 재복역인원 | 4,470 | 24 | 205 | 178 | 537 | 1,687 | 773 | 633 | 211 | 222 |
| | 재복역률 | 28.1 | 13.1 | 30.1 | 18.1 | 26.0 | 44.0 | 19.4 | 42.2 | 18.7 | 14.5 |
| 가석방 | 출소인원 | 7,127 | 519 | 342 | 6 | 436 | 706 | 2,958 | 8 | 616 | 1,536 |
| | 재복역인원 | 458 | 14 | 42 | - | 39 | 151 | 109 | 5 | 61 | 37 |
| | 재복역률 | 6.4 | 2.7 | 12.3 | - | 8.9 | 21.4 | 3.7 | 62.5 | 10.0 | 2.4 |
| 감호기간종료 | 출소인원 | 3 | - | 2 | - | - | 1 | - | -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재복역률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가출소 | 출소인원 | 18 | - | 10 | 2 | 2 | 3 | 1 | - | - | - |
| | 재복역인원 | 8 | - | 4 | 1 | - | 3 | - | - | - | - |
| | 재복역률 | 44.4 | 0 | 40.0 | 50.0 | 0 | 100.0 | 0 | 0 | 0 | 0 |
| 사면 | 출소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재복역률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죄명별 재복역률

살인(5.4%), 강도(24.2%), 성폭력(18.1%), 폭력(23.1%), 절도(40.5%), 사기·횡령(12.7%), 마약류(42.3%), 과실범(15.6%)

※ 출소사유별 죄명별 재복역률

형기종료는 절도가 44.0%, 가석방은 마약류가 62.5%, 가출소는 절도가 100%로 재복역률이 높게 나타남

○ 출소자 형기별 재복역률 〈표 5-20〉

| 출소사유 | 구 분 | 총출소인원 | 재복역자 형기 | | | | | | | | |
|---|---|---|---|---|---|---|---|---|---|---|---|
| | | | 6월 미만 | 6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7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15년 미만 | 15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 계 | 출소인원 | 23,045 | 1,144 | 7,086 | 10,619 | 2,274 | 590 | 480 | 355 | 197 | 300 |
| | 재복역인원 | 4,936 | 223 | 1,471 | 2,345 | 553 | 113 | 85 | 58 | 43 | 45 |
| | 재복역률 | 21.4 | 19.5 | 20.8 | 22.1 | 24.3 | 19.2 | 17.7 | 16.3 | 21.8 | 15.0 |
| 형기종료 | 출소인원 | 15,897 | 1,113 | 5,672 | 6,529 | 1,430 | 379 | 302 | 182 | 111 | 179 |
| | 재복역인원 | 4,470 | 222 | 1,382 | 2,097 | 478 | 97 | 73 | 43 | 38 | 40 |
| | 재복역률 | 28.1 | 19.9 | 24.4 | 32.1 | 33.4 | 25.6 | 24.2 | 23.6 | 34.2 | 22.3 |
| 가석방 | 출소인원 | 7,127 | 31 | 1,412 | 4,090 | 839 | 207 | 177 | 169 | 83 | 119 |
| | 재복역인원 | 458 | 1 | 89 | 248 | 71 | 15 | 12 | 14 | 4 | 4 |
| | 재복역률 | 6.4 | 3.2 | 6.3 | 6.1 | 8.5 | 7.2 | 6.8 | 8.3 | 4.8 | 3.4 |
| 감호기간종료 | 출소인원 | 3 | - | - | - | - | 1 | - | 2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재복역률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가출소 | 출소인원 | 18 | - | 2 | - | 5 | 3 | 1 | 2 | 3 | 2 |
| | 재복역인원 | 8 | - | - | - | 4 | 1 | - | 1 | 1 | 1 |
| | 재복역률 | 44.4 | 0 | 0 | 0 | 80.0 | 33.3 | 0 | 50.0 | 33.3 | 50.0 |
| 사 면 | 출소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재복역률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형기별 재복역률
6월 미만(19.5%), 6월 이상 1년 미만(20.8%), 1년 이상 3년 미만(22.1%), 3년 이상 5년 미만(24.3%), 5년 이상 7년 미만(19.2%), 7년 이상 10년 미만(17.7%), 10년 이상 15년 미만(16.3%), 15년 이상 20년 미만(21.8%), 20년 이상(15.0%)

※ 출소사유별 형기별 재복역률
형기종료는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34.2%, 가석방은 3년이상 5년미만이 8.5%로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 수용자 교육·교화 현황

### 가. 학과교육

○ 일반학과 교육인원 〈표 5-21〉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1,320 | 900 | 1,070 | 890 | 871 | 869 | 832 | 832 | 720 | 609 |
| 초등과 | 425 | 90 | 108 | 120 | 101 | 100 | 97 | 97 | 34 | 34 |
| 중등과 | 325 | 295 | 339 | 305 | 309 | 305 | 278 | 278 | 188 | 147 |
| 고등과 | 570 | 515 | 623 | 465 | 461 | 464 | 457 | 457 | 498 | 428 |

○ 검정고시 합격인원 〈표 5-22〉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766 | 702 | 597 | 572 | 481 | 514 | 558 | 571 | 565 | 575 |
| 고 졸 | 478 | 415 | 355 | 330 | 291 | 325 | 390 | 370 | 390 | 394 |
| 고 입 | 233 | 246 | 209 | 205 | 169 | 162 | 130 | 187 | 163 | 147 |
| 중 입 | 55 | 41 | 33 | 37 | 21 | 27 | 38 | 14 | 12 | 34 |

○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인원 〈표 5-23〉

(단위 : 명)

| 소 별 \ 연 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교육인원 | 90 | 50 | 21 | 40 | 40 | 40 | 30 | 30 | 30 | 30 |
| | 졸업인원 | 8 | 10 | 8 | 6 | 13 | 10 | 5 | 9 | 6 | 7 |
| 천안 | 교육인원 | 90 | 50 | 21 | 폐지 | - | - | - | - | - | - |
| | 졸업인원 | 8 | 10 | 8 | - | - | - | - | - | - | - |
| 김천 | 교육인원 | - | - | - | 40 | 40 | 40 | 30 | 30 | 30 | 30 |
| | 졸업인원 | - | - | - | 6 | 13 | 10 | 5 | 9 | 6 | 7 |

## 나. 귀휴 등 사회적 처우

○ 귀휴 인원 〈표 5-24〉

(단위 : 명)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인 원 | 1,122 | 1,123 | 1,084 | 1,000 | 1,157 | 1,165 | 1,209 | 1,282 | 1,356 | 999 |

○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인원 〈표 5-25〉

(단위 : 명)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인 원 | 3,851 | 4,315 | 4,386 | 2,994 | 5,108 | 4,323 | 4,099 | 4,245 | 4,417 | 4,322 |

○ 가족만남의 날 행사 인원 〈표 5-26〉

(단위 : 명)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인 원 | 10,128 | 11,601 | 11,503 | 6,807 | 11,078 | 11,566 | 11,681 | 11,578 | 11,855 | 12,755 |

○ 가족만남의 집 이용 인원 〈표 5-27〉

(단위 : 명)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인 원 | 337 | 453 | 782 | 795 | 1,223 | 1,120 | 1,177 | 1,261 | 1,338 | 1,361 |

## 다. 교정위원 활동

○ 교정위원 현황 〈표 5-28〉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4,621 | 4,682 | 4,656 | 4,574 | 5,220 | 5,069 | 4,915 | 4,833 | 4,688 | 4,706 |
| 교화위원 | 2,298 | 2,304 | 2,313 | 2,255 | 2,232 | 2,070 | 1,971 | 1,915 | 1,778 | 1,804 |
| 종교위원 | 1,866 | 1,921 | 1,910 | 1,925 | 1,963 | 1,962 | 1,942 | 1,967 | 1,924 | 1,895 |
| 교육위원 | 265 | 269 | 263 | 241 | 248 | 225 | 218 | 211 | 246 | 275 |
| 의료위원 | 192 | 188 | 170 | 153 | 140 | 123 | 112 | 108 | 98 | 102 |
| 취업위원 | - | - | - | - | 637 | 689 | 672 | 632 | 642 | 630 |

○ 교화위원 활동실적 〈표 5-29〉

(단위 : 명)

| 구 분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상담(명) | 3,921 | 2,591 | 2,317 | 1,896 | 1,454 | 1,728 | 1,615 | 1,591 | 2,390 | 1,629 |
| 교화강연(회) | 343 | 101 | 99 | 61 | 15 | 13 | 6 | 3 | 8 | 11 |
| 자매결연(명) | 413 | 421 | 661 | 549 | 778 | 719 | 186 | 363 | 515 | 519 |
| 수용생활 지원(명) | 4,567 | 4,377 | 3,114 | 4,439 | 4,747 | 4,739 | 4,440 | 4,619 | 6,992 | 5,867 |

○ 종교위원 활동실적 〈표 5-30〉

| 구 분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교리지도(명) | 50,940 | 44,239 | 48,150 | 38,201 | 44,678 | 37,072 | 39,667 | 41,207 | 37,790 | 29,560 |
| 자매결연(명) | 2,597 | 6,605 | 6,962 | 13,428 | 12,466 | 9,652 | 2,920 | 3,989 | 3,448 | 3,828 |
| 수용생활 지원(명) | 26,076 | 24,535 | 24,939 | 25,309 | 24,891 | 26,093 | 27,305 | 24,780 | 22,336 | 22,170 |
| 교화도서 기증(권) | 2,909 | 2,908 | 994 | 9,028 | 3,429 | 2,361 | 1,782 | 401 | 670 | 346 |

○ 교육위원 활동실적 〈표 5-31〉

| 구 분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교육훈련 지도(명) | 22,857 | 14,769 | 20,213 | 12,905 | 8,777 | 8,783 | 7,665 | 6,761 | 7,668 | 11,401 |
| 자매결연(명) | 39 | 72 | 30 | 5 | 6 | 7 | 4 | 8 | 29 | 18 |
| 수용생활 지원(명) | 29 | 20 | 161 | 720 | 400 | 110 | 1 | - | 11 | 36 |
| 교화도서 기증(권) | - | 85 | 97 | 514 | 97 | 89 | 276 | - | 20 | 100 |

○ 의료위원 활동실적 〈표 5-32〉

| 구 분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의료지원(명) | 13,864 | 12,095 | 8,787 | 6,757 | 2,754 | 6,029 | 4,970 | 4,762 | 4,731 | 10,716 |
| 자매결연(명) | 1 | 3 | - | 2 | 1 | - | 3 | 2 | 5 | 9 |
| 수용생활 지원(명) | 220 | 80 | 45 | 33 | 29 | 38 | 19 | - | - | 45 |
| 교화도서 기증(권) | - | 30 | - | - | - | 33 | - | - | - | - |

## 3.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 가. 교도작업

○ 취업 인원 〈표 5-33〉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수형자 총인원 | | 30,361 | 31,083 | 31,506 | 32,575 | 31,975 | 31,032 | 31,620 | 32,076 | 32,867 | 34,425 |
| 취업 불가능인원 | | 6,850 | 7,091 | 7,577 | 8,562 | 8,575 | 8,469 | 9,053 | 9,140 | 9,085 | 10,458 |
| 취업가능인원 | 계 | 23,511 | 23,992 | 23,929 | 24,013 | 23,400 | 22,563 | 22,567 | 22,936 | 23,782 | 23,967 |
| | 취업 인원 | 19,598 | 19,665 | 19,471 | 19,441 | 18,892 | 19,379 | 18,826 | 18,991 | 21,471 | 22,090 |
| | 비율 (%) | 83 | 82 | 81 | 81 | 79 | 86 | 83 | 83 | 90 | 92 |
| | 불취업 인원 | 3,913 | 4,327 | 4,458 | 4,572 | 4,508 | 3,184 | 3,741 | 3,945 | 2,311 | 1,877 |

※ 감호작업은 제외

○ 생산실적 〈표 5-34〉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획 | 35,100 | 33,048 | 33,351 | 31,600 | 31,800 | 32,000 | 32,913 | 33,789 | 37,699 | 42,082 |
| 실적 | 30,473 | 34,334 | 31,399 | 33,713 | 33,053 | 39,220 | 38,038 | 42,099 | 47,247 | 55,792 |
| 실적/계획(%) | 87.0 | 103.9 | 94.1 | 106.7 | 103.9 | 122.6 | 115.6 | 124.6 | 125.3 | 132.5 |
| 실적 증가율(%) | △9.8 | 12.7 | △8.5 | 7.4 | △2.0 | 18.7 | △3.0 | 10.7 | 12.2 | 18.0 |

○ 작업형태별 생산실적 〈표 5-35〉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실 적 | 30,473 | 34,334 | 31,399 | 33,713 | 33,053 | 39,220 | 38,038 | 42,099 | 47,246 | 55,792 |
| | 구성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직영작업 | 실 적 | 19,480 | 23,363 | 19,938 | 23,187 | 21,284 | 26,496 | 22,951 | 22,873 | 24,801 | 30,228 |
| | 구성비(%) | 64.0 | 68.0 | 63.0 | 68.7 | 64.4 | 67.6 | 60.3 | 54.3 | 52.5 | 54.1 |
| 위탁작업 | 실 적 | 4,457 | 4,615 | 4,957 | 4,811 | 5,455 | 6,170 | 7,907 | 11,548 | 15,026 | 17,448 |
| | 구성비(%) | 14.6 | 13.4 | 16.0 | 14.3 | 16.5 | 15.7 | 20.8 | 27.4 | 31.8 | 31.3 |
| 노무작업 | 실 적 | 6,347 | 6,017 | 5,933 | 5,560 | 6,154 | 6,256 | 7,004 | 7,020 | 7,217 | 7,914 |
| | 구성비(%) | 20.8 | 17.6 | 19.0 | 16.5 | 18.6 | 16.0 | 18.4 | 16.7 | 15.3 | 14.1 |
| 잡수입 | 실 적 | 189 | 339 | 571 | 155 | 160 | 298 | 176 | 658 | 202 | 202 |
| | 구성비(%) | 0.6 | 1.0 | 2.0 | 0.5 | 0.5 | 0.8 | 0.5 | 1.6 | 0.4 | 0.5 |

○ 연도별 관수용품 등 공급실적 〈표 5-36〉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생산총액 | | 30,473 | 34,334 | 31,399 | 33,713 | 33,053 | 39,220 | 38,038 | 42,099 | 47,247 | 55,792 |
| 관수용품 | 계 | 16,536 | 20,267 | 17,645 | 21,287 | 19,146 | 23,857 | 20,320 | 19,354 | 22,504 | 28,503 |
| | 교 도 소 | 15,516 | 19,301 | 16,663 | 19,960 | 18,492 | 23,081 | 19,513 | 18,757 | 20,535 | 25,971 |
| | 법무부산하 | 210 | 336 | 366 | 367 | 145 | 153 | 346 | 296 | 311 | 205 |
| | 부 외 처 | 810 | 630 | 616 | 960 | 509 | 623 | 461 | 301 | 1,658 | 2,327 |
| 일반판매 | | 13,937 | 14,067 | 13,754 | 12,426 | 13,907 | 15,363 | 17,718 | 22,745 | 24,743 | 27,289 |

○ 작업장려금 지급실적 〈표 5-37〉

(단위 : 원)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지급액(천원) | 10,986,521 | 11,036,115 | 11,111,119 | 10,800,307 | 10,174,852 | 10,550,869 | 11,966,506 | 14,901,986 | 17,798,954 | 20,231,129 |
| 지 급 연인원 | 5,361,135 | 5,200,699 | 5,125,320 | 5,168,684 | 4,745,771 | 4,958,200 | 4,965,893 | 5,022,670 | 4,435,528 | 5,634,098 |
| 1인당 1일평균 | 2,049 | 2,122 | 2,168 | 2,090 | 2,144 | 2,128 | 2,410 | 2,967 | 4,013 | 3,591 |

○ 수용자 조위금·위로금 지급실적 〈표 5-38〉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지급인원 | 3 | 7<br>(1) | 5<br>(1) | 6 | 8 | 6 | 5 | 3 | - | 5 |
| 지 급 액 | 20,269 | 65,817<br>(30,506) | 46,768<br>(30,506) | 42,694 | 69,627 | 60,804 | 73,735<br>(42,709) | 11,346 | - | 98,729 |

※ ( )는 조위금

○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 지급실적 〈표 5-39〉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지 급 액 | 155,698 | 196,793 | 250,211 | 329,100 | 423,956 | 549,227 | 599,907 | 700,846 | 630,667 | 687,043 |
| 지급인원 | 49 | 53 | 67 | 80 | 90 | 97 | 122 | 117 | 98 | 92 |
| 1인당 평균 지급액 | 3,178 | 3,713 | 3,734 | 4,114 | 4,711 | 5,662 | 4,917 | 5,990 | 6,435 | 7,468 |

## 나. 직업훈련

○ 직업훈련 수료인원 〈표 5-40〉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3,273 | 3,279 | 3,470 | 3,537 | 3,725 | 3,825 | 4,129 | 4,852 | 6,276 | 6,484 |
| 양성·향상 훈련 | 2,740 | 2,683 | 2,536 | 2,783 | 3,164 | 3,076 | 3,386 | 3,336 | 3,811 | 3,758 |
| 숙련훈련 | - | 217 | 490 | 430 | 327 | 369 | 350 | 249 | 397 | 360 |
| 일반훈련 | 533 | 379 | 444 | 324 | 234 | 380 | 393 | 1,267 | 2,068 | 2,366 |

○ 기능자격 취득인원 〈표 5-41〉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2,870 | 2,506 | 2,693 | 2,740 | 2,856 | 2,803 | 2,813 | 2,953 | 3,278 | 3,264 |
| 산업기사 이상 | 293 | 244 | 276 | 255 | 281 | 204 | 256 | 173 | 80 | 55 |
| 기 능 사 | 2,577 | 2,262 | 2,417 | 2,485 | 2,575 | 2,599 | 2,557 | 2,780 | 3,198 | 3,209 |

# 제 6 절 출입국 · 외국인정책업무 통계

## 1.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표 6-1〉

| 구분 \ 연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합계 | 계 | 35,851,121 | 39,833,724 | 38,203,620 | 35,206,504 | 42,988,101 |
| | 승 객 | 32,155,083 | 35,918,348 | 34,326,585 | 31,431,486 | 38,863,373 |
| | 승무원 | 3,696,038 | 3,915,376 | 3,877,035 | 3,775,018 | 4,124,728 |
| 국민 | 소 계 | 23,538,250 | 27,174,375 | 24,677,484 | 19,586,995 | 25,585,627 |
| | 승 객 | 21,647,674 | 25,084,645 | 22,608,575 | 17,576,130 | 23,419,302 |
| | 승무원 | 1,890,576 | 2,089,730 | 2,068,909 | 2,010,865 | 2,166,325 |
| 외국인 | 소 계 | 12,312,871 | 12,659,349 | 13,526,136 | 15,619,509 | 17,402,474 |
| | 승 객 | 10,507,409 | 10,833,703 | 11,718,010 | 13,855,356 | 15,444,071 |
| | 승무원 | 1,805,462 | 1,825,646 | 1,808,126 | 1,764,153 | 1,958,403 |
| 구분 \ 연도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합계 | 계 | 45,422,910 | 50,322,102 | 54,966,229 | 61,652,158 | 66,372,908 |
| | 승 객 | 40,976,012 | 45,744,545 | 48,888,699 | 55,316,870 | 60,054,078 |
| | 승무원 | 4,446,898 | 4,577,557 | 6,077,530 | 6,335,288 | 6,318,830 |
| 국민 | 소 계 | 26,064,463 | 28,136,628 | 30,352,303 | 32,722,368 | 39,111,816 |
| | 승 객 | 23,759,315 | 25,557,744 | 27,646,533 | 29,971,333 | 36,228,736 |
| | 승무원 | 2,305,148 | 2,578,884 | 2,705,770 | 2,751,035 | 2,883,080 |
| 외국인 | 소 계 | 19,358,447 | 22,185,474 | 24,613,926 | 28,929,790 | 27,261,092 |
| | 승 객 | 17,216,697 | 20,186,801 | 21,242,166 | 25,345,537 | 23,825,342 |
| | 승무원 | 2,141,750 | 1,998,673 | 3,371,760 | 3,584,253 | 3,435,750 |

## 2. 국적별 외국인 입국현황(승무원제외) 〈표 6-2〉

| 구분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총 계 | 5,321,593 | 5,491,128 | 5,897,517 | 6,942,183 | 7,774,645 |
| 일 본 | 2,319,874 | 2,215,611 | 2,358,333 | 3,032,376 | 3,004,066 |
| 중 국 | 780,239 | 920,250 | 1,015,699 | 1,212,305 | 1,723,849 |
| 미 국 | 603,741 | 627,172 | 644,012 | 647,566 | 693,892 |
| 타 이 완 | 368,964 | 370,071 | 352,071 | 411,591 | 438,041 |
| 홍 콩 | 134,520 | 131,482 | 150,423 | 206,918 | 221,121 |
| 타 이 | 89,752 | 100,850 | 118,877 | 156,167 | 219,231 |
| 말 레 이 시 아 | 74,467 | 65,872 | 67,326 | 66,148 | 98,807 |
| 오스트레일리아 | 65,491 | 76,980 | 91,801 | 94,262 | 105,304 |
| 필 리 핀 | 67,941 | 73,122 | 79,266 | 86,477 | 94,897 |
| 캐 나 다 | 85,612 | 90,202 | 95,993 | 102,145 | 112,496 |
| 싱 가 포 르 | 71,018 | 75,383 | 77,074 | 84,351 | 100,526 |
| 베 트 남 | 41,791 | 55,638 | 72,020 | 76,537 | 92,810 |
| 영 국 | 70,192 | 74,760 | 82,093 | 84,213 | 90,331 |
| 러 시 아 | 62,559 | 65,263 | 68,079 | 65,180 | 77,024 |
| 인 도 네 시 아 | 36,152 | 39,118 | 49,768 | 48,891 | 61,592 |
| 독 일 | 65,740 | 71,819 | 76,686 | 80,525 | 81,396 |
| 프 랑 스 | 41,021 | 47,084 | 52,577 | 53,721 | 58,531 |
| 인 도 | 37,065 | 41,292 | 43,140 | 40,877 | 49,762 |
| 몽 골 | 32,580 | 39,860 | 43,113 | 38,192 | 41,889 |
| 우 즈 베 키 스 탄 | 11,512 | 16,032 | 22,165 | 15,763 | 22,385 |
| 뉴 질 랜 드 | 17,119 | 20,578 | 23,809 | 23,074 | 25,792 |
| 기 타 | 244,243 | 272,689 | 313,192 | 314,904 | 360,903 |

| 구분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총 계 | 8,666,503 | 10,121,950 | 10,678,334 | 12,682,019 | 13,359,701 |
| 일 본 | 3,270,290 | 3,497,525 | 2,715,451 | 2,254,307 | 1,859,190 |
| 중 국 | 2,045,380 | 2,731,121 | 3,923,190 | 5,663,482 | 6,154,730 |
| 미 국 | 694,990 | 733,984 | 743,017 | 798,858 | 859,361 |
| 타 이 완 | 457,680 | 570,442 | 566,200 | 666,805 | 551,362 |
| 홍 콩 | 272,600 | 352,019 | 391,340 | 550,268 | 524,116 |
| 타 이 | 262,703 | 334,502 | 313,347 | 412,217 | 375,021 |
| 말 레 이 시 아 | 136,531 | 161,970 | 187,322 | 227,434 | 223,782 |
| 오스트레일리아 | 114,844 | 121,795 | 114,106 | 129,504 | 134,357 |
| 필 리 핀 | 113,552 | 126,566 | 133,595 | 162,615 | 412,197 |
| 캐 나 다 | 112,417 | 119,943 | 122,330 | 135,163 | 147,715 |
| 싱 가 포 르 | 110,610 | 138,813 | 157,696 | 185,712 | 160,402 |
| 베 트 남 | 106,360 | 110,250 | 114,357 | 141,827 | 199,323 |
| 영 국 | 97,817 | 104,724 | 106,783 | 113,786 | 124,833 |
| 러 시 아 | 86,129 | 104,273 | 119,691 | 164,628 | 190,934 |
| 인 도 네 시 아 | 85,351 | 110,209 | 119,179 | 132,547 | 194,472 |
| 독 일 | 80,142 | 86,327 | 86,759 | 89,004 | 101,251 |
| 프 랑 스 | 60,209 | 63,555 | 67,836 | 73,846 | 85,093 |
| 인 도 | 52,009 | 56,329 | 60,675 | 68,097 | 154,294 |
| 몽 골 | 48,632 | 61,771 | 65,446 | 63,584 | 81,201 |
| 우즈베키스탄 | 29,910 | 42,133 | 44,326 | 48,777 | 59,453 |
| 뉴 질 랜 드 | 25,504 | 28,239 | 27,065 | 29,119 | 28,806 |
| 기 타 | 402,843 | 465,460 | 498,623 | 570,439 | 737,808 |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는 승무원이 제외된 통계이며, 2015년부터는 승무원도 포함된 통계임

## 3. 항구별 외국인 입국현황(승무원제외) 〈표 6-3〉

| 항구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총 계 | 5,321,593 | 5,491,128 | 5,897,517 | 6,942,183 | 7,774,645 |
| 인천공항 | 3,866,921 | 3,950,686 | 4,231,876 | 4,874,647 | 5,360,400 |
| 부산항 | 190,849 | 179,589 | 206,208 | 217,310 | 250,111 |
| 인천항 | 177,076 | 164,660 | 191,630 | 218,857 | 296,826 |
| 김해공항 | 331,965 | 356,163 | 405,783 | 442,303 | 462,688 |
| 제주공항 | 257,840 | 317,566 | 278,252 | 325,048 | 372,620 |
| 대구공항 | 18,544 | 14,733 | 13,932 | 9,455 | 8,700 |
| 여수항 | 1,915 | 3,379 | 3,721 | 3,933 | 4,388 |
| 김포공항 | 403,419 | 423,804 | 474,293 | 747,496 | 867,397 |
| 창원항 | 1,365 | 1,404 | 1,065 | 1,300 | 1,319 |
| 청주공항 | 12,442 | 10,774 | 10,014 | 7,829 | 23,292 |
| 울산항 | 6,748 | 6,940 | 7,984 | 6,717 | 6,772 |
| 감천항 | 8,005 | 7,632 | 7,347 | 7,246 | 7,509 |
| 평택항 | 12,601 | 18,347 | 21,878 | 28,444 | 42,008 |
| 오산공항 | 7,431 | 6,901 | 7,914 | 8,171 | 17,037 |
| 서산항 | 873 | 1,291 | 1,534 | 1,751 | 2,153 |
| 광양항 | 1,250 | 1,325 | 1,726 | 1,606 | 2,164 |
| 군산항 | 3,791 | 3,957 | 9,571 | 22,479 | 24,889 |
| 동해항 | 753 | 984 | 983 | 3,952 | 7,581 |
| 속초항 | 11,709 | 9,019 | 6,682 | 6,015 | 4,138 |
| 무안공항 | - | 414 | 3,425 | 2,771 | 3,490 |
| 양양공항 | 188 | 267 | 679 | 0 | 2,437 |
| 기 타 | 5,908 | 11,293 | 11,020 | 4,853 | 6,726 |

| 항구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총 계 | 8,666,503 | 10,121,950 | 10,678,334 | 12,682,019 | 13,359,701 |
| 인천공항 | 5,810,937 | 6,694,670 | 6,791,570 | 7,910,157 | 7,778,178 |
| 부산항 | 236,334 | 259,977 | 244,125 | 223,248 | 460,625 |
| 인천항 | 364,524 | 364,662 | 416,320 | 465,523 | 543,334 |
| 김해공항 | 578,389 | 706,527 | 768,412 | 826,736 | 789,992 |
| 제주공항 | 374,352 | 610,609 | 1,035,720 | 1,188,019 | 958,601 |
| 대구공항 | 12,039 | 9,962 | 11,961 | 40,523 | 51,145 |
| 여수항 | 4,774 | 12,376 | 10,809 | 4,649 | 20,337 |
| 김포공항 | 1,097,356 | 1,200,431 | 1,080,350 | 1,056,803 | 943,451 |
| 창원항 | 1,879 | 1,658 | 1,659 | 2,380 | 13,526 |
| 청주공항 | 20,577 | 37,470 | 70,967 | 190,906 | 194,255 |
| 울산항 | 8,120 | 7,928 | 8,593 | 8,429 | 48,852 |
| 감천항 | 7,327 | 9,384 | 9,800 | 10,070 | 56,558 |
| 평택항 | 71,655 | 113,328 | 96,698 | 141,425 | 170,805 |
| 오산공항 | 21,388 | 26,380 | 24,943 | 29,920 | 36,431 |
| 서산항 | 2,309 | 2,216 | 2,186 | 2,380 | 6,433 |
| 광양항 | 3,431 | 2,452 | 9,651 | 9,622 | 29,080 |
| 군산항 | 28,568 | 28,877 | 30,859 | 35,035 | 47,844 |
| 동해항 | 11,017 | 9,962 | 8,329 | 8,320 | 21,234 |
| 속초항 | 56 | 526 | 7,452 | 8,879 | 1,386 |
| 무안공항 | 4,135 | 4,591 | 23,639 | 32,019 | 37,727 |
| 양양공항 | 2,253 | 11,320 | 19,231 | 86,785 | 47,005 |
| 기타 | 5,083 | 6,644 | 5,060 | 400,191 | 1,102,902 |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는 승무원이 제외된 통계이며, 2015년부터는 승무원도 포함된 통계임

## 4.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현황(승무원제외) 〈표 6-4〉

| 연도 / 체류자격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총 계 | 5,321,593 | 5,491,128 | 5,897,517 | 6,942,183 | 7,774,645 |
| 사증면제(B-1) | 517,526 | 560,716 | 610,756 | 657,800 | 803,617 |
| 관광통과(B-2) | 3,344,602 | 3,321,271 | 3,526,403 | 4,409,336 | 4,601,828 |
| 단기상용(C-2) | 258,844 | 262,145 | 264,715 | 226,416 | 224,574 |
| 단기종합(C-3) | 501,559 | 505,429 | 503,599 | 617,044 | 959,374 |
| 유 학(D-2) | 35,979 | 52,253 | 64,930 | 85,439 | 106,961 |
| 산업연수(D-3) | 48,203 | 8,881 | 3,080 | 1,371 | 2,274 |
| 일반연수(D-4) | 16,496 | 28,248 | 34,023 | 37,573 | 30,938 |
| 종 교(D-6) | 2,225 | 2,492 | 2,485 | 2,254 | 2,346 |
| 주 재(D-7) | 8,126 | 8,673 | 8,225 | 7,537 | 7,930 |
| 기업투자(D-8) | 36,302 | 42,023 | 41,924 | 36,471 | 37,966 |
| 무역경영(D-9) | 8,099 | 8,672 | 10,545 | 11,729 | 16,848 |
| 교 수(E-1) | 3,500 | 3,993 | 4,819 | 6,184 | 7,454 |
| 회화지도(E-2) | 29,263 | 35,457 | 38,822 | 45,006 | 47,405 |
| 연 구(E-3) | 5,838 | 6,766 | 6,519 | 6,456 | 7,829 |
| 예술흥행(E-6) | 4,518 | 4,185 | 4,845 | 4,577 | 4,183 |
| 특정활동(E-7) | 14,927 | 18,918 | 21,222 | 21,022 | 24,525 |
| 비전문취업(E-9) | 38,713 | 61,818 | 101,272 | 85,654 | 82,099 |
| 선원취업(E-10) | 1,842 | 4,304 | 5,144 | 5,947 | 7,084 |
| 방문동거(F-1) | 120,190 | 61,806 | 29,391 | 29,787 | 34,595 |
| 거 주(F-2) | 93,759 | 109,777 | 113,643 | 114,463 | 122,063 |
| 동 반(F-3) | 21,243 | 23,814 | 24,356 | 25,082 | 26,459 |
| 재외동포(F-4) | 49,005 | 62,429 | 70,030 | 77,948 | 129,142 |
| 영 주(F-5) | 23,732 | 27,763 | 28,294 | 29,257 | 41,561 |
| 기 타 | 137,102 | 269,295 | 378,475 | 397,830 | 445,590 |

| 체류자격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총 계 | 8,666,503 | 10,121,950 | 10,678,334 | 12,682,019 | 13,359,701 |
| 사증면제(B-1) | 909,930 | 1,066,334 | 1,090,907 | 1,426,293 | 1,249,506 |
| 관광통과(B-2) | 4,969,884 | 5,524,120 | 5,040,354 | 5,335,626 | 4,632,593 |
| 단기상용(C-2) | 182,404 | 22 | - | - | |
| 단기방문(C-3) | 1,324,640 | 2,102,656 | 2,728,573 | 3,725,073 | 3,635,898 |
| 유 학(D-2) | 112,291 | 111,219 | 114,818 | 117,836 | 140,160 |
| 산업연수(D-3) | 2,274 | 1,951 | 1,806 | 1,663 | 1,934 |
| 일반연수(D-4) | 37,432 | 34,413 | 37,282 | 45,624 | 62,550 |
| 종 교(D-6) | 2,190 | 4,083 | 2,362 | 2,323 | 2,292 |
| 주 재(D-7) | 8,469 | 8,908 | 9,234 | 9,103 | 8,991 |
| 기업투자(D-8) | 38,102 | 39,584 | 39,859 | 40,550 | 40,795 |
| 무역경영(D-9) | 18,191 | 17,456 | 32,326 | 38,867 | 33,958 |
| 교 수(E-1) | 7,824 | 8,181 | 8,186 | 7,323 | 7,555 |
| 회화지도(E-2) | 44,108 | 40,848 | 38,572 | 34,567 | 32,299 |
| 연 구(E-3) | 8,023 | 8,525 | 9,223 | 9,670 | 9,810 |
| 예술흥행(E-6) | 3,655 | 4,162 | 4,368 | 4,710 | 4,596 |
| 특정활동(E-7) | 29,143 | 35,907 | 36,904 | 39,260 | 43,300 |
| 비전문취업(E-9) | 106,442 | 99,140 | 105,738 | 115,294 | 123,433 |
| 선원취업(E-10) | 8,900 | 7,173 | 8,281 | 9,574 | 9,431 |
| 방문동거(F-1) | 29,597 | 38,883 | 41,740 | 41,043 | 49,310 |
| 거 주(F-2) | 117,377 | 19,099 | 24,948 | 30,189 | 35,728 |
| 동 반(F-3) | 27,671 | 31,704 | 36,544 | 40,173 | 43,222 |
| 재외동포(F-4) | 190,212 | 222,836 | 280,130 | 349,137 | 405,948 |
| 영 주(F-5) | 58,805 | 70,890 | 87,497 | 101,184 | 118,553 |
| 기타 | 428,939 | 618,856 | 898,682 | 1,208,445 | 2,667,839 |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는 승무원이 제외된 통계이며, 2015년부터는 승무원도 포함된 통계임

## 5.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표 6-5〉

| 국가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총 계 | 1,395,077 | 1,445,103 | 1,576,034 | 1,797,618 | 1,899,519 |
| 중 국 | 677,954 | 698,444 | 778,113 | 898,654 | 955,871 |
| 미 국 | 132,133 | 130,562 | 134,711 | 136,663 | 138,660 |
| 베 트 남 | 116,219 | 120,254 | 120,069 | 129,973 | 136,758 |
| 일 본 | 58,169 | 57,174 | 56,081 | 49,152 | 47,909 |
| 필 리 핀 | 47,542 | 42,219 | 47,514 | 53,538 | 54,977 |
| 타 이 | 45,634 | 45,945 | 55,110 | 94,314 | 93,348 |
| 인 도 네 시 아 | 36,971 | 38,018 | 41,599 | 46,945 | 46,538 |
| 우 즈 베 키 스 탄 | 29,742 | 34,688 | 38,515 | 43,852 | 47,103 |
| 몽 골 | 28,634 | 26,461 | 24,175 | 24,561 | 30,527 |
| 타 이 완 | 26,316 | 30,413 | 27,698 | 31,200 | 30,002 |
| 캐 나 다 | 21,812 | 23,051 | 23,655 | 24,353 | 25,177 |
| 스 리 랑 카 | 21,554 | 22,354 | 23,383 | 26,057 | 26,678 |
| 캄 보 디 아 | 17,320 | 24,610 | 31,986 | 38,395 | 43,209 |
| 방 글 라 데 시 | 13,465 | 13,584 | 13,600 | 14,644 | 14,849 |
| 네 팔 | 13,256 | 18,908 | 22,015 | 26,790 | 30,185 |
| 러 시 아 | 10,547 | 11,361 | 12,804 | 14,425 | 19,384 |
| 파 키 스 탄 | 10,341 | 10,027 | 10,423 | 11,209 | 11,987 |
| 호 주 | 9,711 | 10,093 | 12,203 | 12,468 | 12,303 |
| 인 도 | 7,500 | 8,317 | 9,174 | 10,196 | 10,414 |
| 미 얀 마 | 6,479 | 9,218 | 12,678 | 15,921 | 19,209 |
| 영 국 | 6,382 | 6,814 | 7,998 | 7,398 | 7,275 |
| 기 타 | 57,396 | 62,588 | 72,530 | 86,910 | 97,156 |

## 6.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표 6-6〉

| 체류자격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총 계 | 1,395,077 | 1,445,103 | 1,576,034 | 1,797,618 | 1,899,519 |
| 사증면제(B-1) | 36,639 | 41,934 | 47,890 | 93,619 | 95,427 |
| 관광통과(B-2) | 88,976 | 91,324 | 87,908 | 96,113 | 104,287 |
| 단기방문(C-3) | 68,104 | 123,630 | 131,951 | 146,357 | 154,105 |
| 단기취업(C-4) | 638 | 377 | 759 | 593 | 685 |
| 유 학(D-2) | 68,039 | 64,030 | 60,466 | 61,257 | 66,334 |
| 기술연수(D-3) | 4,324 | 3,854 | 3,648 | 3,507 | 3,497 |
| 일반연수(D-4) | 36,819 | 22,195 | 23,005 | 27,000 | 31,810 |
| 종 교(D-6) | 1,592 | 1,557 | 1,770 | 1,855 | 1,727 |
| 상사주재(D-7) | 1,646 | 1,563 | 1,659 | 1,593 | 1,492 |
| 기업투자(D-8) | 7,405 | 7,122 | 6,053 | 6,026 | 5,924 |
| 무역경영(D-9) | 4,472 | 4,854 | 8,272 | 8,856 | 7,236 |
| 교 수(E-1) | 2,474 | 2,631 | 2,637 | 2,664 | 2,612 |
| 회화지도(E-2) | 22,541 | 21,603 | 20,030 | 17,949 | 16,144 |
| 연 구(E-3) | 2,606 | 2,820 | 2,997 | 3,195 | 3,145 |
| 예술흥행(E-6) | 4,246 | 4,528 | 4,940 | 5,162 | 4,924 |
| 특정활동(E-7) | 14,397 | 17,451 | 18,213 | 19,109 | 20,299 |
| 비전문취업(E-9) | 234,295 | 230,237 | 246,695 | 270,569 | 276,042 |
| 선원취업(E-10) | 9,661 | 10,424 | 12,163 | 14,403 | 15,138 |
| 방문동거(F-1) | 45,092 | 52,674 | 60,927 | 71,203 | 85,759 |
| 거 주(F-2) | 138,418 | 63,362 | 39,704 | 37,504 | 38,881 |
| 동 반(F-3) | 17,607 | 18,795 | 20,150 | 21,809 | 22,652 |
| 재외동포(F-4) | 136,702 | 189,508 | 235,953 | 289,427 | 328,187 |
| 영 주(F-5) | 64,979 | 84,140 | 100,171 | 112,742 | 123,255 |
| 방문취업(H-2) | 303,368 | 238,765 | 240,178 | 282,670 | 285,342 |
| 기 타 | 80,037 | 145,725 | 197,895 | 202,436 | 204,615 |

## 7. 사무소(출장소)별 등록외국인 현황 〈표 6-7〉

| 연도 / 사무소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총 계 | 982,461 | 932,983 | 985,923 | 1,091,531 | 1,143,087 |
| 서 울 | 251,109 | 221,420 | 105,767 | 115,235 | 118,466 |
| 서 울 남 부 | - | - | 113,922 | 127,086 | 130,208 |
| 부 산 | 56,948 | 56,041 | 58,069 | 63,060 | 66,351 |
| 인 천 | 79,438 | 74,997 | 80,807 | 90,072 | 94,630 |
| 수 원 | 122,720 | 115,903 | 126,717 | 144,892 | 153,856 |
| 제 주 | 7,128 | 8,736 | 10,864 | 14,204 | 16,960 |
| 대 구 | 44,450 | 38,016 | 40,554 | 44,165 | 46,183 |
| 대 전 | 28,794 | 28,605 | 29,396 | 31,396 | 33,696 |
| 여 수 | 4,392 | 4,651 | 4,876 | 5,270 | 5,734 |
| 양 주 | 33,286 | 31,660 | 32,815 | 34,854 | 35,473 |
| 광 주 | 21,505 | 22,109 | 23,579 | 26,006 | 27,635 |
| 창 원 | 27,838 | 26,907 | 28,189 | 30,725 | 31,728 |
| 춘 천 | 9,094 | 8,656 | 9,059 | 9,854 | 10,138 |
| 청 주 | 24,479 | 23,637 | 26,214 | 29,348 | 31,290 |
| 전 주 | 17,557 | 17,609 | 18,416 | 19,864 | 20,661 |
| 울 산 | 18,422 | 25,819 | 29,637 | 34,280 | 35,380 |
| 세 종 로 ( 출 ) | 59,649 | 54,537 | 53,931 | 56,466 | 59,947 |
| 안 산 ( 출 ) | 64,484 | 64,425 | 75,301 | 83,738 | 87,233 |
| 구 미 ( 출 ) | 11,530 | 11,470 | 12,612 | 13,463 | 13,360 |
| 포 항 ( 출 ) | 6,014 | 5,931 | 6,425 | 6,985 | 7,166 |
| 천 안 ( 출 ) | 26,536 | 26,397 | 29,109 | 31,637 | 32,239 |
| 서 산 ( 출 ) | 9,058 | 9,263 | 9,959 | 11,264 | 6,925 |
| 고 양 ( 출 ) | 20,689 | 19,229 | 19,811 | 21,037 | 22,024 |
| 목 포 ( 출 ) | 10,568 | 9,947 | 10,272 | 12,469 | 14,122 |
| 거 제 ( 출 ) | 8,924 | 9,028 | 11,272 | 13,724 | 15,051 |
| 군 산 ( 출 ) | 4,294 | 4,421 | 4,651 | 5,222 | 5,533 |
| 기 타 | 13,555 | 13,569 | 13,699 | 14,215 | 21,098 |

## 8.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표 6-8〉

| 지역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총 계 | 982,461 | 932,983 | 985,923 | 1,091,531 | 1,143,087 |
| 서 울 | 279,220 | 247,108 | 244,410 | 266,360 | 274,957 |
| 부 산 | 35,116 | 35,049 | 35,943 | 38,315 | 39,991 |
| 경 기 | 302,447 | 288,251 | 314,715 | 352,166 | 369,665 |
| 강 원 | 13,332 | 12,901 | 13,409 | 14,443 | 15,108 |
| 충 북 | 25,730 | 24,830 | 27,481 | 30,671 | 32,637 |
| 충 남 | 48,091 | 48,501 | 52,399 | 57,316 | 60,064 |
| 전 북 | 21,851 | 22,030 | 23,067 | 25,086 | 26,194 |
| 전 남 | 23,797 | 23,602 | 24,544 | 28,254 | 30,566 |
| 경 북 | 39,984 | 40,067 | 43,499 | 47,805 | 49,765 |
| 경 남 | 65,960 | 64,371 | 69,126 | 77,778 | 82,316 |
| 제 주 | 7,128 | 8,736 | 10,864 | 14,204 | 16,960 |
| 울 산 | 18,421 | 19,247 | 22,427 | 25,885 | 26,183 |
| 대 구 | 22,014 | 21,922 | 23,302 | 25,203 | 26,141 |
| 인 천 | 50,217 | 47,305 | 50,382 | 55,323 | 57,669 |
| 광 주 | 14,106 | 14,492 | 15,557 | 17,064 | 18,455 |
| 대 전 | 15,047 | 14,571 | 14,798 | 15,658 | 16,416 |

## 9.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표 6-9〉

| 구분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총 계 | 88,468 | 84,711 | 81,847 | 86,410 | 96,357 |
| 유 학 ( D - 2 ) | 68,039 | 64,030 | 60,466 | 61,257 | 66,334 |
| 한국어연수(D-41) | 20,429 | 20,681 | 21,381 | 25,138 | 30,017 |
| 외국어연수(D-47) | - | - | - | 15 | 6 |
| 증 감 률 ( 전 년 대 비 , % ) | (1.1%) | (-4.2%) | (-3.4%) | (5.6%) | (11.5%) |

| 국가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총 계 | 88,468 | 84,711 | 81,847 | 86,410 | 96,357 |
| 중 국 | 65,271 | 57,798 | 54,235 | 55,008 | 59,192 |
| 베 트 남 | 3,100 | 3,261 | 3,760 | 5,177 | 7,445 |
| 몽 골 | 4,958 | 4,952 | 4,166 | 3,735 | 4,847 |
| 일 본 | 2,083 | 2,334 | 2,184 | 2,147 | 2,213 |
| 미 국 | 933 | 956 | 1,001 | 1,081 | 1,119 |
| 우 즈 베 키 스 탄 | 701 | 702 | 771 | 1,064 | 1,442 |
| 인 도 | 753 | 772 | 870 | 1,011 | 1,059 |
| 말 레 이 시 아 | 581 | 633 | 714 | 860 | 961 |
| 러 시 아 | 503 | 479 | 583 | 725 | 702 |
| 방 글 라 데 시 | 593 | 562 | 570 | 620 | 677 |
| 네 팔 | 467 | 562 | 581 | 616 | 690 |
| 필 리 핀 | 530 | 511 | 583 | 590 | 660 |
| 타 이 완 | 570 | 602 | 733 | 890 | 911 |
| 파 키 스 탄 | 513 | 695 | 879 | 1,052 | 1,164 |
| 인 도 네 시 아 | 615 | 782 | 962 | 1,011 | 1,316 |
| 기 타 | 6,297 | 9,110 | 9,255 | 10,823 | 11,959 |

## 10. 국민의 배우자 체류현황 〈표 6-10〉

| 연 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인 원 | 144,681 | 148,498 | 150,865 | 150,994 | 151,608 |
| 증감률 (전년대비, %) | (2.1%) | (2.6%) | (1.6%) | (0.1%) | (0.2%) |

| 국가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총 계 | 144,681 | 148,498 | 150,865 | 150,994 | 151,608 |
| 중 국 | 64,173 | 63,035 | 62,400 | 60,663 | 58,788 |
| 베 트 남 | 37,516 | 39,352 | 39,854 | 39,725 | 40,847 |
| 필 리 핀 | 8,367 | 9,611 | 10,383 | 11,052 | 11,367 |
| 일 본 | 11,162 | 11,746 | 12,220 | 12,603 | 12,861 |
| 캄 보 디 아 | 4,583 | 4,541 | 4,650 | 4,618 | 4,555 |
| 몽 골 | 2,393 | 2,395 | 2,368 | 2,394 | 2,384 |
| 타 이 | 2,603 | 2,618 | 2,643 | 2,675 | 2,821 |
| 미 국 | 2,410 | 2,653 | 2,845 | 3,006 | 3,192 |
| 우 즈 베 키 스 탄 | 1,840 | 2,017 | 2,141 | 2,219 | 2,244 |
| 캐 나 다 | 1,158 | 1,240 | 1,268 | 1,300 | 1,295 |
| 러 시 아 | 1,319 | 1,179 | 1,311 | 1,308 | 1,305 |
| 파 키 스 탄 | 720 | 787 | 847 | 889 | 915 |
| 네 팔 | 840 | 1,027 | 1,112 | 1,138 | 1,081 |
| 방 글 라 데 시 | 397 | 367 | 353 | 352 | 355 |
| 인 도 네 시 아 | 507 | 525 | 555 | 616 | 653 |
| 영 국 | 558 | 625 | 698 | 742 | 792 |
| 타 이 완 | 520 | 573 | 645 | 740 | 823 |
| 기 타 | 3,615 | 4,207 | 4,572 | 4,954 | 5,330 |

## 11. 연도별 국적 처리현황 〈표 6-11〉

| 국가 \ 연도 | 허가 유형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합 계 | 귀 화 | 16,090 | 10,541 | 11,270 | 11,314 | 10,924 |
| | 회 복 | 2,265 | 1,987 | 2,686 | 2,886 | 2,610 |
| 중 국 | 귀 화 | 10,946 | 6,182 | 5,380 | 6,650 | 6477 |
| | 회 복 | 653 | 101 | 421 | 402 | 193 |
| 베 트 남 | 귀 화 | 3,091 | 2,964 | 3,952 | 2,977 | 2,722 |
| | 회 복 | 178 | 47 | 82 | 67 | 47 |
| 필 리 핀 | 귀 화 | 496 | 332 | 524 | 392 | 280 |
| | 회 복 | 21 | 7 | 8 | 8 | 6 |
| 몽 골 | 귀 화 | 158 | 106 | 112 | 120 | 101 |
| | 회 복 | 17 | 4 | 11 | 13 | 10 |
| 우즈베키스탄 | 귀 화 | 72 | 70 | 90 | 80 | 81 |
| | 회 복 | 30 | 5 | 20 | 16 | 28 |
| 일 본 | 귀 화 | 46 | 24 | 40 | 30 | 44 |
| | 회 복 | 39 | 33 | 44 | 52 | 49 |
| 타 이 | 귀 화 | 44 | 59 | 79 | 71 | 45 |
| | 회 복 | 23 | 13 | 12 | 13 | 5 |
| 파 키 스 탄 | 귀 화 | 37 | 17 | 33 | 39 | 24 |
| | 회 복 | 0 | 0 | 0 | 1 | 0 |
| 기 타 | 귀 화 | 1,200 | 787 | 1,060 | 955 | 1,150 |
| | 회 복 | 1,304 | 1,777 | 2,088 | 2,307 | 2,272 |

## 12.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체류현황 〈표 6-12〉

| 구분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총 계 | 550,931 | 541,783 | 602,226 | 704,536 | 754,427 |
| 중 국 | 477,163 | 457,208 | 512,120 | 606,964 | 647,717 |
| 미 국 | 40,786 | 44,567 | 45,253 | 46,426 | 46,737 |
| 캐 나 다 | 11,351 | 12,988 | 13,586 | 14,598 | 15,397 |
| 우 즈 베 키 스 탄 | 9,093 | 11,954 | 14,385 | 17,637 | 20,653 |
| 러 시 아 | 3,596 | 4,247 | 5,051 | 5,524 | 8,590 |
| 오 스 트 레 일 리 아 | 3,251 | 3,726 | 3,955 | 4,288 | 4,521 |
| 뉴 질 랜 드 | 1,439 | 1,753 | 1,972 | 2,155 | 2,310 |
| 카 자 흐 스 탄 | 950 | 1,292 | 1,494 | 1,869 | 2,504 |
| 독 일 | 814 | 889 | 875 | 916 | 920 |
| 일 본 | 655 | 772 | 816 | 802 | 812 |
| 기 타 | 1,833 | 2,387 | 2,719 | 3,357 | 4,266 |

## 13. 연도별 난민심사 및 처리현황 〈표 6-13〉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합계 | '94~'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
| 난민 신청 | 15,250 | 809 | 278 | 717 | 364 | 324 | 423 | 1,011 | 1,143 | 1,574 | 2,896 | 5,711 |
| 난민 인정 | 576 | 41 | 11 | 13 | 36 | 70 | 47 | 42 | 60 | 57 | 94 | 105 |
| 인도적 체류허가 | 910 | 27 | 13 | 9 | 14 | 22 | 35 | 20 | 31 | 6 | 539 | 194 |

# 자 료

Ⅰ. 직 제

Ⅱ.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Ⅲ. 장관 연설문

Ⅳ.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Ⅴ.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Ⅵ. 인 사

Ⅶ. 국외훈련·출장

Ⅷ. 국제교류 현황

Ⅸ. 상 훈

Ⅹ. 위원회 현황

Ⅺ.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 목 차

Ⅰ. 직 제 ····· 465

1. 직제 연혁 ····· 465
2. 조직도 ····· 496
3. 정원 변동표 ····· 497

Ⅱ. 훈령 · 예규 및 주요지시 ····· 500

1. 훈 령 ····· 500
2. 예 규 ····· 509
3. 주요지시 ····· 512

Ⅲ. 장관 연설문 ····· 520

Ⅳ. 역대 법무 · 검찰 간부 명단 ····· 595

1. 법무부장관 ····· 595
2. 검찰총장 ····· 597
3. 법무부차관 ····· 598
4. 대검찰청 차장검사 ····· 600
5. 법무부 실 · 국 · 본부장 ····· 601

Ⅴ.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 608

1. 본 부 ····· 608
2. 법무연수원 ····· 612
3. 검 찰 청 ····· 613
4. 보호관찰 · 소년보호기관 ····· 646
5.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 649

6. 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국인보호소 ·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 ····· 652

Ⅵ. 인 사 ····· 653

Ⅶ. 국외훈련 · 출장 ····· 654

Ⅷ. 국제교류 현황 ····· 655

1. 외국 주요인사 법무부 방문 현황 ····· 655
2. 중요 국제회의 참가 현황 ····· 658

Ⅸ. 상 훈 ····· 665

1. 총 괄 ····· 665
2. 훈장 · 포장 · 표창자 명단 ····· 666

Ⅹ. 위원회 현황 ····· 681

1. 총 괄 ····· 681
2. 위원회 개요 ····· 681

Ⅺ.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 687

# Ⅰ. 직 제

## 1. 직제 연혁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1 | 1948. 7.17. | 법률 제1호 | 정부조직법 제정 공포 | ○ 정부수립과 동시 법무부 설치 |
| 2 | 1948. 9.13. | 대통령령 제3호 |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 | ○ 과도정부 사법부(법률기초국과 법률조사국 제외)와 그 소속 기관을 인수 |
| 3 | 1948.11. 4. | 대통령령 제21호 | 법무부직제 제정 공포 | ○ 1실 4국 21과 설치 |
| 4 | 1950. 3.31. | 대통령령 제307호 | 법무부직제 개정 | ○ 3국 10과로 개편 |
| 5 | 1954. 9. 1. | 대통령령 제936호 | 〃 | ○ 법무국 조사과 폐지, 소년과 신설 |
| 6 | 1955. 2. 7. | 법률 제354호 | 정부조직법 개정 | ○ 법제처를 법제실로 개칭하고 법무부에 소속시킴 |
| 7 | 1955. 2.17. | 대통령령 제1008호 | 법제실직제 제정 공포 | ○ 법제실에 제1·2국을 두고 제1국에 운영지원과를 둠 |
| 8 | 1960. 7. 1. | 법률 제552호 | 정부조직법 개정 | ○ 정무차관·사무차관 신설, 법제실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국무원 사무국으로 이관 |
| 9 | 1961. 8.25. | 법률 제698호 | 〃 | ○ 정무차관·사무차관 폐지 기획조정관 신설 |
| 10 | 1961.10. 2. | 각령 제177호 | 법무부직제 개정 | ○ 검찰국에 출입국관리과 신설, 김포·인천·부산에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 |
| 11 | 1962. 5.21. | 각령 제770호 | 〃 | ○ 형정국을 교정국으로, 형무과를 교정과로 각 개칭, 출입국관리과를 법무국으로, 소년과를 교정국으로 각 이관 |
| 12 | 1962. 7. 4. | 각령 제885호 | 공보사무담당공무원의배치 및 직무에관한건 제정 공포 | ○ 공보담당 일반직 3급갑류 1인 신설 |
| 13 | 1963.12.14. | 법률 제1506호 | 정부조직법 개정 | ○ 기획조정관실을 기획관리실로 개칭 |
| 14 | 1966.10.26. | 대통령령 제2798호 | 법무부직제 개정 | ○ 일본국 해외주재관 2명 주재 |
| 15 | 1967. 4.10. | 대통령령 제2986호 | 〃 | ○ 법무국을 법무실로 승격하고 소송수행담당관 신설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16 | 1967. 7. 7. | 대통령령 제3139호 | 법무부직제 개정 | ○ 교정국에 시설과 설치 |
| 17 | 1969. 3.24. | 대통령령 제3829호 | 〃 | ○ 기획관리실에 비상계획담당관 신설 |
| 18 | 1970. 2.20. | 대통령령 제3900호 | 〃 | ○ 비상계획담당관을 비상계획관으로 하고 그 밑에 비상계획보좌관을 둠 |
| 19 | 1970. 2.27. | 대통령령 제4678호 | 〃 | ○ 본부 각과의 계제도 폐지, 출입국관리담당관 신설. 경제기획원에 주재관(3갑) 신설 |
| 20 | 1970. 8.20. | 대통령령 제5278호 | 〃 | ○ 출입국관리담당관을 출입국관리국으로 확대개편하고 그 밑에 입국심사과·체류심사과 설치 |
| 21 | 1973. 3.14. | 대통령령 제6570호 | 〃 | ○ 교정국장 밑에 교정기획관 신설, 비상계획관은 차관직속으로 개편 |
| 22 | 1973. 3.28. | 대통령령 제6594호 | 〃 | ○ 공보담당관(3갑)을 공보관(2갑, 2을 또는 별정직)으로 조정 |
| 23 | 1975. 7.16. | 대통령령 제7697호 | 〃 | ○ 검찰과를 검찰 제1·2·3·4과로 하고 인권옹호과를 인권과로 개편하여 법무실 이관, 출입국관리국에 기록관리과 신설 |
| 24 | 1976.12. 9. | 대통령령 제8293호 | 〃 | ○ 출입국관리국장 밑에 출입국관리심의관 신설 |
| 25 | 1977. 9.20. | 대통령령 제8698호 | 〃 | ○ 차관 밑에 감사관 신설 |
| 26 | 1978. 5. 2. | 대통령령 제9000호 | 〃 | ○ 법무실에 조사과를 신설하고 송무과를 송무제1·2과로 하며, 교정국에 보안과·직업훈련과를 신설하고 계획과를 작업지도과로 개칭 |
| 27 | 1981. 1. 9. | 대통령령 제10160호 | 〃 | ○ 보호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보호과·조정과·심사과를 설치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28 | 1981.11. 2. | 대통령령 제10526호 | 법무부직제 개정 | ○ 송무담당관 2인을 1인으로 감축하고, 법무실의 송무제1·2과를 송무과로 통합. 검찰국장 밑에 연구검사 신설. 교정국의 교정기획관을 폐지하고 관리과를 재정과로, 직업훈련과를 교육과로 개칭. 출입국관리국의 출입국관리심의관을 폐지함 |
| 29 | 1982. 8.11. | 대통령령 제10891호 | 〃 | ○ 검사로 보하게 되어있던 실·국장 및 과장을 검사장 및 고등검찰관으로 하고, 송무담당관을 검사장으로 함 |
| 30 | 1983. 7.22. | 대통령령 제11179호 | 〃 | ○ 검사장으로 보하게 되어 있던 실·국장을 검사장 및 고등검찰관으로 하고 출입국관리국장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며, 법무실·검찰국·보호국 소속과장 직급을 고등검찰관에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조정. 송무담당관과 조사과를 폐지하고 법무실장 밑에 법무심의관, 교정국장 밑에 교정심의관과 교화심의관을 신설하며, 비서관 직급을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으로 조정 |
| 31 | 1984.12.31. | 대통령령 제11592호 | 〃 | ○ 교정국 소속의 소년과를 보호국 소속으로 하고, 조정과를 조사과로, 심사과를 관찰과로 하며, 교정국에 경비과를 신설함. 법무심의관의 기능 일부 조정 |
| 32 | 1986. 4. 3. | 대통령령 제11879호 | 〃 | ○ 보호국장을 고등검찰관에서 검사장으로 직급 조정하고, 별정직 전산처리사 4인(6급상당 2인, 7급상당 2인)을 전산처리사 또는 별정직으로 직렬 조정 |
| 33 | 1986.10.11. | 대통령령 제11978호 | 〃 | ○ 법무실에 섭외법무심의관, 교정국에 보안제2과를 신설하고, 보안과를 보안제1과로 개편 |
| 34 | 1988.12. 2. | 대통령령 제12553호 | 〃 | ○ 교정국 시설과를 기획관리실 시설관리담당관으로 개편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35 | 1990.10.29. | 대통령령 제13149호 | 법무부직제 개정 | ○ 법무실 송무과를 송무심의관으로 개편, 섭외법무심의관을 국제법무심의관으로 명칭 변경 |
| 36 | 1991. 2. 1. | 대통령령 제13279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법무부와 산하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직제를 법무부와 그소속기관직제(법무부·법무연수원·교도소·치료감호소·소년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합 조정 |
| 37 | 1991. 9.30. | 대통령령 제13483호 | 〃 | ○ 교화심의관, 경비과 폐지(4개 지방교정청 신설에 따름), 출입국기획과 신설,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 폐지 및 입국심사과를 출입국심사과로 변경<br>○ 서울·대구·대전·광주 지방교정청 신설<br>○ 영등포·수원·부산·마산교도소와 인천구치소에 분류심사과 신설<br>○ 광주소년감별소 신설<br>○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 신설<br>○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산실 설치 |
| 38 | 1992. 2.15. | 대통령령 제13588호 | 〃 | ○ 법무실에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관계법령 정비를 위하여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신설 |
| 39 | 1992. 8.31. | 대통령령 제13720호 | 〃 | ○ 법무시설공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담당관을 시설기획담당관과 건설관리담당관으로 확대개편<br>○ 청송제2교도소 신설<br>○ 서울남부·의정부·울산보호관찰지소 신설<br>○ 서울외국인수용소와 의정부·대산출장소 신설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 | | |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국에 조사2과, 김포·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과 신설 |
| 40 | 1993. 3.30. | 대통령령 제13872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부칙 제7조제5항) | ○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명칭변경<br>○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명칭변경 |
| 41 | 1993. 6.28. | 대통령령 제13918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검사정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 ○ 법무부 기획관리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보호국장·교정국장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으로, 법무실·검찰국·보호국(소년과 제외) 각 과장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법무실의 법무·송무·국제법무심의관을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보함<br>○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으로, 기획과장 및 교관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연구위원 중 3인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 또는 검사"로 보함 |
| 42 | 1994. 1.17. | 대통령령 제14124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중앙행정기관의 중간정책관리계층을 보강하기 위하여 주요 계장의 직위를 4급으로도 보할 수 있게 함(운영지원과 1, 기획예산담당관실 1, 교정과 1, 출입국기획과 1) |
| 43 | 1994. 2. 5. | 대통령령 제14157호 | 〃 | ○ 공보관을 이사관·부이사관 2·3급 별정직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게 함<br>○ 보호국의 검찰사무직중 조사과 3인(검찰사무직 또는 보도직), 관찰과 3인(검찰사무직 또는 보호관찰직)을 복수직화<br>○ 울산구치소 신설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44 | 1994. 4.30. | 대통령령 제14237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법무실의 송무심의관을 송무과로 개편<br>○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중 검사 연구위원(3인)을 폐지하고 그 중 검사장 1인을 감축하며, 나머지 검사 2인은 교관으로 활용함<br>○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 설치 |
| 45 | 1994. 9.17. | 대통령령 제14383호 | 〃 | ○ UR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법령 정비의 지원 및 통상법률 관계 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국제법무 심의관실에 검사 2인을 증원 |
| 46 | 1995. 3.23. | 대통령령 제14548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소년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 | ○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명칭 변경 |
| 47 | 1995. 4.12. | 대통령령 제14584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을 보강하고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주요 과장 및 과장급 담당관의 직위를 3급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4급 정원 중 3인(운영지원과장·교정과장·출입국기획과장)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br>○ 주요 기획사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을 확대하여 5급 정원 중 11인(공보관실·행정관리담당관실·시설기획담당관실·건설관리담당관실·법무과·검찰제1과·검찰제2과·보호과·소년과·보안제1과·출입국심사과)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 |
| 48 | 1995. 7. 8. | 대통령령 제14724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출입국심사과를 입국심사과로 개편<br>○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구·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직급 하향조정(별정직 3급상당→별정직 4급상당)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 | | |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3과 신설 |
| 49 | 1995.10.19. | 대통령령 제14792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교정국장의 직급을 검사장에서 검사장·교정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으로 복수직화 |
| 50 | 1996. 6.29. | 대통령령 제15064호 | 〃 | ○ 보호국의 소년과를 소년제1과와 소년제2과로 개편<br>○ 서울지방교정청에 수원구치소 및 수원구치소 평택구치지소를 각각 신설<br>○ 대전보호관찰소에 홍성지소를 신설<br>○ 중앙행정기관의 주요과장 및 주요계장의 복수직급화 계획에 따라 본부의 4급정원 3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10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하고 소속기관의 4급정원 6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22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br>○ 중앙행정기관의 실무기획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6급 및 7급 정원 11인을 감축하여 그중 9인을 5급으로 상향조정 |
| 51 | 1997. 3.20. | 대통령령 제15305호 | 〃 | ○ 기능직공무원 25인 감축 |
| 52 | 1997. 8.13. | 대통령령 제15459호 | 〃 | ○ 소년제1과장 직급을 3·4급 복수직급화<br>○ 대전교도소강경구치지소를 신설하고, 인천구치소 부소장을 신설<br>○ 대구보호관찰소에 김천지소, 대전·수원보호관찰소에 사무과·관호과 신설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 | | | ○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장소로 축소개편하고,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며, 대구·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심사과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과를 두고, 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
| | | | | ○ 보호관찰, 계호, 출입국심사인력 등 222인 증원 |
| 53 | 1997. 8.13. | 대통령령 제15462호 |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일부 개정 | ○ 실무·기획인력조정 및 복수직급화로 일부 직급의 정원 조정(6·7급 26인 감, 5급 9인 증) |
| 54 | 1997. 8.23. | 대통령령 제15467호 |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일부 개정 | ○ 법무연수원 상임연구위원 4인(1급 2, 2급 2) 신설 |
| 55 | 1998. 2.28. | 대통령령 제15711호<br>법무부령 제455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br>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정 | ○ 각부처의 조직운영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따라 기존직제의 전문개정과 함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법무부령)을 제정 |
| | | | | ○ 시설기획담당관실과 건설관리담당관실을 통합하여 시설관리담당관실로 개편(정원 34인→26인) |
| | | | | ○ 기획관리실에 여성정책담당관실(정원 7인) 신설 |
| | | | | ○ 국제법무심의관실을 국제법무과로 명칭변경하고 비상계획관을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변경 |
| | | | | ○ 본부 기구개편에 따라 정원 13인 감축 |
| | | | | ○ 법무연수원 자료과를 폐지하고 분장사무를 기획과로 이관(정원 7인 감축) |
| | | | | ○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의 관리국·교화국 폐지 |
| 56 | 1998. 4. 1. | 대통령령 제15765호<br>법무부령 제460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br>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법무연수원에 상임연구위원 1인 증원(2급) |
| 57 | 1998. 7. 1. | 법무부령 제462호 | 〃 | ○ 서울소년원 대덕지원 신설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58 | 1998.12. 7. | 법무부령 제468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br>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교정국의 교정행정 전산업무를 보안제1과 분장사무에서 교정과 분장사무로 조정<br>○ 출입국관리국 기록관리과를 출국심사과로 명칭 변경 |
| 59 | 1998.12.31. | 대통령령 제16006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법무연수원 기획부와 일반연수부를 기획부로 통합 |
| | | 법무부령 제470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대구구치소 신설<br>○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br>○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조정 |
| 60 | 1999. 5.24. | 대통령령 제16337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
| | | 법무부령 제481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비상계획담당관 폐지<br>○ 소년분류심사원의 관호과를 교무과로 명칭변경 |
| 61 | 1999.12. 2. | 법무부령 제488호 | 〃 | ○ 출국심사과를 출국관리과로 명칭변경<br>○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 신설 |
| 62 | 2000. 2.28. | 대통령령 제16725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규정 | ○ 개방형임용제 실시를 위하여 교정심의관·교정연수부장·천안개방교도소장·치료감호소장·치료감호소 의료부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
| 63 | 2000. 3. 7. | 대통령령 제16748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정보화담당관실 신설 및 보호국 조사과 폐지 |
| | | 법무부령 제493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보호관찰소 서울서부·수원성남·부산서부지소 신설<br>○ 대덕지원을 대덕소년원으로 승격 |
| 64 | 2000.11.20. | 대통령령 제17003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서울외국인보호소를 화성으로 이전,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명칭변경 |
| | | 법무부령 제499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기획검사 설치 근거규정 신설 |
| 65 | 2001. 3.29. | 대통령령 제17163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명칭 변경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 | 법무부령 제 504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로 명칭 변경 |
| 66 | 2001. 4.23. | 대통령령 제17201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법무실에 법조인력정책과 신설 |
| | 2001. 4.24. | 법무부령 제 505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대구·대전·안양·광주·전주·마산·의정부·춘천교도소에 출정과 신설 |
| | | | |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신설 |
| 67 | 2001. 9.29. | 대통령령 제17370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신설 |
| | 2001.10.10. | 법무부령 제 509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수원교도소를 여주로 이전하고, 여주교도소로 명칭 변경 |
| | | | |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신설 |
| 68 | 2002. 3.25. | 대통령령 제17549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 | ○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신설 |
| | | | | ○ 여주교도소 계호인력 29인 증원 |
| | 2002. 3.30. | 법무부령 제513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신설에 따른 45인 증원 및 여주교도소 계호인력 29인 증원 |
| | | | | ○ 본부 공보관실 소속 촬영기사의 직급을 7급상당에서 6급상당으로 상향조정 |
| 69 | 2002. 5.27. | 대통령령 제17610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서울소년원에 창업지원과 신설 |
| | 2002. 6. 8. | 법무부령 제520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실무인력 50인 증원 |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무인력 16인 증원 |
| | | | | ○ 광주 및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4급) |
| 70 | 2002. 7.10. | 대통령령 제17664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안산의료소년원 신설 (2002. 10. 1.부) |
| | 2002. 8. 9. | 법무부령 제523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 | | | | ○ 청주여자교도소를 확장함에 따라 계호인력 6인 증원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71 | 2002. 8.16.<br>2002. 8.16. | 대통령령 제17715호<br>법무부령 제526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br>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법무연수원 상임연구위원(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검사→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br>○ 본부 교화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과장급 직위로 정함 |
| 72 | 2002.11. 9. | 법무부령 제527호 | 〃 |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및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신설 |
| 73 | 2003. 5.15. | 법무부령 제530호 | 〃 | ○ 장관정책보좌관 신설<br>-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인<br>-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교정감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인 |
| 74 | 2003. 7.25.<br>2003. 8.22. | 대통령령 제18054호<br>법무부령 제537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br>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 신설 및 이에 따른 소요 인력 6인 증원 |
| 75 | 2003. 9.29. | 대통령령 제18107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법무부 개방형직위 중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직위를 출입국관리국장 직위로 대체 지정하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직업훈련교사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
| 76 | 2003.12. 3. | 대통령령 제18148호 | 〃 |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2004. 1. 1.부)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신설<br>○ 출입국심사업무에 필요한 인원 43인 증원 |
| 77 | 2003.12.30.<br>2003.12.31. | 대통령령 제18195호<br>법무부령 제544호 | 〃<br>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충주구치소와 포항구치소 신설 및 이에 소요되는 인원 120인 증원<br>○ 창원소년원 신설 및 이에 소요되는 인원 15인 증원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78 | 2004. 1.29.<br>2004. 2. 9. | 대통령령 제18252호<br>법무부령 제545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br>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치료감호소에 약물중독재활센터 신설 및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24인 증원<br>○ 보호관찰전담인력 45인 및 구치소·교도소의 호송·계호인력 100인 증원 |
| 79 | 2004. 2. 9.<br>2004. 2.28. | 대통령령 제18275호<br>법무부령 제547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br>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법무부 본부의 정책·기획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부의 6·7급 정원 중 13명을 5급으로 조정<br>○ 법무부 소속기관의 집행기능 강화를 위하여 7급 정원 중 58명을 6급으로 조정 |
| 80 | 2004. 3.22.<br>2004. 3.22. | 대통령령 제18328호<br>법무부령 제548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br>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4개 중앙행정기관 등에 업무혁신전담기구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기획관리실장 밑에 행정관리담당관을 없애는 대신 인사·조직 및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혁신인사담당관을 신설하고, 혁신인사담당관의 분장업무를 정함 |
| 81 | 2004. 5.24.<br>2004. 6.12. | 대통령령 제18399호<br>법무부령 제554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br>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 청주외국인보호소 및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성출장소를 신설하고, 그 실무인력 59인 증원<br>○ 계호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원된 실무인력 92인 증원 |
| 82 | 2004.12.31. | 대통령령 제18643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감찰관을 신설하고, 일부 보호감호소 및 소년교도소의 명칭을 변경<br>○ 상사실무인력 및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강화를 통하여 외국인고용 허가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인천공항의 출입국 심사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인력 보강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83 | 2005. 3. 2.<br><br>2005. 3.24. | 대통령령 제18729호<br><br>법무부령 제564호 |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 기록연구사 6급 1인 증원<br>○ 정책·기획업무 중심으로 실무인력구조를 재조정함으로써 정책역량의 강화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범위안에서 직급조정<br>- 본부 : 5급 8명 증원, 6급 6명, 7급 2명 감축<br>- 소속기관 : 6급 49명 증원, 7급 49명 감축 |
| 84 | 2005. 4.15.<br>2005. 5. 2. | 대통령령 제18876호<br>법무부령 제568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 단위 기구의 설치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br><br>○ 정책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통합·신설하며, 홍보관리관(구 공보관) 설치 및 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담당관을 설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재정기획관실로 명칭 변경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총 3인(4급 1인, 5급 2인)을 증원<br>○ 성매매사범의 보호관찰실시와 외출제한명령 전면시행 등 급속한 보호관찰 영역의 확대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정원 증원(2005. 7. 4.부) |
| 85 | 2005. 7. 4. | 법무부령 제573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 성매매사범의 보호관찰실시와 외출제한명령 전면시행 등 급속한 보호관찰 영역의 확대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정원 증원(150인)(2005. 8. 15.)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86 | 2005. 8.12.<br>2005. 8.12. | 대통령령 제18997호<br>법무부령 제574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 2005년도 소요정원 3인(건축주사 1, 전산주사 1, 전산주사보 1) 및 검사적격 심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2인(검사 1, 전산주사 1)증원하고 공무원임용령 중 일부개정(2005. 5. 6.)으로 "부이사관", "기술서기관"으로 직군·직렬 통합(검찰사무직 제외)<br>○ 포항교도소 신설, 순천교도소 소록도 지소 기관폐지 |
| 87 | 2006. 2. 3.<br>2006. 2. 3. | 대통령령 제19316호<br>법무부령 제581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 출입국관리국 밑에 국적난민과와 외국적동포과를 신설하여 국제적 수준의 난민인정 업무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출입국관리국의 분장사무에 이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정부출장소를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br>○ 2006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 중 279인(3급 또는 4급 1, 4급 2, 5급 13, 6급 38, 7급 50, 8급 83, 9급 74, 기능직 18)과 외국국적 동포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인력 6인(4급 1, 5급 2, 6급 2, 7급 1)을 증원하는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 |
| 88 | 2006. 5. 3.<br>2006. 5. 3. | 대통령령 제19465호<br>법무부령 제586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호·지원과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법무실의 인권과를 확대 개편하여 인권국에 인권정책과등 3개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소요인력 13인(2·3급 1, 3·4급 1, 3·4급 또는 검사 1, 4·5급 2, 4·5급 또는 검사 1, 5급 3, 6급 2, 7급 1, 기능10급 1)을 증원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 | | |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민원 폭주로 야기되는 외국인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출입국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종로출장소를 신설하는 등 민원처리 실무인력 30인(5급 1, 6급 5, 7급 8, 8급 9, 9급 6, 기능10급 1)을 증원 |
| 89 | 2006. 6.12.<br>2006. 6.12. | 대통령령 제19508호<br>법무부령 제588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 교정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경비교도대원 감축에 따른 계호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2006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교정공무원 821인(4급 4, 5급 4, 6급 85, 7급 127, 8급 303, 9급 298)을 증원하고, 7급 정원 42인을 6급으로, 8급 정원 42인을 7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br><br>○ 법무연수원의 사이버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담당 인력 6인(5급 4, 7급 2)을 증원하려는 것임<br>○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에 성과관리팀을 신설하고, 교정국 일부 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대전교도소 논산구치지소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로 하는 등 4개 구치지소의 명칭을 지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90 | 2006. 6.30. | 대통령령 제19596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실·국장급 직위의 계급을 삭제하고, 실·국장급 공무원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91 | 2006. 8. 3. | 법무부령 제594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 부여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직위의 개방형 변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 92 | 2006.12.29. | 대통령령 제19796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 총액인건비제를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직과 정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정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로 정원을 규정하는 현행 방식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총정원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93 | 2007. 2. 1. | 대통령령 제19860호 | 〃 | ○ 장관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정책보좌관을 일반직·별정직공무원보다 계약직공무원으로 우선적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정부 고도화 및 정보보호와 보안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정보화담당 부서의 기능 강화 및 필요인력 증원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가 개선·보완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94 | 2007. 5. 4.<br>2007. 5.10. | 대통령령 제20048호<br>법무부령 제610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과 외국인정책에 관한 업무 총괄 수행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하고, 이에 따른 소요인력 35인(고위공무원단 2, 3·4급 1, 4급 3, 4·5급 2, 5급 8, 6급 11, 7급 5, 기능직 3)을 증원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보호 전담인력 28인(5급 2, 6급 6, 7급 7, 8급 8, 9급 5)을 증원하고 감사관을 폐지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감찰·감사조직을 통합하여, 감찰관 밑에 감찰기획관 및 감사기획관을 두며, 정책홍보관리실장 밑에 성과기획조정관을 설치하고, 성과기획조정관 밑에 고객만족팀을 신설하며,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소속과 명칭을 인권국 및 여성정책과로 바꾸며, 2007년도 소요정원으로 인정된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인력 400인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관리인력 등 33인을 직제에 반영하며 교정기관의 수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청송교도소와 광주교도소의 보건의료과장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상호 조정하려는 것임 |
| 95 | 2007. 7.23. | 대통령령 제20180호<br>법무부령 제615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 ○ 보호국의 업무조정과 기관폐지 및 신설 및 인력재배치(광주소년분류심사원 등 7개 소년보호기관을 폐지하고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남는 인력 213명 중 212명은 교정, 보호관찰 등에 재배정하고 1명은 감축) 등을 반영하는 한편, '07년도 3/4분기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176명(보호 127, 교정 25, 출입국 16, 감사 8명)을 반영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96 | 2007. 8.22.<br>2007. 9.13. | 대통령령 제20236호<br>법무부령 제617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 ○ 대변인제 도입에 따라 홍보관리관이 대변인을 겸하고 대변인의 기능 규정 |
| 97 | 2007.11.30. | 대통령령 제20400호<br>법무부령 제620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수용자의 인권신장, 새로운 교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등 교정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정사무에 관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개편하고 필요인력을 소속기관 정원에서 법무부로 재배치(고위공무원단 1, 4급 3, 5급 6, 6급 9, 7급 6, 기능10급 3) 하는 한편, 「상법」의 개정으로 전자선하증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무실장 및 법무심의관의 소관사무를 일부 조정 |
| 98 | 2008. 2.29.<br>2008. 3. 3. | 대통령령 제20674호<br>법무부령 제634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정책홍보관리관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br>○ 홍보관리관을 폐지하고 장관 직속 기구인 대변인으로 개편하고, 성과기획조정관을 폐지하고, 기획조정관을 신설하며, 정책홍보관리실은 기획조정실로, 총무과는 운영지원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br>○ 정책홍보담당관은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장관 직속 대변인 밑으로 재편하고, 재정기획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혁신인사기획관은 창의혁신담당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성과관리팀과 고객만족팀을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창의혁신담당관실로 이관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 | | | ○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질서 선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총괄·추진하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4급·검사 1, 5급 2, 6급 2, 기능직 1)을 신설<br>○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정책관을 정책단으로, 각 과를 팀으로 변경하고, 보호국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하는 한편, 법무실·보호국·인권국·교정국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래의 일부 부서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br>○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 중 보호직 1명(4급)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의 수를 7개(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천안개방교도소장, 치료감호소장,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서울소년원 창업지원과장)에서 4개(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보안정책단장, 치료감호소장)로 조정<br>○ 인권옹호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쉽도록 일반직(3·4급)으로 되어 있는 인권정책과장의 직급을 일반직(3·4급) 또는 검사로 복수 직급화<b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기획관(3·4급)을 폐지한 후 정책기획평가팀장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4급 정원 1명은 4급 또는 검사로 복수 직급화하여 신설되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정원으로 활용하되, 서기관 또는 교정관 정원 1명을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변경함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 | | | ○ 공무원 4명(7급 1, 기능10급 3)을 감축 |
| 99 | 2008. 8. 7. | 대통령령 제20954호<br>법무부령 제644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교도소의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투경찰·의무경찰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정규인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한 교정공무원 118명(7급 24, 8급 47, 9급 47)을 증원하는 한편, 교정본부장의 분장사무 중 수형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교화팀장의 분장사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설된 수형자 사회복귀지원 관련 사무를 사회복귀지원팀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 교정본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인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하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조정 |
| 100 | 2008.10.22. | 법무부령 제648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행정직 5급 정원 중 1명을 행정·기술직 5급으로, 기술직 6급 정원 중 1명을 행정·기술직 6급으로 각각 복수직화하여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 |
| 101 | 2008.12.31. | 대통령령 제21209호<br>법무부령 제656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2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해당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재배정<br>○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인권국의 구조지원과의 명칭을 인권지원과로 변경,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기능을 검찰국 형사기획과에서 인권국 인권지원과로 이관<br>○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위치추적관제센터 설치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 |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년법」에 따른 결정전조사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을 보호관찰과장의 분장사무로 추가<br>○ 인권국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보직범위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br>○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인권정책과장의 분장사무로 추가<br>○ 교정기획팀장 수행기능 중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기능을 수용기획팀장에게 이관<br>○ 서울지방교정청에 교정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산관리과를 신설<br>○ 서울소년원의 하부조직 중 기능 1이관 등에 따라 업무가 축소된 창업지원과를 폐지한 후 소년보호교육에 필요한 컨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정보관리과 신설<br>○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광역화 해소를 위해 안양·영월·공주·제천·상주·거창·해남 지역에 7개의 보호관찰지소를 신설<br>○ 감찰기능 수행강화를 위해 정원 4명을 소속기관에서 본부 감찰담당관실로 이체, 치료감호소의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원 1명을 본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102 | 2009. 1.29. | 법무부령 제658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21209호, 2008. 12. 31. 공포·시행)으로 인권국장의 보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방형 직위인 인권국장 직위를 자율 직위로 변경, 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대체 |
| 103 | 2009. 3.18.<br>2009. 3.19. | 대통령령 제21350호<br>법무부령 제660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168호, 2008. 12. 26. 공포, 2009. 3. 27. 시행)으로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 관련 규정 정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의결이 가능한 경우를 가석방·임시퇴원의 취소결정, 보호관찰 가해제의 취소결정 등으로 구체화 |
| 104 | 2009. 5.25. | 대통령령 제21502호<br>법무부령 제667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을 법질서담당관으로, 시설관리담당관을 시설담당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br>○ 법조인력정책과를 법조인력과로 명칭 변경<br>○ 공공형사과를 공안기획과로 명칭 변경<br>○ 사회보호정책과를 보호법제과로, 소년보호과를 소년과로, 법문화진흥팀을 법교육팀으로 각각 명칭 변경<br>○ 여성아동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인권정책과, 인권지원과를 인권구조과로, 인권옹호과를 인권조사과로 변경<br>○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팀을 과로 변경, 교육교화팀 폐지, 기능을 사회복귀과로 이관, 경비정책팀 폐지, 보안과로 기능 이관, 외국적동포팀 폐지, 기능을 사회통합과로 이관, 국제이민협력팀 폐지, 기능을 출입국심사과로 이관, 급증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 | | | 하는 국적민원 업무적체 해소를 위한 실무인력 5명(5급 1, 6급 2, 7급 2) 증원<br>○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소장으로 하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신설 하부조직으로 총무과 등 8개과를 설치, 운영인력 110명(3·4급 1, 5급 8, 6급 16, 7급 18, 8급 45, 9급 15, 기능 7) 증원<br>○ 8호 처분 여자 소년원생의 교육내실화 및 사회복귀지원 강화를 위해 청주소년원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10명(6급 4, 7급 2, 8급 4) 증원<br>○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광역화 해소 및 현장 밀착 지도·감독을 위해 영덕·밀양·남원보호관찰소를 신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관련 전담 수행인력 61명(6급 19, 7급 21, 8급 21) 증원<br>○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난민과를 신설하고 그 실무인력 7명(5급 1, 6급 2, 7급 2, 8급 2) 증원, 출입국관리기관의 일부 부서명칭의 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동향조사인력 40명(6급 7, 7급 20, 8급 13)과 출입국심사인력 37명(7급 14, 8급 16, 9급 7) 증원.<br>○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개정에 따라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게 변경 |
| 105 | 2009. 7. 6. | 법무부령 제675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교정기관 부서명칭을 핵심업무가 부각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명칭으로 변경, 지방교정청의 5급 과장 직위와 소속기관의 3·4급 또는 4·5급 과장 직위를 상호 이체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 | | | ○ 외국인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1통역지원을 위해 천안소년교도소에 국제협력과를 신설<br>○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를 폐지 천안소년교도소에 통합, 중복 인력을 전환·재배치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br>○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조정을 통해 현장밀착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임 |
| 106 | 2009. 7.17. | 법무부령 제676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위를 개방형직위에서 삭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 |
| 107 | 2009.12.31. | 대통령령 제21946호<br>법무부령 제683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영월·해남교도소, 밀양구치소 등 3개 교정시설의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 134명과 「사회복무제도 개선계획」(2007. 7. 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인력 235명, 국가송무시스템 전담인력 3명 등 총 372명을 증원<br>○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5명을 일반직공무원 45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직공무원 직렬의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 |
| 108 | 2010. 8. 2. | 대통령령 제22313호<br>법무부령 제712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본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 등 기구 신설과 벌금 대체 사회봉사명령 집행인력 55명 등 총 109명 증원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109 | 2010.10.18. | 대통령령 제22453호<br>법무부령 제723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사회복무제도 개선계획」(2007. 7. 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 235명과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인력 18명, 영월·해남교도소 및 밀양구치소 정상 운영을 위한 실무인력 78명, 출입국 안산출장소 및 천안출장소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8명 등 총 339명 증원 |
| 110 | 2011. 5. 4.<br>2011. 5.11. | 대통령령 제22917호<br>법무부령 제740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법질서담당관실(기획조정실)과 법교육팀(범죄예방정책국) 통폐합, 법질서선진화과(범죄예방정책국) 신설(9. 1. 시행)<br>○ 행정관리담당관실 성과·고객업무 분장, 성과고객팀 신설 (9. 1. 시행)<br>○ 영등포구치소·영등포교도소→서울남부구치소·서울남부교도소로 명칭변경<br>○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1. 4. 16.)에 따른 본부 보호관찰과 성폭력범 신상공개 인력 2명, 교정심리치료센터 운영인력 16명, 특정범죄자 전자감독 확대에 따른 실무인력 21명, 아동·청소년성범죄자 수강명령 집행인력 7명, 구미·고양 등 2개 신설 출입국 출장소 운영인력 4명 등 총 40명 증원<br>※ 교정기관 전화상담원 10명 감축<br>○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개방형 직위에서 공모형직위로 변경, 본부 홍보담당관 개방형직위 지정<br>○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총액인건비제 시행 (2014. 4. 30.까지) |
| 111 | 2011. 5.30. | 대통령령 제22937호<br>법무부령 제742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사이버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안인력 3명 증원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112 | 2011. 8.23. | 법무부령 제747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사무기능직렬 4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4, 기능10급 44 → 9급 10, 8급 37, 7급 1) |
| 113 | 2011.10.10.<br>2011.10.13. | 대통령령 제23211호<br>법무부령 제754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역출장소 신설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br>○ 대구보호관찰소 김천지소를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로 명칭 변경<br>○ 경북직업훈련교도소와 경북북부제3교도소 분류심사과를 대구구치소 및 청주여자교도소 분류심사과로 이관(2012. 1. 1. 시행)<br>○ 법조인력과 변호사시험 시행인력 4명, 국제법무과 외국법자문사 관리인력 2명, 보호관찰과 성충동약물치료 집행 등 중간관리 인력 1명, 경비교도대 대체계호 인력 235명, 교정기관 의료처우 개선인력 16명, 성폭력 범죄자 치료·재활 인력 6명, 신설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운영인력 9명,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전담인력 4명, 신설 서울역출입국출장소 운영인력 1명, 김포출입국출장소 사무소 승격에 따른 운영 및 심사인력 5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심사 인력 3명 등 총 286명 증원<br>○ 천안개방교도소장 : 고위공무원→4급,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 3·4급→고위공무원, 창원교도소장 : 4급→3·4급으로 직급 조정(2012. 1. 1. 시행)<br>○ 본부 대변인실 “온라인대변인” 지정 근거 신설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114 | 2012. 3.26.<br><br>2012. 3.30. | 대통령령 제23675호<br><br>법무부령 제768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서울서부·북부보호관찰지소 보호관찰소 승격, 울산출입국 출장소 사무소 승격<br>○ 청소년비행예방센터 4개 신설 및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신설<br>○ 재정업무 담당인력 2명, 전문감사인력 1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 및 관리인력 1명, 교화방송센터 운영 인력 1명, 남북법률통합 실질화사업 추진인력 2명 등 7명 증원<br>○ 조사인력 10명, 전자감독 확대시행인력 11명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시설 인력 24명 등 45명 증원<br>○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인력 17명, 4부제 개편 소요 인력 28명, 교정직 직급구조 개선 인력 2명 등 47명 증원<br>○ 지문관리점담 운영인력 6명, 울산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에 따른 필요 인력 3명, 복수국적 허용 심사인력 2명, 청주공항 활성화에 따른 심사인력 2명,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심사인력 21명 등 34명 증원<br>○ 급여인력 감축 30명 감원<br>○ 체류조사과 →이민조사과로 명칭변경<br>○ 사회통합과 →이민통합과로 명칭변경 |
| 115 | 2012. 6.10.<br><br>2012. 7.12. | 대통령령 제23857호<br><br>법무부령 제776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공항 심사인력 10명 증원 |
| 116 | 2012. 9.10.<br><br>2012.10.22. | 대통령령 제24116호<br><br>법무부령 제779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전자발찌 비상출동 전담인력 43명, 성폭력사범 지도감독 인력 19명, 재범방지를 위한 밀착 보호관찰 인력 75명, 경비교도대 대체인력 235명 증원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117 | 2013. 1. 8. | 법무부령 제782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사무기능직렬 2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28 → 7급 4, 8급 17, 9급 7) |
| 118 | 2013. 3.23.<br><br>2013. 3.23. | 대통령령 제24115호<br><br>법무부령 제787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기획조정관, 비상계획관 →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br>○ 성과고객팀 폐지<br>○ 정보팀 → 이민정보과 변경<br>○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 폐지 및 총무과 신설<br>○ 공통지원부서 정원 6명 감축(5급 1, 6급 2, 7급 1, 8급 1, 기능9급 1) |
| 119 | 2013. 5.22.<br><br>2013. 6.12. | 대통령령 제24537호<br><br>법무부령 제794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를 국적과와 난민과로 분리<br>○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를 경기도 과천시로 변경<br>○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 등 본부 정원 15명 및 소속기관 정원 125명 증원 |
| 120 | 2013. 9.17.<br><br>2013.10. 1. | 대통령령 제24732호<br><br>법무부령 제800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행정관리담당관 →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명칭 변경<br>○ 여성아동인권과 신설<br>○ 치료감호소 및 소년원 등의 하부조직 중 '서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명칭 변경<br>○ 춘천·전주·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신설<br>○ 정부3.0 전담 및 협업과제 추진인력 등 본부 정원 11명, 소속기관 정원 26명 증원<br>○ 사무기능직렬 1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16 → 7급 6, 8급 7, 9급 3)<br>○ 안전행정부(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로 정원 이체(기능8급 △1)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121 | 2013.11. 5.<br><br>2013.11.13. | 대통령령 제24829호<br><br>법무부령 제801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정읍교도소, 상주교도소 신설<br>○ 정읍·상주교도소 신설 인력 등 소속기관 정원 257명 증원 |
| 122 | 2013.12.12.<br><br>2013.12.12. | 대통령령 제24949호<br><br>법무부령 제802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기능직공무원 폐지 및 일반직 전환 : 1,098명(7급 25, 8급 56, 9급 1,017)<br>○ 계약직공무원 폐지 및 별정직 전환 : 2명<br>○ 별정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 160명<br>○ 통합정원 감축 95명(5급 3, 6급 15, 7급 19, 8급 24, 9급 34)<br>○ 홍보 담당 인력 1명(4·5급) 증원 |
| 123 | 2014. 4. 1. | 법무부령 제816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실 → 범죄예방정보화센터로 개편<br>-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 통합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br>○ 총액인건비제 운영 출입국관리 사무관(12명) 존속기한 연장<br>○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9급 9명→7급2명, 8급 4명, 9급 3명 |
| 124 | 2014. 8.27.<br><br>2014. 9. 4. | 대통령령 제25565호<br><br>법무부령 제824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서울·부산·광주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br>○ 부산동부·울산·수원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신설<br>○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인력 등 본부 7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인력 등 소속기관 49명 정원 증원 및 직급 상향 55명<br>○ 별정직공무원 일반직(임기제) 전환 : 5명(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br>○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청주보호관찰소의 관할 구역에 '청원군'을 삭제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125 | 2015. 1. 6. | 대통령령 제25973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 신설 |
| | 2015. 1. 6. | 법무부령 제834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신설<br>○ 출입국관리인력 22명, 치료감호소 의료인력 15명 등 소속기관 정원 37명 증원<br>○ 소속기관 정원 본부 이체(6급 1, 7급 1)<br>○ 통합정원 감축 85명(5급 2, 6급 11, 7급 14, 8급 25, 9급 33)<br>○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119명→행정직군 1명, 기술직군 118명<br>○ 개방형직위 규정 정비(국장급 2개 직위→실·국장급 7개직위 범위내) |
| 126 | 2015. 2.26. | 대통령령 제26117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설 : 대외연수과, 운영지원과 신설, 과명칭 변경(교정연수부 운영과 →교정훈련과) 및 기구폐지 (연구위원△1, 연구개발팀△1) |
| | 2015. 2.27. | 법무부령 제839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관리인력 6명, 용인분원 신설 인력 13명 등 소속기관 정원 19명 증원<br>○ 직급 상향 : 본부 5→4·5급 2명, 소속기관 5→4·5급 1명, 7→6급 31명<br>○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과→사범과로 변경<br>○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규정 신설 |
| 127 | 2015. 5.26. | 대통령령 제26263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 | 2015. 5.28. | 법무부령 제843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신설<br>○ 개인정보보호 인력 1명, 특정범죄자관리과 인력 6명 등 본부 정원 7명 및 교정기관 의료인력 4명, |

| 순위 | 공포일자 | 법 령 호 수 | 건 명 | 내 용 |
|---|---|---|---|---|
| | | | | 소년보호기관 호송인력 9명, 특정범죄자 관리 인력 23명 등 소속기관 정원 57명 증원<br>○ 직급 상향 : 본부 5→4·5급 2명, 소속기관 4→3·4급 1명, 5→4·5급 4명, 6→5급 13명, 7→6급 31명<br>○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25명→행정직군 4명, 기술직군 21명<br>○ 교정기관 임기제공무원 대체 정원 확대(의무직 5급 8명→13명) |
| 128 | 2015.11.30.<br><br>2015.12. 1. | 대통령령 제26675호<br><br>법무부령 제857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 인력 본부 정원1명 증원(4·5급)<br>○ 소년보호기관 임기제공무원 대체 정원 확대(의무직 5급 6명→7명)<br>○ 과장급 개방형직위 변경(난민과장, 치료감호소 신경과장·특수치료과장→군산교도소 의료과장,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사회정신과장) |
| 129 | 2015.12.30.<br><br>2015.12.30. | 대통령령 제26782호<br><br>법무부령 제860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br>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신설<br>○ 국고손실 환수송무 인력 2명 등 본부 정원 2명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인력 2명, 공항 및 크루즈터미널 심사 인력 66명, 불법체류자 단속 인력 9명 등 소속기관 정원 77명 증원<br>○ 통합정원 감축 85명(5급 3, 6급 15, 7급 9, 8급 25, 9급 33)<br>○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32명→행정직군 2명, 기술직군 30명<br>○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평택항만출장소, 오산출장소→평택출장소로 변경 |

## 2. 조직도

| 본부 | 2실 3국 2본부 | |
|---|---|---|
| 산하기관 | 검찰청 | 64 |
| | 연수원 | 2 |
| | 보호관찰기관 | 63 |
| | 치료감호기관 | 2 |
| | 소년보호기관 | 27 |
| | 교정기관 | 56 |
| | 출입국관리기관 | 45 |
| 계 | 260개 기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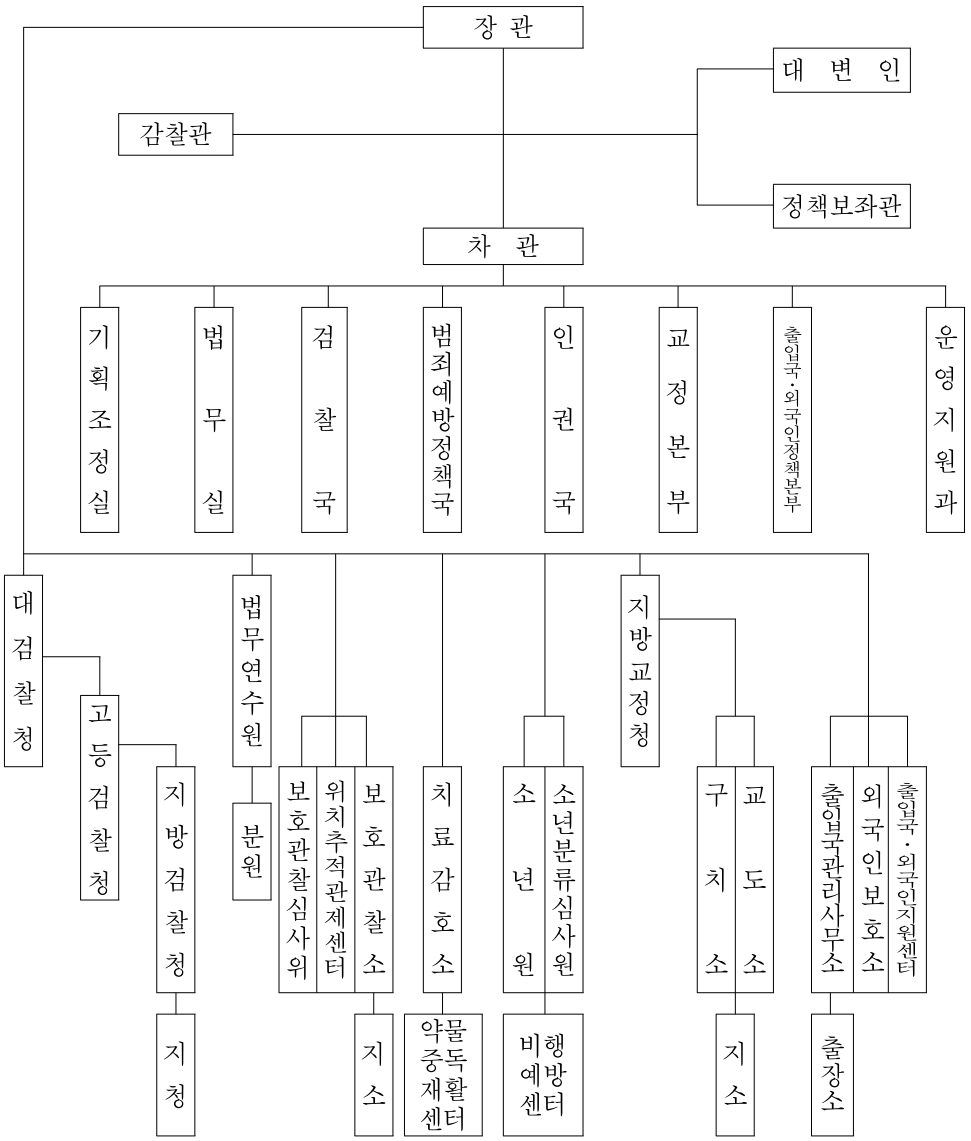

## 3. 정원 변동표

| 구분 \ 연도 | 1948 | 1949 | 1950 | 1951 | 1952 | 1953 | 1954 | 1955 | 1956 | 1957 | 1958 | 1959 | 1960 | 1961 | 1962 | 1963 | 1964 | 1965 | 1966 | 1967 | 1968 | 1969 |
|---|---|---|---|---|---|---|---|---|---|---|---|---|---|---|---|---|---|---|---|---|---|---|
| 총계 | 4,573 | 4,621 (+148) | | | | 4,556 (-65) | | 4,526 (-30) | 4,553 (-27) | 4,080 (-473) | 3,859 (-221) | | 3,952 (+93) | 4,403 (+451) | 4,438 (+35) | 4,872 (+434) | 4,976 (+104) | 5,197 (+221) | 5,354 (+157) | 6,440 (+1,086) | 6,677 (+237) | 6,855 (+178) |
| 본부 | | 148 | | | | 83 (-65) | | 53 (-30) | | 68 (+15) | | | | 170 (+102) | 177 (+7) | 199 (+22) | 189 (-10) | | 232 (+43) | 269 (+37) | 314 (+45) | 318 (+4) |
| 검찰청 검사 | 163 | | | | | | | | 190 (+27) | | | | | | 220 (+30) | | 243 (+23) | | 300 (+57) | | | |
| 검찰청 일반직등 | 586 | | | | | | | | | | | | 58 (+3) | 904 (+135) | 903 (-3) | 996 (+93) | 1,089 (+93) | | | 1,273 (+184) | 1,338 (+65) | |
|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 3,372 | | | | | 형무소 | | | | 2,914 (-458) | 2,790 (-124) | | 2,840 (+50) | 2,837 (-3) | 2,836 (-1) | 3,089 (+253) | | 3,229 (+140) | | 3,979 (+750) | 4,066 (+87) | 4,216 (+150) |
| 출입국관리사무소 | 126 | | | | | | | | | 96 (-30) | | | 136 (+40) | 164 (+28) | | 181 (+17) | | 250 (+69) | | 363 (+113) | 397 (+34) | |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 | | | | | | | | | | | | | | | 49 | 47 (-2) | 59 (+12) | 116 (+57) | 118 (+12) | 124 (+6) | 148 (+24) |
| 법무연수원 | 조선형무관학교 126 | | | | | | | | | 형무관학교 | 129 (-97) | | | 138 (+9) | | | 교도관학교 | | | | | |

| 구분 \ 연도 | 1970 | 1971 | 1972 | 1973 | 1974 | 1975 | 1976 | 1977 | 1978 | 1979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
| 총계 | 6,975 (+120) | 7,568 (+593) | 7,526 (-42) | 8,024 (+498) | 8,257 (+233) | 8,556 (+229) | 9,589 (+1,033) | 9,938 (+349) | 10,628 (+690) | 10,959 (+331) | 11,502 (+543) | 13,210 (+1,708) | 13,431 (+221) | 13,820 (+130) | 13,820 (+259) | 13,967 (+147) | 14,216 (+147) | 15,216 (+961) | 16,708 (+492) | 19,126 (+2,418) | 19,126 (+1,082) | 21,211 (+1,003) |
| 본부 | 332 (+120) | 256 (-67) | 245 (-10) | 248 (+3) | 210 (-38) | 291 (+81) | 295 (+4) | | 350 (+55) | 355 (+5) | 360 (+5) | 426 (+66) | 420 (-6) | 430 (+10) | 429 (-1) | | 444 (+15) | | | | 459 (+15) | 467 (+8) |
| 검찰청 검사 | | 343 (+43) | | 360 (+17) | 377 (+17) | | 417 (+40) | | 473 (+20) | | | 467 (+30) | 497 (+30) | 527 (+30) | 557 (+30) | 587 (+30) | | 667 (+80) | 707 (+40) | 747 (+40) | 787 (+40) | 827 (+40) |
| 검찰청 일반직등 | | 1,457 (+119) | | 1,473 (+16) | 1,539 (+66) | 1,565 (+26) | | 1,866 (+301) | 2,024 (+158) | 2,161 (+137) | 2,309 (+148) | 2,996 (+687) | 3,165 (+169) | 3,226 (+101) | 3,372 (+106) | 3,489 (+117) | 3,647 (+158) | 3,904 (+257) | 4,067 (+163) | 4,886 (+819) | 5,288 (+402) | 5,823 (+535) |
|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 4,312 (+96) | 4,772 (+460) | 4,753 (-19) | 5,179 (+426) | 5,292 (+113) | 5,554 (+262) | 6,474 (+920) | | 6,776 (+302) | 6,921 (+145) | 7,185 (+264) | 8,076 (+891) | | 8,074 (-2) | 8,092 (+18) | | | 8,447 (+355) | 8,574 (+127) | 10,780 (+2,006) | 11,254 (+474) | 11,515 (+261) |
| 소년원(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 | 427 (+30) | 425 (-2) | | 484 (+59) | | | 532 (+48) | 625 (+93) | 652 (+27) | 676 (+24) | 684 (+8) | 695 (+11) | | 749 (+54) | | 769 (+20) | 998 (+229) 치료감호소 195포함 | | 1,047 (+49) | 1,185 (+138) | 1,278 (+93) |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 168 (+20) | 175 (+8) | 166 (-10) | 202 (+36) | 218 (+16) | | 279 (+61) | | 340 (+61) | 357 (+17) | 455 (+98) | 475 (+20) | 492 (+17) | 479 (-13) | 531 (+52) | | 581 (+50) | 621 (+40) | 783 (+162) | 795 (+62) | 870 (+62) | |
| 법무연수원 | | 137 (-1) | | | 67 (-70) | 75 (+8) | | 76 (+1) | | | 80 (+4) | 86 (+6) | | 90 (+4) | | | 135 (+45) | | | 148 (+13) | | |
|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연도 |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총계 | | 21,795 (+404) | 21,931 (+136) | 22,213 (+282) | 22,603 (+390) | 22,161 (+558) | 23,427 (+266) | 23,436 (+9) | 23,360 (-76) | 23,736 (+376) | 23,981 (+245) | 24,376 (+395) | 24,788 (+412) | 25,334 (+546) | 25,809 (+475) | 27,137 (+1,328) | 28,067 (+930) | 28,262 (+195) | 29,091 (+829) | 29,738 (+647) | 30,077 (+339) | 30,620 (+543) | 30,883 (+263) | 30,968 (+85) | 31,099 (+131) |
| 본부 | | 498 (+11) | 491 (-7) | 479 (-12) | 479 | 488 (+9) | 473 (-15) | 455 (-18) | 446 (-9) | 436 (-10) | 453 (+17) | 453 | 455 (+2) | 455 | 479 (+24) | 507 (+28) | 594 (+87) | 590 (-4) | 605 (+15) | 611 (+6) | 623 (+12) | 630 (+7) | 647 (+17) | 654 (+7) | 656 (+2) |
| 검찰청 | 검사 | 867 (+40) | 907 (+40) | 947 (+40) | 987 (+40) | 1,037 (+50) | 1,087 (+50) | 1,137 (+50) | 1,207 (+70) | 1,287 (80) | 1,287 | 1,357 (+70) | 1,427 (+70) | 1,507 (+80) | 1,587 (+80) | 1,627 (+40) | 1667 (+40) | 1,752 (+85) | 1,847 (+95) | 1,942 (+95) | 1,942 | 1,942 | 1,942 | 1,942 | 2,032 (+90) |
| | 일반직등 | 5,984 (+161) | 6,095 (+111) | 6,222 (+127) | 6,424 (+202) | 6,575 (+151) | 6,607 (+32) | 6,612 (+5) | 6,520 (-92) | 6,689 (169) | 6,715 (+26) | 6,873 (+158) | 7,029 (+156) | 7,175 (+146) | 7,336 (+161) | 7,468 (+132) | 7,685 (+217) | 7,681 (-4) | 7,769 (+88) | 7,873 (+104) | 7,883 (+10) | 7,941 (+58) | 7,870 (-71) | 7,899 (+29) | 7,910 (+11) |
|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 | 11,784 (+269) | 11,778 (-6) | 11,898 (+120) | 11,901 (+3) | 12,165 (+264) | 12,216 (+51) | 12,287 (+71) | 12,245 (-42) | 12,245 | 12,308 (+63) | 12,388 (+80) | 12,508 (+120) | 12,700 (+192) | 12,751 (+51) | 13,748 (+997) | 14,162 (+414) | 14,280 (+118) | 14,757 (+477) | 15,088 (+331) | 15,345 (+257) | 15,623 (+278) | 15,839 (+216) | 15,850 (+11) | 15,756 (-94) |
| 소년원(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 | 1,293 (+15) | 1,293 | 1,293 | 1,354 (+61) | 1,354 | 1,396 (+42) | 1,380 (-16) | 1,368 (-12) | 1,371 (+3) | 1,371 | 1,392 (+21) | 1,407 (+15) | 1,431 (+24) | 1,299 (-132) | 1,298 (-1) | 1,092 (-206) | 1,092 | 1,102 (+10) | 1,122 (+20) | 1,128 (+6) | 1,148 (+20) | 1,146 (-2) | 1,169 (+23) | 1,181 (+12) |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 | 930 (+60) | 929 (-1) | 937 (-2) | 1,006 (+69) | 1,062 (+56) | 1,099 (+37) | 1,060 (-39) | 1,068 (+8) | 1,154 (+86) | 1,266 (+112) | 1,282 (+16) | 1,331 (+49) | 1,390 (+59) | 1,476 (+86) | 1,551 (+75) | 1,619 (+68) | 1,619 | 1,702 (+83) | 1,738 (+36) | 1,751 (+13) | 1,789 (+38) | 1,800 (+11) | 1,809 (+9) | 1,903 (+94) |
| 법무연수원 | | 150 (+2) | 149 (-1) | 147 (-2) | 147 | 156 (+9) | 156 | 99 (-57) | 99 | 99 | 99 | 99 | 99 | 99 | 99 | 105 (+6) | 105 | 105 | 105 | 105 | 105 | 105 | 105 | 107 (+2) | 124 (+17) |
|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포함) | | 289 (+6) | 289 | 290 (+1) | 305 (+15) | 324 (+19) | 393 (+69) | 406 (+13) | 407 (+1) | 455 (+48) | 482 (+27) | 532 (+50) | 532 | 577 (+45) | 782 (+205) | 833 (+51) | 1,143 (+310) | 1,143 | 1,204 (+61) | 1,259 (+55) | 1,300 (+41) | 1,442 (+142) | 1,534 (+92) | 1,538 (+4) | 1,537 (-1) |

# Ⅱ.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 1. 훈 령

| 번호 | 일 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비 고 |
|---|---|---|---|---|
| 973 | 2015. 1. 12. | 대공 전문검사 선발 및 운용에 관한 규정 | ○ 국가안보 분야 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대공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공 전문검사를 선발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 검 찰 과 |
| 974 | 2015. 1. 13. | 계호업무지침 (비공개) | ○ 배식감독시 직접계호 의무조항을 삭제<br>○ 취사장 급식 인원표 작성 절차를 삭제<br>○ 출원 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용어변경 | 보 안 과 |
| 975 | 2015. 1. 14. |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 관계 법령과「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 | 교정기획과 |
| 976 | 2015. 2. 10.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지급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과명칭 변경사항 및「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의 변경사항 반경 | 창 조 행 정 담 당 관 실 |
| 977 | 2015. 2. 25. | SNS 홍보 우수기관 및 공무원 포상지침 | ○ 소속기관 중 규모가 작아서 평가 예외 대상으로 지정했던 기관들 중, SNS 사용량이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평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관련 내용을 개정 | 대 변 인 실 |
| 978 | 2015. 3. 19. | 법무부 공익신탁자문 위원회 운영 규정 | ○ 공익신탁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br>○ 2015. 3. 19. 시행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함 | 상사법무과 |
| 979 | 2015. 3. 17. |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 ○ 재검토기한 재설정<br>(2015.2.28.→2018.2.28.) | 체류관리과 |

| 번호 | 일 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비 고 |
|---|---|---|---|---|
| 980 | 2015. 3. 25.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 ○ 의료감호 등 일부 감호체계 재정립 및 특수경비원의 감호업무보조에 관한 사항 규정 | 소 년 과 |
| 981 | 2015. 3. 25. |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 ○ 보호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종래 8개 소년원, 13개 직종을 실시하던 것을 9개 소년원, 20개 직종으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소년원의 기능 및 담당 직종을 명시 | 소 년 과 |
| 982 | 2015. 3. 25 |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자에 대한 입원시기, 교육기간 및 내용 등 사항에 관하여 규정 | 소 년 과 |
| 983 | 2015. 3. 25 | 보호소년 처우 지침 | ○ 보호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9개 소년원, 20개 직종으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이를 소년원의 수용구분에도 반영하고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의 제정에 따라 8호 처분에 대한 특례를 삭제 | 소 년 과 |
| 984 | 2015. 4. 1. | 법무부 지도방문 조정심의회 운영규칙 폐지 | ○ 「행정감사규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른 지도방문 및 지도방문 조정심의회 근거 삭제, 현장중심의 정책 수립 및 현장 점검·평가 강화 필요 등 행정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폐지 | 창조행정담당관실 |
| 985 | 2015. 3. 25. | 인권보호수사준칙 | ○ 불합리한 법령 정비 과제 중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개선 계획에 따라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개정 | 형사기획과 |
| 986 | 2015. 4. 8. |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칙 | ○ 규칙 본문에 수당지급 대상기관의 범위와 업무 내용에 관한 요건 규정을 신설하고, 대상 기관명과 공무원 수에 관하여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칙상의 범위표를 삭제<br>○ 또한 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수당지급 현황 정기보고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함 | 창조행정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 |
| 987 | 2015. 4. 10. |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유치기관 수 제한 규정 삭제 등) 반영 | 체류관리과 |
| 988 | 2015. 5. 1. |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 ○ 귀화 민간면접관 평가규정 및 해촉절차 신설 | 국 적 과 |

| 번호 | 일 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비 고 |
|---|---|---|---|---|
| 989 | 2015. 5. 1. | 법무정책 홍보전략 협의회 운영지침 | ○ 법무정책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정책 홍보전략 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대변인실 |
| 990 | 2015. 5. 21. | 헌병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에 관한 규칙(폐지령) | ○ 1966.4.25. 제정 이후 개정한 적이 없는 사문화 된 「헌병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에 관한 규칙(법무부예규 제14호)」을 폐지하고 일반지침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통합하려는 것임 | 형사기획과 |
| 991 | 2015. 6. 2. |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 ○ 외국인 보호관찰대상자 증가에 따라 외국인 대상 지명수배입력의뢰서 등 관련 서식 마련 | 보호법제과 |
| 992 | 2015. 6. 25. | 보호소년 교육지침 | ○ 「소년원 특성화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폐지하고 기존의 법무부 내부 지침으로 시행하던 직업능력 개발훈련, 인성교육 등 소년원의 교육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된 훈령을 제정 | 소 년 과 |
| 993 | 2015. 6. 25 | 비행진단 및 비행예방교육에 관한 지침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담조사, 대안교육 등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기존의 내부지침으로 규율하던 세부사항을 훈령으로 규정하여 비행원인진단 및 비행예방교육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 | 소 년 과 |
| 994 | 2015. 6. 25 |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 ○ 소년보호위원의 위촉기간을 폐지하여 평생봉사직으로 정하는 한편 교육 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자의 위촉 및 모집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비행소년의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을 활성화 | 소 년 과 |
| 995 | 2015. 6. 25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 ○ 순회 진료 시 감호방법 규정 미비, 외부감호 시 감호책임자의 직급에 관한 규정의 실무상 적용 곤란성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 소 년 과 |
| 996 | 2015. 7. 1. |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 규칙 | ○ 「난민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난민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거나 하고자 할 경우 지급할 비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난 민 과 |

| 번호 | 일 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비 고 |
|---|---|---|---|---|
| 997 | 2015. 7. 1. |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비상안전기획관실 |
| 998 | 2015. 7. 29. |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 ○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창조행정담당관실 |
| 999 | 2015. 7. 30. |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 ○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에 관한 사항 추가<br>○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이송 결정시 피감호자 이송 의무 및 이송시 사전에 피감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해당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통보<br>○ 대상 피감호자의 이송 시행은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br>○ 치료감호소 감호과장이 이송 등 주관 | 보호법제과 |
| 1000 | 2015. 8. 6. | 법무부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사건 처리 지침 | ○ 2015. 7. 1. 전부개정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관장의 책무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성희롱 재발·은폐방지 등을 위하여 현행 지침을 일부 개정 | 여성아동인권과 |
| 1001 | 2015. 8. 7.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국제형사과 |
| 1002 | 2015. 8. 10. |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 운영 및 직위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 창조행정담당관실 |
| 1003 | 2015. 8. 28. |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 ○ '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서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함 | 이민조사과 |
| 1004 | 2015. 8. 31.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 ○ 시설 위탁교육 또는 보호시설 내 교육 대상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br>○ 특별보호를 위한 전담공무원 지명 대상을 17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 이민조사과 |

| 번호 | 일 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비 고 |
|---|---|---|---|---|
| 1005 | 2015. 8. 31. | 보호일시해제업무처리규정 | ○ '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서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함 | 이민조사과 |
| 1006 | 2015. 8. 31. |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 ○ '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서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함 | 이민조사과 |
| 1007 | 2015. 8. 31. |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개정 | ○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유효기간 연장 결의안*' 반영 및 국무총리실 규제개선 권고에 따른 소기업 카드발급 요건 완화<br>* '15년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에서 확정 | 출입국심사과 |
| 1008 | 2015. 9. 11. |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 ○ 난민위원회 위원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변경<br>○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및 진단결과에 따라 직무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위촉 시 직무윤리 서약서 작성<br>○ 불가피한 사유로 분과위원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 | 난 민 과 |
| 1009 | 2015. 9. 11.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 ○ 행정자치부의 '행정기관 내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직무윤리 검증 절차 제도화' 사업에 따라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진단서 등의 징구 근거 마련 | 인권구조과 |
| 1010 | 2015. 9. 30. |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연임기준 마련<br>○ 위촉직 위원 총수의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 근거 마련 | 창조행정담당관실(정책성과관리팀) |
| 1011 | 2015. 9. 30. | 법무부기에 관한 규정 | ○ 법무부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 시 국기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규정<br>○ 법무부기를 국기 및 다른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br>○ 법무부기와 함께 국기 외의 다른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 게양순서 구체화 | 운영지원과 |

| 번호 | 일 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비 고 |
|---|---|---|---|---|
| 1012 | 2015. 10. 1.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 ○ 외부 병원근무자에 대한 근무수칙과 유의사항 교육, 외부병원 감호 시 보호장비 사용과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 및 주무과장의 근무상태 확인 조항 신설 | 소 년 과 |
| 1013 | 2015. 10. 1. |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 ○ 제14조(재검토 기한)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으로 재설정 | 출 입 국 심 사 과 |
| 1014 | 2015. 10. 8. | 법무부 직장 민방위대의 직인규정(폐지령) | ○ '78. 1. 25. 제정 이후 개정한 적이 없어 사문화된 「법무부 직장민방위대 대장의 직인규정」 폐지령 (2015년 10월 8일자) | 비상안전기획관실 |
| 1015 | 2015. 10. 15. |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 ○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설정 방식에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 | 법 질 서 선진화과 |
| 1016 | 2015. 10. 26. | 법무부 감찰위원회 운영세칙 | ○ 위원들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 작성 근거 마련 | 감 찰 담당관실 |
| 1017 | 2015. 10. 26. |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신설에 따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절차 등 규정 추가 | 감 찰 담당관실 |
| 1018 | 2015. 11. 2. | 민사재판 등 소송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 ○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설정 방식에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 | 보 안 과 |
| 1019 | 2015. 11. 3. | 법무부 자체감사 규정 | ○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적극행정면책기준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5. 5.18. 공포됨에 따라 법무부 자체감사규정에 이를 반영하고 규정에 혼재되어 있는 용어를 통일 | 감 사 담당관실 |
| 1020 | 2015. 11. 4. |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 규칙 | ○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행정규칙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게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 | 난 민 과 |

| 번호 | 일 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비 고 |
|---|---|---|---|---|
| 1021 | 2015. 11. 4. |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 ○ 제명을 '법무부 보안업무내규'에서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으로 변경<br>○ 본부 과장급 이상 직위 보직자에게 임명과 동시에 비밀취급을 인가하도록 변경<br>○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br>○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를 명시하고, 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지정 시의 절차, 관리 규정을 신설 | 운영지원과 |
| 1022 | 2015. 11. 9. | 소년보호위원 기본 규정 | ○ 소년보호위원 봉사활동 마일리지 점수산정 기준표 정비를 통하여 마일리지 부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년보호 교육정책지원단 설치 근거규정 마련 | 소 년 과 |
| 1,023 | 2015. 11. 23. |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대학 외에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br>○ 학위과정 필수과목 중 이민정책법제론을 이민정책론과 이민법제론으로 분리 | 이민통합과 |
| 1024 | 2015. 12. 1. |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 ○ 서식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분 류 심 사 과 |
| 1025 | 2015. 12. 2. |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 ○ 피치료감호자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보호법제과 |
| 1026 | 2015. 12. 2. | 치료감호소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 ○ 이 규칙은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침구 및 신발 등의 종류, 제식과 그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보호법제과 |
| 1027 | 2015. 12. 2. | 경비교도보상등에 관한 지침 | ○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설정 방식에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br>○ 서식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보 안 과 |
| 1028 | 2015. 12. 4. |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 ○ 대통령훈령 제334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검토 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재검토 기한 정비 등 | 보호법제과 |

| 번호 | 일 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비 고 |
|---|---|---|---|---|
| 1029 | 2015. 12. 4. |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 ○ 대통령훈령 제334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검토 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재검토 기한 정비 등<br>○ 표준서식 사용 요건에서 구속사건, 입건 경력 5회 이상인 경우는 표준서식 필수 사용 대상 제외 | 보호법제과 |
| 1030 | 2015. 12. 4. |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 대통령훈령 제334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검토 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재검토 기한 정비 등 | 보호법제과 |
| 1.031 | 2015. 12. 8. |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 ○ 출입국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등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 신설됨에 따라 자원봉사위원의 자격요건, 위촉 및 해촉, 직무와 의무 등 세부사항 규정 | 이민통합과 |
| 1032 | 2015. 12. 15. | 수용자 자비구매 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 ○ 교정협회를 교정공제회로 명칭 변경<br>○ 제3조 ②항 나목의 자비구매물품 입찰 대행 삭제 | 교 정<br>기 획 과 |
| 1033 | 2015. 12. 17. |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신설·변경·폐지된 기관·부서·부서장명을 반영 | 창조행정담당관실<br>(정책성과관리팀) |
| 1034 | 2015. 12. 30. | 시설공사 검사 업무 규칙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관련내용 반영<br>○ '책임감리(용역, 감리원)'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용어 변경 | 시 설<br>담 당 관 실 |
| 1035 | 2015. 12. 30.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관련내용 반영<br>○ 개인정보보호관련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개선 | 시 설<br>담 당 관 실 |

| 번호 | 일 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비 고 |
|---|---|---|---|---|
| 1036 | 2015. 12. 30. |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 주무부서의 명칭을 창조행정담당관실로 변경(안 제4조, 제10조 및 제11조)하고, 실무기구의 명칭을 규제개혁태스크포스로 변경함(안 제3조, 제9조, 제11조 및 제13조)<br>○ 위원회 운영실정에 따른 위원 정수의 조정 가능(안 제4조), 민간위원의 연임 제한(안 제5조), 의결정족수 변경 및 대리출석·의결 등 회의운영 합리화(안 제7조), 대면심사 원칙 확립(안 제8조), 위원의 기피·회피의 근거를 마련(안 제12조)<br>○ 안건소관과의 자료제출, 위원장의 요구시 회의 참석 및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화시스템에의 자료입력 등 책무를 구체화함(안 제10조) | 창조행정담당관실(행복민원센터) |

## 2. 예 규

| 번호 | 일 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비 고 |
|---|---|---|---|---|
| 1077 | 2015. 1. 13. | 수용관리 업무 지침(비공개) | ○ 마약류 수용자 중 판매자와 투약자의 분리 수용제도를 폐지<br>○ 거실문화 정상화를 위한 내용 신설<br>○ 재범방지 분류기준 정비<br>○ 성전환자 처우에 관한 규정 신설<br>○ 폭행사고 예방 관련 설문조사 주기를 매월 1회 이상으로 단축<br>○ 신입교육 기간을 연장<br>○ 일부 관련 법률의 명칭 현행화<br>○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 | 보 안 과 |
| 1078 | 2015. 1. 13. | 교정시설 보안 근무 운영지침 (비공개) | ○ 야간 근무 시 중번순찰 시간을 2시간 늘리고 순찰주기를 30분 1회에서 1시간 1회로 변경<br>○ 일근근무자 야간 지원근무 시 근무형태를 야근자와 같이 통일함 | 보 안 과 |
| 1079 | 2015. 1. 13. | 교정장비 관리 지침(비공개) | ○ 전자충격기 사용시 주의점 및 안전점검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br>○ 총기 정기손질 시기를 월 1회로 변경<br>○ 연도말 교정장비 보유현황 현행화 | 보 안 과 |
| 1080 | 2015. 1. 14. | 교도작업 운영 지침 | ○ 계약보증금의 범위에 공임과 제경비를 명시적으로 규정<br>○ 합동소방훈련 주기를 분기 1회에서 연 1회 조정 | 직 업 훈 련 과 |
| 1081 | 2015. 1. 14. | 교도작업 특별회계 운영지침 | ○ 민간기업 위탁작업을 하는 피보호감호자의 근로보상금 지급방법 변경(107조, 109조)<br>○ 피보호감호자의 근로등급별 1일 지급기준표 변경(별표 11) | 직 업 훈 련 과 |
| 1082 | 2015. 1. 15. |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비공개) | ○ 상고 및 항소 수용자의 수용구분을 일부 조정<br>○ 상주교도소 및 정읍교도소 개청에 따른 수용구분 및 경비등급 마련<br>○ 외국인 노역수형자 이송절차 등 마련<br>○ 특수기능 교정시설 현황을 현행화하고, 그 외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 | 보 안 과 |
| 1083 | 2015. 1. 19. | 특별사법경찰 관리의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자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형 사 기 획 과 |

| 번호 | 일 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비 고 |
|---|---|---|---|---|
| 1084 | 2015. 1. 22. | 교도관 급양관리 지침 | ○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됨에 따라 특식 지급일을 8일에서 9일로 확대<br>○ 서식 용어를 변경하는 등 용어 순화 | 복 지 과 |
| 1085 | 2015. 1. 22. | 수용자 급양관리 지침 | ○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됨에 따라 특식 지급일을 8일에서 9일로 확대<br>○ 서식 용어를 변경하는 등 용어 순화<br>○ 사용하지 않는 저장탱크 관련 조문 삭제(안 제20조) | 복 지 과 |
| 1086 | 2015. 1. 29. | 법무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인원 조정 | 운 영 지 원 과 |
| 1087 | 2015. 4. 10. | 감독보고요령 | ○ 효율적인 보고체계 확립을 위하여 감독보고사항, 분량 등에 대한 규정 구체화 | 검 찰 과 |
| 1088 | 2015. 4. 10. | 직무성과금 지급 업무 처리지침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직무성과금 지급등급의 지급인원과 지급액의 조정 가능 범위의 한도가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됨에 따라 위원회 심의내용을 변경 | 검 찰 과 |
| 1089 | 2015. 4. 8. |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규정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의 적용범위, 경보의 종류, 민방공경보전달 체계도, 민방위·재난 경보의 발령 및 전달요령 정비 | 비상안전 기획관실 |
| 1090 | 2015. 5. 6. |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 ○ 수형자 집중인성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성폭력 수용자 및 마약류 수용자 교육을 신설함 | 사 회 복 귀 과 |
| 1091 | 2015. 5. 21.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 ○ 이 지침 적용대상에 기무부대 외에 '헌병' 등(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도 포함되도록 추가(안 제1조, 제2조) | 형 사 기 획 과 |
| 1092 | 2015. 5. 27. | 국적업무 처리지침 | ○ 독립유공자 후손 및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및 중증 지적장애자에 대한 적격심사 면제 | 국 적 과 |
| 1093 | 2015. 6. 29. | 소년교도소 운영 지침 | ○ 조문의 내용 및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분 류 심 사 과 |
| 1094 | 2015. 8. 6. | 국적업무 처리지침 | ○ 정부수립 이전 국외이주 및 국외출생 동포의 국적수수료 면제 | 국 적 과 |
| 1095 | 2015. 8. 6. | 명예국민증 수여에 관한 규정(폐지령) | ○ 명예국민증 수여에 관한 규정을 국적업무 처리지침에 통합 | 국 적 과 |

| 번호 | 일 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비 고 |
|---|---|---|---|---|
| 1096 | 2015. 8. 25. |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 ○ 재검토 기한 운영 방식 개선 안내 및 업무협조 요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함 | 분 류 심 사 과 |
| 1097 | 2015. 10. 2. |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 ○ 제7조가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본 예규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처의 행정규칙 개정 부담을 경감 및 입법 비효율 방지를 위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인 권 구 조 과 |
| 1098 | 2015. 11. 9.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 ○ 소년원 내 수용소년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등 절차 및 소년원 내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 규정 | 소 년 과 |
| 1099 | 2015. 11. 16. | 교정장비 관리 지침(비공개) | ○ 전자경보기를 위치추적 전자장치로 명칭 개정<br>○ 위치추적 전자장치 사용 관련 위탁규정 신설 | 보 안 과 |
| 1100 | 2015. 12. 8. | 외국인범죄수사 처리지침 | ○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부처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함<br>○ 외무부장관(참조 : 영사교민국장)을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동포영사국장)으로 개정<br>○ 행정정보의 공표 적극 노력 명문화<br>○ 처리부서 간 협조 요청 시 기한 내 회신<br>○ 공표대상 및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 정비 | 국 제 형 사 과 |
| 1101 | 2015. 12. 9. |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 작성 제도의 도입(안 제3조의2)<br>○ 민원·행정관련 법령서식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변경(글꼴, 글씨 크기 등 디자인) | 분 류 심 사 과 |
| 1102 | 2015. 12. 10. | 교정관련 영화, 방송드라마 제작 지원 지침 | ○ 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교 정 기 획 과 |
| 1103 | 2015. 12. 18. |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9조 재검토기한 개정 | 국적과 |

## 3. 주요지시

| 일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수 신 처 | 비 고 |
|---|---|---|---|---|
| 1. 5.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통합지침 시달 | ○ 기존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 등을 통합하여 전체 장기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지침 시달 | 기 | 이민통합과 |
| 1. 7. | 한국방문우대카드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시달 | ○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및 가족에게 발급되는 복수사증의 1회 입국 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 이내'로 축소<br>○ '금융기능 탑재 우대카드 소지자'가 사증을 발급받은 후 예치금 계좌를 약정기간 종료 전에 해지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사증발급 취소 처리(시행일자 : 2015. 1. 19.) | 기 | 출입국심사과 |
| 1. 7. | 난민신청자에 대한 녹음·녹화장비 적극 사용 지시 | ○ 난민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제고 및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차원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과정에서 녹음·녹화장비의 적극적인 사용 | 기 | 난민과 |
| 1. 9. | 2015년도 안전사고 예방계획 시달 | ○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안전체험 및 이동안전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시행하여 작업 중 부상 등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목공 등 기계류 취급 작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점검을 실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교도작업 환경 조성에 철저 | 무 | 직업훈련과 |
| 1. 13. | 일반귀화 허가신청자, 실태조사 대상 확대안 시달 | ○ 비취업 체류자격 보유자에 대한 귀화심사 강화 | 기 | 국적과 |
| 1. 13. |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심사위원회 관련 특별지시 |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역량있는 기관이 조기적응지원센터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시 | 기 | 이민통합과 |
| 1. 23. |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강화 지시 | ○ 불법체류자 감소 방안으로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체류자격에 대한 심사 강화 | 기 | 체류관리과 |

| 일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수신처 | 비 고 |
|---|---|---|---|---|
| 1. 28.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회수 관련 조치 지시 |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자가 관할 동 사무소에 반납한 거소신고증 처리절차 시달 | 기 | 체 류 관리과 |
| 1. 28.<br>8. 24. | 난민심사 관련 업무 지시 | ○ 전국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난민심사관 등의 난민업무 관련 법무연수원 교육과정 이수<br>○ 면접과정에서의 녹음·녹화장비 사용실적 제고<br>○ 난민심사 적체해소를 위한 신속한 심사 등 자체 혁신방안 강구 등 | 기 | 난민과 |
| 2. 7.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관련 지시 | ○ 필리핀 결혼중개업금지법에 의해 결혼중개업체가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과 결혼시킬 목적으로 결혼중개를 한 경우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있으므로,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의 강의내용에 관련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지시 | 기 | 이 민 통 합 과 |
| 2. 25.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출입국심사 및 체류허가 지시 | ○ 주한 공관 빈번 민원 제기(입국심사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모두를 부여하지 않고 1가지만 부여 등)에 대해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기관 시달 | 기 | 체 류 관리과 |
| 2. 26. | 미결 소년수용자 악풍감염 대책 시달 | ○ 보호처분 전 미결 소년수용자에 대한 악풍 감염 예방 대책 마련 | 무 | 보안과 |
| 3. 3. | 난민 관련단체 안내문 게시 지시 | ○ 전국 사무소(보호소 포함) 등에 난민 관련 단체의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문 게시<br>○ 보호실 및 공항만 난민신청자 대기실 등에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 비치 | 기 | 난민과 |
| 3. 5. | 특정활동(E-7) 자격 여행상품 개발자 등의 고용업체 자격요건 완화 지시 | ○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및 관광업체의 인력애로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특정활동(E-7) 자격 '여행상품 개발자' 및 '관광통역 안내원'을 고용하는 업체의 자격요건 완화 지시 | 기 | 체 류 관리과 |
| 3. 10. | 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사무소 행사계획 수립 지시 | ○ 지자체 등 주관의 이민자 관련 각종 행사·축제를 '세계인의 날', '세계인의 주간'과 연계 강화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살린 행사를 기획·개발하도록 지시 | 기 | 이 민 통 합 과 |

| 일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수신처 | 비 고 |
|---|---|---|---|---|
| 3. 13.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의 인증절차 관련 업무 지시 |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 중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 국가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주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사 확인이 없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허용 | 기 | 국적과 |
| 3. 23. | 외국인 보호 및 단속 업무 관련 지시 | ○ 화재 등 대비 소방훈련을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자체 시설안전 관리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정기점검 실시 지시<br>○ 단속·보호 업무 수행 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취약요소의 자체 점검 및 보완 지시 | 기 | 이민조사과 |
| 4. 16.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추진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및 외국인 밀집지역 파악 지시 |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의 시범운영에 앞서 각 사무소의 검토의견 및 외국인 밀집지역을 파악하도록 지시 | 기 | 이민통합과 |
| 5. 15. | 특정활동(E-7) 중국인 조리사 자격증 검증 강화 등 업무지시 | ○ 허위 중국인 조리사 자격증 제출자에 대한 특정활동(E-7)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발급을 예방하기 위해 소속기관에 지시 | 기 | 체류관리과 |
| 5. 29. |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보호외국인 및 직원 감염 예방 철저 지시 | ○ 보호외국인의 건강 이상 유무 집중관찰, 감염 이상 증세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외래치료 실시 및 위생관리 철저 등 지시 | 기 | 이민조사과 |
| 6. 4. |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국상황반 운영계획' 시달 | ○ 메르스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본부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의 '출입국상황반' 운영계획 시달 | 기 | 출입국심사과 |
| 6. 4.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시험 운영 관련, 감독철저 지시 |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평가문제지 관리·감독 철저 지시 | 기 | 이민통합과 |
| 6. 9. | 교도작업 운영 중 금지물품 등 반입 관련 대책 시달 | ○ 신규 위탁계약 체결 시 금지물품 등을 허가 없이 반입하거나 전달한 경우 계약해지·중단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추가로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위탁업체(외부 참여업체)에 지속적으로 교육 | 무 | 직업훈련과 |
| 6. 9. | 특별보호방 설치 및 개선 지시 | ○ 보호외국인 중 환자, 임산부, 노약자, 19세 미만자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 신설, 개선 등 지시 | 기 | 이민조사과 |

| 일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수신처 | 비 고 |
|---|---|---|---|---|
| 6. 22. | 투자기업 전용창구 설치 및 운영 지시 | ○ 전국 4개 권역에서 개최된 투자기업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중 투자기업의 체류 등의 편의지원을 위해 전용창구 설치 및 운영 지시 | 기 | 체류관리과 |
| 6. 29. | 회화지도(E-2) 자격 중국인에 대한 학위 검증 방식 관련 업무지시 | ○ 학위 검증 방식을 현행 공적확인(중국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력(예정) 증명서에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 인증센터 발행 학력·학위 인증보고서 추가 지시 | 기 | 체류관리과 |
| 7. 10. | 2015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전반기 중간점검 지시 | ○ 사회통합프로그램 각 운영기관에 대한 전반기 국고보조금 집행상황 등 종합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 지시 | 기 | 이민통합과 |
| 7. 28. | 외국인 법사랑위원 제도 적극 추진 지시 | ○ 외국인에 대한 범죄예방 및 이민자 자녀의 지원 등을 위해 외국인 법사랑위원 제도 및 외국인 특별위원회 신설 등의 적극적인 추진 지시 | 기 | 외국인정책과 |
| 8. 1. | 법인 의사록 및 정관 인증 사무지침(공증사무지침) | ○ 법인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함을 진술하는 대표이사, 의장, 출석한 이사 명의의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 공증인 | 법무과 |
| 8. 4. | 무더위 관련 보호외국인 건강·위생 안전관리 지시 | ○ 보호외국인의 건강 및 위생 안전을 위해 보호실 적정온도 유지, 폭염 시 옥외 운동 자제, 더위에 도움되는 식단 제공 등 지시 | 기 | 이민조사과 |
| 8. 6. | 외국인 대상자의 수강명령 관련 협조 지시 | ○ 보호관찰소가 외국인 대상자(성범죄자)에 대한 수강명령 보조강사로 활용하기 위해 언어별 통역이 가능한 인력을 적극 소개 및 연계하도록 지시 | 기 | 이민통합과 |
| 8. 19. |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적극 홍보 지시 | ○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출국토록 유도하고 사업주가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국어, 태국어 등 총 8개 국어로 제작한 자진출국 안내문 배포 등 적극 홍보 지시 | 기 | 이민조사과 |
| 8. 24. | 스마트접견 세부 시행계획(안) 시달 | ○ 민원인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 시행 | 무 | 보안과 |

| 일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수 신 처 | 비 고 |
|---|---|---|---|---|
| 8. 27. | 난민심사 거점사무소 신규 지정 및 관할권 조정 지시 | ○ 영남권 난민신청자의 급증으로 대구사무소를 난민심사 거점사무소로 신규 지정 및 관할권 조정 지시 | 기 | 난민과 |
| 9. 3. | 추석 연휴기간 중 보호외국인 관리 강화 및 특별급식 제공 지시 | ○ 보호담당 직원의 복무 관리를 강화하여 보호외국인 관련 사고 예방 및 보호외국인에게 특별 급식 제공 지시 | 기 | 이 민 조사과 |
| 9. 4. | 난민심사 적체 해소방안 지시 | ○ 서울사무소에 난민심사 전담 TF 신설 등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심사관 목표관리제 도입<br>○ 신속한 심사, 통역인 인프라 구축 확대 등 체계적 심사시스템 구축 | 기 | 난 민 과 |
| 9. 8. | 단속·보호 외국인 호송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적법절차 준수 철저 지시 | ○ 단속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적법절차 준수, 보호외국인 계호 철저, 보호외국인 관련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점검 철저 등 지시 | 기 | 이 민 조 사 과 |
| 9. 9. | 환승관광 외국인 무사증 입국허가 지침 개정 시달 | ○ 일본 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 단체관광객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 입국허가<br>(메르스사태 후속조치로 2015. 7. 3. 우선시행) | 기 | 출 입 국 심 사 과 |
| 9. 10. | 민원실 게시 각종 안내문 등 통일안 송부 및 게시판 등 정비 지시 | ○ 출입국기관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지판 기준(외국어 표기, 각종 안내문 외국어 병기 및 민원실 전용 게시판 등) 정비 기준 소속기관 시달 | 기 | 체 류 관리과 |
| 9. 24. | 교정시설 과밀수용 종합대책 시달 | ○ 교정시설 수용인원 증가로 인한 과밀수용 종합대책 마련 | 무 | 보안과 |
| 9. 24. | 교정시설 폭행사고 예방 종합대책 시달 | ○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수용자간 및 수용자의 직원에 대한 각종 폭행사고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 | 무 | 보안과 |

| 일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수 신 처 | 비 고 |
|---|---|---|---|---|
| 10. 12.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자 확대 관련 지시 | ○ 기존 대상자 외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F-4), 등록외국인 중 거주(F-2)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외국적항공사의 복수 승무원상륙허가자에게도 허용<br>○ 자동출입국 등록심사대를 인천공항에 추가하고, 수도권사무소에도 신규 설치 (시행일자 : 2015. 11. 1.) | 기 | 출입국심사과 |
| 10. 30. | 국가소송 검사·공익법무관 직접수행(관여) 성과지표제 시행 지시 | ○ 직접수행 유형을 법정출석, 서면 직접작성, 이메일 서면검토, 면접상담·지휘 등 4가지로 확대하고, 각 유형별로 점수를 배점하여 성과지표를 산정하고, 직접수행 현황을 매월 보고토록 지시 | 소송수행 검찰청 | 국가송무과 |
| 11. 3. |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한 단속 강화 등 지시 | ○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유도를 위한 사전 계도 및 단속활동 강화, 적법절차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철저 지시 | 기 | 이민조사과 |
| 11. 4. | 비영리법인 운영실태 점검 지시 |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 지시 | 기 | 이민통합과 |
| 11. 13. | 방문예약제 확대 시행 관련 사전 홍보 철저 지시 | ○ 특정시간대 집중되는 민원인을 분산할 필요성에 따라 '16. 2. 1.부터 방문예약제 확대 시행<br>○ 방문예약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홍보등 사전예고가 필요하여 소속기관에 적극적 홍보 지시 | 기 | 체류관리과 |
| 11. 16. | 수용자 도주방지를 위한 위치추적전자장치 운영방안 시달 | ○ 수용자의 귀휴, 외부병원 등 계호 시 도주사고 예방 및 계호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무 | 보안과 |
| 11. 19. | 프랑스 테러사태 관련 사증발급 심사 강화 지시 | ○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사태와 관련, 국내 테러 방지를 위해 사증(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대한 심사강화 소속기관 및 재외공관에 지시 | 기<br>재외공관 | 체류관리과 |
| 11. 26.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접수시 유전자 검사 실시 지시 |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접수시 당사자 사전 동의하에 유전자 검사 실시방안 시달 | 기 | 국적과 |

| 일자 | 제 목 | 주 요 골 자 | 수 신 처 | 비 고 |
|---|---|---|---|---|
| 12. 1. | 겨울철 보호외국인 및 시설 안전관리 강화 지시 | ○ 보호실 적정온도 유지, 건강 및 위생관리 철저, 안전사고 예방 철저 등 지시 | 기 | 이 민 조 사 과 |
| 12. 10. | 쉼터 등에 입소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지 관련 지시 | ○ 가정폭력 피해를 받은 결혼이주여성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여성보호시설에 머무는 경우 체류지 변경신고 미대상으로 처리 지시 | 기 | 이 민 통 합 과 |
| 12. 23. | 난민인정신청서 양식(아랍어, 우르드어) 추가 시범시행 지시 | ○ 아랍어, 우르드어 사용 난민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아랍어, 우르드어 난민인정신청서의 시범시행 지시 | 기 | 난민과 |

## 연설문 목록

○ 2015년 법무부 신년사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 제1회 국민행복법령 경연대회
○ 2015년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 「상사중재 육성법」 제정위원회 위촉식
○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 제24기 공익법무관 임용장 수여식
○ 제52회 법의 날 기념사
○ 제52회 법의 날 학술대회 개회사
○ 법사랑 서포터스 수료·위촉식 및 탈북·다문화 청소년 멘토링 결연식
○ 전국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
○ 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사
○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황교안 법무부장관 이임사
○ 김현웅 법무부장관 취임사
○ 수원시 국민안전 정책현장 방문
○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
○ 제25기 공익법무관 임용장 수여식
○ 「특정범죄자관리과」 현판식
○ 서울소년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관
○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위촉식
○ 제7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워크숍
○ 여주보호관찰소 이전식 및 주민친화시설 개장식
○ 장흥교도소 이전개청식
○ 제2회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 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4기 개강
○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위촉식
○ 법무부 29초 영화제
○ 세계한인변호사회 제23차 정기총회
○ 법무자문위원회 위촉식
○ 제6회 우리헌법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 정읍교도소 개청식
○ 선진법제포럼 - 준법경영을 위한 준법지원인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 제50회 전국교도관 무도대회
○ 제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사
○ 2015 허그(HUG) 후원의 날
○ 제10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식
○ 제3차 북한 인권 심포지엄 개회사
○ 공익신탁 홍보대사 위촉식
○ 마을변호사 현장설명회
○ 중재산업 발전 자문위원회 위촉식
○ 2015 법질서 유공 포상식
○ 「신상정보관리센터」 현판식
○ 2015년 소년원 문화예술제 및 올해의 교사상 시상식 격려사
○ 블로그 기자단 워크숍
○ 2015년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식

# Ⅲ. 장관 연설문

## ○ 2015년 법무부 신년사

Ⅰ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을미년(乙未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평화와 온화함을 상징하는 양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Ⅱ

작년 한 해는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안타깝고 아쉬운 일들이 많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위헌정당 해산을 통해 헌법가치 부정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철도·해운, 공공기관, 보조금 비리에 검찰수사 역량을 집중하였고, 성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에도 심혈을 기울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마을변호사를 위촉하여 법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학대 피해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수형자에 대한 집중인성교육과 취업 기회 확대로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도왔으며, 투자이민 확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행복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여러분 모두의 열정과 헌신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Ⅲ

법무가족 여러분!

올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의 고통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거쳐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모든 면에서 성숙한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여 광복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불안정한 정치상황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를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잇따른 안전사고와 강력범죄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집단이기주의의 관행과 고질적인 부정부패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잡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와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국가혁신에 나아가야 할 적기입니다.

'국가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해야 하는 이때, 우리의 역할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질서 확립을 통해 국가혁신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법은 물이 흘러가듯 세상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이고 법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낮은 법질서 의식은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들로부터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경험하였습니다.

법질서가 확립되어야 국가혁신과 경제 재도약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여, 사명감을 갖고 법질서 존중 문화 구현에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헌법가치를 지키는 것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출발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임시정부 시절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보장되는 나라를 꿈꾸어 왔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공직자라면 누구나, 우리 사회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 행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고, 헌법가치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부패는 개인의 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정상적 흐름을 왜곡시켜 사회적인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특히,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국가정책을 왜곡시키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폐단을 낳습니다.

부패척결이야말로,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국가의 성장 원동력인 것입니다.

금년에는, 공공분야의 적폐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비정상적 관행과 부조리도 정상화시켜 깨끗하고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그에 앞서, 우리 법무·검찰 구성원부터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모범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항상 국민 중심, 현장 중심의 자세를 견지하기 바랍니다.

공직자 특히, 우리 법무·검찰 구성원의 사명과 목표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지난 해 범죄가 다소 감소하고 성폭력 등의 범죄피해와 재범률도 줄어들었다고 하나, 연이은 강력범죄 등으로 국민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국민은 법과 정책을 알지 못하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방식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 정책이라도 국민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완성도 있게 추진해 나갑시다.

국민에게 법무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현장점검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법무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갑시다.

4대악 범죄와 강력범죄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입시다.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법의 따뜻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탈북자, 이민자 등의 조기 정착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합시다.

아울러,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법무지원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 확보를 통해 고품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 공직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직사회의 많은 부족함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렸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부족함을 개선하여 국가혁신을 이루어야 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시대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업무혁신을 통해 법무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단히 진력하여 각자의 전문성을 키워 갑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법무정책을 추진해 갑시다.

저는 법무가족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은 물론 조직구성원 간에 서로 배려하고 힘을 모아 갑시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의 목표에서 더 나아가 궁극적 목표를 향하여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업무를 추진한다면 우리 스스로 보람있고, 국민도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Ⅳ

친애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이 행복한 법무행정'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지고 국가혁신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꿈은 어느 새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 1. 2.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오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된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는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목적으로 2012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서 오로지 피해자 변호만을 담당하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됨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작년에 실시된 전담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의 응답자로부터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을

얻었고, 지역사회의 피해자 지원 관련기관으로부터 전담변호사를 확대 배치하여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전담변호사들은 3,936명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부터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도 법률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노력은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억울함을 구제함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위로를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는 피해자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 7.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 제1회 국민행복법령 경연대회

Ⅰ

반갑습니다.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대회 예선부터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치열하게 준비한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또한, 대회 심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간을 내 주신 존경하는 김일수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심사위원님들과, 참가자들을 응원하고자 이곳까지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Ⅱ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은 '목적이 법의 창조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은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모든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행복의 실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법치의 의미가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으로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쳤다면, 오늘날은 법으로 국민을 잘 살게 해 주고 편안하게 해 주며 안전하게 해 주는 따뜻한 법치에 보다 중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뜻한 법치, 즉 국민이 법을 통해 행복

해진다면 우리 사회에 법치가 자연스럽게 확립되고,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따뜻한 법치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전제는 입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법무부는 국민의 의견을 들어 아동 보호를 위한 친권 정지·제한 제도 도입, 여행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여행계약 신설 등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입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입법의 과정마다 국민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입법전문가도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에 직접 반영하고,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입법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Ⅲ

참가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미 존재하는 법을 해석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 왔을 것입니다.

또한 이 대회를 통해, 존재하는 법을 적용하는 것과 반대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을 만드는 '입법'이라는 과정도 생생히 체험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 법률상담이나 소송 등 통상의 법률서비스와는 다른 입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법으로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겠다는 포부도 한번 가져보기 바랍니다.

Ⅳ

오늘 본선 참가자들은, 좋은 입법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총 232명이 참여했던 예선 심사의 치열한 경쟁을 뚫은 실력 있는 예비 법조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선에서도 국민행복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경연해 주기를 바랍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입법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 행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청양의 기운으로 평안과 행운이 가득한 2015년이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 14.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 2015년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Ⅰ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법사랑 연합회 임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좋은 계절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헌법가치와 법질서 확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전국연합회 최삼규 회장님을 비롯하여 58개 지역연합회 회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고 계시는 전국의 법사랑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전국의 법사랑위원 여러분!

법사랑 위원회는 그 동안 범죄예방을 모토로 많은 봉사활동을 펼쳐,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변화된 사회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봉사활동을 법사랑 위원회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내실화하였습니다.

다시금 이 자리를 빌어 전국의 법사랑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Ⅲ

존경하는 법사랑위원 여러분!

올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광복을 맞은 지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제, 광복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시대에 대비해 모든 면에서 세계 일류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와 법질서가 반드시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아직도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법과 질서를 경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야 말로 선진 대한민국의 핵심요소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헌법가치 부정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부의 노력과 함께 법사랑

위원 여러분의 역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Ⅳ

전국의 법사랑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사회는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어가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약화되는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유와 행복을 찾아 우리나라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주민은 82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그들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돕고자 북한이탈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하고, 일대일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위와 같은 추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법사랑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거나, 타인의 선행을 보는 것만으로도 인체의 면역기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봉사활동이 건강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하며, 법무부는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법사랑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3. 20.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상사중재 육성법」제정위원회 위촉식

Ⅰ

존경하는「상사중재 육성법」제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들 바쁘신 와중에도 위촉을 허락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Ⅱ

현대사회에서 분쟁의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인 ADR 즉,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사중재는 분쟁의 당사자들로부터 신속성과 중립성을 인정받으며, 법원의 판결에 앞서 상사분쟁의 우선적인 해결방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세계 각 국에서는 자국의 중재기구에서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제중재원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2009년 자국의 중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멕스웰 체임버스'라는 복합 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하여 중재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싱가포르 국제중재원은 멕스웰 체임버스 설립 이전보다 국제중재사건을 3배 이상 유치하면서 아시아 상사중재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제중재 사건 유치 건수가 몇 년간 답보상태를 보이며, 해마다 법률 서비스 무역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장차 국제중재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연속으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한 세계 9위의 무역 대국으로 외국과의 경제 교류가 매우 활발한 국가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중심에 위치하여 이들 국가 간의 상사 분쟁을 중재하기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대륙법과 영미법을 아우르는 우수한 법조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재 전문가들이 일본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국제중재 시장에 투자를 늘려 영향력을 키우기 전에 우리가 하루빨리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본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내중재 분야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사중재 육성법」 제정위원회의 발족은 대단히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Ⅲ

이번에 모신 위원님들은 모두가 중재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십니다.

부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세계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3. 25.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Ⅰ

친애하는 교정기관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웠던 겨울도 어느덧 다 지나고 따뜻한 봄기운이 확연히 느껴지는 가운데,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 국정운영 방침과 법무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교정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초 대통령께서는 국정 3년 차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가혁신을 이루겠다는 국정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을 통한 국가혁신 기반 마련을 핵심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고, 헌법가치 수호를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 법률복지 확충,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초 법질서 준수운동 확산 등의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정기관장 여러분도 법무정책 추진 방향에 발맞추어 새롭게 도약하는 교정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뜻과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Ⅱ

작년 한해 법무부는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가안보 위해세력에 적극 대처하여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었고, 방위사업비리 등 공공분야의 적폐와 민관유착 비리 근절에 힘쓴 결과,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동인권, 마을변호사제도 등 서민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에도 적극 노력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교정행정 분야에서도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성폭력사범과 마약사범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형자 교정교화에 매진하였으며, 수형자 취업,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안성에 중간처우시설을 추가 개원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 역량을 신장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원격진료시스템 확대 운영, 수용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 강화 등 지난해 교정행정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Ⅲ

교정기관장 여러분!

올해로 새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법무행정 정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정기관장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 중심·현장 중심의 교정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가일층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이 국민 삶의 현장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아울러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둘째 '사람을 바꾸는' 실질적인 교정교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자 인성교육과 심리적 안정을 통한 내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정교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들어 집중인성교육을 전면 확대 실시하고, 귀휴, 가족만남 등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수형자들이 재범의 유혹을 이겨내고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교정현장의 최 일선에서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학적, 전문적 교정교화 시스템 구축과 실질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자 개별처우계획 전면 시행과 분류센터 운영, 정신보건센터 증설 등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사회복귀 통합지원 활성화로 출소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만 육천 교정조직의 화합과 소통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은 전통적으로 인화와 단결의 끈끈한 조직문화로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를 유지하며, 빈틈없는 수용관리와 교정교화에 역량을 발휘해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는 일선 현장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복지 향상에 힘쓰는 한편, 직원 상하 간에 막힘없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만 육천의 방대한 조직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수형자 교정교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변화와 창조, 소통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Ⅳ

교정기관장 여러분!

우보천리(牛步千里) 라는 말이 있습니다.

느릿느릿한 소의 걸음이 천리를 가듯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교정행정의 나아가는 길이 결코 세상의 뜨거운 주목을 받거나 화려하게 빛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이 황소의 발걸음으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해 나간다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세상의 밑거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이 교정행정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여러분의 열정을 함께 나누고, 수형자 교정교화와 재범방지라는 공통의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장관으로서 국민에게는 행복을, 수용자에게는 희망을 주는 교정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3. 27.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 제24기 공익법무관 임용장 수여식

Ⅰ

신임 공익법무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동안 4주간의 군사훈련과 법무연수원 직무교육을 마치고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헌법가치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봉사의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은 정당해산심판 등 국가송무 업무와 검찰청과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며 헌법가치 수호와 법률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신임 공익법무관 여러분 역시 강한 책임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Ⅱ

신임 공익법무관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를 대표하는 장관으로서, 또한 선배 법조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맡게 될 국가소송 업무에서 긍지를 갖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헌법가치 수호와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최근 통상적인 국가소송 업무 뿐만 아니라, 위헌정당해산심판, 과거사 소송과 같이 사회적 담론을 담은 사건들도 국가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청에 배치된 공익법무관들은 민사소송에서의 위증을 검토하는 등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위 엄단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들의 책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가의 변호사로서 국익을 옹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률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법조계는 변호사가 2만 명을 넘어서고 연간 2천 명 가까운 변호사가 배출되는 등 외적으로는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85% 이상의 변호사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많은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범죄로 어머니를 잃은 자매의 구조금 수령을 도와주고,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준 공익법무관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이 아이들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공익법무관 여러분은 법률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상처받고 소외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보호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후적인 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분쟁의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행정 각 부처에서 국가소송뿐만 아니라 법률자문 업무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법무관법이 개정되면 국가소송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법률 제·개정업무의 수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법률분쟁의 사전 예방 이야말로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Ⅲ

사랑하는 공익법무관 여러분!

괴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가장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배정받은 기관에서 법무관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다양한 업무에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년간 걷게 될 공익법무관으로서의 길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의미 있고 크게 발전했던 시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여 맡은 바 소임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십시오.

법무부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24기 공익법무관 여러분의 임용을 축하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3. 30.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 제52회 법의 날 기념사

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을 통해 법치주의의 참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헌법가치 실현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신 공을 인정받아 오늘 영예로운 훈장과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이자 우리나라에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난과 전쟁의 역경을 딛고 반세기만에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꽃피우는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러한 대한민국의 발전은 법치주의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의 밑바탕에는 성장 동력과 국민 의지를 한데 모으는 효율적인 법제도망이 있었고, 민주화를 위한 국민의 열망도 인권을 신장하는 많은 법률에 의해 실현되었습니다.

Ⅲ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법대로 하면 손해 본다', '법과 원칙보다는 목소리가 커야 잘 통한다'는 등의 그릇된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약속이자 사회신뢰의 기반인 법이 지켜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산업화, 민주화의 역사를 온전히 이어갈 수 없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곳에서도 법치를 바로 세우지 않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나라는 없었습니다.

국가혁신을 통해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려는 우리 시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지금은 법치주의의 확립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Ⅳ

법치주의는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들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법을 실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국가기관이 법을 집행할 때에는 특권과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믿고 누구도 예외 없이 법을 지켜야만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공감대를 이룰 때에 법치주의가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법치주의 확립의 관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법률가는 높은 윤리의식과 인격을 갖추고 절제와 모범을 보이는 법률전문가일 것입니다.

Ⅴ

내외 귀빈 여러분,

OECD 국가 중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법질서 수준, 고질적 비리구조와 비정상적 관행으로 끊이지 않는 부패와 안전사고, 그리고 법 경시 풍조까지, 법의 날을 맞아 우리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법치주의의 확립은 국민의 자유와 국가번영의 토대인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확고히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불법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선진 법의식과 준법문화도 정착되어야 합니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부패의 온상이 된 적폐들을 법의 이름으로 엄단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노력을 잠시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일이 법치국가의 존재이유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법은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지도층이 먼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도 한층 더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Ⅵ

국민 여러분,

'법으로 보장되는 자유는 우리가 매일 숨 쉬는 공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을 때는 그 중요함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법치주의가 흔들릴 때는 그 소중함을 바로 절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법치주의의 확립은 결코 제도로만 이룰 수 없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와 참여가 없는 제도만의 법치주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먼저 법질서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법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가 시작됩니다.

다 같이 믿고 지켜가는 법질서 속에서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으며, 법치주의도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화롭게 실현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 풍요로우면서도 따뜻한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선진 법치국가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Ⅶ

끝으로,

오늘 훈포장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와 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 시간에도 법질서 확립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축복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4. 24.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 제52회 법의 날 학술대회 개회사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2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헌법가치와 법치주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권위 있는 한국헌법학회와 법무부가 처음으로 함께 준비한 학술대회인 만큼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헌법학회의 박종보 회장님, 학회 회원 여러분,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올해는 우리가 헌법을 제정한지 6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7년 전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나라를 되찾아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헌법의 핵심가치로 담아 대한민국을 출범시켰습니다.

우리의 헌법은 전쟁의 포화와 역경 속에서도 고귀한 희생과 노력으로 지키고 가꾸어 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고, 인권이 신장되고 자유와 정의,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 일류 사회로 나아가는 제도적 기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 비정상적인 관행들과 법경시의 풍조가 남아 있고,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일들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의 기틀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Ⅲ

우리 모두 헌법의 소중함을 확고히 인식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법치주의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무질서와 혼란으로 흐를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법치주의는 자칫 형식적인 법 우월주의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유와 정의가 충만하면서도 법질서 문화가 정착되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사회가 우리가 진정 꿈꾸는 선진 법치사회일 것입니다.

Ⅳ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논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속에서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헌법가치와 법치주의를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법문화와 높은 법질서 의식이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브랜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법률 지식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훌륭한 법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우리 법률가들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력 있는 법률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세계인이 공감하는 법시스템을 만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법률제도가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Ⅴ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 헌법에 담긴 소중한 가치를 느끼고 국민 속에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과의 공감을 통해 헌법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헌법정신이 구현되는 법치주의의 실현 방안에 대한 활발하고 열띤 발표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뜻 깊은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4. 24.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 법사랑 서포터스 수료·위촉식 및 탈북·다문화 청소년 멘토링 결연식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꽃들이 만개하고 자연의 푸르름이 짙어지는 신록의 계절입니다.

환한 웃음으로 맞이해준 선생님들과 학생들,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대학생 여러분들과 마주하니 젊음의 향기가 더욱 가득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해 '공감토크'를 겸한 위촉식에서 처음 만났던 7기 서포터스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활동으로 상을 받은 수상팀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8기 서포터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Ⅱ

7기 서포터스 여러분!

지난 8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법무부가 중점 추진한 4대악 근절과 법질서 실천을 주제로 학교와 거리, 정책현장을 뛰어다니며 법교육을 하고, 취재와 보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법이 딱딱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법은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사회구성원간의 약속'이고 '지키면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직접 알리고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노력은 법질서 존중 문화를 뿌리내리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Ⅲ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서포터스와 법사랑 위원 여러분!

올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의 고통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 지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으로,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 발전을 토대로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를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전 국민이 통합하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통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롭게 대한민국 구성원이 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미래의 주역으로 함께 성장해야 할 새터민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서포터스 여러분과 법사랑위원이 이들 청소년들과 일대일 또는 집단 결연을 통해 학습 및 진로 지도, 경제적 후원 등을 맡고, 각 지역 검찰청과 마을변호사 등이 법체험 활동과 법률적 지원을 하는 다중 멘토링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다중 멘토링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포터스와 법사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발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사회통합의 선봉에서 일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Ⅵ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학생 및 법사랑 위원 여러분!

러시아 문학의 거장 톨스토이는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이 모여 희망차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도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5. 8.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전국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

Ⅰ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록이 풋풋한 생명력으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이 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업무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출입국·외국인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정부는 출범 3년차를 맞아 경제 활성화, 국가 혁신 및 비정상의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국가 재도약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기 위하여 헌법가치 부정 세력을 엄단하고, 부정부패와 4대 사회악 척결에 힘쓰는 등 법질서 확립에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법령들을 정비하고 모든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실감하도록 따뜻한 법치의 실현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공익사업 이민제와 환승관광객 무비자입국제 등 투자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습니다.

외국인의 체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영주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헌법 가치의 함양과 사회통합 교육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는 우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모든 구성원이 한 마음으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로 생각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출입국기관장 및 주재관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연간 출입국자가 6천만 명을 넘어서고 체류 외국인이 18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그 증가폭도 날로 더 커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국가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정책은 이제 국가의 경제와 인구정책의 핵심 요소이자 장차 국가의 명운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정책분야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를 시행착오 없이 장기 발전으로 이끌 정책을 시행해야할 우리의 책임도 더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Ⅲ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열리는 오늘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면서 이 기회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의 활성화와 성장 동력의 확충에 기여할 외국인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는 국가경제의 활성화와 성장기반 확충을 최우선적 정책과제로 삼고 이를 촉진할 활력소를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외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 우량기업 및 인재의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므로 이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손이 없어 생산과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애로를 해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민자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통합을 위하여 헌법가치와 법질서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회의 구성과 운영의 근본 원리가 되는 헌법과 국법질서의 기본적 구조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건국되었으며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끊임없는 폭력적 이념적 도전으로부터 이를 수호해낸, 고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가치를 이해하여야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헌법가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입국과 체류의 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수법도 계속 조직화, 지능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들에 의한 강력 사범이 잇달아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는 법질서를 저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높으며 반외국인 정서를 촉발하는 주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근절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현장단속과 함께 불법고용 및 취업알선 등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요인을 척결하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억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기존의 관념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고객 중심, 현장 중심의 출입국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제 출입국·외국인행정은 국경관리와 외국인 체류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행정에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하여 경제와 인구 정책을 조율하는 조장적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에 따라 이제 모든 세계시민이 한국을 방문하고 체류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우리의 생각을 과감하게 전환하여, 이들을 잠재적 정책고객으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인종, 국적, 경제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며, 특히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업무 자세를 확립하여 고객과 항상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며 어떤 것을 불편해하는지 찾아내어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임무를 다하려면 정책의 취지를 대상 고객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로 그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정책을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업무자세를 확립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를 충실하게 실천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Ⅳ

친애하는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여러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모든 구성원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각자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창조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국민과 세계 시민에 대한 봉사자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합니다.

그리고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올해 예정된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와 그 구성원을 획기적 발전으로 이끌어줄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5. 11.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사**

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한외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계인의 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 주신 김회선 의원님, 여성가족부 권용현 차관님, 그리고 각국 대사님들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모처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얼굴을 마주하고 어울림으로써 서로 더 친해지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화합의 장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세계인주간에 전국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축하행사와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우리는 국적과 인종 등 모든 '차이를 넘어서', 세계시민으로서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한외국인 여러분!

세계인의 날이 처음 제정된 2007년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00만여 명이었으나 지금은 180만 명을 넘어서고, 그 출신 국가도 191개국으로 확대되는 등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와 함께하는 외국인이 보다 쉽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통합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국민에게는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을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번영하는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세계화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서로의 발전을 촉진하여, 마음을 더 활짝 열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의지와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할 때입니다.

Ⅲ

정부는, '세계인의 잠재력이 꽃피는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세계시민을 고객으로 모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언어장벽과 정보부족으로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모국어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내국인은 물론, 더 많은 외국인이 보다 편리하게 입·출국할 수 있도록 자동출입국심사의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 각 분야의 외국인 인재가 보다 쉽고 예측이 가능한 방법으로 영주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영주자격 점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체류 민원도 온라인 신청과 우편을 통한 서류제출 방식으로 전환하여, 매번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고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함양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혀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도 잊지 않겠습니다.

Ⅳ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한외국인 여러분!

올해는 대한민국이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이룩한 기적적인 발전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도 함께 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초대 '올해의 이민자상' 수상자 마리 헬렌 브라서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계시는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논어에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는 뜻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전 세계인이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미래의 땅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세계인의 날 슬로건인 '차이를 넘어, 더 가까이'와 같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화합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국적과 문화, 그리고 언어와 피부색을 초월하여 '세계인'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5. 20.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열정적으로 준비하신 수원구치소 직원 및 소방본부 항공대, 수원소방서, 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과 훈련에 적극 참여해 주신 수원소방서 구조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재난관리 매뉴얼 제정, 법무시설 재난안전점검,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수용거실 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시설 안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교정시설은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어 재난사고에 취약하고,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숙달 훈련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반복실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오늘의 합동훈련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교정시설의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실제 상황에 맞춘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비훈련을 통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훈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용남 국회의원님, 김일수 51사단장님, 이재준 수원시 부시장님 등 유관 기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수원구치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5. 21.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 황교안 법무부장관 이임사

Ⅰ

사랑하는 법무·검찰 가족 여러분!

오늘, 정들었던 여러분과 작별인사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혼자의 힘은 미약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었기에, 난관(難關)을 극복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성숙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근 메르스 대응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출입국본부 직원을 비롯한 여러 담당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Ⅱ

2013년 3월 11일, 이 자리에서 저는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을 다짐하였습니다.

지난 2년 3개월 동안, 그 다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루하루를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선고되고, 국회의원 내란 관련 사건을 엄단하여 헌법 부정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냈습니다.

폭력집회·시위 등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원칙에 따른 일관성 있는 법집행으로 준법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갔습니다.

4대 사회악과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히 대응하고, 재소자를 위한 인성교육 등 범죄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의 전국 확대로 법의 문턱을 낮추고,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법의 따뜻함을 실현하는 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힘을 모았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국민이 그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때까지 계속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법무·검찰 가족 여러분!

지금,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용기와 힘을 보태어 주어야 합니다.

감염되거나 감염 의심자로 확인되어 고통받는 분들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국민 각자가 공공의 선을 위해 힘을 모을 때 개인도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공동체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은 수많은 역경을 헤쳐 온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도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믿고 합심하여 극복해 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법무·검찰 가족을 떠나며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헌법가치를 확고히 지켜나가고 그 과정에서 법치를 통한 국가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는 엄정 대처하여, 선조들이 피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임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안전과 자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행복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법질서를 확립하고 고질적인 부조리와 적폐를 가려내어 국가개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법치를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취임한 이래 법무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을 집행함에 있어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과 소통하도록 해 주십시오.

국민이 현장에서 겪는 아픔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의 다양한 이해들이 실질적으로 형평을 이루도록 법을 집행하여,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이 원하는 고품격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바른 공직관을 갖추고 전문지식을 연마하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공직자의 인식과 자세에 따라 정책의 내용과 방향이 결정되고 수혜자들에게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사명감을 갖고 주위에 관심과 지원이 미치지 않는 사회적 약자가 있는지 살펴,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과 제도적 정비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법의 문턱을

낮추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률복지 혜택이 골고루 퍼질 수 있게 하는 데에도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함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Ⅳ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드리 햅번 일화를 소개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국제구호기금의 도움으로 기아를 이겨내고 성장한 소녀가 바로 오드리 햅번입니다.

그녀는 배우생활을 마치고 유니세프의 친선대사로서 죽는 날까지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손이 두 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한 손은 자기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공직자가 어떤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돌아보게 하는 일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작은 노력도 국민의 삶에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잊지 말고, 국민을 배려하는 따뜻한 법집행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메르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자신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있었기에 대과 없이 파고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애정과 헌신으로 도와주신 여러분 한분 한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 소중한 인연,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만, 여러분들은 후임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법무부가 흔들림 없이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6. 18.

법무부장관 황 교 안

**○ 김현웅 법무부장관 취임사**

Ⅰ

법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질서 확립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혁신이란 시대적 과제를 맡게 된 것에 무한한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그리고 헌법가치를 세우고,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헌신하신 전임 장관님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인가 초일류국가로 도약할 것인가 국운을 정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기적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즉 백성의 신뢰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법에 대한 신뢰는 나라의 기틀입니다.

국민이 믿고 따르는 법치를 완성하는데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Ⅲ

친애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저는 오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반듯한 사회, 사회적 약자가 배려 받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첫째, 반듯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준법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로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기본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는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집행하여, "법을 지키면 이익이고, 법을 어기면 책임이 뒤따른다"는 믿음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어릴 때부터 법과 질서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체계적인 법교육을 실시하여 법을 지키는 것이 문화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내린 부정부패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가로막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여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공공분야의 적폐와 민관유착 비리, 그리고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법이 모두에게 공정하다는 믿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무·검찰 구성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법에 대한 신뢰회복의 지름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국민행복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에 더욱 매진하고,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서민생활을 괴롭히는 범죄를 더욱 엄단해 주기 바랍니다.

강력범죄와 개인정보침해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범죄대응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사람을 바꾸는 교정교화와 보호관찰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인권을 바탕으로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 공공복리를 지켜내기 위한 원칙입니다.

법집행 기관인 법무부는 인권보호를 선도하여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없고 약한 사람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인권보호는 적법절차 준수라는 소극적 개념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실천이어야 합니다.

여성과 아동, 그리고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하루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완비하여 그분들이 신속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미래를 주도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과거, 정보의 중요성을 예측하고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미리 준비하였기에 광범위한 컴퓨터 자료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진

것처럼,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여 그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국가 재도약을 위한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나아가, 머지않아 현실이 될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통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Ⅳ

법무·검찰 가족 여러분!

메르스로 인해 격리된 투석 환자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건강도 뒤로 한 채, 자원봉사에 나선 간호사 분들의 헌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고시원에서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소임을 다하는 이분들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믿음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간호사분들이 보여주신 믿음과 희망에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믿음의 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법집행을 담당하는 우리들의 진심어린 실천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들의 헌신적인 실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7. 9.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 수원시 국민안전 정책현장 방문

Ⅰ

수원시민과 내외 귀빈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시되는 시점에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될 수원에서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남경필 도지사님, 김용남 의원님, 김종양 경기지방경찰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귀빈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염태영 수원시장님,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신 지역 주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이 자리에 참석하신 수원시민과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는 광복 후 70년 동안 국민 모두의 피와 땀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물질적 가치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사람 중심이 아닌 물질 중심이 되는 문제점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범죄는 날로 흉포화 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국민행복의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그 동안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자를 엄벌하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폐지를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선제적인 예방대책도 함께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지역주민과 여러 민간단체 등 민·관이 합심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고, 만족할만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Ⅲ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범죄발생의 원인을 현장에서 직접 찾아보고,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확고한 믿음이 들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및 수원시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동참하여 적극 후원해 주시는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7. 21.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탁법」에 따라 첫 번째 공익신탁이 출범하는 날입니다.

기부와 나눔을 위한 공익신탁의 첫 걸음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유명 연기자이신 유동근님, 국제구호 전문가이신 한비야님, 이철희 분당서울대 병원장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님, 김정기 하나은행 부행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Ⅱ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기부지수는 세계 60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상위 20%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6%에 이르는 반면, 소득하위 20% 가구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13.1%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빈부격차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지에 대한 수요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3위에 이르렀고, 정부가 복지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사회공동체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 민간 차원의 기부를 활성화 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편리하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공익신탁법」을 제정하였습니다.

Ⅲ

공익신탁이란 금전과 같은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수탁자로 하여금 재산을 잘 관리·운용하도록 해서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 등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가만 받으면 즉시 공익신탁을 설립할 수 있고, 따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종래 기부에 자주 이용되어 오던 공익법인 설립에 비해 훨씬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익신탁의 주요 운영현황이 인터넷에 공시되고, 회계에 대해서 법무부나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으로만 기부한 금품이 사용되기 때문에 기부한 사람의 의사가 끝까지 관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익신탁의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낮은 비용으로 '나만의 재단'을 설립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Ⅳ

제1호 공익신탁인 '상처받은 아이 보듬는 법무가족 파랑새 공익신탁'은 학대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과 법무가족들은 파랑새 공익신탁을 설립해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학대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에게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예쁜 곰 인형도 선물할 계획입니다.

행복을 의미하는 '파랑새'처럼 아이들이 상처를 딛고 행복을 되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나은행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유명 연기자이신 유동근님의 참여 하에 '나라사랑 공익신탁'을 설립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정성을 모아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헌신하신 독립투사의 후손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계를 향해 행군하고 계신 국제구호 전문가 한비야님은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과 더불어 '세계시민학교 공익신탁'을 설립하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세계와 함께 호흡하고 공감할 수 있는 큰 시야를 선물하시고자 합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공익단체인 월드비전과 더불어 '난치성 질환 어린이 치료를 위한 공익신탁'을 설립해서, 병마와 싸우는 어린이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전 직원이 매달 급여에서 조금씩 모아 범죄피해자, 난민, 수용자 가족 등 도움이 절박한 법무부의

정책 고객들을 돕는 '천사 공익신탁'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Ⅴ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경주 최 부잣집의 가르침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상부상조와 환난상휼의 전통이 있습니다.

기부와 나눔을 위해 마련한 공익신탁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상부상조 전통을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익신탁으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크게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에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Ⅵ

다시 한 번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7. 23.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 제25기 공익법무관 임용장 수여식

Ⅰ

신임 공익법무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4주간 군사훈련과 3주간 직무교육 과정을 마치고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동안 배양한 실력을 국민을 위하여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익법무관 제도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률구조와 국가송무를 내실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첫 해 21명이던 공익법무관이 이제 581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익법무관 제도 도입을 통해 법률구조 사업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하였고,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승소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의 선배들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한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공익법무관 선배들의 전통을 따라 주어진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Ⅱ

신임 공익법무관 여러분!

민무신불립, 국민의 신뢰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반듯한 사회', 사회적 약자가 배려 받는 '행복한 국민'을 모토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국 각지에서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이루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법치주의 확립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각급 검찰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하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담당할 소송 하나하나가 국민의 혈세를 지키고, 법치행정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둘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사회에는 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고통 속에 국가의 지원을 기다리는 범죄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작은 도움이라도 나누려는 진심어린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그런 노력들이 모여 따뜻한 법치가 실현되고, 사회통합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셋째, 공무원으로서 복무기강을 준수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 공익법무관이 허위출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호의 임무를 부여받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에 맞게 공사생활에 있어 신중히 행동하고 품위를 유지할 것을 당부합니다.

Ⅲ

신임 공익법무관 여러분!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게 될 3년은 법률가로서의 여러분 앞날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책 속에서만 있던 법률이 실제 적용되는 현실을 경험할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업무에 임하고, 겸손한 자세로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쌓은 실력이 여러분의 평생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공익법무관 임용을 축하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의 앞날에 희망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7. 27.

법무부장관 김 현 웅

**○「특정범죄자관리과」현판식**

오늘 특정범죄자관리과 현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특정범죄자관리과 출범을 위해 노력해온 범정국장, 특정범죄자관리과장 등 여러 직원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성폭력 등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범죄 전담 부서인 '특정범죄자관리과'가 신설되었으니,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력범죄 방지 대책을 실현해 나가기 바랍니다.

전자발찌, 성충동약물치료, 신상등록 등의 제도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낸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특정범죄자관리과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국민이 편안한 법무행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015. 7. 28.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서울소년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이번 을지연습 합동 방호 훈련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왕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서울소년원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서해 연안에 방사포 진지구축, DMZ 목함지뢰 폭발 사고유발 등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보안목표 시설인 소년원에서 유사시에 대비하여 시설 방호 능력을 제고하고, 수용소년의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을지연습을 통해 전시 대비태세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보여주신 실전과 같은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합동 훈련을 통하여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전시 비상대비능력의 향상과 국가 안보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훈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성제 의왕시장님, 김희겸 경기도 부지사님, 허일회 중앙평가단장님 그리고 소속 기관장과 유관 기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8. 17.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위촉식**

바쁘신 중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직을 수락해주신 변호사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님 및 벤처기업 CEO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무부는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중소기업들이 법률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하는 등 법률지원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창업 초기 벤처·중소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법률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여러분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센터장님과 변호사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은 벤처·중소기업의 법률 조력자로서, 창조경제를 이끄는 벤처·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법무부도 중소·벤처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 행정을 통해 믿음의 법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위촉식에 참석해주신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고, 참석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 8. 25.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제7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워크숍**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단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학한지 얼마 안 돼서 학교생활이 바쁠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행사에 참석해 준 그 열정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법무부 블로그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7년째 기자들의 활동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종종 블로그를 찾아가 기자님들의 글을 읽어보곤 하는데요, 공익신탁 행사를 현장 취재한 기사라든지 휴가철 무심코 저지르는 경범죄 이야기라든지 시리즈로 연재되고 있는 마을변호사를 인터뷰 한 기사 등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특히 마을변호사 인터뷰 기사는 지역 언론에까지도 기사화 됐다고 들었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과 법무정책이 절대 쉬운 소재가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활에 유용한 법 상식과 법무 정책을 찾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 주시는 기자님들의 노력이 정말 멋있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약하여 많은 국민이 법과 법무정책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요즘,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안전할거란 믿음, 법을 지키면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이 온 국민의 마음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저와 법무부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 안에서, 여러분이 해줘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정말 잘 만든 정책도, 국민이 알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자님들의 발 빠른 취재와, 재미있는 글 솜씨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과 정책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활동이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기자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남부교도소로 견학을 간다고 들었습니다.

워크숍과 견학을 통해 많이 배우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블로그 기자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함께 찾아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8. 27.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 여주보호관찰소 이전식 및 주민친화시설 개장식

Ⅰ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여주보호관찰소 청사 이전식에 참석해주신 원경희 여주시장님과 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장님, 곽병두 법사랑위원 여주지역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Ⅱ

세종대왕·명성황후의 넋이 면면히 흐르는 역사 도시, 세계 3대 광고제인 '뉴욕국제 광고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세계 속의 명품도시 이곳 여주에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새로운 전기를 맞기 위해 오늘 여주보호관찰소가 새 청사로 이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 3월, 여주보호관찰소의 청사 이전이 성사되기까지 지역주민들의 오해와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원경희 여주시장님을 비롯한 여주시민들의 이해와 여러 기관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 법사랑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원으로, 여주보호관찰소는 지역 주민과의 민주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통해 청사 이전을 성공시킨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원경희 여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만한 청사 이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직원과 지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Ⅲ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를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적극적인 선도와 보호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선진 형사정책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소년범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한 이래, 모든 성인범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 현재는 연간 20여만 명의 보호관찰대상자를 관리하며 재범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11만 여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농촌 일손 돕기와 국민공모제에 투입,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과 불우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보호관찰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통즉불통(通則不痛) 불통즉통(不通則痛)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는 뜻으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전식을 통해 여주보호관찰소는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기피시설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법에 대한 신뢰는 나라의 기틀입니다.

법무부와 보호관찰소는 국민이 믿고 따르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데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8. 27.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장흥교도소 이전 개청식**

Ⅰ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족 최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문화와 예술의 고장 정남진 장흥에서 장흥교도소 이전 개청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낙연 전라남도 도지사님과 명현관 전라남도의회 의장님, 김 성 장흥군수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설 신축과 이전 개청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장흥교도소는 1975년 4월에 수용인원 250명 규모로 장흥읍 원도리에 개청하였으며, 2014년 8월 28일 수용인원 500명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 용산면 어산리로 신축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흥교도소 신축 이전으로 수용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용자 인권보호는 물론 처우개선과 함께 수형자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는 노후시설과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해남·영월·밀양·상주·정읍에 교정시설을 신설하였고, 서울남부교정시설을 이전 개청하는 등 신축 및 이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Ⅲ

신축된 장흥교도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건축과정부터 많은 부분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시설 외관을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저층 분산형 구조로 건축하였고, 태양열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

하여 청정 장흥의 환경 보호에도 각별히 유의하였습니다.

또한 장흥교도소에서는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불우이웃과 독거노인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민원실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전시하는 등 지역 특산물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수용자 등 정주인구의 증가는 지역사회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이같이 장흥교도소는 교정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지역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Ⅳ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교정시설이 들어서는데 우려의 시선이 없지 않지만, 교도소는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형자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돕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교도소 신축 과정에서 장흥군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열린 자세는 높은 시민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법무부는 국민이 믿고 따르는 '믿음의 법치'를 완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반듯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정분야에서도 범죄자 재범방지를 목표로 수형자에게 따뜻한 감동과 믿음을 주어 '사람을 바꾸는 교정행정'을 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수형자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집중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형자 개별처우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을 위하여 교정심리치료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개원하는 등 교육과 재활치료를 내실화하고, 최근 도입한 스마트 접견 등 각종 접견제도를 통해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노력만으로는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정책성과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서 우리 부의 교정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장흥교도소의 성공적인 이전 개청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개청식이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9. 3.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제2회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Ⅰ

전국 보호기관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에 제2회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법무행정의 비전을 공유하고 '국가 재도약'이라는 목표를 함께 이루어 가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정책이 마련되고 보호기관도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Ⅱ

기관장 여러분!

지금까지 범죄예방정책국은 법질서 실천운동 및 법교육 확대, 치료감호소 환경개선, 출소자와 소년원 학생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입체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보호수용 제도 도입 추진 등 강력범죄예방에 집중하여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Ⅲ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취임식에서 '믿음의 법치'를 통한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믿음의 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법무 정책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가 정책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범죄취약지역과 재범 고위험군을 집중관리하여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범죄예방 환경사업 현장

이었고, 두 번째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입니다.

이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법무부의 기본 업무이자 최우선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본을 지키지 않아 보호기관에서 수용 및 계호사고가 몇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보호기관에서 수용과 계호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수용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하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적극 지원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과 탈북청소년 대상 멘토링 지원 및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범죄피해자와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인 따뜻한 법치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 노약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사회통합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보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기관의 기본임무는 재범방지에 있습니다.

각 기관이 이러한 기본 임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면 결국,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립부곡병동 개설 및 여주보호관찰소의 갈등 해결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신뢰가 쌓이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갈등이 남아 있는 지역도 우리가 먼저 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먼저 다가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갈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와 배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질서실천 운동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민주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의식이 강화된 반면 타인에 대한 신뢰와 배려가 부족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타인에 대한 신뢰와 배려가 체득될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간다면 사회적 자본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Ⅳ

친애하는 보호기관장 여러분!

우리는 광복 후 70년 동안 국민 모두의 피와 땀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믿음을 바탕으로 국가의 재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과 맞닿아 있는 여러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부족한 인력사정 등으로 힘든 여건이지만, 각자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저도 장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9. 4.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Ⅰ

전국의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준법문화 확산과 법질서 실천을 위해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실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회를 함께 준비하고, 참석해 주신 이하경 중앙일보 논설주간님, 조준희 YTN 사장님, 최삼규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존경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조금 전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8,100여명의 청소년을 선도하고, 형편이 어려운 6,400여명의 학생에게 총 25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출소자 429명의 취업을 알선하여 사회복귀를 도왔습니다.

아울러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탈북·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대일 멘토링을 실시하여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Ⅲ

내외 귀빈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올해는 광복을 맞은 지 70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왔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완전한 선진국이 되었다고 평가 받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24개국 중 5번째로 높았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민주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 의식은 강화된 반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시급히 뿌리내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배려야 말로 법질서 확립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법무행정의 지표로 삼아, 법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국민이 국가와 법을 신뢰하는 「믿음의 법치」는 사회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법치는 결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의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생활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법질서가 확립되고 믿음의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Ⅳ

친애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각 분야에서 쌓아 온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서 빛과 등대의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는 대한민국을 따뜻한 법치국가로 우뚝 세우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효과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교에서 부부 400여 쌍의 장수비결을 연구한 결과, 그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배려와 봉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봉사자 자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봉사활동 하나 하나가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9. 11.
법무부장관 김 현 웅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4기 개강**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년 1월에 처음 개설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가 벌써 4기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통일준비에 뜻을 같이 해 주시고 아카데미 개강을 위해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신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저녁 시간을 내어 통일을 준비하고자 이 자리에 와주신 수강생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Ⅱ

최근 시리아 난민과 관련된 보도들은 '조국을 잃어버린 비극' 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조들의 피와 땀, 그리고 국군 용사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의 위대한 조국입니다.

금년은 조국광복과 함께 남북 분단 70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달 북한의 지뢰·포격도발에서 보듯이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절실합니다.

1년 8개월만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재개된다는 기쁜 소식이 있지만, 상봉만으로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드리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민관이 합심하여 민족의 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준비를 진행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Ⅲ

법무부는 광복 70주년, 순국선열들의 조국 독립에 대한 고귀한 믿음과 헌신적인 활동을 결코 잊지 않고, '믿음의 법치'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비롯한 인적·물적 통일법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와 같은 통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통일법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법조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

합니다.

법제 통합부터 북한지역의 사법공백을 채우는 일까지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헌법가치와 법률의 통합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대한변협과 함께,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카데미에 개설된 교육과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부터 통일헌법의 제정 방안에 이르기까지 통일법제 전반에 걸쳐 한층 향상된 법률지식을 획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통일법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통일단계에서의 법적 혼란을 예방함은 물론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Ⅳ

안중근 의사는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대업을 이루기 어렵다'는 옥중 유묵을 남기셨습니다.

통일이 내일 당장 오지는 않더라도,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오신 여러분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4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9. 16.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위촉식**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위원직을 수락하시고 오늘 자리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금년 3월 19일 「공익신탁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에 비해 기부지수 평가는 매우 낮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기부를 망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신탁법」에 8개 조문으로 존재하던 공익신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공익신탁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부방법을 마련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의 기틀을 다지고자 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 공익신탁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하철 광고와 라디오 광고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제1호 공익신탁인 「상처받은 아이 보듬는 법무가족 파랑새 공익신탁」을 비롯한 5개 공익신탁의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는 총리실과 대검찰청 등 다른 국가기관과도 협의하여 추가적인 공익신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공익신탁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공익신탁 제도의 정착과 개선을 위한 자문을 구하고자 공익신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모신 위원님들은 학계, 교육, 복지, 금융, 회계, 언론, 경영, 공익활동 등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십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이제 첫 걸음을 내디딘 공익신탁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국민들이 "믿고 탁!" 맡길 수 있는 기부의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9. 17.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 법무부 29초 영화제

Ⅰ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입니다.

뜨거운 여름 볕 아래 시작 된 법무부 29초 영화제가 어느 덧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 대망의 시상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한국경제신문사 김기웅 사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법은 나에게 무엇이다'라는 주제로 진행 되었던 법무부 29초 영화제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접수된 작품은 300편이 넘었고, 수용자들과 소년원 학생들이 보내준 시나리오는 무려 1,400여 편에 달했습니다.

특히 수용자와 소년원 학생들의 시나리오가 여러 감독님들과 함께 동반제작 되는 과정은 함께 하는 성취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모전에 함께 해주신 많은 감독님들과, 재능기부를 해 주신

감독님들, 그리고 한계 속에서도 멋진 작품을 만들어 준 수용자 및 소년원 학생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Ⅲ

제가 생각했던 법은 믿음입니다.

내 삶이 안전할거라는 믿음, 법을 지키면 행복해진다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번 공모전을 통해 법의 역할이 참 많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것, 지켜야 더욱 빛나는 것, 부모님의 사랑처럼 따뜻한 것, 신호등이나 내비게이션처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 등 국민이 원하는 법의 역할과 법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엿볼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도 여러분의 작품을 통해 보고 배운 대로, 믿음 뿐 아니라, 감동과 희망까지 전해주는 법무 정책을 펼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도 법을 주제로 한 영상을 제작하면서 법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와 법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뜻 깊은 경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Ⅳ

오늘 이 자리는 수상 여부를 떠나 출품하신 분들 모두가 주인공인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마음껏 축하하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웃으며 여러분의 축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9. 17.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세계한인변호사회 제23차 정기총회**

Ⅰ

존경하는 세계한인변호사회 회원 여러분!

스물 세번째를 맞게 되는 세계한인변호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총회를 준비해 주신 최병선 회장님과 피터 강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고국을 찾아주신 회원 여러분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한인변호사회는 지난 1988년 창설된 이래, 한인 변호사들이 국적과 지역을 넘어 서로 교류·협력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인 법조인들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Ⅱ

오늘 참석하신 세계한인변호사회 회원 여러분들은 전 세계 20여개 국가에서 활약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는 대한민국의 법무행정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럴 때에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의 선진화와 국민을 위한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법무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법조인들이 국제적 역량을 갖추도록 「O.K 프로젝트」라 불리는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 세계한인변호사회, 대한변협과 MOU를 체결하였고, 1년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선발된 제1기 청년변호사 10명을 로펌과 해외진출 기업에 장기 인턴으로 곧 파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선진적 분쟁해결 시스템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중재법」 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중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중재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률시장의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한·EU, 한·미, 한·호주, 한·캐나다 FTA에서 결정된 약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법자문사법에 근거하여 총 26개의 글로벌 로펌이 사무소를 운영 중이고, 92명의 외국법자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 개방이 되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 법인을 만들고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인들이 법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 혁신센터 법률지원단」,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세계한인변호사회 회원님들께서도 각종 법률지원단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Ⅲ

세계한인변호사회 회원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전 세계에서 맹활약하고 계시는 한인 변호사님들과 보다 먼 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법무부는 세계한인변호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3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한인 변호사상을 정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9. 18.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법무자문위원회 위촉식**

Ⅰ

존경하는 윤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법무자문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결실의 계절에 법무자문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역할을 맡아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법무자문위원회는 법무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1972년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입니다.

지난 40여년 간 법무자문위원님들은 법무부의 주요 법안과 정책들에 관하여 따뜻한 조언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친권 정지·제한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과 '공익신탁법안',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민법 법인편 개정안', '집합건물법 개정안'들도 모두 법무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안건들로 알고 있습니다.

Ⅲ

이번 법무자문위원회는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적 구성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4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교수님들을 위촉하였고, 실무에 종사하시는 변호사님 세 분도 함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희정 교수님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여성 위원님들을 위촉함으로써 여성

계의 목소리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Ⅳ

저는 올해 7월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법무행정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법령과 정책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계와 실무계의 권위자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부의 중요한 법안과 정책들을 잘 점검해주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Ⅴ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다가오는 한가위도 풍성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9. 24.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 제6회 우리헌법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Ⅰ

내외 귀빈과 수상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헌법의 역사와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의회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인 헌정기념관에서, '제6회 우리헌법만들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헌법만들기'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시고 함께 대회를 개최해 주신 김회선 의원님과, 박재현 매일경제 상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공모전 후원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김정식 농협중앙회 부회장님,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님, 김태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시상식을 위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안상수 의원님, 윤후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수상자 여러분!

올해 여섯번째를 맞이한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은, 응모작이 1천편 가까이 될 만큼 국민의 관심과 사랑이 뜨겁습니다.

가정, 학급, 직장에서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을 헌법으로 만들어 실천하는 '우리 헌법만들기'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법질서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덕분입니다.

그리고 수상작들을 보니, 유치원생들의 작은 행복 찾기부터 직장인들의 주인의식 갖기까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담긴 훌륭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작품에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랑, 존중, 배려, 신뢰의 가치가 오롯이 담겨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헌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헌법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약속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만든 헌법을 실제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법의 소중함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Ⅲ

내외 귀빈과 수상자 여러분!

유대인의 5천년 지혜를 담고 있는 탈무드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캄캄한 밤에 초롱불을 들고 길을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님은 초롱불을 들고 가는 이유에 대해 "눈 멀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행동은 결국 모두를 위한 것이 된다는 배려의 지혜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내가 먼저이고,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 대신,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작은 배려를 실천한다면 함께 생활하는 동료와 이웃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들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법무부도 우리헌법만들기로부터 시작된 배려의 감동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어, '믿음의 법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9. 24.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정읍교도소 개청식**

Ⅰ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단풍의 고장 정읍에서 교도소를 개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유성엽 국회의원님과 김생기 정읍시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설 건축과 개청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법무부는 과밀수용 해소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신축된 정읍교도소는 교정시설이라는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시설 외관을 연구소 형태로 설계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저층 분산형 구조로 건축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인 지열을 사용하는 등 환경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정읍교도소에서는 테니스장,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교도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직원으로 구성된 지역 봉사단이 불우이웃 돕기, 독거노인 지원 등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특산물 홍보,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등을 벌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Ⅲ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
지역주민 여러분 !

아직도 교도소가 자신의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지만, 교정시설은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형자를 새사람으로 만들어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교정시설에 대하여 정읍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열린 자세와 높은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Ⅳ

지금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정분야에서도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감동과 희망을 주는 "믿음의 교정"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반듯한 사회 속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행복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노력만으로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정책성과를 이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수형자를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서 교정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Ⅴ

끝으로 개청식에 직접 참석하셔서 교정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교도소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2.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 선진법제포럼 - 준법경영을 위한 준법지원인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준법경영을 위한 준법지원인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최완진 교수님, 주제발표를 해주실 정준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정토론자로 나서주신 곽관훈 교수님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전무님, 현재 준법지원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규호 상무님과 이완근 부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Ⅱ

최근 외국 자동차회사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보도되고, 해당 기업은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기업의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은 국제경쟁력 뿐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도 직접 연결되고,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준법

경영을 위한 준법지원인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Ⅲ

지난 2012년에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대하여 법적 위험을 진단·관리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서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도입 당시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가, 2014년에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있는 기업 중 약 40%의 기업만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이 법적 위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법지원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포럼을 통하여 준법지원인 제도 및 준법경영에 직접 기여하고 계신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이신 선진법제포럼 회원 여러분과, 현장에서 준법경영을 위해 일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논의하는 내용은 앞으로 준법경영이 정착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Ⅳ

기업의 준법경영 확립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적 신뢰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준법지원인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이 정착된다면, 우리 사회에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준법지원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Ⅴ

다시 한 번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21.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 제50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Ⅰ

전국의 교정가족 여러분!

선수단 여러분!

가을 정취가 확연히 느껴지는 10월에, 이런 뜻 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949년 처음 시작된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올해로 50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각 경기단체 관계자와 교정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일선현장의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무도를 연마해 온 선수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Ⅱ

친애하는 선수단 여러분!

오랜 전통을 가진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문무를 겸비한 우수한 교정공무원을 양성하는 원동력이었으며, 교정공무원들이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소통을 강화하는 좋은 자리가 되어 왔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무도 연마를 통해 불굴의 상무정신을 갖추고 빈틈없는 수용관리와 수용자 교정교화에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오늘 이 대회는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교정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교정행정의 나아갈 길을 새롭게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Ⅲ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교정행정은 광복 이후 70년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사범과 마약사범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람을 바꾸는 '믿음의 교정'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교정행정에 더 큰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 활동을 활발히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펼쳐 나가고,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Ⅳ

선수단 여러분!

오늘 이 대회는 승패를 떠나 참가한 선수들이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대회가 교정조직의 단결과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어 '믿음의 법치', '믿음의 교정'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무도 연마에 쏟는 열정만큼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애쓴다면 교정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Ⅴ

끝으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매년 변함없는 애정으로 후원해 주시는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23.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 제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사

Ⅰ

전국의 교정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제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맞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영예로운 포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Ⅱ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교정참여인사 여러분!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지 7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1945년 광복 직후 불과 3천여 명의 직원과 19개의 소규모 시설로 시작된 교정조직이, 지금은 1만 6천 교정공무원이

56개 교정기관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교정정책에서도 단순히 범죄자를 가두고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에서 탈피하여, 수용자를 변화시켜 사회에 복귀시키는 실질적 교정교화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의 교정조직과 교정행정의 발전이 있기까지 그동안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로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며 헌신해 주신 순직 교정공무원과 교정원로들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Ⅲ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교정참여인사 여러분!

저는 장관 취임 이후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반듯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먼저 법질서 확립과 준법문화를 정착시키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법무부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Ⅳ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우리 교정행정은 광복 이후 70년 세월 동안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나라에 견주어도 뒤쳐지지 않는 선진적인 교정교화시스템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형자 집중인성교육과 교정심리치료센터 운영 등을 통해 사람을 바꾸는 교정행정을 추구하고, 맞춤형 개별처우, 취업연계형 직업훈련 실시, 위기가족 지원 등 수형자에게 믿음과 감동을 주는 교정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접견과 인터넷 접견, 원격진료시스템 운영 등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적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적인 교정행정 7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기보다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정 70년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과거의 구태와 관습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변화와 혁신, 새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의지와 다짐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Ⅴ

존경하는 교정참여인사 여러분!

교정에 대한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교정행정의 발전과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남다른 사명감과 교정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전국의 교정가족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28.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 2015 허그(HUG) 후원의 날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행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김춘진 국회의원님, 박재현 매일경제 전무이사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남다른 헌신과 열정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신 임영현 주거지원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호대상자들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전국의 보호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의 초입에서 2015년 허그 후원의 날 행사를 여러분과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Ⅱ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 실현'을 법무정책의 지표로 제시하면서, '범죄불안 해소'와 '따뜻한 법치'를 5대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출소자에 대한 지도와 지원망을 강화하여 범죄의 악순환과 대물림을 방지함으로써 범죄불안을 해소하고, 한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온전한 사회복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들에 대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끌어안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Ⅲ

친애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그동안 법무부와 공단에서는 보호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 주거지원, 가족관계 회복지원 등을 통해 재범률을 크게 낮추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했던 취업지원사업을 공단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맞춤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보호대상자들이 용접 기능 등을 익혀 전문 기능인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교육원을 네 번째로 건립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이 보호대상자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에서도 보호대상자들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법무복지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Ⅳ

존경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여러분이 보여준 온정과 사랑은 실의에 빠진 보호대상자들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가치있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오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정분옥 전국보호위원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사준비에 애써주신 구본민 이사장님과 직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1. 18.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 제10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식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

늦가을의 정취가 완연하게 느껴지는 '지성의 전당' 서울대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사법절차를 체험해보는 '제10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

대회'를 개최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수한 성적으로 지역예선대회를 통과하고, 본선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경연을 펼치신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대회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심사를 맡아주신 문철기 변호사님을 비롯한 여러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후원를 적극 후원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하창우 대한변협회장님, 박재현 매일경제 전무님, 김상균 삼성전자 법무실장님, 안용석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고문님, 오주언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이사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신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이번 대회에 참가하신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법무부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법과 질서의 소중함을 배우고, 배려를 실천하도록 다양한 법교육과 법체험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된 모의재판 경연대회도, 2006년부터 시작되어, '법의 정신과 가치를 체험하는 청소년들의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의재판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법률적 쟁점을 찾아보고, 대본작성부터 재판까지 직접 진행해 봄으로써 법과 사법절차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학생들이 형사재판에서는 미필적 고의, 정당방위 등 법률적 쟁점과 민사재판에서는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여 수준 높은 경연을 펼쳤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 법을 적용해 보려는 청소년들의 관심이 커진 것 같아 우리 사회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Ⅲ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 여러분!

「법치로 가는 길」의 저자인 미국 법학자 헤이거는 '법치'가 선진국 진입의 전제조건이며,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으며, 서로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약속인 법의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준법의식을 굳건히 확립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이 지켜지고 배려 문화가 사회 널리 확산되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부도 우리 공동체 존립과 발전의 근간이 되는 법의 정신과 가치, 그리고 배려 문화가 확산되어 '믿음의 법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1. 19.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 제3차 북한 인권 심포지엄 개회사

###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국제사회가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북한인권문제를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을 함께 마련해 주신 황우여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한 시간을 내 주신 국회 안홍준 전 외교통일위원장님, 서상기 전 정무위원장님, 장윤석 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영우의원님, 한기호의원님, 심윤조의원님, 손인춘의원님, 마르주끼 다루스만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Ⅱ

분단국가였던 독일이 통일된지도 올해로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비슷한 시기에 분단되었던 우리 대한민국은 7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었고 현재는 UN 인권이사국으로서 인권선진국의 위상도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휴전선 이북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공개처형, 강제노동, 정치범 수용소 구금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포인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Ⅲ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내 중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반(反)인도범죄로 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UN 총회는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결의를 하였고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처음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하였습니다.

UN에서는 직접 북한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모으기 위해 2015년 6월 서울에 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 설치하였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에서도 북한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제도적·법적 장치와 근거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북한 반인도범죄 책임 규명 방안' 및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있어 구심적인 역할을 할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 정부부처,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방안을 더욱 진지하게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Ⅳ

한달 전, 남북의 이산가족이 만나 애틋한 그리움의 정을 나누고 또 이별의 아픔에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였습니다.

북한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통일 한국의 미래상은 인권과 자유가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런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북한인권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우리가 꿈꾸는 인권선진국으로서의 통일 한국에 이르게 하는 토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1. 27.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 공익신탁 홍보대사 위촉식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부와 나눔을 위해 마련한 공익신탁의 홍보대사 두 분을 위촉하는 날입니다.

금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탁 제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홍보대사직을 수락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가수 이승철 님과 연기자 홍은희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화정 관장님과 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Ⅱ

법무부는 금년 3월부터 「공익신탁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신탁법」이 시행된 지 8개월 만에 12개의 공익신탁이 출범하였습니다.

11만 6,670명의 국민들께서 공익신탁을 통해 기부에 참여하였고, 기부금 총액도 586억 7,000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 9월에는 청년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의 뜻과 정성을 모으자는 취지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이 설립되어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Ⅲ

하지만 아직도 공익신탁 제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익신탁 제도를 더욱 널리 알려서, 기부의 뜻을 가진 분들이 편리하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공익신탁이 국민 여러분께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승철 님과 홍은희 님께서 공익신탁 홍보대사직을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이승철 님은 우리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분으로, 가수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차드에 4개의 학교를 지어주는 등 기부와 봉사활동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팬들도 그 취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승철의 희망 리 앤 차드 공익신탁」을 설립하기도 하셨습니다.

홍은희 님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연기자로서,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최근에는 「난치성 질환 어린이의 치료를 위한 공익신탁」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공익신탁 홍보대사로 기꺼이 나서주신 두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믿고 탁!" 맡길 수 있는 기부방법으로 공익신탁 제도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Ⅳ

한편, 지난 7월 법무부 직원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설립한 「상처받은 아이 보듬는 법무가족 파랑새 공익신탁」이 첫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서른 명의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선물하는 곰인형이 그 아이들에게 파랑새처럼 희망을 가져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국의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들을 살펴주시고, 집행까지 꼼꼼하게 도와주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화정 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탁자로서 성실하게 여러 공익신탁을 운영하고 집행해 주고 계시는 하나은행의 함영주 은행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Ⅴ

최근에 영국의 자선구호재단이 발표한 「2015년 세계기부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5개국 중 64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서로 돕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공익신탁 제도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 우리 사회에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Ⅵ

다시 한 번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2.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마을변호사 현장설명회**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틈새 없는 법률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한지 이제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 박수복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변호사가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승락 홍천군수님, 최문순 화천군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춘천지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논어에 '박시제중(博施濟衆)'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널리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뭇사람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박시제중'을 이루어내면 너그러운 사람인, 인자(仁者)의 범위를 넘어 성인(聖人)의 대열에 오를 것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이에 힘쓸 것을 권하였습니다.

오늘날 법률가들에게는 법률서비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빈틈없이 연결되도록 힘써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2만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대부분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읍·면 지역 주민들은 변호사를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지난 2년여 간 '박시제중'의 마음으로 모두가 노력한 덕분에,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의 주민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을변호사 제도를 몰라서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마을변호사 제도를 잘 알고 계셔야만 진정한 '틈새 없는 법률복지'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춘천지방검찰청, 강원지방변호사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간담회 개최와 현장상담 실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집으로, 일터로 돌아가셔서 우리 마을에도 마을변호사가 있다고 널리 알려주신다면 주민들께서 더욱 손쉽게 마을변호사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강원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변호사와 한층 더 가까워져 법의 문턱이 낮아지기를 기대합니다.

Ⅲ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저는 법무부장관에 취임하면서부터 항상 '믿음의 법치'를 강조해왔습니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 국민들이 신뢰하는 법치국가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법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법치가 많이 실천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읍·면 주민 여러분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불신의 사회를 극복하고 믿음의 법치국가를 만드는 데에 든든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기쁘게 생각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4.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중재산업 발전 자문위원회 위촉식**

중재산업 발전 자문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위원직을 수락하시고 오늘 참석해 주신 김용담 위원장님과 소병철 교수님, 노태악 부장판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의 다변화·복잡화로 인한 소송 폭발로 법원의 재판과 검찰 수사 등 기존 분쟁해결 방법만으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중재 등 소송 외의 분쟁해결 수단을 활성화하여 분쟁을 단심으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국제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다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재시설 등이 미비하여 주로 외국 중재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물적 기반을 확충하여 우리나라를 중재지로 활용하게 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국제분쟁을 보다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고, 연간 7,000억 원에 달하는 법률무역수지 적자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중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하고 중재산업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최근 「중재법」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복합중재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비용과 대한상사중재원 및 서울국제중재센터 지원 등 중재활성화 예산 약 1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중재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법원·변협 등 법조뿐 아니라 경제·무역계, 학계, 중재기관 등 전(全)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각계의 경륜이 높은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자문을 구하고자 중재산업 발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위원님들은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십니다.

중재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높은 경륜을 바탕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9.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 2015 법질서 유공 포상식

Ⅰ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곳 법무부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법질서 유공포상'과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시상식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준법문화 확산과 법질서 실천을 위해 노력해 오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실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 대한변호사협회, 중앙일보, 동아일보, 소년조선일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엘지전자, 포스코 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내외 귀빈과 수상자 여러분!

21세기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인가, 초일류 국가로 도약할 것인가를 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와 법질서가 반드시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는 팽배해 있는 반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는 약화되어 사회통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회통합은 사회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사회통합과 법질서 확립의 시작이라는 믿음 하에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Ⅲ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소년 여러분!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법과 질서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시작한 법교육 사업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 법무부는 모의재판, 헌법토론, 생활법 퀴즈대회 등 다양한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왔고,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도 11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법교육으로 국민들이 행복하고 법질서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법을 지키면 이익이되, 법을 어기면 책임이 뒤따른다"는 믿음이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Ⅳ

내외 귀빈과 청소년 여러분!

희망찬 발걸음으로 2015년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6년의 새로운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붉은색은 상서로움을 상징하고, 원숭이는 영리하고 부지런하며 진취적인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년에는 붉은 원숭이의 상서로운 기운이 우리 사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16.

법무부장관 김 현 웅

**○「신상정보관리센터」현판식**

오늘 신상정보관리센터의 현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범정국장, 특정과장 등 여러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신상정보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최근 관리 사건이 10배 이상 급증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적인 노력들로 인해 신상정보 제도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신상정보관리센터가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상정보 등록 관리가 성범죄 예방의 시작이라는 일념으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18.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2015년 소년원 문화예술제 및 올해의 교사상 시상식 격려사**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아, 소년원 교사와 보호관찰관을 격려하는 「올해의 교사상」과 「비전 보호관찰인상」 시상식, 그리고「소년원 학생 문화예술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

오늘 「올해의 교사상」과 「비전 보호관찰인상」을 수상하신 직원 여러분과 그동안 헌신적으로 지원하신 가족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끝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믿음의 법치를 현장에서 실천하신 분들로서, 오늘의 영예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만나는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반듯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사랑과 정성을 다하신 선생님을 표창하는 영예롭고 자랑스러운 자리입니다.

오늘 상을 받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정성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선생님의 노고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익힌 것을 잘 실천하여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며 기쁨입니다.

여러분 모두 선생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 주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잠시 후에는 여러분이 평소 문화예술 수업을 통해서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뽐내는 '문화예술제'가 열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하여 그동안 선생님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이 값진 구슬땀을 흘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도 우리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 한 번 수상자들과 내외귀빈, 그리고 보호가족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18.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블로그 기자단 워크숍**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입니다.

12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올 해의 마무리를 법무부 블로그기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에는 차관이었던 제가 당시 장관님을 대신하여 7기 여러분의 선서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앞에서 선서를 한 기자님들이어서 그런지, 제가 장관이 된 후에도 유독 7기 기자 분들의 현장 취재가 더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덧 1년이 흘러서 이번에는 여러분께 우수 활동증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해 준 기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활동이 돋보였던 여섯 명의 수상자들에게도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은 옷깃만 스친 정도가 아니라, 1년 동안 법무 가족으로 함께 생활 하셨습니다.

기자 생활이 끝나더라도 이 인연을 소중히 기억하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또한, 내년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될 8기 기자님들은, 즐겁게 기자단 생활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후회 없는 1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자님들의 활약에 저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기자님들끼리 친해질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21.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 2015년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식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2015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Ⅱ

인권에 기초한 '따뜻한 법치 실천'은 법질서 확립 부정부패 척결, 범죄불안 해소와 함께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따뜻한 법치 실천'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갖고 힘없고 약한 사람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겸허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반듯한 사회, 사회적 약자가 배려 받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Ⅲ

여러분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도 의지할 곳이 없는 서민, 어린 청소년,

수용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대출 금융사기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제2, 제3의 피해를 막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아 절망에 빠져있던 청소년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 진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형제자매를 찾고 싶다는 수용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수 십 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단절되어 있던 가족의 연(緣)을 다시 이어 주었습니다.

호적이 없어 보험 혜택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없던 수용자, 비행청소년과 어울리다가 범죄의 나락에 빠진 청소년, 신장암 수술을 받고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하던 고령의 불법체류 외국인 등 여러분은 이 모든 작은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은 채 깊이 경청하고 따뜻하게 보살펴 줌으로써 법의 온정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Ⅳ

논어에 "할 말을 먼저 실천하고, 뒤에 그 말을 하라(선행기언 이후종지 先行其言 而後從之)"는 구절이 있습니다.

'따뜻한 법치 실천'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진심어린 노력과 실천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베풀었던 따뜻한 배려와 정성은, 주변에 큰 감동을 주었고, 국민들에게 법이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울타리를 제공해 준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24.

법무부장관 김 현 웅

# Ⅳ.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 1. 법무부장관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이 인(李 仁) | 1948. 8. 2. ~ 1949. 6. 5. | |
| 2 대 | 권승렬(權承烈) | 1949. 6. 6. ~ 1950. 5. 21. | |
| 3 대 | 이우익(李愚益) | 1950. 5. 22. ~ 1950. 11. 22. | |
| 4 대 | 김준연(金俊淵) | 1950. 11. 23. ~ 1951. 5. 6. | |
| 5 대 | 조진만(趙鎭滿) | 1951. 5. 7. ~ 1952. 3. 4. | |
| 6 대 | 서상환(徐相懽) | 1952. 3. 5. ~ 1954. 6. 29. | |
| 7 대 | 조용순(趙容淳) | 1954. 6. 30. ~ 1955. 9. 15. | |
| 8 대 | 이 호(李 澔) | 1955. 9. 16. ~ 1958. 2. 19. | |
| 9 대 | 홍진기(洪璡基) | 1958. 2. 20. ~ 1960. 3. 23. | |
| 10 대 | 권승렬(權承烈) | 1960. 4. 25. ~ 1960. 8. 19. | |
| 11 대 | 조재천(曺在千) | 1960. 8. 23. ~ 1961. 5. 2. | |
| 12 대 | 이병하(李炳夏) | 1961. 5. 3. ~ 1961. 5. 18. | |
| 13 대 | 고원증(高元增) | 1961. 5. 20. ~ 1962. 1. 8. | |
| 14 대 | 조병일(趙炳日) | 1962. 1. 9. ~ 1963. 1. 31. | |
| 15 대 | 장영순(張榮淳) | 1963. 2. 1. ~ 1963. 4. 21. | |
| 16～18대 | 민복기(閔復基) | 1963. 4. 22. ~ 1966. 9. 25. | |
| 19 대 | 권오병(權五柄) | 1966. 9. 26. ~ 1968. 5. 20. | |
| 20 대 | 이 호(李 澔) | 1968. 5. 21. ~ 1970. 12. 20. | |
| 21 대 | 배영호(裵泳鎬) | 1970. 12. 21. ~ 1971. 6. 3. | |
| 22 대 | 신직수(申稙秀) | 1971. 6. 4. ~ 1973. 12. 2. | |
| 23 대 | 이봉성(李鳳成) | 1973. 12. 3. ~ 1974. 9. 17. | |
| 24～25대 | 황산덕(黃山德) | 1974. 9. 18. ~ 1976. 12. 3. | |
| 26 대 | 이선중(李善中) | 1976. 12. 4. ~ 1978. 12. 21. | |
| 27 대 | 김치열(金致烈) | 1978. 12. 22. ~ 1979. 12. 13. | |
| 28 대 | 백상기(白翔起) | 1979. 12. 14. ~ 1980. 5. 21. | |
| 29～30대 | 오탁근(吳鐸根) | 1980. 5. 22. ~ 1981. 4. 9. | |
| 31 대 | 이종원(李鐘元) | 1981. 4. 10. ~ 1982. 5. 20. | |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32 대 | 정치근(鄭致根) | 1982. 5. 21. ~ 1982. 6. 23. | |
| 33 대 | 배명인(裵命仁) | 1982. 6. 24. ~ 1985. 2. 18. | |
| 34 대 | 김석휘(金錫輝) | 1985. 2. 19. ~ 1985. 7. 15. | |
| 35 대 | 김성기(金聖基) | 1985. 7. 16. ~ 1987. 5. 25. | |
| 36~37대 | 정해창(丁海昌) | 1987. 5. 26. ~ 1988. 12. 4. | |
| 38 대 | 허형구(許亨九) | 1988. 12. 5. ~ 1990. 3. 18. | |
| 39 대 | 이종남(李種南) | 1990. 3. 19. ~ 1991. 5. 26. | |
| 40 대 | 김기춘(金淇春) | 1991. 5. 27. ~ 1992. 10. 8. | |
| 41 대 | 이정우(李正雨) | 1992. 10. 9. ~ 1993. 2. 25. | |
| 42 대 | 박희태(朴熹太) | 1993. 2. 26. ~ 1993. 3. 7. | |
| 43 대 | 김두희(金斗喜) | 1993. 3. 8. ~ 1994. 12. 23. | |
| 44 대 | 안우만(安又萬) | 1994. 12. 24. ~ 1997. 3. 5. | |
| 45 대 | 최상엽(崔相曄) | 1997. 3. 6. ~ 1997. 8. 4. | |
| 46 대 | 김종구(金鍾求) | 1997. 8. 5. ~ 1998. 3. 2. | |
| 47 대 | 박상천(朴相千) | 1998. 3. 3. ~ 1999. 5. 23. | |
| 48 대 | 김태정(金泰政) | 1999. 5. 24. ~ 1999. 6. 7. | |
| 49 대 | 김정길(金正吉) | 1999. 6. 8. ~ 2001. 5. 20. | |
| 50 대 | 안동수(安東洙) | 2001. 5. 21. ~ 2001. 5. 23. | |
| 51 대 | 최경원(崔慶元) | 2001. 5. 24. ~ 2002. 1. 28. | |
| 52 대 | 송정호(宋正鎬) | 2002. 1. 29. ~ 2002. 7. 10. | |
| 53 대 | 김정길(金正吉) | 2002. 7. 11. ~ 2002. 11. 5. | |
| 54 대 | 심상명(沈相明) | 2002. 11. 9. ~ 2003. 2. 26. | |
| 55 대 | 강금실(康錦實) | 2003. 2. 27. ~ 2004. 7. 28. | |
| 56 대 | 김승규(金昇圭) | 2004. 7. 29. ~ 2005. 6. 29. | |
| 57 대 | 천정배(千正培) | 2005. 6. 30. ~ 2006. 7. 26. | |
| 58 대 | 김성호(金成浩) | 2006. 8. 30. ~ 2007. 9. 3. | |
| 59 대 | 정성진(鄭城鎭) | 2007. 9. 4. ~ 2008. 2. 28. | |
| 60 대 | 김경한(金慶漢) | 2008. 2. 29. ~ 2009. 9. 29. | |
| 61 대 | 이귀남(李貴男) | 2009. 9. 30. ~ 2011. 8. 10. | |
| 62 대 | 권재진(權在珍) | 2011. 8. 11. ~ 2013. 3. 10. | |
| 63 대 | 황교안(黃敎安) | 2013. 3. 11. ~ 2015. 6. 18. | |
| 64 대 | 김현웅(金賢雄) | 2015. 7. 9. ~ | |

## 2. 검찰총장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권승렬(權承烈) | 1948. 10. 31. ~ 1949. 6. 5. | |
| 2 대 | 김익진(金翼鎭) | 1949. 6. 6. ~ 1950. 6. 21. | |
| 3 대 | 서상환(徐相懽) | 1950. 6. 22. ~ 1952. 3. 5. | |
| 4 대 | 한격만(韓格晩) | 1952. 3. 14. ~ 1955. 9. 29. | |
| 5 대 | 민복기(閔復基) | 1955. 9. 30. ~ 1956. 7. 5. | |
| 6 대 | 정순석(鄭順錫) | 1956. 7. 6. ~ 1958. 3. 10. | |
| 7 대 | 박승준(朴承俊) | 1958. 3. 11. ~ 1960. 5. 4. | |
| 8 대 | 이태희(李太熙) | 1960. 5. 5. ~ 1961. 5. 27. | |
| 9 대 | 장영순(張榮淳) | 1961. 5. 28. ~ 1963. 1. 31. | |
| 10 대 | 정창운(鄭暢雲) | 1963. 2. 1. ~ 1963. 12. 6. | |
| 11 대 | 신직수(申稙秀) | 1963. 12. 7. ~ 1971. 6. 3. | |
| 12 대 | 이봉성(李鳳成) | 1971. 6. 5. ~ 1973. 12. 2. | |
| 13 대 | 김치열(金致烈) | 1973. 12. 3. ~ 1975. 12. 18. | |
| 14 대 | 이선중(李善中) | 1975. 12. 19. ~ 1976. 12. 4. | |
| 15 대 | 오탁근(吳鐸根) | 1976. 12. 7. ~ 1980. 5. 21. | |
| 16 대 | 김종경(金鍾卿) | 1980. 5. 28. ~ 1981. 3. 9. | |
| 17 대 | 허형구(許亨九) | 1981. 3. 10. ~ 1981. 12. 15. | |
| 18 대 | 정치근(鄭致根) | 1981. 12. 16. ~ 1982. 5. 21. | |
| 19 대 | 김석휘(金錫輝) | 1982. 5. 24. ~ 1985. 2. 18. | |
| 20 대 | 서동권(徐東權) | 1985. 2. 21. ~ 1987. 5. 26. | 임기제 (1988~) |
| 21 대 | 이종남(李種南) | 1987. 5. 27. ~ 1988. 12. 5. | |
| 22 대 | 김기춘(金淇春) | 1988. 12. 6. ~ 1990. 12. 5. | |
| 23 대 | 정구영(鄭銶永) | 1990. 12. 6. ~ 1992. 12. 5. | |
| 24 대 | 김두희(金斗喜) | 1992. 12. 6. ~ 1993. 3. 7. | |
| 25 대 | 박종철(朴鍾喆) | 1993. 3. 8. ~ 1993. 9. 13. | |
| 26 대 | 김도언(金道彦) | 1993. 9. 16. ~ 1995. 9. 15. | |
| 27 대 | 김기수(金起秀) | 1995. 9. 16. ~ 1997. 8. 6. | |
| 28 대 | 김태정(金泰政) | 1997. 8. 7. ~ 1999. 5. 24. | |
| 29 대 | 박순용(朴舜用) | 1999. 5. 26. ~ 2001. 5. 25. | |
| 30 대 | 신승남(愼承男) | 2001. 5. 26. ~ 2002. 1. 15. | |
| 31 대 | 이명재(李明載) | 2002. 1. 17. ~ 2002. 11. 5. | |
| 32 대 | 김각영(金珏泳) | 2002. 11. 11. ~ 2003. 3. 10. | |
| 33 대 | 송광수(宋光洙) | 2003. 4. 3. ~ 2005. 4. 2. | |
| 34 대 | 김종빈(金鍾彬) | 2005. 4. 4. ~ 2005. 10. 17. | |
| 35 대 | 정상명(鄭相明) | 2005. 11. 24. ~ 2007. 11. 23. | |
| 36 대 | 임채진(林采珍) | 2007. 11. 24. ~ 2009. 6. 4. | |
| 37 대 | 김준규(金畯圭) | 2009. 8. 20. ~ 2011. 7. 13. | |
| 38 대 | 한상대(韓相大) | 2011. 8. 11. ~ 2012. 12. 2. | |
| 39 대 | 채동욱(蔡東旭) | 2013. 4. 4. ~ 2013. 9. 27. | |
| 40 대 | 김진태(金鎭太) | 2013. 12. 2. ~ 2015. 11. 30. | |
| 41 대 | 김수남(金秀南) | 2015. 12. 2. ~ | |

## 3. 법무부차관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권승렬(權承烈) | 1948. 8. 7. ~ 1948. 10. 30. | |
| 2 대 | 백한성(白漢成) | 1948. 10. 31. ~ 1949. 6. 7. | |
| 3 대 | 김갑수(金甲洙) | 1949. 6. 8. ~ 1950. 3. 13. | |
| 4 대 | 김윤근(金潤根) | 1950. 3. 14. ~ 1951. 11. 29. | |
| 5 대 | 민복기(閔復基) | 1951. 11. 30. ~ 1952. 5. 26. | |
| 6 대 | 정재환(鄭在煥) | 1952. 5. 27. ~ 1954. 2. 9. | |
| 7 대 | 홍진기(洪璡基) | 1954. 2. 17. ~ 1955. 10. 5. | |
| 8 대 | 임석무(林碩茂) | 1955. 10. 12. ~ 1956. 6. 12. | |
| 9 대 | 배영호(裵泳鎬) | 1956. 6. 23. ~ 1958. 3. 10. | |
| 10 대 | 신언한(申彦瀚) | 1958. 3. 11. ~ 1960. 5. 3. | |
| 11 대 | 김영천(金永千) | 1960. 7. 1. ~ 1960. 9. 29. | |
| 12 대 | 김영환(金英煥) | 1960. 8. 23. ~ 1961. 5. 15. | 정무차관 |
| | 김영천(金永千) | 1960. 9. 29. ~ 1962. 3. 18. | 사무차관 |
| 13 대 | 서일교(徐壹敎) | 1962. 3. 19. ~ 1963. 8. 7. | |
| 14 대 | 권오병(權五柄) | 1963. 8. 8. ~ 1965. 8. 27. | |
| 15 대 | 이경호(李坰鎬) | 1965. 8. 28. ~ 1968. 5. 23. | |
| 16 대 | 김병화(金炳華) | 1968. 5. 24. ~ 1969. 7. 27. | |
| 17 대 | 오탁근(吳鐸根) | 1969. 7. 28. ~ 1971. 8. 23. | |
| 18 대 | 이선중(李善中) | 1971. 8. 24. ~ 1973. 3. 8. | |
| 19 대 | 김 선(金 璿) | 1973. 3. 9. ~ 1974. 7. 7. | |
| 20 대 | 김종경(金鍾卿) | 1974. 7. 8. ~ 1977. 2. 16. | |
| 21 대 | 이종원(李鐘元) | 1977. 2. 17. ~ 1979. 2. 18. | |
| 22 대 | 이용훈(李龍薰) | 1979. 2. 19. ~ 1980. 5. 22. | |
| 23 대 | 정태균(鄭泰均) | 1980. 5. 26. ~ 1981. 4. 17. | |
| 24 대 | 서동권(徐東權) | 1981. 4. 25. ~ 1981. 12. 16. | |
| 25 대 | 이영욱(李永旭) | 1981. 12. 17. ~ 1982. 6. 17. | |
| 26 대 | 정해창(丁海昌) | 1982. 6. 18. ~ 1985. 2. 27. | |
| 27 대 | 김종건(金鍾鍵) | 1985. 2. 28. ~ 1985. 10. 18. | |
| 28 대 | 이종남(李種南) | 1985. 10. 19. ~ 1987. 5. 26. | |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29 대 | 한영석(韓永錫) | 1987. 5. 30. ~ 1988. 3. 4. | |
| 30 대 | 서정신(徐廷信) | 1988. 3. 5. ~ 1989. 3. 28. | |
| 31 대 | 김두희(金斗喜) | 1989. 3. 29. ~ 1991. 4. 17. | |
| 32 대 | 조성욱(趙成郁) | 1991. 4. 18. ~ 1993. 3. 3. | |
| 33 대 | 신 건(辛 建) | 1993. 3. 4. ~ 1993. 5. 27. | |
| 34 대 | 김기석(金基錫) | 1993. 5. 31. ~ 1994. 9. 15. | |
| 35 대 | 김종구(金鍾求) | 1994. 9. 16. ~ 1995. 9. 19. | |
| 36 대 | 김태정(金泰政) | 1995. 9. 20. ~ 1997. 8. 6. | |
| 37 대 | 원정일(元正一) | 1997. 8. 8. ~ 1998. 3. 18. | |
| 38 대 | 최경원(崔慶元) | 1998. 3. 19. ~ 1999. 6. 8. | |
| 39 대 | 김경한(金慶漢) | 1999. 6. 9. ~ 2001. 5. 30. | |
| 40 대 | 김학재(金鶴在) | 2001. 5. 31. ~ 2001. 9. 11. | |
| 41 대 | 신광옥(辛光玉) | 2001. 9. 12. ~ 2001. 12. 13. | |
| 42 대 | 김승규(金昇圭) | 2001. 12. 18. ~ 2002. 2. 7. | |
| 43 대 | 한부환(韓富煥) | 2002. 2. 8. ~ 2002. 8. 18. | |
| 44 대 | 김각영(金珏泳) | 2002. 8. 19. ~ 2002. 11. 10. | |
| 45 대 | 명로승(明魯昇) | 2002. 11. 18. ~ 2003. 3. 11. | |
| 46 대 | 정상명(鄭相明) | 2003. 3. 13. ~ 2004. 5. 31. | |
| 47 대 | 김상희(金相喜) | 2004. 6. 1. ~ 2005. 8. 26. | |
| 48 대 | 김희옥(金熙玉) | 2005. 9. 8. ~ 2006. 8. 25. | |
| 49 대 | 정동기(鄭東基) | 2006. 8. 25. ~ 2007. 3. 4. | |
| 50 대 | 정진호(鄭振昊) | 2007. 3. 5. ~ 2008. 3. 9. | |
| 51 대 | 문성우(文晟祐) | 2008. 3. 10. ~ 2009. 1. 18. | |
| 52 대 | 이귀남(李貴男) | 2009. 1. 19. ~ 2009. 7. 11. | |
| 53 대 | 황희철(黃希哲) | 2009. 8. 12. ~ 2011. 8. 12. | |
| 54 대 | 길태기(吉兌基) | 2011. 8. 22. ~ 2013. 12. 23. | |
| 55 대 | 김학의(金學義) | 2013. 3. 14. ~ 2013. 3. 22. | |
| 56 대 | 국민수(鞠敏秀) | 2013. 4. 10. ~ 2013. 12. 23. | |
| 57 대 | 김현웅(金賢雄) | 2013. 12. 24. ~ 2015. 2. 10. | |
| 58 대 | 김주현(金周賢) | 2015. 2. 11. ~ 2015. 12. 23. | |
| 59 대 | 이창재(李昌宰) | 2015. 12. 24. ~ | |

## 4. 대검찰청 차장검사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박승준(朴承俊) | 1949. 11. 14. ~ 1952. 4. 6. | |
| 2 대 | 정창운(鄭暢雲) | 1952. 4. 7. ~ 1955. 10. 25. | |
| 3 대 | 정순석(鄭順錫) | 1955. 10. 26. ~ 1956. 7. 6. | |
| 4 대 | 박천일(朴天一) | 1956. 7. 25. ~ 1958. 2. 28. | |
| 5 대 | 소진섭(蘇鎭燮) | 1959. 4. 22. ~ 1960. 5. 20. | |
| 6 대 | 주운화(朱雲化) | 1962. 4. 11. ~ 1963. 5. 8. | |
| 7 대 | 김영천(金永千) | 1963. 5. 9. ~ 1963. 12. 30. | |
| 8 대 | 주운화(朱雲化) | 1963. 12. 31. ~ 1964. 3. 2. | |
| 9 대 | 김병화(金炳華) | 1964. 3. 16. ~ 1968. 5. 31. | |
| 10 대 | 이봉성(李鳳成) | 1968. 6. 1. ~ 1971. 6. 4. | |
| 11 대 | 김영천(金永千) | 1971. 8. 24. ~ 1973. 3. 19. | |
| 12 대 | 이영환(李永煥) | 1973. 4. 6. ~ 1977. 2. 16. | |
| 13 대 | 김일두(金一斗) | 1977. 2. 17. ~ 1980. 7. 9. | |
| 14 대 | 허형구(許亨九) | 1980. 7. 28. ~ 1981. 3. 9. | |
| 15 대 | 배명인(裵命仁) | 1981. 4. 27. ~ 1981. 12. 16. | |
| 16 대 | 서동권(徐東權) | 1981. 12. 17. ~ 1982. 5. 23. | |
| 17 대 | 이명희(李明熙) | 1982. 6. 18. ~ 1985. 3. 4. | |
| 18 대 | 이중근(李重根) | 1985. 3. 5. ~ 1985. 3. 11. | |
| 19 대 | 김세권(金世權) | 1985. 5. 25. ~ 1986. 5. 1. | |
| 20 대 | 정해창(丁海昌) | 1986. 5. 2. ~ 1987. 5. 25. | |
| 21 대 | 최상엽(崔相曄) | 1987. 5. 30. ~ 1990. 3. 19. | |
| 22 대 | 서정신(徐廷信) | 1990. 3. 27. ~ 1991. 4. 17. | |
| 23 대 | 김두희(金斗喜) | 1991. 4. 18. ~ 1992. 12. 5. | |
| 24 대 | 박종철(朴鍾喆) | 1992. 12. 12. ~ 1993. 3. 8. | |
| 25 대 | 김도언(金道彦) | 1993. 3. 17. ~ 1993. 9. 15. | |
| 26 대 | 송종의(宋宗義) | 1993. 9. 21. ~ 1995. 9. 14. | |
| 27 대 | 최명선(崔明善) | 1995. 9. 20. ~ 1997. 8. 9. | |
| 28 대 | 이원성(李源性) | 1997. 8. 11. ~ 1999. 6. 3. | |
| 29 대 | 신승남(愼承男) | 1999. 6. 9. ~ 2001. 5. 25. | |
| 30 대 | 김각영(金珏泳) | 2001. 5. 31. ~ 2002. 2. 7. | |
| 31 대 | 김승규(金昇圭) | 2002. 2. 8. ~ 2002. 8. 18. | |
| 32 대 | 김학재(金鶴在) | 2002. 8. 19. ~ 2003. 3. 13. | |
| 33 대 | 김종빈(金鍾彬) | 2003. 3. 13. ~ 2004. 5. 31. | |
| 34 대 | 이정수(李廷洙) | 2004. 6. 1. ~ 2005. 3. 31. | |
| 35 대 | 정상명(鄭相明) | 2005. 4. 8. ~ 2005. 11. 23. | |
| 36 대 | 임승관(林承寬) | 2005. 11. 28. ~ 2007. 3. 4. | |
| 37 대 | 정동기(鄭東基) | 2007. 3. 5. ~ 2007. 11. 23. | |
| 38 대 | 권재진(權在珍) | 2007. 11. 26. ~ 2009. 1. 18. | |
| 39 대 | 문성우(文晟祐) | 2009. 1. 19. ~ 2009. 7. 13. | |
| 40 대 | 차동민(車東旻) | 2009. 7. 20. ~ 2011. 8. 3. | |
| 41 대 | 채동욱(蔡東旭) | 2011. 8. 22. ~ 2012. 12. 5. | |
| 42 대 | 김진태(金鎭太) | 2012. 12. 6. ~ 2013. 4. 4. | |
| 43 대 | 길태기(吉兌基) | 2013. 4. 10. ~ 2013. 12. 4. | |
| 44 대 | 임정혁(任正赫) | 2013. 12. 5. ~ 2015. 2. 10. | |
| 45 대 | 김수남(金秀南) | 2015. 2. 11. ~ 2015. 12. 1. | |
| 46 대 | 김주현(金周賢) | 2015. 12. 24. ~ | |

## 5. 법무부 실·국·본부장

### ○ 기획조정실장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김락윤(金洛潤) | 1961. 9. 25. ~ 1962. 3. 8. | |
| 2 대 | 이두성(李斗成) | 1962. 8. 14. ~ 1966. 11. 18. | |
| 3 대 | 나길조(羅吉祚) | 1966. 11. 19. ~ 1969. 1. 9. | |
| 4 대 | 윤두식(尹斗植) | 1969. 1. 20. ~ 1972. 11. 21. | |
| 5 대 | 정익원(鄭益源) | 1972. 11. 22. ~ 1974. 8. 31. | |
| 6 대 | 설동훈(薛東勳) | 1974. 9. 1. ~ 1976. 2. 28. | |
| 7 대 | 강우영(姜友永) | 1976. 3. 1. ~ 1978. 2. 10. | |
| 8 대 | 안경열(安慶烈) | 1978. 2. 11. ~ 1981. 4. 26. | |
| 9 대 | 송병철(宋炳喆) | 1981. 4. 27. ~ 1981. 12. 16. | |
| 10 대 | 김세권(金世權) | 1981. 12. 17. ~ 1982. 6. 17. | |
| 11 대 | 김양균(金亮均) | 1982. 6. 18. ~ 1983. 7. 31. | |
| 12 대 | 김유후(金有厚) | 1983. 8. 1. ~ 1985. 3. 4. | |
| 13 대 | 신 건(辛 建) | 1985. 3. 5. ~ 1987. 6. 7. | |
| 14 대 | 송종의(宋宗義) | 1987. 6. 8. ~ 1989. 3. 28. | |
| 15 대 | 지헌범(池憲範) | 1989. 3. 29. ~ 1991. 4. 17. | |
| 16 대 | 정성진(鄭城鎭) | 1991. 4. 18. ~ 1991. 7. 31. | |
| 17 대 | 김종구(金鍾求) | 1991. 8. 1. ~ 1992. 7. 28. | |
| 18 대 | 김태정(金泰政) | 1992. 7. 29. ~ 1993. 3. 16. | |
| 19 대 | 김상수(金相洙) | 1993. 3. 17. ~ 1993. 9. 20. | |
| 20 대 | 최경원(崔慶元) | 1993. 9. 21. ~ 1994. 9. 15. | |
| 21 대 | 최병국(崔炳國) | 1994. 9. 16. ~ 1995. 9. 19. | |
| 22 대 | 김경한(金慶漢) | 1995. 9. 20. ~ 1997. 1. 22. | |
| 23 대 | 신승남(愼承男) | 1997. 1. 23. ~ 1997. 8. 13. | |
| 24 대 | 윤동민(尹東旻) | 1997. 8. 14. ~ 1998. 3. 22. | |
| 25 대 | 신광옥(辛光玉) | 1998. 3. 23. ~ 1999. 2. 21. | |
| 26 대 | 김각영(金珏泳) | 1999. 2. 22. ~ 1999. 6. 8. | |
| 27 대 | 이범관(李範觀) | 1999. 6. 9. ~ 2000. 7. 14. | |
| 28 대 | 장윤석(張倫碩) | 2000. 7. 15. ~ 2001. 5. 30. | |
| 29 대 | 채수철(蔡秀哲) | 2001. 5. 31. ~ 2002. 2. 7. | |
| 30 대 | 정상명(鄭相明) | 2002. 2. 8. ~ 2003. 3. 12. | |
| 31 대 | 박상길(朴相吉) | 2003. 3. 13. ~ 2004. 5. 31. | |
| 32 대 | 김회선(金會瑄) | 2004. 6. 1. ~ 2005. 4. 4. | |
| 33 대 | 이귀남(李貴男) | 2005. 4. 8. ~ 2006. 2. 5. | 2005. 5. 2. 정책홍보 관리실로 개편 |
| 34 대 | 황희철(黃希哲) | 2006. 2. 6. ~ 2006. 3. 15. | |
| 35 대 | 박한철(朴漢徹) | 2006. 3. 16. ~ 2007. 3. 4. | |
| 36 대 | 박영렬(朴永烈) | 2007. 3. 5. ~ 2008. 3. 10. | |
| 37 대 | 소병철(蘇秉哲) | 2008. 3. 11. ~ 2009. 1. 18. | 2008. 2. 29. 기획조정실로 개편 |
| 38 대 | 김수남(金秀南) | 2009. 1. 19. ~ 2009. 8. 11. | |
| 39 대 | 최재경(崔在卿) | 2009. 8. 12. ~ 2010. 7. 14. | |
| 40 대 | 김희관(金熙官) | 2010. 7. 15. ~ 2011. 8. 21. | |
| 41 대 | 조성욱(曺成旭) | 2011. 8. 22. ~ 2012. 7. 17. | |
| 42 대 | 김주현(金周賢) | 2012. 7. 18. ~ 2013. 4. 9. | |
| 43 대 | 봉 욱(奉 旭) | 2013. 4. 10. ~ 2013. 12. 23. | |
| 44 대 | 안태근(安兌根) | 2013. 12. 24. ~ 2015. 2. 10. | |
| 45 대 | 진경준(陳炅準) | 2015. 2. 11. ~ 2015. 12. 23. | |
| 46 대 | 권익환(權益煥) | 2015. 12. 24. ~ | |

○ **법무실장**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김갑수(金甲洙) | 1948. 11. 4. ~ 1949. 7. 1. | 1948. 11. 4. 법무국 신설 |
| 2 대 | 민복기(閔復基) | 1949. 7. 2. ~ 1949. 12. 31. | |
| 3 대 | 홍진기(洪璡基) | 1950. 4. 1. ~ 1954. 2. 17. | |
| 4 대 | 배영호(裵泳鎬) | 1954. 4. 6. ~ 1956. 6. 22. | |
| 5 대 | 김영천(金永千) | 1956. 6. 23. ~ 1960. 6. 30. | |
| 6 대 | 이경호(李坰鎬) | 1960. 7. 1. ~ 1965. 8. 27. | |
| 7 대 | 김 선(金 璿) | 1965. 10. 1. ~ 1966. 11. 18. | |
| 8 대 | 이선중(李善中) | 1966. 11. 19. ~ 1971. 8. 23. | 1967. 4. 10. 법무실로 개편 |
| 9 대 | 김종경(金鍾卿) | 1971. 8. 26. ~ 1974. 7. 7. | |
| 10 대 | 주문기(朱文基) | 1974. 9. 1. ~ 1978. 2. 10. | |
| 11 대 | 변무관(卞務寬) | 1978. 2. 11. ~ 1979. 8. 31. | |
| 12 대 | 강우영(姜友永) | 1979. 9. 1. ~ 1980. 6. 8. | |
| 13 대 | 이길주(李桔柱) | 1980. 6. 9. ~ 1981. 4. 26. | |
| 14 대 | 백광현(白光鉉) | 1981. 4. 27. ~ 1981. 12. 16. | |
| 15 대 | 이준승(李準昇) | 1981. 12. 17. ~ 1982. 6. 17. | |
| 16 대 | 한영석(韓永錫) | 1982. 6. 18. ~ 1985. 3. 4. | |
| 17 대 | 김유후(金有厚) | 1985. 3. 5. ~ 1987. 6. 7. | |
| 18 대 | 임상현(任尙鉉) | 1987. 6. 8. ~ 1989. 3. 28. | |
| 19 대 | 황길수(黃吉秀) | 1989. 3. 29. ~ 1991. 7. 31. | |
| 20 대 | 정성진(鄭城鎭) | 1991. 8. 1. ~ 1992. 7. 28. | |
| 21 대 | 문종수(文鍾洙) | 1992. 7. 29. ~ 1993. 3. 16. | |
| 22 대 | 신창언(申昌彦) | 1993. 3. 17. ~ 1993. 9. 20. | |
| 23 대 | 주광일(朱光逸) | 1993. 9. 21. ~ 1994. 9. 15. | |
| 24 대 | 김수장(金壽長) | 1994. 9. 16. ~ 1995. 9. 19. | |
| 25 대 | 김상수(金相洙) | 1995. 9. 20. ~ 1995. 9. 26. | |
| 26 대 | 신승남(愼承男) | 1995. 9. 27. ~ 1997. 1. 22. | |
| 27 대 | 공영규(孔永規) | 1997. 1. 23. ~ 1997. 8. 13. | |
| 28 대 | 강신욱(姜信旭) | 1997. 8. 14. ~ 1998. 3. 22. | |
| 29 대 | 김영철(金永喆) | 1998. 3. 23. ~ 1999. 6. 8. | |
| 30 대 | 송광수(宋光洙) | 1999. 6. 9. ~ 1999. 8. 23. | |
| 31 대 | 정충수(鄭忠秀) | 1999. 8. 24. ~ 2000. 7. 14. | |
| 32 대 | 명로승(明魯昇) | 2000. 7. 15. ~ 2001. 5. 30. | |
| 33 대 | 김영진(金永珍) | 2001. 5. 31. ~ 2002. 2. 7. | |
| 34 대 | 장윤석(張倫碩) | 2002. 2. 8. ~ 2002. 8. 18. | |
| 35 대 | 유창종(柳昌宗) | 2002. 8. 19. ~ 2002. 11. 17. | |
| 36 대 | 박종열(朴淙烈) | 2002. 11. 18. ~ 2003. 3. 12. | |
| 37 대 | 홍경식(洪景植) | 2003. 3. 13. ~ 2003. 8. 4. | |
| 38 대 | 이기배(李棋培) | 2003. 8. 5. ~ 2004. 5. 31. | |
| 39 대 | 안영욱(安永旻) | 2004. 6. 1. ~ 2005. 4. 7. | |
| 40 대 | 김준규(金晙圭) | 2005. 4. 8. ~ 2007. 3. 4. | |
| 41 대 | 한상대(韓相大) | 2007. 3. 5. ~ 2009. 1. 18. | |
| 42 대 | 채동욱(蔡東旭) | 2009. 1. 19. ~ 2009. 8. 11. | |
| 43 대 | 성영훈(成永薰) | 2009. 8. 12. ~ 2010. 7. 14. | |
| 44 대 | 한명관(韓明官) | 2010. 7. 15. ~ 2011. 8. 21. | |
| 45 대 | 정병두(鄭炳斗) | 2011. 8. 22. ~ 2012. 7. 17. | |
| 46 대 | 황윤성(黃允成) | 2012. 7. 18. ~ 2013. 4. 9. | |
| 47 대 | 강찬우(姜燦佑) | 2013. 4. 10. ~ 2013. 12. 23. | |
| 48 대 | 정인 창(鄭仁昌) | 2013. 12. 24. ~ 2015. 2. 10. | |
| 49 대 | 봉 욱(奉 旭) | 2015. 2. 11. ~ 2015. 12. 23 | |
| 50 대 | 김호철(金浩徹) | 2015. 12. 24. ~ | |

○ **검찰국장**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민복기(閔復基) | 1948. 11. 4. ~ 1949. 7. 1. | 1948. 11. 4. 신설 |
| 2 대 | 이태희(李太熙) | 1949. 7. 2. ~ 1949. 9. 22. | |
| 3 대 | 최병석(崔秉錫) | 1949. 11. 8. ~ 1950. 4. 20. | |
| 4 대 | 신언한(申彦瀚) | 1950. 6. 8. ~ 1952. 7. 17. | |
| 5 대 | 권오병(權五柄) | 1952. 7. 18. ~ 1953. 11. 6. | |
| 6 대 | 김장섭(金長涉) | 1953. 11. 23. ~ 1954. 3. 23. | |
| 7 대 | 박천일(朴天一) | 1954. 4. 3. ~ 1956. 7. 24. | |
| 8 대 | 김치열(金致烈) | 1956. 9. 17. ~ 1958. 3. 13. | |
| 9 대 | 김장섭(金長涉) | 1958. 3. 14. ~ 1958. 8. 30. | |
| 10 대 | 주운화(朱雲化) | 1958. 9. 10. ~ 1960. 9. 23. | |
| 11 대 | 김찬수(金纘洙) | 1960. 9. 24. ~ 1961. 7. 19. | |
| 12 대 | 위청용(韋青龍) | 1961. 7. 20. ~ 1961. 12. 22. | |
| 13 대 | 김용제(金龍濟) | 1962. 1. 26. ~ 1963. 5. 30. | |
| 14 대 | 윤두식(尹斗植) | 1963. 5. 31. ~ 1964. 10. 16. | |
| 15 대 | 윤운영(尹雲永) | 1964. 10. 17. ~ 1966. 11. 18. | |
| 16 대 | 김일두(金一斗) | 1966. 11. 19. ~ 1968. 5. 31. | |
| 17 대 | 김성재(金聖在) | 1968. 6. 1. ~ 1969. 8. 1. | |
| 18 대 | 박원호(朴元鎬) | 1969. 8. 2. ~ 1971. 8. 25. | |
| 19 대 | 이종원(李鐘元) | 1971. 8. 26. ~ 1973. 4. 5. | |
| 20 대 | 서정각(徐廷覺) | 1973. 4. 6. ~ 1975. 9. 30. | |
| 21 대 | 허형구(許亨九) | 1975. 10. 1. ~ 1979. 2. 18. | |
| 22 대 | 문상익(文相翼) | 1979. 2. 19. ~ 1980. 6. 8. | |
| 23 대 | 배명인(裵命仁) | 1980. 6. 9. ~ 1981. 4. 26. | |
| 24 대 | 정해창(丁海昌) | 1981. 4. 27. ~ 1981. 12. 16. | |
| 25 대 | 김기춘(金淇春) | 1981. 12. 17. ~ 1982. 6. 17. | |
| 26 대 | 정구영(鄭銶永) | 1982. 6. 18. ~ 1985. 3. 4. | |
| 27 대 | 김두희(金斗喜) | 1985. 3. 5. ~ 1987. 6. 7. | |
| 28 대 | 김유후(金有厚) | 1987. 6. 8. ~ 1989. 3. 28. | |
| 29 대 | 박종철(朴鍾喆) | 1989. 3. 29. ~ 1990. 3. 26. | |
| 30 대 | 김도언(金道彦) | 1990. 3. 27. ~ 1991. 4. 17. | |
| 31 대 | 최명부(崔明夫) | 1991. 4. 18. ~ 1993. 3. 16. | |
| 32 대 | 김종구(金鍾求) | 1993. 3. 17. ~ 1993. 9. 20. | |
| 33 대 | 최영광(崔永光) | 1993. 9. 21. ~ 1994. 9. 15. | |
| 34 대 | 최 환(崔 桓) | 1994. 9. 16. ~ 1995. 9. 19. | |
| 35 대 | 김진세(金鎭世) | 1995. 9. 20. ~ 1997. 1. 22. | |
| 36 대 | 박순용(朴舜用) | 1997. 1. 23. ~ 1997. 8. 13. | |
| 37 대 | 최경원(崔慶元) | 1997. 8. 14. ~ 1998. 3. 18. | |
| 38 대 | 신승남(愼承男) | 1998. 3. 23. ~ 1999. 6. 8. | |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39 대 | 한부환(韓富煥) | 1999. 6. 9. ~ 2000. 7. 14. | |
| 40 대 | 김학재(金鶴在) | 2000. 7. 15. ~ 2001. 5. 30. | |
| 41 대 | 송광수(宋光洙) | 2001. 5. 31. ~ 2002. 2. 7. | |
| 42 대 | 김진환(金振煥) | 2002. 2. 8. ~ 2002. 8. 18. | |
| 43 대 | 장윤석(張倫碩) | 2002. 8. 19. ~ 2003. 3. 12. | |
| 44 대 | 홍석조(洪錫肇) | 2003. 3. 13. ~ 2003. 8. 4. | |
| 45 대 | 이종백(李鍾伯) | 2003. 8. 5. ~ 2004. 5. 31. | |
| 46 대 | 임채진(林采珍) | 2004. 6. 1. ~ 2006. 2. 5. | |
| 47 대 | 문성우(文晟祐) | 2006. 2. 6. ~ 2008. 3. 9. | |
| 48 대 | 차동민(車東珉) | 2007. 3. 5. ~ 2009. 1. 18. | |
| 49 대 | 한상대(韓相大) | 2009. 1. 19. ~ 2009. 8. 11. | |
| 50 대 | 최교일(崔敎一) | 2009. 8. 12. ~ 2011. 8. 21. | |
| 51 대 | 국민수(鞠敏秀) | 2011. 8. 22. ~ 2013. 4. 9. | |
| 52 대 | 김주현(金周賢) | 2013. 4. 10. ~ 2015. 2. 10. | |
| 53 대 | 안태근(安兌根) | 2015. 2. 11. ~ | |

○ **보호국장**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서동권(徐東權) | 1981. 1. 26. ~ 1981. 4. 26. | 1981. 1. 19. 신설 |
| 2 대 | 박일흠(朴一欽) | 1981. 4. 27. ~ 1982. 6. 20. | |
| 3 대 | 이병근(李秉根) | 1982. 6. 21. ~ 1983. 7. 31. | |
| 4 대 | 김도언(金道彦) | 1983. 8. 17. ~ 1985. 3. 5. | |
| 5 ~ 6 대 | 임상현(任尙鉉) | 1985. 3. 12. ~ 1987. 6. 7. | |
| 7 대 | 변재일(卞在日) | 1987. 6. 8. ~ 1989. 3. 28. | |
| 8 대 | 장응수(張應水) | 1989. 3. 29. ~ 1991. 4. 17. | |
| 9 대 | 지헌범(池憲範) | 1991. 4. 18. ~ 1992. 7. 28. | |
| 10 대 | 김기수(金起秀) | 1992. 7. 29. ~ 1993. 3. 16. | |
| 11 대 | 김태정(金泰政) | 1993. 3. 17. ~ 1993. 4. 2. | |
| 12 대 | 원정일(元正一) | 1993. 4. 3. ~ 1993. 9. 20. | |
| 13 대 | 김수장(金壽長) | 1993. 9. 21. ~ 1994. 9. 15. | |
| 14 대 | 김병학(金秉學) | 1994. 9. 16. ~ 1995. 9. 19. | |
| 15 대 | 이재신(李載侁) | 1995. 9. 20. ~ 1997. 1. 22. | |
| 16 대 | 송정호(宋正鎬) | 1997. 1. 23. ~ 1997. 8. 13. | |
| 17 대 | 김영철(金永喆) | 1997. 8. 14. ~ 1998. 3. 22. | |
| 18 대 | 윤동민(尹東旻) | 1998. 3. 23. ~ 1999. 2. 3. | |
| 19 대 | 신광옥(辛光玉) | 1999. 2. 22. ~ 1999. 6. 8. | |
| 20 대 | 정충수(鄭忠秀) | 1999. 6. 9. ~ 1999. 8. 23. | |
| 21 대 | 박종열(朴淙烈) | 1999. 8. 24. ~ 2001. 5. 30. | |
| 22 대 | 김종빈(金鍾彬) | 2001. 5. 31. ~ 2002. 2. 7. | |
| 23 대 | 조규정(趙圭政) | 2002. 2. 8. ~ 2002. 11. 17. | |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24 대 | 윤종남(尹鍾南) | 2002. 11. 18. ~ 2003. 3. 12. | |
| 25 대 | 정동기(鄭東基) | 2003. 3. 13. ~ 2004. 5. 31. | |
| 26 대 | 정진호(鄭振昊) | 2004. 6. 1. ~ 2005. 4. 7. | |
| 27 대 | 이승구(李承玖) | 2005. 4. 8. ~ 2005. 9. 11. | |
| 28 대 | 김수민(金秀敏) | 2005. 9. 12. ~ 2007. 3. 4. | |
| 29 대 | 이상도(李相燾) | 2007. 3. 5. ~ 2008. 3. 10. | |

○ **범죄예방정책국장**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박기준(朴基俊) | 2008. 3. 11. ~ 2009. 1. 18. | |
| 2 대 | 소병철(蘇秉哲) | 2009. 1. 19. ~ 2009. 8. 11. | |
| 3 대 | 주철현(朱哲鉉) | 2009. 8. 12. ~ 2010. 7. 14. | |
| 4 대 | 김수남(金秀南) | 2010. 7. 15. ~ 2011. 8. 21. | |
| 5 대 | 김희관(金熙官) | 2011. 8. 22. ~ 2012. 7. 17. | |
| 6 대 | 이건주(李健周) | 2012. 7. 18. ~ 2013. 4. 9. | |
| 7 대 | 문무일(文武一) | 2013. 4. 10. ~ 2013. 12. 23. | |
| 8 대 | 황철규(黃喆奎) | 2013. 12. 24. ~ 2015. 2. 10. | |
| 9 대 | 오광수(吳桄洙) | 2015. 2. 11. ~ 2015. 12. 23. | |
| 10 대 | 이상호(李相虎) | 2015. 12. 24. ~ | |

○ **인권국장**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김준규(金晙圭) | 2006. 5. 3. ~ 2006. 8. 6. | 2006. 5. 3.신설 |
| 2 대 | 김종훈(金鍾勳) | 2006. 8. 7. ~ 2009. 2. 15. | 개방직 |
| 3 대 | 조영곤(曺永昆) | 2009. 2. 28. ~ 2009. 8. 11. | 검 사 |
| 4 대 | 송찬엽(宋讚燁) | 2009. 8. 31. ~ 2010. 7. 14. | 검 사 |
| 5 대 | 박민표(朴珉豹) | 2010. 8. 2. ~ 2011. 9. 4. | 검 사 |
| 6 대 | 이명재(李明宰) | 2011. 9. 5. ~ 2012. 7. 17. | 검 사 |
| 7 대 | 봉 욱(奉 旭) | 2012. 7. 26. ~ 2013. 4. 9. | 검 사 |
| 8 대 | 안태근(安兌根) | 2013. 4. 23. ~ 2013. 12. 23. | 검 사 |
| 9 대 | 한찬식(韓璨湜) | 2014. 1. 16. ~ 2015. 2. 10. | 검 사 |
| 10 대 | 차경환(車京煥) | 2015. 2. 25. ~ 2015. 12. 23. | 검 사 |
| 11 대 | 권정훈(權政勳) | 2016. 1. 13. ~ | 검 사 |

○ **감찰관**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임채진(林采珍) | 2005. 2. 1. ~ 2005. 4. 7. | 직무대리 |
| 2 대 | 선우영(鮮于泳) | 2005. 4. 8. ~ 2005. 9. 11. | |
| 3 대 | 이승구(李承玖) | 2005. 9. 12. ~ 2006. 2. 5. | |
| 4 대 | 안종택(安鍾澤) | 2006. 2. 6. ~ 2007. 3. 4. | |
| 5 대 | 이복태(李福泰) | 2007. 3. 5. ~ 2008. 3. 10. | |
| 6 대 | 곽상욱(郭相煜) | 2008. 4. 15. ~ 2009. 8. 11. | |
| 7 대 | 이경재(李慶在) | 2009. 9. 10. ~ 2010. 7. 14. | |
| 8 대 | 안장근(安章根) | 2010. 9. 1. ~ 2012. 8. 31. | 개방직 |
| 9 대 | 안장근(安章根) | 2012. 9. 1. ~ 2014. 8. 31. | 개방직 |
| 10 대 | 김주현(金周賢) | 2014. 9. 1. ~ 2015. 2. 10. | 직무대리 |
| 11 대 | 안태근(安兌根) | 2015. 2. 11. ~ 2015. 3. 15. | 직무대리 |
| 12 대 | 장인종(張仁鍾) | 2015. 3. 16. ~ | 개방직 |

○ **교정국장**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윤용섭(尹用燮) | 1948. 11. 8. ~ 1949. 11. 8. | 1948. 11. 4. |
| 2 대 | 원탁연(元鐸淵) | 1949. 11. 8. ~ 1951. 8. 28. | 형정국 신설 |
| 3 대 | 최세황(崔世璜) | 1951. 8. 29. ~ 1952. 7. 18. | |
| 4 대 | 신언한(申彦瀚) | 1952. 7. 19. ~ 1958. 3. 11. | |
| 5 대 | 이병호(李丙浩) | 1958. 3. 12. ~ 1960. 9. 23. | |
| 6 대 | 이홍규(李弘圭) | 1960. 9. 24. ~ 1961. 6. 21. | |
| 7 대 | 서일교(徐壹敎) | 1961. 6. 22. ~ 1962. 3. 18. | 1962. 5. 21. |
| 8 대 | 이봉성(李鳳成) | 1962. 3. 19. ~ 1964. 10. 16. | 교정국으로 |
| 9 대 | 윤두식(尹斗植) | 1964. 10. 17. ~ 1966. 11. 18. | 개편 |
| 10 대 | 윤운영(尹雲永) | 1966. 11. 19. ~ 1968. 12. 1. | |
| 11 대 | 김덕문(金德文) | 1968. 12. 2. ~ 1971. 8. 25. | |
| 12 대 | 김일두(金一斗) | 1971. 8. 26. ~ 1973. 4. 5. | |
| 13 대 | 이종원(李鐘元) | 1973. 4. 6. ~ 1975. 9. 30. | |
| 14 대 | 김윤근(金潤槿) | 1975. 10. 1. ~ 1977. 2. 16. | |
| 15 대 | 송종진(宋鍾辰) | 1977. 2. 17. ~ 1979. 2. 18. | |
| 16 대 | 김석휘(金錫輝) | 1979. 2. 19. ~ 1981. 4. 26. | |
| 17 대 | 안경상(安景相) | 1981. 4. 27. ~ 1981. 12. 16. | |
| 18 대 | 김종건(金鐘鍵) | 1981. 12. 17. ~ 1983. 7. 31. | |
| 19 대 | 이병근(李秉根) | 1983. 8. 1. ~ 1986. 5. 2. | |
| 20 대 | 허은도(許殷道) | 1986. 5. 3. ~ 1987. 6. 7. | |
| 21 대 | 김동철(金東哲) | 1987. 6. 8. ~ 1988. 8. 24. | |
| 22 대 | 신 건(辛 建) | 1988. 8. 25. ~ 1991. 4. 17. | |
| 23 대 | 유순석(柳淳錫) | 1991. 4. 18. ~ 1993. 3. 16. | |
| 24 대 | 김기수(金起秀) | 1993. 3. 17. ~ 1993. 5. 31. | 직무대리 |
| 25 대 | 원정일(元正一) | 1993. 6. 1. ~ 1993. 9. 20. | |
| 26 대 | 김택수(金澤秀) | 1993. 9. 21. ~ 1994. 9. 15. | |
| 27 대 | 원정일(元正一) | 1994. 9. 16. ~ 1995. 9. 19. | 검사장급 |
| 28 대 | 박순용(朴舜用) | 1995. 9. 20. ~ 1997. 1. 22. | |
| 29 대 | 유재성(柳在成) | 1997. 1. 23. ~ 1997. 8. 13. | |
| 30 대 | 김수장(金壽長) | 1997. 8. 14. ~ 1998. 3. 22. | |
| 31 대 | 김경한(金慶漢) | 1998. 3. 23. ~ 1999. 6. 8. | |
| 32 대 | 이순길(李淳吉) | 1999. 6. 9. ~ 2001. 6. 30. | 일반직 |
| 33 대 | 김명환(金明煥) | 2001. 7. 1. ~ 2002. 12. 31. | |
| 34 대 | 하근수(河根洙) | 2003. 1. 1. ~ 2003. 12. 31. | |
| 35 대 | 양봉태(梁奉泰) | 2004. 1. 19. ~ 2005. 12. 31. | |
| 36 대 | 이인순(李仁焞) | 2006. 1. 1. ~ 2006. 6. 25. | |
| 37 대 | 승성신(承聖信) | 2006. 6. 26. ~ 2007. 11. 29. | |

○ **교정본부장**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승성신(承聖信) | 2007. 11. 30. ~ 2008. 6. 29. | |
| 2 대 | 이태희(李台熙) | 2008. 6. 30. ~ 2010. 6. 29. | |
| 3 대 | 안동주(安東珠) | 2010. 6. 30. ~ 2012. 6. 30. | 일반직 |
| 4 대 | 김태훈(金兌勳) | 2012. 7. 1. ~ 2014. 6. 30. | |
| 5 대 | 윤경식(尹慶植) | 2014. 7. 16. ~ 2016. 6. 30 | |
| 6 대 | 김학성(金學成) | 2016. 7. 1. ~ | |

○ **출입국관리국장**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이영환(李永煥) | 1970. 9. 1. ~ 1971. 8. 25. | 1970. 8. 20. |
| 2 대 | 정익원(鄭益源) | 1971. 8. 26. ~ 1972. 11. 21. | 신설 |
| 3 대 | 안경열(安慶烈) | 1972. 11. 22. ~ 1976. 6. 20. | |
| 4 대 | 이길주(李桔柱) | 1976. 6. 21. ~ 1978. 2. 10. | 검사장급 |
| 5 대 | 정명래(鄭明來) | 1978. 2. 11. ~ 1980. 6. 8. | |
| 6 대 | 김용인(金用璘) | 1980. 6. 9. ~ 1981. 4. 26. | |
| 7 대 | 김기춘(金淇春) | 1981. 4. 27. ~ 1981. 12. 16. | |
| 8 대 | 정구영(鄭銶永) | 1981. 12. 17. ~ 1982. 6. 17. | |
| 9 대 | 박희태(朴熹太) | 1982. 6. 18. ~ 1983. 7. 31. | |
| 10 대 | 안태현(安泰鉉) | 1983. 8. 1. ~ 1987. 2. 28. | 일반직 |
| 11 대 | 조기현(曺麒鉉) | 1987. 3. 2. ~ 1989. 4. 14. | |
| 12 대 | 김우진(金宇鎭) | 1989. 4. 15. ~ 1991. 6. 30. | |
| 13 대 | 김시평(金時評) | 1991. 7. 1. ~ 1993. 9. 30. | |
| 14 대 | 홍석종(洪錫宗) | 1993. 10. 1. ~ 1995. 3. 31. | |
| 15 대 | 유병랑(兪炳郎) | 1995. 4. 1. ~ 1997. 5. 31. | |
| 16 대 | 구창덕(具昌德) | 1997. 6. 1. ~ 1999. 4. 1. | |
| 17 대 | 김수영(金秀永) | 1999. 4. 2. ~ 2001. 6. 30. | |
| 18 대 | 최수근(崔洙根) | 2001. 7. 1. ~ 2003. 11. 21. | |
| 19 대 | 이민희(李珉熙) | 2003. 12. 5. ~ 2005. 12. 4. | 계약직 |
| 20 대 | 강명득(姜命得) | 2005. 12. 5. ~ 2007. 4. 15. | |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대 순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 대 | 추규호(秋圭昊) | 2007. 7. 10. ~ 2009. 7. 10. | 계약직 |
| 2 대 | 석동현(石東炫) | 2009. 8. 12. ~ 2011. 8. 21. | 검사장 |
| 3 대 | 이창세(李昌世) | 2011. 8. 22. ~ 2013. 4. 3. | 검사장 |
| 4 대 | 정동민(鄭東敏) | 2013. 4. 10. ~ 2013. 12. 23. | 검사장 |
| 5 대 | 한무근(韓武根) | 2013. 12. 24. ~ 2015. 2. 10. | 검사장 |
| 6 대 | 김영준(金英晙) | 2015. 2. 11. ~ 2015. 12. 23. | 검사장 |
| 7 대 | 진경준(陳炅準) | 2015. 12. 24. ~ 2016. 5. 22. | 검사장 |
| 8 대 | 김우현(金宇鉉) | 2016. 5. 23. ~ | 검사장 |

# Ⅴ.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2015. 12. 31. 기준)

## 1. 본 부(5급 이상)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장 관 | 金賢雄 | 2015. 7. 9. |
| 차 관 | 李昌宰 | 2015. 12. 24. |
| 장관비서관 | 鄭然喆 | 2015. 8. 31. |
| 장관정책보좌관 | 蔡珍煥 | 2015. 8. 17. |
| 〃 | 朱慧珍 | 2015. 2. 25. |
| 감 찰 관 | 張仁鍾 | 2015. 3. 16. |
| 감찰담당관 | 吳仁瑞 | 2015. 2. 25. |
| 검 사 | 申昇熙 | 2014. 8. 29. |
| 〃 | 金度完 | 2015. 2. 25. |
| 검찰사무관 | 崔鐘必 | 2013. 7. 29. |
| 〃 | 曺旻鎬 | 2015. 8. 31. |
| 교 정 관 | 鄭 鎭 | 2015. 1. 19. |
| 감사담당관 | 吳完燮 | 2013. 7. 29. |
| 서 기 관 | 沈景輔 | 2014. 1. 1. |
| 〃 | 金政福 | 2015. 1. 1. |
| 〃 | 李漢植 | 2015. 8. 3. |
| 행정사무관 | 趙商民 | 2015. 4. 7. |
| 〃 | 李東勳 | 2014. 7. 11. |
| 〃 | 權泰成 | 2015. 1. 1. |
| 〃 | 金範映 | 2015. 1. 1. |
| 시설사무관 | 裵聖龍 | 2014. 9. 15. |
| 운영지원과장 | 文權点 | 2013. 7. 29. |
| 서 기 관 | 金洙徹 | 2015. 1. 1. |
| 행정사무관 | 鄭東桓 | 2014. 7. 21. |
| 〃 | 辛漢憲 | 2012. 7. 2. |
| 〃 | 李相榮 | 2015. 4. 7. |
| 시설사무관 | 金永採 | 2014. 9. 15. |
| 대 변 인 | 金廣洙 | 2015. 2. 25. |
| 홍보담당관 | 韓正珍 | 2013. 9. 1. |
| 서기관(일반임기제) | 宋재다아 | 2015. 9. 29. |
| 행정사무관 | 朴正錫 | 2015. 1. 1. |
| 검찰사무관(일반임기제) | 李相雨 | 2014. 5. 1. |
| 기획조정실장 | 權益煥 | 2015. 12. 24. |
| 정책기획관 | 高昌憲 | 2014. 7. 15. |
| 검 사 | 龍聖鎭 | 2014. 2. 5. |
| 검 사 | 權性熙 | 2014. 2. 5. |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비상안전기획관 | 金晩河 | 2014. 1. 1. |
| 행정사무관 | 李康采 | 2013. 7. 29. |
| 기획재정담당관 | 崔珵錫 | 2013. 7. 29. |
| 서 기 관 | 姜義坤 | 2015. 1. 1. |
| 행정사무관 | 金珍燮 | 2013. 12. 4. |
| 〃 | 洪周怜 | 2014. 7. 21. |
| 〃 | 李濬碩 | 2015. 4. 7. |
| 창조행정담당관 | 金泰福 | 2014. 7. 21. |
| 서 기 관 | 崔相赫 | 2015. 1. 1. |
| 행정사무관 | 韓帝迈 | 2015. 1. 1. |
| 시설담당관 | 金鍾泰 | 2014. 12. 31. |
| 시설서기관 | 曺錄煥 | 2014. 12. 31. |
| 시설사무관 | 金昌燮 | 2015. 8. 3. |
| 〃 | 鄭秉澤 | 2011. 4. 20. |
| 〃 | 洪性芸 | 2014. 11. 12. |
| 〃 | 嚴東哲 | 2014. 11. 12. |
| 〃 | 姜東憲 | 2015. 4. 7. |
| 공업사무관 | 李亨燮 | 2014. 11. 12. |
| 〃 | 姜秉鴻 | 2014. 11. 12. |
| 정보화담당관 | 洪淳乭 | 2012. 5. 7. |
| 기술서기관 | 周埌根 | 2015. 8. 3. |
| 전산사무관 | 陳瑀錫 | 2012. 12. 17. |
| 〃 | 辛秉默 | 2015. 8. 3. |
| 〃 | 鄭惠燦 | 2015. 8. 3. |
| 정책성과관리팀장 | 金貞烈 | 2014. 7. 21. |
| 행정사무관 | 金에오 | 2015. 1. 1. |
| 〃 | 金孝玟 | 2014. 7. 21. |
| 행복민원센터장 | 金尙權 | 2013. 4. 1. |
| 시설사무관 | 崔海圭 | 2014. 9. 15. |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 全亨根 | 2015. 2. 25. |
| 검 사 | 李炳昊 | 2014. 2. 5. |
| 전산사무관 | 金玩烈 | 2010. 12. 22. |
| 〃 | 尹美淑 | 2010. 12. 22. |
| 보호사무관 | 蔡鐘厚 | 2014. 1. 13. |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법 무 실 장 | 奉 旭 | 2015. 2. 11. |
| 법 무 심 의 관 | 裵鏞元 | 2015. 2. 25. |
| 검 사 | 李應鐵 | 2014. 2. 5. |
| 〃 | 李峻東 | 2013. 8. 26. |
| 〃 | 鄭知所 | 2015. 2. 25. |
| 〃 | 朴良浩 | 2015. 2. 25. |
| 〃 | 李始佺 | 2015. 2. 25. |
| 검 찰 사 무 관 | 孫柱根 | 2015. 2. 16. |
| 전 문 임 기 제 나 급 | 張유미 | 2012. 3. 26. |
| 법 무 과 장 | 金南佑 | 2015. 2. 25. |
| 검 사 | 金琪勳 | 2015. 2. 25. |
| 〃 | 崔淸浩 | 2014. 2. 5. |
| 검 찰 수 사 서 기 관 | 金泰鎰 | 2014. 8. 4. |
| 검 찰 사 무 관 | 李在浩 | 2015. 8. 31. |
| 국 제 법 무 과 장 | 金哲秀 | 2014. 1. 16. |
| 검 사 | 盧先均 | 2014. 2. 5. |
| 〃 | 崔泰銀 | 2014. 2. 5. |
| 〃 | 金志彦 | 2015. 2. 25. |
| 〃 | 蘇正秀 | 2015. 8. 27. |
| 검 찰 사 무 관 | 趙炳雄 | 2015. 8. 31. |
|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 申殷瑛 | 2014. 7. 14. |
| 〃 | 柳美里 | 2014. 11. 17. |
| 〃 | 金慈亨 | 2015. 2. 24. |
| 국 가 송 무 과 장 | 吳永信 | 2015. 2. 25. |
| 검 사 | 崔泰元 | 2014. 2. 5. |
| 〃 | 金恩美 | 2015. 2. 25. |
| 검 찰 수 사 서 기 관 | 全德鎭 | 2014. 2. 24. |
| 검 찰 사 무 관 | 金圭河 | 2015. 8. 31. |
| 〃 | 丁永運 | 2015. 8. 31. |
| 통 일 법 무 과 장 | 朱祥鎔 | 2015. 2. 25. |
| 검 사 | 崔大健 | 2013. 2. 28. |
| 〃 | 姜旼廷 | 2015 . 2. 25 |
| 〃 | 徐京源 | 2015. 2. 25. |
| 〃 | 金泰憲 | 2014. 8. 29. |
| 검 찰 사 무 관 | 鄭圭烈 | 2014. 2. 24. |
|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 李恩英 | 2012. 7. 4. |
| 상 사 법 무 과 장 | 洪承郁 | 2015. 2. 25 |
| 검 사 | 崔任烈 | 2013. 2. 28. |
| 〃 | 姜尙默 | 2014. 2. 5. |
| 행정서기관(일반임기제) | 李奎哲 | 2015. 11. 16. |
| 전 문 임 기 제 나 급 | 金孝宣 | 2015. 1. 26. |
| 법 조 인 력 과 장 | 金大鉉 | 2014. 1. 16. |
| 검 사 | 金丞杰 | 2015. 8. 27. |
| 검 찰 사 무 관 | 朴熙相 | 2013. 7. 29. |
| 〃 | 朴相植 | 2012. 7. 2. |
| 행 정 사 무 관 | 金弘俊 | 2011. 7. 29. |
| 〃 | 柳炅南 | 2013. 7. 29. |
| 〃 | 李昇恒 | 2015. 4. 7. |
| 검 찰 국 장 | 安兌根 | 2015. 2. 11. |
| 사법연수원부원장 | 趙垠奭 | 2015. 12. 24. |
| 검 찰 과 장 | 李善旭 | 2015. 2. 25. |
| 검 사 | 李昌洙 | 2015. 2. 25. |
| 〃 | 申東原 | 2013. 2. 28. |
| 〃 | 任世鎭 | 2014. 2. 5. |
| 〃 | 羅夏那 | 2015. 2. 25. |
| 검 찰 수 사 서 기 관 | 崔相煥 | 2011. 8. 24. |
| 〃 | 李甲洙 | 2012. 7. 2. |
| 검 찰 사 무 관 | 辛戊承 | 2012. 1. 2. |
| 형 사 기 획 과 장 | 李準植 | 2015 2 .25. |
| 검 사 | 金宰禾 | 2014. 8. 29. |
| 검 사 | 崔宰熏 | 2015. 2. 25. |
| 검 찰 수 사 서 기 관 | 文炳大 | 2012. 7. 2. |
| 검 찰 사 무 관 | 裵吉文 | 2012. 1. 2. |
| 검 찰 사 무 관 | 朴武烈 | 2012. 7. 2. |
| 공 안 기 획 과 장 | 李晟圭 | 2015. 2. 25. |
| 검 사 | 朴俊映 | 2014. 8. 29. |
| 〃 | 權乃建 | 2015. 2. 25. |
| 검 찰 사 무 관 | 朴大均 | 2012. 7. 2. |
| 〃 | 李國熙 | 2012. 1. 2. |
| 국 제 형 사 과 장 | 鄭鎭宇 | 2015. 2. 25. |
| 검 사 | 李知炯 | 2014. 2. 5. |
| 〃 | 金兌炯 | 2015. 2. 25. |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검찰사무관 | 李洪龍 | 2010. 2. 16. |
| 〃 | 吳萬玉 | 2012. 1. 2. |
| 형사법제과장 | 金泰佑 | 2015. 2. 25. |
| 검사 | 尹垣基 | 2014. 8. 29. |
| 〃 | 徐孝沅 | 2015. 2. 25. |
| 검찰사무관 | 梁又德 | 2009. 7. 6. |
| 〃 | 李仁柱 | 2012. 1. 2. |
| 범죄예방정책국장 | 李相虎 | 2015. 12. 24. |
| 범죄예방기획과장 | 鄭喜元 | 2015. 2. 25. |
| 검사 | 朴鎭成 | 2014. 2. 25. |
| 〃 | 宋濬求 | 2014. 2. 5. |
| 보호사무관 | 李承旭 | 2013. 1. 28. |
| 〃 | 吳相燮 | 2013. 10. 1. |
| 〃 | 朴鍾國 | 2012. 7. 9. |
| 〃 | 趙莛滇 | 2014. 1. 13. |
| 법질서선진화과장 | 羅贊基 | 2015. 2. 25. |
| 검사 | 柳道潤 | 2014. 2. 5. |
| 〃 | 崔娜瑛 | 2015. 8. 27. |
| 보호사무관 | 尹鉉鳳 | 2015. 8. 31. |
| 검찰사무관 | 玄 臨 | 2014. 2. 24. |
| 행정사무관 | 羅智仁 | 2013. 12. 16. |
| 〃 | 許泰九 | 2015. 8. 3. |
| 보호법제과장 | 李定桓 | 2015. 2. 25. |
| 검사 | 文芝善 | 2015. 2. 25. |
| 서기관 | 梁顯圭 | 2015. 8. 31. |
| 보호사무관 | 閔明植 | 2014. 7. 21. |
| 검찰사무관 | 崔洙鐘 | 2015. 8. 31. |
| 소년과장 | 李東煥 | 2012. 7. 9. |
| 서기관 | 尹一重 | 2015. 8. 31. |
| 보호사무관 | 尹龍範 | 2012. 1. 30. |
| 〃 | 李憲求 | 2014. 1. 13. |
| 〃 | 池元根 | 2015. 8. 31. |
| 행정사무관 | 金景洙 | 2015. 1. 1. |
| 보호관찰과장 | 李炯再 | 2015. 11. 2. |
| 서기관 | 李法虎 | 2015. 3. 30. |
| 보호사무관 | 林合格 | 2015. 8. 31. |
| 보호사무관 | 成奉虎 | 2015. 8. 31. |
| 특정범죄자관리과장 | 李泰源 | 2015. 11. 2. |
| 보호사무관 | 沈善玉 | 2015. 6. 15. |
| 〃 | 金秉培 | 2015. 8. 31. |
| 인권국장 | 車京煥 | 2015. 2. 25. |
| 인권정책과장 | 金俊淵 | 2015. 2. 25. |
| 서기관 | 趙五行 | 2014. 7. 21. |
| 행정사무관 | 李英敏 | 2015. 8. 3. |
| 검찰사무관 | 金聖凡 | 2013. 7. 29. |
| 행정사무관 | 車裕眞 | 2011. 6. 10. |
| 사무관 | 吳侑珍 | 2012. 2. 13. |
| 〃 | 金鍾壹 | 2014. 7. 28. |
| 인권구조과장 | 姜智植 | 2015. 2. 25. |
| 검사 | 金保成 | 2014. 2. 5. |
| 서기관 | 朴鍾權 | 2015. 4. 7. |
| 검찰사무관 | 金琮哲 | 2015. 2. 16. |
| 행정사무관 | 徐惠珠 | 2014. 9. 22. |
| 인권조사과장 | 金洋洙 | 2015. 2. 25. |
| 검사 | 李坤胡 | 2013. 8. 26. |
| 검찰사무관 | 張 福 | 2014. 8. 4. |
| 〃 | 李廷勇 | 2015. 2. 16. |
| 여성아동인권과장 | 洪終姬 | 2013. 10. 1. |
| 행정사무관 | 崔永萬 | 2015. 1. 1. |
| 검찰사무관 | 玄汶禎 | 2015. 2. 16. |
| 검찰사무관 | 潘俊成 | 2015. 2. 16. |
| 교정본부장 | 尹慶植 | 2014. 7. 16. |
| 교정정책단장 | 金學成 | 2015. 8. 3. |
| 보안정책단장 | 洪南寔 | 2015. 8. 3. |
| 교정기획과장 | 金鍾煜 | 2015. 8. 3. |
| 서기관 | 吳光云 | 2015. 1. 19. |
| 교정관 | 朴冏琁 | 2015. 9. 30. |
| 〃 | 趙炳珠 | 2015. 8. 3. |
| 〃 | 許萬赫 | 2015. 9. 30. |
| 〃 | 韓泰煥 | 2013. 7. 1. |
| 〃 | 琴鏞鵬 | 2015. 1. 19. |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직업훈련과장 | 禹熙慶 | 2015. 8. 3. |
| 교정관 | 韓天龍 | 2014. 1. 13. |
| 〃 | 鄭惠利 | 2015. 8. 3. |
| 행정사무관 | 黃圭成 | 2013. 7. 29. |
| 사회복귀과장 | 李英姬 | 2015. 1. 19. |
| 교정관 | 金晟昊 | 2015. 8. 3. |
| 〃 | 朴相龍 | 2015. 8. 3. |
| 〃 | 安泳三 | 2015. 8. 3. |
| 〃 | 李泓沇 | 2013. 10. 1. |
| 사회복지사무관 | 李日鉉 | 2014. 1. 13. |
| 복지과장 | 金珍求 | 2015. 8. 3. |
| 교정관 | 南相伍 | 2013. 7. 1. |
| 행정사무관 | 趙始衡 | 2015. 1. 1. |
| 시설사무관 | 吳成根 | 2015. 8. 3. |
| 보안과장 | 金東昡 | 2015. 8. 3. |
| 교정관 | 金在述 | 2015. 8. 3. |
| 〃 | 徐豪成 | 2015. 8. 3. |
| 〃 | 張元載 | 2015. 8. 3. |
| 분류심사과장 | 辛京又 | 2015. 1. 19. |
| 서기관 | 崔圭澈 | 2015. 8. 3. |
| 교정관 | 朴鍾寬 | 2012. 7. 23. |
| 〃 | 高成泰 | 2014. 9. 1. |
| 〃 | 裵敬錫 | 2014. 9. 29. |
| 의료과장 | 李彦淡 | 2015. 8. 3. |
| 교정관 | 金鶴奉 | 2013. 7. 1. |
| 〃 | 崔鍾季 | 2015. 9. 30. |
| 고위공무원(국방대학교) | 金明哲 | 2015. 2. 1. |
| 서기관(통일교육원) | 南俊洛 | 2015. 2. 1. |
| 교정관(국가인권위원회) | 朴基柱 | 2014. 1. 13. |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陳炅準 | 2015. 12. 24. |
| 출입국정책단장 | 孫弘基 | 2015. 7. 27. |
| 국적·통합정책단장 | 金尤鎬 | 2014. 9. 3. |
| 출입국기획과장 | 金榮根 | 2015. 8. 10. |
| 출입국관리사무관 | 李德龍 | 2012. 1. 20. |
| 〃 | 文壽龍 | 2015. 8. 31. |
| 출입국관리사무관 | 金世珍 | 2015. 1. 19. |
| 〃 | 李相達 | 2012. 7. 23. |
| 출입국심사과장 | 鄭炳列 | 2015. 8. 10. |
| 서기관 | 金炳培 | 2014. 8. 10. |
| 출입국관리사무관 | 羅賢雄 | 2014. 7. 14. |
| 〃 | 安東寬 | 2014. 7. 14. |
| 체류관리과장 | 田達秀 | 2015. 8. 10. |
| 출입국관리사무관 | 兪炳吉 | 2014. 1. 20. |
| 〃 | 金泰亨 | 2014. 1. 20. |
| 〃 | 李文漢 | 2013. 7. 29. |
| 〃 | 李承賢 | 2015. 8. 10. |
| 이민조사과장 | 李東權 | 2014. 7. 7. |
| 출입국관리사무관 | 高錫坤 | 2012. 1. 20 |
| 〃 | 尹相龍 | 2015. 8. 10. |
| 〃 | 金洪奎 | 2015. 8. 10. |
| 이민정보과장 | 金守男 | 2014. 7. 7. |
| 출입국관리사무관 | 孔存行 | 2014. 8. 25. |
| 〃 | 朴贊淳 | 2014. 7. 14. |
| 외국인정책과장 | 裵祥業 | 2015. 8. 10. |
| 서기관 | 河勇國 | 2015. 8. 10. |
| 출입국관리사무관 | 具本俊 | 2013. 1. 28. |
| 〃 | 崔文禎 | 2014. 1. 20. |
| 〃 | 金旼勁 | 2014. 9. 29. |
| 국적과장 | 朴相旭 | 2014. 7. 7. |
| 출입국관리사무관 | 李在炯 | 2015. 1. 19. |
| 〃 | 金鎭成 | 2013. 7. 29. |
| 〃 | 金基永 | 2013. 7. 29. |
| 이민통합과장 | 朴栽完 | 2015. 8. 10. |
| 출입국관리사무관 | 吉康默 | 2013. 7. 29. |
| 〃 | 柳寅聖 | 2014. 7. 14. |
| 〃 | 李翠庚 | 2015. 1. 19. |
| 〃 | 權宅晟 | 2015. 8. 10. |
| 난민과장 | 宋素瑛 | 2013. 6. 12 |
| 출입국관리사무관 | 具炳謨 | 2015. 3. 7. |
| 〃 | 李宗哲 | 2015. 8. 10. |
| 부이사관(국립외교원) | 金鍾敏 | 2015. 2. 1. |

## 2. 법무연수원(4급 이상)

| 직 위 | 직 급 | 성 명 | 발 령 일 |
|---|---|---|---|
| 원 장 | 검 사 | 김 희 관(金熙官) | 2015. 12. 24. |
| 기 획 부 장 | 검 사 | 이 명 재(李明宰) | 2015. 12. 24. |
| 교정연수부장 | 고 위 공 무 원 | 권 기 훈(權奇薰) | 2015. 8. 3. |
| 연 구 위 원 | 검 사 | 김 영 진(金永眞) | 2015. 2. 25. |
| | | 김 창(金 昶) | 2015. 2. 25. |
| | | 김 회 종(金會宗) | 2014. 7. 28. |
| | | 류 장 만(柳長萬) | 2014. 4. 28. |
| 기 획 과 장 | 검 사 | 배 용 찬(裵龍贊) | 2015. 2. 25. |
| 검 사 교 수 | 검 사 | 전 석 수(全錫洙) | 2015. 3. 16. |
| | | 박 두 순(朴斗淳) | 2015. 2. 25. |
| | | 김 종 칠(金種七) | 2015. 2. 25. |
| | | 김 영 준(金榮俊) | 2014. 1. 16. |
| | | 이 창 온(李昶溫) | 2015. 2. 25. |
| | | 안 종 오(安種五) | 2015. 2. 25. |
| | | 김 윤 희(金允姬) | 2015. 2. 25. |
| | | 김 명 운(金溟雲) | 2015. 2. 25. |
| | | 김 정 진(金楨珍) | 2015. 2. 25. |
| 총 무 과 장 | 서 기 관 | 이 상 순(李相洵) | 2013. 2. 1. |
| 일반연수과장 | 검찰수사서기관 | 이 영 철(李永哲) | 2015. 8. 31. |
| 교정연수과장 | 서 기 관 | 김 일 환(金一煥) | 2015. 8. 3. |
| 교정훈련과장 | 서 기 관 | 천 정 훈(千政熏) | 2015. 1. 1. |
| 시설관리팀장 | 서 기 관 | 이 석 재(李錫宰) | 2015. 8. 3. |
| 용인분원장 | 검 사 | 이 동 열(李東烈) | 2015. 2. 25. |
| 대외연수과장 | 검 사 | 김 지 용(金志容) | 2015. 2. 25. |
| 운영지원과장 | 검찰수사서기관 | 이 세 규(李世揆) | 2015. 8. 31. |

## 3. 검 찰 청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대 검 찰 청 )** | | |
| 검 찰 총 장 | 金秀南 | 2015.12.02. |
| 차 장 검 사 | 金周賢 | 2015.12.24. |
| 대 변 인 | 呂煥燮 | 2015.02.25. |
| 범죄정보기획관 | 高 興 | 2015.02.25. |
| 범죄정보1담당관 | 李槿洙 | 2015.02.25. |
| 범죄정보2담당관 | 宋庚鎬 | 2015.02.25. |
| 기 획 조 정 부 장 | 尹雄傑 | 2015.12.24. |
| 정 책 기 획 과 장 | 申子容 | 2015.02.25. |
| 정 보 통 신 과 장 | 具滋賢 | 2015.02.25. |
| 형 사 부 장 | 朴均澤 | 2015.12.24. |
| 형 사 1 과 장 | 韓雄在 | 2015.02.25. |
| 형 사 2 과 장 | 閔奇鎬 | 2015.02.25. |
| 강 력 부 장 | 朴珉豹 | 2015.12.24. |
| 조 직 범 죄 과 장 | 金厚均 | 2015.02.25. |
| 마 약 과 장 | 朴在億 | 2015.02.25. |
| 피해자인권과장 | 朴志英 | 2014.01.16. |
| 공 안 부 장 | 鄭点植 | 2015.02.11. |
| 공 안 기 획 관 | 邊昶勳 | 2015.02.25. |
| 공 안 1 과 장 | 金宰玉 | 2015.02.25. |
| 공 안 2 과 장 | 林 炫 | 2015.02.25. |
| 공 안 3 과 장 | 金裕喆 | 2015.02.25. |
| 공 판 송 무 부 장 | 金海洙 | 2015.12.24. |
| 공 판 송 무 과 장 | 韓奭履 | 2015.02.25. |
| 과 학 수 사 부 장 | 金榮大 | 2015.12.24. |
| 과학수사기획관 | 李憲相 | 2015.02.25. |
| 과학수사1과장 | 申成植 | 2015.02.25. |
| 과학수사2과장 | 李鎭琇 | 2015.02.25. |
| 디지털수사과장 | 梁碩祚 | 2015.02.25. |
| 사이버수사과장 | 辛應碩 | 2015.02.25. |
| 감 찰 부 장 | 李俊虎 | 2014.09.01. |
| 감 찰 1 과 장 | 張瑛洙 | 2015.02.25. |
| 감 찰 2 과 장 | 李定炫 | 2014.01.16. |
| 반 부 패 부 장 | 朴正植 | 2015.12.24.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수 사 지 휘 과 장 | 李沅秬 | 2015.02.25. |
| 수 사 지 원 과 장 | 朴哲雄 | 2015.02.25. |
| 검 찰 연 구 관 | 宋三鉉 | 2015.02.25. |
| 〃 | 尹喜植 | 2015.02.25. |
| 〃 | 權純哲 | 2015.02.25. |
| 〃 | 李尙璡 | 2015.02.25. |
| 〃 | 韓濟熙 | 2015.02.25. |
| 〃 | 朴贊祿 | 2015.02.25. |
| 〃 | 成尙憲 | 2015.02.25. |
| 〃 | 姜正錫 | 2015.02.25. |
| 〃 | 崔在珉 | 2015.02.25. |
| 〃 | 徐奉何 | 2015.02.25. |
| 〃 | 車淳吉 | 2015.02.25. |
| 〃 | 朴賢哲 | 2014.08.29. |
| 〃 | 姜成龍 | 2015.02.25. |
| 〃 | 崔智錫 | 2014.02.05. |
| 〃 | 具承模 | 2014.08.29. |
| 〃 | 任乘徹 | 2014.02.05. |
| 〃 | 洪容浚 | 2015.02.25. |
| 〃 | 陳賢一 | 2014.02.05. |
| 〃 | 李蔓欽 | 2014.02.05. |
| 〃 | 河東雨 | 2015.02.25. |
| 〃 | 林一秀 | 2015.02.25. |
| 〃 | 金泫我 | 2015.02.25. |
| 〃 | 姜百信 | 2014.02.05. |
| 〃 | 金敏娥 | 2014.02.05. |
| 〃 | 洪完喜 | 2015.02.25. |
| 〃 | 李晟範 | 2014.02.05. |
| 〃 | 吳起燦 | 2015.02.25. |
| 〃 | 蔡良姬 | 2015.02.25. |
| 〃 | 申承熙 | 2015.02.25. |
| 〃 | 崔淳鎬 | 2015.02.25. |
| 〃 | 柳孝濟 | 2015.02.25. |
| 〃 | 金度燁 | 2014.08.29.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사무국장 | 沈 淳 | 2014.12.04. |
| 운영지원과장 | 梁興守 | 2015.08.31. |
| 집행과장 | 白雲起 | 2015.08.31. |
| 검찰총장실 | 朴泳緖 | 2015.12.02. |
| 수사지원과 | 呂起烈 | 2015.08.31. |
| 디지털수사과 | 金鵬會 | 2015.08.31. |
| 운영지원과 | 李濟童 | 2014.08.04. |
| 관리과장 | 鄭東晋 | 2015.08.31. |
| 검찰연구관실 | 郭明圭 | 2015.02.16. |
| 감찰1과 | 吳萬玉 | 2015.08.31. |
| 감찰2과 | 文炳大 | 2015.08.31. |
| 비상안전담당관 | 柳春烈 | 2012.03.28 |
| 정보통신서기관 | 邊興九 | 2015.02.16. |
| 정보통신서기관 | 高成順 | 2014.02.24. |
| **(서울고등검찰청)** | | |
| 검사장 | 朴性載 | 2015.12.24. |
| 차장검사 | 車京煥 | 2015.12.24. |
| 공판부장 | 崔世勳 | 2015.02.25. |
| 검사 | 鄭現太 | 2014.01.16. |
| 〃 | 白淳鉉 | 2015.02.25. |
| 〃 | 朴埈模 | 2015.03.16. |
| 〃 | 元聖竣 | 2014.01.16. |
| 〃 | 河宗鐵 | 2015.02.25. |
| 〃 | 鄭柄大 | 2014.01.16. |
| 〃 | 宋承燮 | 2014.01.16. |
| 〃 | 皇甫仲 | 2014.01.16. |
| 〃 | 朴民鎬 | 2015.02.25. |
| 〃 | 金鍾律 | 2015.02.25. |
| 〃 | 梁普承 | 2014.01.16. |
| 〃 | 林武永 | 2014.01.16. |
| 〃 | 李義景 | 2014.01.16. |
| 〃 | 朴鍾基 | 2014.07.26. |
| 〃 | 魏聖雲 | 2013.04.23. |
| 〃 | 李鍾大 | 2014.01.16. |
| 〃 | 郭圭洪 | 2014.01.16.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사 | 林采源 | 2014.01.16. |
| 〃 | 金永泰 | 2014.01.16. |
| 〃 | 鄭盛允 | 2014.01.16. |
| 〃 | 李 龍 | 2015.02.25. |
| 〃 | 崔尙燻 | 2015.02.25. |
| 〃 | 李在九 | 2014.01.16. |
| 〃 | 李善勳 | 2015.02.25. |
| 〃 | 李濟官 | 2014.01.16. |
| 〃 | 李光珍 | 2014.01.16. |
| 〃 | 李鎭漢 | 2015.02.25. |
| 〃 | 金泰光 | 2014.01.16. |
| 〃 | 鄭容秀 | 2014.01.16. |
| 〃 | 玉善棋 | 2014.01.16. |
| 〃 | 朴哲完 | 2015.02.25. |
| 〃 | 金鈺釭 | 2015.02.25. |
| 〃 | 李秀澈 | 2014.01.16. |
| 〃 | 李重霽 | 2014.01.16. |
| 〃 | 白種宇 | 2015.02.25. |
| 〃 | 孫峻鎬 | 2015.02.25. |
| 〃 | 李柱壹 | 2015.02.25. |
| 〃 | 朴鎔浩 | 2013.04.23. |
| 〃 | 朴文洙 | 2015.02.25. |
| 〃 | 柳宗完 | 2014.01.16. |
| 〃 | 裵城範 | 2014.08.29. |
| 〃 | 李洸敏 | 2013.04.23. |
| 〃 | 金會宗 | 2014.08.29. |
| 〃 | 李盛潤 | 2015.02.25. |
| 〃 | 金明熙 | 2015.02.25. |
| 〃 | 金載勳 | 2015.02.25. |
| 〃 | 金 薰 | 2015.08.27. |
| 〃 | 金忠瀚 | 2014.01.16. |
| 〃 | 崔容碩 | 2015.02.25. |
| 〃 | 都鎭浩 | 2015.02.25. |
| 〃 | 權敬日 | 2015.02.25. |
| 〃 | 申交任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都尙範 | 2015.02.25. |
| 〃 | 朴官洙 | 2015.02.25. |
| 〃 | 金載滇 | 2015.02.25. |
| 〃 | 鄭弼才 | 2014.01.16. |
| 〃 | 李相奎 | 2014.01.16. |
| 사 무 국 장 | 元容仁 | 2015.08.31. |
| 총 무 과 장 | 尹得營 | 2015.08.31. |
| 사 건 과 장 | 朴天洪 | 2015.08.31. |
| 관 리 과 장 | 姜甲晉 | 2015.08.31. |
| 소송사무제1과장 | 金根模 | 2015.08.31. |
| 소송사무제2과장 | 金正浩 | 2015.08.31.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
| 검 사 장 | 李永烈 | 2015.12.24. |
| 제 1 차 장 검 사 | 盧承權 | 2015.12.24. |
| 형사제1부장검사 | 沈雨廷 | 2015.02.25. |
| 형사제2부장검사 | 梁要安 | 2015.02.25. |
| 형사제3부장검사 | 李喆熙 | 2015.02.25. |
| 형사제4부장검사 | 金官正 | 2015.02.25. |
| 형사제5부장검사 | 全承秀 | 2015.02.25. |
| 형사제6부장검사 | 鄭承冕 | 2015.02.25. |
| 형사제7부장검사 | 朴聖根 | 2015.02.25. |
| 형사제8부장검사 | 李頑植 | 2015.02.25. |
| 조사제1부장검사 | 趙鍾泰 | 2015.02.25. |
| 조사제2부장검사 | 申昊澈 | 2015.02.25. |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 金德吉 | 2015.02.25. |
| 총 무 부 장 검 사 | 崔基植 | 2015.02.25. |
| 공안제1부장검사 | 白宰明 | 2015.02.25. |
| 공안제2부장검사 | 金 信 | 2015.02.25. |
| 공공형사부장검사 | 李文漢 | 2015.02.25. |
| 외 사 부 장 검 사 | 田盛元 | 2015.02.25. |
| 공판제1부장검사 | 李永基 | 2015.02.25. |
| 공판제2부장검사 | 程軫基 | 2015.02.25. |
| 공판제3부장검사 | 高敬順 | 2015.02.25. |
| 특별수사제1부장검사 | 任寬爀 | 2015.02.25. |
| 특별수사제2부장검사 | 曺尙駿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특별수사제3부장검사 | 金錫佑 | 2015.02.25. |
| 특별수사제4부장검사 | 裵鐘赫 | 2014.01.16. |
| 강 력 부 장 검 사 | 沈載哲 | 2015.02.25. |
| 첨단범죄수사제1부장검사 | 李正洙 | 2015.02.25. |
| 첨단범죄수사제2부장검사 | 金榮基 | 2015.02.25. |
|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검사 | 韓東勳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劉一錫 | 2015.02.25. |
| 〃 | 金濬俊 | 2015.02.25. |
| 〃 | 文泓性 | 2015.02.25. |
| ( 부 부 장 ) 검 사 | 朴廣培 | 2014.08.29. |
| 〃 | 金永鉉 | 2014.01.16. |
| 〃 | 安孝禎 | 2014.01.16. |
| 〃 | 李明信 | 2015.02.25. |
| 〃 | 禹南準 | 2015.02.25. |
| 〃 | 金敬祐 | 2015.02.25. |
| 〃 | 崔盛國 | 2015.02.25. |
| 〃 | 金周弼 | 2015.02.25. |
| 〃 | 金仙花 | 2015.02.25. |
| 〃 | 金度亨 | 2015.02.25. |
| 〃 | 申炯湜 | 2015.02.25. |
| 〃 | 金寧基 | 2015.02.25. |
| 〃 | 朴振源 | 2015.02.25. |
| 〃 | 李東洙 | 2015.02.25. |
| 〃 | 張東喆 | 2015.02.25. |
| 〃 | 姜知聲 | 2015.02.25. |
| 〃 | 梁東勳 | 2015.02.25. |
| 〃 | 丘尙燁 | 2015.02.25. |
| 〃 | 金明洙 | 2015.02.25. |
| 〃 | 朴철우 | 2015.02.25. |
| 〃 | 趙勇漢 | 2015.02.25. |
| 〃 | 崔鍾武 | 2015.02.25. |
| 〃 | 權起煥 | 2015.02.25. |
| 〃 | 趙大豪 | 2015.02.25. |
| 〃 | 梁建洙 | 2015.02.25. |
| 〃 | 南相寬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朴勝大 | 2015.02.25. |
| 〃 | 河在郁 | 2015.02.25. |
| 〃 | 朴仁羽 | 2013.02.28. |
| 〃 | 李宣赫 | 2012.02.20. |
| 〃 | 尹中鉉 | 2015.02.25. |
| 〃 | 田武坤 | 2012.02.20. |
| 〃 | 金石潭 | 2015.02.25. |
| 〃 | 姜範求 | 2013.02.28. |
| 〃 | 孫英恩 | 2014.02.05. |
| 〃 | 朴性玟 | 2015.02.25. |
| 〃 | 陳哲珉 | 2013.02.28. |
| 〃 | 金漢祚 | 2015.02.25. |
| 〃 | 徐政湜 | 2013.02.28. |
| 〃 | 高泌亨 | 2014.02.05. |
| 〃 | 朴夏英 | 2012.02.20. |
| 〃 | 金昌珍 | 2014.02.05. |
| 〃 | 許仁碩 | 2015.02.25. |
| 〃 | 張準熙 | 2013.02.28. |
| 〃 | 金祐奭 | 2014.08.29. |
| 〃 | 盧珍英 | 2015.02.25. |
| 〃 | 金星東 | 2013.02.28. |
| 〃 | 姜承熙 | 2014.02.05. |
| 〃 | 鄭景塡 | 2012.02.20. |
| 〃 | 安炳洙 | 2014.02.05. |
| 〃 | 李昌原 | 2014.02.05. |
| 〃 | 崔仁相 | 2013.02.28. |
| 〃 | 成祥旭 | 2013.02.28. |
| 〃 | 曺廣煥 | 2012.02.20. |
| 〃 | 潘宗郁 | 2014.08.29. |
| 〃 | 李義秀 | 2012.02.20. |
| 〃 | 金炯錫 | 2014.02.05. |
| 〃 | 具兌妍 | 2015.02.25. |
| 〃 | 李卜鉉 | 2013.02.28. |
| 〃 | 卞秀良 | 2015.02.25. |
| 〃 | 金香連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宋持鏞 | 2014.02.05. |
| 〃 | 崔榮娥 | 2014.02.05. |
| 〃 | 裵文基 | 2012.02.20. |
| 〃 | 金俊燮 | 2012.02.20. |
| 〃 | 黃宇璡 | 2014.02.05. |
| 〃 | 丁龍煥 | 2014.02.05. |
| 〃 | 李成植 | 2013.08.26. |
| 〃 | 權尙大 | 2015.02.25. |
| 〃 | 李東彦 | 2013.02.28. |
| 〃 | 金潤候 | 2012.02.20. |
| 〃 | 李東源 | 2015.08.27. |
| 〃 | 崔昌玟 | 2015.02.25. |
| 〃 | 柳道潤 | 2010.02.08. |
| 〃 | 金廷憲 | 2012.02.20. |
| 〃 | 金洋燮 | 2015.02.25. |
| 〃 | 吳宰絃 | 2015.02.25. |
| 〃 | 權裕植 | 2012.02.20. |
| 〃 | 趙柱衍 | 2015.02.25. |
| 〃 | 韓眞喜 | 2014.08.29. |
| 〃 | 閔永炫 | 2014.08.29. |
| 〃 | 金京槿 | 2013.02.28. |
| 〃 | 李光石 | 2012.02.20. |
| 〃 | 金承彦 | 2013.02.28. |
| 〃 | 崔 赫 | 2012.07.26. |
| 〃 | 李相賢 | 2012.02.20. |
| 〃 | 梁善順 | 2015.08.27. |
| 〃 | 羅旭晋 | 2014.02.05. |
| 〃 | 金政煥 | 2014.08.29. |
| 〃 | 金洛賢 | 2015.02.25. |
| 〃 | 朴奎炯 | 2015.02.25. |
| 〃 | 金鍾佑 | 2015.02.25. |
| 〃 | 張俊浩 | 2015.02.25. |
| 〃 | 崔明奎 | 2013.02.28. |
| 〃 | 李東均 | 2015.02.25. |
| 〃 | 崔倖寬 | 2013.02.28.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車帆濬 | 2015.02.25. |
| 〃 | 郭英煥 | 2012.02.20. |
| 〃 | 閔庚鎬 | 2013.08.26. |
| 〃 | 李 春 | 2012.02.20. |
| 〃 | 李政烈 | 2012.02.20. |
| 〃 | 柳竟弼 | 2015.02.25. |
| 〃 | 兪禎澔 | 2013.02.28. |
| 〃 | 權晛有 | 2013.02.28. |
| 〃 | 辛昇祐 | 2015.02.25. |
| 〃 | 李燦揆 | 2013.02.28. |
| 〃 | 金泳吾 | 2015.02.25. |
| 〃 | 曺旻佑 | 2013.02.28. |
| 〃 | 曺碩奎 | 2013.02.28. |
| 〃 | 鞠相佑 | 2015.02.25. |
| 〃 | 安晟熙 | 2012.07.26. |
| 〃 | 李一揆 | 2013.02.28. |
| 〃 | 李正培 | 2014.02.05. |
| 〃 | 許 準 | 2014.08.29. |
| 〃 | 羅懿燁 | 2015.02.25. |
| 〃 | 金龍植 | 2014.02.05. |
| 〃 | 金炳文 | 2014.02.05. |
| 〃 | 權善英 | 2015.02.25. |
| 〃 | 林吉燮 | 2014.02.05. |
| 〃 | 吳世文 | 2015.02.25. |
| 〃 | 崔在俊 | 2014.02.05. |
| 〃 | 陳昊植 | 2015.02.25. |
| 〃 | 任杉彬 | 2015.02.25. |
| 〃 | 李承勳 | 2014.02.05. |
| 〃 | 金志榮 | 2015.02.25. |
| 〃 | 金泰見 | 2014.02.05. |
| 〃 | 車尙祐 | 2014.02.05. |
| 〃 | 金益洙 | 2015.08.27. |
| 〃 | 張熒洙 | 2014.02.05. |
| 〃 | 李羲燦 | 2013.02.28. |
| 〃 | 秋義晶 | 2014.02.0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李順玉 | 2013.02.28. |
| 〃 | 金秀湲 | 2013.02.28. |
| 〃 | 許 勳 | 2015.02.25. |
| 〃 | 魚寅成 | 2015.02.25. |
| 〃 | 洪龍和 | 2015.02.25. |
| 〃 | 金正局 | 2015.02.25. |
| 〃 | 李林杓 | 2013.02.28. |
| 〃 | 李承學 | 2015.02.25. |
| 〃 | 張永一 | 2013.02.28. |
| 〃 | 李在晩 | 2015.02.25. |
| 〃 | 朴鍾宣 | 2015.02.25. |
| 〃 | 李京植 | 2013.02.28. |
| 〃 | 李豪錫 | 2015.02.25. |
| 〃 | 金正勳 | 2013.02.28. |
| 〃 | 朴建永 | 2015.02.25. |
| 〃 | 李相赫 | 2015.02.25. |
| 〃 | 林演珍 | 2014.02.05. |
| 〃 | 張眞英 | 2014.02.05. |
| 〃 | 鄭現姓 | 2013.08.26. |
| 〃 | 朴香徹 | 2014.02.05. |
| 〃 | 崔鍾赫 | 2015.02.25. |
| 〃 | 金起昡 | 2015.02.25. |
| 〃 | 沈亨錫 | 2014.02.05. |
| 〃 | 鄭一權 | 2014.02.05. |
| 〃 | 崔在洵 | 2014.02.05. |
| 〃 | 張大圭 | 2014.02.05. |
| 〃 | 李元模 | 2015.08.27. |
| 〃 | 鄭芝泳 | 2014.02.05. |
| 〃 | 張有剛 | 2014.02.05. |
| 〃 | 全秀珍 | 2015.02.25. |
| 〃 | 曺 哲 | 2015.02.25. |
| 〃 | 秋昌賢 | 2015.02.25. |
| 〃 | 金容帝 | 2015.02.25. |
| 〃 | 李東根 | 2015.02.25. |
| 〃 | 金柱錫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鄭宇俊 | 2015.02.25. |
| 〃 | 金錫君 | 2015.02.25. |
| 〃 | 辛相祐 | 2015.02.25. |
| 〃 | 趙常圭 | 2015.02.25. |
| 〃 | 李周炫 | 2015.02.25. |
| 〃 | 張麗美 | 2015.02.25. |
| 〃 | 尹孝善 | 2015.02.25. |
| 〃 | 洪熙英 | 2015.02.25. |
| 〃 | 鄭潤式 | 2014.04.01. |
| 〃 | 李康宇 | 2014.04.01. |
| 〃 | 鄭鍾元 | 2015.04.01. |
| 〃 | 鄭盛斗 | 2015.04.01. |
| 〃 | 權槿歡 | 2014.02.05. |
| 〃 | 蔡弼圭 | 2014.02.05. |
| 〃 | 趙慧昉 | 2014.02.05. |
| 〃 | 金常範 | 2014.02.05. |
| 〃 | 愼芝媛 | 2014.02.05. |
| 〃 | 丁鍾憲 | 2015.02.25. |
| 〃 | 河知秀 | 2015.02.25. |
| 〃 | 黃海哲 | 2015.02.25. |
| 〃 | 金秀炫 | 2015.02.25. |
| 〃 | 宋昌珍 | 2014.08.29. |
| 〃 | 韓宗武 | 2015.02.25. |
| 사 무 국 장 | 李在哲 | 2015.02.16 |
| 총 무 과 장 | 李聖範 | 2015.08.31. |
| 사 건 과 장 | 金成洙 | 2015.08.31. |
| 집 행 제 1 과 장 | 宋兌源 | 2014.08.04. |
| 집 행 제 2 과 장 | 文炫喆 | 2015.02.16. |
| 피해자지원과장 | 咸泳輝 | 2015.08.31. |
| 수 사 제 1 과 장 | 權寧俊 | 2015.08.31. |
| 범 죄 정 보 과 장 | 朴元赫 | 2015.08.31. |
| 수 사 제 2 과 장 | 尹振雄 | 2015.02.16. |
| 조 사 과 장 | 梁又德 | 2015.08.31. |
| 조직범죄수사과장 | 裵敬煥 | 2015.02.16. |
| 마 약 수 사 과 장 | 郭大奎 | 2015.02.16.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공 판 과 장 | 李院炯 | 2014.08.04 |
| 검 사 직 무 대 리 | 金鍾一 | 2015.02.16. |
| 〃 | 李恩相 | 2013.07.29 |
| 〃 | 朴在云 | 2015.08.31. |
| 〃 | 李云淵 | 2015.08.31.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 |
| 검 사 장 | 奉 旭 | 2015.12.24. |
| 차 장 검 사 | 李起錫 | 2015.02.25. |
| 형사제1부장검사 | 權純範 | 2015.02.25. |
| 형사제2부장검사 | 安美英 | 2015.02.25. |
| 형사제3부장검사 | 李泰承 | 2015.02.25. |
| 형사제4부장검사 | 李相億 | 2015.02.25. |
| 형사제5부장검사 | 張鳳文 | 2015.02.25. |
| 형사제6부장검사 | 朴世鉉 | 2015.02.25. |
| 공 판 부 장 검 사 | 李奉昶 | 2015.02.25. |
| ( 부 부 장 ) 검 사 | 金潤燮 | 2015.02.25. |
| 〃 | 朴起東 | 2015.02.25. |
| 〃 | 黃金千 | 2010.02.08. |
| 〃 | 金廷勳 | 2015.02.25. |
| 〃 | 孔鳳娕 | 2015.02.25. |
| 〃 | 崔源錫 | 2015.02.25. |
| 〃 | 文炫喆 | 2012.02.20. |
| 〃 | 李周泳 | 2014.02.05. |
| 〃 | 黃正賢 | 2010.02.08. |
| 〃 | 鄭太元 | 2015.02.25. |
| 〃 | 金南勳 | 2014.08.29. |
| 〃 | 權邦文 | 2015.02.25. |
| 〃 | 魏秀鉉 | 2015.02.25. |
| 〃 | 金基龍 | 2015.02.25. |
| 〃 | 權那元 | 2014.02.05. |
| 〃 | 朴城民 | 2014.02.05. |
| 〃 | 金尙均 | 2014.02.05. |
| 〃 | 朴惠蘭 | 2014.02.05. |
| 〃 | 吳美鏡 | 2014.02.05. |
| 〃 | 安昶柱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崔芝賢 | 2014.02.05. |
| 〃 | 李尙勳 | 2014.02.05. |
| 〃 | 李鮮和 | 2013.02.28. |
| 〃 | 金炯傑 | 2014.02.05. |
| 〃 | 金智淑 | 2014.02.05. |
| 〃 | 金仁淑 | 2015.02.25. |
| 〃 | 洪尙徹 | 2015.02.25. |
| 〃 | 李世元 | 2015.02.25. |
| 〃 | 金榮伸 | 2013.02.28. |
| 〃 | 韓康一 | 2014.02.05. |
| 〃 | 孫雅智 | 2014.02.05. |
| 〃 | 金珉庭 | 2015.02.25. |
| 〃 | 安在昱 | 2015.02.25. |
| 〃 | 陳鍾圭 | 2014.04.01. |
| 〃 | 申憲燮 | 2014.04.01. |
| 〃 | 車東鎬 | 2015.04.01. |
| 〃 | 陳세언 | 2015.04.01. |
| 〃 | 李俊錫 | 2014.02.05. |
| 〃 | 崔甲鎭 | 2014.02.05. |
| 〃 | 吳燃澤 | 2014.02.05. |
| 〃 | 金書永 | 2014.02.05. |
| 〃 | 梁在憲 | 2015.02.25. |
| 〃 | 金必守 | 2015.02.25. |
| 〃 | 申珠稀 | 2015.02.25. |
| 〃 | 金旼姬 | 2015.02.25. |
| 사 무 국 장 | 金鎭宇 | 2015.08.31 |
| 총 무 과 장 | 張柄仁 | 2015.02.16 |
| 사 건 과 장 | 金晶奉 | 2014.08.04 |
| 집 행 과 장 | 崔完植 | 2015.08.31 |
| 공 판 과 장 | 曺宇鉉 | 2015.08.31 |
| 조 사 과 장 | 權泰均 | 2015.02.16 |
| 수 사 과 장 | 李連盛 | 2015.08.31 |
| 검사직무대리 | 趙東奎 | 2014.02.24 |
| 〃 | 金度錫 | 2015.08.31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 |
| 검 사 장 | 金鎭模 | 2015.12.24. |
| 제 1 차 장 검 사 | 李明淳 | 2015.02.25. |
| 제 2 차 장 검 사 | 文燦晳 | 2015.02.25. |
| 형사제1부장검사 | 崔聖男 | 2015.08.27. |
| 형사제2부장검사 | 高敏碩 | 2015.02.25. |
| 형사제3부장검사 | 李魯公 | 2015.02.25. |
| 형사제4부장검사 | 趙鎬敬 | 2015.02.25. |
| 공 판 부 장 검 사 | 金春洙 | 2015.02.25. |
| 형사제5부장검사 | 崔誠桓 | 2015.02.25. |
| 형사제6부장검사 | 宋 岡 | 2015.02.25. |
| 금융조사제1부장검사 | 朴璨浩 | 2015.02.25. |
| 금융조사제2부장검사 | 李進東 | 2015.02.25. |
| ( 부 부 장 ) 검 사 | 李炳錫 | 2015.02.25. |
| 〃 | 金京秀 | 2015.02.25. |
| 〃 | 吳政姬 | 2015.02.25. |
| 〃 | 韓允卿 | 2015.02.25. |
| 〃 | 卞弼建 | 2015.02.25. |
| 〃 | 鄭熙道 | 2015.02.25. |
| 〃 | 趙相元 | 2015.02.25. |
| 〃 | 李宗珉 | 2014.02.05. |
| 〃 | 裵盛訓 | 2011.02.14. |
| 〃 | 金 愚 | 2015.02.25. |
| 〃 | 姜錫喆 | 2013.02.28. |
| 〃 | 秋慧胤 | 2014.02.05. |
| 〃 | 李俊範 | 2014.08.29. |
| 〃 | 李靜雨 | 2013.02.28. |
| 〃 | 孫儹旿 | 2014.02.05. |
| 〃 | 河信旭 | 2015.02.25. |
| 〃 | 朴炫奎 | 2014.02.05. |
| 〃 | 曺娥羅 | 2015.08.27. |
| 〃 | 兪沃根 | 2014.02.05. |
| 〃 | 張在完 | 2014.02.05. |
| 〃 | 趙庸祐 | 2015.02.25. |
| 〃 | 朴起完 | 2014.02.0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崔善瓊 | 2014.02.05. |
| 〃 | 曺英姬 | 2014.02.05. |
| 〃 | 金志讌 | 2015.02.25. |
| 〃 | 安匡鉉 | 2014.02.05. |
| 〃 | 李先女 | 2015.02.25. |
| 〃 | 李晉鏞 | 2015.02.25. |
| 〃 | 金昌熙 | 2013.02.28. |
| 〃 | 崔熙貞 | 2015.02.25. |
| 〃 | 張仁鎬 | 2015.02.25. |
| 〃 | 文智碩 | 2015.02.25. |
| 〃 | 孫恩英 | 2015.02.25. |
| 〃 | 金姬英 | 2014.02.05. |
| 〃 | 申基煉 | 2014.02.05. |
| 〃 | 金民九 | 2014.02.05. |
| 〃 | 朴지나 | 2014.02.05. |
| 〃 | 車敬子 | 2015.02.25. |
| 〃 | 許允僖 | 2015.02.25. |
| 〃 | 方俊盛 | 2015.02.25. |
| 〃 | 徐民錫 | 2015.02.25. |
| 〃 | 禹萬祐 | 2015.02.25. |
| 〃 | 朴恩禎 | 2014.02.05. |
| 〃 | 崔修銀 | 2015.02.25. |
| 〃 | 李炅珉 | 2015.02.25. |
| 〃 | 高아라 | 2015.02.25. |
| 〃 | 千載仁 | 2014.02.05. |
| 〃 | 李惠現 | 2014.02.05. |
| 〃 | 黃晟雅 | 2014.02.05. |
| 〃 | 許廷銀 | 2015.02.25. |
| 〃 | 金有那 | 2014.08.29. |
| 〃 | 權英周 | 2015.02.25. |
| 〃 | 李受眞 | 2015.02.25. |
| 〃 | 石洙旼 | 2014.04.01. |
| 〃 | 朴宰勳 | 2014.04.01. |
| 〃 | 金弘英 | 2015.04.01. |
| 〃 | 趙顯雄 | 2015.04.01.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柳柱賢 | 2014.02.05. |
| 〃 | 徐아람 | 2014.02.05. |
| 〃 | 李信愛 | 2014.02.05. |
| 〃 | 姜秀熹 | 2014.02.05. |
| 〃 | 朴芝演 | 2015.02.25. |
| 〃 | 朴珉勁 | 2015.02.25. |
| 〃 | 徐東寅 | 2015.02.25. |
| 〃 | 金衍守 | 2015.02.25. |
| 〃 | 金鍾弦 | 2014.08.29. |
| 〃 | 姜炅來 | 2015.02.25. |
| 사무국장 | 田溶學 | 2014.08.04. |
| 총무과장 | 金承賢 | 2015.02.16. |
| 사건과장 | 趙顯哲 | 2015.08.31. |
| 집행과장 | 金仁石 | 2015.02.16 |
| 조사과장 | 張文燦 | 2015.08.31. |
| 수사과장 | 李吉載 | 2015.08.31 |
| 공판과장 | 趙禾翼 | 2015.02.16 |
| 검사직무대리 | 宋羽燮 | 2015.08.31 |
| 〃 | 李 憲 | 2013.07.29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 |
| 검사장 | 金洫洙 | 2015.12.24. |
| 차장검사 | 李完揆 | 2015.02.25. |
| 형사제1부장검사 | 尹載弼 | 2015.02.25. |
| 형사제2부장검사 | 金容正 | 2015.02.25. |
| 형사제3부장검사 | 金淵坤 | 2015.02.25. |
| 형사제4부장검사 | 金英翼 | 2015.02.25. |
| 형사제5부장검사 | 孫榮培 | 2015.02.25. |
| 형사제6부장검사 | 趙在彬 | 2015.02.25. |
| 공판부장검사 | 崔憲滿 | 2015.02.25. |
| (부부장)검사 | 申鉉成 | 2013.04.23. |
| 〃 | 朴光燮 | 2015.02.25. |
| 〃 | 金南順 | 2015.02.25. |
| 〃 | 禹勝倍 | 2015.02.25. |
| 〃 | 權宰煥 | 2015.02.25. |
| 〃 | 張城熏 | 2014.02.0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徐仁善 | 2012.02.20. |
| 〃 | 金希京 | 2013.02.28. |
| 〃 | 朴赫洙 | 2014.02.05. |
| 〃 | 全倫慶 | 2013.02.28. |
| 〃 | 河在武 | 2014.02.05. |
| 〃 | 金奉俊 | 2013.02.28. |
| 〃 | 李相旼 | 2014.08.29. |
| 〃 | 金度延 | 2014.02.05. |
| 〃 | 林藝珍 | 2014.02.05. |
| 〃 | 愼金宰 | 2014.02.05. |
| 〃 | 申元容 | 2014.02.05. |
| 〃 | 崔在雅 | 2014.08.25. |
| 〃 | 鞠 元 | 2015.02.25. |
| 〃 | 金尙俊 | 2013.02.28. |
| 〃 | 千大元 | 2015.02.25. |
| 〃 | 朴順愛 | 2015.02.25. |
| 〃 | 李珠熙 | 2014.02.05. |
| 〃 | 金明玉 | 2013.02.28. |
| 〃 | 金宰成 | 2014.02.05. |
| 〃 | 文夏卿 | 2014.02.05. |
| 〃 | 李承姬 | 2014.02.05. |
| 〃 | 郭桂姈 | 2015.02.25. |
| 〃 | 裵相玧 | 2015.02.25. |
| 〃 | 李智娟 | 2012.02.20. |
| 〃 | 金다래 | 2013.02.28. |
| 〃 | 李志英 | 2015.02.25. |
| 〃 | 李慈璟 | 2014.02.05. |
| 〃 | 朴賢圭 | 2014.02.05. |
| 〃 | 崔荷淵 | 2014.02.05. |
| 〃 | 姜賢貞 | 2014.02.05. |
| 〃 | 黃寶永 | 2015.02.25. |
| 〃 | 金英植 | 2014.04.01. |
| 〃 | 尹晟鎬 | 2014.04.01. |
| 〃 | 申丙宇 | 2015.04.01. |
| 〃 | 吳昇煥 | 2015.04.01.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洪銅基 | 2014.02.05. |
| 〃 | 鄭素英 | 2014.02.05. |
| 〃 | 金荷英 | 2014.02.05. |
| 〃 | 李政奎 | 2014.02.05. |
| 〃 | 安寅秀 | 2015.02.25. |
| 〃 | 安和妍 | 2015.02.25. |
| 〃 | 安希卿 | 2015.02.25. |
| 〃 | 權珉廷 | 2015.02.25. |
| 사무국장(代) | 李洪龍 | 2015.12.29 |
| 총무과장 | 李洪龍 | 2015.08.31 |
| 사건과장 | 高錫鎭 | 2014.08.04 |
| 집행과장 | 奇性鎬 | 2015.08.31 |
| 조사과장 | 朴舜雨 | 2014.08.04 |
| 공판과장 | 崔先奎 | 2015.08.31 |
| 검사직무대리 | 朴相樂 | 2015.01.20 |
| 〃 | 吳宗熙 | 2015.08.31 |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 |
| 검사장 | 孔相勳 | 2015.12.24. |
| 차장검사 | 李興洛 | 2015.02.25. |
| 형사제1부장검사 | 金炳求 | 2015.02.25. |
| 형사제2부장검사 | 魯禎妍 | 2015.02.25. |
| 형사제3부장검사 | 李基宣 | 2015.02.25. |
| 형사제4부장검사 | 鄭淳信 | 2015.02.25. |
| 형사제5부장검사 | 孫準晟 | 2015.02.25. |
| 공판부장검사 | 宋然奎 | 2015.02.25. |
| 식품의약조사부장검사 | 李喆熙 | 2015.02.25. |
| (부부장)검사 | 金呟采 | 2014.01.16. |
| 〃 | 李鍾赫 | 2015.02.25. |
| 〃 | 李知玧 | 2015.02.25. |
| 〃 | 李相吉 | 2015.02.25. |
| 〃 | 金恩心 | 2015.02.25. |
| 〃 | 張潤台 | 2015.08.27. |
| 〃 | 朴柱誠 | 2015.02.25. |
| 〃 | 朴庭儀 | 2014.02.05. |
| 〃 | 趙映贊 | 2014.02.0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孫正賢 | 2014.02.05. |
| 〃 | 權純基 | 2015.02.25. |
| 〃 | 申秉宰 | 2015.02.25. |
| 〃 | 金載南 | 2014.02.05. |
| 〃 | 崔美和 | 2015.02.25. |
| 〃 | 李壽天 | 2015.02.25. |
| 〃 | 鄭熙선 | 2015.08.27. |
| 〃 | 蘇昶範 | 2014.02.05. |
| 〃 | 趙允鐵 | 2015.02.25. |
| 〃 | 李裕賢 | 2013.02.28. |
| 〃 | 李圭原 | 2015.02.25. |
| 〃 | 裵哲晟 | 2015.02.25. |
| 〃 | 吳善姬 | 2015.02.25. |
| 〃 | 張旭桓 | 2014.02.05. |
| 〃 | 韓演奎 | 2014.02.05. |
| 〃 | 崔惠璟 | 2014.02.05. |
| 〃 | 洪貞蓮 | 2015.02.25. |
| 〃 | 李周玹 | 2015.08.27. |
| 〃 | 宋寅豪 | 2015.02.25. |
| 〃 | 金恩正 | 2013.02.28. |
| 〃 | 黃善玉 | 2015.02.25. |
| 〃 | 金玟貞 | 2014.02.05. |
| 〃 | 宣賢淑 | 2014.02.05. |
| 〃 | 黃那英 | 2014.02.05. |
| 〃 | 金炫秀 | 2015.02.25. |
| 〃 | 禹玉英 | 2015.02.25. |
| 〃 | 金해밝은 | 2014.04.01. |
| 〃 | 李周珩 | 2015.04.01. |
| 〃 | 沈彊賢 | 2014.02.05. |
| 〃 | 金珉我 | 2014.02.05. |
| 〃 | 崔혜允 | 2014.02.05. |
| 〃 | 文淑英 | 2014.02.05. |
| 〃 | 朴貞宣 | 2015.02.25. |
| 〃 | 金夏英 | 2015.02.25. |
| 〃 | 吳興植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任丁彬 | 2015.02.25. |
| 사 무 국 장 | 辛俊昊 | 2015.08.31 |
| 총 무 과 장 ( 代 ) | 金榮一 | 2015.12.31 |
| 사 건 과 장 ( 代 ) | 孫東燮 | 2015.12.31 |
| 집 행 과 장 | 李得秀 | 2015.08.31 |
| 조 사 과 장 | 李圭錫 | 2015.02.16 |
| 수 사 과 장 | 金榮一 | 2015.02.16 |
| 공 판 과 장 | 孫東燮 | 2015.08.31 |
| **(의정부지방검찰청)** | | |
| 검 사 장 | 趙嬉珍 | 2015.12.24. |
| 차 장 검 사 | 金暎鐘 | 2015.02.25. |
| 형사제1부장검사 | 金泰喆 | 2015.02.25. |
| 형사제2부장검사 | 柳 赫 | 2015.02.25. |
| 형사제3부장검사 | 朴錫宰 | 2015.02.25. |
| 형사제4부장검사 | 崔昌鎬 | 2015.02.25. |
| 형사제5부장검사 | 權純汀 | 2015.02.25. |
| 공 안 부 장 검 사 | 李榮載 | 2015.02.25. |
| 공판송무부장검사 | 金孝鵬 | 2015.02.25. |
| ( 부 부 장 ) 검 사 | 金明石 | 2015.02.25. |
| 〃 | 朴賢濬 | 2015.02.25. |
| 〃 | 李星一 | 2013.02.28. |
| 〃 | 金鳳鉉 | 2015.02.25. |
| 〃 | 鄭光壹 | 2014.02.05. |
| 〃 | 金鍾徹 | 2015.02.25. |
| 〃 | 林恩貞 | 2015.02.25. |
| 〃 | 蔡洙亮 | 2014.02.05. |
| 〃 | 李喜東 | 2013.02.28. |
| 〃 | 林歲虎 | 2012.02.20. |
| 〃 | 李坤炯 | 2015.02.25. |
| 〃 | 高鎭源 | 2014.08.29. |
| 〃 | 金恩美 | 2015.02.25. |
| 〃 | 金皓駿 | 2014.02.05. |
| 〃 | 李東原 | 2014.02.05. |
| 〃 | 朴慧永 | 2015.02.25. |
| 〃 | 曺喜英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崔宇均 | 2014.02.05. |
| 〃 | 趙容珝 | 2014.02.05. |
| 〃 | 金成苑 | 2013.02.28. |
| 〃 | 許志勳 | 2014.02.05. |
| 〃 | 申載弘 | 2015.02.25. |
| 〃 | 李相睦 | 2014.02.05. |
| 〃 | 吳昔炫 | 2015.08.27. |
| 〃 | 任斗煥 | 2014.02.05. |
| 〃 | 禹成榮 | 2014.02.05. |
| 〃 | 李泰協 | 2015.08.27. |
| 〃 | 金虎庚 | 2014.02.05. |
| 〃 | 張世眞 | 2015.02.25. |
| 〃 | 李大憲 | 2015.02.25. |
| 〃 | 全世貞 | 2015.02.25. |
| 〃 | 金孝珍 | 2015.02.25. |
| 〃 | 金美志 | 2014.02.05. |
| 〃 | 李惠美 | 2015.02.25. |
| 〃 | 金鎣疋 | 2014.02.05. |
| 〃 | 張阿糧 | 2014.02.05. |
| 〃 | 金泰希 | 2015.02.25. |
| 〃 | 咸載元 | 2014.04.01. |
| 〃 | 柳濟民 | 2014.04.01. |
| 〃 | 金祐中 | 2015.04.01. |
| 〃 | 鄭正和 | 2014.08.29. |
| 〃 | 梁貴浩 | 2014.02.05. |
| 〃 | 沈基乎 | 2014.02.05. |
| 〃 | 趙智賢 | 2014.02.05. |
| 〃 | 具宰演 | 2015.02.25. |
| 〃 | 金娟熙 | 2015.02.25. |
| 〃 | 呂才英 | 2015.02.25. |
| 사 무 국 장 | 申淳求 | 2015.08.31. |
| 총 무 과 장 | 金龍雲 | 2015.08.31. |
| 사 건 과 장 | 金平煥 | 2015.01.01. |
| 집 행 과 장 | 鄭永德 | 2015.08.31. |
| 수 사 과 장 | 金取冠 | 2015.08.31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공 판 송 무 과 장 | 李暻求 | 2014.08.04. |
| **( 고 양 지 청 )** | | |
| 차 장 검 사 | 金漢洙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李鍾具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鄭圭永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柳政元 | 2015.02.25. |
| ( 부 부 장 ) 검 사 | 李炳昊 | 2015.02.25. |
| 〃 | 黃聖然 | 2015.02.25. |
| 〃 | 金世漢 | 2015.02.25. |
| 〃 | 尹大永 | 2014.02.05. |
| 〃 | 李曈憲 | 2011.02.14. |
| 〃 | 金帝星 | 2015.02.25. |
| 〃 | 許修眞 | 2014.02.05. |
| 〃 | 鄭普泳 | 2014.02.05. |
| 〃 | 金相玟 | 2015.02.25. |
| 〃 | 金海中 | 2015.02.25. |
| 〃 | 趙은수 | 2015.02.25. |
| 〃 | 柳朱泰 | 2014.02.05. |
| 〃 | 朴健榮 | 2015.02.25. |
| 〃 | 宋昳侹 | 2014.02.05. |
| 〃 | 李大成 | 2015.02.25. |
| 〃 | 李正浩 | 2015.02.25. |
| 〃 | 崔倫炅 | 2015.02.25. |
| 〃 | 崔根榮 | 2013.02.28. |
| 〃 | 金圓進 | 2012.02.20. |
| 〃 | 金志殷 | 2011.02.14. |
| 〃 | 黃景媛 | 2015.02.25. |
| 〃 | 高銀實 | 2015.02.25. |
| 〃 | 朴芝英 | 2015.02.25. |
| 〃 | 楊鎭善 | 2015.02.25. |
| 〃 | 李周炫 | 2014.04.01. |
| 〃 | 金恩慧 | 2014.02.05. |
| 〃 | 趙範鎭 | 2015.04.01. |
| 〃 | 孫娅我 | 2015.02.25. |
| 〃 | 李善美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廉浩暎 | 2014.02.05. |
| 〃 | 文智圓 | 2014.02.05. |
| 〃 | 朴玟志 | 2014.02.05. |
| 〃 | 朴振德 | 2015.02.25. |
| 〃 | 李안나 | 2015.02.25. |
| 사무국장 | 李海根 | 2015.08.31 |
| 총무과장 | 崔大鎭 | 2015.08.31 |
| 사건과장 | 徐相國 | 2015.02.16 |
| 집행과장 | 申廣燮 | 2015.04.20 |
| 수사과장 | 金夢哲 | 2015.02.16 |
| **(인천지방검찰청)** | | |
| 검사장 | 李今魯 | 2015.12.24. |
| 제1차장검사 | 安秉翼 | 2015.02.25. |
| 제2차장검사 | 金翰秀 | 2015.02.25. |
| 형사제1부장검사 | 李成熙 | 2015.02.25. |
| 형사제2부장검사 | 鄭智泳 | 2015.02.25. |
| 형사제3부장검사 | 朴勝煥 | 2015.02.25. |
| 형사제4부장검사 | 崔永云 | 2015.02.25. |
| 형사제5부장검사 | 朴興俊 | 2015.02.25. |
| 공판송무부장검사 | 權珖鉉 | 2015.02.25. |
| 공안부장검사 | 崔盛弼 | 2015.02.25. |
| 특별수사부장검사 | 邊哲亨 | 2015.02.25. |
| 강력부장검사 | 李炯官 | 2015.02.25. |
| 외사부장검사 | 崔容熹 | 2015.02.25. |
| 부장검사 | 李承永 | 2015.02.25. |
| 부장검사 | 吳廷敦 | 2015.02.25. |
| (부부장)검사 | 崔仁鎬 | 2014.07.21. |
| 〃 | 申明浩 | 2015.02.25. |
| 〃 | 金榮俊 | 2014.01.16. |
| 〃 | 申乘浩 | 2015.01.06. |
| 〃 | 金鍾五 | 2015.02.25. |
| 〃 | 李鎭鎬 | 2015.02.25. |
| 〃 | 李濟榮 | 2015.02.25. |
| 〃 | 金龍奎 | 2015.02.25. |
| 〃 | 金炯錄 | 2012.02.20.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李太日 | 2014.02.05. |
| 〃 | 李宗燦 | 2013.02.28. |
| 〃 | 朴柱鉉 | 2015.02.25. |
| 〃 | 李映準 | 2015.02.25. |
| 〃 | 鄭宇植 | 2013.02.28. |
| 〃 | 羅昌洙 | 2014.02.05. |
| 〃 | 元姬貞 | 2015.02.25. |
| 〃 | 金楨珍 | 2015.02.25. |
| 〃 | 周慤暾 | 2015.02.25. |
| 〃 | 劉相旼 | 2015.02.25. |
| 〃 | 李英彰 | 2015.02.25. |
| 〃 | 李長雨 | 2014.08.29. |
| 〃 | 孫晉郁 | 2014.02.05. |
| 〃 | 朴建昱 | 2011.02.14. |
| 〃 | 趙萬來 | 2015.02.25. |
| 〃 | 李完熙 | 2015.08.27. |
| 〃 | 金桐熙 | 2015.02.25. |
| 〃 | 金 中 | 2014.02.05. |
| 〃 | 朴成珉 | 2014.02.05. |
| 〃 | 孫尙煜 | 2014.02.05. |
| 〃 | 洪晟準 | 2013.02.28. |
| 〃 | 金亨元 | 2015.02.25. |
| 〃 | 朴美英 | 2011.02.14. |
| 〃 | 鄭赫濬 | 2015.02.25. |
| 〃 | 孫尙希 | 2014.02.05. |
| 〃 | 金泰勳 | 2015.02.25. |
| 〃 | 孫貞淑 | 2014.02.05. |
| 〃 | 奇老星 | 2013.02.28. |
| 〃 | 曺永成 | 2015.02.25. |
| 〃 | 朴鍾善 | 2015.02.25. |
| 〃 | 元鍾寓 | 2014.02.05. |
| 〃 | 徐載殖 | 2014.02.05. |
| 〃 | 金相文 | 2014.02.05. |
| 〃 | 鄭仙帝 | 2014.02.05. |
| 〃 | 金昌燮 | 2014.02.0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宋圭榮 | 2012.02.20. |
| 〃 | 鞠 眞 | 2012.02.20. |
| 〃 | 崔昭延 | 2015.08.27. |
| 〃 | 朴先民 | 2015.02.25. |
| 〃 | 潘 智 | 2012.07.26. |
| 〃 | 房志炯 | 2015.02.25. |
| 〃 | 陳乙宗 | 2014.02.05. |
| 〃 | 李京錫 | 2014.02.05. |
| 〃 | 金成泰 | 2015.02.25. |
| 〃 | 高永河 | 2013.02.28. |
| 〃 | 金韶賢 | 2015.02.25. |
| 〃 | 李奇弘 | 2014.02.05. |
| 〃 | 徐東範 | 2014.02.05. |
| 〃 | 金成勳 | 2014.02.05. |
| 〃 | 金珉呈 | 2014.02.05. |
| 〃 | 鄭効玟 | 2014.02.05. |
| 〃 | 崔允僖 | 2014.02.05. |
| 〃 | 鄭佳媛 | 2014.02.05. |
| 〃 | 金芝蓮 | 2014.02.05. |
| 〃 | 河逸秀 | 2014.02.05. |
| 〃 | 林婠琅 | 2014.02.05. |
| 〃 | 金智恩 | 2014.02.05. |
| 〃 | 金亨燮 | 2015.02.25. |
| 〃 | 任하나 | 2015.02.25. |
| 〃 | 金知慧 | 2015.02.25. |
| 〃 | 朴京花 | 2015.02.25. |
| 〃 | 文定信 | 2015.02.25. |
| 〃 | 高明我 | 2015.02.25. |
| 〃 | 全孝坤 | 2014.04.01. |
| 〃 | 李슬기 | 2014.04.01. |
| 〃 | 尹 景 | 2014.08.29. |
| 〃 | 李定娥 | 2014.02.05. |
| 〃 | 尹基瑄 | 2015.04.01. |
| 〃 | 金智勳 | 2015.04.01. |
| 〃 | 金炅兌 | 2014.08.29.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金亨哲 | 2014.02.05. |
| 〃 | 孫有彬 | 2014.02.05. |
| 〃 | 昔東賢 | 2014.02.05. |
| 〃 | 朴晟玄 | 2014.02.05. |
| 〃 | 元世貞 | 2015.02.25. |
| 〃 | 金炫璟 | 2015.02.25. |
| 〃 | 李東祐 | 2015.02.25. |
| 〃 | 金承美 | 2015.02.25. |
| 사 무 국 장 | 李榮鎬 | 2015.02.16 |
| 총 무 과 장 | 林承照 | 2015.02.16 |
| 사 건 과 장 | 姜龍慶 | 2015.02.16 |
| 집 행 과 장 | 李承哲 | 2015.02.16. |
| 조 사 과 장 | 徐鎭泰 | 2015.08.31. |
| 수 사 과 장 | 朴範濬 | 2015.08.31. |
| 마 약 수 사 과 장 | 崔鎭 | 2015.02.16. |
| 공 판 송 무 과 장 | 朴時重 | 2014.08.04 |
| 검 사 직 무 대 리 | 李仁柱 | 2015.02.16. |
| 〃 | 許喆安 | 2015.08.31. |
| **( 부 천 지 청 )** | | |
| 지 청 장 | 金昌熙 | 2015.02.25. |
| 차 장 검 사 | 金賢哲 | 2015.08.27. |
| 부 장 검 사 | 李宗煥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朴榮洙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朴鍾根 | 2015.02.25. |
| ( 부 부 장 ) 검 사 | 李昶薑 | 2015.02.25. |
| 〃 | 金成勳 | 2015.02.25. |
| 〃 | 孔太究 | 2015.02.25. |
| 〃 | 金載夏 | 2013.02.28. |
| 〃 | 丁光洙 | 2015.02.25. |
| 〃 | 趙祉殷 | 2015.02.25. |
| 〃 | 許誠桓 | 2014.02.05. |
| 〃 | 朴志容 | 2014.02.05. |
| 〃 | 金銀河 | 2013.02.28. |
| 〃 | 韓尙勳 | 2015.02.25. |
| 〃 | 姜貞英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黃盛玟 | 2014.02.05. |
| 〃 | 韓智嫮 | 2015.02.25. |
| 〃 | 徐民珠 | 2015.02.25. |
| 〃 | 段瀞麗 | 2015.02.25. |
| 〃 | 劉知姸 | 2013.02.28. |
| 〃 | 申賢萬 | 2014.02.05. |
| 〃 | 金姸姝 | 2015.02.25. |
| 〃 | 朴採願 | 2014.02.05. |
| 〃 | 趙正福 | 2014.02.05. |
| 〃 | 金智娟 | 2015.02.25. |
| 〃 | 李弦錫 | 2014.04.01. |
| 〃 | 崔한얼 | 2014.08.29. |
| 〃 | 辛芝那 | 2014.02.05. |
| 〃 | 金한울 | 2015.04.01. |
| 〃 | 許世珍 | 2013.02.28. |
| 〃 | 李京雅 | 2014.02.05. |
| 〃 | 崔準桓 | 2014.02.05. |
| 〃 | 朴예珠 | 2014.02.05. |
| 〃 | 金正善 | 2015.02.25. |
| 〃 | 曺在熤 | 2015.02.25. |
| 사 무 국 장 | 卜斗奎 | 2015.08.31 |
| 총 무 과 장 | 林承哲 | 2015.08.31 |
| 사 건 과 장 | 金東浩 | 2015.08.31 |
| 집 행 과 장 | 具應書 | 2015.08.31 |
| 수 사 과 장 | 鄭燦勳 | 2015.08.31 |
| **(수원지방검찰청)** | | |
| 검 사 장 | 申裕澈 | 2015.12.24. |
| 제 2 차 장 검 사 | 李廷會 | 2015.02.25. |
| 형사제1부장검사 | 崔瓊奎 | 2015.02.25. |
| 형사제2부장검사 | 林龍奎 | 2015.02.25. |
| 형사제3부장검사 | 盧正煥 | 2015.02.25. |
| 형사제4부장검사 | 金鍾範 | 2015.02.25. |
| 공판송무부장검사 | 朴昭瑛 | 2015.02.25. |
| 공 안 부 장 검 사 | 朴宰輝 | 2015.02.25. |
| 특별수사부장검사 | 李龍一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강 력 부 장 검 사 | 金賢洙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白欑河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魏在千 | 2015.02.25. |
| ( 부 부 장 ) 검 사 | 金炯吉 | 2015.02.25. |
| 〃 | 李秀權 | 2013.04.23. |
| 〃 | 魏聖國 | 2013.08.06. |
| 〃 | 朴吉培 | 2015.02.25. |
| 〃 | 朴恩貞 | 2014.01.16. |
| 〃 | 金志姸 | 2015.02.25. |
| 〃 | 姜壽山那 | 2015.02.25. |
| 〃 | 金炯秀 | 2015.02.25. |
| 〃 | 安喜俊 | 2015.02.25. |
| 〃 | 全陽碩 | 2015.02.25. |
| 〃 | 鄭孝三 | 2015.02.25. |
| 〃 | 李殷彊 | 2015.02.25. |
| 〃 | 朴泠鎭 | 2013.02.28. |
| 〃 | 洪甫佳 | 2014.02.05. |
| 〃 | 千奇弘 | 2012.02.20. |
| 〃 | 金溟雲 | 2013.02.28. |
| 〃 | 任大赫 | 2014.02.05. |
| 〃 | 尹炳竣 | 2014.08.29. |
| 〃 | 元智愛 | 2015.02.25. |
| 〃 | 朴師儀 | 2014.02.05. |
| 〃 | 梁東偶 | 2015.02.25. |
| 〃 | 金秀桓 | 2014.02.05. |
| 〃 | 柳光烈 | 2015.08.27. |
| 〃 | 鄭永洙 | 2013.02.28. |
| 〃 | 鄭源斗 | 2015.02.25. |
| 〃 | 林有慶 | 2015.02.25. |
| 〃 | 黃賢娥 | 2015.02.25. |
| 〃 | 閔丙權 | 2014.02.05. |
| 〃 | 李俊昊 | 2015.02.25. |
| 〃 | 朴晢鏞 | 2014.02.05. |
| 〃 | 鄭有利 | 2014.08.29. |
| 〃 | 鄭 玹 | 2015.08.27.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洪承杓 | 2013.02.28. |
| 〃 | 張峻豪 | 2015.02.25. |
| 〃 | 金周昡 | 2013.02.28. |
| 〃 | 龍泰昊 | 2015.02.25. |
| 〃 | 印 勳 | 2014.02.05. |
| 〃 | 金가람 | 2014.02.05. |
| 〃 | 崔斗憲 | 2012.02.20. |
| 〃 | 金貞華 | 2015.02.25. |
| 〃 | 崔鏞普 | 2014.02.05. |
| 〃 | 朴寅佑 | 2015.02.25. |
| 〃 | 李俊憙 | 2013.02.28. |
| 〃 | 金賢祐 | 2015.02.25. |
| 〃 | 金秀珉 | 2014.02.05. |
| 〃 | 崔慧卿 | 2013.02.28. |
| 〃 | 金希娟 | 2014.02.05. |
| 〃 | 朴培熙 | 2014.02.05. |
| 〃 | 崔相勳 | 2014.02.05. |
| 〃 | 吳相淵 | 2014.02.05. |
| 〃 | 李智恩 | 2014.02.05. |
| 〃 | 金 珍 | 2015.02.25. |
| 〃 | 金東奎 | 2015.02.25. |
| 〃 | 崔麗蓮 | 2015.02.25. |
| 〃 | 洪志睿 | 2015.02.25. |
| 〃 | 姜逸民 | 2015.02.25. |
| 〃 | 李承炫 | 2015.02.25. |
| 〃 | 梁栽榮 | 2015.02.25. |
| 〃 | 田惠賢 | 2015.02.25. |
| 〃 | 文芝妍 | 2015.02.25. |
| 〃 | 金柚奈 | 2015.02.25. |
| 〃 | 李榮振 | 2014.04.01. |
| 〃 | 申玲敏 | 2014.04.01. |
| 〃 | 崔正民 | 2015.02.25. |
| 〃 | 李芙蓉 | 2014.02.05. |
| 〃 | 金榮敏 | 2015.04.01. |
| 〃 | 李鍾元 | 2015.04.01.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安世濬 | 2014.08.29. |
| 〃 | 崔珉俊 | 2014.02.05. |
| 〃 | 金슬아 | 2014.02.05. |
| 〃 | 崔榮俊 | 2014.02.05. |
| 〃 | 宋成光 | 2014.02.05. |
| 〃 | 高建永 | 2015.02.25. |
| 〃 | 鄭다은 | 2015.02.25. |
| 〃 | 羅彗允 | 2015.02.25. |
| 사 무 국 장 | 劉承俊 | 2015.08.31. |
| 총 무 과 장 | 韓生一 | 2015.02.16. |
| 사 건 과 장 | 金吉成 | 2015.08.31. |
| 집 행 과 장 | 李武中 | 2015.02.16. |
| 조 사 과 장 | 張晶皓 | 2014.08.04 |
| 수 사 과 장 | 金在燮 | 2015.02.16. |
| 검사직무대리 | 李康允 | 2014.02.24 |
| 〃 | 文福男 | 2015.08.31. |
| 〃 | 元鐘植 | 2015.08.31. |
| **(성남지청)** | | |
| 차장검사 | 李炯澤 | 2015.02.25. |
| 부장검사 | 尹重棋 | 2015.02.25. |
| 부장검사 | 徐鍾赫 | 2015.02.25. |
| 부장검사 | 金玉煥 | 2015.02.25. |
| (부부장)검사 | 朴億洙 | 2014.01.16. |
| 〃 | 徐正植 | 2015.02.25. |
| 〃 | 李世珍 | 2015.08.27. |
| 〃 | 元炯文 | 2014.02.05. |
| 〃 | 申太勳 | 2015.02.25. |
| 〃 | 吳宗烈 | 2012.02.20. |
| 〃 | 林仙和 | 2015.02.25. |
| 〃 | 朴貞暖 | 2015.02.25. |
| 〃 | 朴鍾敏 | 2014.02.05. |
| 〃 | 徐榮培 | 2015.02.25. |
| 〃 | 蔡熹滿 | 2014.02.05. |
| 〃 | 鄭迦珍 | 2014.02.05. |
| 〃 | 朴允姬 | 2013.02.28.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姜銀善 | 2014.02.05. |
| 〃 | 權載皓 | 2015.02.25. |
| 〃 | 金金泌 | 2015.02.25. |
| 〃 | 南哲佑 | 2015.02.25. |
| 〃 | 金東律 | 2015.02.25. |
| 〃 | 張송이 | 2014.02.05. |
| 〃 | 崔한나 | 2015.02.25. |
| 〃 | 姜明薰 | 2014.08.29. |
| 〃 | 劉새롬 | 2015.08.27. |
| 〃 | 盧庚垠 | 2015.02.25. |
| 〃 | 吳興世 | 2014.04.01. |
| 〃 | 金俊燁 | 2015.04.01. |
| 〃 | 金惠主 | 2015.02.25. |
| 〃 | 韓銀智 | 2013.02.28. |
| 〃 | 具丞基 | 2015.07.01. |
| 〃 | 安智英 | 2015.02.25. |
| 〃 | 高麗珍 | 2014.02.05. |
| 〃 | 文太權 | 2014.02.05. |
| 〃 | 金秀珉 | 2014.02.05. |
| 〃 | 李字禧 | 2015.02.25. |
| 〃 | 都龍民 | 2015.02.25. |
| 〃 | 高斗成 | 2015.04.21. |
| 사 무 국 장 | 金成植 | 2015.08.31 |
| 총 무 과 장 | 崔炳焄 | 2015.02.16 |
| 사 건 과 장 | 金炳善 | 2015.08.31 |
| 집 행 과 장 | 金惠慶 | 2015.02.16 |
| 수 사 과 장 | 崔東淳 | 2015.02.16 |
| 검사직무대리 | 全孝洙 | 2015.02.16 |
| **( 여 주 지 청 )** | | |
| 지 청 장 | 金石載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鄭淵憲 | 2015.02.25. |
| 검 사 | 丁炫升 | 2015.08.27. |
| 〃 | 申東桓 | 2013.02.28. |
| 〃 | 金한민 | 2014.02.05. |
| 〃 | 兪炳國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朴宰平 | 2014.08.29. |
| 〃 | 權瑟起 | 2014.02.05. |
| 〃 | 李昇柱 | 2015.02.25. |
| 〃 | 李宗珉 | 2015.02.25. |
| 〃 | 朴奇雄 | 2015.07.01. |
| 〃 | 權佳姬 | 2015.02.25. |
| 〃 | 高銀珍 | 2015.04.21. |
| 사 무 과 장 | 金雄容 | 2015.08.31 |
| 수 사 과 장 | 鄭玟修 | 2015.02.16 |
| **( 평 택 지 청 )** | | |
| 지 청 장 | 朴潤海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鄭玉子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朴鍾一 | 2015.02.25. |
| 검 사 | 金瑛俊 | 2012.02.20. |
| 〃 | 申都旭 | 2012.02.20. |
| 〃 | 鄭大熙 | 2013.02.28. |
| 〃 | 李한울 | 2014.02.05. |
| 〃 | 金 建 | 2015.02.25. |
| 〃 | 吳振世 | 2015.02.25. |
| 〃 | 吳智錫 | 2015.02.25. |
| 〃 | 李姿英 | 2013.02.28. |
| 〃 | 金慶年 | 2014.02.05. |
| 〃 | 琴明媛 | 2015.02.25. |
| 〃 | 黃瑱先 | 2015.02.25. |
| 〃 | 林相圭 | 2015.02.25. |
| 〃 | 裵官成 | 2014.08.29. |
| 〃 | 吳承恩 | 2015.02.25. |
| 〃 | 李性樺 | 2015.02.25. |
| 〃 | 李少玄 | 2015.02.25. |
| 사 무 과 장 | 元應福 | 2015.02.16 |
| 수 사 과 장 | 李容聖 | 2015.02.16 |
| **( 안 산 지 청 )** | | |
| 차 장 검 사 | 尹榮晙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邊昶範 | 2015.02.25. |
| 〃 | 柳炳斗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부 장 검 사 | 洪起采 | 2015.02.25. |
| 〃 | 李起玉 | 2015.02.25. |
| ( 부 부 장 ) 검 사 | 李種根 | 2015.02.25. |
| 〃 | 尹振容 | 2015.02.05. |
| 〃 | 朴惠敬 | 2015.02.25. |
| 〃 | 李丞浩 | 2015.02.25. |
| 〃 | 鄭珍溶 | 2015.02.25. |
| 〃 | 安鍾五 | 2015.02.25. |
| 〃 | 尹喆玟 | 2015.02.25. |
| 〃 | 尹卿元 | 2015.02.25. |
| 〃 | 柳千烈 | 2015.08.27. |
| 〃 | 李德珍 | 2015.02.25. |
| 〃 | 姜南守 | 2014.02.05. |
| 〃 | 朴光炫 | 2014.02.05. |
| 〃 | 崔賢喆 | 2015.02.25. |
| 〃 | 丁芝榮 | 2012.02.20. |
| 〃 | 兪芝衍 | 2013.02.28. |
| 〃 | 安東建 | 2015.02.25. |
| 〃 | 姜好俊 | 2015.02.25. |
| 〃 | 姜兌勳 | 2013.02.28. |
| 〃 | 尹素賢 | 2015.02.25. |
| 〃 | 金俸進 | 2015.02.25. |
| 〃 | 李東炫 | 2014.02.05. |
| 〃 | 鄭和俊 | 2014.02.05. |
| 〃 | 王善珠 | 2013.02.28. |
| 〃 | 李柱勳 | 2013.02.28. |
| 〃 | 李政珉 | 2014.02.05. |
| 〃 | 李先基 | 2014.02.05. |
| 〃 | 任銀晶 | 2014.02.05. |
| 〃 | 李知恩 | 2015.02.25. |
| 〃 | 趙鐘敏 | 2014.04.01. |
| 〃 | 成哉昊 | 2014.02.05. |
| 〃 | 崔賢珠 | 2014.02.05. |
| 〃 | 金味宣 | 2014.02.05. |
| 〃 | 韓丞鎭 | 2015.04.01.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李宰杓 | 2013.02.28. |
| 〃 | 金淑正 | 2015.02.25. |
| 〃 | 兪光善 | 2015.07.01. |
| 〃 | 南在炫 | 2014.08.29. |
| 〃 | 全伶卿 | 2014.02.05. |
| 〃 | 金智慧 | 2014.02.05. |
| 〃 | 朱映宣 | 2015.02.25. |
| 〃 | 陳아름 | 2015.02.25. |
| 〃 | 黃斗泙 | 2015.02.25. |
| 〃 | 高鉉昱 | 2015.04.21. |
| 〃 | 權다송이 | 2015.04.21. |
| 사 무 국 장 | 許 雄 | 2015.08.31 |
| 총 무 과 장 | 金峰奭 | 2014.08.04 |
| 사 건 과 장 | 康熙聖 | 2015.02.16 |
| 집 행 과 장 | 張鐘喆 | 2015.08.31 |
| 수 사 과 장 | 權善基 | 2015.08.31 |
| 검 사 직 무 대 리 | 朴永範 | 2015.02.16 |
| **( 안 양 지 청 )** | | |
| 지 청 장 | 李相龍 | 2015.02.25. |
| 차 장 검 사 | 金鴻昌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尹春九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張基錫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金昊耿 | 2015.02.25. |
| ( 부 부 장 ) 검 사 | 全桂廣 | 2015.02.25. |
| 검 사 | 朴賢珠 | 2014.02.05. |
| 〃 | 曺斗鉉 | 2013.02.28. |
| 〃 | 鄭星賢 | 2015.02.25. |
| 〃 | 馬秀烈 | 2014.02.05. |
| 〃 | 姜善珠 | 2015.02.25. |
| 〃 | 朴恩惠 | 2015.02.25. |
| 〃 | 崔在萬 | 2015.02.25. |
| 〃 | 鄭在信 | 2015.02.25. |
| 〃 | 鄭秀正 | 2014.02.05. |
| 〃 | 朴祥姬 | 2012.02.20. |
| 〃 | 任志洙 | 2014.02.0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金智雅 | 2014.08.29. |
| 〃 | 宋惠淑 | 2013.02.28. |
| 〃 | 申泳三 | 2014.04.01. |
| 〃 | 卓東完 | 2015.04.01. |
| 〃 | 李受行 | 2015.07.01. |
| 〃 | 金甫徑 | 2015.02.25. |
| 〃 | 趙倫卿 | 2014.02.05. |
| 〃 | 崔株源 | 2014.02.05. |
| 〃 | 金祜廷 | 2014.04.16. |
| 〃 | 全佑鎭 | 2015.02.25. |
| 〃 | 金玟秀 | 2015.04.21. |
| 〃 | 金東敏 | 2015.04.21. |
| 〃 | 閔庚喆 | 2015.08.27. |
| 사 무 과 장 | 金泰縣 | 2015.08.31 |
| 집 행 과 장 | 梁謹同 | 2015.02.16 |
| 수 사 과 장 | 蔡義洙 | 2015.08.31 |
| **(춘천지방검찰청)** | | |
| 검 사 장 | 崔鍾元 | 2015.12.24. |
| 차 장 검 사 | 李英珠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白龍夏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文成仁 | 2015.02.25. |
| (부부장)검사 | 申銀善 | 2015.02.25. |
| 검 사 | 李蕙恩 | 2015.02.25. |
| 〃 | 南桂植 | 2015.02.25. |
| 〃 | 尹나라 | 2014.02.05. |
| 〃 | 丁維宣 | 2014.02.05. |
| 〃 | 庾晶鉉 | 2015.02.23. |
| 〃 | 宋새봄 | 2013.02.28. |
| 〃 | 崔辰爀 | 2015.02.25. |
| 〃 | 嚴庠竣 | 2014.02.05. |
| 〃 | 朴英秀 | 2014.02.05. |
| 〃 | 元宣雅 | 2015.02.25. |
| 〃 | 鄭壹斗 | 2015.02.25. |
| 〃 | 金正勳 | 2012.02.20 |
| 〃 | 李善美 | 2013.02.28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사 무 국 장 | 鄭然翼 | 2015.02.16 |
| 총 무 과 장 | 徐榮鐘 | 2015.08.31 |
| 사 건 과 장 | 金浩珉 | 2015.02.16. |
| 수 사 과 장 | 白文浩 | 2015.08.31 |
| **(강릉지청)** | | |
| 지 청 장 | 金龍昇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尹源祥 | 2015.02.25. |
| 검 사 | 韓文赫 | 2012.02.20. |
| 〃 | 姜容默 | 2013.02.28. |
| 〃 | 尹仁植 | 2014.02.05. |
| 〃 | 黃載東 | 2014.02.05. |
| 〃 | 金寶美 | 2014.02.05. |
| 〃 | 徐知元 | 2014.02.05. |
| 〃 | 朴贊榮 | 2015.02.25. |
| 〃 | 金首謙 | 2015.02.25. |
| 〃 | 朴智元 | 2015.02.25. |
| 〃 | 金正和 | 2015.04.21. |
| 사 무 과 장 | 辛戊承 | 2015.02.16 |
| 수 사 과 장 | 柳廷落 | 2015.02.16 |
| **(원주지청)** | | |
| 지 청 장 | 朴桂賢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柳志悅 | 2015.02.25. |
| 검 사 | 金亨遠 | 2012.02.20. |
| 〃 | 羅熙錫 | 2013.02.28. |
| 〃 | 李建杓 | 2014.02.05. |
| 〃 | 金辰雨 | 2015.02.25. |
| 〃 | 金鉉書 | 2013.02.28. |
| 〃 | 李義俊 | 2014.02.05. |
| 〃 | 李娜璟 | 2014.02.05. |
| 〃 | 劉在根 | 2015.02.25. |
| 〃 | 張智熀 | 2015.02.25. |
| 〃 | 金賢智 | 2015.02.25. |
| 사 무 과 장 | 李相茂 | 2014.08.04 |
| 수 사 과 장 | 張秉喆 | 2015.08.31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속 초 지 청 )** | | |
| 지 청 장 | 黃秉柱 | 2015.02.25. |
| 검 사 | 申承昊 | 2014.02.05. |
| 〃 | 丁桐鉉 | 2014.02.05. |
| 〃 | 南炅佑 | 2015.02.25. |
| 사 무 과 장 | 尹馨基 | 2014.08.04 |
| **( 영 월 지 청 )** | | |
| 지 청 장 | 金志憲 | 2015.02.25. |
| 검 사 | 兪宗建 | 2014.02.05. |
| 〃 | 朴相宣 | 2015.02.25. |
| 〃 | 禹在勳 | 2014.02.05. |
| 〃 | 鄭 赫 | 2015.02.25. |
| 사 무 과 장 | 魏 在 洪 | 2015.02.16 |
| **(대전고등검찰청)** | | |
| 검 사 장 | 金康旭 | 2015.12.24. |
| 차 장 검 사 | 金基東 | 2015.02.11. |
| 검 사 | 鄭明鎬 | 2014.01.16. |
| 〃 | 丁滿鎭 | 2015.02.25. |
| 〃 | 崔永權 | 2014.01.16. |
| 〃 | 吳圭珍 | 2014.01.16. |
| 〃 | 房峰爀 | 2015.02.25. |
| 〃 | 崔昌鎬 | 2015.02.25. |
| 〃 | 李溶民 | 2014.10.06. |
| 〃 | 金峰石 | 2015.02.25. |
| 〃 | 金成烈 | 2015.02.25. |
| 〃 | 朴炯哲 | 2014.01.16. |
| 사 무 국 장 | 具滋翊 | 2015.08.31 |
| 총 무 과 장 | 許燮 | 2015.08.31 |
| 사 건 과 장 | 金鎭泰 | 2015.02.16 |
| **(대전지방검찰청)** | | |
| 검 사 장 | 安相燉 | 2015.12.24. |
| 차 장 검 사 | 權五成 | 2015.02.25. |
| 형사제1부장검사 | 崔兌源 | 2015.02.25. |
| 형사제2부장검사 | 徐奉揆 | 2015.02.25. |
| 형사제3부장검사 | 李善鳳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공 판 부 장 검 사 | 朴昞謨 | 2015.02.25. |
| 공 안 부 장 검 사 | 李貞勳 | 2015.02.25. |
| 특별수사부장검사 | 李俊燁 | 2015.02.25. |
| ( 부 부 장 ) 검 사 | 芮世民 | 2014.01.16. |
| 〃 | 許丁穗 | 2015.02.25. |
| 〃 | 趙奭泳 | 2015.02.25. |
| 〃 | 金兌垠 | 2014.02.05. |
| 〃 | 金德坤 | 2013.02.28. |
| 〃 | 李榮男 | 2015.02.25. |
| 〃 | 李桓基 | 2015.02.25. |
| 〃 | 鄭在勳 | 2015.08.27. |
| 〃 | 李仁杰 | 2014.02.05. |
| 〃 | 河澹美 | 2014.02.05. |
| 〃 | 朴天烋 | 2013.08.26. |
| 〃 | 金昌洙 | 2015.02.25. |
| 〃 | 金振湳 | 2015.02.25. |
| 〃 | 金一權 | 2015.02.25. |
| 〃 | 張允瑛 | 2014.08.29. |
| 〃 | 宋妊恩 | 2014.02.05. |
| 〃 | 金志容 | 2012.02.20. |
| 〃 | 李治炫 | 2014.02.05. |
| 〃 | 呂京珍 | 2014.02.05. |
| 〃 | 朴慶澤 | 2014.02.05. |
| 〃 | 尹元一 | 2015.02.25. |
| 〃 | 朴 徹 | 2013.02.28. |
| 〃 | 金美守 | 2014.02.05. |
| 〃 | 金瀛斌 | 2015.02.25. |
| 〃 | 崔受京 | 2015.02.25. |
| 〃 | 金廷恩 | 2015.02.25. |
| 〃 | 洪楨娟 | 2015.02.25. |
| 〃 | 孫秀珍 | 2015.02.25. |
| 〃 | 梁益準 | 2014.02.05. |
| 〃 | 崔秀智 | 2014.02.05. |
| 〃 | 金眞英 | 2014.02.05. |
| 〃 | 黃允宣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金旻晶 | 2015.02.25. |
| 〃 | 宋姝旼 | 2015.02.25. |
| 〃 | 金昇基 | 2014.04.01. |
| 〃 | 金瑞賢 | 2015.04.01. |
| 〃 | 朴宣映 | 2015.02.25. |
| 〃 | 許 政 | 2014.08.29. |
| 〃 | 崔智恩 | 2014.02.05. |
| 〃 | 李平和 | 2014.02.05. |
| 〃 | 金炯沿 | 2015.02.25. |
| 〃 | 金址樹 | 2015.02.25. |
| 사 무 국 장 | 金永昌 | 2015.08.31 |
| 총 무 과 장 | 吳榮南 | 2015.08.31 |
| 사 건 과 장 | 尹致鎬 | 2015.02.16 |
| 집 행 과 장 | 姜貴馨 | 2015.08.31 |
| 조 사 과 장 | 趙義坤 | 2015.08.31 |
| 수 사 과 장 | 尹權鎬 | 2015.08.31 |
| 검사직무대리 | 金鎭雄 | 2015.02.16 |
| **( 홍 성 지 청 )** | | |
| 지 청 장 | 金 勳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金澤均 | 2015.02.25. |
| 검 사 | 尹碩煥 | 2014.02.05. |
| 〃 | 金承禹 | 2014.02.05. |
| 〃 | 李素娟 | 2014.02.05. |
| 〃 | 李姓淵 | 2014.02.05. |
| 〃 | 李昇雨 | 2015.02.25. |
| 〃 | 金熙東 | 2015.02.25. |
| 〃 | 愼恩廷 | 2015.02.25. |
| 〃 | 盧永鎭 | 2015.04.21. |
| 〃 | 金智惠 | 2015.04.21. |
| 사 무 과 장 | 金天奎 | 2015.08.31 |
| 수 사 과 장 | 李鐘澈 | 2015.08.31 |
| **( 공 주 지 청 )** | | |
| 지 청 장 | 楊重鈐 | 2015.02.25. |
| 검 사 | 李世鍾 | 2014.02.05. |
| 〃 | 申起容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孫精賢 | 2015.02.25. |
| 사 무 과 장 | 宋在東 | 2015.02.16 |
| **( 논 산 지 청 )** | | |
| 지 청 장 | 黃銀永 | 2015.02.25. |
| 검 사 | 許容準 | 2014.02.05. |
| 〃 | 郭重旭 | 2015.02.25. |
| 〃 | 張有那 | 2015.02.25. |
| 〃 | 朴胤相 | 2015.04.21. |
| 〃 | 朴英雨 | 2015.04.21. |
| 사 무 과 장 | 申正浩 | 2015.08.31 |
| **( 서 산 지 청 )** | | |
| 지 청 장 | 尹大鎭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金載浩 | 2015.02.25. |
| 검 사 | 金兌謙 | 2014.02.05. |
| 〃 | 成大雄 | 2015.02.25. |
| 〃 | 秋螢澐 | 2015.02.25. |
| 〃 | 李穗定 | 2014.02.05. |
| 〃 | 鄭德採 | 2015.02.25. |
| 〃 | 金銀吾 | 2015.02.25. |
| 〃 | 崔芝叡 | 2015.02.25. |
| 〃 | 朴亨健 | 2015.04.21. |
| 사 무 과 장 | 金正烈 | 2014.08.04 |
| 수 사 과 장 | 金哲坤 | 2014.02.24. |
| **( 천 안 지 청 )** | | |
| 지 청 장 | 金周原 | 2015.02.25. |
| 차 장 검 사 | 朴成鎭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徐暎受 | 2015.02.25. |
| 〃 | 羅炳勳 | 2015.02.25. |
| 〃 | 金弘泰 | 2015.02.25. |
| 검 사 | 金鐘鎬 | 2015.02.25. |
| 〃 | 申俊浩 | 2014.02.05. |
| 〃 | 李劾眞 | 2015.02.25. |
| 〃 | 李侑眞 | 2015.08.27. |
| 〃 | 元新惠 | 2015.08.27. |
| 〃 | 張惠永 | 2014.08.29.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洪丞賢 | 2014.02.05. |
| 〃 | 趙宰鐵 | 2012.02.20. |
| 〃 | 韓尙亨 | 2012.02.20. |
| 〃 | 金相賢 | 2013.02.28. |
| 〃 | 李銖暢 | 2015.02.25. |
| 〃 | 車昊東 | 2014.02.05. |
| 〃 | 朴庠勇 | 2014.02.05. |
| 〃 | 徐慧善 | 2014.08.29. |
| 〃 | 鄭聖憲 | 2015.02.25. |
| 〃 | 金炫宇 | 2013.02.28. |
| 〃 | 鄭先熙 | 2014.02.05. |
| 〃 | 李宣和 | 2014.02.05. |
| 〃 | 金台浩 | 2014.02.05. |
| 〃 | 金晳淳 | 2015.02.25. |
| 〃 | 閔琇洪 | 2015.02.25. |
| 〃 | 林秀玟 | 2015.02.25. |
| 〃 | 裵韓鎭 | 2015.04.21. |
| 〃 | 徐敏羽 | 2015.04.21. |
| 사 무 과 장 | 孫祥彩 | 2015.02.16 |
| 집 행 과 장 | 金在坤 | 2015.08.31. |
| 수 사 과 장 | 李鍾學 | 2015.08.31. |
| **(청주지방검찰청)** | | |
| 검 사 장 | 宋寅澤 | 2015.12.24. |
| 차 장 검 사 | 許相九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李枓奉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姜蟹暈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朱鎭撤 | 2015.02.25. |
| (부부장)검사 | 朴基鍾 | 2015.02.25. |
| 〃 | 金 鉉 | 2014.02.05. |
| 〃 | 禹基烈 | 2013.08.26. |
| 〃 | 趙南喆 | 2015.02.25. |
| 〃 | 鄭在賢 | 2012.02.20. |
| 〃 | 李相錄 | 2015.02.25. |
| 〃 | 鄭守辰 | 2012.02.20. |
| 〃 | 金侖宣 | 2013.02.28.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張惠榮 | 2015.02.25. |
| 〃 | 李侑宣 | 2014.02.05. |
| 〃 | 金秉徹 | 2015.02.25. |
| 〃 | 朴鍾葉 | 2015.02.25. |
| 〃 | 林智妍 | 2014.02.05. |
| 〃 | 鄭惠丞 | 2015.02.25. |
| 〃 | 玄東佶 | 2015.02.25. |
| 〃 | 裵志勳 | 2015.02.25. |
| 〃 | 崔祐赫 | 2015.02.25. |
| 〃 | 洪石基 | 2015.02.25. |
| 〃 | 李在涓 | 2015.02.25. |
| 〃 | 趙玹逸 | 2014.04.01. |
| 〃 | 梁僊錫 | 2015.04.01. |
| 〃 | 權寅杓 | 2014.02.05. |
| 〃 | 成珍永 | 2014.02.05. |
| 〃 | 金慈恩 | 2015.02.25. |
| 〃 | 全有敬 | 2015.02.25. |
| 사 무 국 장 | 金泰源 | 2014.08.04 |
| 총 무 과 장 | 金周泰 | 2014.08.04 |
| 사 건 과 장 | 金重哲 | 2014.08.04 |
| 집 행 과 장 | 李斗榮 | 2014.08.04 |
| 수 사 과 장 | 權相一 | 2015.08.31 |
| 검사직무대리 | 李東鎭 | 2014. 8. 4. |
| **( 충 주 지 청 )** | | |
| 지 청 장 | 李鍾根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丁珍雄 | 2015.02.25. |
| 검 사 | 嚴永旭 | 2014.02.05. |
| 〃 | 李允煥 | 2015.02.25. |
| 〃 | 崔恩美 | 2015.02.25. |
| 〃 | 安盛民 | 2014.02.05. |
| 〃 | 金甫賢 | 2014.02.05. |
| 〃 | 洪海淑 | 2015.02.25. |
| 〃 | 申義浩 | 2015.04.21. |
| 사 무 과 장 | 梁相承 | 2013.07.29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 제 천 지 청 )** | | |
| 지 청 장 | 金在龜 | 2015.02.25. |
| 검 사 | 李潤九 | 2014.02.05. |
| 〃 | 林讚美 | 2015.02.25. |
| 〃 | 羅相敦 | 2015.02.25. |
| 〃 | 沈奇昱 | 2015.04.21. |
| 사 무 과 장 | 洪承謨 | 2013.07.29 |
| **( 영 동 지 청 )** | | |
| 지 청 장 | 安相勳 | 2015.02.25. |
| 검 사 | 黃允載 | 2014.02.05. |
| 〃 | 陳慶燮 | 2015.02.25. |
| 〃 | 梁瑞洹 | 2015.04.21. |
| 사 무 과 장 | 崔泳壽 | 2014.08.04 |
| **(대구고등검찰청)** | | |
| 검 사 장 | 尹甲根 | 2015.12.24. |
| 차 장 검 사 | 金宇鉉 | 2015.12.24. |
| 검 사 | 申培植 | 2014.01.16. |
| 〃 | 孫淳爀 | 2014.01.16. |
| 〃 | 權桃郁 | 2015.02.25. |
| 〃 | 金容柱 | 2015.02.25. |
| 〃 | 姜信燁 | 2014.01.16. |
| 〃 | 尹錫悅 | 2014.01.16. |
| 〃 | 沈在桂 | 2014.01.16. |
| 〃 | 李시원 | 2014.08.29. |
| 〃 | 尹章碩 | 2015.02.25. |
| 사 무 국 장 | 金泰源 | 2015.08.31 |
| 총 무 과 장 | 方善培 | 2015.08.31 |
| 사 건 과 장 | 具大元 | 2015.02.16 |
| **(대구지방검찰청)** | | |
| 검 사 장 | 全賢埈 | 2015.12.24. |
| 제 2 차 장 검 사 | 朴順哲 | 2015.02.25. |
| 형사제1부장검사 | 徐榮敏 | 2015.02.25. |
| 형사제2부장검사 | 高秉民 | 2015.02.25. |
| 형사제3부장검사 | 安範鎭 | 2015.02.25. |
| 형사제4부장검사 | 黃鍾根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공 판 부 장 검 사 | 朴倫錫 | 2015.02.25. |
| 공 안 부 장 검 사 | 鄭映學 | 2015.02.25. |
| 특별수사부장검사 | 邢振輝 | 2015.02.25. |
| 강 력 부 장 검 사 | 姜鍾憲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李泰炯 | 2015.02.25. |
| ( 부 부 장 ) 검 사 | 田炳珠 | 2015.02.25. |
| 검 사 | 柳東昊 | 2014.02.05. |
| 〃 | 高洞坤 | 2014.08.29. |
| 〃 | 全俊喆 | 2014.08.29. |
| 〃 | 徐楨旼 | 2015.02.25. |
| 〃 | 陳正吉 | 2014.02.05. |
| 〃 | 崔斗泉 | 2013.08.26. |
| 〃 | 安炯完 | 2015.02.25. |
| 〃 | 李禎燮 | 2015.08.27. |
| 〃 | 段成翰 | 2014.02.05. |
| 〃 | 愼之葩 | 2015.02.25. |
| 〃 | 金容子 | 2014.02.05. |
| 〃 | 朴順培 | 2015.02.25. |
| 〃 | 金昇鎬 | 2015.02.25. |
| 〃 | 具美玉 | 2015.02.25. |
| 〃 | 李承惠 | 2015.02.25. |
| 〃 | 崔娜瑛 | 2015.08.27. |
| 〃 | 鄭明媛 | 2015.02.25. |
| 〃 | 李世喜 | 2013.02.28. |
| 〃 | 金鎭晧 | 2015.02.25. |
| 〃 | 南修娟 | 2014.02.05. |
| 〃 | 崔洙逢 | 2014.02.05. |
| 〃 | 金準先 | 2012.02.20. |
| 〃 | 扈丞鎭 | 2014.02.05. |
| 〃 | 鄭美蘭 | 2013.02.28. |
| 〃 | 金政煥 | 2015.02.25. |
| 〃 | 孫明枳 | 2015.02.25. |
| 〃 | 趙晟允 | 2015.02.25. |
| 〃 | 金南秀 | 2013.02.28. |
| 〃 | 李槿貞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崔聖謙 | 2013.02.28. |
| 〃 | 宋漢燮 | 2014.02.05. |
| 〃 | 李昌熙 | 2014.02.05. |
| 〃 | 全榮雨 | 2014.02.05. |
| 〃 | 李智慧 | 2015.02.25. |
| 〃 | 鄭宇成 | 2014.02.05. |
| 〃 | 金智潤 | 2014.02.05. |
| 〃 | 丁貞旭 | 2014.02.05. |
| 〃 | 李賢珠 | 2015.02.25. |
| 〃 | 朴逸奎 | 2014.02.05. |
| 〃 | 金방글 | 2015.02.25. |
| 〃 | 朴成煜 | 2015.02.25. |
| 〃 | 柳承辰 | 2015.02.25. |
| 〃 | 宋旻霞 | 2015.02.25. |
| 〃 | 姜和連 | 2015.02.25. |
| 〃 | 薛秀晛 | 2015.02.25. |
| 〃 | 鄭先哲 | 2014.04.01. |
| 〃 | 鄭勝元 | 2014.04.01. |
| 〃 | 金泰燁 | 2015.04.01. |
| 〃 | 宋泰沅 | 2015.04.01. |
| 〃 | 許秀珍 | 2012.02.20. |
| 〃 | 玄昇錄 | 2014.02.05. |
| 〃 | 宋潤相 | 2014.02.05. |
| 〃 | 鄭允晶 | 2014.02.05. |
| 〃 | 金承姸 | 2015.02.25. |
| 〃 | 宋炫卓 | 2015.02.25. |
| 사 건 과 장 | 金晟勳 | 2015.02.16 |
| 집 행 과 장 | 金默鎭 | 2015.08.31 |
| 수 사 과 장 | 李元哲 | 2014.08.04 |
| 조 사 과 장 | 徐光允 | 2015.08.31 |
| 공 판 과 장 | 鄭義庭 | 2015.02.16 |
| 검 사 직 무 대 리 | 徐正昊 | 2015.08.31 |
| 〃 | 姜鈞日 | 2015.08.31 |
| **(대구서부지청)** | | |
| 지 청 장 | 具本善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차 장 검 사 | 李源坤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金煦坤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金鉉善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梁仁哲 | 2015.02.25. |
| (부부장)검사 | 李憲柱 | 2015.02.25. |
| 검 사 | 孫佑昌 | 2013.02.28. |
| 〃 | 徐唱元 | 2014.02.05. |
| 〃 | 朴秦玄 | 2015.02.25. |
| 〃 | 金琪昀 | 2014.02.05. |
| 〃 | 崔埈豪 | 2014.02.05. |
| 〃 | 白承周 | 2015.02.25. |
| 〃 | 皇甫炫希 | 2014.02.05. |
| 〃 | 金知泳 | 2015.02.25. |
| 〃 | 韓相潤 | 2014.02.05. |
| 〃 | 羅永旭 | 2015.02.25. |
| 〃 | 申美良 | 2015.02.25. |
| 〃 | 郭錦禧 | 2014.02.05. |
| 〃 | 金倫廷 | 2013.02.28. |
| 〃 | 申恩植 | 2015.02.25. |
| 〃 | 徐宰熙 | 2014.02.05. |
| 〃 | 李承炫 | 2012.02.20. |
| 〃 | 李秀賢 | 2014.02.05. |
| 〃 | 文承泰 | 2015.02.25. |
| 〃 | 趙東勳 | 2014.04.01. |
| 〃 | 安美賢 | 2014.02.05. |
| 〃 | 李桃熙 | 2014.02.05. |
| 〃 | 文成根 | 2015.04.01. |
| 〃 | 裵奭熙 | 2014.02.05. |
| 〃 | 金守志 | 2014.02.05. |
| 〃 | 張智哲 | 2015.02.25. |
| 〃 | 金喜眞 | 2015.02.25. |
| 〃 | 吳光一 | 2015.04.21. |
| 사 무 국 장 | 盧奉根 | 2015.08.31 |
| 총 무 과 장 | 河錫模 | 2015.02.16 |
| 사 건 과 장 | 金正昊 | 2015.08.31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집 행 과 장 | 李泰得 | 2015.02.16 |
| 수 사 과 장 | 金秉杓 | 2015.04.20 |
| **( 안 동 지 청 )** | | |
| 지 청 장 | 崔吉秀 | 2015.02.25. |
| 검 사 | 金昊炫 | 2015.02.25. |
| 〃 | 姜眞旭 | 2015.02.25. |
| 〃 | 許泰勳 | 2014.02.05. |
| 〃 | 南昭禎 | 2015.02.25. |
| 〃 | 羅敏榮 | 2015.02.25. |
| 〃 | 吳自妍 | 2015.04.21. |
| 사 무 과 장 | 金東錫 | 2014.08.04 |
| 수 사 과 장 | 金宗基 | 2015.02.16 |
| **( 경 주 지 청 )** | | |
| 지 청 장 | 朴東辰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金成勳 | 2015.02.25. |
| 검 사 | 蘇在煥 | 2014.02.05. |
| 〃 | 柳京煥 | 2015.02.25. |
| 〃 | 李承泌 | 2014.02.05. |
| 〃 | 權炯煜 | 2014.02.05. |
| 〃 | 金秀姬 | 2014.02.05. |
| 〃 | 李虎宰 | 2015.02.25. |
| 〃 | 南志旻 | 2015.02.25. |
| 사 무 과 장 | 金義坤 | 2015.02.16 |
| 수 사 과 장 | 韓玄大 | 2015.02.16 |
| **( 포 항 지 청 )** | | |
| 지 청 장 | 吳自誠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蔡錫賢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尹席主 | 2015.02.25. |
| 검 사 | 李泳揆 | 2014.02.05. |
| 〃 | 朴相洙 | 2015.02.25. |
| 〃 | 權寧必 | 2014.02.05. |
| 〃 | 朴榮相 | 2015.02.25. |
| 〃 | 宋秀淵 | 2013.02.28. |
| 〃 | 金慧林 | 2014.02.05. |
| 〃 | 金廷衍 | 2014.02.0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羅소라 | 2014.02.05. |
| 〃 | 洪敏裕 | 2015.02.25. |
| 〃 | 金暎錫 | 2015.02.25. |
| 〃 | 禹世鎬 | 2015.04.21. |
| 사 무 과 장 | 姜正春 | 2015.08.31 |
| 집 행 과 장 | 金珍龍 | 2015.02.16 |
| 수 사 과 장 | 金宰弘 | 2015.02.16 |
| **( 김 천 지 청 )** | | |
| 지 청 장 | 全康鎭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金大龍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金完圭 | 2015.02.25. |
| 검 사 | 李壽珍 | 2015.02.25. |
| 〃 | 金炫佑 | 2015.02.25. |
| 〃 | 崔亨圭 | 2014.02.05. |
| 〃 | 金世稀 | 2014.02.05. |
| 〃 | 宋燦雨 | 2015.02.25. |
| 〃 | 趙度俊 | 2014.02.05. |
| 〃 | 吳寶美 | 2014.02.05. |
| 〃 | 尹信明 | 2015.02.25. |
| 〃 | 沈在鋠 | 2015.02.25. |
| 〃 | 具世熹 | 2015.02.25. |
| 〃 | 宋旼株 | 2015.02.25. |
| 〃 | 元敏榮 | 2015.04.21. |
| 사 무 과 장 | 申鉉聖 | 2015.08.31 |
| 수 사 과 장 | 林炳靑 | 2015.08.31 |
| **( 상 주 지 청 )** | | |
| 지 청 장 | 申英植 | 2015.02.25. |
| 검 사 | 金正勳 | 2014.02.05. |
| 〃 | 李秀環 | 2014.02.05. |
| 〃 | 文載雄 | 2015.02.25. |
| 〃 | 元相煥 | 2015.04.21. |
| 사 무 과 장 | 柳漢相 | 2015.02.16 |
| **( 의 성 지 청 )** | | |
| 검 사 | 李承哲 | 2014.02.05. |
| 〃 | 張埈赫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劉丞晉 | 2015.04.21. |
| 사 무 과 장 | 林京眞 | 2014.08.04 |
| **( 영 덕 지 청 )** | | |
| 지 청 장 | 金贊中 | 2015.02.25. |
| 검 사 | 殷宗郁 | 2014.02.05. |
| 〃 | 金京峓 | 2015.02.25. |
| 〃 | 柳喜敬 | 2015.04.21. |
| 사 무 과 장 | 李相逡 | 2015.02.16. |
| **(부산고등검찰청)** | | |
| 검 사 장 | 文武一 | 2015.12.24. |
| 차 장 검 사 | 崔允壽 | 2015.12.24. |
| 검 사 | 李學成 | 2014.01.16. |
| 〃 | 金鎬榮 | 2015.02.25. |
| 〃 | 朴吉龍 | 2015.02.25. |
| 〃 | 李在德 | 2015.02.25. |
| 〃 | 金基文 | 2014.01.16. |
| 〃 | 安永圭 | 2015.02.25. |
| 〃 | 朴奎殷 | 2015.02.25. |
| 〃 | 崔鉉奇 | 2015.02.25. |
| 〃 | 柳斗烈 | 2015.02.25. |
| 〃 | 朱映奐 | 2014.08.29. |
| 〃 | 朴哲完 | 2014.01.16. |
| 〃 | 崔盈禕 | 2015.02.25. |
| 〃 | 徐商熙 | 2015.02.25. |
| 사 무 국 장 | 高晩相 | 2015.02.16 |
| 총 무 과 장 | 鄭旬哲 | 2015.08.31 |
| 사 건 과 장 | 明官鎬 | 2015.08.31 |
| **(부산지방검찰청)** | | |
| 검 사 장 | 黃喆奎 | 2015.12.24. |
| 제 2 차 장 검 사 | 車孟麒 | 2015.02.25. |
| 형사제1부장검사 | 李炫哲 | 2015.02.25. |
| 형사제2부장검사 | 林錫弼 | 2015.02.25. |
| 형사제3부장검사 | 金東柱 | 2015.02.25. |
| 형사제4부장검사 | 朴載現 | 2015.02.25. |
| 형사제5부장검사 | 姜亨旻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공 판 부 장 검 사 | 裵成孝 | 2015.02.25. |
| 공 안 부 장 검 사 | 朴奉熙 | 2015.02.25. |
| 특별수사부장검사 | 金亨根 | 2015.02.25. |
| 강 력 부 장 검 사 | 金泰權 | 2015.02.25. |
| 외 사 부 장 검 사 | 金成文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金已俊 | 2015.02.25. |
| ( 부 부 장 ) 검 사 | 柳長萬 | 2014.01.15. |
| 〃 | 李朱亨 | 2015.02.25. |
| 〃 | 宋吉大 | 2015.02.25. |
| 〃 | 閔基泓 | 2015.02.25. |
| 〃 | 李載昇 | 2015.02.25. |
| 〃 | 權奇大 | 2015.02.25. |
| 〃 | 朴榮彬 | 2015.02.25. |
| 〃 | 李健領 | 2015.02.25. |
| 〃 | 朴祥振 | 2013.02.28. |
| 〃 | 柳國樑 | 2014.02.05. |
| 〃 | 林昌國 | 2013.02.28. |
| 〃 | 林鍾弼 | 2013.08.26. |
| 〃 | 金熏榮 | 2015.02.25. |
| 〃 | 嚴熙竣 | 2014.02.05. |
| 〃 | 金亨柱 | 2015.02.25. |
| 〃 | 曺弘用 | 2015.02.25. |
| 〃 | 張少英 | 2015.02.25. |
| 〃 | 崔宰鳳 | 2015.08.27. |
| 〃 | 崔佑榮 | 2015.02.25. |
| 〃 | 金泳喆 | 2013.02.28. |
| 〃 | 韓基植 | 2015.02.25. |
| 〃 | 金永男 | 2014.02.05. |
| 〃 | 金載赫 | 2015.02.25. |
| 〃 | 柳南敬 | 2014.02.05. |
| 〃 | 朴星啟 | 2014.02.05. |
| 〃 | 徐賢旭 | 2014.02.05. |
| 〃 | 金玲美 | 2015.02.25. |
| 〃 | 金希映 | 2015.08.27. |
| 〃 | 李秉柱 | 2013.02.28.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盧貞玉 | 2014.02.05. |
| 〃 | 尹琇楨 | 2013.02.28. |
| 〃 | 朴大煥 | 2014.02.05. |
| 〃 | 千憲住 | 2014.02.05. |
| 〃 | 李泰淳 | 2013.02.28. |
| 〃 | 金鎭赫 | 2012.02.20. |
| 〃 | 姜聖基 | 2014.02.05. |
| 〃 | 孫智惠 | 2014.08.29. |
| 〃 | 具玟技 | 2014.08.29. |
| 〃 | 徐成牧 | 2014.02.05. |
| 〃 | 朴修民 | 2014.02.05. |
| 〃 | 鄭令西 | 2012.02.20. |
| 〃 | 南大主 | 2015.02.25. |
| 〃 | 張鎭成 | 2015.02.25. |
| 〃 | 金宗煜 | 2015.02.25. |
| 〃 | 金禧英 | 2014.02.05. |
| 〃 | 黃珍娥 | 2013.02.28. |
| 〃 | 吳振姬 | 2013.02.28. |
| 〃 | 林豊成 | 2015.02.25. |
| 〃 | 吳珉載 | 2013.02.28. |
| 〃 | 金珍用 | 2015.02.25. |
| 〃 | 徐廷和 | 2015.02.25. |
| 〃 | 李周龍 | 2015.02.25. |
| 〃 | 崔유리 | 2013.02.28. |
| 〃 | 李朱喜 | 2015.02.25. |
| 〃 | 朴榮植 | 2014.02.05. |
| 〃 | 金治勳 | 2014.02.05. |
| 〃 | 李煥羽 | 2014.02.05. |
| 〃 | 柳時棟 | 2014.02.05. |
| 〃 | 朴恩惠 | 2014.02.05. |
| 〃 | 吳昌洛 | 2014.02.05. |
| 〃 | 李承珉 | 2014.08.29. |
| 〃 | 朴信映 | 2015.02.25. |
| 〃 | 金珉奭 | 2015.02.25. |
| 〃 | 徐東曔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林泓錫 | 2015.02.25. |
| 〃 | 李建雄 | 2015.02.25. |
| 〃 | 成耆釩 | 2015.02.25. |
| 〃 | 尹慧玲 | 2015.02.25. |
| 〃 | 韓周東 | 2014.04.01. |
| 〃 | 權憬浩 | 2014.04.01. |
| 〃 | 林基雄 | 2015.04.01. |
| 〃 | 申現悳 | 2015.04.01. |
| 〃 | 文旻泳 | 2015.02.25. |
| 〃 | 金世顯 | 2014.02.05. |
| 〃 | 李鎔楨 | 2014.02.05. |
| 〃 | 邊在恩 | 2014.02.05. |
| 〃 | 張玲瓏 | 2014.02.05. |
| 〃 | 許閏行 | 2014.02.05. |
| 〃 | 全亨埈 | 2015.02.25. |
| 〃 | 金周惠 | 2015.02.25. |
| 〃 | 吉善美 | 2015.02.25. |
| 〃 | 崔玹碩 | 2014.02.05. |
| 총 무 과 장 | 朴相郁 | 2015.08.31 |
| 사 건 과 장 | 廉仁烈 | 2015.08.31 |
| 집 행 과 장 | 金映辰 | 2015.09.24 |
| 기 록 관 리 과 장 | 洪承謨 | 2015.08.31 |
| 조 사 과 장 | 辛鍾根 | 2015.08.31 |
| 수 사 과 장 | 李東殷 | 2015.08.31 |
| 수 사 지 원 과 장 | 金東龍 | 2015.08.31 |
| 범 죄 정 보 과 장 | 金文坤 | 2015.08.31 |
| 조직범죄수사과장 | 林煥龍 | 2015.02.16 |
| 마 약 수 사 과 장 | 李 繁 | 2015.02.16 |
| 공 판 과 장 | 金學相 | 2015.08.31 |
| 검 사 직 무 대 리 | 尹炳鉉 | 2015.08.31 |
| **(부산동부지청)** | | |
| 지 청 장 | 趙商喆 | 2015.02.25. |
| 차 장 검 사 | 金伶奎 | 2015.02.25. |
| 형사제1부장검사 | 鄭銖峯 | 2015.02.25. |
| 형사제2부장검사 | 李尙昱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형사제3부장검사 | 鄭大正 | 2015.02.25. |
| (부부장)검사 | 陳載仙 | 2015.02.25. |
| 검 사 | 文暎權 | 2014.02.05. |
| 〃 | 金炯奭 | 2013.02.28. |
| 〃 | 李基榮 | 2015.08.27. |
| 〃 | 金源學 | 2013.02.28. |
| 〃 | 朴弘奎 | 2015.02.25. |
| 〃 | 鄭銀惠 | 2013.02.28. |
| 〃 | 金知完 | 2015.02.25. |
| 〃 | 金鎭浩 | 2015.02.25. |
| 〃 | 李貞旼 | 2014.02.05. |
| 〃 | 崔鍾必 | 2014.02.05. |
| 〃 | 李在涓 | 2015.02.25. |
| 〃 | 李炅和 | 2013.02.28. |
| 〃 | 金勁穆 | 2014.02.05. |
| 〃 | 吳大健 | 2014.02.05. |
| 〃 | 李垠宙 | 2014.02.05. |
| 〃 | 李正賢 | 2015.02.25. |
| 〃 | 金美榮 | 2013.02.28. |
| 〃 | 金琫暻 | 2015.02.25. |
| 〃 | 朴在浩 | 2014.04.01. |
| 〃 | 梁贊奎 | 2015.04.01. |
| 〃 | 閔恩植 | 2014.02.05. |
| 〃 | 金光洛 | 2014.02.05. |
| 〃 | 李已明 | 2015.02.25. |
| 〃 | 柳秀憲 | 2015.02.25. |
| 사 무 국 장 | 梁熙天 | 2015.08.31 |
| 총 무 과 장 | 全炳烈 | 2015.12.02 |
| 사 건 과 장 | 河相鳳 | 2015.08.31 |
| 집 행 과 장 | 李喆守 | 2015.02.16 |
| 수 사 과 장 | 鞠泰洪 | 2015.08.31 |
| **(울산지방검찰청)** | | |
| 검 사 장 | 韓璨湜 | 2015.12.24. |
| 차 장 검 사 | 韓東榮 | 2015.02.25. |
| 형사제1부장검사 | 金炳炫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형사제2부장검사 | 金範起 | 2015.02.25. |
| 형사제3부장검사 | 吳賢哲 | 2015.02.25. |
| 공안부장검사 | 尹相皓 | 2014.08.29. |
| 특별수사부장검사 | 崔浩永 | 2015.02.25. |
| (부부장)검사 | 李桂漢 | 2015.02.25. |
| 〃 | 李承祐 | 2015.02.25. |
| 〃 | 金晟柱 | 2014.02.05. |
| 〃 | 李光佑 | 2015.02.25. |
| 〃 | 申大炅 | 2014.02.05. |
| 〃 | 金台運 | 2015.02.25. |
| 〃 | 姜世顯 | 2013.02.28. |
| 〃 | 申宗坤 | 2015.02.25. |
| 〃 | 李榮花 | 2014.08.29. |
| 〃 | 金姸實 | 2014.02.05. |
| 〃 | 李東炫 | 2015.02.25. |
| 〃 | 辛建澔 | 2015.08.27. |
| 〃 | 宋永仁 | 2015.02.25. |
| 〃 | 黃正妊 | 2015.02.25. |
| 〃 | 李貞和 | 2013.02.28. |
| 〃 | 宋奉駿 | 2015.02.25. |
| 〃 | 河竣皓 | 2014.02.05. |
| 〃 | 尹國權 | 2015.02.25. |
| 〃 | 崔成洙 | 2015.02.25. |
| 〃 | 邊晋煥 | 2013.02.28. |
| 〃 | 金珉廷 | 2014.02.05. |
| 〃 | 金俊鎬 | 2015.02.25. |
| 〃 | 趙雅羅 | 2013.02.28. |
| 〃 | 金度亨 | 2014.02.05. |
| 〃 | 李鎭熙 | 2015.02.25. |
| 〃 | 金美慧 | 2015.02.25. |
| 〃 | 金成見 | 2015.02.25. |
| 〃 | 李周炫 | 2015.02.25. |
| 〃 | 黃根珠 | 2015.02.25. |
| 〃 | 金世官 | 2014.04.01. |
| 〃 | 文鐘培 | 2015.04.01.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朴慶世 | 2014.02.05. |
| 〃 | 車大榮 | 2014.02.05. |
| 〃 | 金炤定 | 2014.02.05. |
| 〃 | 文東起 | 2015.02.25. |
| 〃 | 金叡恩 | 2015.02.25. |
| 사 무 국 장 | 鄭炳鎬 | 2015.08.31 |
| 총 무 과 장 | 金三述 | 2015.02.16 |
| 사 건 과 장 | 李弘泰 | 2015.08.31 |
| 집 행 과 장 | 金雲祥 | 2015.02.16 |
| 공 안 과 장 | 朴榮奎 | 2015.08.31 |
| 수 사 과 장 | 李國熙 | 2014.02.04 |
| 검사직무대리 | 崔榮根 | 2015.08.31 |
| **(창원지방검찰청)** | | |
| 검 사 장 | 劉相凡 | 2015.12.24. |
| 차 장 검 사 | 許哲豪 | 2015.02.25. |
| 형사제1부장검사 | 黃義守 | 2015.02.25. |
| 형사제2부장검사 | 全映俊 | 2015.02.25. |
| 공안부장검사 | 金正浩 | 2015.02.25. |
| 특별수사부장검사 | 朴相鎭 | 2015.02.25. |
| 공판송무부장검사 | 李喆鎬 | 2015.02.25. |
| (부부장)검사 | 李映林 | 2015.02.25. |
| 검 사 | 金英逸 | 2014.08.29. |
| 〃 | 金允姬 | 2013.08.26. |
| 〃 | 金甫炫 | 2014.02.05. |
| 〃 | 金公珠 | 2014.02.05. |
| 〃 | 金元湜 | 2015.02.25. |
| 〃 | 金相顯 | 2014.02.05. |
| 〃 | 金秀珉 | 2015.02.25. |
| 〃 | 尹재슬 | 2014.02.05. |
| 〃 | 朴大範 | 2014.02.05. |
| 〃 | 申惠軫 | 2014.02.05. |
| 〃 | 尹棟煥 | 2014.02.05. |
| 〃 | 朴基太 | 2014.02.17. |
| 〃 | 張日姬 | 2015.02.25. |
| 〃 | 朴晉奭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李宗益 | 2013.02.28. |
| 〃 | 許成奎 | 2015.02.25. |
| 〃 | 劉敏鍾 | 2014.02.05. |
| 〃 | 崔龍洛 | 2015.02.25. |
| 〃 | 朴智勳 | 2015.02.25. |
| 〃 | 李政勳 | 2013.02.28. |
| 〃 | 李琪瑛 | 2014.02.05. |
| 〃 | 曺美敬 | 2015.02.25. |
| 〃 | 朴 守 | 2014.02.05. |
| 〃 | 宋明眞 | 2014.02.05. |
| 〃 | 朴炯秀 | 2015.02.25. |
| 〃 | 崔銘洙 | 2014.04.01. |
| 〃 | 徐素喜 | 2014.02.05. |
| 〃 | 鄭敏熙 | 2014.02.05. |
| 〃 | 崔大虎 | 2014.02.05. |
| 〃 | 朴珍娥 | 2015.02.25. |
| 〃 | 孫鎔道 | 2015.02.25. |
| 〃 | 李承勇 | 2014.02.05. |
| 사 무 국 장 | 成貞柱 | 2015.08.31 |
| 총 무 과 장 | 尹榮右 | 2015.02.16 |
| 사 건 과 장 | 丁平和 | 2015.08.31. |
| 집 행 과 장 | 朴武善 | 2015.08.31. |
| 조 사 과 장 | 金光烈 | 2015.02.16 |
| 수 사 과 장 | 朴炯碩 | 2015.02.16 |
| **(마산지청)** | | |
| 지 청 장 | 徐洪紀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玉成大 | 2015.02.25. |
| 검 사 | 徐源翊 | 2013.02.28. |
| 〃 | 成秉奎 | 2014.02.05. |
| 〃 | 金美恩 | 2015.02.25. |
| 〃 | 朴相凡 | 2015.02.25. |
| 〃 | 林洪主 | 2015.02.25. |
| 〃 | 金眞姬 | 2013.02.28. |
| 〃 | 白尙埈 | 2014.02.05. |
| 〃 | 朴棟主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李政桓 | 2015.02.25. |
| 〃 | 李恩雨 | 2015.02.25. |
| 〃 | 李稿銀 | 2015.04.21. |
| 사 무 과 장 | 金昊成 | 2014.08.04 |
| 수 사 과 장 | 河在根 | 2015.02.16 |
| **( 진 주 지 청 )** | | |
| 지 청 장 | 朴根範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金炫辰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裵唱大 | 2015.02.25. |
| 검 사 | 朴鍾鎬 | 2014.02.05. |
| 〃 | 李銀閏 | 2015.02.25. |
| 〃 | 韓大雄 | 2014.02.05. |
| 〃 | 成斗慶 | 2014.02.05. |
| 〃 | 高侑辰 | 2013.02.28. |
| 〃 | 姜侖辰 | 2014.02.05. |
| 〃 | 金恩貞 | 2014.02.05. |
| 〃 | 延濟赫 | 2015.02.25. |
| 〃 | 宋正範 | 2015.02.25. |
| 〃 | 李玄珍 | 2015.07.01. |
| 〃 | 朴之英 | 2015.02.25. |
| 〃 | 李昭娟 | 2015.02.25. |
| 〃 | 李相墩 | 2015.04.21. |
| 〃 | 李恩貞 | 2015.04.21. |
| 사 무 과 장 | 尹在淳 | 2015.02.16 |
| 집 행 과 장 | 魯幸洙 | 2013.07.29 |
| 수 사 과 장 | 崔洪瓚 | 2015.02.16 |
| **( 통 영 지 청 )** | | |
| 지 청 장 | 朴章佑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沈學鎭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金度完 | 2015.02.25. |
| 검 사 | 徐志賢 | 2015.08.27. |
| 〃 | 黃壽淵 | 2014.02.05. |
| 〃 | 朴成眞 | 2014.02.05. |
| 〃 | 崔宰賢 | 2015.02.25. |
| 〃 | 金나리 | 2014.02.0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朴한나 | 2014.02.05. |
| 〃 | 崔鍾卿 | 2015.02.25. |
| 〃 | 邊埈奭 | 2015.02.25. |
| 〃 | 洪炫埈 | 2015.02.25. |
| 〃 | 李洪烈 | 2015.02.25. |
| 〃 | 李琛纁 | 2015.04.21. |
| 〃 | 李廈英 | 2015.04.21. |
| 사 무 과 장 | 尹聖辰 | 2015.02.16 |
| 수 사 과 장 | 南大祐 | 2015.08.31 |
| **( 밀 양 지 청 )** | | |
| 지 청 장 | 韓廷和 | 2015.02.25. |
| 검 사 | 金載煥 | 2014.02.05. |
| 〃 | 金曈振 | 2015.02.25. |
| 〃 | 李洪錫 | 2015.02.25. |
| 사 무 과 장 | 周永皓 | 2015.02.16 |
| **( 거 창 지 청 )** | | |
| 지 청 장 | 盧萬錫 | 2015.02.25. |
| 검 사 | 朴금빛 | 2014.02.05. |
| 〃 | 張 鎭 | 2015.02.25. |
| 〃 | 林炳一 | 2015.04.21. |
| 사 무 과 장 | 李泰彦 | 2015.08.31 |
| **(광주고등검찰청)** | | |
| 검 사 장 | 吳世寅 | 2015.12.24. |
| 차 장 검 사 | 楊富男 | 2015.12.24. |
| 검 사 | 金基正 | 2015.02.25. |
| 〃 | 鄭澤和 | 2013.04.23. |
| 〃 | 洪孝植 | 2013.04.23. |
| 〃 | 徐晶植 | 2015.02.25. |
| 〃 | 姜呂贊 | 2014.01.16. |
| 〃 | 姜吉柱 | 2014.01.16. |
| 〃 | 柳源根 | 2014.01.16. |
| 〃 | 朴贊日 | 2014.01.16. |
| 〃 | 李文聖 | 2014.08.29. |
| 〃 | 金度均 | 2015.02.25. |
| 사 무 국 장 | 金桓泳 | 2015.08.31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총 무 과 장 | 林上源 | 2015.08.31 |
| 사 건 과 장 | 南宮基云 | 2015.08.31 |
| **(광주지방검찰청)** | | |
| 검 사 장 | 金會在 | 2015.12.24. |
| 차 장 검 사 | 金熙準 | 2015.02.25. |
| 형사제1부장검사 | 曺宰涓 | 2015.02.25. |
| 형사제2부장검사 | 曺基龍 | 2015.02.25. |
| 형사제3부장검사 | 白尙烈 | 2015.02.25. |
| 공 안 부 장 검 사 | 徐聖昊 | 2015.02.25. |
| 특별수사부장검사 | 申奉洙 | 2015.02.25. |
| 강 력 부 장 검 사 | 孫錫仟 | 2015.02.25. |
| 공 판 부 장 검 사 | 朴英濬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河忠憲 | 2015.04.23. |
| ( 부 부 장 ) 검 사 | 金郁埈 | 2014.01.16. |
| 〃 | 鄭惟美 | 2015.02.25. |
| 〃 | 丁元赫 | 2015.02.25. |
| 〃 | 朴晟燻 | 2015.02.25. |
| 〃 | 許 正 | 2015.02.25. |
| 〃 | 金玟炯 | 2011.12.05. |
| 〃 | 千寬英 | 2014.02.05. |
| 〃 | 全美花 | 2015.02.25. |
| 〃 | 朴正熙 | 2015.02.25. |
| 〃 | 梁盛弼 | 2015.02.25. |
| 〃 | 金原鋕 | 2013.02.28. |
| 〃 | 鄭日均 | 2014.08.29. |
| 〃 | 李芳炫 | 2015.02.25. |
| 〃 | 柳陳承 | 2015.02.25. |
| 〃 | 李勝亨 | 2015.02.25. |
| 〃 | 金海敬 | 2014.02.05. |
| 〃 | 崔馨元 | 2015.08.27. |
| 〃 | 朴炅燮 | 2015.02.25. |
| 〃 | 金倫廷 | 2015.02.25. |
| 〃 | 宋明燮 | 2015.02.25. |
| 〃 | 金喜柱 | 2015.02.25. |
| 〃 | 嚴宰祥 | 2014.02.0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金銀慶 | 2014.02.05. |
| 〃 | 丁英珠 | 2013.02.28. |
| 〃 | 金正玉 | 2011.02.14. |
| 〃 | 申熙英 | 2012.02.20. |
| 〃 | 鄭愚錫 | 2015.02.25. |
| 〃 | 鄭湲錫 | 2015.02.25. |
| 〃 | 趙正鎬 | 2015.02.25. |
| 〃 | 金珍嬉 | 2013.02.28. |
| 〃 | 李鍾赫 | 2015.02.25. |
| 〃 | 李裁源 | 2015.02.25. |
| 〃 | 金垠亨 | 2014.02.05. |
| 〃 | 金銀貞 | 2015.02.25. |
| 〃 | 具珍美 | 2014.02.05. |
| 〃 | 李尙美 | 2015.02.25. |
| 〃 | 鄭侃炳 | 2015.02.25. |
| 〃 | 洪性基 | 2015.02.25. |
| 〃 | 李珍順 | 2015.02.25. |
| 〃 | 申妃那 | 2015.02.25. |
| 〃 | 崔誠埈 | 2014.04.01. |
| 〃 | 崔庸熙 | 2014.04.01. |
| 〃 | 李尙珉 | 2014.08.29. |
| 〃 | 李韓宗 | 2015.04.01. |
| 〃 | 趙素寅 | 2014.08.29. |
| 〃 | 張在貞 | 2015.02.25. |
| 〃 | 朴奎南 | 2014.02.05. |
| 〃 | 金賢雄 | 2014.02.05. |
| 〃 | 金祿元 | 2014.02.05. |
| 〃 | 朴禮眞 | 2015.02.25. |
| 〃 | 金嫦彝 | 2015.02.25. |
| 사 무 국 장 | 姜鎭求 | 2015.08.31 |
| 총 무 과 장 | 金亨冠 | 2015.08.31 |
| 사 건 과 장 | 朴誠翊 | 2015.08.31 |
| 집 행 과 장 | 文海植 | 2015.02.16 |
| 조 사 과 장 | 魏亨良 | 2015.02.16 |
| 수 사 과 장 | 李相龍 | 2015.08.31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공 판 과 장 | 鄭燦先 | 2015.08.31 |
| 검사직무대리 | 姜求吉 | 2015.02.16 |
| **( 목 포 지 청 )** | | |
| 목 포 지 청 장 | 高錫洪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朴在映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閔庚天 | 2015.02.25. |
| 검 사 | 金泳周 | 2015.02.25. |
| 〃 | 柳官模 | 2014.02.05. |
| 〃 | 安埈奭 | 2014.02.05. |
| 〃 | 趙宰徹 | 2015.02.25. |
| 〃 | 金熙松 | 2014.02.05. |
| 〃 | 黃湖釋 | 2014.02.05. |
| 〃 | 文宣珠 | 2014.02.05. |
| 〃 | 張榮俊 | 2015.02.25. |
| 〃 | 姜 現 | 2015.02.25. |
| 〃 | 金惠敬 | 2015.02.25. |
| 〃 | 鄭在娟 | 2015.04.21. |
| 〃 | 鄭世演 | 2015.04.21. |
| 사 무 국 장 | 徐昶洙 | 2015.08.31 |
| 수 사 과 장 | 魯相來 | 2015.02.16 |
| **( 장 흥 지 청 )** | | |
| 지 청 장 | 崔龍圭 | 2015.02.25. |
| 검 사 | 曺圭雄 | 2015.02.25. |
| 〃 | 李鍾光 | 2015.02.25. |
| 〃 | 崔世允 | 2015.04.21. |
| 사 무 과 장 | 李永石 | 2015.02.16. |
| **( 순 천 지 청 )** | | |
| 지 청 장 | 李仲熙 | 2015.02.25. |
| 차 장 검 사 | 趙南寬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宋奎鍾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安承振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周容完 | 2015.02.25. |
| ( 부 부 장 ) 검 사 | 張成哲 | 2015.02.25. |
| 〃 | 全鉉珉 | 2015.02.25. |
| 〃 | 韓台和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金池蓮 | 2015.02.25. |
| 〃 | 權讚赫 | 2014.02.17. |
| 〃 | 朴珉喆 | 2015.02.25. |
| 〃 | 金炳昱 | 2014.02.05. |
| 〃 | 盧泳孟 | 2015.02.25. |
| 〃 | 金美冏 | 2013.02.28. |
| 〃 | 崔恩英 | 2015.02.25. |
| 〃 | 吳俊根 | 2014.04.01. |
| 〃 | 李羅英 | 2014.02.05. |
| 〃 | 姜顯旭 | 2015.04.01. |
| 〃 | 李炯錫 | 2015.07.01. |
| 〃 | 金大根 | 2015.02.25. |
| 〃 | 金炫坤 | 2014.02.05. |
| 〃 | 鄭京眞 | 2014.02.05. |
| 〃 | 宋甫炯 | 2015.02.25. |
| 〃 | 金俊晟 | 2015.02.25. |
| 〃 | 崔再皓 | 2015.04.21. |
| 〃 | 崔藝元 | 2015.04.21. |
| 〃 | 朴性昱 | 2015.02.25. |
| 사 무 국 장 | 裵鍾闕 | 2015.08.31. |
| 총 무 과 장 | 鄭炳玉 | 2015.08.31. |
| 사 건 과 장 | 朴 巖 | 2015.02.16. |
| 수 사 과 장 | 李文學 | 2015.02.16. |
| 집 행 과 장 | 申承休 | 2015.02.16. |
| **( 해 남 지 청 )** | | |
| 지 청 장 | 金 雄 | 2013.04.23 |
| 검 사 | 李栗熙 | 2013.02.28 |
| 〃 | 安大熙 | 2012.02.20 |
| 〃 | 金春成 | 2012.02.20 |
| 사 무 과 장 | 高李主 | 2015.02.16 |
| **전주지방검찰청** | | |
| 검 사 장 | 張鎬仲 | 2015.12.24. |
| 차 장 검 사 | 金辰淑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李周炯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金 萑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부 장 검 사 | 安瑩駿 | 2014.08.29. |
| ( 부 부 장 ) 검 사 | 鄭鍾和 | 2015.02.25. |
| 〃 | 李政峯 | 2015.02.25. |
| 〃 | 金泰勳 | 2015.02.25. |
| 〃 | 尹成賢 | 2015.02.25. |
| 〃 | 劉賢貞 | 2012.02.20. |
| 〃 | 金善文 | 2014.02.05. |
| 〃 | 白秀禛 | 2015.02.25. |
| 〃 | 李容均 | 2015.02.25. |
| 〃 | 朴起煥 | 2015.02.25. |
| 〃 | 金潤龍 | 2014.02.05. |
| 〃 | 李允姬 | 2014.02.05. |
| 〃 | 高은별 | 2011.02.14. |
| 〃 | 許善珠 | 2014.02.05. |
| 〃 | 李庚宣 | 2015.02.25. |
| 〃 | 崔成圭 | 2014.04.01. |
| 〃 | 安相炫 | 2015.04.01. |
| 〃 | 朴敏熙 | 2014.02.05. |
| 〃 | 李昇勳 | 2014.02.05. |
| 〃 | 成仁旭 | 2015.02.25. |
| 〃 | 趙榮珠 | 2015.02.25. |
| 〃 | 權五承 | 2015.02.25. |
| 사 무 국 장 | 李正範 | 2015.08.31 |
| 총 무 과 장 | 鄭勳求 | 2015.02.16 |
| 사 건 과 장 | 朴貴元 | 2015.02.16 |
| 집 행 과 장 | 李殷默 | 2015.08.31 |
| 수 사 과 장 | 趙然基 | 2015.02.16 |
| 검 사 직 무 대 리 | 鄭澤栗 | 2015.02.16 |
| **( 군 산 지 청 )** | | |
| 지 청 장 | 高基榮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高閏碩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金容彬 | 2015.02.25. |
| 검 사 | 金鍾必 | 2014.02.05. |
| 〃 | 曺洙榮 | 2014.02.05. |
| 〃 | 全哲鎬 | 2014.02.0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崔勝煥 | 2015.02.25. |
| 〃 | 徐聖光 | 2015.02.25. |
| 〃 | 黃壽熙 | 2015.02.25. |
| 〃 | 李宣姈 | 2014.02.05. |
| 〃 | 尹效貞 | 2014.02.05. |
| 〃 | 申正秀 | 2015.02.25. |
| 〃 | 徐康源 | 2015.02.25. |
| 〃 | 李志倫 | 2015.02.25. |
| 〃 | 鄭嚗映 | 2015.02.25. |
| 〃 | 金벼리 | 2015.02.25. |
| 〃 | 康馨允 | 2015.02.25. |
| 〃 | 崔憓旻 | 2015.04.21. |
| 〃 | 河보람 | 2015.04.21. |
| 사 무 과 장 | 李忠基 | 2015.08.31 |
| 집 행 과 장 | 殷熙鋻 | 2014.08.04 |
| 수 사 과 장 | 梁憲奎 | 2014.08.04 |
| **( 정 읍 지 청 )** | | |
| 지 청 장 | 金忠宇 | 2015.02.25. |
| 검 사 | 張態亨 | 2015.02.25. |
| 〃 | 金貞宣 | 2014.02.05. |
| 〃 | 鞠陽根 | 2014.02.05. |
| 〃 | 韓承勳 | 2015.02.25. |
| 〃 | 河龍萬 | 2015.04.21. |
| 사 무 과 장 | 成贊五 | 2015.8.31 |
| **( 남 원 지 청 )** | | |
| 지 청 장 | 金國一 | 2015.02.25. |
| 검 사 | 金載雨 | 2014.02.05. |
| 〃 | 金大哲 | 2015.02.25. |
| 〃 | 洪등불 | 2015.04.21. |
| 사 무 과 장 | 宋在英 | 2015.02.16 |
| **(제주지방검찰청)** | | |
| 검 사 장 | 李錫煥 | 2015.12.24. |
| 차 장 검 사 | 安晟秀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安權燮 | 2015.02.25. |
| 부 장 검 사 | 崔盛椀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부부장)검사 | 金秀炫 | 2015.02.25. |
| 〃 | 李準植 | 2013.02.28. |
| 〃 | 李炫娅 | 2014.02.05. |
| 〃 | 李政雨 | 2013.02.28. |
| 〃 | 洪碩基 | 2014.02.05. |
| 〃 | 朴明姬 | 2015.02.25. |
| 〃 | 陳惠媛 | 2015.08.27. |
| 〃 | 孔浚赫 | 2015.02.25. |
| 〃 | 張恩希 | 2015.02.25. |
| 〃 | 林熙成 | 2015.02.25. |
| 〃 | 朴起兌 | 2015.02.25. |
| 〃 | 朴水晶 | 2015.02.25. |
| 〃 | 宋佳炯 | 2014.02.05. |
| 〃 | 朴哲良 | 2014.02.05. |
| 〃 | 李善美 | 2015.02.25. |

| 직 위 | 성명 | 발령일 |
|---|---|---|
| 검 사 | 尹智鉉 | 2015.02.25. |
| 사무국장 | 崔相煥 | 2015.08.31. |
| 총무과장 | 尹泰守 | 2015.02.16. |
| 사건과장 | 康在成 | 2015.02.16. |
| 집행과장 | 裵吉文 | 2015.08.31. |
| 수사과장 | 具滋承 | 2015.02.16. |
| **(사법연수원)** | | |
| 부원장 | 趙垠奭 | 2015.12.24. |
| 교 수 | 盧相吉 | 2014.01.16. |
| 〃 | 黃鉉德 | 2015.02.25. |
| 〃 | 明点植 | 2014.01.16. |
| 〃 | 金鍾根 | 2014.01.16. |
| 〃 | 梁在赫 | 2015.02.25. |
| 〃 | 姜大權 | 2015.02.25. |
| 〃 | 金皓三 | 2013.02.28. |

## 4.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 ○ 보호관찰소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고위공무원) | 金榮洪 | 2015. 1. 12.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장 | 張載榮 | 2015. 8. 31. |
|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 李松駿 | 2015. 8. 24.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소장 | 李又權 | 2015. 1. 12. |
|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 劉鍾官 | 2015. 8. 24. |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 공 석 | |
|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고위공무원) | 金喆浩 | 2015. 10. 12. | 인천보호관찰소 소장 | 崔宇喆 | 2015. 3. 30. |
|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 金仁娥 | 2015. 8. 24. | 수원보호관찰소 소장 | 李亨燮 | 2015. 8. 31. |
| 서울보호관찰소 소장<br>관찰과장<br>행정지원과장 | 孫外哲<br>盧根成<br>朴在鳳 | 2015. 3. 16.<br>2015. 1. 12.<br>2015. 1. 12. | 춘천보호관찰소 소장 | 金容成 | 2015. 8. 31. |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소장 | 裵鍾相 | 2014. 7. 21. | 대전보호관찰소 소장<br>관찰과장<br>행정지원과장 | 姜鎬成<br>盧一錫<br>공석 | 2013. 8. 12.<br>2015. 8. 31. |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장 | 黃振圭 | 2014. 7. 21. | 청주보호관찰소 소장 | 李政旻 | 2015. 8. 31. |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대구보호관찰소<br>소 장<br>행정지원과장<br>관찰과장 | 成雨濟<br>공석<br>趙宗紀 | 2013. 8. 12.<br><br>2015. 1. 12. | 의정부보호관찰소<br>고양지소 지소장 | 宋中一 | 2015. 8. 31. |
| 부산보호관찰소<br>소 장<br>행정지원과장<br>관찰과장 | 朴守煥<br>공석<br>趙成珉 | 2014. 1. 13.<br><br>2015. 8. 31. | 인천보호관찰소<br>부천지소 지소장 | 鄭澤鉉 | 2015. 8. 31. |
| 울산보호관찰소<br>소 장 | 權奇漢 | 2015. 8. 31. | 수원보호관찰소<br>성남지소 지소장 | 尹太英 | 2015. 8. 31. |
| 창원보호관찰소<br>소 장 | 金幸錫 | 2015. 1. 12. | 수원보호관찰소<br>안산지소 지소장 | 梁奉煥 | 2014. 7. 21. |
| 광주보호관찰소<br>소 장<br>행정지원과장<br>관찰과장 | 高永鐘<br>공석<br>徐貞柱 | 2015. 3. 16.<br><br>2015. 8. 31. | 대전보호관찰소<br>천안지소 지소장 | 洪丁源 | 2015. 1. 12. |
| 전주보호관찰소<br>소 장 | 安柄景 | 2015. 1. 12. | 대구보호관찰소<br>서부지소 지소장 | 李淸業 | 2015. 1. 12. |
| 제주보호관찰소<br>소 장 | 閔根基 | 2015. 1. 12. | 부산보호관찰소<br>동부지소 지소장 | 韓相益 | 2015. 1. 12. |
|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br>센 터 장 | 李泳冕 | 2013. 8. 12. | 광주보호관찰소<br>순천지소 지소장 | 金尙琢 | 2015. 8. 31. |
|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br>센 터 장 | 權乙植 | 2015. 1. 12. | | | |

○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 치료감호소**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서울소년원 | | | 청주소년원 | | |
| 원장 | 韓榮宣 | 2013. 5. 6. | 원장 | 吳英熙 | 2015. 1. 12.. |
| 행정지원과장 | 金澤守 | 2015. 8. 31. | 안양소년원 | | |
| 교무과장 | 崔鐘哲 | 2015. 8. 31. | 원장 | 黃啓淵 | 2015. 8. 31. |
| 의무과장 | 趙泰旭 | 2012. 5. 16. | 의무과장 | 全振杓 | 2009. 9. 14. |
| 부산소년원 | | | | | |
| 원장 | 金正植 | 2015. 8. 31. | 춘천소년원 | | |
| 교무과장 | 柳秉澤 | 2015. 1. 12. | 원장 | 吳然鎬 | 2015. 8. 31. |
| 분류보호과장 | 공석 | | 의무과장 | 李熙元 | 2001. 11.14. |
| 의무과장 | 李炳勳 | 2008. 9. 1. | | | |
| 대구소년원 | | | 제주소년원 | | |
| 원장 | 李星七 | 2015. 1. 12. | 원장 | 李銀漢 | 2014. 7. 21. |
| 교무과장 | 朴晙哉 | 2014. 7. 21.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 |
| 분류보호과장 | 공석 | | 원장 | 金喆浩 | 2013. 7. 19. |
| 의무과장 | 黃善進 | 2013. 1. 7. | 교무과장 | 金成坤 | 2015. 8. 31. |
| | | | 분류심사과장 | 金良坤 | 2014. 7. 21. |
| 광주소년원 | | | 의무과장 | 朴廷桓 | 2011. 4. 8. |
| 원장 | 崔成鶴 | 2015. 8. 12.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 | |
| 교무과장 | 李相運 | 2014. 1. 13. | 센터장 | 廉丁勳 | 2015. 8. 31. |
| 분류보호과장 | 공석 | | | | |
| 의무과장 | 鄭吉永 | 2001. 2. 28. | | | |
| 전주소년원 | | |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 |
| 원장 | 李河聲 | 2015. 8. 31. | 센터장 | 李榮鎬 | 2014. 7. 21. |
| 교무과장 | 金一煥 | 2015. 8. 31. | | | |
| 의무과장 | 蘇淳哲 | 2010. 8. 12. | | | |
| 대전소년원 | | | 치료감호소 | | |
| 원장 | 金賢均 | 2015. 1. 12. | 소장 | 공석 | |
| 교무과장 | 金耆鐘 | 2015. 1. 12. | 의료부장 | 柳米京 | 2012. 7. 9. |
| 분류보호과장 | 공석 | | 행정지원과장 | 宋花淑 | 2015. 3. 30. |
| 의무과장 | 張栽豪 | 2012. 11. 1. | 감호과장 | 金泰鎬 | 2015. 8. 31. |

## 5.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서울지방교정청 | | |
| 청 장 | 金善泰 | 2015. 5. 11. |
| 총 무 과 장 | 兪泰吾 | 2015. 8. 3. |
| 보 안 과 장 | 鄭英珍 | 2015. 8. 3. |
| 직업훈련과장 | 朴修妍 | 2015. 8. 3. |
| 의료분류과장 | 李鉉哲 | 2015. 8. 3. |
| 사회복귀과장 | 林善河 | 2015. 8. 3. |
| 대구지방교정청 | | |
| 청 장 | 柳承晩 | 2015. 8. 3. |
| 총 무 과 장 | 鄭雲善 | 2015. 8. 3. |
| 보 안 과 장 | 盧顯泰 | 2015. 8. 3. |
| 직업훈련과장 | 尹鍾周 | 2015. 8. 3. |
| 의료분류과장 | 金鐵珉 | 2015. 8. 3. |
| 사회복귀과장 | 曺廣根 | 2015. 8. 3. |
| 대전지방교정청 | | |
| 청 장 | 鄭有哲 | 2015. 1. 19. |
| 총 무 과 장 | 朴廣來 | 2015. 8. 3. |
| 보 안 과 장 | 成孟煥 | 2015. 1. 19. |
| 직업훈련과장 | 吳世鴻 | 2015. 1. 19. |
| 의료분류과장 | 金應分 | 2015. 8. 3. |
| 사회복귀과장 | 李承喆 | 2015. 8. 3. |
| 광주지방교정청 | | |
| 청 장 | 金琪鉉 | 2015. 1. 19. |
| 총 무 과 장 | 朴柄馹 | 2015. 8. 3. |
| 보 안 과 장 | 朴三才 | 2015. 8. 3. |
| 직업훈련과장 | 崔國鎭 | 2015. 8. 3. |
| 의료분류과장 | 劉仁燁 | 2015. 1. 9. |
| 사회복귀과장 | 鄭炳煥 | 2015. 8. 3. |
| 서울구치소 | | |
| 소 장 | 崔康柱 | 2015. 8. 3. |
| 부 소 장 | 申東潤 | 2015. 1. 19. |
| 총 무 과 장 | 尹昌植 | 2015. 1. 19. |
| 보 안 과 장 | 閔洛基 | 2015. 1. 19. |
| 의 료 과 장 | 趙秀鉉 | 2001. 9. 17. |
| 사회복귀과장 | 姜燾秀 | 2015. 8. 3. |
| 분류심사과장 | 金平根 | 2015. 1. 19. |
| 시 설 과 장 | 金周成 | 2015. 8. 3. |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대전교도소 | | |
| 소 장 | 金貞善 | 2015. 8. 3. |
| 부 소 장 | 金載益 | 2015. 8. 3. |
| 총 무 과 장 | 崔秉錄 | 2015. 1. 19. |
| 의 료 과 장 | 李俊浩 | 2009. 2. 17. |
| 사회복귀과장 | 洪淳哲 | 2015. 8. 3.. |
| 분류심사과장 | 李東熹 | 2015. 8. 3. |
| 대구교도소 | | |
| 소 장 | 金千洙 | 2015. 8. 3. |
| 부 소 장 | 金泰洙 | 2015. 8. 3. |
| 총 무 과 장 | 鄭在烈 | 2015. 8. 3. |
| 의 료 과 장 | 金炅律 | 2014. 6. 5. |
| 사회복귀과장 | 都在德 | 2015. 1. 19. |
| 분류심사과장 | 全龍熙 | 2015. 8. 3. |
| 광주교도소 | | |
| 소 장 | 張寶翼 | 2015. 8. 3. |
| 부 소 장 | 黃仁培 | 2015. 8. 3. |
| 의 료 과 장 | 朴日雄 | 2006. 8. 16. |
| 사회복귀과장 | 鄭奉洙 | 2015. 8. 3. |
| 안양교도소 | | |
| 소 장 | 金相斗 | 2015. 1. 19. |
| 부 소 장 | 金度亨 | 2015. 1. 19. |
| 총 무 과 장 | 姜郡五 | 2015. 8. 3. |
| 의 료 과 장 | 崔光燮 | 2005. 11. 7. |
| 사회복귀과장 | 賓相雄 | 2015. 1. 19. |
| 부산구치소 | | |
| 소 장 | 愼鏞海 | 2015. 08. 03. |
| 부 소 장 | 林峰基 | 2015. 01. 19. |
| 의 료 과 장 | 李熙植 | 2013. 07. 01. |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수원구치소 | | |
| 소 장 | 吳弘均 | 2015. 8. 3. |
| 부 소 장 | 朴泰源 | 2015. 8. 3. |
| 의 료 과 장 | 申俊植 | 2015. 8. 3. |
| 사회복귀과장 | 徐顯榮 | 2015. 1. 19. |
| 평택지소장 | 白洪基 | 2015. 8. 3. |
| 성동구치소 | | |
| 소 장 | 朴炳龍 | 2015. 8. 3. |
| 부 소 장 | 任乙化 | 2015. 8. 3. |
| 의 료 과 장 | 金 勳 | 2005. 11. 7. |
| 사회복귀과장 | 徐秀原 | 2015. 8. 3. |
| 인천구치소 | | |
| 소 장 | 李敬植 | 2015. 8. 3. |
| 부 소 장 | 閔賢基 | 2015. 8. 3. |
| 의 료 과 장 | 閔亨植 | 2001. 7. 7. |
| 서울남부구치소 | | |
| 소 장 | 兪炳喆 | 2015. 8. 3. |
| 부 소 장 | 崔瓚喜 | 2015. 8. 3. |
| 의 료 과 장 | 공 석 | |
| 천안개방교도소 | | |
| 소 장 | 曺基龍 | 2014. 9. 1. |
| 의 료 과 장 | 張在球 | 2005. 11. 7.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 |
| 소 장 | 尹在興 | 2015. 8. 3. |
| 의 료 과 장 | 崔成圭 | 2013. 8. 21. |
| 경북북부제1교도소 | | |
| 소 장 | 金安植 | 2014. 1. 13. |
| 부 소 장 | 朴振悅 | 2015. 8. 3. |
| 의 료 과 장 | 韓柱燮 | 2002. 1. 21. |
| 시 설 과 장 | 李明洙 | 2015. 8. 3. |
| 전주교도소 | | |
| 소 장 | 權玟碩 | 2015. 8. 3. |
| 의 료 과 장 | 金學成 | 2006. 8. 16. |
| 여주교도소 | | |
| 소 장 | 具池書 | 2015. 8. 3. |
| 의 료 과 장 | 李暾圭 | 2015. 8. 3. |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부산교도소 | | |
| 소 장 | 朴皓緖 | 2015. 1. 19. |
| 의 료 과 장 | 尹鍾哲 | 2015. 7. 14. |
| 의정부교도소 | | |
| 소 장 | 崔帝榮 | 2015. 8. 3. |
| 의 료 과 장 | 朱宰虎 | 2001. 5. 21. |
| 창원교도소 | | |
| 소 장 | 鄭秉憲 | 2014. 9. 1. |
| 의 료 과 장 | 李承基 | 2006. 8. 16. |
| 순천교도소 | | |
| 소 장 | 金榮俊 | 2015. 8. 3. |
| 의 료 과 장 | 朴炅喆 | 1996. 9. 1. |
| 서울남부교도소 | | |
| 소 장 | 金承萬 | 2015. 8. 3. |
| 의 료 과 장 | 李鍾基 | 2014. 7. 1. |
| 포항교도소 | | |
| 소 장 | 文炳日 | 2015. 8. 3. |
| 의 료 과 장 | 徐輔均 | 2006. 8. 16. |
| 진주교도소 | | |
| 소 장 | 姜渭福 | 2015. 8. 3. |
| 의 료 과 장 | 李進喆 | 2007. 12. 13. |
| 목포교도소 | | |
| 소 장 | 姜達聲 | 2015. 8. 3. |
| 의 료 과 장 | 姜 喆 | 1990. 6. 26. |
| 대구구치소 | | |
| 소 장 | 韓相晧 | 2015. 8. 3. |
| 의 료 과 장 | 李在洸 | 2005. 11. 7. |
| 군산교도소 | | |
| 소 장 | 洪鍾祐 | 2015. 1. 19. |
| 의 료 과 장 | 張成龍 | 2006. 4. 17. |
| 청주교도소 | | |
| 소 장 | 柳琪鉉 | 2015. 1. 19 |
| 의 료 과 장 | 李炳賢 | 2013. 1. 1. |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천안교도소 | | |
| 소장 | 鄭忠薰 | 2015. 8. 3. |
| 의료과장 | 宋仁基 | 2000. 8. 22.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 |
| 소장 | 金東煥 | 2015. 1. 19. |
| 의료과장 | 崔昌鶴 | 2011. 1. 1. |
| 춘천교도소 | | |
| 소장 | 朴光植 | 2015. 8. 3. |
| 의료과장 | 李重九 | 2015. 1. 19. |
| 원주교도소 | | |
| 소장 | 朴熹秀 | 2015. 8. 3. |
| 의료과장 | 金榮珍 | 2015. 4. 13. |
| 안동교도소 | | |
| 소장 | 柳東白 | 2015. 1. 19. |
| 의료과장 | 공 석 | |
| 경북북부제2교도소 | | |
| 소장 | 閔六基 | 2015. 1. 19. |
| 의료과장 | 桂英諵 | 2002. 7. 16. |
| 청주여자교도소 | | |
| 소장 | 李愚龍 | 2015. 8. 3. |
| 의료과장 | 李學龍 | 2015. 8. 3. |
| 김천소년교도소 | | |
| 소장 | 洪性千 | 2015. 1. 19. |
| 의료과장 | 崔仁煥 | 2008. 1. 24. |
| 공주교도소 | | |
| 소장 | 河映薰 | 2015. 8. 3. |
| 의료과장 | 宋惠貞 | 2011. 7. 11. |
| 경북북부제3교도소 | | |
| 소장 | 林衡種 | 2015. 8. 3. |
| 의료과장 | 鄭萬鎭 | 2011. 12. 5. |
| 울산구치소 | | |
| 소장 | 尹吉鉉 | 2015. 1. 19. |
| 의료과장 | 金鍾元 | 2009. 7. 20. |
| 정읍교도소 | | |
| 소장 | 金榮植 | 2015. 1. 19. |
| 의료과장 | 金得鍾 | 2015. 8. 3. |
| 제주교도소 | | |
| 소장 | 金文泰 | 2015. 1. 19. |
| 의료과장 | 朴宰弘 | 1999. 3. 8. |
| 홍성교도소 | | |
| 소장 | 朴光埰 | 2015. 8. 3. |
| 의료과장 | 尹星老 | 1994. 11. 12. |
| 서산지소장 | 柳在仁 | 2015. 8. 3. |
| 경주교도소 | | |
| 소장 | 鄭 薰 | 2015. 1. 19. |
| 의료과장 | 趙倫徹 | 2012. 1. 9. |
| 통영구치소 | | |
| 소장 | 朴民葫 | 2015. 8. 3. |
| 의료과장 | 공 석 | |
| 밀양구치소 | | |
| 소장 | 鄭昌憲 | 2015. 1. 19. |
| 의료과장 | 全允湜 | 2014. 5. 12. |
| 상주교도소 | | |
| 소장 | 李炅雨 | 2015. 1. 19. |
| 의료과장 | 李都衡 | 2014. 6. 26. |
| 강릉교도소 | | |
| 소장 | 金東允 | 2015. 1. 19. |
| 의료과장 | 金日煥 | 2006. 8. 16. |
| 영월교도소 | | |
| 소장 | 林男順 | 2015. 1. 19. |
| 의료과장 | 金健道 | 2015. 6. 23. |
| 장흥교도소 | | |
| 소장 | 魯埴準 | 2015. 1. 19. |
| 의료과장 | 金喆周 | 2010. 11. 8. |
| 해남교도소 | | |
| 소장 | 金春午 | 2015. 8. 3. |
| 의료과장 | 鄭榮日 | 2011. 2. 28. |
| 충주구치소 | | |
| 소장 | 周點淑 | 2015. 8. 3. |
| 의료과장 | 崔永喆 | 2004. 4. 16. |

## 6.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직 위 | 성 명 | 발 령 일 |
|---|---|---|---|---|---|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 禹基鵬 | 2015. 7. 27.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 鄭秀東 | 2015. 8. 10. |
| 지원국장 | 楊次順 | 2015. 8. 10. |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 陸承焄 | 2015. 8. 10. |
| 심사국장 | 李相朗 | 2015. 8. 10. |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 兪在虎 | 2013. 7. 29. |
| 총무과장 | 禹錫煥 | 2014. 7. 7.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 黃澤煥 | 2015. 8. 10. |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 張世根 | 2015. 8. 10.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 朴基柱 | 2015. 8. 10. |
| 총무과장 | 朴相勳 | 2015. 8. 10. |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 鄭点子 | 2015. 8. 10. |
| 관리과장 | 禹鍾均 | 2015. 8. 10.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 金玟洙 | 2015. 8. 10. |
| 이민특수조사대장 | 梁承權 | 2015. 8. 10.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 李鎭煥 | 2014. 7. 7. |
| 출입국정보화센터장 | 金鍾協 | 2015. 8. 3. |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 車勇昊 | 2015. 8. 10. |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 金摻俊 | 2015. 8. 10. |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장 | 李晋坤 | 2015. 8. 10. |
| 관리과장 | 공석 | | 청주외국인보호소 소장 | 姜秉椿 | 2015. 8. 10. |
| 이민특수조사대장 | 林辰澤 | 2015. 8. 10.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센터장 | 玄根榮 | 2015. 8. 10. |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 李仁揆 | 2015. 8. 10. | | | |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 李世潤 | 2015. 8. 10. | | | |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 金垣淑 | 2015. 8. 10. | | | |
|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 李圭哄 | 2015. 8. 10. | | | |
|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 張永采 | 2015. 8. 10. | | | |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 金秉祚 | 2014. 7. 7. | | | |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 金判俊 | 2014. 7. 7. | | | |

# Ⅵ. 인 사

## ○ 총 괄

(2015. 1. ~ 12.)

| 구 분 | | 계 | 승 진 | 전 보 | 신규임용 | 면 직 |
|---|---|---|---|---|---|---|
| 계 | | 11,107 | 3,312 | 6,062 | 1,212 | 521 |
| 검 사 | | 1,283 | 28 | 1,067 | 112 | 76 |
| 일반직 | 소 계 | 9,824 | 3,284 | 4,995 | 1,100 | 445 |
| | 본 부<br>(연 수 원) | 366<br>(68) | 109<br>(3) | 228<br>(53) | 19<br>(6) | 10<br>(6) |
| | 검 찰 청 | 3,929 | 1,056 | 2,411 | 245 | 217 |
| | 범죄예방정책국<br>(보호관찰소, 소년원,<br>치료감호소) | 811 | 126 | 482 | 96 | 107 |
| | 지 방 교 정 청<br>(구치소, 교도소) | 3,986 | 1,798 | 1,453 | 637 | 98 |
| | 출입국관리사무소<br>(외국인보호소) | 732 | 195 | 421 | 103 | 13 |

# Ⅶ. 국외훈련·출장

## ○ 검 사

(2015. 1. ~ 12.)

| 기간 / 직급 | 계 | 장 기 (6월 이상) | 단 기 (6월 이하) | 출장·연수 |
|---|---|---|---|---|
| 계 | 360 | 52 | 22 | 286 |
| 검 찰 총 장 | 1 | - | - | 1 |
| 검 사 | 359 | 52 | 22 | 285 |

## ○ 일반직

(2015. 1. ~ 12.)

| 기간 / 기관 | 계 | 장 기 (6월 이상) | 단 기 (6월 이하) | 출장·연수 |
|---|---|---|---|---|
| 계 | 1,074 | 13 | 11 | 1,050 |
| 본 부 | 280 | 1 | 4 | 275 |
| 검 찰 청 | 236 | 6 | 2 | 228 |
| 교 도 소 | 103 | 2 | 1 | 100 |
| 보호관찰소<br>소년원<br>치료감호소 | 17 | - | 2 | 15 |
| 출입국관리사무소 | 434 | 3 | 2 | 429 |
| 법무연수원 | 4 | 1 | - | 3 |

# Ⅷ. 국제교류 현황

## 1. 외국 주요인사 법무부 방문 현황

(2015. 1. 1~12. 31.)

| 예방일 | 국 명 | 직책 | 성 명 | 예방목적 | 비 고 |
|---|---|---|---|---|---|
| 1. 27. | 에티오피아 | 대통령실 법률자문관 | 폴로스 피리사스 아메지아(Mr. Poulos Firissas Amejia) 등 4명 | 법교육 현황 및 콘텐츠 등 자료수집 | 범죄예방정책국 |
| 1. 28. | 영국 | 사무변호사협회 회장 | 앤드류 캐플린 | 한국의 법률시장 관련 논의 | 법무실 |
| 2. 2. | 벨라루스 | 외교부 차관 | 발렌틴 리바코프 (Valentin Rybakov) | 출입국관리고위급회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 | 주한 벨라루스대사 | 나탈리아 질레비치 (Natallia Zhylevich) | | |
| 3. 23. | 슬로바키아 | 법무장관 | 토마쉬 보레츠 | 양국 법무부 간 협력방안 논의 | 법무실 |
| 3. 30. | 베트남 | 법무장관 | 하 흥 끄엉 | 한-베트남 법무부 간 MOU 체결 | 법무실 |
| 4. 13. | 투르크메니스탄 | 이민청장 | 다브란겔드 바이라모프 (Dovrangeldi Bayramov) | 출입국관리고위급회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4. 30. | 미국 | 주한미군 헌병감 | 로렌스 럽델 | 주한미군 사건 현황 파악 및 관련 논의 | 검찰국 |
| 5. 19. | 스위스 | 스위스 인권특임대사 | 니콜 뷔르쉬 등 4명 | 인권특사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 교환 | 인권국 |
| 5. 19. | 베트남 | 이민청장 | 르딴중 (Le Thanh Dzung) | 출입국관리고위급회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5. 20. | 미국 | 한인검사협회 회장 | 윌리엄 신 등 10명 | 한인검사협회 서울총회 참석 관련 예방 | 검찰국 |

| 예방일 | 국 명 | 직책 | 성 명 | 예방목적 | 비 고 |
|---|---|---|---|---|---|
| 6. 1. | 중국 | 사법부 기율검사반장 | 한형림 | 우리나라 반부패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시스템 소개 등 | 검찰국 |
| 6. 11. | 미국 | 미국장애인법 협회 회장 | 존 워다치 등 3명 | 장애인 인권정책관련 논의 | 인권국 |
| 6. 24. | 요르단 | UN 인권최고대표 |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등 7명 |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의 협력 방안 | 인권국 |
| 6. 25. | 파라과이 | 이민청장 | 크로나베터 (Jorge Marcelo Kronawetter) | 출입국관리고위급회의 |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
| 7. 27. | 미국 | 주한미군 헌병감 | 크리스토퍼 와인드 | 주한미군 사건 현황 파악 및 관련 논의 | 검찰국 |
| 8. 4. | 일본 | 참사관 | 우다가와 요시히로 | 한-일 형사사법공조 활성화 방안 논의 | 검찰국 |
| 9. 2. | 도미니카 공화국 | 이민청장 | 루벤 파울리노 (Ruben D. Paulino) | 출입국관리고위급회의 |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
| 9. 11. | 미국 | 주한미군 법무실장 | 크레이그 메리디스 | 주한미군 범죄 대책 논의 | 검찰국 |
| 9. 11. | 피지 | 이민국가 안보국방부 장관 | 티모시 나투바 (Timoci Lesikivatukoula Natuva) | 출입국관리고위급회의 |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
| 9. 15. | 중국 | 주한 중국대사관 공안참사관 | 유건붕 | 한국 법무부와 중국 공안 및 중국 대사관 간 협력 증진 방안 논의 등 | 검찰국 |
| 9. 21. | 미국 | 주한미군 법무실장 | 크레이그 메리디스 | 주한미군 사건 처리 관련 논의 | 검찰국 |
| 10. 12. | 스위스 | HccH 사무총장 | 트리스토프 베르나스코디 | 국제사법 개정 관련 논의 | 법무실 |
| 10. 19. | 미국 | 미 국무부 인신매매 담당관 | 제니퍼 홍 | 한국의 인신매매 관련 현안 등 논의 | 검찰국 |

| 예방일 | 국 명 | 직책 | 성 명 | 예방목적 | 비 고 |
|---|---|---|---|---|---|
| 10. 19. | 몽골 | 법무장관 | 담비 도를릭자브 | 양국 법무부 간 협력방안 논의 | 법무실 |
| 10. 21. | 호주 | 주한호주대사관 부대사 | 라비 케왈람 | 한국의 법률시장 관련 논의 | 법무실 |
| 10. 21. | 미얀마 | 인권위 인권증진교육 과장 등 | 키네 키네 윈 등 15명 | 한국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이해 및 관련 논의 | 인권국 |
| 10. 27. | 네덜란드 | PCA 사무총장 | 휴고 한스 시블레즈 | PCA와 법무부 간의 협력방안 논의 | 법무실 |
| 11. 3. | 미국 | 주한 차석대사 | 마크 내퍼 | 주한미군 관련 미국 측 입장 전달 등 | 검찰국 |
| 11. 5. | 중국 | 출입경관리국 부국장 | 곡 운 해 (Qu Yunhai) | 출입국관리고위급회의 |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
| 11. 24. | 미국 | 주한 미국대사 | 마크 리퍼트 | 법무부장관 취임인사 | 검찰국 |
| 11. 25. | 인도네시아 | UN 북한인권특별 보고관 | 마르주끼 다루스만 등 4명 | 반인도범죄 책임규명 방안 등 논의 | 인권국 |
| 12. 16. | 미국 | 미국 샌디에고 로스쿨 학장 | 스테판 퍼루올로 | 한국 검사의 국외훈련 관련 법무부 검찰국과 MOU 체결 논의 등 | 검찰국 |
| 12. 17. | 일본 | 법무성 국제과 과장 | 야마우치 요시미쓰 | 한-일 형사사법협력 회의 | 검찰국 |

## 2. 중요 국제회의의 참가 현황

(2015. 1. 1~12. 31)

| 기 간 | 국 가 | 회 의 명 | 참가자 | 비 고 |
|---|---|---|---|---|
| 1. 22.<br>~1. 24. | 일본<br>(도쿄) | 한·일 형사협력회의 참가 | 이성규<br>국제형사<br>과장 외 2 | 검찰국 |
| 1. 23.<br>~1. 24 | 일본<br>(도쿄) | 일본 법무성 고위간부와 회담을 위한 출장 | 김주현<br>검찰국장<br>외 1 | 검찰국 |
| 1.27.<br>~1.31 | 캄보디아<br>(프놈펜) | 캄보디아 범죄인인도 실무협의를 위한 출장 | 조주연<br>검사 | 검찰국 |
| 1. 29.<br>~2. 3. | 필리핀<br>(마닐라) | 2015년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산하 BMG회의 참석 | 박병건<br>출입국주사보<br>외 1명 | 출입국<br>외국인<br>정책본부 |
| 1. 29.<br>~2. 8. | 미국<br>(뉴욕) | 제62차 UNCITRAL 중재 실무 작업반 회의 | 김자형<br>전문위원<br>외 1 | 법무실 |
| 2. 8.<br>~2. 18. | 미국<br>(뉴욕) | 제31차 UNCITRAL 온라인 분쟁해결 실무 작업반 회의 | 양리원<br>전문위원<br>외 1 | 법무실 |
| 2. 10.<br>~2. 14. | 스위스<br>(제네바) |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협상 | 신은영<br>사무관 외 1 | 법무실 |
| 2. 22.<br>~2. 28 | 프랑스<br>(파리) | 제26기 제2차 FATF<br>(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의 참가 | 서정민<br>검사 | 검찰국 |
| 2. 23.<br>~2. 26 | 일본<br>(동경) | 제20차 아태지역 약물단속 회의 참가 | 최인상<br>검사 외 1 | 검찰국 |
| 2. 28.<br>~3. 8. | 오스트리아,<br>프랑스,<br>네덜란드 | 법무부-UNODC 범죄수익환수 MOU 서명식 참석 | 황교안<br>법무부장관<br>외 3 | 검찰국 |
| 3. 2.<br>~3. 7. | 호주<br>(시드니) | ARIN-AP(아-태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 참가 | 임일수<br>검사 외 1 | 검찰국 |

| 기 간 | 국 가 | 회 의 명 | 참가자 | 비 고 |
|---|---|---|---|---|
| 3. 8.<br>~3. 19. | 오스트리아<br>(비엔나) | 제58차 유엔마약위원회(UNCND)<br>회의 참가 | 김태권<br>부산지검<br>강력부장<br>외 1 | 검찰국 |
| 3. 8.<br>~3. 15. | 프랑스<br>(파리) | OECD 뇌물방지작업반 회의 참가 | 김태형<br>검사 외 1 | 검찰국 |
| 3. 18.<br>~3. 20. | 중국<br>(베이징,칭다오) | 중국 내 우리국민 마약범죄 예방을<br>위한 출장 | 신도욱<br>검사 | 검찰국 |
| 3. 22.<br>~3. 26. | 미국<br>(워싱턴) | 한-미 FTA 전문가 협의 | 최태은<br>검사 | 법무실 |
| 3. 22.<br>~3. 27. | 태국<br>(방콕) | 발리 프로세스 워크숍 및 심포지엄<br>참석 | 이은경<br>출입국주사 | 출입국<br>외국인<br>정책본부 |
| 3. 30.<br>~4. 3. | 태국<br>(방콕) | 2015년도 상반기 아태지역 국제<br>마약단속 회의 참가 | 박재억<br>대검 마약과장<br>외 1 | 검찰국 |
| 4. 4.<br>~4. 12. | 미국<br>(메사추세츠주<br>보스턴) | 초국가적 조직범죄 및 테러 대응<br>국제회의 참가 | 천기홍<br>검사 외 1 | 검찰국 |
| 4. 7.<br>~4. 10. | 바레인<br>(마니마) | 국제검사협회(IAP) 집행위원회<br>회의 참석 | 황철규<br>서울서부<br>지검장 외 1 | 검찰국 |
| 4. 10.<br>~4. 19. | 카타르,<br>독일, 체코 | UN Crime Congress 고위급 회의<br>참석 | 김주현<br>법무부차관<br>외 3 | 검찰국 |
| 4. 11.<br>~4. 19. | 카타르 | 제13차 UN 범죄예방 및<br>형사사법위원회(CCPCJ) 총회 참석 | 김지영<br>검사 | 검찰국 |
| 4. 12.<br>~4. 19. | 미국<br>(뉴욕) | 제24차 UNCITRAL 중소기업 실무<br>작업반 회의 | 노혁준<br>교수 | 법무실 |
| 4. 14.<br>~4. 16. | 한국<br>(서울) | 한중일 FTA 제7차 실무협상 | 최태은<br>검사 외 2 | 법무실 |

| 기 간 | 국 가 | 회 의 명 | 참가자 | 비 고 |
|---|---|---|---|---|
| 4. 15.<br>~4. 18. | 네덜란드<br>(헤이그) |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참석 | 신응석<br>대검 사이버<br>수사과장 외 2 | 검찰국 |
| 4. 18.<br>~4. 26. | 미국<br>(뉴욕) | 제27차 UNCITRAL 담보 실무 작업반 회의 | 정지혜<br>전문위원 | 법무실 |
| 4. 20.<br>~4. 24. | 태국<br>(방콕) | 원료물질 및 신종향정물질 국제 회의 참석 | 박재억<br>대검 마약과장<br>외 1 | 검찰국 |
| 5. 12.<br>~5. 16. | 포르투갈<br>(리스본) | 제25차 Victims Support Europe Conference 참석 | 강지식<br>인권구조<br>과장 외 2 | 인권국 |
| 5. 16.<br>~5. 24. | 오스트리아<br>(비엔나) | 제24차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CCPCJ) 참가 | 신유철<br>전주지검<br>검사장 외 2 | 검찰국 |
| 5. 16.<br>~5. 25. | 미국<br>(뉴욕) | 제51차 UNCITRAL 전자상거래 실무 작업반 회의 | 정경영 교수 | 법무실 |
| 5. 25.<br>~5. 30. | 타지키스탄<br>(두산베) | 마약퇴치를 위한 고위급 회의 참가 | 박재억<br>대검 마약과장<br>외 1 | 검찰국 |
| 5. 25.<br>~6. 1. | 미국<br>(뉴욕) | 제47차 UNCITRAL 도산 실무 작업반 회의 | 한민 교수 | 법무실 |
| 5. 26.<br>~5. 30. | 프랑스<br>(스트라스부르) | 제68차 유럽평의회 국제공조 담당자 회의 참가 | 김태형<br>검사 | 검찰국 |
| 5. 31.<br>~6. 7. | 콜롬비아<br>(카르타헤나) | 제32차 국제마약단속회의 (IDEC) 총회 참가 | 김현수<br>수원지검<br>강력부장 외 1 | 검찰국 |
| 6. 6.<br>~6. 11. | 미국<br>(워싱턴,뉴욕) | 미국 양자 협의를 위한 출장 | 조상준<br>검사외 1 | 검찰국 |
| 6. 7.<br>~6. 12. | 캄보디아<br>(프놈펜) | 제15차 아세안 초국가범죄 고위급회의(SOMTC) 참석 | 정진우<br>국제형사<br>과장 외 2 | 검찰국 |
| 6. 10.<br>~6. 13. | 일본<br>(교토)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8차 협상 | 최태은<br>검사 외 3 | 법무실 |

| 기 간 | 국 가 | 회 의 명 | 참가자 | 비 고 |
|---|---|---|---|---|
| 6. 15.<br>~6. 20. | 폴란드<br>(바르사뱌) | FRONTEX 주최 국제회의 참석 | 하용국<br>출입국사무관 | 출입국<br>외국인<br>정책본부 |
| 6. 20.<br>~6. 27. | 호주<br>(브리스번) | 제26기 제3차<br>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의<br>참석 | 신도욱<br>검사 외 2 | 검찰국 |
| 6. 24.<br>~6. 27. | 네덜란드<br>(헤이그) | 각 지역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사무국<br>회의 참석 | 신태훈<br>검사 외 1 | 검찰국 |
| 6. 25.<br>~6. 26. | 중국<br>(마카오)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관련<br>중앙당국간 회의 | 신은영<br>사무관 외 1 | 법무실 |
| 6. 29.<br>~7. 5. | 오스트리아<br>(비엔나) | 제48차 UNCITRAL 본회의 | 최태은<br>검사 외 3 | 법무실 |
| 7. 11.<br>~7. 18. | 뉴질랜드<br>(오클랜드) | 제18차 APG 총회 참가 | 임일수<br>검사 외 2 | 검찰국 |
| 7. 21.<br>~7. 23. | 중국<br>(베이징) | 한중일 FTA 제8차 실무협상 | 최태은<br>검사 외 4 | 법무실 |
| 7. 29.<br>~7. 31. | 중국<br>(베이징) |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 회의 참석 | 김태형<br>검사 | 검찰국 |
| 7. 29.<br>~7. 31. | 중국<br>(베이징) | 중국 공안부 사이버안전보위국과 긴급<br>공조 회의 참석 | 신응성<br>대검 사이버<br>수사과장 외 2 | 검찰국 |
| 8. 11.<br>~8. 21. | 필리핀<br>베트남 | APICC 필리핀 지원사업 종료식,<br>장비인도식, 워크숍 업무협의를 위한<br>출장 | 박재억<br>대검 마약과장<br>외 5 | 검찰국 |
| 8. 15.<br>~8. 23. | 미국<br>(알레스카) | 2015년도<br>미국연방양형위원회(NASC) 연례회의<br>참석 | 오기찬<br>검사 | 검찰국 |
| 8. 22.<br>~8. 27. | 필리핀<br>(세부) | ACT-NET 회의 등 참석 | 이재승<br>검사 | 검찰국 |
| 8. 25.<br>~8. 29. | 싱가포르 | 제36차 마약고위관계관 회의 참가 | 박재억<br>대검 마약과장<br>외 1 | 검찰국 |

| 기 간 | 국 가 | 회 의 명 | 참가자 | 비 고 |
|---|---|---|---|---|
| 9. 2.<br>~9. 5. | 오스트리아<br>(비엔나) | 제9차 UN부패방지협약 자산 회복<br>전문가 회의 참가 | 이지형<br>검사 | 검찰국 |
| 9. 5.<br>~9. 13. | 오스트리아<br>(비엔나) | 제63차 UNCITRAL 중재 실무 작업반<br>회의 | 양리원<br>전문위원 외 1 | 법무실 |
| 9. 21.<br>~9. 22. | 스위스<br>(제네바) | 제30차 UN 인권이사회 참석<br>- 북한인권 패널 토론회, UN<br>북한인권현장사무소 관련 보고 | 조오행 서기관<br>차유진 사무관 | 인권국 |
| 9. 27.<br>~10. 7. | 말레이시아<br>필리핀,<br>베트남 | 제7차 ASEAN+3 초국가범죄 장관급<br>회의 참가 | 임정혁<br>법무연수원장<br>외 3 | 검찰국 |
| 10. 4.<br>~10. 8. | 싱가포르<br>(싱가포르) | 제13차 ASEM 이민국장회의 참석 | 김우호<br>국적·통합정책<br>단장 외 2 | 출입국<br>외국인<br>정책본부 |
| 10. 7.<br>~10. 11. | 스위스<br>(제네바) |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협상 | 노선균<br>검사 외 1 | 법무실 |
| 10. 9.<br>~10. 18. | 오스트리아<br>(비엔나) | 제28차 UNCITRAL 담보 실무 작업반<br>회의 | 권영준<br>교수 | 법무실 |
| 10. 9.<br>~10. 15. | 체코,<br>오스트리아 | 체코 총리실 주최 반부패 세미나 참석 | 안태근<br>검찰국장 외 3 | 검찰국 |
| 10. 11.<br>~10. 17. | 터키<br>(이스탄불) |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GFMD)<br>참석 | 이규홍<br>서기관 외 4 | 출입국<br>외국인<br>정책본부 |
| 10. 11.<br>~10. 17. | 캐나다<br>(몬트리올) | 제11차 ICAO<br>기계판독여행문서(MRTD) 관련<br>심포지엄 참석 | 우석환<br>서기관 외 2 | 출입국<br>외국인<br>정책본부 |
| 10. 11<br>~10. 15. | 프랑스<br>(파리) | OECD 이주정책 전문가 회의 참석 | 김민경<br>출입국사무관 | 출입국<br>외국인<br>정책본부 |
| 10. 12.<br>~10. 16. | 한국<br>(부산)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br>제10차 협상 | 신은영<br>사무관 외 1 | 법무실 |
| 10. 17.<br>~10. 24 | 프랑스<br>(파리) | 제27기 제1차 FATF<br>(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의 참가 | 신도욱<br>검사 | 검찰국 |

| 기 간 | 국 가 | 회 의 명 | 참가자 | 비 고 |
|---|---|---|---|---|
| 10. 18.<br>~10. 23 | 태국<br>(방콕) | 제39차 아태지역 마약법집행<br>기관장회의(HONLEA) 참가 | 천기홍<br>검사 외 1 | 검찰국 |
| 10. 19.<br>~10. 23. | 오스트리아<br>(비엔나) | 제25차 UNCITRAL 중소기업<br>실무작업반 회의 | 노혁준<br>교수 | 법무실 |
| 10. 20.<br>~10. 24. | 스위스<br>(제나바)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 관련<br>ISS회의 | 신은영<br>사무관 외 1 | 법무실 |
| 10. 20.<br>~10. 24. | 태국<br>(방콕) | 유엔 안보리 대테러사무국의<br>동북아 법집행관 회의 참가 | 강수산나<br>검사 | 검찰국 |
| 10. 20.<br>~10. 25. | 스위스<br>(제네바) |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br>국제규약이행 관련 한국에 대한 4차<br>심의 회의 참석 | 송소영<br>서기관 외 1 | 출입국<br>외국인<br>정책본부 |
| 10. 22.<br>~10. 23. | 스위스<br>(제네바) | UN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br>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 김주현 차관<br>등 14 | 인권국 |
| 10. 24.<br>~11. 1. | 네덜란드<br>(헤이그) |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 판결<br>프로젝트 회의 | 정지혜<br>전문위원 외 1 | 법무실 |
| 10. 25.<br>~10. 29. | 독일<br>(함부르크) |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br>장기 계약 회의 | 김자형<br>사무관 외 1 | 법무실 |
| 10. 31.<br>~11. 7. | 호주<br>(시드니) | ARIN - AP(아시아-태평양 범죄<br>수익환수 네트워크) 연례총회 참가 | 권순철<br>검사 외 3 | 검찰국 |
| 11. 1.<br>~11. 8. | 러시아<br>(상트페테르부르크) | 제6차 UN부패방지협약(UNCAC)<br>당사국 총회 참가 | 전성원<br>중앙지검<br>외사부장 외 1 | 검찰국 |
| 11. 1.<br>~11. 7. | 프랑스<br>(파리) | 제69차 유럽평의회 국제공조 담당자<br>회의(PC-OC) 참가 | 김태형<br>검사 | 검찰국 |
| 11. 4.<br>~11. 12. | 미국<br>(뉴욕,워싱턴) | UN 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 비준서<br>기탁 및 UN 사무총장 면담 등 참석 | 김현웅<br>법무부장관<br>외 4 | 검찰국 |
| 11. 4.<br>~11. 6. | 중국<br>(칭다오) | 제2차 한·중 마약대책회의 참가 | 변찬우<br>검사장 외 4 | 검찰국 |
| 11. 7.<br>~ 11. 16. | 오스트리아<br>(비엔나) | 제52차 UNCITRAL 전자상거래 실무<br>작업반 회의 | 정지혜<br>전문위원<br>외 1 | 법무실 |

| 기 간 | 국 가 | 회 의 명 | 참가자 | 비 고 |
|---|---|---|---|---|
| 11. 8.<br>~11. 12. | 미국<br>(로스엔젤레스) |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업무 협의 참석 | 임일수<br>검사 외 1 | 검찰국 |
| 11. 17.<br>~11. 25. | 네덜란드<br>(헤이그) |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 총회<br>참석 | 손준성<br>검사 외 1 | 검찰국 |
| 11. 22.<br>~11. 27. | 태국<br>(방콕) | 제35차 아태교정본부장회의 | 윤경식<br>교정본부장<br>외 4 | 교정본부 |
| 11. 23.<br>~11. 28. | 스위스<br>(제네바) | 제106차 국제이주기구(IOM) 총회<br>참석 | 김세진<br>출입국사무관<br>외 1명 | 출입국<br>외국인<br>정책본부 |
| 11. 24.<br>~11. 26. | 스위스<br>(몽트뢰) | 제15차 아시아유럽회의 인권세미나<br>참석 | 오유진<br>사무관 | 인권국 |
| 11. 28.<br>~12. 6. | 오스트리아<br>(비엔나) | 제32차 UNCITRAL 온라인분쟁해결<br>실무 작업반 회의 | 김자형<br>사무관 외 1 | 법무실 |
| 11. 30.<br>~12. 4. | 일본<br>(도쿄) | 조직범죄 관련 국제회의 참가 | 김준선<br>검사 외 1 | 검찰국 |
| 12. 5.<br>~12. 13. | 스위스<br>(제네바) | 제31차 WIPO 저작권 상설위원회 회의 | 유정호 검사<br>정지혜 위원 | 법무실 |
| 12. 6.<br>~12. 13. | 프랑스<br>(파리) |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 양리원<br>전문위원 | 법무실 |
| 12. 6.<br>~12. 12. | 프랑스<br>(파리) | OECD 뇌물방지작업반 회의 및<br>이행심사 참가 | 김태형<br>검사 | 검찰국 |
| 12. 10.<br>~12.12. | 러시아<br>(하바로프스크) | 러시아 국적 범죄인 기소 협의를 위한<br>출장 | 이지형<br>검사 | 검찰국 |
| 12. 13.<br>~12. 20. | 오스트리아<br>(비엔나) | 제48차 UNCITRAL 도산 실무 작업반<br>회의 | 한민 교수 | 법무실 |
| 12. 13.<br>~12. 16. | 일본<br>(하코네) | 한중일 FTA 제9차 실무협상 | 최태은<br>검사 외 3 | 법무실 |
| 12. 28.<br>~12. 30. | 중국<br>(난징) | 한중수사협의체 2015년 하반기<br>실무협의 참석 | 권순철<br>대검 국제협력<br>단장 외 6 | 검찰국 |

# Ⅸ. 상 훈

## 1. 총 괄

### ○ 검사 및 일반직

(2015. 1. ~ 12.)

| 상훈 \ 직급 | 계 | 정무직(등) | 검사 | 고위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계 | 1,717 | - | 94 | 22 | 34 | 43 | 236 | 428 | 702 | 144 | 14 |
| 청조근정훈장 | 1 | - | 1 | - | - | - | - | - | - | - | - |
| 황조근정훈장 | 3 | - | 3 | - | - | - | - | - | - | - | - |
| 홍조근정훈장 | 47 | - | 5 | 18 | 24 | - | - | - | - | - | - |
| 녹조근정훈장 | 162 | - | - | - | - | 24 | 138 | - | - | - | - |
| 옥조근정훈장 | 276 | - | - | - | - | - | - | 187 | 88 | 1 | - |
| 근 정 포 장 | 66 | - | 3 | 4 | 7 | 5 | 17 | 21 | 9 | - | - |
| 대 통 령 표 창 | 51 | - | 3 | - | 1 | 4 | 20 | 17 | 6 | - | - |
| 국무총리표창 | 74 | - | 2 | - | 1 | 1 | 28 | 30 | 12 | - | - |
| 모 범 공 무 원 | 86 | - | - | - | - | - | - | 70 | 15 | 1 | - |
| 법무부장관표창 | 951 | - | 77 | - | 1 | 9 | 33 | 103 | 572 | 142 | 14 |
| 유관기관표창 | | | | | | | | | | | |

### ○ 기 관

(2015. 1. ~ 12.)

| 상훈 \ 기관 | 계 | 법무부 | 검찰청 | 보 호 관찰소 | 소년원 | 교정기관 | 출입국관리 사 무 소 |
|---|---|---|---|---|---|---|---|
| 법무부장관표창 | 46 | 5 | 9 | 13 | 5 | 9 | 5 |

## 2. 훈장 · 포장 · 표창자 명단

### ○ 법무부소속 공무원(훈장 이상)

(2015. 1. ~ 12.)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청조근정훈장 | 대검찰청 | 검찰총장 | 김진태 | 2015.12.31 | 하반기 퇴직자 포상 |
| 황조근정훈장 | 대구고등검찰청 | 고등검사장 | 김경수 | 2015.04.24 | 법의날 유공 |
| | 대전지방검찰청 | 검사장 | 문무일 | 2015.12.30 | 검찰업무수행 유공 |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검사장 | 박민표 | 2015.12.30 | 검찰업무수행 유공 |
| 홍조근정훈장 | 대구지방검찰청 | 검사 | 김영대 | 2015.04.24 | 법의날 유공 |
| | 대검찰청 | 검사 | 윤희식 | 2015.04.24 | 법의날 유공 |
| | 진주지청 | 검사 | 박근범 | 2015.04.24 | 법의날 유공 |
| | 법무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권영범 | 2015.06.30 | 상반기 퇴직자 포상 |
| | 대검찰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 최창식 | 〃 | 〃 |
| | 광주지방검찰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 전홍섭 | 〃 | 〃 |
| | 성동구치소 | 일반직고위공무원 | 경의성 | 〃 | 〃 |
| | 성동구치소 | 일반직고위공무원 | 주경섭 | 〃 | 〃 |
| | 부산지방검찰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 엄익삼 | 〃 | 〃 |
| | 서울남부구치소 | 일반직고위공무원 | 박종관 | 〃 | 〃 |
|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 장영관 | 〃 | 〃 |
| | 법무부 | 부이사관 | 남현중 | 〃 | 〃 |
|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 부이사관 | 안석규 | 〃 | 〃 |
|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 부이사관 | 신용철 | 〃 | 〃 |
| | 전주보호관찰소 | 부이사관 | 윤광원 | 〃 | 〃 |
| | 창원보호관찰소 | 부이사관 | 한양석 | 〃 | 〃 |
| | 청주소년원 | 부이사관 | 오한표 | 〃 | 〃 |
|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 부이사관 | 박규범 | 〃 | 〃 |
| | 대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정천영 | 〃 | 〃 |
| | 광주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윤종식 | 〃 | 〃 |
| | 부산고등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최영식 | 〃 | 〃 |
| | 부산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윤석봉 | 〃 | 〃 |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김성도 | 〃 | 〃 |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윤억배 | 〃 | 〃 |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김승규 | 〃 | 〃 |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박동묵 | 〃 | 〃 |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정회덕 | 〃 | 〃 |
|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검찰부이사관 | 이환규 | 〃 | 〃 |
| | 의정부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김형수 | 〃 | 〃 |
| | 의정부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이창영 | 〃 | 〃 |
| | 법무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윤경식 | 2015.10.28 | 교정의날 유공 |
| | 서울고등검찰청 | 검사 | 김영태 | 2015.12.30 | 검찰업무수행 유공 |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 인천지방검찰청 | 검사 | 오정돈 | 2015.12.30 | 검찰업무수행 유공 |
| | 법무연수원 | 일반직고위공무원 | 최덕 | 2015.12.31 | 하반기 퇴직자 포상 |
|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일반직고위공무원 | 박찬호 | 〃 | 〃 |
| | 창원교도소 | 일반직고위공무원 | 김준겸 | 〃 | 〃 |
| | 해남교도소 | 부이사관 | 성병훈 | 〃 | 〃 |
| | 수원구치소 | 일반직고위공무원 | 최효숙 | 〃 | 〃 |
|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부이사관 | 김종인 | 〃 | 〃 |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양문호 | 〃 | 〃 |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검찰부이사관 | 최정환 | 〃 | 〃 |
|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 양승각 | 〃 | 〃 |
| | 울산지방검찰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 서무완 | 〃 | 〃 |
|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 김정 | 〃 | 〃 |
| |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 검찰부이사관 | 이종완 | 〃 | 〃 |
|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 신태선 | 〃 | 〃 |
|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 김상수 | 〃 | 〃 |
| 녹조근정훈장 | 경북북부제1교도소 | 공업사무관 | 오명덕 | 2015.06.30 | 상반기 퇴직자 포상 |
| |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정관 | 김장한 | 〃 | 〃 |
| |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정관 | 김재완 | 〃 | 〃 |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정관 | 권혁래 | 〃 | 〃 |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정관 | 손민달 | 〃 | 〃 |
| | 경주교도소 | 교정관 | 박홍근 | 〃 | 〃 |
| | 공주교도소 | 교정관 | 정상동 | 〃 | 〃 |
| | 광주교도소 | 교정관 | 고은숙 | 〃 | 〃 |
| | 광주교도소 | 교정관 | 김인환 | 〃 | 〃 |
|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검찰사무관 | 오기철 | 〃 | 〃 |
| | 광주지방교정청 | 서기관 | 김길성 | 〃 | 〃 |
| | 군산교도소 | 교정관 | 백홍기 | 〃 | 〃 |
| | 군산교도소 | 교정관 | 이숙자 | 〃 | 〃 |
| | 김천소년교도소 | 교정관 | 조규종 | 〃 | 〃 |
| | 대구구치소 | 교정관 | 김규대 | 〃 | 〃 |
| | 대구구치소 | 교정관 | 오형환 | 〃 | 〃 |
| | 대구구치소 | 교정관 | 이희종 | 〃 | 〃 |
| |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 검찰사무관 | 이명우 | 〃 | 〃 |
| | 대구지방교정청 | 서기관 | 오재돌 | 〃 | 〃 |
| | 대구지방교정청 | 서기관 | 황성환 | 〃 | 〃 |
| | 대전교도소 | 교정관 | 변혜숙 | 〃 | 〃 |
| | 대전교도소 | 교정관 | 성양경 | 〃 | 〃 |
| | 대전교도소 | 교정관 | 오홍진 | 〃 | 〃 |
| | 대전교도소 | 교정관 | 정봉조 | 〃 | 〃 |
| | 대전교도소 | 교정관 | 조선순 | 〃 | 〃 |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정관 | 배관수 | 2015.06.30 | 상반기 퇴직자 포상 |
|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정관 | 이경인 | 〃 | 〃 |
|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정관 | 임승균 | 〃 | 〃 |
| | 목포교도소 | 교정관 | 나종길 | 〃 | 〃 |
| | 목포교도소 | 서기관 | 전승옥 | 〃 | 〃 |
| | 대구소년원 | 보호사무관 | 남영섭 | 〃 | 〃 |
| |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 보호사무관 | 황인권 | 〃 | 〃 |
| | 부산보호관찰소 | 보호사무관 | 김동영 | 〃 | 〃 |
| |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 서기관 | 송홍담 | 〃 | 〃 |
| | 제주소년원 | 서기관 | 고이봉 | 〃 | 〃 |
| |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 | 보호사무관 | 강종한 | 〃 | 〃 |
| | 부산교도소 | 교정관 | 갈상찬 | 〃 | 〃 |
| | 부산교도소 | 교정관 | 김무수 | 〃 | 〃 |
| | 부산교도소 | 교정관 | 박병근 | 〃 | 〃 |
| | 부산구치소 | 교정관 | 구우진 | 〃 | 〃 |
| | 부산구치소 | 교정관 | 남채용 | 〃 | 〃 |
| | 부산구치소 | 교정관 | 배수복 | 〃 | 〃 |
| | 부산구치소 | 교정관 | 성원영 | 〃 | 〃 |
|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 검찰수사서기관 | 최석두 | 〃 | 〃 |
| | 상주교도소 | 교정관 | 손태한 | 〃 | 〃 |
| | 상주교도소 | 교정관 | 최동호 | 〃 | 〃 |
| | 서울구치소 | 기술서기관 | 김충열 | 〃 | 〃 |
| | 서울구치소 | 교정관 | 박춘용 | 〃 | 〃 |
| | 서울구치소 | 교정관 | 이형우 | 〃 | 〃 |
| | 서울남부교도소 | 교정관 | 손종주 | 〃 | 〃 |
| | 서울남부교도소 | 서기관 | 송인섭 | 〃 | 〃 |
| | 서울남부교도소 | 교정관 | 양영도 | 〃 | 〃 |
| | 서울남부구치소 | 교정관 | 김병욱 | 〃 | 〃 |
| | 서울남부구치소 | 교정관 | 전인호 | 〃 | 〃 |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검찰사무관 | 이상호 | 〃 | 〃 |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검찰사무관 | 박종원 | 〃 | 〃 |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검찰사무관 | 추중화 | 〃 | 〃 |
| | 성동구치소 | 교정관 | 김장호 | 〃 | 〃 |
| | 성동구치소 | 교정관 | 양승택 | 〃 | 〃 |
| | 성동구치소 | 교정관 | 이기만 | 〃 | 〃 |
| | 성동구치소 | 교정관 | 전영종 | 〃 | 〃 |
| | 수원구치소 | 교정관 | 권혁원 | 〃 | 〃 |
| | 수원구치소 | 교정관 | 윤여손 | 〃 | 〃 |
| | 수원구치소 | 교정관 | 조기수 | 〃 | 〃 |
|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검찰수사서기관 | 조성현 | 〃 | 〃 |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 순천교도소 | 교정관 | 안경선 | 2015.06.30 | 상반기 퇴직자 포상 |
| | 순천교도소 | 교정관 | 이현순 | 〃 | 〃 |
| | 안동교도소 | 교정관 | 박진구 | 〃 | 〃 |
| | 안양교도소 | 교정관 | 박기봉 | 〃 | 〃 |
| | 울산구치소 | 교정관 | 박광환 | 〃 | 〃 |
| | 원주교도소 | 교정관 | 박대산 | 〃 | 〃 |
| | 인천구치소 | 교정관 | 유화영 | 〃 | 〃 |
| | 인천구치소 | 교정관 | 황구연 | 〃 | 〃 |
|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관리사무관 | 한석연 | 〃 | 〃 |
| | 장흥교도소 | 서기관 | 윤재권 | 〃 | 〃 |
| | 前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관리사무관 | 조경 | 〃 | 〃 |
| | 전주교도소 | 교정관 | 이강만 | 〃 | 〃 |
| | 진주교도소 | 교정관 | 이상권 | 〃 | 〃 |
| | 창원교도소 | 교정관 | 강해수 | 〃 | 〃 |
| | 창원교도소 | 교정관 | 권오복 | 〃 | 〃 |
| | 창원교도소 | 교정관 | 김종우 | 〃 | 〃 |
| | 창원교도소 | 교정관 | 천병일 | 〃 | 〃 |
| | 천안개방교도소 | 교정관 | 김정구 | 〃 | 〃 |
| | 천안개방교도소 | 교정관 | 박영태 | 〃 | 〃 |
| | 천안개방교도소 | 교정관 | 이재현 | 〃 | 〃 |
| | 천안교도소 | 교정관 | 김순채 | 〃 | 〃 |
| | 천안교도소 | 교정관 | 김원오 | 〃 | 〃 |
| | 천안교도소 | 교정관 | 장홍기 | 〃 | 〃 |
| | 청주교도소 | 교정관 | 최창종 | 〃 | 〃 |
| | 청주지방검찰청 | 방송통신사무관 | 함재하 | 〃 | 〃 |
| | 춘천교도소 | 교정관 | 김기상 | 〃 | 〃 |
| | 춘천교도소 | 교정관 | 이수천 | 〃 | 〃 |
| | 춘천교도소 | 서기관 | 이태식 | 〃 | 〃 |
|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 서기관 | 이정우 | 〃 | 〃 |
| | 통영구치소 | 교정관 | 김홍남 | 〃 | 〃 |
| | 포항교도소 | 교정관 | 손양원 | 〃 | 〃 |
| | 포항교도소 | 교정관 | 윤종휘 | 〃 | 〃 |
| | 해남교도소 | 교정관 | 김재기 | 〃 | 〃 |
| | 홍성교도소 | 서기관 | 김명곤 | 〃 | 〃 |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정관 | 김진섭 | 〃 | 〃 |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정관 | 형봉기 | 〃 | 〃 |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정관 | 홍기병 | 〃 | 〃 |
| |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서기관(일반임기제) | 정만영 | 2015.12.31 | 하반기퇴직자포상 |
| |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서기관(일반임기제) | 김경복 | 〃 | 〃 |
| |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서기관(일반임기제) | 이호근 | 〃 | 〃 |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 법무부 제주소년원 | 보호사무관 | 김태호 | 2015.12.31 | 하반기퇴직자포상 |
|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관리사무관 | 이형구 | 〃 | 〃 |
| | 법무부 서울소년원 | 보호사무관 | 고광설 | 〃 | 〃 |
| | 대구구치소 | 교정관 | 서정각 | 〃 | 〃 |
| | 진주교도소 | 교정관 | 김훈진 | 〃 | 〃 |
| | 경주교도소 | 교정관 | 최원상 | 〃 | 〃 |
| | 부산구치소 | 교정관 | 김형국 | 〃 | 〃 |
| | 포항교도소 | 서기관 | 김종국 | 〃 | 〃 |
| | 밀양구치소 | 교정관 | 이양열 | 〃 | 〃 |
| | 김천소년교도소 | 교정관 | 박태근 | 〃 | 〃 |
| | 김천소년교도소 | 교정관 | 이병철 | 〃 | 〃 |
| | 공주교도소 | 교정관 | 김선혜 | 〃 | 〃 |
| | 충주구치소 | 교정관 | 신영수 | 〃 | 〃 |
| | 목포교도소 | 교정관 | 신충호 | 〃 | 〃 |
| | 장흥교도소 | 교정관 | 이선희 | 〃 | 〃 |
| | 해남교도소 | 서기관 | 임찬섭 | 〃 | 〃 |
| | 해남교도소 | 교정관 | 공공수 | 〃 | 〃 |
| | 해남교도소 | 교정관 | 강명원 | 〃 | 〃 |
| | 대구교도소 | 교정관 | 공영대 | 〃 | 〃 |
| | 대구교도소 | 교정관 | 김영한 | 〃 | 〃 |
| | 대전교도소 | 교정관 | 백우현 | 〃 | 〃 |
| | 대전교도소 | 교정관 | 김정하 | 〃 | 〃 |
| | 안동교도소 | 교정관 | 전윤수 | 〃 | 〃 |
| | 안동교도소 | 교정관 | 장재덕 | 〃 | 〃 |
|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관리사무관 | 김재천 | 〃 | 〃 |
|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관리사무관 | 김홍근 | 〃 | 〃 |
| | 안양교도소 | 교정관 | 김병관 | 〃 | 〃 |
| | 안양교도소 | 교정관 | 조봉환 | 〃 | 〃 |
| | 안양교도소 | 교정관 | 방극창 | 〃 | 〃 |
| | 안양교도소 | 교정관 | 이학순 | 〃 | 〃 |
| | 안양교도소 | 교정관 | 강부식 | 〃 | 〃 |
| | 안양교도소 | 교정관 | 조광현 | 〃 | 〃 |
| | 의정부교도소 | 교정관 | 하장수 | 〃 | 〃 |
| | 원주교도소 | 교정관 | 심우민 | 〃 | 〃 |
| | 인천구치소 | 교정관 | 김종섭 | 〃 | 〃 |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정관 | 김영복 | 〃 | 〃 |
| | 김천소년교도소 | 교정관 | 김갑진 | 〃 | 〃 |
| |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정관 | 최용수 | 〃 | 〃 |
| |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정관 | 박경식 | 〃 | 〃 |
| | 서울남부교도소 | 교정관 | 이수곤 | 〃 | 〃 |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 서울남부교도소 | 교정관 | 박남수 | 2015.12.31 | 하반기퇴직자포상 |
| | 서울남부구치소 | 교정관 | 박삼남 | 〃 | 〃 |
| | 서울남부구치소 | 교정관 | 김관부 | 〃 | 〃 |
| | 대구고등검찰청 | 공업사무관 | 조순철 | 〃 | 〃 |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마약수사사무관 | 김래인 | 〃 | 〃 |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검찰수사서기관 | 임창빈 | 〃 | 〃 |
|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검찰사무관 | 손진태 | 〃 | 〃 |
| | 부산지방검찰청 | 검찰사무관 | 이상철 | 〃 | 〃 |
| | 광주지방검찰청 | 검찰사무관 | 임병택 | 〃 | 〃 |
|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방송통신사무관 | 조학기 | 〃 | 〃 |
| | 대전지방검찰청 | 검찰사무관 | 이종담 | 〃 | 〃 |
| |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 검찰수사서기관 | 양상승 | 〃 | 〃 |
| | 청주지방검찰청 | 검찰사무관 | 김형걸 | 〃 | 〃 |
| | 청주지방검찰청 | 검찰수사서기관 | 이두영 | 〃 | 〃 |
|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 검찰사무관 | 황현철 | 〃 | 〃 |
| | 전주지방검찰청 | 검찰수사서기관 | 조병모 | 〃 | 〃 |
| | 대검찰청 | 방송통신사무관 | 심정용 | 〃 | 〃 |
| 옥조근정훈장 | 강릉교도소 | 교위 | 신재갑 | 2015.06.30 | 상반기 퇴직자 포상 |
| | 강릉교도소 | 교감 | 유완식 | 〃 | 〃 |
| | 강릉교도소 | 교위 | 이태호 | 〃 | 〃 |
| | 강릉교도소 | 교위 | 전제환 | 〃 | 〃 |
| |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감 | 홍성웅 | 〃 | 〃 |
| |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위 | 권태신 | 〃 | 〃 |
| |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감 | 도기인 | 〃 | 〃 |
| |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감 | 조주열 | 〃 | 〃 |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전문경력관 나군 | 김영주 | 〃 | 〃 |
| | 경주교도소 | 교감 | 김영철 | 〃 | 〃 |
| | 경주교도소 | 교감 | 박익균 | 〃 | 〃 |
| | 경주교도소 | 운전주사보 | 이운우 | 〃 | 〃 |
| | 공주교도소 | 교위 | 모병진 | 〃 | 〃 |
| | 공주교도소 | 간호주사 | 윤종덕 | 〃 | 〃 |
| | 광주교도소 | 교위 | 김귀환 | 〃 | 〃 |
| | 광주교도소 | 교감 | 김생재 | 〃 | 〃 |
| | 광주교도소 | 전문경력관 나군 | 김제옥 | 〃 | 〃 |
| | 광주교도소 | 교위 | 안종섭 | 〃 | 〃 |
| | 광주교도소 | 교감 | 황필연 | 〃 | 〃 |
| | 광주지방검찰청 | 검찰주사 | 김용준 | 〃 | 〃 |
| | 김천소년교도소 | 교감 | 엄기병 | 〃 | 〃 |
| |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 조삼곤 | 〃 | 〃 |
| | 김천소년교도소 | 교감 | 현재송 | 〃 | 〃 |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 대검찰청 | 방호주사보 | 김석주 | 2015.06.30 | 상반기 퇴직자 포상 |
| | 대구고등검찰청 | 공업주사보 | 도우회 | 〃 | 〃 |
| | 대구교도소 | 교위 | 김수일 | 〃 | 〃 |
| | 대구교도소 | 교위 | 김수일 | 〃 | 〃 |
| | 대구교도소 | 교위 | 김일수 | 〃 | 〃 |
| | 대구교도소 | 교감 | 박필현 | 〃 | 〃 |
| | 대구교도소 | 교위 | 서상준 | 〃 | 〃 |
| | 대구교도소 | 교위 | 이선훈 | 〃 | 〃 |
| | 대구교도소 | 교위 | 장병탁 | 〃 | 〃 |
| | 대구구치소 | 교감 | 김경신 | 〃 | 〃 |
| | 대구구치소 | 교위 | 김영석 | 〃 | 〃 |
| | 대구구치소 | 교감 | 이창식 | 〃 | 〃 |
| | 대구구치소 | 교위 | 전성도 | 〃 | 〃 |
| | 대구구치소 | 교감 | 정병출 | 〃 | 〃 |
| | 대구구치소 | 교감 | 조병규 | 〃 | 〃 |
| | 대전교도소 | 교감 | 김기홍 | 〃 | 〃 |
| | 대전교도소 | 교감 | 이희서 | 〃 | 〃 |
| | 대전교도소 | 교위 | 진순주 | 〃 | 〃 |
|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 검찰주사 | 김성환 | 〃 | 〃 |
| | 목포교도소 | 교감 | 구자민 | 〃 | 〃 |
| | 목포교도소 | 교감 | 최화선 | 〃 | 〃 |
| | 법무부 | 운전주사보 | 김상용 | 〃 | 〃 |
| | 대구소년원 | 운전주사보 | 김윤근 | 〃 | 〃 |
| | 치료감호소 | 운전주사보 | 이주석 | 〃 | 〃 |
| | 부산교도소 | 교감 | 공정술 | 〃 | 〃 |
| | 부산교도소 | 교감 | 구문회 | 〃 | 〃 |
| | 부산교도소 | 교감 | 정근동 | 〃 | 〃 |
| | 부산교도소 | 교감 | 정정곤 | 〃 | 〃 |
| | 부산구치소 | 교감 | 이삼호 | 〃 | 〃 |
| | 서울구치소 | 교감 | 김양규 | 〃 | 〃 |
| | 서울구치소 | 교위 | 김점수 | 〃 | 〃 |
| | 서울구치소 | 교감 | 김주현 | 〃 | 〃 |
| | 서울구치소 | 교감 | 류지선 | 〃 | 〃 |
| | 서울구치소 | 사무운영주사보 | 변계수 | 〃 | 〃 |
| | 서울구치소 | 교감 | 서효택 | 〃 | 〃 |
| | 서울구치소 | 교감 | 이명호 | 〃 | 〃 |
| | 서울남부교도소 | 교감 | 김석중 | 〃 | 〃 |
| | 서울남부교도소 | 교위 | 김승호 | 〃 | 〃 |
| | 서울남부교도소 | 교감 | 박형식 | 〃 | 〃 |
| | 서울남부교도소 | 교위 | 이영복 | 〃 | 〃 |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 서울남부교도소 | 교위 | 이종하 | 2015.06.30 | 상반기 퇴직자 포상 |
| | 서울남부교도소 | 기계운영주사 | 홍성도 | 〃 | 〃 |
| | 서울남부구치소 | 교감 | 강경남 | 〃 | 〃 |
| | 서울남부구치소 | 교감 | 강석원 | 〃 | 〃 |
| | 서울남부구치소 | 교감 | 강석주 | 〃 | 〃 |
| | 서울남부구치소 | 교감 | 김수길 | 〃 | 〃 |
| |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 김일호 | 〃 | 〃 |
| | 서울남부구치소 | 교감 | 도석홍 | 〃 | 〃 |
| | 서울남부구치소 | 교감 | 신영호 | 〃 | 〃 |
| |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 이재교 | 〃 | 〃 |
| | 서울남부구치소 | 교감 | 임택섭 | 〃 | 〃 |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사무운영주사보 | 황호 | 〃 | 〃 |
|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사무운영주사 | 김숙영 | 〃 | 〃 |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사무운영주사 | 안필자 | 〃 | 〃 |
| | 성동구치소 | 교감 | 강종구 | 〃 | 〃 |
| | 성동구치소 | 교감 | 김세진 | 〃 | 〃 |
| | 성동구치소 | 교위 | 나상균 | 〃 | 〃 |
| | 성동구치소 | 교감 | 박팔근 | 〃 | 〃 |
| | 성동구치소 | 교위 | 신완식 | 〃 | 〃 |
| | 성동구치소 | 교감 | 오정근 | 〃 | 〃 |
| | 성동구치소 | 교감 | 위성칠 | 〃 | 〃 |
| | 성동구치소 | 교감 | 이근주 | 〃 | 〃 |
| | 성동구치소 | 교위 | 이성도 | 〃 | 〃 |
| | 성동구치소 | 교감 | 정춘택 | 〃 | 〃 |
| | 수원구치소 | 교감 | 김석영 | 〃 | 〃 |
| | 수원구치소 | 운전서기 | 박동식 | 〃 | 〃 |
| | 수원구치소 | 교위 | 윤용병 | 〃 | 〃 |
| | 수원구치소 | 교위 | 이성재 | 〃 | 〃 |
| | 수원지방검찰청 | 검찰주사 | 김성기 | 〃 | 〃 |
| | 순천교도소 | 교위 | 김덕관 | 〃 | 〃 |
| | 순천교도소 | 교위 | 김재중 | 〃 | 〃 |
| | 순천교도소 | 교감 | 임기호 | 〃 | 〃 |
| | 순천교도소 | 교감 | 조규도 | 〃 | 〃 |
| | 안동교도소 | 교감 | 강병인 | 〃 | 〃 |
| | 안동교도소 | 교감 | 배인섭 | 〃 | 〃 |
| | 안동교도소 | 교위 | 송종호 | 〃 | 〃 |
| | 안동교도소 | 교감 | 우수성 | 〃 | 〃 |
| | 안동교도소 | 교감 | 임채문 | 〃 | 〃 |
| | 안양교도소 | 교감 | 김광호 | 〃 | 〃 |
| | 안양교도소 | 교위 | 김종하 | 〃 | 〃 |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 여주교도소 | 교감 | 원영운 | 2015.06.30 | 상반기 퇴직자 포상 |
| | 영월교도소 | 교감 | 박영국 | 〃 | 〃 |
| | 울산구치소 | 교감 | 강성용 | 〃 | 〃 |
| | 원주교도소 | 교감 | 고경만 | 〃 | 〃 |
| | 원주교도소 | 교감 | 김영수 | 〃 | 〃 |
| | 원주교도소 | 교감 | 김찬기 | 〃 | 〃 |
| | 원주교도소 | 교감 | 이미자 | 〃 | 〃 |
| | 의정부교도소 | 교감 | 이종열 | 〃 | 〃 |
| | 의정부교도소 | 교감 | 정영철 | 〃 | 〃 |
|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관리주사 | 강동화 | 〃 | 〃 |
|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관리주사 | 김태왕 | 〃 | 〃 |
| | 인천구치소 | 교감 | 김범선 | 〃 | 〃 |
| | 인천구치소 | 교감 | 안영준 | 〃 | 〃 |
| | 인천구치소 | 교위 | 왕영표 | 〃 | 〃 |
| | 인천구치소 | 교감 | 이광호 | 〃 | 〃 |
| | 인천구치소 | 교감 | 이규남 | 〃 | 〃 |
|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관리주사 | 김홍겸 | 〃 | 〃 |
| | 장흥교도소 | 교감 | 김영복 | 〃 | 〃 |
| | 장흥교도소 | 교위 | 박영식 | 〃 | 〃 |
| | 장흥교도소 | 교위 | 이봉래 | 〃 | 〃 |
| | 서울남부교도소 | 교감 | 故 권혁 | 〃 | 〃 |
| | 전주교도소 | 교감 | 강근배 | 〃 | 〃 |
| | 전주교도소 | 교감 | 김연택 | 〃 | 〃 |
| | 전주교도소 | 전문경력관 나군 | 이해원 | 〃 | 〃 |
| | 전주교도소 | 교위 | 전형근 | 〃 | 〃 |
| | 전주지방검찰청 | 운전주사보 | 이근희 | 〃 | 〃 |
| | 제주교도소 | 교위 | 양영보 | 〃 | 〃 |
| | 제주교도소 | 교위 | 조성천 | 〃 | 〃 |
| | 진주교도소 | 교감 | 민도섭 | 〃 | 〃 |
| | 창원교도소 | 교감 | 김상용 | 〃 | 〃 |
| | 창원교도소 | 교감 | 김용이 | 〃 | 〃 |
| | 창원교도소 | 교감 | 김재조 | 〃 | 〃 |
| | 창원교도소 | 교위 | 박철도 | 〃 | 〃 |
|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전화상담운영주사보 | 박정순 | 〃 | 〃 |
| | 천안개방교도소 | 기계운영주사 | 강대구 | 〃 | 〃 |
| | 천안개방교도소 | 교감 | 석원덕 | 〃 | 〃 |
| | 천안개방교도소 | 교감 | 이충희 | 〃 | 〃 |
| | 천안교도소 | 교감 | 곽호선 | 〃 | 〃 |
| | 천안교도소 | 교감 | 김기운 | 〃 | 〃 |
| | 천안교도소 | 교감 | 김대보 | 〃 | 〃 |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 천안교도소 | 교감 | 박귀열 | 2015.06.30 | 상반기 퇴직자 포상 |
| | 천안교도소 | 교위 | 박무호 | 〃 | 〃 |
| | 천안교도소 | 교감 | 옥해석 | 〃 | 〃 |
| | 천안교도소 | 교감 | 이상구 | 〃 | 〃 |
| | 천안교도소 | 교위 | 이수완 | 〃 | 〃 |
| | 천안교도소 | 교감 | 이행철 | 〃 | 〃 |
| | 천안교도소 | 교감 | 장경수 | 〃 | 〃 |
| | 청주교도소 | 교위 | 김규식 | 〃 | 〃 |
| | 청주교도소 | 교감 | 김대렬 | 〃 | 〃 |
| | 청주교도소 | 교위 | 김연근 | 〃 | 〃 |
| | 청주교도소 | 교위 | 김원배 | 〃 | 〃 |
| | 청주교도소 | 교감 | 박만섭 | 〃 | 〃 |
| | 청주교도소 | 교감 | 박선우 | 〃 | 〃 |
| | 청주교도소 | 교감 | 박종길 | 〃 | 〃 |
| | 청주교도소 | 교감 | 이윤희 | 〃 | 〃 |
| | 청주교도소 | 교위 | 정경진 | 〃 | 〃 |
| | 청주교도소 | 교감 | 채문종 | 〃 | 〃 |
| | 춘천교도소 | 교감 | 김성광 | 〃 | 〃 |
| | 춘천교도소 | 교감 | 박세범 | 〃 | 〃 |
| | 춘천교도소 | 교감 | 허남길 | 〃 | 〃 |
| | 춘천지방검찰청 | 사무운영주사 | 서한정 | 〃 | 〃 |
|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검찰주사 | 최유진 | 〃 | 〃 |
| | 충주구치소 | 교감 | 김운식 | 〃 | 〃 |
| | 통영구치소 | 교감 | 최일삼 | 〃 | 〃 |
| | 포항교도소 | 교감 | 강돈기 | 〃 | 〃 |
| | 포항교도소 | 교감 | 서경석 | 〃 | 〃 |
| | 홍성교도소 | 교위 | 고광철 | 〃 | 〃 |
| | 홍성교도소 | 교감 | 임만택 | 〃 | 〃 |
| | 홍성교도소 | 교감 | 최현종 | 〃 | 〃 |
| | 홍성교도소 | 교감 | 한의전 | 〃 | 〃 |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감 | 박종선 | 〃 | 〃 |
| | 법무부 부산소년원 | 전문경력관 나군 | 송재신 | 2015.12.31 | 하반기퇴직자포상 |
|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관리주사 | 김태식 | 〃 | 〃 |
|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관리주사 | 이양연 | 〃 | 〃 |
|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관리주사 | 신관식 | 〃 | 〃 |
| | 부산교도소 | 교감 | 박선훈 | 〃 | 〃 |
| | 부산교도소 | 교감 | 박금하 | 〃 | 〃 |
| | 부산교도소 | 교감 | 임채원 | 〃 | 〃 |
| | 부산교도소 | 교감 | 김재연 | 〃 | 〃 |
| | 부산교도소 | 교감 | 강정규 | 〃 | 〃 |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 부산교도소 | 교감 | 유재정 | 2015.12.31 | 하반기퇴직자포상 |
| | 부산교도소 | 교위 | 김명수 | 〃 | 〃 |
| | 부산교도소 | 교위 | 박종택 | 〃 | 〃 |
| | 대구구치소 | 교감 | 임영출 | 〃 | 〃 |
| | 대구구치소 | 교위 | 장대천 | 〃 | 〃 |
| | 경주교도소 | 교감 | 박창식 | 〃 | 〃 |
| | 경주교도소 | 교감 | 문상명 | 〃 | 〃 |
| | 경주교도소 | 교위 | 김창룡 | 〃 | 〃 |
| | 부산구치소 | 교감 | 김종정 | 〃 | 〃 |
| | 부산구치소 | 교위 | 이종철 | 〃 | 〃 |
| | 부산구치소 | 교위 | 조종철 | 〃 | 〃 |
| | 부산구치소 | 교위 | 김선남 | 〃 | 〃 |
| | 통영구치소 | 교감 | 고성철 | 〃 | 〃 |
| | 포항교도소 | 교감 | 김명숙 | 〃 | 〃 |
| | 김천소년교도소 | 교감 | 김한용 | 〃 | 〃 |
| |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 민홍일 | 〃 | 〃 |
| |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 최성학 | 〃 | 〃 |
| | 창원교도소 | 간호주사 | 안병한 | 〃 | 〃 |
| | 대전교도소 | 교감 | 이은구 | 〃 | 〃 |
| | 청주교도소 | 교감 | 김봉환 | 〃 | 〃 |
| | 천안개방교도소 | 교감 | 김선팔 | 〃 | 〃 |
| | 전주교도소 | 교감 | 염영래 | 〃 | 〃 |
| | 목포교도소 | 교감 | 김상현 | 〃 | 〃 |
| | 목포교도소 | 교위 | 송복철 | 〃 | 〃 |
| | 순천교도소 | 교감 | 임백규 | 〃 | 〃 |
| | 순천교도소 | 교감 | 문종석 | 〃 | 〃 |
| | 순천교도소 | 교감 | 김성태 | 〃 | 〃 |
| | 순천교도소 | 운전주사보 | 강영수 | 〃 | 〃 |
| | 제주교도소 | 교감 | 전현곤 | 〃 | 〃 |
| | 장흥교도소 | 교위 | 조경 | 〃 | 〃 |
| | 해남교도소 | 교감 | 최운기 | 〃 | 〃 |
| | 해남교도소 | 교감 | 김기성 | 〃 | 〃 |
| | 대구교도소 | 교감 | 채종일 | 〃 | 〃 |
| | 대구교도소 | 교감 | 김병윤 | 〃 | 〃 |
| | 대구교도소 | 교감 | 김정록 | 〃 | 〃 |
| | 대전교도소 | 교감 | 윤남중 | 〃 | 〃 |
| | 대전교도소 | 교감 | 권영희 | 〃 | 〃 |
| | 대전교도소 | 교감 | 박종관 | 〃 | 〃 |
| | 대전교도소 | 교감 | 김성규 | 〃 | 〃 |
| | 광주교도소 | 교감 | 서광식 | 〃 | 〃 |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 광주교도소 | 교감 | 문천주 | 2015.12.31 | 하반기퇴직자포상 |
| | 안동교도소 | 교감 | 김종출 | 〃 | 〃 |
| | 안동교도소 | 교감 | 서화수 | 〃 | 〃 |
| | 청주여자교도소 | 운전주사보 | 박경수 | 〃 | 〃 |
| | 서울구치소 | 교감 | 박윤희 | 〃 | 〃 |
| | 서울구치소 | 교위 | 김동명 | 〃 | 〃 |
| | 서울구치소 | 교위 | 문태전 | 〃 | 〃 |
| | 수원구치소 | 교감 | 임일권 | 〃 | 〃 |
| | 수원구치소 | 교감 | 윤재길 | 〃 | 〃 |
| | 수원구치소 | 교위 | 소종호 | 〃 | 〃 |
| | 수원구치소 | 교위 | 한승복 | 〃 | 〃 |
| | 수원구치소 | 교위 | 홍순동 | 〃 | 〃 |
| | 울산구치소 | 교감 | 이창배 | 〃 | 〃 |
|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관리주사 | 천성원 | 〃 | 〃 |
| | 안양교도소 | 교감 | 서홍석 | 〃 | 〃 |
| | 안양교도소 | 교감 | 노희석 | 〃 | 〃 |
| | 안양교도소 | 간호주사 | 배기철 | 〃 | 〃 |
| | 의정부교도소 | 교감 | 김인호 | 〃 | 〃 |
| | 의정부교도소 | 교감 | 반춘기 | 〃 | 〃 |
| | 의정부교도소 | 전기운영주사 | 전영은 | 〃 | 〃 |
| | 춘천교도소 | 교감 | 유덕상 | 〃 | 〃 |
| | 춘천교도소 | 교감 | 박명수 | 〃 | 〃 |
| | 춘천교도소 | 교감 | 조동형 | 〃 | 〃 |
| | 원주교도소 | 교감 | 남병재 | 〃 | 〃 |
| | 강릉교도소 | 교감 | 황인규 | 〃 | 〃 |
| | 강릉교도소 | 교위 | 이병윤 | 〃 | 〃 |
| | 강릉교도소 | 교감 | 최윤식 | 〃 | 〃 |
| | 성동구치소 | 교감 | 이정자 | 〃 | 〃 |
| | 인천구치소 | 교감 | 양한용 | 〃 | 〃 |
| | 인천구치소 | 교위 | 최경록 | 〃 | 〃 |
| | 법무부 | 사무운영주사보 | 김용희 | 〃 | 〃 |
| | 영월교도소 | 교감 | 허옥 | 〃 | 〃 |
| | 천안교도소 | 교위 | 김학봉 | 〃 | 〃 |
| |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감 | 양윤모 | 〃 | 〃 |
| |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감 | 진수근 | 〃 | 〃 |
| | 서울남부교도소 | 교감 | 이재윤 | 〃 | 〃 |
| | 서울남부교도소 | 전문경력관 나군 | 김충섭 | 〃 | 〃 |
| | 서울남부구치소 | 교감 | 이관준 | 〃 | 〃 |
| |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 김재권 | 〃 | 〃 |
| |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 박종남 | 〃 | 〃 |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 배형종 | 2015.12.31 | 하반기퇴직자포상 |
| |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 이정호 | 〃 | 〃 |
| |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 정상수 | 〃 | 〃 |
| |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 이현철 | 〃 | 〃 |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사무운영주사보 | 김순덕 | 〃 | 〃 |
| | 의정부지방검찰청 | 사무운영주사 | 이정국 | 〃 | 〃 |
| | 부산지방검찰청 | 사무운영주사보 | 이호운 | 〃 | 〃 |
| | 울산지방검찰청 | 전화상담운영주사보 | 류태희 | 〃 | 〃 |
| | 제주지방검찰청 | 검찰주사 | 현권남 | 〃 | 〃 |
|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검찰주사 | 한우석 | 〃 | 〃 |
|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 검찰주사 | 김병호 | 〃 | 〃 |
| | 창원지방검찰청 | 운전주사보 | 이문열 | 〃 | 〃 |
|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검찰주사 | 공성식 | 〃 | 〃 |

○ **외부인사 및 단체**

(2015. 1. ~ 12.)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국민훈장무궁화장 | 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 권광중 | 2015.04.24 | 법의날 유공 |
| 국민훈장모란장 | 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 | 위원 | 신정택 | 2015.09.11 | 범죄예방자원봉사 |
| 국민훈장동백장 |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 법무사 | 주명식 | 2015.04.24 | 법의날 유공 |
| | 법사랑위원 안양지역연합회 | 위원 | 장만복 | 2015.09.11 | 범죄예방자원봉사 |
| | 군산교도소 | 교정위원 | 성광문 | 2015.10.28 | 교정의날 유공 |
| 국민훈장목련장 | 법사랑위원 서울북부지역연합회 | 위원 | 김광식 | 2015.09.11 | 범죄예방자원봉사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자문위원 | 임영현 | 2015.11.18 | 갱생보호지원 유공 |
| 국민훈장석류장 | 법사랑위원 의성지역연합회 | 위원 | 권오영 | 2015.09.11 | 범죄예방자원봉사 |
| 홍조근정훈장 | 동아대학교 | 교수 | 정만희 | 2015.04.24 | 법의날 유공 |
| 국민훈장동백장 |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 법무사 | 주명식 | 2015.04.24 | 법의날 유공 |
| | 법사랑위원 안양지역연합회 | 위원 | 장만복 | 2015.09.11 | 범죄예방자원봉사 |
| | 군산교도소 | 교정위원 | 성광문 | 2015.10.28 | 교정의날 유공 |
| 국민훈장목련장 | 법사랑위원 서울북부지역연합회 | 위원 | 김광식 | 2015.09.11 | 범죄예방자원봉사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자문위원 | 임영현 | 2015.11.18 | 갱생보호지원 유공 |
| 국민훈장석류장 | 법사랑위원 의성지역연합회 | 위원 | 권오영 | 2015.09.11 | 범죄예방자원봉사 |
| 국민포장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 지부장 | 윤용민 | 2015.04.24 | 법의날 유공 |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 법사랑위원 고양지역연합회 | 위원 | 김정임 | 2015.09.11 | 범죄예방자원봉사 |
| | 법사랑위원 춘천지역연합회 | 위원 | 연제철 | 〃 | 〃 |
| |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 | 위원 | 최선임 | 〃 | 〃 |
| |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 | 위원 | 이년호 | 〃 | 〃 |
| | 법사랑위원 울산지역연합회 | 위원 | 최현만 | 〃 | 〃 |
| |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 위원 | 안윤근 | 〃 | 〃 |
| | 춘천교도소 | 교정위원 | 전호철 | 2015.10.28 | 교정의날 유공 |
| |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정위원 | 김명조 | 〃 | 〃 |
| | 공주교도소 | 교정위원 | 이은경 | 〃 | 〃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 | 보호위원 | 김태근 | 2015.11.18 | 갱생보호지원 유공 |
| | (사)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이사장 | 이혁영 | 2015.12.10 | 범죄피해자보호지원 |
| 대통령표창 | 경북북부제1교도소교정위원회 | 교정위원 | 이병우 | 2015.04.24 | 법의날 유공 |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범죄통계조사센터장 | 김지영 | 〃 | 〃 |
| |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 대표 | 보르도비첸시아 | 2015.05.20 | 세계인의날 유공 |
| | (사)푸른사람들 | | | 〃 | 〃 |
| | 법사랑위원여주지역연합회 | 위원 | 안용호 | 2015.09.11 | 범죄예방자원봉사 |
| | 법사랑위원 인천지역연합회 | 위원 | 최향숙 | 〃 | 〃 |
| | 법사랑위원 제주지역연합회 | 위원 | 김택주 | 〃 | 〃 |
| | 법사랑위원 대구서부지역연합회 | 위원 | 조영욱 | 〃 | 〃 |
| | 법사랑위원 부산동부지역연합회 | 위원 | 최평윤 | 〃 | 〃 |
| | 법사랑위원 서울서부지역연합회 | 위원 | 장경도 | 〃 | 〃 |
| | 법사랑위원 충주지역연합회 | 위원 | 김창진 | 〃 | 〃 |
| | 법사랑위원 거창지역연합회 | 위원 | 김윤수 | 〃 | 〃 |
| | 법사랑위원 통영지역연합회 | 위원 | 이종목 | 〃 | 〃 |
| | 안양교도소 | 교정위원 | 김철환 | 〃 | 〃 |
| | 청주여자교도소 | 교정위원 | 강창호 | 2015.10.28 | 교정의날 유공 |
| | 광주교도소 | 교정위원 | 정애선 | 〃 | 〃 |
| | 대구구치소 | 교정위원 | 신근철 | 〃 | 〃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 보호위원 | 김준영 | 2015.11.18 | 갱생보호지원 유공 |

| 훈 격 | 소 속 | 직급 | 성명 | 수여일 | 비 고 |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 보호위원 | 박상규 | 2015.11.18 | 갱생보호지원 유공 |
| | (사)논산부여계룡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이사장 | 신형철 | 2015.12.10 | 범죄피해자보호지원 |
| | (사)고양파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이사장 | 류은경 | 2015.12.10 | 범죄피해자보호지원 |
| | 서울교육대학교 | 교수 | 허종렬 | 2015.12.16 | 법질서 유공 |
| | 경기도 | | | 〃 | 〃 |
| | 이화공영(주) | | | 〃 | 〃 |
| 국무총리표창 | 부산대학교 | 교수 | 정명주 | 2015.05.20 | 세계인의날 유공 |
| | (사)건강사회운동본부 | | | 〃 | 〃 |
| | 법무부법사랑위원성남지역연합회 | 위원 | 이재인 | 2015.09.11 | 범죄예방자원봉사 |
| | 법무부 법사랑위원 대전지역연합회 | 위원 | 박세홍 | 〃 | 〃 |
| | 법무부 법사랑위원 천안지역연합회 | 위원 | 장영기 | 〃 | 〃 |
| | 법무부 법사랑위원 마산지역연합회 | 위원 | 하종훈 | 〃 | 〃 |
| |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주지역연합회 | 위원 | 박근호 | 〃 | 〃 |
| | 법무부 법사랑위원 대구지역연합회 | 위원 | 이영직 | 〃 | 〃 |
| | 법무부 법사랑위원 원주지역연합회 | 위원 | 김원화 | 〃 | 〃 |
| | 소년보호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협의회 | 위원 | 박진석 | 〃 | 〃 |
| |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 | 위원 | 이규숙 | 〃 | 〃 |
| | 서울남부구치소 | 교정위원 | 윤귀옥 | 2015.10.28 | 교정의날 유공 |
| | 서울구치소 | 교정위원 | 정요세 | 〃 | 〃 |
| | 대구교도소 | 교정위원 | 고경순 | 〃 | 〃 |
| | 충주구치소 | 교정위원 | 김연희 | 〃 | 〃 |
| | 대전교도소 | 교정위원 | 정은숙 | 〃 | 〃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 보호위원 | 이병협 | 2015.11.18 | 갱생보호지원 유공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서부지소 | 보호위원 | 설대호 | 〃 | 〃 |
| | (사)진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이사장 | 구재홍 | 2015.12.10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
| | 중앙대학교 | 교수 | 최윤진 | 2015.12.16 | 법질서 유공 |
| | 경상북도 | | | 〃 | 〃 |
| | 주식회사 엘지 | | | 〃 | 〃 |

# Ⅹ. 위원회 현황

## 1. 총 괄

(2015. 12. 현재)

| 소 관 별 | 계 | 장관실 | 기 획 조정실 | 법무실 | 검찰국 | 범죄 예방 정책국 | 감찰관 실 | 교 정 본 부 |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 인권국 | 운 영 지원과 |
|---|---|---|---|---|---|---|---|---|---|---|---|
| 위원회 수 | 54 | 1 | 14 | 8 | 11 | 3 | 1 | 1 | 5 | 6 | 4 |

## 2. 위원회 개요

| 연번 | 위 원 회 명 | 근 거 | 설 치 목 적 | 구 성 | | 소관 부서 | 비고 |
|---|---|---|---|---|---|---|---|
| | | | | 위원장 | 위원수 | | |
| 1 | 법무부정책위원회 (분과위 : 법무시설 건축협위, 중앙급식 관리위, 외국인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위) |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 (훈령 제841호) | 법무행정운영에 관한 장관 자문 | 이원복 (교수) | 17 | 정 책 기획단 | 장 관 실 |
| 2 | 법무부 직장방위 협의회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대통령훈령 제28호 | 정규전대비 작전활동 및 향토예비군 법무부 직장분대 운영의 유기적 협조 조정 | 장 관 | 12 | 비상 안전 | 기 획 조 정 실 |
| 3 | 법무부 예산집행 심의위원회 | 예산집행심의회규정 (훈령 제870호)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기획조정 실장 | 11 | 기획 재정 | |
| 4 | 법무부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법무부 정책연구관리규정 (법무부훈령 935호) | 법무부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 기획조정 실장 | 16 | 〃 | |
| 5 | 법무부 공적심사 위원회 | 상훈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추천 심사 | 장관이 임명 | 10 | 창조 행정 | |
| 6 | 법무부 보통징계 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제81조, 공무원징계령 제5조 |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 | 차 관 | 9~15 | 〃 | |

| 연번 | 위 원 회 명 | 근 거 | 설 치 목 적 | 구 성 | | 소관부서 | 비고 |
|---|---|---|---|---|---|---|---|
| | | | | 위원장 | 위원수 | | |
| 7 | 법무부근무성적 평가위원회 |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법무부소속공무원평가 등 업무처리지침 |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조정 | 차 관 | 5~ | 창조행정 | |
| 8 | 법무부보통고충 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제3조 | 공무원의 고충 심사 | 장관이 임명 | 4~6 | 〃 | |
| 9 | 법무부보통승진 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3,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 공무원의 승진 심사 | 장관이 임명 | 3~ | 〃 | |
| 10 | 법무부성과급심사 위원회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 | 성과급 심사 | 장관이 임명 | 3~7 | 〃 | |
| 11 | 법무부교육훈련 심의위원회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의3 | 위탁교육 훈련대상자 선발, 심의 등 | 차 관 | 5~ | 〃 | 기획조정실 |
| 12 | 법무부지도방문 조정심의회 | 법무부지도방문조정심의회 운영규칙(훈령) | 소속기관지도방문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기획조정실 장 | 7 | 〃 | |
| 13 | 법무부자체규제 심사위원회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법무부 자체규제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제839호) |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규제범위·대상등에 대한 심사 | 이동호 (변호사) · 기획조정실 장 | 6 | 〃 | |
| 14 | 법무부 갈등관리심의 위원회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 법무부 갈등관리규정 (훈령 제913호) | 법무정책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장관 자문 | 이선우 (교수) | 12 | 〃 | |
| 15 | 법무부자체평가 위원회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 평가계획·평가결과 그밖에 당해 기관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표성수 (변호사) | 23 | 〃 | |
| 16 | 법무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획조정실장 | 4 | 〃 | |

| 연번 | 위 원 회 명 | 근 거 | 설 치 목 적 | 구 성 | | 소관부서 | 비고 |
|---|---|---|---|---|---|---|---|
| | | | | 위원장 | 위원수 | | |
| 17 | 법무자문위원회 | 법무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조, 제2조 | 법무부장관에 대한 자문 | 장관이 임명 | 20명 이내 | 법무심의관실 | 법무실 |
| 18 | 주택임대차위원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기준 심의 | 차 관 | 9 | 〃 | |
| | 주택임대차실무위원회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 |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 안건 준비 | 법무심의관 | 6 | 〃 | |
| 19 | 법령해석위원회 |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예규) 제3조 |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해석 업무의 통일성과 적정성 확보 | 법무실장 | 10 | 〃 | |
| 20 |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 변호사법 제92조, 제94조, 동법시행령 제21조 | 변호사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심의 | 장 관 | 8 | 법무과 | |
| 21 | 공증인징계위원회 | 공증인법 제85조, 공증인징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3조 | 공증인 징계사건심의 | 차 관 | 6 | 〃 | |
| 22 |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 외국법자문사법 제40조 | 비위 행위를 저지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 | 장 관 | 15 | 국제법무과 | |
| 23 | 본부배상심의회 | 국가배상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결정 | 차 관 | 6 | 국가송무과 | |
| 24 | 사법시험관리위원회 | 사법시험법 제14조 | 사법시험시행 관련 주요사항 심의 | 장 관 | 12 | 법조인력과 | |
| 25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 변호사시험법 제14조 |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시험합격자의 결정,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 방법 등의 개선 등의 심의 | 차 관 | 14 | 〃 | |

| 연번 | 위 원 회 명 | 근 거 | 설 치 목 적 | 구 성 | | 소관부서 | 비고 |
|---|---|---|---|---|---|---|---|
| | | | | 위원장 | 위원수 | | |
| 26 | 검사징계위원회 | 검사징계법 제4조, 제5조 | 검사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 및 의결 | 장 관 | 6 | 검찰과 | 검찰국 |
| 27 | 검찰인사위원회 | 검찰청법 제35조, 검찰인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2조 | 검찰인사 등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 | 변호사 | 10 | 〃 | |
| 28 | 검사적격심사위원회 | 검찰청법 제39조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제2조, 제3조, 제4조 |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 | 변호사 | 8 | 〃 | |
| 29 | 검사직무성과금심의 위원회 |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의10 | 직무성과금 지급등급·지급인원·지급액 심의 | 차 관 | 4 | 〃 | |
| 30 | 마약류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부령)제6조 | 마약류보상금지급에 관한 심의 | 검찰국장 | 4 | 형 사 기획과 | |
| 31 | 사면심사위원회 | 사면법 제10조의 2 | 특별사면·감형·복권 상신의 적정성 심사 | 장 관 | 8 | 〃 | |
| 32 | 국가보안유공자심사 위원회 | 국가보안법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 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4조 | 상금·보로금지급 및 보상대상자 심의·결정 | 검찰국장 | 6 | 공 안 기획과 | |
| 33 | 보안관찰처분심의 위원회 | 보안관찰법 제12조 |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 심의·의결 | 차 관 | 6 | 〃 | |
| 34 | 공안사범자료관리 협의회 |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제3조 | 공안사범에 관한 자료관리 | 검찰국장 | 10 | 〃 | |
| 35 |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부령 제603호) 8조 | 선거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신고·제보 활성화 유도 | 검찰국장 | 4 | 〃 | |
| 36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 규정(법무부훈령 제947호) | 범죄수익 환수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 | 검찰국장 | 4 | 〃 | |

| 연번 | 위 원 회 명 | 근 거 | 설 치 목 적 | 구 성 | | 소관부서 | 비고 |
|---|---|---|---|---|---|---|---|
| | | | | 위원장 | 위원수 | | |
| 37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울,부산,대구,광주, 대전 5개 심사위원회)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7조 |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 심사·결정 | 고 검 차장검사 | 각 8 | 범 죄 예 방 기획과 | 범죄예방정책국 |
| 38 | 법교육위원회 | 법교육지원법 제4조 | 범국가적 차원의 체계적·효율적 법교육 추진 | 김영천 (교수) | 13 | 법질서 선진화과 | |
| 39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 치료감호법 제37조 |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심사·결정 | 차 관 | 8 | 보 호 법제과 | |
| 40 | 법무부감찰위원회 |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1조 |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감사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 | 유원규 (변호사) | 9 | 감찰 관실 | 감찰관실 |
| 41 | 장애인차별시정 심의위원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심의 | 차 관 | 7 | 인 권 정책과 | 인권국 |
| 42 | 범죄피해자 보호 위원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심의 | 장 관 | 17 | 인 권 구조과 | |
| | 범죄피해자 실무 위원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 | 차 관 | 17 | 〃 | |
| 43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심의회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7조 및 시행령 제9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 차 관 | 14 | 〃 | |
| 44 | 범죄피해구조본부 심의위원회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5조 | 구조금 지급 재심신청사건 심의 결정 | 차 관 | 6 | 〃 | |
| 45 | 법무부여성아동정책 심의위원회 | 법무부여성아동정책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훈령 제932호) | 법무행정분야의 여성, 아동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조정 | 이재연 (교수) | 12 | 여성 아동 인권과 | |
| 46 | 법무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 법무부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사건 처리 지침(훈령 제931호) | 성희롱 고충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인권국장이 부치는 사항 심의·의결 | 인권국장 | 4 | | |

| 연번 | 위 원 회 명 | 근 거 | 설 치 목 적 | 구 성 | | 소관부서 | 비고 |
|---|---|---|---|---|---|---|---|
| | | | | 위원장 | 위원수 | | |
| 47 | 가석방심사위원회 | 형집행법 제119조 | 수형자의 가석방자 적격여부 심사 및 결정 | 차 관 | 8 | 분 류 심사과 | 교정본부 |
| 48 | 법무부 투자이민협의회 | 투자이민협의회규정 (훈령 제896호) | 투자이민제도 운영 관련 법무부장관 자문 | 차 관 | 10 | 체류 관리과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49 | 법무부이민정책자문 위원회 |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규정(훈령 제926호) | 이민정책 입안, 계획의 수립·시행 시 자문 | 이철우 (교수) | 14 | 외국인 정책과 | |
| 50 | 법무부국적심의위원회 | 국적법시행령 제28조 | 특별귀화대상자 선정 및 국적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심의 | 외국인 본부장 | 20 | 국적과 | |
| 51 |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제53조의4 |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외국인 본부장 | 10 | 이 민 통합과 | |
| 52 | 난민위원회 | 난민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난민불인정결정 및 난민인정의 취소·철회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차 관 | 14 | 난민과 | |
| 53 | 법무부보안심사위원회 | 법무부보안업무내규 제3조 | 보안대책수립 및 제규정 제정 | 차 관 | 8 | 운 영 지원과 | 운영지원과 |
| 54 | 에너지절약추진 위원회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지경부 고시 제2011-154호) |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 향상 | 차 관 | 6 | 〃 | |
| 55 | 정보공개심의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12조, 행정정보공개지침(예규) | 정보공개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기획조정 실 장 | 5 | 〃 | |
| 56 | 기록물평가심의회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폐기의 적정여부 | 기획조정 실 장 | 10 | 〃 | |

# Ⅺ.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 **소속기관**

(2015. 12. 31. 현재)

| 구 분 | 기 관 | 정 원 |
|---|---|---|
| 계 | 260개 기관 | 31,088 |
| 법 무 부 | 2실 3국 2본부 | 656 |
| 검 찰 청 | 대검찰청 1, 고등검찰청 5, 지방검찰청 18, 지청 40 | 9,931 |
| 법 무 연 수 원 | 법무연수원 2 | 124 |
| 보 호 관 찰 심 사 위 원 회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5 | 30 |
| 보 호 관 찰 소 | 보호관찰소 18, 지소 38, 위치추적관제센터 2 | 1,507 |
| 치 료 감 호 소 | 치료감호소 1, 약물중독재활센터 1 | 379 |
| 소 년 원 | 소년원 10, 소년분류심사원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6 | 802 |
| 교 정 기 관 | 지방교정청 4, 구치소 11, 교도소 38, 지소 3 | 15,756 |
| 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19, 외국인보호소 2, 출장소 23, 센터 1 | 1,903 |

○ **소속단체**

(2015. 12. 31. 현재)

| 구 분 | 기 관 | 정 원 |
|---|---|---|
| 계 | 4개 단체 | 1,044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본부 1, 지부 18, 출장소 40, 지소 72, 법문화교육센터 1 | 701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본부 1, 지부 15, 지소 7, 센터 1, 교육원 1 | 192 |
| 정부법무공단 | 본부 1 | 134 |
| IOM 이민정책연구원 | 연구원 1 | 17 |

# 부 록

법무부 본부 기구변천표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 법무연감 편집위원

## □ 편집위원장

| | | |
|---|---|---|
| **기획조정실장** | **검 사 장** | **권 익 환** |

## □ 편집위원

| | | |
|---|---|---|
| 기획조정실 | 부이사관 | 이 상 순 |
| 법무실 | 검 사 | 조 영 희 |
| 검찰국 | 검 사 | 임 세 진 |
| 범죄예방정책국 | 검 사 | 최 종 필 |
| 감찰관실 | 검 사 | 서 영 민 |
| 인권국 | 검 사 | 이 노 공 |
| 교정본부 | 부이사관 | 김 종 욱 |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부이사관 | 김 영 근 |
| 장관정책보좌관 | 검 사 | 주 혜 진 |
| 대변인실 | 서기관(일반임기제) | 한 정 진 |
| 운영지원과 | 부이사관 | 류 지 중 |
| 법무연수원 | 검 사 | 이 시 원 |

## □ 편집실무위원

| | | |
|---|---|---|
| 기획조정실 | 사 무 관 | 이 준 석 |
| 법무실 | 사 무 관 | 이 재 호 |
| 검찰국 | 사 무 관 | 김 동 욱 |
| 범죄예방정책국 | 사 무 관 | 조 연 호 |
| 감찰관실 | 사 무 관 | 최 종 필 |
| 인권국 | 사 무 관 | 이 영 민 |
| 교정본부 | 교 정 관 | 이 정 용 |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사 무 관 | 문 수 용 |
| 대변인실 | 사 무 관 | 박 정 석 |
| 운영지원과 | 서 기 관 | 김 수 철 |
| 법무연수원 | 사 무 관 | 김 승 권 |

# 法務手鑑


**발 행 일** | 2016년 9월

**발행기관** |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TEL : (02) 2110-3092, 3093
FAX : (02) 503-1641

**인　　쇄**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TEL : (02) 2279-6760


〈비매품〉